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1호 2013. 9

차 례

특집 대마도와 근세 한일관계 연구

장순순 ▣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15

한문중 ▣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61

민덕기 ▣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97

홍성덕 ▣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137

현명철 ▣ 對馬藩 소멸 과정과 한일관계사 181

하우봉 ▣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215

논문

박현규 ▣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로 건너간 조선 유민 고찰 253

김두현 ▣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299

조재곤 ▣ 전쟁과 변경 - 러일전쟁과 함경도의 현실 357

노병호 ▣ 미노다 무네키[蓑田胸喜]의 '원리일본'과 1930년대의 일본 403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446

Contents

Special Issue Research on Tsushima and Early Modern Korea-Japan Relations

Chang Soonsoon ■ A Historiography of Tsushima in the Joseon Period 15

Han Moonjong ■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sushima 61

Min Deakkee ■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and Tsushima 97

Hong Seongduk ■ The Role of Tsushima Domain in Joseon-Japan Relat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137

Hyun Myungcheol ■ The Process of Passing Tsushima Domain and Korea-Japan Relations 181

Ha Woobong ■ Changing Views on Tsushima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Pre-modern Period 215

Articles

Park Hyunkyu ■ Displaced Koreans in Chin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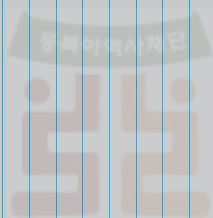
Kim Dooheon ■ The Lineages and Marriages of Translators who Accompanied the *Tongsinsa* (通信使) and Conducted *Munuihaeng* (問慰行) Miss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299

Cho Jaegon ■ War and Frontier: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Reality that Faced Hamgyeong Province 357

Row Byoungho ■ Minoda Muneki's *Nihonshugi* and Japan in the 1930s 403

특집

대마도와 근세 한일관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대마도는 한반도 동남쪽 해상에 떠 있는 작은 섬으로, 한국과의 거리는 50km가 채 되지도 않는다. 대마도의 일본식 고지명인 ‘쓰시마[津島]’는 한반도와 사이에서 왕래하는 배가 머무는 항구와 같은 섬이라는 뜻이고, ‘가라시마[韓鄕之島]’는 ‘한반도로부터 사람과 문화가 건너올 때 거쳐온 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대마도는 고대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한일관계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대마도와 근세 한일관계 연구’라는 대주제하에 6편의 소주제로 이루어진 본 공동연구의 목적은 대마도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시대의 한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 대일관계의 핵심은 왜구 금압 문제였으며, 대마도는 왜구의 중심 세력이었다. 조선의 왜구 통제책은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 여러 지역의 해적들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 통제책의 대부분은 일본의 중앙정부와 대마도를 중심으로 대일외교를 다원화하려는 조선의 전략적인 선택을 배경으로 한다. 일본의 중앙정부인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의 지방 통제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 대마도는 현실적인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요 통로가 된 것이다.

조선전기의 한일관계는 어느 시기보다도 활발하게 지속되어왔고, 그 중심부에는 대마도의 역할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종식된 후 대마도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조선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였다. 아울러 도쿠가와막부[徳川幕府]의 국교재개 희망과 맞물려 조선후기 한일관계는 재편되었다. 조선후기의 한일관계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대일외교를 통제하려는 조선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의 조정과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를 연결하는 통신사(通信使)와 예조와 대마도를 연결하는 실무적 사행으로서 문위행(問慰行)을 파견하는 이원적 체제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통신사였던 1811년의 신미통신사

행 파견 이후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대마도와의 관계는 반세기 이상 계속되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을 막론하고 기존의 연구는 양국의 중앙정권인 조선 국왕과 막부 장군 간의 외교관계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 즉 막부 장군 이외의 지방호족 특히 대마도와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조선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대마도주에게 외교적·경제적 특권을 부여하면서 대마도를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 속에 편입시키려 하였고, 대마도주는 이를 이용하여 도내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확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중앙정부에 정치적으로 ‘양속(兩屬)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국교 재개를 비롯하여 양국의 외교와 무역 업무 수행에서 대마도는 도쿠가와막부의 외교 교섭 창구였다. 따라서 근세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대마도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외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근세 한일관계사에서 대마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규명은 근대 식민지 지배로의 전환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의 특성상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 및 제반 정보에 능통했던 대마도가 일본 내 조선침략론(征韓論)의 등장 이후 조선 강점에 이르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한일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는 시기 한일관계사의 굴절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도 근세 한일관계사 속에서 대마도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추진된 연구과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섯 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2.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3.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4.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5. 對馬藩 소멸 과정과 한일관계사

6.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소주제에서 연구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1945~2012년 9월까지 발표된 조선시대 대마도 관련 논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논쟁성과 중요도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조선전기, 임진왜란기, 조선후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분석 결과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는 초기에 일본 연구자들이 주도하였으며, 국내에서의 연구는 1960년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다가, 1990년대 일본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의 귀국과 함께 한 일관계사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결성되고, 연구자층이 형성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연구 주제는 외교체제와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제도사적인 연구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주제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등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② 시기적인 연구경향을 보면 일본 연구자들이 조선전기(일본사에서의 중세) 연구에 주목한 반면, 국내 학자들은 소수의 연구자들을 제외하고, 조선후기(일본사에서의 근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③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의 설정이나 경향성 못지않게 사료의 발굴과 활용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전객사별등록(典客司別謄錄)』이나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 등이 국역되면서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규장각 소장 대일관계 등록류 등 다수의 사료들이 연구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와 일본의 각지에 소장되어 있는 대마도 종가문서(宗家文書)의 적극적인 활용도 요구된다.

④ 조선시대의 한일관계는 양국 국가체제의 차이, 대외관계에서의 교섭형

태와 외교교섭 태도의 차이점을 고려한 전제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대마’에서는 조선전기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대마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조선이 계해약조, 문인제도, 수직제도 등의 실시를 통해 어떻게 대마도를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인 기미관계의 외교체제에 편입시키려 하였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대마도가 정치적·외교적·경제적으로 한일 양국에 양속(兩屬)되어가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② 대마도의 양속관계의 성격과 변화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양속관계가 조일 간의 외교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③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정치·외교·경제·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조선전기 대일외교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며, 대마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외교체제가 일본 국왕을 대상으로 하는 적례교린(敵禮交隣)과 달리 기미관계(羈縻關係)의 외교체제였다는 점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조선전기 일본과 체결한 주요 약조, 즉 계해약조를 비롯하여 임신약조, 정미약조 등의 각종 약조나 문인제도 등을 보면 대부분이 대마도와 맺은 약조이거나 대마도를 통한 왜인통제책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전기 한일관계는 대마도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 번째 주제인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임진왜란 중, 강화 교섭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이루어진 대마도의 조선 교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실 임진왜란에서의 대마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도 그동안 연구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조선전기 한일 양국관계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대마도에 임진왜란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약조관계’도 단절되고 문인 발급도 중지될 터였다. 더구나 일본의 침략군은 조선을 왕래하며 대마도에 수시로 체류하여 대마도 재정을 소진시킬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란 직전에 벌였던 대마도

주의 전쟁 예방을 위한 여러 외교교섭은 생존을 위한 사투였다. 이 글에서는 수차례의 교섭 결과 1590년 경인통신사(庚寅通信使)가 방일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게 강제당하여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휘하에서 3천 명의 무사를 동원하여 전란의 선봉에 서야 했던 대마도주가 왜란 전개 과정에서 보인 활동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쟁이 끝난 후 시작된 강화교섭에서도 대마도가 그 전면에 나서게 된다. 막부와 대마도의 입장, 나아가 대마도주가 강화교섭의 전면에 나서 1607년 조선 사절의 도일에 따라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네 번째 주제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에서는 임란왜란 이후 국교재개 교섭과정과 국교재개 이후 재편된 한일관계의 운영과 관련한 대마도의 역할을 주로 고찰하였다. 대마도주와 동래부 사이에 왕래한 문위행(問慰行)의 성격과 왜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마도의 대조선 외교가 가지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제기하고 있는바 일본의 대조선 외교 교섭의 주체를 대마도로 한정하려는 주장이 지니는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교섭의 형태상 나타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교섭의 부재가 가지는 외교사적 의미를 적시하고,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성격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파생하였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마도 사이에 왕래했던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에 양속되어 있는 성격이 조선전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 ‘대마번 소멸 과정과 한일관계사’는 막부 말기 대마번(對馬藩)의 소멸 과정과 한일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대마번의 소멸은 법제적으로는 1871년의 폐번치현(廢藩置縣)이지만, 대마도인들이 왜관을 떠나는 것은 1872년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1872년까지 대마번을 둘러싼 한일관계사를 고찰하였는데, 주된 자료로는 『동래부계록(東萊府啓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막부 말기 대마번에서 전개된 이봉운동(移封運動)과 양이정권(攘夷政權)의 성립, 그리고 막부에 대한 원조요구 운동 등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어 메이지 초기 폐번치현을 전후한 한일관계와 대마번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매우 다른 역사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성을 강하게 띤 일본 외무성 기록에 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막부말기·메이지기 대마도의 정치·경제사를 검토하는 것은, 막부말기의 조선침략론(征韓論)과 메이지 초기의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폐번치현으로 대마도주의 주권 및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 변화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까지 근대 일본에서 왜곡한 한일 간의 역사상을 올바르게 기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주제인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에서는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영토와 경계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 영역에 있으며, 일본의 중앙정부로부터 반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무로마치막부 시대의 대마도는 반독립적인 지위를 누렸음에 비해 도쿠가와막부 시기에는 경계지역의 활동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고 대마도도 막부의 체제에 흡수되어 막번체제(幕藩體制)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마도의 위상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본 주제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양국의 대마도 인식을 고찰하면서, 그 배경으로 고대와 중세의 대마도 인식과 개항기까지의 대마도 인식의 시간적 변화양상과 추이를 정리하였다. 또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에서 핵심적 주제인 속주화(屬州化) 조치와 양속관계론(兩屬關係論)에 관해서도 양국 연구자들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대마도 인식은 대마도 정벌 후 일시적이나마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주로 들어왔다는 사실, 또 대일통교체제상 대마도가 조선의 국제질서 속에서 번신(藩臣)으로 의제되면서 편입되었던 사실 등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대마도가 비록 영토적으로 일본에 소속되기는 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번속국으로 간주하였던 사실을 논증하였다.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본 공동연구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우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국가 간의 관계 설정에 집중된 연구의 방향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그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전·후기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근대 이후 한일 관계사의 전개과정을 유추해낼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관계사에서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대마도의 역할과 대마도에 대한 조선 정부의 외교방침에 대한 성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와의 관계로 제한하려는 일본 내의 보수적 연구성과가 가지는 학문적 한계를 밝혀낼 수 있었다. 나아가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 국왕과 일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위계를 재설정하려는 ‘조선침략론’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하 우 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장순순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조선전기의 경우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다수의 약조나 문인제도 등은 모두 대마도¹⁾와 맺은 약조이거나 대마도를 통한 왜인통제책이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에도 대마도는 에도막부로부터 조선 외교 교섭을 家役으로 정하였고 대신 조선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따라서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양국 간의 근세적 외교체제가 근대체제로 개편되기까지 조선시대 양국의 최고통치자들은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교섭도 불가능하였다.²⁾ 때문에 대마도를 떼놓

※ 투고일: 2013년 6월 10일, 심사일: 2013년 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1) 대마도를 부르는 명칭은 예로부터 對馬國·對馬州·對馬藩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주로 쓰시마[對馬]로 부른다. 중세 일본에서는 對馬國·對馬州로, 근세 일본에서는 주로 對州·對馬藩으로 호칭했고, 조선에서는 對馬島로 불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마도가 변경으로서 지나는 지리적 성격과 조일 간의 양속적 성격을 나타내는 데에 '對馬島'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마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선사시대부터 대마도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곳이었다. 대마도는 선사시대

고는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아직도 조선시대 대마도를 주제로 연구사의 정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마도 연구의 동향은 주로 통신사나 왜관을 중심으로 한 일관계사 연구 동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을 뿐, 본격적인 시도는 없었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사 정리가 조선의 중앙정부와 일본의 막부라는 국가 레벨 속에서 검토되거나 통신사·왜관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³⁾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속에서 대마도를 주제로 하여 발표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조일관계 속에서 대마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미력하계나마 유익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토 범위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발표된 조선시대(일본의 중·근세) 대마도 관련 논저로, 『한국사연구회보』(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서검색(<http://opac.ndl.go.jp>)을 중심으로 검색·추출하였고, 석사학위논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부터 한반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대륙과 한반도 문화의 유입창구였다. 국방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정부는 7세기 중엽에 國司를 파견하였고, 서부 지역의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大宰府 관할 하에 두었다. 또 대마도는 국경의 도시로 한반도와의 전쟁이 있을 때 최일선에 위치하였다. 663년 백촌강 전투, 811년과 894년 신라 해적의 습격, 1019년 刀夷(여진족)의 난,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있었던 여몽연합군의 침략, 1419년 대마도 정벌, 1592년 임진왜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3)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정리한 연구사 논문에는, 佐伯弘次, 2002, 「戦後における中世日朝關係史研究－1980年代以後を中心に」, 韓日關係史學會 編, 韓日關係史研究の回顧と展望』, 國學資料院; 한문중, 2002,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한문중, 2011,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전북사학』 38, 전북사학회; 민덕기, 2010, 「한국에서의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일교류사와 상국의 역사』, 경인문화사; 김태훈, 2010, 「17~18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등이 있다.

조선 전기~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문들을 짧은 시간과 제한된 지면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이 필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존 연구에서 학자 간에 논쟁이 되거나 논의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주제를 정하여 논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왕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연구 성과를 간과했거나 논문의 논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II. 조선전기 대마도 연구

1_ 외교체제

조선시대 한일관계에서 외교체제는 일찍부터 한일 연구자 간에 핵심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 측에서는 이현중, 김병하가 196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은 조일 간의 외교체제를 조선 국왕과 일본 국왕[幕府將軍] 사이에 행해진 交隣外交體制로 인식하고, 교섭 대상이 다원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⁴⁾ 한편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와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같은 일본 측 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조선전기 양국의 외교체제를 교린체제로 규정하고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 중국의 책봉을 주요한 조건으로 설명하였고,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등에게로 이어졌다.⁵⁾ 그러나 이들의

4) 이현중, 1964, 『朝鮮前期 對日交渉史研究』, 한국연구원; 김병하, 1969, 『李朝前期 對日貿易研究』, 한국연구원

5)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4쪽;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07쪽;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35쪽;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63~165쪽

연구는 대마도와 막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본으로 동일시함으로써 당시 한일관계 속에서 대마도의 역할을 둘러싼 구체적인 실상을 외면한 면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손승철과 민덕기는 조선전기 대일외교를 단순히 조선 국왕과 일본 국왕[막부장군] 사이에 행해진 교린외교체제가 아니라, 조선 국왕과 막부장군은 敵禮關係의 대등한 交隣外交(敵禮的 交隣)를, 조선 국왕과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호족은 羈縻關係의 교린(羈縻圈 交隣)이라는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외교체제였다고 규정하였다.⁶⁾ 이들 연구는 대일외교에서 막부와 대마도를 구분하고, 대마도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한국 측 연구자 가운데 대마도에 주목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한 연구자로는 한문중⁷⁾을 들 수 있다. 그는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주목하여, 조선의 왜구대책과 대마도 정벌, 대마도의 對조선 통교와 무역, 통교자에 대한 통제, 수직·수도서제 등의 회유책, 대마도에 파견한 사행

6) 그러나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손승철이 중국의 책봉체제를 전제로 조일관계의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면, 민덕기는 명의 책봉체제나 華夷秩序와는 무관하게 양국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손승철, 1989, 『조선후기 대일 정책의 성격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후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년 출판); 손승철, 1999,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민덕기, 1990, 『中·近世の日朝關係と對馬』, 早稻田大學 박사학위논문(이후 『前近代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1994년 출판). 이후에도 두 사람은 조선전기 대일외교체제를 규명하기 위한 몇 편의 논문을 더 발표하였는데,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보완한 것이다. 손승철, 1993, 「朝鮮の事大交隣政策과 敵禮關係」, 『新實學의 탐구』, 열린책들; 손승철, 1993, 「조선시대 교린체제의 분석과 그 문제점」,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손승철, 1996, 「대마도 朝日 양속 관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손승철, 1999,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소수); 민덕기, 1998, 「조선시대 교린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교린」,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민덕기, 2000, 「日本史上의 國王 稱號－일본 중·근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3, 한일관계사학회; 민덕기, 2007, 「조선전기 '교린'으로 보는 대외관계」,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민덕기, 2007, 「조선전기 '일본국왕' 인식－'적례'를 중심으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朝鮮前期の日本國王觀」, 『朝鮮學報』 132, 朝鮮學會 재게재)

7) 한문중, 1996,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을 분석하여, 조선전기 대일외교의 특징과 대마도의 역할을 고찰하고 조선 전기 조일외교체제의 특징도 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선 초기 다원적·중층적이었던 대일외교체제가 1443년 계해약조 체결로 이원적 중층적·외교체제로 변화되었는데, 삼포왜란을 계기로 대일외교체제가 붕괴되면서 조선 통교권이 대마도주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僞使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실 조일 간에 외교체제에 관한 문제는 조일외교에서 대마도의 위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임에는 분명하다.

2_ 대마도 정벌과 왜인통제책의 실시

조선시대 대마도 정벌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간략하게나마 언급해온 주제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연구는 군사와 국방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⁸⁾ 한문종의 연구는 대마도 정벌을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대마도 정벌이 이후 한일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주목하여, 대마도 정벌이 조선이 대마도에 대해 기미관계의 외교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대마도주가 조일외교의 중간세력으로 급부상하

8) 李銀圭, 1974, 「15세기 韓·日交涉史研究－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3, 호서사학회; 吳京愛, 1977, 「麗末鮮初 倭寇發屢와 對馬島征伐」, 『君子社會』 4, 수도여사대 사회교육과; 孫弘烈, 1978, 「려말·선조의 대마도정벌」, 『역사와 담론』 6, 호서사학회; 이종학, 1980, 「실전에서의 병력동원문제」,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장학근, 1983, 「조선의 대마도정벌과 그 지배정책－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논문집』 8, 해군사관학교; 진중근, 1989, 「朝鮮朝初期의 對日關係－對馬島征伐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15,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한문종, 1997, 「조선초기의 왜구정책과 대마도정벌」, 『전북사학』 19·20합집, 전북사학회; 나중우, 2002, 「조선은 왜 대마도를 정벌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 10, 내일을 여는 역사; 이규철, 2009,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김일환, 2012, 「세종대 대마도정벌의 군사적 전개과정」,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1; 한문종, 2010, 「대일외교의 중심이 되다」,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예』, 서해문집

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⁹⁾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왜구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조선의 대일정책은 조선에 도항하는 통교왜인의 효과적 통제로 집중되었다. 왜인 접대 및 통제책에 대한 한국 측 연구로는 이현중·나종우·한문중 등의 연구가 있는데,¹⁰⁾ 이들 연구는 포소의 제한과 왜관의 설치, 도서·서계·文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문중은 대일통제책의 실시 배경과 연원, 내용 등을 고찰하여 이들 통제책이 대일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결국 조선 정부가 호조와 병조·예조 등 중앙관서와 都體察使·巡問使·守令·萬戶 등 지방관에게 주었던 문인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 준 것은 도주를 통하여 일본에서 오는 통교자들을 일원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대마도주는 문인제도를 이용하여 對조선 통교자들을 통제하고, 문인발행에 대한 수수료와 교역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도내에서의 정치·경제적인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문인제도는 조선과 대마도 간의 이해가 서로 부합한 것으로, 이후 조선의 대표적인 대왜인통제책이 되었다. 한편, 유재춘과 하우봉은 중세의 대마도와 宗氏지배체제의 확립과정에 주목하여,¹¹⁾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는 조선의 남쪽 藩屏으로서 조일무역의 중개지이자 일본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수집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왜인통제책에 대한 일본 학계의 연구로는 오사 세쓰코[長節子], 사에

9) 대마도 정벌은 ① 왜구에게 큰 타격을 주어 그들의 침략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② 조선 정부가 왜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왜인통제책을 실시하는 등 대일의 교 체제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고, ③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 주로 편입되면서 조선의 對馬藩屏意識 내지는 對馬屬州意識이 일반화되어, 결과적으로 조선이 대마도를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 즉 기미관계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한문중, 1997, 「조선초기의 왜구정책과 대마도정벌」, 『전북사학』 19·20합집)

10) 李鉉淙, 1959, 「李朝初期 倭人接待考(上)(中)(下)」, 『史學研究』 3·4·5; 한문중, 2001,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한일관계」, 『京畿史論』 4·5, 경기대학교 사학회

11) 유재춘, 1999, 「세종대 崔浣 事件과 朝日關係의 추이」, 『한일관계사연구』 10, 한일관계사학회; 하우봉, 2010, 「조선전기의 부산과 대마도」,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국학자료원

키 고지[佐伯弘次],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등의 연구가¹²⁾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세견선의 정약은 세종 6년(1424) 九州探題 미나모토 료순[源了俊]과의 사이에 처음 체결되었으며, 대마도주와는 1443년(세종 25) 계해약조로 이루어졌다. 계해약조의 성립이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규범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대마도주 宗씨에게는 사선의 파견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였다는 이해가 일본 측 연구의 일반적인 입장이다.¹³⁾

사에키 고지와 아라키 가즈노리는 대마도주가 조선에서 받은 각종 특혜를 도내 권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다루었는데,¹⁴⁾ 계해약조를 통해 대마도주 宗씨는 대마도 내 諸氏에 대하여 세견선의 船數를 할당하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계해약조는 도주 문인제도와 함께 도내 여러 세력을 장악하는 데 유효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계해약조 체결로 대마도주는 家臣에 대해 세견선의 所務權을 知行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조선통교권의 知行化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들 연구는 계해약조 이후 세견선 파견에 대한 대마도주의 권익 분배와 도내 세력의 통제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조선전기 한일관계를 대마도 안의 권력관계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국 측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_ 僞使 문제

‘僞使’는 한일 연구자 간에 가장 첨예한 이견 차이를 보이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僞使 논의는 오사 세쓰코가 시작하였으나,¹⁵⁾ 1990년대 후반 對馬島 宗家

12) 佐伯弘次, 2006,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대마도」, 『통신사 이예와 한일관계』, 새로운 사람들; 荒木和憲, 2003, 「對馬島主宗貞盛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朝鮮學報』 189, 朝鮮學會; 荒木和憲, 2003, 「中世後期における對馬宗氏の特送船」, 『九州史學』 135, 九州史學研究會

13)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14) 佐伯弘次, 2006, 앞의 논문; 荒木和憲, 2003, 앞의 논문; 荒木和憲, 2003, 앞의 논문;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15) 長節子, 1987, 앞의 책; 長節子, 2002a,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虚像と實像—世祖

에서 다량의 僞造圖書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일본 중세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위사 연구의 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일본 학자들의 논지에 따르면 僞使란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위장 통교 사절로, 15세기 중엽부터 대마도주 宗씨가 조직적으로 파견하였고, 16세기 이후 대마도가 조선 통교의 권익을 수집·독점하면서, 국내 여러 세력의 통교명의를 사칭한 僞使를 널리 파견하였다는 것이다.¹⁶⁾

오사 세쓰코는 위사의 주체를 대마도로 보았다면, 하시모토 다케시(橋本雄)는 오사 세쓰코설을 비판하면서, 1469~1471년까지 대마도주 소 사다쿠니(宗貞國)가 博多로 출병하면서 이를 계기로 대마중씨와 博多商人 간에 조선 통교무역권을 매개로 한 밀접한 연대관계가 생겨났고, 그 결과 위사의 파견 주체는 대마도인에서 대마도인=博多商人의 연합으로 변해갔으며, 중씨가 博多商人에게 부여한 통교권이 바로 ‘僞王城大使’였다고 주장하였다.¹⁷⁾ 한편 사에키 고지 등은 『海東諸國記』 속의 통교왜인의 실상을 고찰하면서, 『海東諸國記』에 나오는 통교자 중에 많은 위사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海東諸國記』에 대한 사료비판을 제기하였으며,¹⁸⁾ 마쓰오 히로키[松尾弘毅]는 표류민

對瑞祥祝賀使を中心として, 『年報朝鮮學』 8; 長節子, 2002b,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 16) 米谷均은 위사를 “제3자가 어떤 통교명의를 사칭해서 파견하는 허위의 사절”로, 橋本雄은 제3자가 어떤 사람(그 사람의 실재 존재 유무는 상관없이)의 명의를 빌려서 사절을 파견하여 무역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거짓의 사절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伊藤幸司는 “파견 주체 또는 사인이 통교명의를 사칭하는 사절”로 규정하였다.(한문중, 2011, 「조선전기 한일관계사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全北史學』 39, 주24)
- 17) 橋本雄, 2004, 「宗貞國의 博多出兵과 僞使問題－〈朝鮮遣使 畚〉문의 再構成을 위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橋本雄, 2004, 『조선왕조실록 속의 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소수)
- 18) 佐伯弘次・水野哲雄・三村講介・荒木和憲・岡松仁・岩成俊策・大塚俊司・松尾弘毅・八木直樹, 2006, 「『海東諸國記』日本人通交字の個別的検討」, 『東アジアと日本: 交流と變容』 3號, 九州大學21世紀COE 프로그램; 佐伯弘次, 2006, 앞의 논문; 伊川健仁, 2000, 「中世後期における外交使節と遣外國使節」, 『日本歴史』 626; 松尾弘毅, 2003,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後期受職人の性格」, 『日本歴史』 663; 伊藤行司, 2002, 「中世後期における對馬宗氏の外交僞」, 『年報朝鮮

송환과 위사 파견에서 대마도와 博多상인이 협력관계에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아라키 가즈노리는 宗氏 領國의 정치·경제상황 속에서 宗씨가 위사를 파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1440년대에 들어서 도주의 세권전제도가 조선 측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형세로 도입되자, 宗氏 권력 내부의 결속력과 구심력이 저하될 위험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소 시계모토[宗成職]는 1450년대부터 1460년대에 걸쳐 대마도 내의 諸氏名義의 통교권과 島外諸氏(深處倭) 명의의 통교권=위사통교권을 늘려간 것이며, 그 결과 1460년대 후반에는 위사통교가 확대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와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는 대마도종씨가 비장하고 있던 도서·木印을 대량 발견하여 15~16세기에 걸쳐 宗씨가 행한 위사통교의 실태를 밝혔다.¹⁹⁾

일본 측 연구자들이 위사에 대한 논의를 조선전기 조일관계 속에서 대마도의 위상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면, 이에 비해 국내의 연구는 위사의 개념 내지 성격 규명이 주를 이루었다. 위사에 관한 한국 측 연구는 하우봉·손승철·민덕기·한문중²⁰⁾ 등이 부분적으로 해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인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에 수록된 유재춘·한문중·신동규·이훈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²¹⁾

學』8; 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697; 米谷均, 2010, 「표류민 송환과 정보전달을 통해 본 16세기 조일관계」, 『한일 교류와 상극의 역사』, 경인문화사; 荒木和憲, 2010, 「16世紀 후반 對馬 宗氏領國의 政治構造와 日朝外交」, 『한일 교류와 상극의 역사』, 경인문화사; 荒木和憲, 2007, 앞의 책

19) 田代和生·米谷均, 1995, 「宗家舊藏「圖書」と「木印」」, 『朝鮮學報』156

20) 손승철, 1988, 「조선전기 朝琉交隣體制의 구조와 성격」, 『江原史學』13, 강원사학회; 하우봉, 1994, 「조선전기 對琉球關係」, 『國史館論叢』59, 국사편찬위원회; 민덕기, 1994, 「朝鮮前期の日本國王觀—敵禮の面から」,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한문중, 2004,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朝鮮通交」, 『韓日關係史研究』21, 한일관계사학회; 한문중, 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한일간의 문화교류」, 『韓日關係史研究』17, 한일관계사학회

21)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2005,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에 수록된 위사관련 논문은 유재춘, 「조선전기 僞使의 발생배경에 대하여」; 한문중,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통교위반자의 처리」(2004, 『日本思想』7, 한국일본사상사학회에 게재됨); 신동규, 「『조선왕조실록』 속의 日本國王使와 僞使」; 이훈, 「琉球國王

한문종은 僞使의 ‘使’는 사신, 사절, 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사절 또는 사신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선전기 일본에서 조선에 도항해온 자들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사절이 아닌 통상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통교자 또는 통교무역자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위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통교위반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²⁾ 신동규도 일본의 위사에 대한 개념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사를 “명의 사칭, 가공인물, 서계위조를 포함해 조선의 도항허가 형식을 지참하지 않은 사절”로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사에 관한 연구는 한국보다는 일본 내에서 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용어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양국 학자 간에 입장차 또한 크다. 그것은 통치체제가 전혀 달랐음에도 양국의 연구자들이 당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自國史의 입장에서만 다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사에 관한 연구는 당시 양국 각자가 처한 자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사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_ 삼포와 왜관

조선전기 도항해온 일본인의 거주가 三浦로 제한되면서, 삼포에는 왜관이 설치되었다. 왜관 주변에는 점차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항거왜인 대부분은 대마도 주민이었다.²³⁾ 따라서 삼포와 왜관의 모습은 곧 조선 내 대마도인

使와 僞使」 등이 있다.

22) 한문종은 조선 정부가 위사에 대해 강력한 단속 대신 미온적으로 처리한 이유는 멀리서 오는 사절을 박대할 수 없다는 명분론과 왜구의 재발 가능성 때문이었고, 조선으로서도 도항해온 통교왜인이 조선이 정한 통교규정, 즉 서계·도서·문인의 지참과 진상·회례의 외교의례를 충족했느냐를 중요시했으므로, 그들의 진위여부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이다.(한문종, 2005,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3) 佐伯弘次, 2010,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188~189쪽

의 생활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주제다.

나카무라 히데타카·오사 세쓰코·李泰勳·무라이 쇼스케·세키 슈이치 [關周一] 등 일본 연구자들은 삼포의 개항과 변천, 삼포항거왜인의 생활모습, 禁斷權의 문제, 삼포항거왜인의 收稅 문제 등을 다루었다.²⁴⁾ 무라이 쇼스케는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서술에 기초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 추출한 사료를 중심으로 삼포 왜인의 생활 모습을 추적하여 저술한 『中世倭人傳』에서 왜구의 활동지역을 삼포를 포함하는 남해안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활동지역을 국경이나 민족을 넘어선 여러 민족의 잡거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왜인(왜구 포함)들의 비정상적인 행위 예컨대 약탈이나 僞使를 넓은 의미에서 아시아 해역의 인적 교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일본 연구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논지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조선 내 대마도인의 거주공간이었던 삼포의 형성과 변천 등 제도사적인 측면을 규명한 연구와,²⁵⁾ 삼포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인과 대

24) 일본 측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傳』, 岩波書店(이영 옮김, 1995, 『중세 왜인의 세계』,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37); 長節子, 2002b, 앞의 책; 中村榮孝, 1965a, 「三浦に置ける倭人の諍亂」, 『日鮮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中村榮孝, 1965b, 「三浦の制限と倭館の設置」, 『日鮮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金義煥, 1988, 「釜山倭館貿易の研究—15世紀から17世紀にかけて貿易形態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117, 朝鮮學會; 村井章介, 1997, 「三浦の鎮城と權限—齋浦を中心に」, 『國境を越えて』, 交倉書房; 關周一, 1993, 「中世の日朝關係—倭寇・朝鮮遣使ブーム・三浦」, 『歴史と地理』 457; 關周一, 1994, 「倭人送還交渉と三浦の形成」, 『社會文化史學』 33; 關周一, 1998, 「對馬・三浦の倭人と朝鮮」,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6; 關周一, 2006, 「對馬・三浦の倭人と東アジア海域」, 『史叢』 60; 關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關周一, 2012, 「對馬と倭寇—境界に生きる中世びと」, 高志書院; 村井章介・荒野泰典・高橋公明・孫承喆, 1993, 「三浦から釜山へ—李朝時代の對日貿易と港町」, 『靑丘學術論集』 3; 長節子・李泰勳, 2006, 「朝鮮前期의 浦所に關する考察」, 『九州産業大學國際文化學部紀要』 34, 九州産業大學國際文化學部; 李泰勳, 2007, 「三浦恒居倭に對する朝鮮の對應」, 『年報朝鮮學』 10,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25) 金容旭, 1962, 「釜山倭館考」, 『韓日文化』 1, 釜山大學校 韓日文化研究所; 이현중, 1965, 『朝鮮前期 對日交渉史研究』, 韓國研究院; 김병하, 1969, 『朝鮮前期 對日貿易研究』, 韓國研究院; 한문중, 1996, 『조선전기 대외외교정책 연구—대마도

마도인의 교류에 초점을 둔 김동철·文亨鎭·이중봉²⁶⁾ 등의 연구로 구분된다. 한문중은 1407년 포소의 제한은 興利倭人에 대한 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그동안 극성을 부렸던 왜구의 침입이 조선의 왜구대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였다.²⁷⁾ 이현중은 삼포 항거왜인과 釣魚倭人에 대한 收稅論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수세론의 논의과정과 실행 여부 등을 고찰하였다.²⁸⁾ 한편 삼포왜란에 대한 연구로는 삼포왜란의 발생원인, 삼포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가 임신약조로 재개되는 과정, 그 후 외교관계의 단절과 복구가 반복되는 과정을 고찰한 이현중의 연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在範, 1996, 「三浦倭亂의 歷史的 性格에 대한 再檢討」, 『한일관계사연구』 6, 한일관계사학회; 손승철, 1996, 「조선전기 서울의 東平館과 倭人」, 『향토서울』 5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손승철, 2006,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엽포연구」, 『통신사 李藝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학회편, 새로운사람들; 장순준, 2001, 「조선전기 왜관의 성립과 조·일외교의 특질」, 『한일관계사연구』 14, 한일관계사학회; 김용기, 1964, 「조선전기 倭物庫에 대하여」, 『논문집』 4, 부산대학교; 申基碩, 1985, 「朝鮮朝 前期의 對日通交－三浦恒居倭人問題를 中心으로」, 『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념 韓國學論叢』; 한문중, 2012,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 3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한일문화교류기금,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2, 『한일관계 속의 왜관』 소수); 한문중, 2008,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이 외에도 1945~2000년까지의 삼포와 왜관에 관한 연구 성과는 한문중, 2002, 「조선전기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한문중, 2010,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에 잘 정리되어 있다.

- 26) 김동철, 2008, 「15세기 부산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손승철, 2010, 「齋浦倭館의 과거와 현재」, 『한일교류와 상국의 역사』, 경인문화사; 文亨鎭, 2004, 「조선초 왜인관련 조선인범죄유형과 그 처벌실태」, 『역사문화연구』 21; 文亨鎭, 2004, 「조선초 왜인범죄유형과 그 처벌실태」, 『일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文亨鎭, 2005, 「세종의 대외포용정책과 범죄증가실태」, 『일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이중봉, 2008, 「조선전기 齋浦의 倭人과 활동」,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 27) 한문중, 2008,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 28) 李鉉淙, 1961, 「朝鮮初期 倭人收稅考－三浦恒居倭人과 釣魚倭人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9, 한국사학회(李鉉淙, 1965, 『朝鮮前期 對日交渉史研究』, 한국연구원에 「對倭人收稅」로 수록됨)

구, 삼포왜란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목한 이재범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김병하·정영석·윤성익 등의 연구가 있다.²⁹⁾

위와 같은 연구에도 포소 왜관의 설치시기와 삼포 항거왜인의 생활, 삼포에서 이루어진 대마도인과 조선인의 교류, 교역의 실태, 삼포왜란 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또한 부산포·내이포·염포 등 삼포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과 한일관계 속에서의 의미 등에 대한 연구, 삼포 항거왜인의 경작지에 대한 수세문제와 禁斷權의 문제, 釣魚倭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삼포왜란을 계기로 조일 양국관계가 급격히 쇠퇴하여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을 맞이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도 삼포왜란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_ 무역

조선시대 대일관계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통교’, ‘통교무역’, ‘통교체제’라는 용어는 조일관계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대일무역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에 이현종과 김병하가 주도하였으며, 근년에 와서는 김동철·이정수·정지연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³⁰⁾ 이현종은 여말선초의 왜구가

29) 中村榮孝, 1965, 「三浦における倭人の争亂」,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傳』, 岩波書店; 佐伯弘次, 2010,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이현종, 1960, 「三浦倭亂原因考」, 『해원황의돈선생고회기념사학논총』; 이현종, 1961, 「三浦倭亂後 對倭交渉再開始末에 對하여」, 『歷史教育』 5; 이현종, 1962, 「三浦倭亂後 倭人接待貿易에 對하여」, 『한일문화』 1-1,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이재범, 1996, 「三浦倭亂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再檢討」, 『한일관계사연구』 6, 한일관계사학회; 金柄夏, 1989, 「乙卯倭變考」, 『탐라문화』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鄭暎錫, 1994, 「조선전기 호남의 왜변에 대하여」, 『전통문화연구』 3,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30) 이현종, 1962, 「조선초기 대외무역고(상, 중, 하)」, 『향토서울』 13-15, 서울시사편찬위원회(이현종, 1964, 『조선전기 대외교섭사연구』, 한국문화원에 「對倭貿易」이란 제목으로 所收); 이현종, 1982, 「對倭貿易」, 『한국사론』 11, 국사편찬위원회; 김병하, 1969, 『조선전기 대일 무역 연구』, 한국연구원; 하우봉, 1994, 「조선전기의 대일관계」,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김동철, 1996, 「국제교역의 발달과 마

무역왜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피고, 무역왜인을 國王, 巨賈, 豪族, 受職・受圖書人, 기타 商倭로 나누어 이들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김병하는 저서인 『朝鮮前期 對日貿易 研究』에서 대일무역을 교린적 성격과 조공적 성격, 상업적 성격 등 세 측면으로 설명하고, 그 성격의 변화를 고찰했다. 특히 「조일무역과 대마도」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무역에서 대마도의 역할을 규명한 점이 주목된다.

김동철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일본과의 무역을 조공무역과 공무역, 사무역으로 나누어 개관하고, 16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은 중국의 비단·도자기를 일본에, 일본의 구리·은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올렸다고 보았다. 이정수는 조선전기 조일무역을 교역물품, 무역주도권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고, 면포의 수요 급증과 은의 생산, 중국과의 관계, 국내 유통경제의 발전 등이 조일무역에 끼친 영향을 다루었으며, 정지연은 조선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 속에서 支持・운송・밀무역 등 조일무역으로 인한 폐단 등 무역형태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한문중은 1392~1591년까지 200여 년 동안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왜인들의 통교를 정리・분석하여 대마도의 통교가 49.3%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대마도주・도주의 일족・仁位宗氏・島主管下 및 기타로 나누어서 통교의 추이와 특징, 교역품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³¹⁾

한편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는 국내학자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무역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었고, 사에키 고지와 아라키 가즈노리는 대마 宗씨와 협력관계에 있었던 博多商人이 조선 통교 중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³²⁾

참,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이정수, 1998,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부대사학』 22, 부산대학교 사학회; 정지연, 2006,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31) 한문중, 1995, 「조선전기 對馬島の 통교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3, 한일관계사학회

32)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佐伯弘次 지음, 손승철・김강일 편역, 2010,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荒木和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전기 조일 간의 무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사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고, 무역의 주체로서 대마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역의 주체로서 대마도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와 양국 간의 무역형태 즉 公貿易 · 私貿易 · 密貿易 등의 명확한 개념정리와 무역의 규모, 물품의 유통과정, 교역이 조선의 경제사회에 끼친 영향 등의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대마도와 조선의 무역 내용은 조선의 대마도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대마도의 대조선 교섭자세, 즉 대조선 외교의 본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인 만큼 중요한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6_ 사절의 왕래와 문화교류 및 상호인식

왜구의 문제 해결에 고심했던 조선은 室町幕府 이외에 대마도를 비롯한 지방 호족에게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현중은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對倭使節을 파견목적과 구성, 파견지역, 往還路, 사절의 종류와 성격, 접대, 사절의 왕래에 따른 영향 등을 나누어서 고찰한 것에 대하여, 한문종의 연구는 대마도에 파견한 사절에 한정하여 접근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파견한 사행의 종류와 그것들의 연원, 임무와 역할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조선과 대마도 간의 외교관계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³³⁾

조선전기 대표적인 對對馬島 使節은 1418년(태종 18)부터 1510년(중종 5)까지 9회에 걸쳐 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파견한 敬差官이다. 한문종은 대마도 경차관의 역할에 주목하여, 조선이 對地方使臣이었던 경차관을³⁴⁾ 대마도에 파견한 것은 대마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대마도를 조선의 외교질서 속

2007, 「15·16世紀對馬の經濟と朝鮮貿易」, 『전북사학』 30, 전북사학회

33) 李鉉淙, 1964, 「조선전기 對倭使節派遣의 種別과 意義」, 『사학연구』 17, 한국사학회(이현중, 1964, 『조선전기대일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에 「對倭使節派遣」이란 제목으로 所收); 한문종, 1992, 「조선전기의 대마도경차관」, 『전북사학』 15, 전북사학회; 한문종, 1996, 앞의 책

34) 鄭鉉在, 1979, 「조선초기의 敬差官에 대하여」, 『慶北史學』 1, 慶北史學會

에 편입시키려 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대마도 경차관의 파견목적이 왜인에 대한 통제와 문인제도의 정착, 계해약조와 孤草島釣魚禁約의 준수와 위반자의 처벌요청, 그리고 삼포 항거왜인의 쇠환 등 당시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발생하였던 외교현안을 처리하고, 더불어 島主와 島主家에 대한 致祭와 問慰라는 점에서 볼 때 조선후기 問慰行³⁵⁾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通信官·回禮使·報聘使·賜物管押使·體察使·敬差官·致尊致慰官·宣慰使·垂問使 등 조선이 대마도에 파견한 사절의 명칭이 다양한데도, 논의가 경차관에 한정되어 있고, 내용도 사절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조선이 대마도에 파견한 다양한 명칭을 가진 사절들의 성격을 충분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하우봉은 조선전기의 대마도 인식을 당시의 통교체제와 관련지어 살펴보고, 그 특징을 ① 對馬故土意識, ② 對馬藩屏意識, ③ 對馬區分意識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의 대마도 인식은 고대 이래의 역사적인 유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³⁶⁾

이상을 통해서 조선과 대마도 간의 사절 왕래 및 상호인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주도되었고 그 내용도 극히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마도에서 조선에 파견된 사절이 주로 무역을 목적으로 도항해온 통교자로서만 다루어지면서, 대마도 사절의 외교적인 성격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경차관을 제외하고는 조선에서 대마도에 파견된 사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각 사절에 참여한 인물 개개인에 관한 연구도 李藝³⁷⁾를 제외

35) 조선후기 문위행의 성격에 대해서는 홍성덕, 1990,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韓國學報』 59, 일지사) 참조.

36) 하우봉, 1996, 「한국인의 대마도인식」,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하우봉, 2006, 「이예의 일본인식」, 『통신사 이예와 한일관계』, 새로운 사람들;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7) 외교 인물 이예에 관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한문중, 1989, 「조선초기 이예의 대일 교섭 활동에 대하여」, 『전북사학』 11·12, 전북사학회; 한문중, 1996, 「조선전기

하고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며, 조선전기 대마도인들의 조선 인식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마도에서 조선에 파견된 세견선이나 특송선의 외교적 성격에 대한 규명, 각 사절의 개별적인 성격 파악과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 외교의례와 무역에 참여하면서 조선인을 접촉했던 대마도인들의 조선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해양교류와 대마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최근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마도의 영유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양과 해양교류의 측면에서 대마도를 다루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와 대마도연구센터에서는 ‘한국해양연구총서’ 시리즈로 2007년에는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를,³⁸⁾ 2010년에는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을 간행하였다.³⁹⁾

한편 조선전기 조일 간의 경계인식과 어업갈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일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문중, 2010, 「조선초기 외교관 李藝」, 『외교』 95, 한국외교협회; 지두환, 1992, 「세종대 대일정책과 이에의 대일활동」, 『한국문화연구』 5,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이명훈 편, 2005, 『李藝의 使命-나는 조선의 통신사로소이다』, 새로운 사람들;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6, 『통신사 李藝와 한일관계』, 새로운 사람들; 박현모·이명훈 외, 2010,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예』, 서해문집; 中田稔, 2007, 「丁未年(1907) 刊『鶴坡先生實紀』の検討-鶴城李氏家門における始祖李藝の形成」, 『朝鮮學報』 202, 朝鮮學會; 中田稔, 2008, 「朝鮮初期における朝鮮人官人の對日活動-世宗までの李藝を中心に」, 『學校教育學研究論集』 17, 東京學藝大學院聯合學校教育學研究科; 中田稔, 2010, 「鶴坡李藝, そして鶴城李氏家門之〈記憶〉」, 嶋村初吉 編著, 『玄海灘を越えた朝鮮外交官李藝』, 明石書店

38) 신명호, 「조선초기 해양개척과 어장개방」; 최영하, 「조선전기 남해안의 어장과 어중」; 한임선, 「조선초기 염업발전과 대마왜인」; 김기훈, 「조선전기 남해안 조어왜인과 해양방어」; 김문기, 「嘉靖년간의 외구와 江南 海防論」; 이근우, 「대마도의 지리와 역사」; 심민정, 「조선전기 대마도인 어염업과 교류양상」; 박화진, 「일본 근세 어촌사회의 성립과 변모」, 이상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2007,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 국학자료원

39) 총 6개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 논문의 저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정효운, 「대마도와 고대한일관계사」; 이근우, 「통일신라시대의 對馬島」; 이영,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대마도」; 하우봉, 「조선 전기의 부산과 대마도」; 정성일, 「조선 후기 부산과 대마도」; 현명철, 「幕末・明治초기 對馬州 정치사 개관」, 이상 2010,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국학자료원

주제인 孤草島釣魚禁約에 대해서는 長節子⁴⁰⁾ · 한문중⁴¹⁾의 연구가 주목된다. 한문중은 조선전기 조일 간의 어업분쟁을 다루면서 왜인들의 고초도 조어금약의 위반실태와 처리내용을 분석하고, 조선전기 한일 간의 어업분쟁의 실태와 처리방법을 고찰하였다. 조선 정부가 孤草島釣魚禁約을 통해서 왜인들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주고 조선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왜구의 재발 방지와, 해양권 강화라는 목적이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이들 작업은 해양과 해양교류라는 측면에서 대마도에 초점을 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Ⅲ. 임진왜란기 대마도 연구

대마도는 1443년 계해약조 이후 대조선 무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15세기 중반에는 조선에서 문인발급권을 위임받아 대조선 통교권을 독점하는 등 조일관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따라서 대마도에 임진왜란의 발발,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은 섬의 생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복속 교섭 명령이 있었을 때 대마도주 宗씨는 그것을 바꿔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을 정도로 전쟁예방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대마도주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휘하에서 대마도의

40) 長節子, 1979, 「孤草島釣魚研究－孤草島の位置を中心にして」, 『朝鮮學報』 91(長節子, 2002,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所收); 長節子, 1990, 「孤草島釣魚の變容」, 『年報朝鮮學』 2,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長節子, 1990, 「孤草島釣魚禁約」, 『海と列島文化』 3, 小學館; 長節子, 2002b, 앞의 책

41) 한문중, 2012, 「조선전기 조일간 어업분쟁과 해양권의 강화」,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무사 3,000명을 동원하여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서야 했으며, 임진왜란이 종결된 후에는 다시 대조선 강화교섭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알곡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선 침략의 선봉에 앞장선 '원죄'가 있었던 대마도는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피로인의 쇄환 등을 통해서 조선과 강화교섭에 임했고, 1607년 회담겸쇄환사의 도일과 己酉約條의 체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선과의 국교재개와 무역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듯 임진왜란의 전개과정과⁴²⁾ 이후 양국의 국교재개 과정에서 대마도가 차지하는 비중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역할은 임진왜란 중에 진행된 일·명 강화교섭, 국교재개과정, 회담겸쇄환사의 파견, 피로인 연구를 다룬 논저 등에서 단편적인 언급에 그칠 뿐이었다. 임진왜란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대조선 교섭을 명령받았고,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침략군의 선봉에 섰으며, 침략군이 대마도에 머물렀다가 조선에 건너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임진왜란 시기 대마도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 대조선 교섭 업무의 당사자로서의 위치에서 대마도를 고찰한 연구는 민덕기·尹裕淑·다나카 도시아키[田中敏昭]·김문자의 연구가 있다.⁴³⁾ 尹裕淑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선언으로 시작된 대조

42) 기존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연구는 박재광, 2005, 「壬辰倭亂 연구의 現況과 課題」,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北島万次, 1990,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檢討」,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노영구, 2010, 「壬辰倭亂의 學說史的 검토」,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한일관계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논문도 적거니와 대마도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도 거의 없다.

43) 민덕기, 1987,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 講和交渉과 대마도(1)－교린·기미질서의 再編을 中心으로」, 『사학연구』 39; 민덕기, 1989,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 講和交渉과 대마도(2)－교린·기미질서의 再編을 中心으로」, 『사학연구』 40; 윤유숙, 2006, 「임진왜란 발발전 한일교섭의 실태」,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7, 한국일본어문학회; 田中敏昭, 1999, 「풍신정권의 일본통합과 대마도주 宗氏의 조선교섭」, 『동서사학』 5, 동서사학회; 김문자, 1995, 「島井宗室과 1590년 通信使 派遣問題에 대하여」, 『祥明史學』 3·4, 상명사학회; 김문자, 2010, 「임진

선 정책이 대마도의 외교교섭을 거친 결과 1590년 통신사로 귀착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나카 도시아키는 왜란 직전의 대마도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조선 교섭을, 민덕기는 왜란 직후부터 강화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김문자는 1590년 통신사 파견문제를 둘러싸고 대마도 宗씨와 연결된 博多상인 宗室의 조선 도해 배경과 그가 상인으로서 朝鮮·對馬島·豊臣政權의 중간 입장에서 수행했던 외교적인 역할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대마도주의 전쟁 참여, 전란 중 대마도의 역할,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도하는 강화교섭 과정에서의 관련성 등을 비롯한 임진왜란기 대마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조선 침략군이 대마도에 머무는 동안 실시된 1590년 통신사와 1596년 강화교섭을 위해 책봉사가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대마도주 宗씨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는 조선 정부에 통신사의 동반을 권유하는 등 전쟁 종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 이 와중에서 수행된 대마도의 역할 등도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진왜란이 종결되면서 조선에서는 전후처리와 일본과의 강화교섭이 급선무였다면, 일본 徳川政權과 대마도로서는 조선과의 강화교섭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금을 둘러싼 당시 동아시아 국제상황과 자국 내 정치 상황 속에서 두 나라는 국교재개를 위한 강화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대마도에게 조일 국교재개는 自藩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으므로, 幕府의 지시로 강화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란 당시 잡혀간 피로조선인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피로인의 송환과 대마도의 역할을 밝힌 연구로는 나이토 순포[内藤雋輔], 요네타니 히토시, 김문자, 민덕기의 연구가 있다.⁴⁴⁾ 김문자, 민덕기, 요네타니

왜란기의 조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동아시아의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 44) 内藤雋輔, 1976, 『文祿・慶長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김문자, 2004, 「임진·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 한국중앙사학회; 김문자, 2003, 「16~17세기 조일 관계에 있어서의 피로인(被虜人) 귀환-특히 여

히토시의 연구는 조선 정부의 피로인 송환정책이나 송환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정착한 피로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일본 측 연구자인 나이토 슌포의 연구는 임란기 피로인 연구를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도 이들 연구는 피로인 송환에서 대마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란 전후의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 나아가서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성립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사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검토뿐 아니라 대마도를 통한 임진왜란의 검토 그리고 왜란이 종결된 이후 피로인의 송환 및 국교재개를 위한 강화교섭 과정에서 대마도의 역할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조선후기 대마도 연구

1. 己酉約條와 조일외교체제의 재편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교섭재개 과정 중 대마도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직접적인 관여를 주장하는 의견으로 크게 구별된다. 홍성덕은⁴⁵⁾ 1600년 9월 세키가하라 전투를

성의 경우, 『상명사학』 8, 상명사학회; 민덕기, 2004,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귀환과 잔류로의 길」,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민덕기, 2005, 「임진왜란 중에 납치된 조선인 문제－被虜人 규모와 기존 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米谷均, 2000, 「17세기 日朝관계에서의 피로인의 송환－惟政의 在日쇄환활동을 중심으로」, 『사명당과 유정』, 지식산업사

45) 홍성덕, 1995, 「임진왜란 직후 일본의 對朝鮮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 한

기점으로 막부의 대조선 강화교섭이 차별화된다고 보았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권력 장악은 대조선 강화교섭에 변화를 가져왔고, 교섭과정에서 도요토미세력의大名들이 배제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양국관계를 규정한 것은 1609년에 체결된 己酉約條다. 일반적으로 기유약조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전통적인 교린관계가 붕괴되기까지 조선후기 조일 외교관계의 가장 기본 틀로 설명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유약조를 임진왜란 이후 조일 국교재개의 출발점으로 설명하면서도, 조선전기 대마도주와 맺어온 약조(癸亥·壬申·丁未)들의 계승·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조선후기 대일정책의 근간으로 기유약조를 설명하면서도 약조 체결 주체가 대마도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유약조를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무역상의 규정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⁴⁶⁾ 이러한 주장은 ‘사적’ 통교관계를 토대로 전개된 두 나라의 국교는 자연히 대마도에 의해서 유리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나아가 국서개찬으로 발전하였다는 다시로 가즈이의 논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덕기는 “1609년 기유약조는 일반적으로 조일 간의 교역관계가 재개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羈縻秩序 재편정책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고, 손승철 역시 “1609년 대마도와 기유약조를

일관계사학회

- 46)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田中健夫, 1696,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田代和生, 1981, 『日朝關係の再開と對馬』, 『日朝通交貿易史研究』; ロナルド・トビ, 速水融外 譯, 1990,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創文社. 田代和生은 기유약조가 조선후기 대일외교체제의 기본형태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시기 일본의 대조선 외교교섭은 막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마도의 자의적 행위로 평가하여, 기유약조를 대마도주 宗義智와 조선 사이에 맺어진 통교무역상의 제 규정으로 파악함으로써, 17세기 초반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조선전기 이래 계승되어온 대마도주와 조선의 이른바 ‘私的’ 통교관계를 기조로 한 것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로널드 토비는 기유약조의 체결은 德川幕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유약조를 국교회복으로 평가하는 것은 약조의 의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두 개의 주권국가 간의 ‘條約關係’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맺어 臣下의 禮를 취하는 교역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미관계에 의한 교린체제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여 기유약조를 조선의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⁴⁷⁾ 홍성덕은⁴⁸⁾ 민덕기와 손승철의 논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유약조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그는 기유약조 체결 당시 조선의 대일정책이 기본적으로 조선전기와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약조에 대한 평가는 체결과정에 이르는 조선의 대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기유약조에 대한 입장은 ‘私的’인 것이 아니며, 국가 간의 관계를 전제한 대마도주와의 통제규정이며, 기유약조 체결 이후 막부가 조선에 사절을 요청했을 때 ‘幕府將軍의 국서’가 파견의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약조 체결 당시 조선 정부의 대마도와의 관계설정은 조선 정부 ↔ 幕府將軍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양국 간에 기유약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나누어지는 것은 관계사의 관점이 아니라 자국사의 입장에 함몰되어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에게 대일관계는 통제를 위한 외교적 입장이 주였다면, 막부를 대리하여 조선과의 교섭에 관여하는 대마도의 입장에서는 무역적인 이익, 즉 통교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국의 정치체제의 차이도 염두에 두면서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47) 閔德基, 1987,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講和交渉과 對馬島(1)」, 『史學研究』 39; 孫承詒, 1994, 「임란 직후 중화적 교린체제의 부활」,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48) 홍성덕은 회담검쇄환사의 파견에 앞서 마련된 대일정책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르면, 당시 일본이 다원적 통교체제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변사의 회답에 조선의 대일외교의 상대자는 일본 江戸幕府 정권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조선 정부는 전기적 형태의 다원적 통교체제를 잘못된 규례로 규정하고 막부장군이 제도를 통합하여 호령이 한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한 정책으로의 변화였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에 조선이 대마도를 상대로 조선전기와 같은 형식의 약조를 체결한 것은 ‘기미관계에 의한 교린체제’, 즉 대마도를 통한 막부정책이라는 조선의 대일정책에 기인한 것일 뿐, 조선전기와 같이 다원통교책의 일원으로서 대마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홍성덕, 1997, 『17세기 조·일 외교사행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성덕, 2004, 「조선 후기 한일외교사행 인식과 정례화」, 『日本思想』 7, 日本思想史學會).

조선후기 조일외교체제에 대한 논의는 ‘교린’관계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논의로 손승철과 민덕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⁴⁹⁾ 손승철은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막부에 대한 대등교린과 대마도에 대한 기미교린의 이중적 구조로 재편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전기에는 일본 막부가 명의 책봉을 받았으므로 조일 간에 이른바 ‘중화적 교린체제’가 성립한 반면, 후기에는 중국(청)을 배제한 ‘탈중화적 교린체제’로 변화했다고 파악했다. 민덕기 역시 조선후기 대일관계를 막부에 대한 ‘적례적 교린’과 대마도에 대한 ‘기미적 교린’의 이중적 구조로 파악했다. 그러나 손승철과 달리 조선후기 대일관계 역시 책봉체제와 무관한 독자적 대외정책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홍성덕은⁵⁰⁾ 기유약조를 검토하면서 당초 기유약조를 통해 규정된 교린체제는 막부에 대한 대등교린과 대마도에 대한 기미교린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마도를 매개로 한 막부정책으로서 ‘기미적 교린’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서개작 발각 사건(柳川事件) 이후 ‘대군외교체제’가 확립되고, 1636년 정식으로 통신사가 파견되면서부터 조일관계는 새로운 대일관계의 형성·재편과정을 맞이하게 된다. 임진왜란 직후 대마도주 宗氏는 조선 무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서의 개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조선과의 무역을 부활시켰지만, 교섭상의 무리가 柳川事件으로 모순을 드러냈다. 그 결과 宗氏의 부정행위가 막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막부는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1635년 以酤庵輪番制를 만들고, 京都 五山の 승려를 대마도의 以酤庵에 파견하여 조선과의 외교를 감시하게 하였으므로, 대마도가 양국 사이의 사안을 사사롭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마도는 幕藩體制에 편입되고, 도주 소 요시토시는 幕府로부터 宗四位下侍從對馬守로 임명받았다. 대신 조선 정부의 수도서인으로 세견선, 세사미두의 지원과 왜관무

49) 손승철, 1990, 『朝鮮後期 對日政策 성격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승철, 1994, 「임란 직후 중화적 교린체제의 부활」,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민덕기, 1994,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稲田大學出版部

50) 주 48)과 동일

역을 통한 이익을 보장받음으로써 조선후기 대일외교 내지 통교체제는 전기의 다원적 내지 이원적인 형태가 청산되고 막부 ↔ 대마도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대마도의 조선 외교 독점성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지만, 막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놓이게 되면서 그 독자성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는 대마도의 대조선 외교가 기본적으로 막부의 감독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조선후기 조일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무역

조선전기 이래 대마도는 섬의 생존 자체를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해왔다. 1635년 국서개작 폭로사건 이후 ‘대군외교체제’가 확립되면서 대마도는 막부의 감독하에 대조선 교섭 창구를 자임했고, 대신 16세기 이래로 조선 통교권을 가진 대마도가 막부의 승인하에 독점적으로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장받았다. 조선 후기 조선과 대마도 간의 무역에 관한 연구는 일본 측 연구자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시로 가즈이의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1981)를 들 수 있다. 그는 조선과 대마도 사료의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양국의 무역방법·취급품목·대마도 선박의 도항실태·무역품의 수량적 고찰, 왜관의 기능 등을 밝힘으로써 이론적·실증적인 면에서 무역사 연구의 수준을 현저하게 높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선과 사무역을 통한 약재의 교역, 조선으로의 은 수출을 둘러싸고 에도막부의 정치고문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대마도의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간의 논쟁을 검토하여, 대마도의 경제사상 형성에 관련된 ‘芳洲理論’의 구축과 정교 역할 등을 검토하였다.⁵¹⁾

이 외에도 쓰루타 게이[鶴田啓]·모리 신이치로[森晋一郎]·오노미치 히로시[尾道博]·나카무라 다다시[中村實] 등의 성과가 주목된다.⁵²⁾ 특히 모리

51) 田代和生, 1999, 『江戸時代朝鮮藥材調査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田代和生, 2007,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52) 鶴田啓, 1993, 『天保期の對馬藩財政と日朝貿易』, 『論集きんせい』 8; 森晋一郎,

신이치로는 사무역의 쇠퇴로 18세기 후반부터 대마도는 知行을 대신하여 막부에서 매년 1만 2,000냥이라는 거액의 원조금을 받게 되는데, ‘사무역 단절’은 대마도가 거짓으로 꾸민 술책으로, 대마도의 사무역은 쇠퇴했지만, 메이지정부가 왜관을 ‘접수’할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밝혔다.

국내 연구는 1960년대 李鉉淙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도사적 고찰이 시초이며,⁵³⁾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이는 연구자들의 대마도 증가문서의 활용이 늘어나고, 새로운 국내 사료의 발굴과 분석작업이 진행된 결과로 정성일, 김동철, 오성⁵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동철은 조선 국내에서 공작미의 징수를 비롯하여 공작미의 왜관반입을 둘러싼 부정의 실태, 조선후기 조선의 수출품인 牛皮의 유통구조 등을 밝혔다. 그리고 對日 私貿易을 주도한 조선의 ‘東萊商人’의 활동을 추적하여 동래상인의 구성과 성격을 해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성일은 『朝鮮後期 對日貿易』(신서원, 2000)에서 조일무역의 범주·조선상인의 규모와 활동·대마도의 사무역 이윤과 대마도 재정의 관계, 조선인삼의 수출문제·무역품을 둘러싼 조일 간의 인식 차이, 計量經濟學에 따른 조일사무역의 분석 등을 연구함으로써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독자적인 성과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과 대마도의 교역도 18세기 후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사무역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그의 연구는 그간에 이루어졌던 국내 연구자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마도 증가기록을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종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다시로 가즈이의 조일무역의 개념과 범주구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1986,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史の展開－安永年間の私貿易を中心として」, 『史學』 56-3, 三田史學會; 尾道博, 1989, 「對馬藩による町人からの貿易資金調達の方法について」, 『商經學會誌』 8-1, 日本文理學會; 中村質, 2000, 『近世對外交渉史論』, 吉川弘文館

53) 이현중, 1964, 「기유약조성립시말과 세전선수에 대하여」, 『항도부산』 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54) 吳星, 1989, 『朝鮮後期 商人研究』, 一潮閣; 김동철, 1993, 「17·18세기 對日貿易에서의 公作米문제」, 『港都釜山』 1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정성일, 2000, 『朝鮮後期對日貿易』, 新書苑

범주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무역 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공작미제의 성립과 포획의 성행을 다룬 김동철의 연구와, 17~18세기에 걸쳐 누적되어온 공무역의 폐해를 다룬 이승민의 연구가 있으며,⁵⁵⁾ 최근에는 求請과 求貿 등을 통한 교역실태뿐 아니라 물품의 사례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조선과 대마도 간에 이루어졌던 무역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주목된다.⁵⁶⁾ 정성일은 조선후기 부산 왜관의 생생한 모습을 『館守日記』를 통하여 복원하고, 왜관의 개시에 참여하는 동래상인의 실상을 추적하였다.⁵⁷⁾ 이러한 사례연구의 증가는 국내 연구자의 대마도 종가문서 해독능력의 향상과 『倭人求請謄錄』, 『典客司別謄錄』⁵⁸⁾과 같은 국내 사료의 발굴 및 번역작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조일 외교와 무역의 현장 실무자인 왜학역관의 임무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 축재 및 재투자까지를 검토한 양홍숙의 연구는⁵⁹⁾ 사무역에 투입된 자본의 흐름을 규명한 연구이며, 정성일은 조선후기 어민과 상인의 해상활동을 검토함으로써 사무역에 대해 사회사적 시각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⁶⁰⁾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5) 김동철, 1993, 「17·18世紀 對日公貿易에서의 公貿易 문제」, 『항도부산』 1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이승민, 2005, 「조선후기 대일무역상의 폐해와 己巳約條(1809)의 체결」, 『한일관계사연구』 22, 한일관계사학회

56) 鄭景柱, 2004,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朝鮮後期 對日貿易 事例 紹介」, 『貿易評論』 창간호; 김동철, 2004, 「왜인구청등록(1) 해제」, 『왜인구청등록(1)』; 이승민, 2010, 「조선후기 對馬島 求請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김경미, 2008, 「17~18세기 對日 외교·교역과 매[鷹]」, 『역사와 세계』 34; 양홍숙, 2009,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민, 2012, 「조선후기 對馬島와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김강일, 2011, 「倭館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對日 求請物品－「朝鮮より所望物集書」를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34, 일본사학회

57) 정성일, 2010, 「조선후기 부산과 대마도」,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국학자료원

58)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역, 2004~2006, 『국역왜인구청등록』;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역, 『國譯典客司別謄錄』, 2009~2011

59) 양홍숙, 1998,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부경역사연구소

60) 정성일, 2002, 「漂流記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漂人領來謄錄〉과 〈漂民被仰上帳〉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9, 국사편찬위원회

3_ 왜관과 약조

조선후기 왜관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의 공간일 뿐 아니라 500명 이상의 일본인·대마도인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었다. 왜관에서는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마도에서 건너온 관리와 상인들이 장기간 체류하였던 만큼 대마도 내지 대마도인을 빼고서는 왜관을 이야기할 수 없다.

왜관은 근세 조일관계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일찍부터 그 중요성에 관심이 모아졌고, 왜관을 무대로 전개된 외교·무역활동에 대한 제도사적 해명은 이론면·실증면에서 높은 수준이에 도달하였다. 왜관에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인 20세기 초반부터 일본 연구자가 시작하였으며,⁶¹⁾ 국내 연구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초기 연구가 진행된 1960년대의 특징은⁶²⁾ 국내사료를 토대로 왜관의 변천·구조, 조선의 왜관 원역, 禁制 등 왜관을 둘러싼 조선 측의 제 규정을 제도사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일본 측 연구자인 오사 마사노리[長正統]는 1960년대 후반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倭館記錄’을 통하여 대마의 왜관원역의 구성·담당업무·집무기록의 현존 정황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왜관연구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⁶³⁾ 또한 연구의 다양화는 왜관에 관한 상당한 연구 축적을 가져왔다. 金義煥은 조선시대 사료를 활용하여 조선전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왜관과 그 변천을 개관하고, 양국의 왜관업무 종사자의

61) 왜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사는 田代和生, 『日朝通交貿易史』(創文社, 1981)의 서문과 윤유숙,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경인문화사, 2005), 『近世日朝通交と倭館』(岩田書院, 2011)에 잘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마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62) 김용욱, 1962, 「釜山倭館考」, 『韓日文化』 1-2, 부산대학일문화연구소; 이완영, 1963, 「東萊府 및 倭館의 行政小考」, 『港都釜山』 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崔永喜, 1970, 「釜山倭館의 職官考」, 『郷土文化』 3, 부산향토문화연구회

63) 長正統, 1968,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4

구성과 역할을 검토하였다.⁶⁴⁾ 1980년대에 들어와 다시로 가즈이는 기존의 일본 측 연구 성과를 종합, 발전시킨 형태로 근세왜관의 변천과 이전, 왜관의 규모와 경관, 왜관업무에 종사한 대마도인 역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하였다.⁶⁵⁾ 그는 왜관을 쇄국시대의 일본마을[日本町]로 규정하였다.⁶⁶⁾ 그의 연구는 대마도 종가문서를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왜관 연구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왜관을 일본마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왜관 운영의 주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1990년대의 왜관 연구는 종래의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왜관 그 자체와 관련된 특정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 왜관이 개재된 통교무역상의 문제, 양국인 간의 인식 등으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다. 아라노 야스노리와 쓰루타 게이는 초량으로의 왜관 이전교섭을 17세기 중반 발생한 밀무역사건 발각 이후 왜관무역에 대한 일본 측의 통제강화 결과로서 규정하였다.⁶⁷⁾ 장순순·윤용출·윤유숙은⁶⁸⁾ 왜관 이관문제를 단독 주제로 다루고, 왜관 이전을 조선의 대일통제강화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64) 金義煥, 1977, 「李朝時代における釜山倭館の起源と變遷」, 『日本文化史研究』 2, 帝塚山短期大學日本文化史學會; 金義煥, 1983, 「釜山倭館の職官構造とその機能について」, 『朝鮮學報』 108; 金義煥, 1988, 「釜山倭館貿易の研究—15世紀から17世紀にかけての貿易形態を中心に」, 『朝鮮學報』 127

65) 田代和生, 1981, 「草梁倭館の設置と機能」,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66) 田代和生, 1992, 「日朝交流と倭館」, 『日本の近世』 6, 中央公論社; 田代和生, 1993, 2, 「鎖國時代の日本町—朝鮮半島の倭館」, 『月刊 しにか』; 田代和生, 1996, 「近世倭館の食生活」, 『季刊ウエスタ』 26; 田代和生, 1999, 『江戸時代朝鮮藥材調査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田代和生, 2002,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藝春秋(정성일 역, 『왜관』, 2005); 田代和生, 2011, 『新・倭館: 鎖國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67) 荒野泰典, 1992, 「小左衛門と金左衛門—地域と海禁をめぐる斷章」, 『海と列島文化』 10, 小學館; 鶴田啓, 2003, 「釜山倭館」, 荒野泰典 編, 『江戸幕府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68) 장순순, 1996, 「조선후기 왜관의 설치와 이관논의」, 『한일관계사연구』 5, 한일관계사연구회; 윤용출, 1999, 「17세기중엽 두모포왜관의 이전교섭」, 『한국민족문화』 13,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吉川弘文館; 尹裕淑, 2003, 「17世紀における日朝間の倭館移轉交渉」, 『史觀』 149

2000년 이후 왜관 연구에서 국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목되는 현상은 왜관과 대마도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⁶⁹⁾ 연구 내용이 보다 진전되었으며, 심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통제의 공간인 왜관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대마도인과 조선인의 교류, 분쟁에 관한 연구, 왜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일본 문화와 이를 향유하는 조선인, 조선의 지역사회,⁷⁰⁾ 왜관에 거주하는 대마도인의 생활과 마찰에서 비롯한 사회문제,⁷¹⁾ 동래부가 왜관을 바라보는 인식, 왜관과의 소통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⁷²⁾ 이러한 연구들은 왜관이 조선에 건너온 대마도인의 통제를 목적으로

- 69) 장순순, 2001,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유숙, 2002, 『近世日本・朝鮮通交における約條と倭館研究』, 早稲田大學 博士學位論文; 양홍숙, 2009, 앞의 책; 허지은, 2008, 『近世 쓰시마 朝鮮語通詞의 情報蒐集과 流通』,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강일, 2012,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0) 김성진, 1998, 「부산 인근지역의 생활에 미친 부산왜관의 영향」, 『동양한문화연구』 33, 동양한문화회; 김성진, 1998, 「부산 인근지역의 생활에 미친 부산왜관의 영향」, 『인문논총』 52-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성진, 1998, 「부산 왜관과 한일간 문화교류」, 『한국문화논총』 22, 한국문화회
- 71) 손승철, 1993, 「〈倭人作拏膽錄〉을 통하여 본 왜관」, 『항도부산』 10(『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에 재수록); 제임스 루이스, 1997, 「부산왜관을 중심으로 한 조·일교류-交好事件에 나타난 권력-문화의 갈등」, 『정신문화연구』 66; 이훈, 200, 「1836년, 南膺中の 蘭入 사건 취급과 近世 倭館」, 『한일관계사연구』 21, 한일관계사학회; 김강일, 2008 「조선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分類紀事大綱』 25 「風說之事」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9; 김강일, 2010, 「난출, 조선의 고민과 그 대책」,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장순순, 2008,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조일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허지은, 2008, 앞의 책; 김동철, 2010, 「조선후기 통제와 교류의 장소, 부산 왜관」, 『한일관계사연구』 37, 한일관계사학회;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양홍숙, 2009, 앞의 책; 양홍숙, 2010, 「조선후기 왜관통제책과 동래지역민의 대응」, 『역사와 세계』 37, 부산대학교 효원사학회; 양홍숙, 「범죄」를 통해서 본 조선후기 왜관 주변 지역민의 일상과 일탈」, 『한국민족문화』 4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양홍숙, 2010, 「조선후기 왜관 운영을 위한 東萊府民의 役」 부담과 왜관 접촉」, 『민족문화논총』 4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田代和生, 2002, 앞의 책; 田代和生, 2011, 『新・倭館: 鎖國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 72) 김문식, 1995, 「18세기 전만 權以鑣의 對外認識」, 『도산학보』 4; 이훈, 「조선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兩譯 관련 「實務文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하고자 한 조선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왜관 주변의 지역민과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혀준다.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성립한 약조를 다룬 선구적인 연구로는 오사 마사노리의 연구가 있다.⁷³⁾ 이 논문에서 근세왜관을 둘러싸고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체결된 다수의 약조, 특히 1683년의 계해약조에서 路浮稅라고 불리는 밀무역 대부자금, 즉 倭債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다시로 가즈이⁷⁴⁾ 대마도의 왜관 규율을 비롯하여 통교자의 단속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했는데, 특히 계해약조의 성립 직후 元方役 설치(1683)에 따른 대마도의 사무역 통제강화에 대해서 해명하였다. 김동철⁷⁵⁾ 조선 후기 조선과 대마도 간에 발생한 밀무역의 다양한 존재양태와 밀무역에 관련된 조약 등 그 규제조치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 논문은 밀무역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왜관의 단속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다.

왜관 통제책에 관한 연구는 장순순·윤유숙·허지은의 연구가 있다.⁷⁶⁾ 장순순은 17세기 후반에 와서 조선이 일본 측의 왜관 이전 요구를 허가한 것은 대마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왜관의 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기유약조 이후 누적되어온 대일정책상의 문제점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윤유숙은 17·18세기에 조선과 대마도 간에 체결된 약조가 왜관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약조의 교섭과정·내용·의의를 검토하고, 왜관에서 발생한 양국인의 불법행위(潛商, 關出, 交奸)를 처리하는

구』 27; 양홍숙, 2008, 「17세기 두모포왜관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방관의 역할」,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최상진, 2008, 「18세기 초 동래부사 권이진의 왜관통제와 조일관계」, 『차세대한국학연구』 2,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73) 長正統, 1971, 「路浮稅考－肅宗朝癸亥約條の一考察」, 『朝鮮學報』 58

74)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75) 김동철, 1995, 「17세기 일본과의 교역·교역품에 관한 연구－密貿易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1, 국사편찬위원회

76) 장순순, 1996, 앞의 논문; 尹裕淑, 2011,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院; 허지은, 2001, 「17세기 조선의 왜관통제책과 조일관계－계해약조(1683)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5, 한일관계사학회

데 약조의 규정사항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⁷⁷⁾

그 외에도 근세 약조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성과로서 표류민송환체제의 개편을 위해 체결된 1682년의 임술약조를 교섭과정과 약조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이훈의 연구와⁷⁸⁾ 왜관에서 발생한 교간사건을 검토함으로써 양국인의 접촉 중에 발생한 갈등을 다루고, 신묘약조[交奸約條]의 체결를 다룬 金義煥·손승철·제임스 루이스·윤유숙⁷⁹⁾의 연구가 있다. 1809년의 己巳約條에 대해서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정성일·이훈·윤유숙의 연구가 있다.⁸⁰⁾ 이 외에도 왜관을 통한 정보유통과 대마도의 조선인 통사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⁸¹⁾ 최근에는 17세기 후반에 있었던 안용복의 피랍·도일 사건과 대마도의

77) 윤유숙, 2011, 위의 책

78) 이훈, 1995, 「漂流兼帶制に對する一考察－1682年漂流民順付(壬戌約條)交渉及び運用を中心に」, 『年報朝鮮學』 5

79) 金義煥, 1992, 「「倭人作拏膽錄」について」, 『日本文化史研究』 16, 帝塚山短期大學日本文化史學會; 손승철, 1993, 앞의 논문; 루이스 B. 제임스, 1997, 「釜山倭館における日・朝交流－賣春事件にみる權力・文化の相剋」, 中村實 編, 『鎖國と國際關係』, 吉川弘文館; 윤유숙, 2005,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동신사·왜관과 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80) 三宅英利, 1986,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정성일, 1991, 「易地聘禮 실시 전후 對日貿易의 동향」, 『經濟史學』 15, 경제사학회; 이훈, 2000, 「1811年の對馬易地聘禮と積弊の改善」, 『대마중가문서 제1기 조선통신사기록별책』 하, ゆまに書房; 윤유숙, 2011, 앞의 책

81)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이훈, 2009, 「조선후기 대일의교창구 관련 「실무문서」의 수량과 수록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4; 이훈, 2007, 「조선후기 동래부와 왜관의 의사소통」, 『한일관계사연구』 27, 한일관계사학회; 田代和生, 2007, 「朝鮮語通詞の育成」,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허지은, 2008, 「쓰시마(對馬島) 조선어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 『한일관계사연구』 29, 한일관계사연구회; 허지은, 2009, 「근세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정보수집경로와 내용」, 『한일관계사연구』 32, 한일관계사연구회; 허지은, 2008, 「쓰시마朝鮮語通詞 연구의 동향과 과제」, 『祥明史學』 13, 상명사학회; 허지은, 2010, 「근세 쓰시마의 바쿠후로의 정보보고와 유통」, 『한일관계사연구』 37, 한일관계사연구회; 허지은, 2008,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 『한일관계사연구』 29, 한일관계사학회; 허지은, 2010, 「쓰시마 조선어통사 小田機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통역수작』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김강일, 2008, 「조선후기 왜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9, 한일관계

역할을 규명한 연구도 있다.⁸²⁾

앞으로의 연구는 왜관에 체재하는 대마도인(일본인)의 행동양식과 양국인의 무역활동 전반을 조선과 대마도는 어떻게 통제·관리하고 있었는가, 왜관 건축물의 유지·관리, 근세 양국의 통교무역은 어떠한 원칙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는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4_ 사절의 왕래와 상호인식

조선후기 조선 정부가 막부에 파견한 통신사가 조일 양국의 선린우호를 상징하는 최고 통치자 간의 사절이라면, 동래부와 대마도 간을 왕래하면서 양국의 외교실무를 담당하면서 보다 일상적으로 왕래했던 사절로는 문위행·연례송사·차왜가 있다.

문위행은 예조참의의 명의로 대마도로 파견하였던 사절로 주로 대마도와 의 외교현안을 다루는 실무적인 사행이었다. 문위행[問慰譯官行·譯官使·問慰譯官]은 그 우두머리가 ‘譯官’이고, 대마도주의 還島問慰를 그 임무로 대마도에 파견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행이다.

문위행에 대한 연구는 다시로 가즈이⁸³⁾ 등이 약간 언급하였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이훈과 홍성덕이 개괄적인 검토를⁸⁴⁾ 하였을 뿐이다.⁸⁵⁾ 홍

사학회

82) 장순순, 2012,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동북아 역사논총』 37, 동북아역사재단; 장순순, 2012, 「17세기 조일관계와 ‘울릉도 쟁계」, 『역사와 경계』 84, 부산경남사학회

83) 田代和生, 1989, 「近世の日朝關係と對馬」,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6, 朝鮮史研究會; 田代和生, 1979, 「對馬藩と倭館貿易」, 『江戸時代と朝鮮通信使』, 毎日新聞社; 田代和生, 1981, 「寛永六年 對馬使節の朝鮮國「御上京之時毎日記」とその背景」(一)(二), 『朝鮮學報』 96, 98; 田中健夫 外, 1980, 『前近代對外關係史の綜合的研究』, 昭和55年度 文部省科學研究成果報告書 課題番號 451064

84) 홍성덕, 1997, 앞의 책; 이훈, 1991, 「朝鮮譯官使와 對馬島」, 『朝鮮後期 韓日關係史學術講演會 發表要旨』, 韓國史學會; 仲尾宏, 1995, 「朝鮮渡海使と對馬藩」, 『爪生』 17

85) 홍성덕, 1990, 「朝鮮後期「問慰行」에 대하여」, 『韓國學報』 59, 일지사; 홍성덕,

성덕은 문위행 파견이 조선 정부가 1636년 국서개작 폭로사건 이후 일본의 대 조선 외교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통신사와 함께 대마도와 江戸幕府를 회유하여 조일 간의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다시로 가즈이는⁸⁶⁾ 1721년 문위행 일행의 밀무역과 1708년 문위행의 수행임무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문위행의 외교적 능력을 검증한 연구를 내놓았다.

문위행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대일관계에서 대마도의 위치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그리고 문위행은 1811년 이후 대막부 사절인 통신사의 파견이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시기가 바로 근대로 이행하는, 일제에 강점화되기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문위행 연구는 근대 이후 한국사를 접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에서 조선에 파견된 외교사절로는 정례사절인 年例送使와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파견된 임시사절인 差倭가 있다. 연례송사는 다시로 가즈이·정성일 등이 조일무역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설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差倭에 관해서는 홍성덕·이훈·이해진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홍성덕은 차왜의 종류와 구성 인원, 파견 목적, 조선 도해 실태, 조선 측의 접대 의례 등을 분석하여 외교사행으로 정례화해가는 과정을 검토하였고, 이훈은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오는 표차왜의 성립과 도항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해진은 재판차왜의 성립과 조선의 경제적 대응에 관해서 고찰하였다.⁸⁷⁾ 홍성덕은 조선 정부가 1635년부터 차왜를 외교사행으로 접대한 이유에 대하여

1999,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11, 한일관계사학회; 홍성덕, 2000, 「조선후기 대일외교사절 문위행 연구」, 『국사관논총』 93, 역사편찬위원회

86) 田代和生, 1994, 「渡海譯官使の密貿易－對馬藩「潛商議論」の背景」, 『朝鮮學報』 150, 朝鮮學會

87) 홍성덕, 1997, 앞의 책; 이훈, 1991, 「朝鮮後期 對馬島 漂流民 送還과 對日關係」, 『국사관논총』 26, 국사편찬위원회; 이해진, 1998, 『17世紀 後半 朝日外交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대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이 국서개작 폭로사건 이후 대마도주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검대제도의 시행으로 연례송사의 기능이 무역에 치중되어 외교실무의 공백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통신사행과 문위행으로 정례화된 조선의 대일본 외교사행 구조에 상응하는 새로운 외교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였다.⁸⁸⁾

한편 대마도는 조선 정부의 대막부 사절인 통신사의 파견 준비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를 직접 주관하였다. 그러나 통신사 파견 중에 대마도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없고, 개설서와 다수의 통신사 관련 연구 속에서 개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정도일 뿐이다.⁸⁹⁾ 통신사 연구 가운데, 통신사 일행이 에도까지 가지 않고 대마도에서 실시된 1811년 통신사에 대해서는 정성일·이훈·김덕진·변광석⁹⁰⁾의 성과가 있지만, 통신사 파견 요청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조선과 대마도의 외교행위와 대마도에 체류할 당시 통신사행원의 행적은 추가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조선후기 대마도 인식은 對日認識이라는 틀 속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많은데 통신사행원이나 실학자들의 대마도 인식을 언급했을 뿐 독립적인 주제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우봉은 조선후기 한국인의 대마도 인식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⁹¹⁾ 첫째, 조선전기의 대마고토의식과 동변의식은 후기에 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둘째, 대마구분의식이 심화되었으며, 셋째, 대마번병의

88) 홍성덕, 1997, 앞의 책

89) 통신사행에 관한 연구 성과는 손승철, 2002, 「조선후기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 16, 한일관계사학회; 장순순, 2005, 「조선후기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관계사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조광, 2005,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쟁점사항, 한일관계사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참조

90) 정성일, 1991, 「對馬島易地聘禮에 참가한 通信使 일행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20; 이훈, 2005, 「조선통신사접대와 對馬藩의 재정-1811년 신미통신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5; 김덕진, 2005, 「1811년 통신사의 使行費와 戶曹의 부담」,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변광석, 2005, 「1811년 통신사의 파견과 경상도의 재정부담」,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이와가타 히사히코, 2005, 「1811년 대마도 역지통신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3, 한일관계사학회

91) 하우봉, 1996, 「한국인의 대마도인식」,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식의 쇠퇴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하였다.

이 외에도 통신사행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대마도 인식을 다룬 논고가 있는데, 대부분은 일본 인식의 범주 속에서 대마도의 인식을 간헐적으로 다룬 것이고, 대마도를 주체로 다룬 연구로는 김경숙·민덕기·김정일·정영문의 연구가 있다.⁹²⁾ 오상학은 조선시대 작성된 지도 속에 표현된 대마도 인식의 변천을 다루었다.⁹³⁾ 한편 대마도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대마도 통사가 본 18세기 한반도 문화에 대한 구리타 에이지[栗田英二]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⁹⁴⁾ 따라서 조선후기 조선과 대마도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마도인이 조선 내지 조선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주제다.

5_ 외교체제의 변질

일본의 메이지유신(1867)과 폐번치현(1871) 이후 대마도[對馬藩]는 이즈하라번[嚴原藩] → 이즈하라현[嚴原縣]을 거쳐 마침내 나가사키현에 편입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對馬藩이 嚴原藩으로 명칭이 바뀐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근세를 통하여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을 담당해오던 대마도의 권한이 외무성으로 이관되면서, 조선전기 이래 조선과 대마도 간에 이루어졌던 근세적인 외교와

92) 김경숙, 2005, 「玄川 元重擧의 對馬島人 인식과 그 의미-일본 '內地人'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정영문, 2011, 「통신사행록에 나타난 대마도」, 『온지논총』 27, 온지학회; 민덕기, 2004, 「최천종의 살해사건으로 본 19세기 중반 通信使의 대마도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1, 한일관계사학회; 金靜日, 1993, 「1636년 통신사와 조선의 對馬島 인식」, 『淑明韓國史論』 1

93) 오상학, 2009,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대마도 인식의 변천」, 『지리학연구』 3, 국토지리학회

94) 栗田英二, 1999, 「對馬島 通사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1)」, 『인문과학연구』 20,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栗田英二, 2003, 「對馬島 通사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2)」, 『인문과학연구』 25,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栗田英二, 1999, 「대마도 통사가 본 18세기의 한반도 사정-[상서기문(象胥紀聞)]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무역관계도 1872년을 끝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1872년 외무성의 ‘왜관점수’로 단절된 근세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 정부의 대조선 ‘외교일원화론’에 입각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외교일원화론’에 관한 연구에서 아라노 야스노리는 일본의 日本型 華夷意識에 기반한 ‘大君外交體制’와 ‘小中華’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조일 양국의 교린관계는 대마도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전제 아래, 불행한 근대 한일관계의 원인을 근세 한일관계와 외교일원화에 저항한 조선 정부와 대마도에서 찾았다.⁹⁵⁾ 심기재는 ‘외교일원화론’의 관점에서 막부 말기에서 1872년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의 ‘왜관점령’에 이르는 시기의 한일관계를 정리하여, 막부 말기와 유신 초기의 조선 정책과 일본·대마도·조선 관계의 해명을 추구하여⁹⁶⁾ 실증성을 한 단계 높였다. 기무라 나오야[木村直也]는 대마도에 초점을 맞추어 조일관계가 교린에서 征韓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하였고,⁹⁷⁾ 현명철은 에도막부 말기부터 明治시대 초기 대마도의 동향을 추적함으로써, 대마도의 구조적 문제, 즉 자립할 수 없는 경제구조와 대마도만의 논리에 주목하여, 한일관계의 개편에 대한 대마도의 적극성을 인정하지 않고, 막부 말기 대마도의 정한론도 원조 요구논리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⁹⁸⁾ 이시카와 히로시

95) 荒野泰典, 1987,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體制‘一元化’問題」, 田中健夫 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96) 沈箕載, 1996, 「版籍奉還後の朝鮮政策と外務省(佐田)調査團の朝鮮派遣」, 『士林』 79-6

97) 木村直也, 1987, 「文久三年對馬藩援助要求運動について—日朝外交貿易體制の矛盾と朝鮮進出論」, 田中健夫 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木村直也, 1993, 「幕末の日朝關係と征韓論」, 『歴史評論』 516

98) 玄明喆, 2000, 「1861년 對馬州의 移封요구운동」, 『한일관계사연구』 12, 한일관계사학회; 현명철, 1992, 「對馬藩攘夷政權の成立について」, 『北大史學』 32; 현명철, 1995, 「일본 막부 말기의 對馬島와 소위 ‘征韓論’에 대하여」, 『韓日關係史研究』 2, 한일관계사학회; 현명철, 1995, 「幕末對馬藩政治史の研究」, 日本北海道大學 博士學位論文; 현명철, 1996, 「幕末—明治初 對馬藩 처리에 대한 考察」, 『日本歷史研究』 2, 일본사학회; 현명철, 1996, 「개항전 한·일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 『國史館論叢』 72, 국사편찬위원회;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현명철, 2010, 「幕末·明治 초기 對馬州 정치사 개관」,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石川寛]는 대마도의 변경으로서의 위치와 ‘兩屬性’을 전제로 대마도의 내재적 관점에서 ‘외교일원화론’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⁹⁹⁾ 대마도가 家役に 집착하여 메이지정부와 조선의 통교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藩政改革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종래의 한일관계를 변혁의 대상으로 삼아 대마도 스스로 근대적 지향을 추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도 대마도가 양속성을 부정하는 과정, 즉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조선과 밀접하게 결합된 ‘對馬士民’이 ‘일본 국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교일원화론’의 강화라고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일본 연구자들의 이러한 논리는 일본 측의 사정을 합리화하는 결과론적 해석으로, 직접 당사자인 조선과 대마도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관계사’의 시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손승철·제홍일·장순순의 연구¹⁰⁰⁾가 있다. 장순순은 메이지정부의 ‘왜관점수’ 과정을 검토하면서 초량왜관은 조선이 땅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시설도 조선이 마련해준 것인 만큼, 초량왜관에 대해서 조선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명치정부가 자국의 공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밝혔다. 손승철은 1872년 일본 외무성의 ‘왜관점수’를 ‘왜관점령’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김홍수는 宗氏渡韓論에 주목하여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근대 한일관계로 연착륙하지 못한 원인의 해명을 시도하였다.¹⁰¹⁾ 현명철은 대마도가 조선과의 외교권

99) 石川寛, 2001, 「明治維新と朝鮮・對馬關係」,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石川寛, 2002,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日本史研究』 480; 石川寛, 1998, 「明治維新时期における對馬藩の動向－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對馬關係」, 『歴史學研究』 709, 歴史學研究會; 石川寛, 2002, 「明治維新时期の對馬藩政と日朝關係」, 『朝鮮學報』 183, 朝鮮學會; 石川寛,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歴史學研究』 775, 歴史學研究會; 石川寛, 2004, 「倭館接收後の日朝關係と對馬」, 『九州史學』 139, 九州史學研究會; 石川寛, 2003, 『明治維新时期の日朝關係と對馬藩』, 名古屋大學 博士學位論文

100) 손승철, 1994, 「1872년 일본의 倭館占領과 朝鮮侵略」, 『군사』 28, 국방군사연구소; 제홍일, 1997, 「明治初期 朝日交渉의 放棄와 朝鮮政策」, 『건대사학』 9, 건대사학회; 장순순, 2004, 「초량왜관의 폐쇄와 일본 租界化 과정」, 『일본사상』 7, 일본사상사학회

101)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을 박탈당하고, 명치정부가 1873년 ‘왜관을 접수’하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존재하였던 정치적 주체로서의 對馬州의 소멸과정을 추적하였다.¹⁰²⁾

한편 1872년 9월 일본 외무성이 왜관에 머물고 있던 대마도인의 철수를 지시한 후, 이른바 ‘왜관접수’부터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는 1876년까지 조선과 대마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연구량의 부족뿐 아니라 왜곡 또한 적지 않음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외교 현장이었던 왜관의 상황을 다룬 논문은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조선의 대일정책 속에서 왜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그 시기의 연구가 주로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한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東萊府啓錄』이나 『日省錄』 등과 같은 우리 측 사료가 있음에도 대부분 일본 측 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래부계록』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왜관에는 메이지정부가 ‘왜관을 접수’한 1872년에도 54척의 배와 1,009명의 인원이 왜관에 들어왔으며, 조선은 대마도를 통하여 대포와 포탄, 소총 화약을 구입하는 등 무역이 행해졌다. 그리고 대마도에서는 여전히 조선이 준 도서를 날인한 路引을 발급받은 세전선이 9월까지 입항하고 있었으며, 세전선 파견이 중단된 이후에는 매년 수척의 飛船이 조선이 발급한 도항증명서인 노인을 소지한 채 대마도와 왜관을 왕래하였다.¹⁰³⁾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당시 왜관 운영에서 조선의 주도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파악하려는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일본 사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편향성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왜관을 축으로 하는 근세적 조일 관계는 메이지정부 외무성이 ‘왜관 접수’를 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왜관은 여전히 동래부의 관리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왜관접수’, ‘왜관침탈’, ‘왜관 점령’이라는 표현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의 창출이 요구되며,¹⁰⁴⁾

102)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현명철, 2010, 「幕末・明治 초기 對馬州 정치사 개관」,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103) 『東萊府啓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자도서관

104) 石川寛은 ‘倭館引揚’, ‘왜관접수’를 동시에 사용하였다.(石川寛, 1998, 앞의 논문)

나아가 메이지정부 등장 이후 조일외교체제의 변화를 일국사가 아닌 교류사 내지 관계사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해방 이후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의 성과를 논쟁이 되거나 중요도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조선전기, 임진왜란기, 조선후기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는 일본 연구자들이 주도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 연구는 1960년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활성화되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의 귀국과 함께 한일관계사학회·한국일본사상사학회·일본사학회 등 관련 학회가 결성되면서 연구자 층이 형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대마도 관련 연구주제가 외교체제와 상호인식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2000년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제도사적인 연구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주제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등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시기적인 연구경향을 보면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자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다수의 일본 학자들이 일본사에서의 ‘중세’ 즉 조선전기 연구 속에서 대마도에 주목한 반면, 국내 학자들은 한문중 등 소수의 몇몇 연구자들을 제외하고 조선후기, 즉 일본사에서의 ‘근세’ 안에서 대마도에 주목한 경향이 있다. 조선후기 대마도에 관한 일본 측 연구는 다시로 가즈이의 논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선 교섭 업무가 대마도에서 明治政府의 외무성으로 이관되는 시기에 주목한 연구는 이시카와 히로시의 논고가 다

수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서 한국 연구자의 연구는 조선전기(일본의 중세)보다는 조선후기(일본의 근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양국 관계사를 접근하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다. 조선전기의 경우 외교체제, 삼포왜란 이후 한일관계와 ‘위사’ 내지 ‘통교위반자’, 向化倭人, 삼포왜관의 설치시기, 왜관 및 倭里에서의 왜인의 생활과 조선인과의 접촉 및 교류, 삼포 恒居倭人의 경작지에 대한 收稅문제와 禁斷權의 문제, 釣魚倭船에 대한 연구, 대일무역의 규모와 물품의 유통, 조일무역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 대마도에 파견된 각 사행의 성격규명, 사절로 참여한 인물들의 분석 등의 문제는 연구가 부족한 만큼 양국 연구자 간에 여전히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한다.

임진왜란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조선 복속 교섭 명령을 받았고, 침략에 임해서는 침략군의 선봉에 섰으며, 침략군이 대마도에 머물렀다가 조선에 건너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진왜란의 발발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임진왜란 당시 대마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그럼에도 임진왜란기의 대마도 연구는 불모지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전개과정 속에서 대마도의 역할, 왜란의 피해 당사자로서의 연구, 강화교섭 과정에서의 관련성 등에 관한 연구는 왜란 이후 전개된 조선후기 조일 강화교섭, 국교재개 과정 및 외교체제의 성립 등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성격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조선후기의 경우 대일외교 내지 통교체제가 전기의 다원적 내지 이원적인 형태가 청산되고, 막부 ↔ 대마도로 일원화되면서 대조선 교섭에 대한 막부의 직접적인 감독과 대마도의 대조선 외교 및 무역의 독점성 강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대일무역의 규모와 물품의 유통, 조일무역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 조선 ↔ 대마도 간의 사행, 즉 문위행과 차왜 등의 성격 규명, 그와 함께 그 사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분석, 조일 외교와 무역의 현장 실무자였던 왜학역관과 대마도 조선어통사의 임무와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 왜관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사회사적 검

토, 조선 전 시기 동안 존재했던 외교체제가 1676년 강화도조약으로 단절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분석, 그 속에서 이루어진 대마도의 처신 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의 설정이나 경향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료의 발굴과 활용이다. 최근에 들어와 『典客司別牒錄』이나 『倭人求請牒錄』 등이 국역되면서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아직도 규장각 소장 대일관계 牒錄類 등 다수의 사료들이 연구에 충실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등록류가 갖는 자료의 한계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日本國立國會圖書館·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東京史料編纂所 등 일본 각지에 소장되어 있는 대마도 종가문서의 적극적인 활용도 요구된다.¹⁰⁵⁾ 특히 대마도 종가문서는 대마도 내지 幕府의 입장을 대변하여 작성한 사료라는 점에서 사료상의 한계도 있지만, 대조선 교섭 당사자였던 쓰시마가 교섭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문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마도 종가문서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정리·공개되기도 하고, 일부 자료는 탈초되어 활자화되는 등 일본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사편찬위원회나 한일관계사학회를 중심으로 대마도 종가문서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지속됨으로써 국내 연구자들 중에 대마도 종가문서의 해독가능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사의 고찰이 갖는 한계를 지적

105) 대마도 종가문서는 한일교섭사 연구의 일급사료다. 대마도문서는 일본의 실질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江戸幕府로부터 대조선 창구의 역할을 위임받아 국교와 통상실무를 전담하던 대마번의 방대한 記錄群이다. 이 자료는 국서·서계 등 외교문서, 왜관 관련 문서, 무역실무의 거래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田代和生, 2007, 앞의 책에서는 『分類紀事大綱』 종합목차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하면서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사의 고찰은 자칫하면 조선 ↔ 일본이 아닌 조선(국가) ↔ 대마도(지역)의 지엽적인 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일 두 나라가 하나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국왕중심의 국가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幕藩體制를 기반으로 국가체제인 만큼 대외관계에서의 교섭형태와 외교교섭의 태도 및 자세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일 연구자 간에 기유약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나누어지는 것이나, 1872년 외무성의 ‘왜관접수’에 대한 이해에서 상반된 시각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대일 정책은 국초의 왜구문제에서 비롯되었듯이 통제를 주로 한 외교였다면, 일본에게는 에도막부의 외교가 ‘네 개의 창구론’으로 대변되었듯이 에도막부의 대조선 외교는 대마도를 통한 교섭이었고, 쓰시마의 대조선 관계는 무역관계가 주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조일관계는 양국의 국가체제 및 대외관계에서의 교섭형태와 외교교섭의 태도 및 자세의 차이점을 고려한 전제 속에서 조선 ↔ 대마도가 아닌 조선 ↔ 幕府(대마도)의 관계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외교는 자국의 국내외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룰 때는 상대국의 처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국 내의 상황만을 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해버리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대마도의 연구 또한 자국사의 입장이 아니라 교류사 내지 관계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훈, 2010, 「17~18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민덕기, 2010, 「한국에서의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일교류사와 상국의 역사』, 경인문화사
- 박재광, 2005,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한문중, 2002,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 한문중, 2011,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전북사학』 38, 전북사학회
- 佐伯弘次, 2002, 「戦後における中世日朝關係史研究-1980年代以後を中心に」, 韓日關係史學會 編, 『韓日關係史研究の回顧と展望』, 國學資料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Historiography of Tsushima in the Joseon Period

Chang Soonsoon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historical research on Tsushima during the Joseon period through readings of relevant books and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45 and September 2012.

First, the study of Tsushima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led by Japanese scholars, and their research has appeared continuously. Compared to the consistent publications by Japanese scholars, the study of Tsushima in the Republic of Korea began in the 1960s, but slowed in the 1970s and 1980s. In the 1990s, research became invigorated as studies focused on aspects of diplomatic systems and mutual recognition between Joseon and Japan. Since 2000, Korean scholars have moved beyond the earlier systematic studies and now approach this subject through various themes. The horizon of scholarship on Tsushima has thus expanded, and numerous studies of high quality have appeared.

Second, looking at the periods examined by scholars in Korea and Japan, Japanese scholars have concentrated on the “medieval period,” or the early Joseon period, while most Korean scholars have paid attention to the late Joseon period or the modern era.

Third, there is a great demand for the study of Tsushima in the Joseon period to be studied further. To conduct this research, not only the selection of research themes and trends but also uncovering and utilizing related historical data is important.

Fourth, while studying the history of Korea and Japan's relationship centering on Tsushima, scholars should keep in mind that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that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could be understood as that between Joseon and Tsushima, which should be avoided. Thus,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during the Joseon period should be conduct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attitudes and positions of negotiation and the diplomatic negotiations of both countries in the context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systems and diplomatic relations. Therefore, studies should focus no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Tsushima, but between Joseon and the shogunate (Tsushima).

Keywords

Tsushima (對馬), Diplomatic systems, Mutual recognition between Joseon and Japan, Edo Bakufu (江戸幕府)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한문중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조선전기 한일관계는 對馬島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다고 할 정도로 양국관계에서 대마도의 역할이 중시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전기에 맺은 약조나 왜인통제책이 주로 대마도주와 맺었거나 그를 활용한 통제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종래의 연구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단순히 조선 국왕과 일본 국왕[幕府將軍] 사이에 행해진 交隣外交體制로 인식하였고, 교섭의 대상도 다원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¹⁾ 그러나 종래의 연구는 대마도와 막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당시 한일관계, 특히 조선과 대마도의 외교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손승철과 민덕기는 막부와 대마도를 구분하여 조선

※ 투고일: 2013년 6월 10일, 심사일: 2013년 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1) 한문중, 2002, 「조선전기의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84쪽

전기의 대일외교는 조선 국왕과 막부장군은 敵禮關係의 대등한 交隣外交를, 조선 국왕과 대마도를 중심으로 지방호족과는 羈縻關係의 交隣外交라는 重層的이고 多元的인 외교체제였다고 주장하였다.²⁾ 또한 한문중은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 대마도의 조선 통교와 무역, 통교자에 대한 통제와 수직·수도서제 등의 회유책, 대마도에 파견한 사행 등을 분석하여 조선전기 대일외교의 특징과 대마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³⁾ 이들의 연구는 조선전기 대일외교에서 대마도를 일본의 막부와 구별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종래의 연구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 대일외교의 특징과 성격을 주로 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종래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對馬 宗氏가 대마에 入島하게 된 배경과 그들이 대마도에서의 지배권을 어떻게 확립하였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둘째, 조선의 왜구대책과 왜인통제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조선이 어떻게 대마도를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인 기미관계의 외교체제에 편입시키려 하였는가를 고찰하려 한다. 이를 통해 대마도가 정치적·외교적·경제적으로 한일 양국에 兩屬되어가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과 대마도 간의 사절·통교자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대마도의 양속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갔으며, 그것이 조일 간의 외교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2) 孫承詒, 1989, 『朝鮮後期 對日政策의 性格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孫承詒,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閔德基, 1990, 『中·近世의 朝鮮·日本關係と對馬』, 早稻田大學 박사학위논문(閔德基, 1994, 『前近代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이들의 연구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의 성립 특히 조선 국왕과 일본 장군 간의 외교관계가 동아시아의 외교질서인 중국의 책봉체제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즉 손승철은 중국의 책봉체제를 전제로 양국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덕기는 명의 冊封體制나 華夷秩序와는 무관하게 양국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문중, 2002, 위의 논문, 84~86쪽

3) 한문중, 1996,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조선전기 대일외교의 특징과 대마도의 역할이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對馬 宗氏의 도내 지배권 확립

對馬 宗氏は 중세부터 근세 말까지 대마도를 지배하고 있었다. 대마 종씨의 세계에 대하여는 먼저 다이아 도모모리[平知盛]의 後裔說과 宗氏帝裔說(宗氏帝系說)이 있다.⁴⁾ 그러나 이 두 설은 근세에 편찬한 家寶나 사서류의 책에 기록된 신화나 전설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阿比留 征服說은 1246년(寬元 4)경에 다이아 도모모리의 손자인 시게나오[重尙]가 대재부 小貳 武藤氏의 명을 받아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에 가서 阿比留氏를 토벌하고 武藤氏로부터 對馬國地頭の 관직을 받아 대마 종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사 세쓰코[長節子]는 對馬在廳關係文書와 기타 사료를 검토한 결과 다이아 도모모리의 후예설과 阿比留 征服說은 宗氏의 대마 지배가 확립된 이후에 조작된 것이며, 宗氏は 大宰府 在廳官人 惟宗氏의 한 支流인

4) 平知盛의 後裔說은 종씨의 시조인 知宗의 아버지가 平相國 清盛의 제3자인 平知盛이라는 것이다. 源平爭亂에서 平知盛이 전사하자 유모가 어린아이인 知宗을 데리고 탈출하여 武藤資賴의 양자가 되었고, 후에 大宰府의 병권을 장악하고 3州 2道를 관할하였다. 知宗은 유모의 성을 따라서 唯宗判官이라 칭하였는데, 이가 바로 대마도를 토벌한 重尙의 아버지다(『十九公實錄』). 宗氏帝裔說은 惟宗判官 知宗과 島津氏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重尙이 후에 대마도를 평정하여 대마종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知宗이 安徳天皇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이 설은 대마도의 마지막 藩主인 宗重正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宗氏家譜』, 『寛永諸家系圖傳』, 『寛政重修諸家譜』).

對馬在廳官人 惟宗氏が 武士化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

한편, 豆殿의 ‘多久頭神社의 梵鍾 銘文’에 따르면 중씨가 대마도에 들어오기 전인 1008년(寬弘 5)에 이미 大宰府 在廳官人으로 阿比留氏が 존재하고 있었다. 대마도에서는 1049년(문종 3)부터 1087년(선종 4)까지 7차례의 사절을 고려에 파견하였으며,⁶⁾ 이는 1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進奉船 무역으로 정례화되었다.⁷⁾ 그 결과 대마도의 대고려 통교는 在廳官人 阿比留氏が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195년(建久 6)의 ‘御神寶料物内京進并博多交易算用目録’에는 재청관인 중에 阿比留氏 외에 藤原氏와 惟宗氏が 추가되었다.⁸⁾ 그 후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과 일본의 국내사정 등으로 進奉船 貿易體制가 폐지됨에 따라 阿比留氏의 고려 통교도 단절되었다.

또한 1310년(延慶 3) ‘正八幡宮政所下文’에는 재청관인 10명이 기록되어 있었다.⁹⁾ 이 사료에는 藤原氏が 보이지 않고 阿比留氏와 惟宗氏만 보이며, 서명의 순서가 이전과는 달리 惟宗氏が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

5)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9~11쪽

6) 대마도에서 고려에 파견한 사절은 1049년(문종 3)부터 1087년(선종 4)까지 7건으로, 그 대부분이 문종대(4건)와 선종대(3건)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통교의 특징은 주로 對馬島官이나 對馬島勿當官이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파견목적이 주로 표류인의 송환이나 토산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한문종, 1996, 앞의 논문, 32~33쪽

7) 1169년(의종 23)에서 1263년(원종 4)까지 약 1세기 동안 계속된 進奉船 貿易은 일시적인 私獻貿易이 아니라 외교의례의 형식을 갖춘 정례적인 교역체제였으며, 進奉과 回賜라는 朝貢貿易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진봉선 무역체제에서 외교문서인 牒狀의 수수는 고려의 金州防禦使-對馬島, 全羅州道按察使(慶尙道按察使)-太宰府當使(太宰 小二資賴)로 이어졌지만 실제로 진봉선 무역을 행한 것은 對馬島司였다. 그리고 고려의 경우 대마도와의 교역은 원칙적으로 대일 창구인 東南海都部署가 관장하고 있었으며,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중앙정부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았지만 대부분 金州에서 專決하였다. 李領, 1995, 『東シナ海世界における麗・日關係史の研究』, 東京大綜合文化研究科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8~29쪽

8) 『御神寶料物内京進并博多交易算用目録』 建久 6年 5月 5日付

9) 貞享四年宗家判物寫 『享祿以前八郡御舊判寫』 與良郡須藻村倭幾左衛門所持分 正八幡宮政所下 講師良園申 延慶 三年 六月三日條에 正大宮司 惟宗氏를 필두로 大宮司 9명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大宮司 9명 중 2명은 惟宗氏이며, 나머지 7명은 阿比留氏다.(이 사료의 원문은 長節子, 1987, 앞의 책, 6~7쪽에 수록되어 있다.)

실로 보아 12세기 말~14세기 초 사이에 재청관인 惟宗氏의 세력이 阿比留氏를 앞지를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惟宗氏는 13세기 중엽 이래 對馬國地頭代로서 막부의 세력과 결합하여 宗氏라 칭하고,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阿比留氏를 누르고 대마도의 최고책임자가 되었다.¹⁰⁾

한편, 1368년(공민왕 17) 7월에 對馬島萬戶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침으로써 통교가 재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마도만호 다케노 소케이[崇宗慶]가 사신을 보내자 그에게 쌀 일천 석을 사급하였다.¹¹⁾ 이는 대마도주가 고려와 통교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¹²⁾ 특히 소케이[宗慶, 宗經茂]에게 쌀 일천 석을 사급한 이유는 고려 정부가 대마도와 외교적인 교섭을 통하여 왜구의 금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마도의 통교는 1368년 이후부터 1397년(태조 6)까지 단절되었다. 그 이유는 왜구의 창궐과도 관련이 있지만 대마도의 정치적 불안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대마도에서는 도내의 통치권을 둘러싸고 대마도주와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 간의 정권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399년(정종 원년) 對馬島都總管 소 사다시게[宗貞茂]의 사신이 가지고 온 서계에 따르면, 1349년경의 도주는 소 쓰네시게[宗經茂, 宗貞茂의 祖父]였으나 ‘官’(小貳殿?)에서 파견된 관리(酷吏)에게 정권의 찬탈이 있었으며, 1398년에 다시 소 사다시게가 정권을 되찾아서 도내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 사건이 바로 대마도주직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 제2의 정변이

10) 長節子, 1987, 위의 책, 7~8쪽 참조.

11)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11월 병오

12) 長節子氏는 『고려사』 공민왕 17년에 등장하는 萬戶 崇(宗)宗慶을 宗經茂(刑部丞)로 비정하였으며, ‘萬戶’가 자칭이 아니라면 왜인이 수직한 최초의 기록이며 또한 역대 島主 중 유일한 예라고 하였다. 長節子, 1987, 앞의 책, 39~40쪽

13) 그 후에 이르기를 陪臣 刑部侍郎 宗貞茂는 政丞 閣下에게 삼가 글을 올립니다. (중략) 50년 전에 우리 祖父가 일찍이 이 땅의 도주가 되어서 이르기를 ‘감히 귀국의 큰 은혜를 저버릴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官에서 파견한 酷吏가 탐욕스런 마음을 방자하게 하였는데, (이같이) 좌우에서 죄를 얻은 자가 어찌 斧鉞의 배임을 면하였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들이 지난해에 이르러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패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불초한 제가 祖父의

다. 즉 제1 정변은 1374년(고려 공민왕 23)경에 소 스미시게[宗澄茂]가 소 쓰네시게로부터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며, 제2 정변은 1398년(태조 7)에 소 사다시게가 다시 소 요리시게[宗頼茂]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사건이다.¹⁴⁾ 그리고 서계에 나타난 ‘酷吏’는 대마도주와 대립하고 있었던 세력인 仁位 宗氏의 소 스미시게 · 소 요리시게다.

이와 같이 당시 대마도에서는 對馬 宗氏(島主家)와 仁位 宗氏が 서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를 비롯한 통교자들이 조선에 도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반면에 도주의 통제권 밖에 있던 여러 세력들이 왜구로서 조선의 연해에 침입하여 많은 미곡과 인물을 약탈해갔다.

한편, 대마 중씨는 13세기 후반(鎌倉期)부터 小二氏(少二氏)¹⁵⁾의 被官으로, 14세기 중엽(남북조기)부터는 筑前守護代를 겸하고 있었다. 應永(1394~1427년) 초기에 북구주에서는 九州探題 瀧川氏와 筑前守護 小二氏が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1398년 소 요리시게로부터 家督의 지위를 탈취한 소 사다시게는 곧 바로 筑前守護代로서 北九州에 진출했다. 이어서 소 사다시게는 1399~1402년까지 伊奈郡主 소 스케시게[宗資茂]와 仁位 宗氏 소 미쓰시게[宗滿茂]를 이끌고 豊前香月 · 上津役 合戰에 참전하였으며, 소 스미쿠니[宗澄國]도 1400년에 筑前 · 肥前 방면에서 군사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소 사다시게를 비롯한 대마도의 유력자들이 北九州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대마도

직을 맡았습니다. 이에 저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외람되이 정성을 바칩니다. 『정종실록』 권2, 원년 7월 기사

- 14) 도주직을 둘러싼 제1, 제2의 정변에 대하여는 長節子, 1987, 앞의 책, 44~46쪽. 한편, 黒田省三은 제1의 정변을 부정하여 仁位 宗氏が 정당한 도주직의 계승자이고, 宗貞茂는 찬탈자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종 원년(1398)에 조선에 서계를 보낸 이유는 찬탈자인 宗貞茂가 조선 정부로부터 도주로 인정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黒田省三, 1970, 「宗氏の承統と對馬守護の職稱」, 『朝鮮學報』 55
- 15)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小二氏와 少二氏が 혼용되고 있지만 주로 小二氏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해동제국기』에는 小二氏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小二氏와 少二氏를 혼용하고 있지만 인명의 경우에는 주로 少二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 측의 사료에 따라 小二氏로 표기하고, 인명의 경우에만 少二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 권력은空洞化되었다. 이 틈을 타서 1401년 겨울에 仁位 宗氏의 소 요시시게[宗賀茂]가 봉기하자 소 사다시게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마도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쇼니 사다요리[少二貞頼]의 제지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후 1402년 7월에 소 사다시게는 대마도로 돌아와 宗資茂·宮內左衛門尉 등을 이끌고 소 요시시게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그 결과 仁位 宗氏의 세력이 쇠퇴하자, 宮內左衛門尉은 미쓰시게와 결별하고 사다시게와 일원적인 주종관계를 맺었다. 이에 소 사다시게는 宮內左衛門尉 등을 직할령의 대관으로 기용하여 嶺國支配體制를 구축하려 하였다.¹⁶⁾

한편, 1405년 12월에 북구주에서 대립하고 있던 瀧川氏와 小二氏의 싸움이 小二氏의 패배로 끝났다. 이에 소 사다시게는 1408년에 동생 사다즈미[貞澄]에게 筑前州守護代職을 물려주고 북구주를 떠나 대마도에 정착하였다. 이를 통해서 소 사다시게는 宗氏家督과 축전주 수호대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대마도 내의 통치를 확실하게 장악하려 하였다.¹⁷⁾ 이는 소 사다시게가 도내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佐賀에 상주한 1408년경부터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대마도로부터 도항하는 통교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대마 종씨는 1408년에 소 사다시게가 축전주에서 대마로 돌아오면서 宗氏家督과 축전주 수호대직을 분리함으로써 도내의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16)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24~28쪽

17) 荒木和憲, 2007, 위의 책, 28~29쪽

Ⅲ. 왜구대책과 왜인통제책의 실시

1_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

조선초기 대일외교의 근간은 왜구의 침입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에서는 고려 말의 왜구대책을 계승하여 수군과 병선의 증강을 통한 海防의 대책을 충실히 하는 한편 막부장군이나 대마도주 등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의 금지와 被擄人의 쇄환을 요청하는 등 다원적인 교섭을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 투항한 왜구의 우두머리나 왜구의 진압에 공이 많은 자, 그리고 제련술·조선술 등의 기술을 가진 향화왜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등의 회유책도 병행하였다.

조선 정부의 다양한 왜구대책과 일본 국내정세의 안정으로 왜구는 조선에 투항하거나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1409년을 전후로 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면에 일본에서 조선에 도항하는 ‘통교자’는 점차 증가하였다.¹⁸⁾ 그러나 1418년(태종 18) 4월에 왜구의 통제에 적극 협력하였던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죽은 이후부터 다시 왜구의 침입은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대마도의 정치적 불안과 흉년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당시 대마도에서는 도주직을 계승한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도내의 실권을 장악한 소다 사에몬타로[早田左衛門太郎]가 왜구의 침입을 묵인하자, 흉년으로 생활이 궁핍하였던 대마도인이 조선과 중국의 연안을 자주 침입하였다. 이에 왕위를 세종에게 양위하였지만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태종은 1419년(세종 원년)에 왜적선이 서해안의 연평곶에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대마도정벌을 단행하였다. 대마도 정벌군은 6월 19일에 각도에서 징발한 병선 227척과 군사 17,285명이 65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출발하여 다시 7월 3일

18)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12~17쪽

에 거제도로 귀환하였다.¹⁹⁾

대마도정벌 직후 태종은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都都熊瓦]에게 ‘卷土來降’을 요구하는 서계를 보냈다.²⁰⁾ 이에 대해 도주 소 사다모리는 사자를 보내 ‘대마도인을 加羅山 등지의 섬에 보내 조선을 外護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주 자신은 族人에게 守護職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대마도를 떠날 수 없으므로 조선의 州郡의 예에 따라서 州名을 정하고 印信을 하사해준다면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 명령에 따를 것이다’라고 답하였다.²¹⁾ 이어서 태종은 예조판서 許稠 명의를 답서를 소 사다모리에게 보냄으로써,²²⁾ 대마도는 경상도의 屬州가 되었으며,²³⁾ 도주는 수도서인이 되었다. 그리고 도주관하의 代官 · 萬戶 등의 통교자들에게 도주가 친히 서명한 서계를 지참하도록 함으로써 대

19)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孫弘烈, 1794,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湖西史學』 3; 李銀圭, 1978, 「15世紀初 韓・日交涉史研究－對馬島征伐를 中心으로」, 『湖西史學』 6; 張學根, 1983, 「朝鮮의 對馬島 征伐과 그 支配政策－對外政策을 中心으로」, 『論文集』 18, 해군사관학교; 한문중, 1997, 「조선초기의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 『전북사학』 19 · 20

20) 『세종실록』 권4, 원년 7월 경신

21) 『세종실록』 권7, 2년 정월 기묘

22) 그 서계에 이르기를 “…… 또한 對馬島는 慶尙道에 속하였으니 모든 보고나 문의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경상도)의 觀察使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찰사가 예조에) 傳報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대마도주가) 직접 본조(예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요, 겸하여 청한 인장의 篆字와 하사하는 물품은 돌아가는 사절에게 붙여 보냅니다. 근래에 足下가 관찰하고 있는 代官과 萬戶가 각기 제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어 글을 바치고 성의를 표하니 그 정성은 지극하나 심히 체통에 어그러지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반드시 족하가 친히 署名한 서계를 가지고와야만 비로소 禮로서 접대를 허락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인장의 글자는 ‘宗氏都都熊瓦’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7, 2년 윤정월 임진

23) 세종 2년(1420)에 幕府將軍의 사절(亮倪)에 대한 회례를 위해 파견된 回禮使 宋希璟은 小貳殿과 대마 早田萬戶(三味多羅)로부터 대마도를 경상도의 屬州로 편입시킨 일에 대해 항의를 받았다(『老松堂日本行錄』 2월 28일 卽事, 8월 7일 卽事). 또한 그 이듬해 4월에는 대마도주가 사자를 보내 대마도를 경상도의 속주로 편입시킨 것은 근거가 없으며, 대마도는 일본의 邊境이라고 주장하였다(『세종실록』 권 11, 3년 4월 무술, 기해). 그 후 1423년 대마도정벌을 주도한 태종이 죽자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는 다시 활발해지면서 대마도는 경상도의 속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마도의 통교자를 제한하려 하였다. 그 후 서계에 의한 통제는 다른 지방까지 확대되어 구주지방의 통교자도 구주절도사의 서계를 지참하도록 하였다.²⁴⁾

조선의 대마도정벌에 대해 室町幕府는 2개월 뒤에야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보고된 정보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室町幕府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정벌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였다.²⁵⁾

대마도정벌은 이후 한일관계의 전개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마도정벌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는 왜구의 소굴이며 경유지였던 대마도를 무력으로 정벌함으로써 왜구의 침입을 근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세종 25년(1443) 이후에 왜구는 한반도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

둘째는 대마도정벌을 계기로 조선이 왜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대외외교 체제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거나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조선의 대일정책은 왜구의 침입을 저지·억제하는 것에서 조선에 오는 통교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셋째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마도가 경상도에 편입됨에 따라 이후 조선에서는 대마도를 조선의 변병으로 또는 변신으로 인식하는 '對馬藩屏意識'과 '對馬屬州意識'이 일반화되었다.²⁶⁾ 이러한 인식은 태종·세종대에 막부를 조

24) 『세종실록』 권8, 2년 7월 임신

25) 대마도정벌에 대한 정보는 6월 말경에 풍문으로 京都에 전해졌으며, 8월 7일에야 비로소 少二滿貞에게서 비보가 도착하였다. 정벌 당시 九州探題는 少二殿과 반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이전을 응원하지 않았다. 그 후 구주탐제는 조선의 대마도정벌을 납득하지 못하고 宗金을 京都로 보내 막부의 의향을 물었다. 義持는 少二氏의 전황보고에 따라서 격앙되어 있었지만, 탐제의 보고가 少二氏와 달랐기 때문에 博多의 승려 亮倪를 정사로 하는 사신을 조선에 파견하여 대장경을 구청하면서 정벌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사신은 세종 2년 1월에 조선 국왕에게서 대마정벌의 이유를 들었다. 이들 사신에 대한 답례로 조선에서는 회례사 송희경을 파견하여 대장경을 하사하고, 피로인과 표류인의 송환을 요청하였다(中村榮孝, 1969, 『日本と朝鮮』, 至文堂, 105~112쪽). 이러한 사실로 보아 室町幕府는 조선의 대마도정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진상만 파악하려 하였던 것 같다.

26) 1452년 8월에 致奠官 李堅義와 致賻官 皮尙宜가 가지고간 서계에는 대마도를 사납고 간사한 도적을 금지한 조선의 藩屏으로 인식하였으며(『단종실록』 권2, 즉위

선과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호족의 하나로 파악하려 하였던 ‘足利幕府 弱體觀’²⁷⁾과 더불어서 대마도를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 즉 기미관계의 외교체제에 편입시키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에서는 대지방관인 敬差官·體察使·宣慰使 등을 대마도에 파견하였고,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제수하려고 하였다.

넷째, 대마도가 조일외교의 중간세력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조일 간의 외교관계는 대마도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증시되었다.²⁸⁾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대마도정벌은 조선 정부가 대마도와 기미관계의 외교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양속관계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마도정벌은 이후 대일 외교체제에 대한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끼쳤다는 면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_ 왜인통제책의 실시

조선초기 왜구대책의 실시 결과 1409년(태종 9)을 전후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일본 각지로부터 도항하는 왜인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통교자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교자들이 해안지방을 마음대로 왕래하여 무역을 하거나 降倭들과 접촉하여 군사상의 비밀을 정탐하는 등 치안상의 폐단이 야기되었다. 또한 조

년 8월 갑자, 1461년에는 대마도주에게 하사할 敎書에 대대로 남쪽 변방을 지키는 조선의 변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세조실록』 권25, 7년 8월 을미). 또한 1494년에 薺浦倭人의 난동사건 대해 사신의 파견을 논의할 때에 副提學 宋軼이 ‘對馬州는 우리나라의 번신(對馬州乃我國藩臣)’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사신을 파견하지 말고 내조하는 사송왜인에게 통유하도록 건의한 내용에서도 대마속주주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성종실록』 권287, 25년 2월 병술).

27) 高橋公明, 1982, 「外交儀禮よりみた室町時代の日朝關係」, 『史學雜誌』 91-8

28)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22~23쪽

선에 도항하는 왜인은 형식적이지만 使行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항해서 귀환할 때까지의 접대비용을 조선 정부가 부담하였으며, 이는 조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통교자의 증가는 조선 정부의 치안상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조선의 대일정책도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고 통교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대마도정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왜인통제책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왜인통제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경제상의 부담과 대마도정벌 이후 왜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지식의 확대 등이었다. 특히 조선 정부는 대일사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 예를 들면 일본의 국내정세, 막부장군과 지방호족의 세력관계, 일본 내의 해적의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대일외교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다.²⁹⁾

통교자에 대한 통제책은 포소의 제한과 書契·圖書·文引에 의한 통제 그리고 歲遣船의 정약에 의한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포소의 제한은 일본에서 도항하는 왜선의 정박장소를 한정하는 것으로, 원래는 興利倭人에 대한 통제에서 비롯되었다. 홍리왜인은 조선의 연안을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행하는 한편 각 고을에 안치된 향화왜인과 접촉하여 병선의 허실을 탐지하는 등 치안상의 폐단을 야기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치안상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1407년(태종 7)에 홍리왜인이 정박하여 무역할 수 있는 장소를 부산포와 내이포(제포)로 제한하였다.³⁰⁾ 그 후 포소의 제한은 홍리왜인뿐 아니라 조선에 도항하는 모든 통교자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마도정벌로 외교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포소도 폐쇄되었다. 그 후 1423년에 부산포와 내이포를, 1426년(세종 8)에 염포를 추가하여 이른바 ‘三浦’가 개항되었으며, 그곳에는 각각 왜관이 설치되었다. 삼포는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으로 인하여 폐쇄되었다가 1512년 임신약조에 따라서 제포가 개항되

29) 한문중, 1996, 위의 논문, 61~62쪽

30) 『태종실록』 권14, 7년 7월 무인

었으며, 1521년에 부산포를 추가로 개항하였다. 그러나 1544년 사량진왜변으로 포소가 다시 폐쇄되었다가 3년 후인 1547년 정미약조에 따라서 부산포가 개항되어 임진왜란 직전까지 유지되었다.³¹⁾

書契는 원래 조선의 예조와 일본의 통교자가 주고받았던 일종의 외교문서였다. 따라서 조선에 오는 사송왜인은 서계를 지참하여야만 했다. 대마도정벌 이후부터 서계는 통교자에 대한 통제책으로 이용되어 대마지방의 통교자는 도주의 서계를, 구주지방의 통교자는 구주탐제의 서계를 가지고 와야만 조선에서 접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계에 의한 통제는 대마도의 정치적 불안정과 구주탐제의 지배력 약화, 조선 정부의 불철저한 통제로 인하여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³²⁾ 조선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인제도를 실시하였다.

圖書은 일본의 지방호족이나 통교상의 공로자에게 지급한 일종의 도장으로, 통교자가 조선에 올 때에 서계에 찍어 통교상의 증명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세종 초에 도서의 사급범위가 확대되면서 왜인의 통교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대마도정벌 이후 도주에게 ‘宗氏都熊瓦’라 새긴 도서를 사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내의 통교자를 통제하려 하였다.³³⁾ 도서를 사급받은 왜인을 受圖書倭人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조선에 도항할 수 있는 통교권을 인정받았고 세견선도 정약하였다. 따라서 많은 왜인들이 도서의 사급을 요청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왜구의 통제능력이나 외교상의 공로 그리고 일본 내에서 세력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도서를 사급하였다.

文引은 본래 상인들에 대한 통제와 세금의 징수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일종의 통행증명서로 行狀 또는 路引이라고도 하였다.³⁴⁾ 이것이 입

31) 한문중, 2012,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 3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8~259쪽

32)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65쪽

33) 『세종실록』 권7, 2년 윤정월 임진

34) 조선에서는 노인과 문인·행장의 명칭이 같은 의미로 혼용되었으며, 태종·세종대에는 행장이, 그 이후에는 노인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노인과 문인·행장은 군사적·경제적·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으며, 그 적용 대상도 양인으로

국증명서로 전용이 되어 왜인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426년(세종 8)경이다.³⁵⁾ 그 후 1438년(세종 20)에 경차관 이예가 대마도주 소사다모리와 문인제도를 정약하면서 왜인에 대한 통제책으로 제도화되었다.³⁶⁾ 그 결과 일본국왕사를 제외한 모든 통교자는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가지고 와야만 접대와 교역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특히 문인에는 사송선의 크기와 승선인의 이름과 인원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³⁷⁾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고 도주로 하여금 일본에서의 통교자를 통제하려 하였으며, 대마도주는 문인제도를 이용하여 도내의 통교자를 통제하고 문인발행에 대한 수수료와 교역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도내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인제도는 조선과 대마도주의 이해가 서로 부합하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었으며, 이후 조선의 대표적인 왜인통제책이 되었다. 한편으로 조선에서 호조·병조·예조 등의 육조와 관찰사·수령·만호 등의 지방관에게 주었던 문인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 준 것은 대마도를 조선의 지방으로 인식하는 對馬屬州意識 내지는 對馬藩屏意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³⁸⁾

위에 살펴본 서계·도서·문인 등이 일본에서 도항하는 통교자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歲遣船 정약으로 대표되는 계해약조는 대마도주의 통교를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었다. 세견선 정약은 일본의 통교자가 1년 동안 파견할 수 있는 사송선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外夷에 대한 조공 횟수와 시기를 제한한 것과 유사하며, 고려시대의 進奉船 貿易體制와도 같은 것이다. 세견선의 정약은 세종 6년(1424)에 구주탐제 미나모토 료쥔(源了俊)과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³⁹⁾ 대마도주와는 1443년(세종 25) 癸亥約條

부터 상인·상선·才人·禾尺·水陸軍丁·鮑作人·군사·승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68~69쪽

35) 『세종실록』 권32, 8년 5월 갑인

36) 『세종실록』 권82, 20년 9월 기해

37) 『세종실록』 권73, 18년 윤6월 신묘

38)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73~74쪽

39) 『세종실록』 권26, 6년 2월 무오

로 이루어졌다.⁴⁰⁾ 계해약조의 내용은 대마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는 것과 도주의 세견선을 50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는 두 항목만이 전해지고 있다.⁴¹⁾

계해약조를 계기로 도주 이외의 통교자도 세견선을 정약하여야만 조선에 도항하여 접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조대에는 종씨 일족을 비롯하여 일본 본토의 지방호족들과 세견선을 정약하였다. 그러나 그 수가 400여 척에 이르자 성종 초에 다시 정비하였다. 이어서 1477년(성종 8)에는 수도서인도 세견선을 정약하도록 함으로써 세견선의 정약이 사송선을 통제하는 원칙이 되었다.⁴²⁾ 그 후에도 세견선과 세사미두에 관한 조항은 시기에 따라 그 수에 가감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 정부의 왜인통제책은 대마도주를 조선 중심의 정치·외교질서인 기미체제에 편입시키는 대신 그에게 여러 가지 통교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인제도와 계해약조는 조선과 대마도 간의 외교관계를 정례화함으로써 이후 대일 통교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이 되었으며, 대마도주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호족들을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인 기미관계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대마도주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양속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마도는 조일 간의 외교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증대해갈 수 있었다.

40)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계해약조는 『海行摠載』의 기록에 의거하여 신숙주 일행이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신숙주의 倭記와 당시 외교교섭의 진행상황, 『朝鮮通交大紀』 등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癸亥約條는 1443년(세종 25) 8~10월경에 대마도에 파견되었던 체찰사 李藝가 주도하여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숙주는 대마도주를 설득하여 약조를 체결하는 데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74~77쪽

41) 『通文館志』 권5, 交隣 正統癸亥約; 『增正交隣志』 권4, 約條 世宗 25年

42) 『성종실록』 권84, 8년 9월 무진

IV. 조선의 對馬使行과 對馬의 통교왜인

1_ 조선의 대마사행

왜구문제는 조선초기 대일외교의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태조는 즉위 직후에 승려 覺鑰를 室町幕府의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에게 파견하여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鎮西守臣(九州節度使 源了俊)에게 왜구의 금지와 피로인의 쇄환을 명하였다.⁴³⁾ 이는 조선 정부가 막부장군과 행한 최초의 외교적인 교섭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답서는 막부장군 명의가 아닌 相國寺 승려 絶海中津 명의였던 점으로 당시 막부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일본 국내에서 외교권을 장악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한편 조선에서는 1403년에 태종이 명의 책봉을 받고, 일본에서는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책봉을 받았다. 그리고 1404년에 일본에서 ‘日本國王 源道義’ 명의의 사신을 조선에 파견함으로써⁴⁴⁾ 조선과 일본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막부장군을 정치와 외교권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조선 국왕과 대등하게 대우하였다. 그 결과 조선 국왕과 일본의 막부장군 사이에 대등한 敵禮關係의 외교체제가 성립되었으며, 활발한 사절의 왕래가 행하여졌다.

한편 1392년 10월에 일본 지방호족으로는 처음으로 筑州太守 구라 다다요시[藏忠佳]가 사절을 파견하였으며⁴⁵⁾, 그 후 壹岐·九州·對馬地方의 호족들이 사절을 파견하였다. 조선에서도 1394년(태조 3) 회례사 金巨源을 九州節度使에 파견한⁴⁶⁾ 이후 大內殿·對馬島主·壹岐島主 등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43) 『善隣國寶記』 卷上, 後小松院明德三年壬申答朝鮮書(田中健夫 編, 1995, 集英社)

44) 『태종실록』 권8, 4년 7월 기사

45) 『태조실록』 권2, 1년 10월 정묘

46) 『태조실록』 권5, 3년 5월 병인

〈표 1〉 조선전기 대일사행의 파견대상

왕 대 파견대상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소 계
幕府將軍	1	1	5	7		1	2				1	18
九州節度使	3											3
大內殿	1		2									3
壹岐島主			2	2								4
對馬島主	2	1	11	6	2	3	4	1	2	1		33
其他(미상)			4									4
소 계	7	2	24	15	2	4	6	1	2	1	1	65

* 이 표는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138쪽 〈표 1〉을 전재함.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외교의 교섭대상을 다원화함으로써 지방호족들과 다원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 조선에서는 총 65회의 사행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표 1〉은 조선전기의 대일사행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통해서 조선전기 대일사행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조선전기 대일사행은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48회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왜구문제의 해결과 왜인통제책을 정비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외교의 교섭대상이 幕府將軍을 비롯한 구주절도사·대내전·일기도주·대마도주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이처럼 외교의 교섭대상이 다원화된 이유는 막부장군의 통치력이 지방호족까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막부장군의 통치력이 미약하여 왜구를 금지시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외교교섭의 대상을 왜구를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인 九州地方의 호족들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셋째로 대마도주에게 파견한 사행이 전체 사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는 조선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대마도의 역할을 중시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에서 1397년(태조 6) 5월에 前司率少監 朴仁貴를 대마도에 처음으로 파견하였으며,⁴⁷⁾ 임진왜란 전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파견하였다. 그중

태조~세종대에 20회로 집중되었으며, 특히 태종대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파견한 사행의 명칭은 通信官·通信使·回禮使·報聘使·賜物管押使·體察使·敬差官·致奠官·致賻官·垂問使·宣慰使(官)등으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그중 경차관이 9회로 가장 많았다.⁴⁸⁾

1) 通信官·回禮官(使)·報聘使

통신관이 대마도에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1413년 6월 朴礎의 사행이다. 그러나 이 사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사행의 대상은 대마도주와 일기도의 志佐殿이었으며, 사행의 목적은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⁴⁹⁾ 그런데 ‘일본통신관’ 박초가 귀환하여 ‘일본회례관’으로 복명하였던 것⁵⁰⁾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통신관과 회례관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대마도에 통신관이라는 명칭의 사신은 파견되지 않았지만, 1557년(명종 12)에는 통신사를 파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통신사는 사행의 목적이 대마도주의 세건선 환급요청에 대한 대마도의 정세를 탐지하는 것이었고 사절의 구성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⁵¹⁾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사행인 통신사⁵²⁾라고 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행은 통신관으로 부르는 것이

47) 조선에서는 寧海府 丑山島에 투항한 항왜 중에서 조선의 軍船을 약탈하여 도망간 上萬戶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대마도에 朴仁貴를 파견하였다. 『태조실록』 권11, 6년 5월 정사

48) 조선전기 대마도 사행은 通信使(1), 通信官(1), 回禮使(1), 報聘使(1), 賜物管押使(1), 體察使(1), 敬差官(9)·致奠官·致賻官(2)·垂問使(1)·宣慰使(官)(4), 미상(11) 등 총 33회를 파견하였다. 한문종, 1996, 앞의 논문, 142쪽 <표 3>

49) 『태종실록』 권25, 13년 6월 계해

50) 『태종실록』 권26, 13년 11월 경자

51) 『명종실록』 권22, 12년 정월 기사, 갑술

52) 通信使는 조선 국왕이 일본의 막부장군(일본 국왕)에게 파견한 사행으로, 이들은 조선 국왕 명의로 書契와 禮物를 지참하였으며 通信使 또는 國王使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행의 三使(正使·副使·書狀官)는 중앙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回禮나 報聘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막부장군의 吉凶慶弔과 양국 간의 긴밀한

타당하지 않을까?

한편, 조선에서는 대마도에 回禮使와 報聘使라는 명칭⁵³⁾의 사절을 각각 한 차례씩 파견하였다. 즉 1399년(정종 2)에 왜구의 금지와 피로쇄환의 요청을 위해서 회례사 尹銘을 대마도와 일기도에 파견하였으며,⁵⁴⁾ 1409년에 보병하기 위해 護軍 平道全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다.⁵⁵⁾

2) 敬差官⁵⁶⁾

조선에서는 1418(태종 18)~1510년(중종 5)까지 대마도에 경차관을 9회(태종 1회, 세종 3회, 단종 1회, 세조 2회, 성종 1회, 중종 1회) 파견하였다. 원래 對馬島敬差官은 명칭상 조선초기의 대지방관인 '敬差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⁵⁷⁾ 그런데 대지방관이었던 경차관을 조선의 국내가 아닌 여진과 대마도에 파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대마도에 경차관을 파견한 것은 1418년(태종 18) 4월이다. 조선에서는 그동안 왜구를 금지시키는데 공이 많았던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의 죽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조선전기에 통신사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413년(태종 13) 朴賁의 사행이다. 그러나 통신사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은 1428년(세종 10) 朴瑞生의 사행이었다. 통신사의 개념과 규정에 대해서는 三宅英利, 1984, 『室町時代の朝鮮通信使』, 北九州大學 文學部紀要B系列 16卷, 3~6쪽

53) 回禮使와 報聘使는 원래 막부장군의 사신에 대한 回答과 報聘에 목적을 띠고 파견된 사행이다. 그러나 이들 사행은 구주절도사·대내전·일기도주·대마도주 등에게도 파견되었으며, 사행의 목적은 사신 파견에 대한 답례와 보병 그리고 피로인이나 표류인의 송환에 대한 치하를 위한 것이었다.

54) 『세종실록』 권107, 27년 2월 정묘

55) 『태종실록』 권17, 9년 4월 계사

56) 대마도경차관에 대해서는 한문중, 1992, 「조선전기의 對馬島敬差官」, 『전북사학』 15, 1~39쪽

57) 敬差官은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후 파견하였던 對馬地方官으로 그들은 왕명에 따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관의 업무까지 관여하였고, 또한 直斷權을 가지고 守令의 能否를 檢劾하고 申聞·治罪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鄭鉉在, 1979, 「朝鮮初期의 敬差官에 대하여」, 『慶北史學』 1, 135~170쪽

음에 대해 致祭와 賜膊를 위해 경차관 李藝를 파견하였다.⁵⁸⁾ 그 후 세종대에 이르러서 경차관의 파견이 빈번해지면서 1439년(세종 21)에는 경차관이 대마도에 가서 행할 事目이 마련됨으로써 대마도경차관의 파견이 외교의례화되었다.⁵⁹⁾ 이와 더불어서 그들의 수행임무도 약간 변화하여 대마도주의 죽음에 대한 致祭와 膊儀에서 세종대에는 점차 대마도와의 외교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되어갔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대마도에 경차관을 파견한 이유는 1409년(태종 9)을 전후하여 통교왜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에서는 대마도에 경차관을 파견하여 당면한 외교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일본에서 오는 통교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1438년(세종 20) 4월에 경차관 이예를 대마도에 파견하여 대마도주와 문인제도를 정약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차관의 파견은 그동안 여러 지방호족에 파견하였던 사행을 중지하고 외교장구를 대마도로 일원화하여 그들을 조선의 외교질서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더 원활한 외교체제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⁶⁰⁾ 결국 대마도 경차관의 파견은 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足利幕府 弱體觀과 결합하여 다원적이었던 외교체제를 막부장군과 대마도주를 축으로 이원화하여 대마도를 조선적 외교질서 속에 포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대마도경차관은 통교왜인에 대한 통제와 문인제도의 정약, 계해약조와 孤草島釣魚禁約의 준수와 위반자의 처벌요청, 그리고 三浦恒居倭人の 쇄환 등 당시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발생하였던 외교현안을 처리하고, 더불어서 島主와 島主家에 대한 致祭와 問慰 등을 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⁶¹⁾

한편으로 대마도경차관은 태종·세종대에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단종대부터 명칭상의 분화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대마도경차관의 역할증대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즉 1438년에 문인제도, 1443년에 계해약조가 정약된

58) 『태종실록』 권35, 18년 4월 갑진

59) 『세종실록』 권85, 21년 4월 갑진

60) 한문중, 1992, 앞의 논문, 7~8쪽

61)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21~37쪽

이후 일본과의 외교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자 그동안 대마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호족에 사신을 파견하던 다원적인 외교체제가 막부장군과 대마도주를 축으로 한 이원적인 외교체제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계해약조 체결 이후에는 구주의 大內殿 등 여러 지방호족에 파견하였던 사신이 단절되고 그것이 대마도주에게 집중됨에 따라서 대마도경차관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 결과 단종대부터는 대마도경차관의 역할이 致奠·致賻官(致慰官)·垂問使·宣慰使 등으로 세분화되었다.⁶²⁾

3) 賜物管押使

사물관압사는 조선의 표류인을 구조하여 송환해준 일본의 지방호족에게 하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가는 사행으로, 1426년(세종 8)에 한 차례 파견되었다. 파견경위를 살펴보면, 1425년 8월에 役을 피해 武陵島에 몰래 들어가서 거주하는 자들을 색환하기 위해 于山·武陵島等處按撫使 金麟雨를 파견하였는데, 귀환 도중에 병선 2척 중 1척이 조난을 당하여 石見州 長浜에 표류하였다. 長浜因幡守는 표착한 선군 張乙夫 등 10명을 구조하여 대마도로 호송하였으며, 對馬島都萬戶 사에몬타로[左衛門大郎]는 다시 이들을 조선에 송환하였다.⁶³⁾ 이에 조선에서는 1426년 2월에 사물관압사 李藝를 대마도주에 파견하여 표류

62) 대마도경차관의 범주에 致奠·致慰官, 垂問使, 宣慰使 등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조선후기 대마도에 파견한 問慰行과 사행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마도경차관이 對馬島主에게 파견한 사행이라는 점과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禮曹參議 명의로 된 書契와 別幅을 지참하였다는 점 그리고 島主의 慶弔事 問慰와 기타 외교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견하였다는 점 등이 조선후기 문위행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問慰行과 다른 점은 경차관은 倭學譯官이 아닌 中央의 관리를 임명한 반면 문위행은 堂上官과 堂下官에 倭學譯官을 임명하였다는 점과 경차관은 關白의 慶弔事나 島主의 還島를 문위하기 위해서 파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의 對馬島敬差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후기 問慰行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대마도경차관은 조선후기 문위행의 초기 형태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148쪽

63) 『세종실록』 권29, 7년 8월 갑술; 『세종실록』 권30, 7년 10월 을유·12월 계사

인을 송환해준 일에 대한 치하와 예물을 사급하는 한편 도주 소 사다모리의 祖母의 죽음에 대해 賻儀하였다.⁶⁴⁾

4) 體察使

체찰사는 원래 임시사절의 하나로, 지방에 변란이 있을 때 그 지방에 파견되어 군대를 지휘하거나 또는 군사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러한 군사적인 목적을 띤 체찰사는 대마도에 한 차례 파견되었다. 즉 1443년(세종 25) 6월에 명의 海寧衛地方을 약탈하고 대마도로 돌아가던 왜적이 西餘鼠島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 공선 1척을 공격하여 재물을 약탈해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세종은 먼저 尹仁紹를 대마도에 파견하여 도내의 사정을 탐지⁶⁵⁾하게 하는 한편 같은 해 7월에 李藝를 체찰사로, 牟恂을 부사로 삼아 서여서도에 침입하였던 적왜를 붙잡아오도록 하였다. 이에의 일행은 11월에 도주가 쇄환해준 적왜 13명과 피로인 7명을 데리고 귀환하였다.⁶⁶⁾ 한편으로 조선에서는 같은 서여서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기도에는 招撫官을 파견하였다.⁶⁷⁾

5) 致奠官·致賻官

치전관과 치부관은 대마도주의 죽음에 대한 致祭와 賻儀를 하기 위해 파견된 사행이다. 이 사행은 1452년(단종 즉위년)과 1496년(연산군 2)에 2회 파견되었다. 그런데 1452년의 사행은 1418년에 파견한 대마도경차관과 명칭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행목적은 동일한 것이었다.⁶⁸⁾ 따라서 치전관과 치부관은 그 성격

64) 『세종실록』 권31, 8년 2월 병자. 그러나 石見州 因幡守에게 보내는 서계와 예물은 左衛門大郎에게 전송하도록 한 사실로 보아 사행의 목적지는 대마도였음을 알 수 있다.

65) 『세종실록』 권100, 25년 6월 계사·정유

66) 『세종실록』 권102, 25년 11월 병오; 『세종실록』 권103, 26년 2월 임오

67) 『세종실록』 권101, 25년 8월 갑신

68) 『단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병오·8월 갑자; 『세종실록』 권4, 즉위년 10월 을사

상 경차관에서 분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치전관·치부관은 연군대에 치전관과 치위관으로 명칭이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1496년에는 도주 소 사다쿠니의 죽음에 치제하고 신도주인 소 기모리[宗材盛]의 습위를 致賀하기 위해서 치전관 金肆와 치위관 張斑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다.⁶⁹⁾

이처럼 대마도에 치전관과 치부관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에서 대마도 및 대마도주를 조선의 藩屏 또는 藩臣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⁰⁾ 따라서 조선에서는 변신인 대마도주가 죽으면 조선의 신하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신을 보내 치제하고 부의하였다.⁷¹⁾

한편, 경차관과 체찰사·선위사 등은 조선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파견하였지만 치전·치부관(치위관)은 대마도주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파견하였다.⁷²⁾

69) 『연산군일기』 권14, 2년 윤3월 정묘

70) 한편으로 대마도 내에서도 조선의 변방 또는 변신이라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1476년에 宗貞國은 宣慰使 金自貞에게 “아들 貞秀가 가업을 계승하여 오래토록 藩籬의 신하(永作籬臣)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성종실록』 권69, 7년 7월 병자), 1487년에는 대장경을 구청하면서 “영원토록 귀국 변방의 신하(貴國藩屏之臣)로 칭하여 충절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성종실록』 권200, 18년 2월 정축). 또한 1489년에는 특송을 파견하여 “나는 귀국의 동변이다(我爲貴國之東藩)”라고 하면서 황금과 주홍 무역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권224, 20년 정월 병자). 특히 이러한 藩屏意識과 藩臣意識은 宗貞國의 집권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는 조선의 성종대로, 중정국은 조선과 가장 활발하게 통교한 도주였다. 또한 이러한 변방의식은 삼포왜란 직후에 對馬州代官 宗盛親이 ‘대마도는 서해의 藩屏이고 조선과 일본국이 왕래하는 咽喉’임에도 불구하고 왜인들의 접대에 대한 불만으로 왜란을 일으켰다고 말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중종실록』 권11, 5년 4월 을미).

71) 致奠이란 致祭와 같은 의미로서 국가에서 왕족이나 대신 또는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제문과 제물을 갖추어 지내주는 제사이며, 致賻란 임금이 신하가 죽었을 때에 내리는 賻儀다. 『태종실록』 권11, 6년 3월 계묘;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신묘

72) 1509년(중종 4) 4월에 尹殷輔를 對馬島敬差官으로 파견하였는데, 사행도중에 대마도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논의 끝에 외교상의 전례에 따라 대마도경차관 윤은보의 사행을 도중에 중지시키고 대마도의 訃告를 기다려 弔慰使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중종실록』 권8, 4년 4월 갑신). 이로써 보면 조선에서는 島主가 죽고 新島主가 습위한 경우 對馬島에서 반드시 사신을 보내어 圖書의 改給을 요청한 후에 致慰·致奠使를 파견하는 것이 전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파견 목적에 따라 경차관과 치전·치위관을 구분하려고 하였지만 서로 겹하거나 또는 혼용하기도 하였다.⁷³⁾

6) 垂問使

조선에서는 대마도주가 죽거나 새로운 도주가 습위한 경우에 도주의 요청에 따라 치전·치위관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반란으로 새로운 도주가 습위한 경우에는 수문사를 파견하였다. 1522년(중종 17) 5월 일본 국왕사와 함께 온 대마도특송이 대마도주가 새로 들어섰음을 알리고 치위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논의 끝에 대마도주가 새로 습위한 경우 전례대로 치위사를 파견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 모리치카[宗盛親]가 소 모리 나가[宗盛長]를 죽이고 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치위사를 파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례에 따라 수문사의 파견을 결정하였다.⁷⁴⁾ 결국 조선에서는 대마도주가 죽거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주가 습위한 경우에는 치위사를 파견하는 것이 전례였지만, 반란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도주가 습위한 경우에는 수문사를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宣慰使(官)

선위사는 외국사신의 노고와 난리 또는 큰 재해를 당한 백성들의 위로, 그리고 왜구를 참살, 포획하였거나 군공을 세운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임시로 파견한

73) 1557년(명종 12) 정월 대마도에 사신을 파견하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마도주의 죽음에 대한 致祭와 신도주의 습위를 축하하기 위해서는 致奠官과 致賻官(致慰官)을, 도주(또는 대마도인)의 죄를 責諭하기 위해서는 敬差官을 파견하였다(『명종실록』 권22, 12년 정월 계미). 한편, 치전·치위관이 경차관을 겸한 예는 1496년(연산군 2) 윤3월에 파견한 致奠官 金碑과 致慰官 張珽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치전관 김률이 사행을 마치고 귀환하여 ‘對馬島敬差官’으로 복명하였다(『연산군일기』 권15, 2년 6월 무자).

74) 『중종실록』 권44, 17년 5월 신유

대지방관의 하나다. 조선에서는 선위사를 대마도에 4회 파견하였다. 처음으로 선위관을 파견한 때는 1461년(세조 7) 4월로, 도주 母의 죽음에 대한 賻儀와 島主家の 실화, 왜적의 聲息, 보고에 대한 하사물을 사급하기 위해 피상의를 파견하였다.⁷⁵⁾ 그 후 1470년에는 深處倭의 세건선 정약과 수외 세건선의 출선 금지 그리고 문인발행의 신증과 삼포 항거왜인의 송환요청, 留浦日限 등 왜인 접대규정의 준수 등 조선과 대마도 간의 외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위관 田養民을 파견하였다.⁷⁶⁾ 이어서 1476년에는 삼포왜인의 쇄환과 난동왜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도주 아들의 醺禮를 축하하기 위해 선위사 金自貞을 파견하였다.⁷⁷⁾ 마지막으로 1487년에는 변란에 대비하여 대마도와 화호를 유지하고 도내의 정세를 탐지하기 위해서 선위사 鄭誠謹을 파견하였다.⁷⁸⁾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선위사(관)는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외교문제를 처리하고, 또한 도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조위와 아들의 차례 축하 그리고 島主家の 화재에 대한 문위를 위하여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위사와 선위관은 같은 사행이지만 정사의 품계에 따라 3품 이상은 선위사로, 3품 이하는 선위관으로 칭하였다.⁷⁹⁾

한편, 성종대에는 대마도에 파견할 사행의 명칭을 둘러싸고 그의 명칭을 선위사로 할 것인가 경차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대체로 경차관은 삼포왜인의 쇄환 요청 등의 외교적인 일을, 선위사는 도주에 대한 선위의 일을 담당하였다.⁸⁰⁾ 그러나 실제로 선위사가 수행한 임

75) 『세조실록』 권24, 7년 4월 임진

76) 『성종실록』 권7, 원년 9월 병자

77) 『성종실록』 권64, 7년 2월 병술

78) 『성종실록』 권201, 18년 3월 병인

79) 이는 대마도에 파견한 宣慰使(官) 중에 司譯院僉正(정4품)인 田養民만이 宣慰官으로 칭하였을 뿐, 上護軍 皮向宜, 承文院判校 金自貞, 直提學 鄭誠謹은 모두 정3품관으로 宣慰使라 칭한 사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80) 『성종실록』 권60, 6년 10월 병술. 한편, 조선에서는 경차관과 선위사(관)를 구분하려 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차관과 선위관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68년(세조 14) 7월에 김호인의 사행은 1469년(성종 원년)에는 對馬島敬差官으로, 1479년에는 對馬島宣慰官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성종실록』 권2, 원년 정

무는 도주에 대한 선위뿐만이 아니라 삼포왜인의 쇄환과 일본의 정세탐지, 문인발행에 관한 일 등 외교적인 일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_ 대마도의 通交倭人

대마도가 조선과 처음으로 통교한 시기는 1397년 5월경이다. 즉 태조 6년 5월에 寧海府 丑山島에 투항한 항왜 중 군선을 약탈하여 도망간 상만호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하여 前司宰少監 朴仁貴를 대마도에 파견하였다.⁸¹⁾ 그때 박인귀가 가지고 간 서계는 대마도주가 邊將에게 보낸 서계에 대한 답서의 성격을 띠고 門下左政丞 趙浚이 對馬島守護 李大卿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 답서에는 도주가 보낸 서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추측해보면 대마도주가 군선을 약탈해서 도망간 상만호에 대한 처벌에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선에서는 대마도주 소 요리시계에게 상만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계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대마도가 조선과 통교한 최초의 기록이다.⁸²⁾

그 후 1398년(태조 7) 정월에는 대마도의 사인이 日本國 使者 및 壹岐, 羈家臺(博多) 使人과 함께 내조하였으며, 대마도의 사자가 단독으로 내조한 것은 같은 해 4월이다.⁸³⁾ 그 후 대마도의 통교는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였으며 임진왜란 직전까지 총 2,385건으로 전체 통교건수(4,842)의 49.3%에 달하였다.⁸⁴⁾

대마지방의 통교자를 對馬島主와 島主一族·仁位 宗氏·早田氏·島主

월 기사; 『성종실록』 권103, 10년 3월 정해).

81) 『태조실록』 권11, 6년 5월 정사. 상만호는 知蔚州事 李殷을 붙잡아 도망갔던 왜구의 首魁 相田於中이라고 생각된다(『태조실록』 권11, 6년 정월 병진).

82) 長節子는 李大卿은 宗大卿의 誤字이며 宗賴茂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대마도주가 조선과 통교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였다. 長節子, 1987, 앞의 책, 43~43쪽

83) 『태조실록』 권13, 7년 정월 기유; 『태조실록』 권13, 7년 4월 기사

84)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27쪽

〈표 2〉 朝鮮前期 對馬島 通交者의 通交件數

시 기 통교자	제1기 (1392~1419)	제2기 (1420~1443)	제3기 (1444~1471)	제4기 (1472~1510)	제5기 (1511~1592)	전 체
對馬島主	81(52.3%)	238(48.4%)	292(48.2%)	472(44.7%)	67(89.3%)	1150(48.2%)
島主一族	23(14.8%)	71(14.4%)	82(13.5%)	157(14.9%)	1(1.3%)	334(14.0%)
仁位 宗氏	2(1.3%)	59(12.0%)	113(18.6%)	123(11.6%)	0(0%)	297(12.5%)
早田氏	11(7.1%)	83(16.9%)	21(3.5%)	35(3.3%)	0(0%)	150(6.3%)
島主管下 · 其他	38(24.5%)	41(8.3%)	99(16.3%)	269(25.5%)	7(9.4%)	454(19.0%)
소 계	155(100%)	492 (100%)	607(100%)	1056(100%)	75(100%)	2385(100%)

* 이 표는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37쪽 〈표 5〉를 전재한 것임.

管下 및 기타 중소통교자로 나누어서 각 시기별⁸⁵⁾ 통교 기록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해서 각 시기별 연평균 통교횟수를 살펴보면, 제1기 5.5회, 제2기 20.5회, 제3기 21.7회, 제4기 27.1회, 제5기 0.9회로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삼포왜란 이후부터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기별로 가장 많이 통교한 시기는 역시 제4기인 성종대였다.

다음에는 대마지방 통교자의 특징을 살펴보자.⁸⁶⁾ 먼저 대마도주의 통교는 전체의 48.2%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조선에서 조일관계에서 대마도주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를 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대마도주의 대조선 통교의 특징은 ① 통교시에 ‘對馬島守護’, ‘對馬州太守’, ‘對馬島主’ 등을 혼용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주로 ‘對馬州太守’를 사

85) 시기 구분은 한일관계의 전개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대마도 정벌, 삼포 왜란)과 제도의 정비(계해약조, 해동제국기의 편찬)를 근거로 제1기(1392~1419) 통교체제의 성립기, 제2기(1420~1443) 통교체제의 정비기, 제3기(1444~1471) 통교체제의 확립기, 제4기(1472~1510)는 통교체제에 대한 모순이 노출된 시기, 제5기(1511~1592) 통교체제의 붕괴기로 구분하는 시기구분에 따랐다. 시기구분 문제에 대해서는 한문중, 1996, 위의 논문, 25~27쪽

86) 조선전기 대마지방 통교자의 특징에 대하여는 한문중, 1996, 위의 논문, 37~59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용하였다. ② 도주직을 계승하기 전과 후에는 통교시에 사용하는 직칭이나 세견선, 세사미두의 수에서 구분이 있었다. ③ 도주 중에서 가장 먼저 통교한 자는 소 요리시게이며, 가장 활발하게 통교한 자는 소 사다쿠니였다. ④ 도주 중에 소 사다모리와 소 시게모토는 도서를 사급받은 수도서왜인이었다. 특히 소 사다모리는 도내 최초의 수도서인이었으며, 소 시게모토는 兒名圖書를 사급받기도 하였다. ⑤ 삼포왜란 이후에는 통교시에 도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對馬島主’ 또는 ‘對馬州守護’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도주의 통교 비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통교는 격감되어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렀다.

도주일족의 통교는 1~4기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5기에는 단 1건밖에 없었다. 도주일족 중에서 사미 레이칸[沙彌靈鑑]이 처음으로 통교하였으며, 소 모리히로[宗盛弘]가 가장 활발하게 통교하였다. 특히 도주와 도주일족의 통교를 합하면 대마도 통교의 61.3%에 달하였다.

仁位 宗氏は 제1기에는 거의 통교하지 않았으나 2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3기에 가장 활발하게 통교하였다. 특히 인위 종씨는 도주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통교는 대마도주의 도내 통치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仁位 宗氏의 대조선 통교의 특징은 ① 仁位 宗氏 중에는 세견선 정약자와 수도서·수직인이 많았는데, 이는 독자적인 통교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② 도주 소 사다쿠니 이후에는 대마도주와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對馬島代官으로 통교한 자가 많았다.

早田氏は 왜구의 우두머리가 통교자로 전환한 대표적인 예로, 이들의 통교는 2기에 집중되었다. 특히 사에몬타로의 통교는 도주의 그것을 능가하였으며, 일족 중 7명이 수직왜인이었다. 이는 왜구의 변질과정(왜구 → 통교자 → 수직왜인)과 早田氏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⁸⁷⁾

도주관하 및 중소 통교왜인의 통교는 1기와 4기가 비교적 높았고 2기와 5기

87) 早田氏의 조선 통교에 대해서는 한문중, 2000,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대조선 통교」, 『한일관계사연구』 12, 71~92쪽.

가 낮았다. 이들의 통교는 ① 통교자의 관직이나 계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千戶·萬戶·都萬戶 등을 칭하면서 통교한 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아마 왜구가 통교자로 전환한 자들이었다고 생각한다. ② 3기 이후에는 도주의 특송이나 관하로 신분이 확실한 자들이 대부분이며, 통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그들이 도주관하로 흡수되어가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수직 왜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통교는 주로 3기와 4기에 집중되었다.

V. 맺음말－한일관계에서의 대마도의 역할

대마 종씨가 대마도로 들어오기 이전인 1008년경 대마도에는 阿比留氏가 대재부의 재청관인으로 주재하고 있었다. 阿比留氏는 고려와 대마 사이에 진봉선 무역이 정례화될 때에 대고려 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2세기 말부터 惟宗氏의 세력이 阿比留氏를 앞지를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13세기 중엽 이후 惟宗氏는 對馬國地頭代로서 막부계의 현지 최고책임자가 되었다. 그 후 대마도에서는 도주직을 둘러싸고 대마 종씨와 仁位宗氏가 대립하고 있었지만, 결국 소 사다시게가 도주직을 차지하였다. 한편 대마 종씨는 13세기 후반부터 小二氏의 被官으로, 14세기 중엽부터는 筑前守護代를 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 사다시게는 筑前守護代로서 북부구주에 진출하였다. 그 틈을 타서 仁位宗氏의 소 요시시게가 봉기하였으나 결국 소 사다시게에게 진압당하였다. 특히 소 사다시게는 1408년에 동생 소 사다즈미에게 筑前州守護代職을 물려주고 대마도에 정착함으로써 宗氏家督과 축전주 수호대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대마도 내의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조선 정부의 다양한 왜구대책의 실시 결과 1409년을 전후로 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였고, 반면에 일본 각 지역에서 도항하는 ‘통교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1418년 4월 왜구의 통제에 적극 협력하였던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죽은 이후부터 다시 왜구의 침입이 증가하자 조선에서는 대마도정벌을 단행하였다. 대마도정벌은 왜구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이 왜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대일외교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거나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주로 편입됨에 따라 이후 조선에서는 대마도를 조선의 변병으로 또는 변신으로 인식하는 ‘對馬藩屏意識’과 ‘對馬屬州意識’이 일반화되었으며,⁸⁸⁾ 대마도가 조일외교의 중간세력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마도정벌은 조선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마도와 기미관계의 외교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에 양속되어 외교관계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상의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포소의 제한과 書契·圖書·文引에 의한 통제 그리고 歲遣船 정약 등의 왜인통제책을 실시하였다. 조선 정부의 통제책은 대마도주를 조선 중심의 정치·외교질서인 기미체제에 편입시키는 대신 그에게 여러 가지 통교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인제도와 계해약조는 조선과 대마도 간의 외교관계를 정례화함으로써 이후 대일 외교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이 되었고, 대마도주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호족들을 조선 중심의 정치·외교질서인 기미관계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마도주는 왜인통제책을 기반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양속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조일외교에서 그의 역할을 더욱 증대해갈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대마도사행은 모두 33회에 이르렀으며, 주로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집중되었다. 그 배경은 아마 왜구문제의 해결과 왜인통제책 정비 등의 외교적인 교섭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파견

88) 대마속주의식과 대마변병의식은 『동국여지승람』에도 계승되면서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마속주의식은 세종대 이후 점차 관념적인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반면에 대마변병의식은 현실에 바탕을 둔 것으로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하우봉, 1996, 「한국인의 대마도인식」,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35쪽

한 사행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경차관과 선위사, 체찰사 등은 조선의 대지방관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된다. 이는 조선이 대마도를 조선의 변병 또는 속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증이며, 대마도의 양속관계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조선의 지방관에게 주었던 문인 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 준 것이 아닐까? 또한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세전선의 정약과 도서의 사급 등 통교상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닐까?

대마지방의 통교는 2,385건으로 조선전기 일본지방 통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대마도주의 통교는 전체의 48.2%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조선에서 조일관계에서 대마도주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를 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조선전기 대일외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조선의 대일교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며, 대마도의 지리적 위치를 중시하여 幕府將軍보다는 對馬島主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조선과 대마도의 외교체제가 막부장군과는 달리 기미관계의 외교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⁸⁹⁾ 셋째로, 대마도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조선과 일본에 양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의 역할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⁹⁰⁾ 첫째는 조선의 남쪽 藩屏으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대마도의 지리적 위치를 중시하여, 그곳을 관할하는 대마도주에게 여러 가지 통교상의 특권을 주고 왜구의 금지와 통교자를 통제하면서 남방의 안정을 꾀하려 하였다. 특히 문인의 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 준 것은 대마도를 조선의 변병으로 인식하고 대마도주를 통해서 통교자를 일원적으로 통제하려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89) 한문중, 1996, 앞의 논문, 175쪽

90)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의 대마도 역할에 대해서는 한문중, 1996, 위의 논문, 176~177쪽

둘째는 조일무역의 중개지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대마도는 조선과 가장 활발하게 통교하였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나 필요한 물품을 일본의 본토나 琉球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공급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조선의 산물을 九州 등지의 본토에 공급함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셋째는 조선 문화의 일본 전파지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대마도는 조선의 대마사행과 대마도의 통교왜인의 내조를 통해서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조선에서는 대마도를 통해서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佛書·佛具·梵鐘·유교서적 등을 일본에 전파하였다.⁹¹⁾ 이를 통해서 일본은 불교문화와 유교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대마도의 향화왜인이나 통교왜인을 통해서 의술·조선술·제련술 등을 전수받기도 하였다.

넷째로 대마도와 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수집 장소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조선의 대일사행은 외교적인 교섭과 함께 일본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443년(세종 25) 卞孝文의 사행을 끝으로 1590년까지 조선의 사절이 京都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대마도에 파견된 사행원이 일본의 국내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대마사행이 수집한 정보는 직접 견문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확한 것이 많았다. 또한 삼포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쇠퇴하면서 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대마도가 조일 간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마도정벌 이후 대마도가 조선의 속주에 편입됨으로써 조선과 일본에 양속되었고, 문인제도와 계해약조 등의 왜인통제책을 활용하면서 양속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는 그들의 역할을 더욱 증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91) 한문중, 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 求請과 한일간의 문화교류」, 『한일관계사연구』 17, 5~58쪽

참고문헌

- 민덕기, 1994, 『前近代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 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 편, 2007,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 국학자료원
- 손승철,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 이현중, 1964, 『朝鮮前期 對日 交渉史研究』, 한국연구원
- 한문중, 1996,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문중, 2001, 『조선전기 향화 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 한일관계사연구회, 1996,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 손흥렬, 1977, 「麗末·鮮初の對馬島征伐」, 『湖西史學』 6
- 이은규, 1974, 「15世紀初 韓·日 交渉史研究－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3
- 장학근, 1983, 「朝鮮의 對馬島 征伐과 그 支配政策－對外政策을 중심으로」, 『論文集』 8, 해군사관학교
- 하우봉, 1990, 「朝鮮初期 對日 使行員의 日本認識」, 『國史館論叢』 14, 국사편찬위원회
- 하우봉, 1994, 「조선전기의 對日關係」, 『강좌한일관계사』, 현음사
- 한문중, 1992, 「조선전기의 對馬島敬差官」, 『전북사학』 15, 전북대학교 사학회
- 한문중, 1995, 「조선전기 對馬島의 통교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3
- 한문중, 1997, 「조선초기의 倭寇對策과 對馬島征伐」, 『전북사학』 19·20, 전북대학교 사학회
- 한문중, 2000,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 12, 한일관계 사학회
- 關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關周一, 2012, 『對馬と倭寇』, 高志書院
-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 長節子, 2002,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 黒田省三, 1970, 「宗氏の承統と對馬守護の職稱」, 『朝鮮學報』 55

[ABSTRACT]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sushima

Han Moonjong

As the Sō family (宗氏) were officials of the Shoni family (小貳氏) from the late thirteenth century and held the additional post of Vice Governor of Chikuzen Province (J. *Chikuzen shugodai* 筑前守護代) from the mid-fourteenth century, Sō Sadashige (宗貞茂) advanced in to northern Kyushu as Vice Governor of Chikuzen Province. Later, in 1408, Sadashige passed this position to his younger brother Sō Sadazumi (宗貞澄) and settled in Tsushima and established his rule over Tsushima.

Due to the Joseon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against Japanese pirat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pirate attacks rapidly decreased from around 1409, while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qualified to sail to Joseon from Japan increased. However, attacks resumed after Sadashige, who had actively cooperated to control Japanese pirates, died in the fourth lunar month of 1418. The Joseon government thus determined to conquer Tsushima. With this military action, the Joseon government eradicated Japanese pirates. This was significant because the Joseon government ha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stablish an advantageou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sushima. This situation greatly improved diplomacy with Japan.

Meanwhile,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nd to eliminate the confusion of public peace and order caused by Japanese, the Joseon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It reduced the ports the Japanese could use; controlled their entrance by requiring specific documents, certificates for trade, or entry permits; and introduced strict limits on trade ships. The control policies of the Joseon government were implemented to place the governor of Tsushima under a system of control, in other words, a Joseon-centered political or diplomatic order, while giving the governor several privilege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ose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irty-three envoys sent to Tsushima are recorded. Among these, twenty were sent from the reign of King Taejo (r. 1392–1398), who was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18–1450). Diplomatic relations with Tsushima account for about half of those with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mong them, the amicable relations with the governor of Tsushima were the most, at 48.2%, and were maintained continuously and securely. This means that the Joseon government highly valued and respected the governor of Tsushima.

Considering the facts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s diplomacy with Japan in the early Joseon are: first, Joseon's negotiations with Japan were active and progressive; second, the Joseon government thought so much of Tsushima's geographical location that it made the most of the governor of Tsushima rather than the shogun of Japan's feudal government; third, differ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Japan's feudal government, the Joseon government could maintain a more controllabl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sushima. In addition, the roles of Tsushim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first, as the southern military base of the Joseon government; second, as the

intermediary in trade between Joseon and Japan; third, as the base for spreading the culture of Joseon; and lastly, as the location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not only Tsushima but also the whole of Japan.

Keywords

Japanese pirates, Subjugation of Tsushima, *Munin* system, Kyehae Agreement of 1443, *Kimi* relations, Sō famil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민덕기 ■ 청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I. 머리말

조선시대의 對日관계는 대마도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계해 약조(1443) 이후 구체화된 조선과의 무역관계를 가지게 된 대마도는 文引 발급권까지 조선으로부터 위임받아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해갔다. 무로마치막부의 영향력 저하에 발맞추어 외교적 역량을 키워갔고, 『해동제국기』적 ‘巨漚’세력들이 戰國시대를 맞아 浮沈하면서 조선과의 관계가 뜸해져가자, 조선에 대한 대마도의 일본에서의 제반 영향력이 확대되어갔다. 그러므로 삼포왜란(1510) 이후 대마도와 조선의 제반 관계가 축소되어갔다고는 하나 그 독점적 지위는 지속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정벌’ 천명은 대마도에겐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다. 쿠빌라이의 ‘일본 정벌’이 고려의 땅을 거쳐 고려의 군량과 군사를 징발해 진행된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은 대마도를 경유하고 대마도의 군사를 징발해 이뤄질 것이 뻔했다. 무엇보다도 대마도의 제반 조선과의 관계는 붕괴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마도가 취할 대응은 전쟁방지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터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의사 표명은 1585년 9월 간파쿠[關白] 취임 직후부터였다. 이를 대마도에 통고한 것은 다음 해인 1586년 6월이었다. 이때부터 대마도가 조선에 행한 교섭을 검토하면 대마도의 입장과 희망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前夜 일본 측과 조선의 교섭에 대한 기존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대마도의 입장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춘 연구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다.¹⁾

왜란 전야의 대마도를 통한 조선 교섭은 대마도주의 이름으로 대마도에 의해 전개되었기 때문에 대마도의 전략이 통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왜란이 막상 터지자 대마도의 독자적 조선 교섭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제1군 휘하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장악과 중국 침략이란 의도와 명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조선 교섭에 관한 기존 연구는 全無하다. 그렇다면 ‘主戰派’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 비하여 ‘主和派’로 일컬어진 고니시 유키나가의 강화교섭을 중심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²⁾

- 1) 왜란 직전 대마도의 조선 교섭과 관련한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金文子, 1991, 『文祿・慶長期に於ける日明和議交渉と朝鮮』,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 人間文化研究科課程 博士學位論文; 윤유숙, 2007,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발발 전 한일교섭 실태」, 『일본학보』 70; 한문중, 2009, 「壬辰倭亂 직전의 국내정세와 韓日關係」,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1; 田中敏昭, 1996, 『壬亂前の 豊臣政權과 對馬島主宗氏の 朝鮮外交: 總無事令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田中敏昭, 1999, 「豊臣政權의 日本統合과 對馬島主 宗氏の 朝鮮交渉」, 『동서사학』 5
- 2) 가토 기요마사의 강화교섭과 관련된 연구로는 北島万次, 2007, 『加藤清正』(吉川弘文館), 김문자, 2012,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한일관계사연구』 42)가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강화교섭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문자, 2005,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정신문화연구』 28[3]), 손은주, 2003, 『壬辰倭亂期の 講和交渉에 關한 考察: 小西行長の 講和交渉을 中心으로』(경상대

7년 전란이 끝나고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자, 왜란 이전처럼 다시 대마도가 조선을 오가면서 강화교섭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마도의 교섭은 왜란 이전의 경우, 조선 경략과 중국 침략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도를 조선을 통해 어떻게 희석시켜 전쟁 방지로 이끌 것인가였다. 이에 비하여 왜란 이후는, 일본 측의 講和, 구체적으로는 조선으로부터 통신사의 파견을 어떻게 얻어 내느냐 였을 것이다. 그래야만 대마도의 조선과의 무역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기존연구 역시 많지 않다.³⁾

이 글에서는 이처럼 많지 않은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왜란 이전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에 대한 대마도의 입장과 대응 및 표출된 교섭의 내용을, 왜란 중엔 고니시 유키나가와 대마도가 어떤 방향으로 전란을 끌고가려 했는가 밝히고자 한다. 강화교섭기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신하여 浮上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徳川家康]와 대마도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조선이 어떻게 ‘불구대천지원수’로 자리매김했던 일본과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가를 대마도와 관련지어 검토하고자 한다.

II. 임진왜란 이전 대마도의 조선 교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과 중국을 정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간파쿠에 취임한 지 두 달 후인 1585년 9월이었다. 즉 腹心の 部將 히도쓰야나기 스에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島津亮二, 2010, 『小西行長－抹殺されたキリシタン大名の實像』(八木書店)이 있다.

- 3) 왜란 후 강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태, 2007, 『壬辰倭亂 直後 朝鮮의 對日講和政策 性格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경태, 2007,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 138; 민덕기, 1987·1989,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 講和교섭과 대마도(1)(2)」, 『사학연구』 39·40; 민덕기, 1990, 「朝鮮後期 朝·日 講和와 朝·明관계」,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홍성덕, 1995,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

야스[一柳末安]에게 明 정복의 포부를 말하고 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간파쿠 취임 직후부터 동아시아 정복계획을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⁴⁾

1586년 6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출병에 즈음하여 대마도주 宗氏에게 서한을 내어, 규슈 출병에 이어 준비가 되는데로 조선 정벌을 결행할 것이니 충성을 다하여 종군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있다. 이 서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의 외교적인 접촉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조선에 대한 군사적인 정복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그가 당초부터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⁵⁾ 이에 宗氏는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와 유즈야 야스히로[柚谷康廣]를 사쓰마[薩摩]의 진지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고 있다.⁶⁾

1587년 5월 초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마즈씨를 정벌하기 위해 사쓰마에 진치고 있을 때 대마도주 소 요시시게[宗義調]가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사자로 보내 공물을 진상했다.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이때 출병 대신 조선에서 공물이나 인질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제안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제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조선 국왕을 일본 天皇宮에 來朝시키도록 명하고, 만약 직접 내조하지 않을 경우 조선에 출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곧이어 소 요시시게도 아들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함께 규슈로 건너가 6월 7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처음으로 알현하고 있다. 이때 소 요시시게는 조선 국왕을 내조시키는 조건으로 조선 출병의 유예를 청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입조가 지체될 경우 즉시 출병하겠다고 재차 통고했다.⁷⁾

4) 北島 功次, 1995,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4쪽.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일본 간의 교섭에 대해서는 金文子, 1991, 앞의 책 제1장인 「文祿期以前の對朝鮮交渉と博多商人」에 상세하게 검토되어 있다.

5) 윤유숙, 2006, 「임진왜란 발발전 한일교섭의 실태」,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No. 7, 881쪽

6) 中里紀元, 1993, 『秀吉の朝鮮侵攻と民衆・文祿の役－日本民衆の苦惱と朝鮮民衆の抵抗』, 文獻出版, 14·17쪽

7) 윤유숙, 2006, 앞의 논문, 881쪽

그런데 이때 내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엔 “(조선이) 지금까지 쓰시마 다이묘에게 순종하고 있지만”(今迄對馬の屋形ニしたカハレ候間), 내년엔 반드시 일본에 입조하라고 되어 있다.⁸⁾ 이처럼 대마도주 宗氏에게 조선이 복속되어 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해하고 있었다. 마치 이것은 유구가 시마즈[島津]씨에게 종속하고 있다고 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마즈·琉球관계 이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⁹⁾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국왕의 직접적인 來朝를 고집하는 것도 대마도주에 종속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의 조선관이 작용했기 때문인 듯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이 대마도에 종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조선 국왕의 來朝가 이뤄지면 대마도 일원의 통치를 宗氏에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¹⁰⁾

宗氏が 가신 유즈야 야스히로를 일본국왕사라 칭하여 조선에 파견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전한 것은 1587년 9월이다. 이때 宗氏의 장인이며 그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경우, 자신의 경제기반을 중계 무역에서 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대외적 평화 유지와 무역 지속이 요망되었다. 그러므로 宗氏와 상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인 조선 국왕의 직접 來朝 요구를 숨기고 통신사의 파견 요청으로 조선에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¹¹⁾

이에 유즈야 야스히로는, 일본에 새 왕이 나와 전국을 통합하였으므로 이

8) 島津亮二, 2010, 앞의 책, 112쪽; 中里紀元, 1993, 앞의 책, 19쪽

9) 池内宏, 1914, 『文祿慶長の役 正編 第1』, 58쪽. 16세기 중반 이후 시마즈씨는 유구 국왕에 대한 문서에서 유구를 복속한 것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8년 유구의 굴복을 시마즈씨에게 위임한 것도, 시마즈씨로부터의 그와 같은 일방적인 자리매김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구가 다음 해인 1589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축하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시마즈씨의 위협에 굴복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 후 임진왜란에 즈음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7,000명의 10개월치 군량 징납을 시마즈씨를 통해 유구에게 요구하였고, 재정이 빈약한 유구는 요구의 절반을 징납하고 나머지는 시마즈씨에게 빌려 채우고 있다(河宇鳳 외 공저, 赤嶺守의 번역, 2011, 『朝鮮と琉球』, 榕樹書林, 51쪽).

10) 北島万次, 1995, 앞의 책 16쪽, 20쪽

11) 笠谷和比古·黒田慶一 共著, 2000, 『秀吉の野望と誤算』, 文英堂, 30쪽

를 축하하는 통신사를 파견해달라고 조선에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서한에는 ‘天下歸朕一握’이라 하여 ‘朕’이란 표현이 있었고 내용도 오만했다. 결국 요청은 거부되었고 유즈야 야스히로는 빈손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부 보고를 접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격노하여 유즈야 야스히로와 그 일족을 멸하였는데, 그 이유를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유즈야 야스히로가) 우리나라(조선) 편을 들어서 그 요청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의심해서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¹²⁾

1589년 3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소 요시토시에게 조선 국왕 내조가 2년이 경과하도록 이뤄지지 않은 것을 꾸짖고, 소 요시토시가 직접 조선으로 가 이번 여름에라도 국왕 입조를 실현하라고 독촉했다.¹³⁾ 이 때문에 소 요시토시는 6월 하카타[博多]의 聖福寺 승려 겐소[玄蘇]를 正使로 삼고, 자신은 부사가 되어 자신의 가로인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都船主로 설정하여, 여기에 하카타 상인 시마이 소시쓰[島井宗室] 등 25명을 일본 국왕의 사절로 꾸며 데리고 조선으로 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使命은 오직 통신사 파견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논의가 일어났다. 즉 일본 교토로 가는 바닷길을 모르기 때문에 파견할 수 없다고 핑계대면 대마도가 길 안내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니 구실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핑계만 계속하면 일본이 이를 수시처럼 여겨 화친을 단절하고 조선을 침범하여 설욕하려들 것이고, 그리되면 변방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마침 몇 년 전에 조선 叛民 沙火同을 안내인으로 고토[五島]·히라도[平戸]의 왜인들이 손죽도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화동과 왜구의 압송 및 피로인의 송환을 요구하여 이를 이행하면 통신사 요청을 들어

12) 『선조수정실록』 20년 9월 1일조

13) 당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국왕의 입조가 또다시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히고[肥後]에 入部한 고니시 유키나가·가토 기요마사를 규슈의 다이묘들과 함께 조선에 출병시키려 했으나, 소 요시토시가 자신이 직접 조선과 교섭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계획은 중지되었다 한다(三鬼清一郎, 「秀吉の國家構想と朝鮮出兵」 [大石愼三郎 編, 1986, 『海外視點 日本の歴史8』, ぎょうせい], 136쪽). 소 요시시게는 1588년 사망하여 대신하여 아들 소 요시토시가 대마도를 이어받았다.

주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¹⁴⁾

8월 말 선조가 일본국왕사를 인견하면서 조선의 조건이 전달되었고, 소 요시토시는 즉각 沙火同을 잡아오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조선의 조건부 통신사 파견결정은 소 요시토시 — 고니시 유키나가 — 아사노 나가마사[淺野長政]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달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로써 조선 국왕이 내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소 요시토시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¹⁵⁾

일본국왕사 겐소와 소 요시토시는 서울의 동평관에 체류하면서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일본으로 급파해 손죽도를 습격한 왜적 및 사화동을 압송하고 피로인도 송환하게 했다. 고토에 있는 사화동의 압송과 피로인 송환에는 하카타의 상인 시마이 소시쓰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조속하게 이를 이행할 수 있었다.¹⁶⁾ 사화동과 160명의 피로인이 조선으로 보내져 서울에서 이를 처리한 것은 1590년 2월 28일이다. 그리고 통신사가 서울을 출발한 것은 3월 6일이다.¹⁷⁾

14) 1587년 2월 왜구가 전라도의 손죽도(전남 선죽도)를 비롯하여 각처를 습격한 결과 鹿島만호 이대원이 살해당했고 조선인들이 다수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납치된 사람들 중 전라도 좌수영 鎭撫 김재동과 이연세 등이 타국으로 전매되었다가 중국을 경유하여 1588년 조선으로 귀국하였는데 김개동의 진술을 통해, 손죽도 습격사건에서 왜구의 길안내를 한 자가 전라도 출신의 조선인 사화동이라는 인물이고, 사화동은 고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생포된 조선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선조실록』 21년[1588] 11월 17일[병인]조).

15) 田中敏昭, 1996, 앞의 논문, 107~108쪽. 소 요시토시의 보고사항(통신사 파견)을 전달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매우 기뻐하며 “國主參洛이 寒天 때문에 부자유하여 來春에 데리고 오기 위해 그곳에 체류한다 하니 장기간의 辛勞가 지극하다” 고 하면서 의지의 노고를 칭찬하였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의 보고문에는 분명 ‘高麗人의 出船’(통신사의 渡日)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國主參洛’, 즉 조선 국왕의 入貢으로 완전히 곡해하여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윤유숙, 2006, 앞의 논문, 883쪽).

16) 이에 대해서는 金文子, 1991, 앞의 책, 12~29쪽에 상세하다.

17) 田中敏昭, 1996, 앞의 논문, 108~109쪽. 中里紀元도 이와 관련하여 사화동과 이들 왜구의 포박에는 규슈 다이묘들의 소 요시토시에 대한 협력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소 요시토시의 장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에 건너가 있던 소 요시토시와 규슈의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는 긴밀한 연락 채널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니시 유키나가 자신이 조선에의 사자로서

경인통신사는 1590년 5월 1일 부산을 출발하였고, 수도 교토에 들어간 것은 7월이다. 그런데 통신사가 교토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간토[關東]지방의 호조[北條]씨를 정벌하고 있다. 그만큼 내정 안정이 우선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조씨의 항복은 7월에 이뤄지지만 동북지방의 토지조사를 명하는 등, 교토로 돌아온 것은 9월이었다. 그러나 또 2개월이 지난 후에야 11월 7일 자신의 거처인 주라쿠테이[聚樂第]에서 겨우 접견하기에 이른다.¹⁸⁾

이때 대마도 측은 처음엔 통신사를 ‘高麗關白’이라고 거짓으로 선전했다. 그래서 일본 기록인 『言經卿記[도키쓰네쿄키]』, 『晴豐記[하레토요키]』에도 그렇게 애초에는 기록하고 있다. 후에 가서야 ‘高麗人’, ‘狛人’이라 고쳐 기록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한 통신사가 그저 조선의 외교사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접견 의례도 간략하게 행하고 다이묘들도 거의 동원시키지 않았다. 公家 5명에 히데요시 측근 3명뿐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복속시킨 다이묘들은 한 명도 없었다.¹⁹⁾ 이러한 薄待엔 조선 국왕의 직접 來朝가 아니라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관, 즉 대마도에 종속된 조선이라는 인식 또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인통신사의 일본 체류기간 대마도가 보인 행위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란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긴박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성일이 대마도주에게 보낸 서한에는 대마도 측이 예전에 중단된 특송선의 파송 부활, 세견선의 증가, 圖書 증가, 受職人 회복 등을 사신에게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일은 이에 대해 朝廷이 결정할 일이라고 미루고 있다. 이 서한은 『朝鮮通交大紀』에도 실려 있다.²⁰⁾ 이로 보아 이 시기 대마도 측은 임진왜란의 발발을 회피

시마이 소시쓰를 소 요시토시에게 동행시켜 자기의 연락망을 만들어 나가마사 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中里紀元, 1993, 앞의 책, 27~28쪽).

18) 中里紀元, 1993, 앞의 책, 28쪽.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新營 중이던 御所(천황궁)가 완성되면 통신사를 데리고 천황에게 參內하여 자신의 위광을 높이려 했으나 고려인 파위를 內裏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公家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라쿠테이에서 통신사를 접견하게 된다(윤유숙, 2006, 앞의 논문, 884쪽).

19) 田中敏昭, 1996, 앞의 논문, 113쪽. 『言經卿記』는 公家 山科言經의 일기이며, 『晴豐記』는 公卿 勸修寺晴豐의 일기. ‘狛人’는 고마비토라 읽어 ‘高麗人’과 같은 의미.

20) 김성일 지음·정선용 번역, 1998, 『국역 학봉전집 1』, 369~371쪽; 松浦霞沼 지음,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오히려 통신사 왕복을 기회로 그간 축소된 무역 관계의 확대를 획책하려 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²¹⁾

1591년 3월 경인통신사의 귀국에 동행한 일본국왕사 겐소는 선위사 오역령에게, 내년 조선의 길을 빌려 중국을 범할 것이라고 말했다.²²⁾ 이어 윤3월 상경한 겐소가 김성일에게 ‘假道入明’ 요구를 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수정실록』을 보자.

이때 겐소가 은밀히 김성일에게 말하기를,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거절하여 조공을 바치려 가지 못하였다. 平秀吉이 이 때문에 분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쌓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다. 만약 조선에서 먼저 奏聞하여 조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조선은 반드시 무사할 것이고 일본 백성들도 전쟁의 노고를 덜게 될 것이다” 하니, 성일 등이 大義로 헤아려볼 때 옳지 못한 일이라고 타이르자, 겐소가 다시 말하기를, “옛날 고려가 元나라 병사를 인도하여 일본을 쳤었다. 이 때문에 조선에 원한을 갚고자 하니, 이는 사세상 당연한 일이다” 하였다. 그의 말이 점점 패려하여 성일이 다시 캐묻지 못하였다.²³⁾

여기서 겐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를 변형시켜 그 성취를 희망하고 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인 조선 국왕의 직접적 내조를 대마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축하 통신사 파견’ 요구로 바뀌치기해 교섭한 것처럼, 이번엔 明 정복 길잡이(‘征明假道’) 명령을 ‘가도입명’ 교섭으로 바뀌치기한 것이다. 그리고 6월 소 요시토시가 도항하여 재차 ‘가도입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채 10여 일 만에 돌아가고 만다.

田中健夫·田代和生 校訂, 1978, 『朝鮮通交大紀』, 名著出版, 126~129쪽

21) 1555년 고토[五島]를 근거지로 한 王直의 왜구선단이 전라도 방면으로 출동한 을묘왜변이 발생하였다. 이때 대마도주 宗氏는 무역관계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여 이 정보를 조선 측에 신속하게 전해주었다. 이로 인해 1557년 宗氏는 조선에의 세전선을 30척으로 개선(丁巳약조)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北島万次, 1995, 앞의 책, 19쪽).

22) 『선조수정실록』 24년 3월 1일조

23) 『선조수정실록』 24년 윤3월 1일조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보고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1년 8월, ‘唐入’ 決行을 다음 해 봄에 실행할 것을 전국에 통고한다. 그리고 나고야(名護屋)城의 축조를 규슈의 다이묘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9월에는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鎮信)에게 이키(壹岐)에도 성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²⁴⁾

나카자토 노리모토(中里紀元)는 다음처럼 추측하고 있다. “겐소와 소 요시토시 및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과의 조공관계라도 회복되면 ‘반드시 히데요시의 대륙 침공이 없을 것이고, 일본 66州의 인민 또한 전쟁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선에 전한 겐소의 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이나 중국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기까지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²⁵⁾ 나카자토 노리모토의 이러한 想定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전술한 대마도 측이 통신 사절 副使 김성일에 대한 태도에서 보이듯,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은 1591년 전반까지도 그들에게 ‘설마’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명과의 무역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왜란 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없었던 것처럼 소 요시토시나 고니시 유키나가에게도 무역 회복과 관련한 어떤 방법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추측이라 하겠다.

제수이트 선교사 프로이스는 성곽 공사 개시 이전의 나고야의 모습에 대해, “그 땅은 외딴 곳으로서 사람이 살기에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식량 이외에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이 결여되어 있었고 산이 많고 더구나 높지대로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황무지였다”고 소개하고 있다.²⁶⁾ 이런 나고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엄명에 따라 대도시로 변모해갔다. 동북지방의 미토(水戸)에서 參陣한 히라쓰카 다키토시(平塚瀧俊)는 고향에 보낸 편지에서 나고야의 모습을 “해안은 모두 다이묘들이 자리를 잡고 산도 들도 빈 곳이 없었다”, “(나고야의) 중심지는 교토·오사카·사카이(堺) 사람들이 모두 모여, 물건 또한 없는 것이 없었다”라 하여, 상인이나 匠人들까지 몰려들어 북적대는

24) 笠谷和比古·黒田慶一 共著, 2000, 앞의 책, 35쪽

25) 中里紀元, 1993, 앞의 책, 40쪽

26) 프로이스 지음, 오만·장원철 옮김, 2003,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국립진주박물관, 179쪽

광경을 기록해두고 있다.²⁷⁾

이 나고야에서 1592년 3월, 규슈·츠히코쿠[中國]·시코쿠[四國]의 다이묘들을 비롯하여 16만의 병력이 조선으로 출발하였고, 동시에 에조[蝦夷; 아이누]의 마쓰마에[松前]씨까지 포함한 전국의 다이묘들이 이곳 나고야에 參陣하여 임진왜란의 전쟁태세에 돌입하게 된다.²⁸⁾

III. 임진왜란 중의 대마도의 조선 교섭

왜란 중 대마도의, 즉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의 조선 교섭은 그를 거느리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통해 대부분 표출되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교섭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1592년 2월 말,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에 앞서 유키나가와 요시토시를 먼저 조선에 파견하여 그 동향을 살펴보게 한다. 아울러 기요마사에게는 조선에서 10~20리 떨어진 섬에서, 규슈와 시코쿠 다이묘의 군대는 이키[壹岐]와 대마도에서 대기하며 유키나가와 요시토시의 신호를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것은 요시토시가 조선을 더 설득해보겠다는 지연작전에 히데요시가 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시토시는 마지막까지도 ‘가도입명’ 요청을 조선이 수락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다.²⁹⁾

히데요시의 명령과는 다르게 그 2월 말, 유키나가나 요시토시는 조선에 건너가지 않고 있었다. 유키나가는 3월 12일에 가서야 이키·히라도·아리마[有馬]·오무라[大村]의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의 이즈하라[嚴原]로 건너갔다.³⁰⁾

27) 笠谷和比古·黒田慶一 共著, 2000, 앞의 책, 36쪽

28) 北島万次, 2007, 『加藤清正』, 吉川弘文館, 2쪽

29) 北島万次, 1995, 앞의 책, 36쪽. 임진왜란 중의 강화교섭에 대해서는 金文子, 1991, 앞의 책 제2장 「朝鮮侵略の進展と軍事・外交折衝」에 상세하다.

30) 덴케이, 『西征日記』 天正 13년(1592) 3월 12일. 이 기록은 유키나가의 군대에 從

기요마사 등 제2군에 대한 히데요시의 지시는 1월의 경우에는 이키·대마도에 서의 待機였으나, 2월에는 조선에 더 가까운 섬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키나가와 요시토시의 제1군으로서는 더 이상 지연작전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결국은 후속으로 오는 제2군·제3군에 밀리는 형태로 유키나가의 제1군은 부산으로 육박하게 되었다.³¹⁾

1592년 4월 13일 저녁, 유키나가와 요시토시의 제1군 선단이 바다를 뒤덮으면서 부산포에 육박했다. 이때 제1군 병력 18,700명 중 유키나가는 7,000명, 요시토시의 군대는 5,000명을 점하고 있었다. 덴케이[天荊]의 『西征日記(세이세이닛키)』는 “병선 700여 척 辰時에 오우라[大浦]를 출발하여 申時가 끝날 즈음 부산에 도착했다”고 적고 있다.³²⁾ 부산포에 상륙한 요시토시가 부산진 첨사 정발에게 ‘假道入明’을 요구하자 정발은 이를 거부했고, 다음 날 항전 끝에 부산진이 함락되었다.

4월 15일 유키나가와 요시토시가 동래성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나무판자에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을 것이면 길을 빌려달라”고 써 보였고, 이에 대해 동래부사 송상현은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써 응답했다. “송상현은 갑옷 위에 朝服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島倭’ 平成寬은 일찍이 동래에 왕래하면서 상현의 대접을 후하게 받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가 먼저 들어와 손을 들고 옷을 끌며 빈틈을 가리키며 피하여 숨도록 하였으나 상현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적이 마침내 모여들어 생포하려고 하자 상현이 발로 걷어차면서 항거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고 전한다.³³⁾

송상현이 사망하자 시계노부가 이를 보고 탄식하며 시신을 棺에 넣어 성 밖에 묻어주고 푼말을 세워 식별하게 하였다고 한다. 송상현의 賤人 출신 첩이

軍한 妙心寺(臨濟宗)의 外交僧 덴케이의 陣中日記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문자, 2008, 「壬辰倭亂期 일본사료연구－풍신수길의 조선침략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 468쪽을 참고.

31) 北島万次, 1995, 앞의 책, 37쪽

32) 덴케이, 앞의 책, 天正 13년(1592) 4월 12일

33) 老峯 閔鼎重, 『泉谷集』, 「泉谷先生集卷之二, 附錄, 壬辰遺聞」, “戰則戰矣. 不戰則假道. 象賢亦以木牌書戰死易假道難六字.” (후략)

적의 더럽히려 함에 굴하지 않고 죽자 대마도인들이 그녀를 의롭게 여겨 송상현과 함께 매장하여 주었고, 또한 良人 출신의 첩이 잡혀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아 공경하여 別室에 두었다가 마침내 풀어주었다고 한다.³⁴⁾

동래성을 함락한 유키나가의 제1군은 양산-밀양-대구를 거쳐 4월 25일엔 상주를 점령하고, 사흘 후인 28일 탄금대에서 신립의 기병을 격파한다. 29일 충주에서 기요마사의 제2군과 합류한 유키나가는 서울 진격로로 여주를 경유해 서울 동대문으로, 기요마사는 죽산을 거쳐 남대문으로 진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5월 3일 유키나가에 이어 기요마사가 서울에 무혈 입성한다.

서울에 들어온 일본군은 조선 각지 점령을 분담한다. 경상도는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전라도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충청도는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강원도는 모리 요시나리[森吉成], 경기도는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황해도는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함경도는 기요마사, 평안도는 유키나가가 主將의 다이묘로 하여 침입·경략하기로 하였다. 그 목적은 우선 조선 전역을 명 정복의 발판으로 굳혀, 군량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부산과 의주 사이의 병참선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³⁵⁾

5월 14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유키나가의 從軍僧 덴케이가 시게노부의 명의로 “조선 국왕은 서울로 돌아와 日明間의 화의 알선에 임할 것”을 조선 측에 권고하는 서한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요마사의 군대가 조선 측과 전투에 나서려고 하자 이를 중지한다.³⁶⁾

덴케이는 외교와 文筆의 솜씨를 가지고 유키나가의 제1군에 종군한 승려였다. 그는 일찍이 1577년과 1587년에 외교승으로서 조선에 건너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종군하는 중에 이미 4월 23일 경북 仁同에서 조선 농민들에게, 일본군은 난폭하게 굴지 않을 것이니 각자 집에 돌아가 농경에 전념할 것이라는 요시토시 명의의 榜文을 제작하고 있었다.³⁷⁾

34)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4일(계묘)

35) 「高麗國八州之石納覺之事」, 「加藤文書」

36) 『西征日記』 天正 25년 5월 14일

37) 北島万次, 1995, 앞의 책, 56쪽

5월 15일 기요마사가 임진강변에 진을 친 군대를 뒤로 물렸으므로 텐케이는 작성했던 서한을 조선 측에 건넸다.³⁸⁾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조선과 강화를 맺으려 한다. 일본군이 임진강 남안에 있으면 조선 측이 이를 의심할 것이므로 우리들이 우선 군사를 물리겠다.

②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조선에 가서 ‘成敗件’을 진술했으나,³⁹⁾ 조선 측이 이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선의 패망을 보기에 이르렀다. 히데요시는 그저 조선에 길을 빌려 명에 복수하려고 한 것이며, 그것은 저번에 통신사에게 자세히 고했을 터였다.

③ 그러나 조선 측은 이를 듣기는커녕 나라의 변방을 폐쇄하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지 않고 싸움을 걸어왔다. 그 때문에 일본군이 이를 공격하여 결국 尙州까지 오고만 것이다. 그곳에서 조선 조정에게 서한을 보냈지만, 국왕은 답장은 커녕 서울을 빠져나가고 말았으므로 서울에 입성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조선을 멸망시키는 것은 조선 자신이지 일본이 아니다.

④ 우리는 조선 국왕이 서울로 돌아와 日明강화를 중재하는 것이 상책이라 여긴다. 그리되면 우리는 군사를 돌려 기다릴 것이다. 만약 의심된다면 인질을 보내겠다. 일본과 명의 화친이 성립된다면 조선 또한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 서한에 대해 조선 측은 임진강변에서 죽는다 해도 일본 측에 응할 수 없

38) “日本國差來先鋒秘書平調臣，謹啓朝鮮國執事足下，臣今日來于此，退吾軍者無他，爲講和，軍士在渡口，則貴國之人疑之，故先退兵矣，臣先是屢使于貴國，陳以成敗之事，貴國不聽臣之言，今也至敗亡，蓋吾殿下假道于貴國，復怨於大明，去歲審告貴國通信使，臣亦達書於廷下，雖然貴國藩臣梗邊，以不通吾道路，加之動干戈，於是乎，吾軍擊破之，遂到尙州，奉書於廷下，不敢賜回教，却聞國王已出洛陽矣，於是諸將之兵入洛陽，由是觀之，夫滅朝鮮者朝鮮非日本，亮察亮察，臣竊慮之，還國王之駕於洛陽，以講和於大明，則貴國之策莫良焉，如此則解吾軍陳，待命於畿外者必矣，若疑之，出質子以爲證，然則日本之與大明和親，貴國亦復國，不然貴國長失國，亦未可知也，伏願足下執計之，今日在江邊，以待回翰速送之，自愛不宣。”(『西征日記』天正 25년 5월 15일)

39) ‘成敗할 일’이란 1591년, 겐소와 시게노부가 조선통신사를 배웅하여 조선에 건너가, 조선 측에 ‘가도입명’을 요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 일을 가리킨다(北島万次, 1995, 앞의 책, 54쪽).

다고 요청을 일축했다.

이에 덴케이는 16일 다시 서한을 보내 다음처럼 명과의 강화 알선을 요구했다.⁴⁰⁾

① 우리는 조선에 강화를 신청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위에서 조선 측이 이를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그 때문에 군대를 물리겠다.

② 일본군은 서울에 들어왔지만 강화를 바라고 있다.

③ 히데요시는 조선의 길을 빌려 大明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④ 그러나 조선에 온 일본 장수들은 곧장 명에 들어가려고는 생각지 않고 우선 조선과 화친하여 조선의 중개와 알선을 통해 명과 강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되면 조선·일본·중국 세 나라는 평안하게 되어 일본의 장수들은 고통을 면하게 되고 백성들은 소생하게 된다.

⑤ 히데요시도 또한 조선과 절교하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선은 교린의 도리를 잃고 일본군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를 움직이는 결과가 되었다.

⑥ 자신은 일찍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아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감히 일본의 장수들보다 먼저 이 일을 충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서한보다는 다소 은근한 표현이면서도 내용엔 변함이 없었다. 이를 받은 조선 측은 승정원에 전하여 회답하겠다고 전해왔으나 정식 회답은 없었다.⁴¹⁾

40) “再啓, 昨日呈愚書以陳講和之事, 貴國不信之亦宜哉, 吾軍經万里風波之難, 江山之險, 直入洛陽, 今也無故而欲講和, 貴國不信亦宜哉, 臣, 爲貴國解之, 吾殿下欲假道而擊大明, 雖諸將奉命來于此, 不欲自此經數千里入大明, 是故先與貴國和親, 而後爲借貴國一言, 以講和大明也, 貴國亦以一言大明, 講和於日本, 則三國平安, 良策莫良焉, 諸將免勞, 萬民蘇甦, 是吾諸將之議也, 殿下亦不欲與貴國絕交, 貴國失隣好之道, 拒吾軍, 故吾軍亦動干戈而已, 臣, 虛受貴國大職, 豈忘鴻恩乎, 奉國命, 以先諸將, 因不獲止也, 今也傾盡肝膽, 陳縷々, 足下察之, 尚不信之, 則是亦可也, 傳義智·行長兩人一紙之書, 自愛不宣, 年號 月 日 名.”(『西征日記』天正二十年五月十六日)

41) “昨日所作之書及兩人一紙之書, 三封一手, 傳之鮮軍, 棹小舟來受書, 未刻甲士一人泛舟來日, 吾濟小生, 私不能呈回報, 轉啓承政院, 以呈回報兩國本無怨讎,

1592년 5월 29일, 임진강을 건넌 일본군은 이날 개성을 함락한다. 그리고 6월 1일 유키나가와 요시토시는 조선 三大閣下(삼정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명 정복에 가담하든가 명과의 화친을 알선하든가를 강요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선조실록』 25년 7월 1일(무오)조에 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에 임진강에서 조선 측에 화의를 신청했으나 회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군은 싸워 자웅을 겨룰 것으로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도발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곧 임진강을 도하하였고 조선군은 도망가버렸다. 이런 조선군이 어찌 일본군을 이기려고 할 것인가? 급기야 일본군은 여기에 이르렀다.

② 조선은 일본의 명 정복에 가담하든가, 日明間の 화의를 알선해주든가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조선 국왕이 서울로 돌아오든가 평안도에 머물든가는 국왕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③ 일본의 장수들은 조선 팔도에 나눠 주둔하기에 이르렀는데, 조선의 일을 잘 알지 못한다. 요시토시는 선대 이래 조선에 은혜를 입고 있고, 조선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 평안도에 들어가는 것이 적임이다. 부디 우리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바란다.

이 서한에 대해서도 조선 측은 기만전술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했다.

이후 북상을 계속하던 유키나가와 요시토시는 대동강변에 도달하자 다시 시게노부를 파견하여 대사헌 이덕형에게 회답을 신청했다. 그리하여 6월 9일 겐소와 시게노부가 대동강에 배를 띄워 이덕형과 회담하게 되었다. 겐소가 말했다. 일본은 조선의 길을 빌려 中原에 조공하고 싶어 했지만 조선이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다. 지금 다시 한 길을 빌려 충원에 도달한다면 조선은 무사할 것이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동래·상주·용인 등지에서도 여러 번 서한을 보냈으나 조선에서는 답하지 않고 무기로써 대하기에 우리들이 결국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원컨대 판서 이덕형은 국왕을 모시고 이 지방을 피하여 우리가 요동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이덕형이 대답하였다. 일본이 만약 중국만을 침범하려고 하였다면 어찌 浙江

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왔는가?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계책이다. 明朝는 우리나라에게 곧 부모와 같은 나라이니, 죽어도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리하여 회담은 곧 결렬되었다.⁴²⁾

1592년 9월 1일, 조선에 온 심유경은 평양성 북쪽 강북산 아래서 유키나가와 회담했다. 유키나가는 심유경에게 일본이 군사를 낸 경위에 대해, 일본은 명에게 책봉과 通貢을 하고자 한 것이라 핑계댔다. 이에 대해 심유경은 여기는 명의 땅이므로 일본군이 물러나, 이후 明朝의 분부를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지도를 보이며 분명히 여긴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유키나가의 반론에, 평상시에 여기는 명 황제의 조서를 받드는 곳이라서 많은 宮室이 있으며, 이에 조선의 땅이라 해도 ‘上國’(명)의 변방이므로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물리쳤다. 그런 후에 유키나가의 封貢 요구엔 황제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아가 조선은 ‘明의 堺’=‘門庭’이므로 이곳에서 일본군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에 유키나가는 “다만 평양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고 대동강으로 경계를 삼자”, “대동강을 가지고 경계로 삼고, 평양 以西는 다 조선에 귀속시키자”라고 반박했다. 평양에서 퇴각한다 해도 대동강 以東을 일본의 영역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평양성 회담의 결과 유키나가가 요구한 封貢에 대해 심유경이 명 황제에게 그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5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停戰협정이 맺어졌다.⁴³⁾

42) 『선조실록』 25년 6월 9일(정유), 7월 1일(무오)

43)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9월 1일. “惟敬至平壤，執禮甚卑，行長給曰『天朝幸按兵不動，我不久當還，以大同江爲界，平壤以西盡屬朝鮮耳』，惟敬以聞。”(「明史」列傳 朝鮮)；“惟敬，輒唱封貢議，要倭退兵，平行長止許退出平壤，以大同江爲界。”(「兩朝平壤錄」)；“九月，大明ノ遊擊將軍沈惟敬，順安ニ到リ，書ヲ義智・行長ニ馳テ問フ，朝鮮何ノ虧負スル事有於日本，何ノ擅ニ師旅ヲ興スト，義智・行長，其書ヲ見テ，即チ回報シ，ヲ見テ事ヲ議セン事ヲ求ム，惟敬赴之，義智・行長，蘇長老等ヲ率テ出テ，城北十里ノ外，降福山ノ下ニ會ス，惟敬ニ告ルニ，秀吉公，朝鮮ヲ位スル故ヲ以ス，惟敬乃チ義智・行長ト和好ヲ議シ，因テ約シテ曰ク，吾歸テ聖皇ニ報シ，處分有ヘシ，五十日ヲ以テ爲期日，日本人平壤西北十里ノ外ニ出テ搶掠スル事ナカレ，朝鮮人十里ノ内ニ入テ日本人ト鬭フ事ナカレト，乃チ地界ニ木ヲ立，禁標ト爲去ル，義智・行長歸城，兵ヲ斂メ不動，既ニシテ五十日ヲ過レトモ，惟敬不到，於是義智・行長，大ニ城ヲ攻ルノ具ヲ修シ，兵ヲ發テ直

이리하여 시간을 번 明은 조선에 파병할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2월 다시 평양성을 방문한 심유경은 유키나가에게, 너의 나라가 진실로 通貢을 원한다면 어찌 반드시 길을 조선에 빌리는가? 通貢은 옛 길인 寧波를 택해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두 왕자를 석방하고 철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키나는, 다만 평양성은 上國에 주고 대동강 以東은 일본이 차지해야 할 것이라는 앞서의 주장을 반복했다.⁴⁴⁾

1593년 1월 8일 명제독 이여송이 명군과 조선군으로 평양성을 공격하여 유키나가의 제1군을 패퇴시키게 된다. 그러나 다음해 1월 27일 서울 북방의 벽제관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한 이여송은 심유경의 화의공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직후인 2월 12일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키고 있다.

이어 3월, 서울 용산의 일본군 군량창고가 명 경략 송응창의 비밀지령으로 불타게 되자 유키나는 강화도에 있던 倡義使 김천일을 통해 명 측에 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3월 15일 유키나가와 심유경의 회담이 시작되었다. 심유경은 먼저 두 왕자와 陪臣의 석방을 재촉하고 군사를 남쪽으로 퇴각시키면 히데요시를 책봉하는 封事が 성사될 것이라고 종용했다. 4월 초순 유키나가와 기요마사가 재차 용산에서 심유경과 회담하였고 그 결과, 두 왕자와 배신을 조선에 돌려주고 일본군은 부산포로 퇴각하되 개성에 주둔해 있는 明軍도 이에 맞추어 귀국할 것, 그런 연후에 명 측에서 和議 사절을 일본에 파견할 것 등이 결정되었다.⁴⁵⁾

二進ントス.”(『朝鮮陣記』)

44) 『선조수정실록』 25년 11월 1일, 『선조실록』 25년 12월 3일(기축)

45) 『선조수정실록』 26년 4월 1일, “爰に至て惟敬又朝鮮に來り, 李如松に對面し, 石司馬(明兵部尙書 石星)か意をのべて, 日本と和議を結ふべき由を語り, 又小西か所へ來りて相議す, 去年小西か好ミける七ヶ條の内, 第四にハ大明より太閤を日本國王に封すへきの儀也, 小西三奉行を初めとして, 朝鮮の在陳苦勞なれば, いか様にもして和議をととのへ, 軍をやめて日本へ歸らんと思ひし故, 此一事を申ちかへ, 太閤を大明の王に封すへしと日本へ申達ける, 其上朝鮮の二王子を返し給ハ, 朝鮮八道の内, 四道を差上, 日本の帝王を大明の天子の賀に成しまいらすへきと沈惟敬申由, 小西并三奉行より申上るに付て, 太閤喜悅し給ひ, 其儀ならハ, 軍をやめて和睦すへしとて, 朝鮮在陳の人々へ被仰遣けるハ, 日本人よ

4월 19일 일본군이 철수할 때 명 경략 송응창 수하의 徐一貫 등을 화의 체결을 위한 明 사절로 위장하여 나고야에 머물고 있는 히데요시에게 보내기 위해 일본 진영에 합류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유키나가는 이들을 데리고 남하했다.⁴⁶⁾ 그리고 5월 15일, 미쓰나리와 유키나가 등은 ‘明 사절’로 위장한 徐一貫 등을 동반하고 나고야에 갔다.⁴⁷⁾

이 나고야에서 겐소가 ‘명 사절’에게 절충을 벌이게 된다. 그 요점은 첫째, 일본군이 전라도·경상도 兩岸에 거점을 구축하고 주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것은 日明 화의 절충에 반대하는 조선 측이 진주성 등을 거점으로 일본군을 추격하려고 도모하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조선 측의 이러한 획책은 화의 절충에 장애가 되며, 명은 그러한 조선을 응징하여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되면 일본은 명의 속국이 되어 그 선구로서 韃靼을 伐하여 이를 명의 장악하에 두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달단을 끄집어낸 일본의 이러한 논리는 ‘명 사절’에게 묵살되었다. 둘째, 일본이 조선에 군사를 낸 동기에 대한 설명이었다. 히데요시는 원래 명에 신의를 통하려고 했는데, 조선은 1590년 통신사를 파견하여 그 알선을 일본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기다려도 그 답이 없었다. 이에 히데요시는 그 진심을 명 황제에게 陳情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군사를 일으킨 것으로 明을 범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이 명으로의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겐소의 첫 번째 논리는 진주성을 공격하여 전라도로의 진격을 염두에 둔 히데요시의 포석이라 할 수 있다.⁴⁸⁾

りこのミたる七ヶ條大明へ同心する上は、加藤主計頭生捕し朝鮮の二王子并臣下をも送り返すへし、朝鮮の王城に有日本勢、先釜山浦迄引取へし、又開城府を守る李如松も日本勢王城を出ハ、同じく軍勢を不殘引つれ開城府を退て大明へ歸るへしと定めらる。”(『黒田家譜 朝鮮陣記』)

46) 『선조수정실록』 26년 4월 1일, “沈惟敬, 王城ニ至リ, 義智・行長ト和親之事ヲ語ル, 諸將其議ヲ然トス, 於是, 大明徐一貫・謝用梓, 行長ノ營ニ來リ和ヲ議ス, 義智・行長, 沈惟敬・徐一貫・謝用梓ヲ携ヘ, 同月十九日, 諸將ト同ク王城ヲ發ス.”(『朝鮮陣記』)

47) 『時慶卿記』 文祿 2년 6월 1일

48) 北島万次, 1995, 앞의 책, 150~152쪽

1593년 6월 28일 히데요시는 ‘명 사절’에게 다음과 같은 7개조를 강화조건으로 제시한다. 첫째, 명나라 皇女를 ‘日本帝王’의 后妃로 보낼 것. 둘째, 勘合 무역을 부활시킬 것. 셋째, 명나라와 일본이 수호를 위해 각서를 교환할 것. 넷째, 조선의 남부 4도(충청, 전라, 경상, 강원)를 일본에 할양할 것. 다섯째,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여섯째, 조선의 두 왕자를 석방한다. 일곱째, 조선의 權臣으로 하여금 일본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할 것.

그 직후 徐一貫 등 ‘명 사절’은 귀국길에 올랐으나 히데요시의 7개조 조건은 황제에게 비밀로 하였다. 그런 와중에 이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은 9만여의 병력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동했고 6월 21일에는 진주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29일에는 진주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전라도 구례를 焚蕩하고 7일에는 곡성을 취저으며 남원으로 진군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명과 조선의 군대가 남원 지원에 나서자 일본군은 진주로 되돌아왔다. 이후 일본군은 조선 南岸에 성곽을 구축하여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1593년 6월 말, 유키나가는 심유경과 획책하여 家臣 나이토 조안[內藤如安]을 거짓 항복사절로 내세워 ‘納款表’를 지참하여 명 황제에게 파견하기로 했다. 여기엔 요시토시의 가신 소다시로베 나오히사[早田四郎兵衛尚久] 등 30명 정도가 동행했다.⁴⁹⁾ ‘납관표’란 항복한다는 表文을 의미한다. 나고야에 간 ‘명 사절’이 僞使였듯이 일본 측도 거짓의 ‘항복사절’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들 ‘항복사절’은 7월 8일 심유경에게 이끌려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9월 초순엔 평양을 경유하여 요동에 이르렀으나, 현지에 머물러 있던 명 經略 송응창이 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關白降表’가 필수라고 하여 그들의 북경행을 제지시켰다. 이때 이미 송응창은 경남 웅천의 유키나가에게 ‘관백항표’를 중용하고 있었다.⁵⁰⁾

49) 『선조수정실록』 26년 8월 1일. 나이토 조안을 조선이나 명의 기록에서는 小西飛라 표기하고 있다.

50) 『선조실록』 26년 9월 3일(갑인)·12일(계해)조, 윤11월 4일(갑신); 『선조수정실록』 26년 8월 1일

이후 유키나가가 날조한 명황제에게 내어질 ‘관백항표’는 『선조실록』 27년(1594) 5월 24일(신축)조에 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일본은 明朝의 赤子が 되려고 그 마음을 조선을 통해 명 측에 전하려 했으나 조선이 묵살해버렸으므로, 히데요시는 이를 노여워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둘째, 평양에서 유키나가와 심유경은 정전협정을 맺어 유키나가는 이를 준수했지만 조선은 전쟁을 걸어왔다. 셋째, 심유경과의 약속에 따라 일본은 성곽과 군량 및 조선의 영토를 돌려주었다. 넷째, 히데요시는 명황제로부터 冊封藩王의 名號를 받고싶다. 그것이 허용되면 앞으로 藩籬의 신하로서 貢物을 바치겠다. 이에 황제에게 조안을 보내는 바 그는 일본 측의 진의를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1594년 12월 7일 조안 일행은 북경에 도착하였고 이를 뒤엔 황제를 알현했다. 그러자 명 병부는 조안에게 다음 같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부산 주둔 일본군은 대마도에 머물지 말고 각자의 領地로 완전 귀환할 것, 둘째, 히데요시에게 책봉 외에 조공은 불허한다, 셋째, 일본은 조선과 修好하고 똑같이 명의 속국이 되어 조선을 침범하지 말 것. 이에 대해 조안은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다.⁵¹⁾

‘관백항표’에 의거해 명 황제의 책봉사 李宗城과 楊方亨이 북경을 떠난 것은 1595년 1월 30일,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4월 27일이었다. 그리고 渡日에 앞서 양방형이 거창으로 내려가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10월 12일 부산포의 일본 진영에서 양방형은 유키나가·겐소와 회견했다. 거기서 양방형은 일본군이 조선 남안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화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철수를 종용했다. 11월 말 책봉 정사 이종성이 부산포의 일본 진영에 합류했다. 그리고 12월 1일, 유키나가와 겐소 등이 책봉사에게 예를 표하고 명 황제의 히데요시에게 내린 金印과 誥命을 배전했다. 그러나 渡日을 앞에 둔 1596년 4월 정사 이종성이 正使職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5월 양방형을 정사로, 심유경을 부사로 하여 책봉사가 도일하게 된다. 심유경이 먼저 오사카로 향하고 6월 중순 양방형도 대마도로 떠났다. 그리

51) 北島万次, 1995, 앞의 책, 174쪽

고 책봉사 측의 강요로 임기응변식으로 구성된 조선의 통신사 황신 일행이 이를 뒤따랐다. 통신사와 양방형이 대마도에서 합류하는 것은 1596년 윤7월 10일이었다.⁵²⁾

명 책봉사가 오사카성에서 히데요시에게 황제의 誥命과 金印 및 관복을 하사하는 것은 1596년 9월 1일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연회 석상에서 명 황제의 고명 내용에 히데요시의 7개조 화의조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저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임명한다는 것에 머무르고, 책봉사가 조선에서 일본의 완전 철수를 채근하자 히데요시는 격노하여 책봉방식을 통한 강화를 무산시켰다. 그는 무엇보다도 조선 중남부 4개도의 할양을 기대했을 터였으나 이것이 완전 무시된 것이다.⁵³⁾

1596년 9월 7일 히데요시는 조선 재침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1597년 2월엔 14만여 명의 침략군을 재편하여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정유재란 직전 유키나가와 시게노부가, 조선 왕자나 王弟를 인질형태로 貢物을 지참하여 히데요시에게 강화를 요청하는 방법을 조선 측과 교섭하여 전쟁재발을 중지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조선이 끝내 거부했고 히데요시의 재침 의지 또한 꺾지 못했다.⁵⁴⁾ 정유재란 과정에서 유키나가와 요시토시에 의한 뚜렷한 강화교섭은 주목될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1598년 8월 18일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의 전면적인 조선 철수로 이어진다.

52) 北島萬次, 1995, 앞의 책, 176~178쪽

53) 島津亮二, 2010, 앞의 책, 158~163쪽; 金文子, 1991, 앞의 책, 103쪽

54) 金文子, 1991, 앞의 책, 114~149쪽; 島津亮二, 2010, 앞의 책, 173~174쪽

Ⅳ. 강화교섭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임진왜란기 강화교섭권은 유키나가·기요마사, 그리고 말기에는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가 가지고 있었다. 당시 대마도주 宗氏의 조선에 대한 강화교섭은 유키나가의 그것에 부속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대마도주와 그 家臣 시게노부 또한 조선에 서계를 보내는 것이 가능했다. 그것은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무역에 관한 교섭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⁵⁾ 아니, 무엇보다도 임진왜란 이전부터 있었던, 계해약조(1443) 이래 조선과의 ‘約條’관계의 관행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의 강화교섭은 1598년 겨울부터 시작되었다. 즉 1598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비롯한 五大老로부터 조선과 화호를 재개하도록 명령받은 대마도주는 그해 겨울 사자를 파견하여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⁵⁶⁾ 다음 해인 1599년 7월 시게노부 명의의 서계에서, 이번에 明將의 인질과 差官 및 조선 피로인을 송환하지만, 앞으로도 ‘和好’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선 피로인을 송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바라는 ‘和好’란 조선 使臣이 渡日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⁵⁷⁾

대마도 측의 이러한 피로인 송환을 통한 강화 요청은 1600년이 되면 더욱 구체화된다. 즉 2월에는 57명의 피로인을 송환하면서 서한을 통해, 4~5월까지 강화교섭에 관해 회답하지 않으면 7~8월에는 조선에 大軍을 파견하겠다고 再侵의 가능성을 전면에 내걸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송환된 피로인 방언릉도 일본 정세를 보고하여, 대마도는 이에야스와 여러 다이묘의 강력한 요

55) 李啓煌, 1997,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232쪽

56) 홍성덕, 1995, 앞의 논문, 49쪽. 『通航一覽』 卷25의 「修好始末」에 수록된 몇 개의 사료를 보면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對朝鮮 강화교섭은 조선에서 일본군이 철수한 직후 이에야스의 분부에 따라 대마도주인 宗義智가 시작했다고 한다.

57) 『선조실록』 32년 7월 14일(신유). 여기서 明將의 人質이란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할 때 明軍 측이 停戰협정의 보장을 위해 보낸 자들을 말한다.

청에 따라 강화교섭에 임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은 조선의 국서와 사신 파견을 바라고 있고, 이것이 달성되면 明의 인질이나 조선 피로인을 적극적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일본 측의 의향을 전하고 있다.⁵⁸⁾

1601년 4월, 피로인의 송환과 함께 유키나가의 처형을 비롯한 세키가하라[關原]의 전쟁 정보가 조선에 상세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로인 송환이 이에야스의 허락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전해졌다.⁵⁹⁾ 이후 일본의 강화교섭의 주체는 이에야스이며 그의 의지에 따른 교섭이 전개되고 있음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⁶⁰⁾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마도가 강화교섭의 前面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 계황은 조선에는 당시 明軍이 주둔하고 있어 명과 조선군의 대마도 응징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강화교섭을 속행하려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⁶¹⁾ 외교교섭이 전쟁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속성으로 볼 때 적절한 분석이라 하겠다.

명군이 조선에서 철수한 이후의 대마도 측의 교섭행위에 대해서는 1604년 초에 송환된 피로인 김광의 상소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 즉 대마도주나 시게노부가 '화호'를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까닭은, 대마도주가 원래 유키나가와 한편이었으나 세키가하라의 전쟁에서 유키나가가 패한 뒤로 대마도주는 '同黨之禍'에 빠질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⁶²⁾ 그러나 그 까닭만이 아닐 것이다. 조선과 오랫동안 '約條'관계에 있었고, 이미 히데요시 이전에도 3회나 무로마치막부의 외교교섭을 대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⁶³⁾ 그러한 대마도를 이에야스가 외교교섭자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리라

58) 『선조실록』 33년 2월 23일(정유) · 24일(무술)

59) 『선조실록』 34년 4월 3일(경오) · 5일(임신) · 13일(경진) · 25일(임진)

60) 한 예로 1602년 5월, '倭' 2명이 서한 5통을 지참해왔다. 서한에는 대마도주가 이에야스에게 시게노부를 파견했다는 것, 그가 이에야스의 뜻을 받들어 돌아오면 즉시 다시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여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야스를 알현한 시게노부는 같은 해 6월경엔 대마도로 돌아온 듯하다(『선조실록』 35년 5월 4일 [을축], 36년 정월 2일[기미]조의 李時發의 장계).

61) 이계황, 1997, 앞의 책, 136쪽

62) 『선조실록』 37년 2월 27일(무신)

63) 민덕기, 2010,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 교섭』, 경인문화사, 66쪽

여겨진다.

일정기간 조선은 일본 측의 강화교섭이 대마도의 恣意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 듯하다. 그러므로 대마도가 조선 피로인 송환에 성의를 다하면 和를 허용한다(許和)고, 대응하게 된다. 조선 측에서 볼 때 대마도에 대한 이러한 피로인 송환이란 조건 제시는, 임진왜란에서 대마도가 일본군의 길잡이[嚮導]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贖罪조건으로, 이를 대마도가 수행하면 그 반대급부로서 ‘화화’를 부여한다는 것이 된다.⁶⁴⁾

일본 정국을 장악한 이에야스가 막부를 개설하여 쇼군이 되는 것은 1603년 2월이다. 그러므로 막부 개설에 즈음하여 그의 조선에 대한 대마도를 통한 강화교섭은 더욱 구체적인 것이 되어간다. 예를 들어 1602년 12월에는 세키가하라의 전쟁에서 이에야스의 東軍에 저항하다 패하여 도망갔던 시마즈 요시히로가 항복해왔다고 대마도를 통해 알려졌다.⁶⁵⁾ 또한 이에야스가 대마도주에게 강화교섭권을 전부 위임했다고 하며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는데, 내년 봄까지도 ‘통신사’를 이에야스에게 파견하지 않으면 조선이 일본에게 禍難을 받게 된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때 파견된 다치바나 도시마사[橘智正]는, 강화의 결정은 명나라 권한으로 명나라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조선 측이 변명하자, 조선이 이에야스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明의 ‘화호’ 거부 의사를 전달한다면 일본으로부터의 禍難을 1, 2년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사자 파견을 교묘하게 종용하는 한편, 이에야스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히데요시와 비교·평가하며 이에야스의 ‘화호’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⁶⁾

64) 민덕기, 2007,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142쪽

65) 『선조실록』 35년 12월 5일(임진). 요시히로는 1602년 이에야스로부터 시마즈씨 존속의 용서를 받아 3남에게 藩主의 지위를 넘기고 은퇴했다. 이민호는 이 실록의 임진조를 들어, 대마도가 조선 측에 내년 봄까지 통신사를 파견해달라고 강성한 것은, 1603년 2월 征夷大將軍 취임에 조선 사절이 참석하면 이에야스의 정치적 권위와 실력을 인정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서라고 적극 평가하고 있다(이민호, 1999, 『조선 宣祖朝의 對日외교연구』, 남양문화, 76쪽).

66) 『선조실록』 36년 정월 2일(기미)

대마도가 막부로부터 ‘화호’에 대한 교섭권을 완전하게 위임받았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다음처럼 1603년 6월로 이에야스의 ‘手押’(친필서명)을 통해서다. 당시 도시마사가 아직 조선에 체류 중임에도 다시 대마도로부터 사자가 도항하고 있었다. 이 사자가 지참한 서한은 대마도주가 예조에 보낸 것으로, “두 나라의 화호전은 자신 이외에는 분부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에야스가 手押에서도 이르기를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이것으로 증험을 삼아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막도록 하라’고 말했다”라고 적고 있다. 즉 대마도주를 對朝鮮 강화교섭의 전담자로 분부하는 ‘手押’을 시게노부가 이에야스에게서 받아왔다고 강조하고 있다.⁶⁷⁾

1604년 6월 말, 사명당은 예조참의 成以文 명의로 ‘對馬州太守平公足下’에게 보내진 서한을 지참하여 서울을 출발했다. 그 서한에는 히데요시의 책봉 거부 前例로 명 측이 일본의 ‘화호’요청에 회의적이지만, 대마도의 피로인 송환 등을 통한 조선에 대한 ‘革心向國’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므로 ‘일본’과는 차별하여 대마도와의 교류를 단절시키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화호’에 대한 성의를 요구하고 그 誠心만이 明의 인정을 받아 講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⁸⁾

조선은 이 서한에서 마침내 부산에서의 교역을 대마도에 허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⁶⁹⁾ ‘허화’ 부여다. 그러나 이하의 전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마도는 조선과의 교역재개에 전혀 나설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강화’ 즉 조선의 ‘통신사’가 파견되지 않는 한 대마도의 어떠한 私的 관계 추진도 이에야스가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1604년 7월, 조선에서 사명당을 대마도에 파견하자 이에야스는 다음 해 2월 그를 교토로 불러 아들 히데타다[秀忠]와 함께 접견하고 있다. 당시 10만의 군사를 사열한 가운데 접견을 했다 하니, 자신의 위광을 얼마나 사명당에게

67) “兩國和好之事, 除義智外, 別無受命人之旨, 家康手押謂曰, 義智以之爲驗, 塞他妨云云.”(『선조실록』 36년 6월 14일[기해])

68) 『通航一覽』 卷27에 해당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

69) “齎持物貨, 往來交易, 姑且許之.”

과시하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이때 대마도주에게, 불원간 쇼군직을 히데타다에게 물려줄 것이므로 통신사를 반드시 새 쇼군에게 파견하게 하여 禮를 표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⁷⁰⁾ 히데타다에게 쇼군직이 양위되는 것은 1605년 4월이다.

사명당 접견에 만족한 이에야스는 대마도주의 對朝鮮 교섭 독점을 재삼 확인해주는 한편, 領地 2,800石을 더해주고 3년 1회의 參勤交代를 허용했다고 한다.⁷¹⁾ 이 시점에 이르러 대마도는 對朝鮮 외교에서 확고부동한 외교대행적 위치를 장악하게 되었다.

1605년 5월, 1,390명의 피로인을 대동하여 사명당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기대했던 이에야스의 강화요청 서한은 가지고오지 못했다. 이를 기대했던 조선 조정은 일본 측의 강화요청이 다시 대마도의 恣意에 따른 것으로 짐작하고 對日관계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⁷²⁾

그러나 대마도 측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사자가 이후에도 끊이지 않게 되자, 조선에서는 이에야스에게 직접 서계를 지닌 差官을 파견하여 그 진의를 파악하고 동시에 일본 내정을 정탐하자는 논의가 거듭되었다.⁷³⁾ 이에 대해 이에야스의 대마도를 통한 강화교섭 형태에 반하는 것이라고 대마도가 반발하자, 조선 조정은 이와와 같은 ‘2件’ 요구로 전환하게 되고, 대마도는 1606년 6월 이 요구를 수락하겠다고 답해왔다.⁷⁴⁾

조선은 1606년 7월, ‘2건’ 요구를 대마도와의 회담 서한에 정식으로 넣어 내기로 하는 한편, 에도행의 차관으로 선출되어 있던 전계신 일행을 그대로 대마도에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마도가 ‘2건’을 성실하고 정

70) “當年天下を秀忠公へ御譲あるへし、朝鮮の使者、此度は伏見へ來り御禮申すへし、近年の内に急度信使を渡し、秀忠公へ御禮申し上へし。”(『通航一覽』 권27)

71) 荒野泰典, 1981, 「大君外交體制の確立」, 『講座日本近世史2 鎖國』, 有斐閣, 179쪽. 參勤交代란 전국의 다이묘가 에도에 격년으로 1년씩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72) 민덕기, 2007, 앞의 책, 199~200쪽

73) 민덕기, 2007, 위의 책, 199~208쪽

74) 『선조실록』 39년 7월 4일(신미)·6일(계유)

직하게 완수하도록 감독하고, 아울러 ‘賊情’을 정탐하도록 명하고 있다.⁷⁵⁾

‘2건’의 하나는 ‘선위치서’의 요구다. 그것은 즉 이예야스가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만 조선도 이에 답하는 회답서한을 지참한 사절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전쟁상황에서는 어느 쪽인가 먼저 상대국에 국서를 보내는 행위는 항복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었다.⁷⁶⁾ 따라서 조선의 이예야스에 대한 서한 요구는, 일본이 임진왜란의 침략행위를 사죄하지 않으면 강화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건’ 요구조건의 다른 하나는 ‘犯陵賊 縛送’이다. ‘犯陵’이란 임진왜란 때 조선왕실의 능묘, 즉 성종과 貞顯왕후의 宣陵, 중종의 靖陵이 파헤쳐진 사건을 가리킨다. 조선은 이 범릉행위의 主犯을 일본군으로 간주하고 그 압송을 ‘2건’의 하나로서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⁷⁷⁾

11월 초순, 부산 絕影島 해변에서 군사들이 시위하는 가운데 경상감사 유영순과 左兵使·左水使 등이 도시마사의 내항을 맞았다. 이때 도시마사는 이예야스의 서한을 지참하고 ‘범릉적’ 두 사람을 압송해 왔다.⁷⁸⁾

조선에 건네어진 이예야스의 서한을 보면 대마도에 지금까지 강화교섭을 명하여 온 것은 이예야스 자신이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요구에 응하여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면서, ‘범릉적’ 건은 대마도주에게 전송시켰다며 ‘2건’의 이행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사명당이 일본에 왔을 때 ‘前代非’로서 표명한 적이 있다고 표현하며, 조속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⁷⁹⁾

도시마사로부터 ‘범릉적’ 두 사람을 건네받은 조선은 그들을 곧바로 한성의

75) 『선조실록』 39년 7월 5일(임신)

76) 荒野泰典, 1981, 앞의 논문, 136쪽. 『선조실록』 39년 5월 13일[경진]조에도 일본 측의 통신사 파견요청에 응하는 것은 ‘乞和’, ‘乞降’의 입장이 뒀을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先自送書於我矣, 賊之意, 正欲要我先遣使致書, 謂我爲遣使乞和, 或指稱乞降納款等語, 誇張後世耳.”)

77)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265쪽

78) 『선조실록』 39년 11월 12일(정축)

79) 『선조실록』 39년 11월 12일(정축)

로 압송했으나 범륜행위를 그들이 일관되게 부정하자, 조정에서는 결국 이들이 ‘범륜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처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범륜적 박송’이란 명분을 얻었다는 입장을 중시하여 그 둘을 처형하고 있다.⁸⁰⁾

1606년 겨울로 접어들어 사절의 파견 준비가 착착 준비되어갔다. 그러나 통신사 관련 기록이 다수 상실되어 있어 1590년 통신사 일행으로서 도일한 적이 있는 역관 박대근에게 물어 참고하는 등 하며 진척되어갔다.⁸¹⁾ 마침내 회답 겸쇄환사라는 이름으로 사절 명칭이 결정된 것은 그 파견 8일 전인 1607년 1월 4일이었다.

이에야스가 조선의 ‘선위치서’ 요구에 응하여 조선에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내었다는 것에서 조선과의 강화가 이에야스 정권에게 매우 중대한 과제였음을 엿볼 수 있다. 히데요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에도막부를 연 이에야스에게 조선과의 강화는 히데요시가 남긴 대외적 과제를 청산하는 것이 되며, 일본국 내에서는 反이에야스 세력에 대한 막부의 정통성이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⁸²⁾ 그렇다면 이에야스의 대조선 교섭은 그 출발점부터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초의 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丁未年(1607)의 조선 사절은 회답사라 일컬었다. 이는 이에야스가 보낸 서한에 답한다는 뜻이었다. 사절이 일본에 이르자 이에야스는 쇼군 직을 히데타다에게 물려주었다. 그런 까닭에 일본도 회답하는 바 되어 조선에 먼저 서한을 보내는 것이 되지 않게 되었다.⁸³⁾

80) 『선조실록』 39년 11월 19일(갑신), 좌부승지 박진원계; 『선조수정실록』 39년 11월 1일조

81) 『선조실록』 39년 10월 25일(경신)

82) 로날드·토피, 1977, 「初期徳川外交政策における『鎖國』の位置づけ」, 社會經濟史學會 編, 『新しい江戸時代史像を求めて』

83) “按丁未之聘, 號曰回答使, 蓋言其報神祖(家康)所遣之書也, 使者到日, 神祖傳位, 德廟(秀忠)報書, 故我今所報, 非彼所遣.”(新井白石, 「國書復號紀事」, 『新井白石全集』 3권 所收)

즉 조선이 이에야스의 서한을 통해 회답이라는 명분을 얻어 渡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에 대해 일본도 이에야스가 아닌 새 쇼군 히데타다가 서한을 내는 방안을 통해 회답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논하고 있다. 하쿠세키의 논리처럼 히데타다에게는 조선이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국서와 사절을 파견한 셈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에야스의 쇼군직 양위는 이에야스에게 보낼 조선의 회답을 회피하기 위해 강구된 것이라고 하쿠세키가 추정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쇼군 양위가 대조선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대마도가 일본 측의 대조선 교섭을 대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대마도가 아닌 이에야스에게 있었음이 명확해진다. 이에야스는 조선에의 강화 요청을 대내적 위신 때문에도 스스로 시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마도에 대행시키는 것이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선위치서’ 요구를 이행하면서도 일본 국내상으로는 그 행위를 숨기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신에게 보낸 조선 국왕의 ‘회답’을 지참하는 조선의 제1차 회답검쇄환사를, 현재의 쇼군이 히데타다라고 구실을 붙여 그에게로 향하게 하여야 했고, 그로 인해 조선의 회답서도 필연적으로 개작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럴 경우 대마도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셈이다. 조선 사절을 안내·접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대마도에게는 조선 국서를 개작할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검토한 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이전의 대마도는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에 대하여 처음에는 조선 측의 貢物이나 인질 제출로 대체하여 그 의도를 희석시키려 하나 실패한다. 히데요시가 다시 조선 국왕의 직접적인 來朝를 명령하게 되자, 來朝가 절대 불가

능함을 익히 알고 있는 대마도는 통신사의 일본 파견으로 대신하려 조선과 교섭하게 된다. 이에 조선이 조선 ‘叛民’ 사화동의 압송이란 조건을 제시하자, 요시토시와 그의 장인 유키나가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히데요시 국왕 즉위 축하라는 명분을 띤 庚寅通信使가 1590년 渡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은 중국 침략이라는 宣言에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통신사 측에 제시한 것도 ‘征明嚮導’요 ‘征明假道’였다. 明을 정벌할 것이니 길잡이가 되고 그 가는 길을 열라는 요구였다. 이 요구가 조선에게 수용될 터이 없음을 안 대마도는 히데요시의 요구를 ‘假道入明’으로 바꿔쳤다. 明에 조공하겠으니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히데요시의 요구를 왜곡시켜 전쟁을 방지해보려 한 대마도의 간절한 조선 교섭은 대마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조선과의 무역적 독점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일본의 大軍이 대마도를 유린하며 조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⁸⁴⁾ 동시에 일본군으로 징발되어 수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였다. 왜란에 징발된 대마도 병사는 5,000명이나 되었다. 당시 대마도의 인구가 5만 명이라 해도 이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중 대마도주 요시토시와 그의 외교고문격인 겐소나 시게노부는 모두 제1군의 대장 유키나가의 휘하에서 그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마도의 독자적인 조선 교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요시토시의 장인이며 商人 출신이었던 유키나가는 ‘叛民’ 사화동의 색출과 조선 引渡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마도의 입장에 적극적이었다. 그렇다 해도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과 중국 침략 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主戰派’ 기요마사의 노선과 전혀 다른 교섭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키나가는 동래, 상주, 용인에서 조선 측에 서한을 보내 교섭하려 했지만

84) 임진왜란기 일본의 10여만 대군이 대마도를 경유해 조선을 들락거렸을 것이다. 날씨 등에 따라 대마도에서 며칠을 체류할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대마도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대마도를 유린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무산되었다. 드디어 임진강변에 이르러 조선 측에 제시한 것은 저항을 멈추고 화친하여 중국 침략에 길을 열라는 것이었고, 조선 국왕이 서울로 귀환하여 日明강화를 주선해달라는 것이었다. 대동강 회담에서는 왜란 전 요청처럼 ‘假道進貢’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보면 유키나가의 거듭되는 교섭이 결코 조선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유경이 출현하면서 유키나가의 교섭은 조선을 소외시킨 채 기본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그 교섭도 대동강 以東을 일본 영토로 하겠다든가, 평양성 퇴각 이후에는 남쪽의 下三道와 강원도의 할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책봉과 通貢 요구가 표면화되면서, 점차 책봉사를 통한 히데요시 책봉으로 구체화되어간다.

이런 외중에 대마도가 전혀 교섭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593년 5월 겐소는 일본 나고야에서 ‘明 사절’에게, 히데요시가 명에 ‘假道陳情’하려는 것을 조선이 방해하여 전쟁이 발생했다고 그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고 있다. 또한 정유재란 직전 시게노부는 조선이 인질이나 공물을 보내와 히데요시의 체면을 세워주면 再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선에 교섭하고 있다. 이로 보아 대마도나 대마도를 지지하고 있는 유키나가의 교섭이 히데요시의 전쟁 수행에 결코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98년 8월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일본군이 철수하였다. 이어 시작된 강화 교섭 또한 왜란 이전처럼 대마도가 그 전면에 나서게 된다. 주목되는 것은 왜란 직전의 교섭이 대마도의 조선과의 私的인 무역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하여, 왜란 직후부터는 조일 전쟁 종식을 위한 ‘일본의 禮曹’로서의 公的 講和교섭이었다는 점이다.⁸⁵⁾ 특히 1600년 세키가하라의 전투 이후부터의 교섭은 일본 政局을 장악한 이에야스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야스가 대마도를 통해 조선에 요청한 것은 ‘통신사’의 파견이었다.

계속되는 대마도의 ‘통신사’ 파견 요구에 조선은 왜란 전처럼 조건부 수용

85) 이러한 대마도의 왜란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조선과의 교섭 목적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의 자세를 나타내게 된다. 그 조건부란 이에야스가 먼저 서한으로 강화를 요청하라는 것이고(先爲致書), 왜란 때 조선왕릉을 훼손한 일본군을 압송해 오라는 것이었다. 이윽고 대마도의 주선과 공작으로 두 조건이 이행되었다는 명분을 가지게 된 조선은 1607년 1월 강화의 의미를 가진 사절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명칭은 ‘통신사’를 피해 이에야스의 서한에 회답하고 왜란에 잡혀간 조선인을 송환한다는 의미의 ‘회답겸쇄환사’라 이름하였다.

‘회답겸쇄환사’가 일본을 다녀온 다음 해인 1608년 1월 이후, 대마도는 겐소 등을 ‘일본국왕사’ 명의로 조선에 파견하여 임진왜란으로 중단된 약조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을 행하게 한다. 즉 ‘私的’ 관계의 회복 교섭이 이 시점에 이르러서 시작된 것이다. 교섭의 결과 1609년 조선 측은 이른바 12개조의 己酉약조를 결정하고 대마도에 이를 통고한다. 그런데 이 기유약조는 이전의 약조보다 축소된 것으로 세견선의 경우만 해도 20척으로 줄어든 것이었고, 서울 상경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축소와 제한은 임진왜란에 일본군의 길잡이 역할을 맡은 대마도에 대해 조선이 징벌적 의미를 가했기 때문이었다.⁸⁶⁾

대마도는 1599년 강화교섭의 시작부터 10년의 세월을 걸쳐 노력한 결과 조선과의 교역관계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 것이었으므로 이후에도 교역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도항선의 증가를 획책하게 된다.⁸⁷⁾

86) 민덕기, 2007, 앞의 책, 251~256쪽

87) 中村榮孝, 1969, 앞의 책, 285쪽

참고문헌

1. 사료

(1) 조선 측

老峯 閔鼎重, 『泉谷集』, 「泉谷先生集卷之二, 附錄, 壬辰遺聞」

유성룡, 『징비록』

김성일 지음 · 정선용 번역, 1998, 『국역 학봉전집 1』

(2) 일본 측

「加藤文書」

『時慶卿記』

『朝鮮通交大紀』, 名著出版, 1978

『通航一覽』

「黒田家譜 朝鮮陣記」

勸修寺晴豊, 『晴豊記』

山科言經, 『言經卿記』

新井白石, 「國書復號紀事」, 『新井白石全集』

天荊, 『西征日記』

(3) 기타

프로이스 지음, 오만 · 장원철 옮김, 2003,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국립진주박물관

2. 단행본

(1) 한국

김경태, 2007, 『壬辰倭亂 直後 朝鮮의 對日講和政策 性格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덕기, 2007,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민덕기, 2010,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 교섭』, 경인문화사

손은주, 2003, 『壬辰倭亂期の 講和交渉에 關한 考察: 小西行長の 講和交渉을 中心』

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啓煌, 1997,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이민호, 1999, 『조선 宣祖朝의 對日 외교연구』, 남양문화

田中敏昭, 1996, 『壬亂前の 豊臣政權과 對馬島主宗氏の 朝鮮外交: 總無事令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일본

金文子, 1991, 『文祿・慶長期に於ける日明和議交渉と朝鮮』,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 人間文化研究科課程 博士學位論文

北島万次, 1995,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北島万次, 2007, 『加藤清正』, 吉川弘文館

笠谷和比古・黒田慶一 共著, 2000, 『秀吉の野望と誤算』, 文英堂

中里紀元, 1993, 『秀吉の朝鮮侵攻と民衆・文祿の役－日本民衆の苦惱と朝鮮民衆の抵抗』, 文獻出版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正編 第1』

3. 논문

(1) 한국

김경태, 2007,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 138

김문자, 2005,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정신문화연구』 28[3]

김문자, 2008, 「壬辰倭亂期 일본사료연구－풍신수설의 조선침략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

김문자, 2012,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한일관계사연구』 42

민덕기, 1987・1989,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 講和교섭과 대마도(1)(2)」, 『사학연구』 39・40

민덕기, 1990, 「朝鮮後期 朝・日 講和와 朝・明관계」,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윤유숙, 2006, 「임진왜란 발발전 한일교섭의 실태」, 『한국일본어문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No. 7

윤유숙, 2007,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발발전 한일교섭 실태」, 『일본학보』 70

한문중, 2009, 「壬辰倭亂 직전의 국내정세와 韓日關係」,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1

홍성덕, 1995,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

田中敏昭, 1999, 「豊臣政權의 日本統合과 對馬島主 宗氏の 朝鮮交渉」, 『동서사학』 5

(2) 일본

三鬼清一郎, 1986, 「秀吉の國家構想と朝鮮出兵」, 大石愼三郎 編, 『海外視點 日本の歴史8』, ぎょうせい

荒野泰典, 1981, 「大君外交體制の確立」, 『講座日本近世史2 鎖國』, 有斐閣

ロナルド・トビ, 1977, 「初期徳川外交政策における『鎖國』の位置づけ」, 社會經濟史學會 編, 『新しい江戸時代史像を求めて』

[ABSTRACT]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and Tsushima

Min Deakkee

Prior to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Tsushima attempted to dilute Toyotomi Hideyoshi's intention to conquer Joseon through that country's submission of tribute or hostages, but failed. When Hideyoshi subsequently ordered the King of Joseon to visit Japan, Tsushima, knowing that this was impossible, decided to negotiate with Joseon in order to substitute the dispatch of diplomatic missions to Japan for direct assistance, and a diplomatic mission from Joseon went to Japan in 1590.

Hideyoshi had actually demanded Joseon through the diplomatic mission to guide the army along the way to conquering Ming China, but Tsushima replaced that demand with a request to borrow a path to Ming China in order to submit tribute to China, attempting to sabotage the war. This effort by Tsushima was for Tsushima itself. Tsushima intended to secure its monopolistic trade relationship with Joseon and to prevent the Japanese forces from advancing into Joseon through Tsushima. At the same time, Tsushima intended to prevent any suffering from being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though almost 5,000 soldiers from Tsushima were drafted. Even if we assume that the total population of Tsushima was 50,000, this would have been an enormous burden for Tsushima.

The Governor of Tsushima Sō Yoshitoshi and his diplomatic advisors

Keitetsu Genso and Yanagawa Shigenobu at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were under the command of the general of the first army Konishi Yukinaga. Therefore,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Tsushima to negotiate with Joseon independently. However, Tsushima did appear in the center of negotiations. In the fifth lunar month of 1593, Genso told the envoy of Ming China in Nagoya, Japan, that the war occurred because Joseon prevented Hideyoshi from submitting tribute to Ming China and attempted to shift responsibility to Joseon. Further, just prior to the second invasion of Joseon in 1597, Shigenobu negotiated with Joseon, persuading Joseon that it could prevent a second invasion if the government would send hostages or tribute to Japan, keeping face for Hideyoshi. According to this, Tsushima's negotiations with Joseon could not make a fundamental change in Hideyoshi's conduct of war.

The Japanese forces withdrew in the eighth lunar month of 1598 due to the death of Hideyoshi. Tsushima also took the leading role in the following peace negotiations that began, just as prior to the 1592 invasion. It is notable that Tsushima negotiated the peace treaty to end the Japanese invasion, not to resume its private trade relationship with Joseon. In particular, the negotiations after the Battle of Sekigahara in 1600 were just a reflection of the intention of Tokugawa Ieyasu, who dominated the political situation in Japan. Through Tsushima Ieyasu requested of Joseon the dispatch of a "diplomatic mission."

Joseon took the position of 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continuous requests of Tsushima to dispatch a "diplomatic mission," just as prior to the invasion in 1592. The conditions included a request put to Ieyasu for peace in writing and for sending under escort the Japanese troops who damaged the royal tombs of Joseon during the war. After these two

conditions were met with the arrangement and maneuvering of Tsushima, Joseon was able to dispatch an envoy under the meaning of peace to Japan in 1607. However, the title borne by the embassy was not “diplomatic mission” but “Response and Repatriation Mission.” That is, this mission was a response to Ieyasu’s text and to the repatriation of Koreans who were taken to Japan during the invasion.

After the first lunar month of 1608, or one year after the “Response and Repatriation Mission” went to Japan, Tsushima dispatched Genso and others to Joseon as the diplomatic envoy of the King of Japan and negotiated with Joseon for establishing an agreement that was suspended due to the invasion in 1592. As a result of negotiations, Joseon accepted and notified Tsushima of the Giyu Agreement, which was composed of twelve articles, in 1609. Tsushima was granted rights to conduct trade through twenty ships each year but visiting the capital of Joseon was prohibited. These reductions and restrictions were the penalty from Joseon to Tsushima, which had taken a leading role among Japanese forces in the invasion in 1592.

Keywords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sushima, Toyotomi Hideyoshi, Sō Yoshitoshi, Konishi Yukinaga, Keitetsu Genso, Yanagawa Shigenobu, Gyeongin diplomatic mission, Tokugawa Ieyasu, Response and Repatriation Mission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홍성덕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I. 머리말

조선후기 한일관계는 평화와 우호의 상징으로 발전적 한일관계의 전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7년에 걸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으로 단절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곧바로 서로 신의를 통하는 성신교린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종전 협상에서 조선·명나라·일본 세 나라는 자국 중심의 해결 방안을 찾기에 몰두해 있었으며, 1598년 8월 히데요시의 사망은 동북아 평화 안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종전 협상과정에서 일본에 인질로 보내진 명나라 군사의 안전한 송환¹⁾과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불투명한 일본의 정세, 전쟁과정에서 끌려간 수십만의 조선인 피로인의 쇄환 등 국교

※ 투고일: 2013년 5월 23일, 심사일: 2013년 8월 5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 1) 왜란 종전기 명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金文子, 1991, 『文綠·慶長期に於ける日明和議交渉と朝鮮』,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 人間文化研究科課程 博士學位論文; 홍성덕, 1995a, 「丁酉倭亂 以後 明・日停戰協商과 朝・明關係」, 『전북사학』 18집; 李啓煌, 1997, 『文綠·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등 참조.

를 재개하기 위해서 풀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외교적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1607년 회담검쇄환사의 파견과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정상화한 조선 후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국교재개의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둘러싼 상반된 견해가 상존한다. 일본 측의 연구자들은 이른바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이라 불리는 국서개작사건 때까지 조선과의 외교를 대마도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내의 연구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나아가 조선후기의 한일관계가 국가(조선)와 국가(일본) 간의 관계인지 국가(조선)와 지역(對馬藩)의 관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으로 연결된다.²⁾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조선과 일본 관계는 조선의 대일통제가 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왜관 설치와 쓰시마도주의 조선 무역권 독점 문제는 두 나라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문제가 줄어듬에 따라서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분야로 등장하였다. 게다가 별도의 무역선이 왕래할 수 없었다는 점과 대일 사무역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두 나라의 기본관계를 설명할 때 그 중심에 외교사행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한일관계사 이해는 공간적으로 왜관과 대마도, 제도적으로 두 나라를 왕래한 외교사절들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국가 간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교 주체들의 개별적 입장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전쟁의 패색이 짙어가는 상황 속에서 섬의 운명을 걸고 교섭에 노력했던 대마도나 자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해결해야 했던 두 나라 정부의 태도가 다양한 형태의 교섭을 만들어 냈다. 특히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시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양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 곳에만 속하기 어려운 대마도의 처지와 두 나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었던 조선과 일본 정부의 태도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취할 수 있

2) 이러한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기유약조가 국가 간의 조약인지, 조선 정부와 쓰시마 사이의 약조인지에 대한 상충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제2분과 제2회 연구발표회 토론 녹취록 참조).

있던 최선의 외교정책을 선택해나갔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일외교체제의 성립과정과 조선후기 한일관계에서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대일통제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교재개기 조선의 외교 상대와 주체를 알아보고, 기유약조 이후 조선의 대일통제 방향과 조선후기 대일 외교사행 체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II. 조선후기 대마도의 국교재개교섭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의 향도역할을 담당했던 쓰시마도주에게 전쟁이 장기화하고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삶의 영위를 확보하는 것은 관건이었다. 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 속해 있던 쓰시마도주가 조선과의 강화교섭 주체로 나서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강화교섭은 왜란이 끝나갈 무렵 진행된 명 군문과의 정전협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이후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진행된 일본 내 정치상황에서 쓰시마도주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셋째는 강화교섭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의사와 명령이 어느 정도 대마도에 전달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화교섭에 나타난 외교적 행위, 예를 들면 피로인 송환, 서계 작성 등에서 외교교섭권자 내의 역학관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1_ 대마도의 국교재개교섭 태도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난 뒤, 28일 도쿠가와 이에야

스를 비롯한 五大老는 히데요시의 명으로 철병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³⁾ 9월 5일자로 조선에 파견된 모든 왜장들에게 철수 지침을 하달하면서, 강화를 명령한 이상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였다.⁴⁾ 이러한 철수 명령 당시에 쓰시마도주 宗氏は 고니시 유키나가에 속해 있었으며, 유키나가의 진영에는 명나라 장수 劉綎이 보낸 40여 명의 명나라 인질이 붙잡혀 있었다.⁵⁾ 그에 앞서 유키나는 5월 朱元禮와 要時羅 등을 明軍 진영에 파견하였고,⁶⁾ 이들은 철군 명령이 내려진 이듬해 4월 戰犯의 처벌 형태로 효수되는⁷⁾ 일이 벌어졌다.

대마도의 강화협상을 위한 노력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대마도는 1598년 12월 船主 康近을 보내어 처음으로 강화교섭 시작하였다.⁸⁾ 이때 쓰시마도주는 명나라의 인질과 差官 3명을 함께 송환하였다. 이후 쓰시마도주는 1607년 제1차 회담검색환사가 파견될 때까지 총 22회에 걸쳐 사람을 보내어 강화협상을 진행하였다.⁹⁾ 이 시기 일본의 강화교섭의 특징은 첫째, 교섭 초기 교섭의 대상은 명나라 軍門이었으며, 조선 정부 역시 명나라를 借重之計 차원에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섭 대상이 조선 정부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은 1600년 4월 명나라의 인질 40여 명과 피로인 20명을 송환하여 명나라와의 외교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다.

일본의 대조선 강화교섭은 쓰시마도주 이외에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고니시 유키나가, 데라자와 마사나리[寺澤正成],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의 참여 사례는 총 8회로 시마즈 요시히로 1598년, 고니시 유키나가 1600년 4월, 데라자와 마사나리 1600년 4월 ·

3) 『黒田文書』三(中村孝也, 1959, 『徳川家康文書の研究』, 日本學術振興會, 324쪽)

4) 『大日本古文書』家わけ, 淺野家文書

5) 『선조실록』32년 2월 갑자조. 정유재란 이후 명·일 정전협상 내용은 홍성덕, 1995a, 앞의 논문 참조.

6) 『선조실록』31년 5월 신묘조

7) 『明神宗實錄』萬曆 30년 4월 계묘조

8) 『선조실록』32년 7월 신유조

9) 이하 임진왜란 직후 일본의 강화교섭은 홍성덕, 1995b,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3집 참조.

1601년 6월 · 1602년 11월, 가토 기요마사 1602년 4월 등이다. 교섭 주체는 일본의 내정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싸움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1600년 9월 이후 이에야스 세력에 대항한 시마즈 요시히로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사라지고 데라자와 마사나리, 가토 기요마사는 이에야스가 쇼군에 오를 때까지 참여하였다. 이들 교섭주체들 중에 가토 기요마사를 제외하면 모두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에 서신을 전달하고 있었다. 쓰시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함께 강화교섭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다. 시게노부는 쓰시마도주와 함께 외교적 능력을 같이하고 있었다. 피로인을 쇄환하거나, 왜사들로부터 외교 교섭을 보고받고, 막부에 대한 보고자 역할을 하였다.¹⁰⁾

둘째, 교섭의 명령권자로 이에야스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히데요시를 보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1600년 4월 고니시 유키나가 · 데라자와 마사나리,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서계부터다.¹¹⁾ 이후 쓰시마도주 소 요시토시가 보낸 서계에는 히데요시에게 절명하고, 조선을 침략한 전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화를 요청하는 주체로 이에야스를 거론하고 있다.¹²⁾ 이에야스가 최고의 통치권자[家康君]로 보고된 것은 1601년 11월이었으며,¹³⁾ 이에야스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1602년 11월 이후다.¹⁴⁾

셋째, 국교재개 교섭기에 대마도는 피로인 쇄환에 적극적이었다. 국교재개 교섭기에 외교사절이 조선에 송환한 피로인은 총 10차례에 걸쳐 2,349명(3,959명)에 달하고 있었다.¹⁵⁾ 임진왜란 때 강제로 붙잡아간 조선인 피로인들이 대마도 내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의 송환 요구에 대마도 내의 조선인 피로인들만을 돌려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듯하다.

10) 『선조실록』 36년 1월 기미조, 36년 3월 경진조, 35년 5월 을축 · 임오조

11) 『선조실록』 33년 4월 정해조

12) 『通航一覽』 권26, 「方策新編」, 306쪽

13) “……和交若不能成 則貴國請早示其實 莫巧言緩延 只速聞成不成之事 盖是家康君之意也 ……”(『朝鮮講和書契』, 『통항일람』 권26)

14) 『선조실록』 35년 12월 임진조

15) 국교재개 교섭기 피로인 쇄환에 대해서는 홍성덕, 1995b, 앞의 논문, 68쪽 참조.

이는 1600년경 대마도에서 조선인을 생포한 뒤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측의 경비가 심하여 종종 실패하였지만, 사스나[佐須奈]에 거주하고 있던 다케다 기헤에[武田喜兵衛]가 水夫 8명과 함께 부산포에 잠입하여 야음을 틈타 조선인 1명을 생포한 뒤에 피로인 송환 형식으로 되돌려보낸 적이 있었다.¹⁶⁾ 대마도의 조선인 납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橘倭가 전에 떠날 때 3월 사이에 또 나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계속 왕래하고 있으니 그 안에는 큰 변동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적의 정세가 몹시 교활하여 지난해에는 橘倭를 보내고는 몰래 統制使의 鹽卒을 해쳤고 작년에도 橘倭를 보내고는 唐浦에서 고기잡이하던 사람을 해쳤습니다.¹⁷⁾

平調信은 흉악하고 교활함이 가장 심하여 지난해에는 橘智正을 보내어 사로잡아간 사람을 석환한다고 하고서 바로 밤을 틈타 왜속선을 내 보내 거제도에 있는 鹽戶의 남녀를 붙잡아갔고, 지난해에 또 橘智正을 보내 강화에 관한 일을 탐문케 하고서 바로 왜적의 잔당들이 唐浦 지방에서 몰래 漁業하는 사람들을 약탈해갔었다.¹⁸⁾

1602년 강화교섭을 위해 다치바나 도모마사[橘智正]가 와 있었음에도 조선인을 강제로 붙잡아가거나 당포를 습격하여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마도의 조선인 납치가 반드시 피로인 석환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국교재개 교섭기에 대마도의 조선인 납치 의도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대마도가 대규모의 피로인을 송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1600년 6월 金達 편에 피로인을 송환하면 화호를 논하겠다는 서계를 보낸 이후다. 당시 쓰시마도주 요시토시와 시게노부는 오사카에서 이에야스와 상의했던 것으로 보인

16) 新對馬島誌編集會, 1963, 『新對馬島誌』, 288쪽

17) 『선조실록』 36년 2월 갑오조

18) 『선조실록』 36년 6월 갑오조

다.¹⁹⁾ 그리고 1606년 5월 강항은 귀국하는 도중 시게노부로부터 조선에서 서계를 보내오면 대마도 내 피로인을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였고,

게이조[慶長] 6년(1601) …… 그 후 요시토시와 시게노부 등이 서로 도모하여 여러 지역의 태수들에게 피로인을 요청하였고 점차 조선에 돌려보내었다.²⁰⁾

고 하여, 1601년 쓰시마도주 등이 다른 지역의 다이묘들에게 피로인을 요청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602년 이후 쓰시마도주는 일본 내 각 지방의 다이묘들로부터 조선의 피로인을 구해 사절 편에 송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교재개 교섭기 조일외교교섭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외교권자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해나가는 과정과 교섭의 내용은 일치하고 있다. 교섭의 주체가 쓰시마도주와 그 가신 시게노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이들의 역할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점, 일본 각 지역에 피로인의 송환을 쓰시마도주가 요청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쟁이 끝난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휘를 받지 않고 조선과의 강화교섭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 파악하는 것은 모순이다. 1607년 회답검쇄환사의 파견과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대마도의 국교재개 교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권력 장악 과정에 맞추어 강화되었으며, 조선 정부의 대응 역시 일본의 최고권력자로서 이에야스를 인식해나가는 것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2_ 대마도의 실익추구

국교재개 교섭에 대한 대마도의 꾸준한 노력에도 조선 정부는 명 군문의 핑계를 구실로 정확한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조선이 일본과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은 명나라의 再造之恩을 배반하는 힐책을 두려워하고, 조선

19) 홍성덕, 1995b, 앞의 논문, 69쪽

20) 『通航一覽』 권26, 「韓錄」 「白石叢書」

이 일본과 내통한다는 ‘通倭’의 구실을 명나라에 줄까 하는 걱정과 일본의 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²¹⁾ 또한 조선 정부로서는 강화교섭 요청이 대마도의 독자적인 행동이라는 피로인들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에 따라 강화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²²⁾

침략을 받은 조선의 입장에서 강화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끊임없는 경계감이 지속되었으며, 한편으로 강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감을 감출 수 없었다. 명 질관의 송환과 명군의 철수라는 대외조건의 변화는 한일국교재개에 조선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은 강화의 시대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외교 파트너로 삼을 것인지와 국교재개 이후 한일관계를 어떠한 틀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문제는 ‘羈縻외교’의 대상으로 대마도를 정하고 대일외교의 창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조선의 태도 변화는 회답 서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1600년 이른바 邊將의 답서로 알려진 서계에서 조선·대마도의 국교재개 요청에 대해 ‘貴島’라는 표현 없이 ‘貴邦’으로 표현하였다.²³⁾ 이는 조선의 외교 대상이 일본이지 대마도가 아님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1601년 예조참의 정엽이 보낸 서계에서는 ‘貴島與敝邦 雲水相望’과 같이 대마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⁴⁾ 이 서계에서 조선은 대마도의 ‘父母之邦’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명군이 대마도를 공격하는 것을 조선이 막아주었으니, 만일 일본이 誠信을 보이고 대마도가 잘못을 반성하면 강화를 허락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1604년 開市를 허가할 때에는 “어찌 일본의 잘못 때문에 대마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²⁵⁾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1601년 7월 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대한 기미정책을 결정하자, 대마도는 곧

21) 민덕기, 2007,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155쪽

22) 홍성덕, 1997, 「17世紀 對日政策의 確立過程과 그 性格」, 『전북사학』 19·20 합집

23) 『朝鮮通交大紀』 권4, 萬松院公次, 148~149쪽

24) 『通航一覽』 권26, 「方策新編」, 304~305쪽

25) 『朝鮮通交大紀』 권4, 萬松院公次, 155쪽

바로 다치바나 도모마사를 파견하여 피로인을 쇄환하고 아울러 ‘開市’를 요청하였다. 개시를 요청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실하지 않으나,²⁶⁾

義智·調信이 바친 총과 창 및 橘智正이 바친 黑角 등에 대해서는 경상도의 邊將에게 참작해서 값을 정하여 虎皮·鷹連이나 기타 토산물로 상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²⁷⁾

라 하여, 1601년 11월에 진상품을 바치고 호피와 매 등의 회사품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 강화교섭을 위해 도향했던 6차례의 사절들이 모두 피로인을 송환했을 뿐 진상품을 바치지 않았으나, 조선 정부가 허화의 뜻을 밝힌 1601년 7월 이후 곧바로 진상품을 바친 것이다. 경상도체찰사 이덕형은 대마도가 무기를 보내온 것은 우리나라를 갈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품질이 좋은 무기로 强弓을 주되 호피 등의 물품을 곁들여 주도록 요청하였다.²⁸⁾ 이에 소 요시토시, 야나가와 시게노부 등에게 豹皮와 활을 주고 다치바나 도모마사에게는 쌀 40섬을 지급하도록 하였다.²⁹⁾

진상과 회사를 통한 경제적 이윤의 확보는 대마도가 처한 경제적 여건 때문이었으며, 이를 조선에서도 익히 인지하고 있었다.

對馬島主 平義智·平調信 등이 수백 년 이래 우리나라의 물자로 살아오다가 이제 그 이익이 끊어지자 죽기로 기어이 그 (강화하는) 제책을 이루려는 것이니, 지극히 통분스럽습니다. …… 이번 왜적의 편지는 혹시 平義智·平調信 등이 일본의 세력을 假托하여 대마도의 양식을 얻기 위한 제책으로 …… 다만 대마도는 우리나라에서 바라보일 정도로

26) 『攷事撮要』(『朝鮮通交大紀』 권4, 萬松院公次), “對馬島倭平義智 連連橘智正刷還被擄男婦來 要和好乞通開市.” 橘智正이 국교재개기에 조선에 도향한 것은 1601년 6월 피로인 250명을 송환할 때와 1601년 11월, 1602년 6·11월, 1603년 3·10월, 1604년 3월, 1605년 4월, 1606년 1·11월 등이었다(홍성덕, 1995b, 앞의 논문, 55~56쪽).

27) 『선조실록』 34년 11월 무오조

28) 『선조실록』 34년 11월 신유조

29) 『선조실록』 34년 12월 임진조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토지가 척박하여 우리나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 대마도의 적은 우리나라 경계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의지하여 먹고 산 지가 오래되었으니, 일본의 다른 왜적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옛날의 우호 관계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실정에서 나온 것인 듯하니, 우리의 기미하는 계책에 있어서도 일체 거절하여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³⁰⁾

1607년 일본의 강화 요청에 대한 조선의 대신 및 2품 이상 관원들의 대책 회의에서 나온 이러한 인식은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뒤 대마도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왜구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은 대마도에 대한 허화를 결정하면서 대마도의 왜구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대마도를 통한 대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마도의 경제적 요구 즉 무역의 재개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조선전기의 경험으로 대마도와의 무역거래 허용에 따른 폐단을 감지하고 있었다.

(慶尙)左水使 李雲龍에게 분부하기를 “이번 橘智正이 나올 때에 혹시라도 변방 백성들이 몰래 무역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시킬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심분 엄밀하게 지켜 보호하고, 그들이 가지고온 물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서 보고하라”고 하였더니, 이운룡이 회보하기를 “橘智正이 가지고온 물건은 조총 10정, 山獺皮 16속, 丹木 15근, 烏賊魚 70속입니다. 智正은 묵묵히 말이 없으나 倭倭의 말을 들어보면 매매하고 싶은 정상이 뚜렷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

신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팔지 못하고 돌아갈 경우 실망할 우려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나왔을 때와 같이 虎豹皮 및 綿布를 水使에게 보내 관청에서 사들인 뒤 편리한 대로 처치하고 회보하도록 분부하였습니다. 만약 꼭 조정에 稟旨한 뒤에 하게 되면, 智正이 돌아갈 날짜가 촉박하여 형편상 미처 왕복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부득이 이와 같이 분부하였습니다. 조치를 기다린 뒤에 다

30) 『선조실록』 34년 7월 기해조

시 치계하겠습니다.³¹⁾

이와 같이 경상도체찰사 이덕형이 치계한 바에 따르면, 1601년 11월 진상·회사의 무역거래 이외에 관청에서 사들이는 방식의 공무역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602년의 경상도 좌수사 이운용의 보고에 따르면 대마도의 사절은 공식적으로 무역을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무역거래를 위해 물품을 가지고 왔으며,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밀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하여 구입해주도록 허가하였다.

대마도에게 조선과의 국교재개 성패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삼포왜란 이후 조선과의 통교가 단절되었다가 임신약조 체결로 재개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교류가 급감한 대마도에게 경제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임진왜란에 앞장 선 공로로 1595년 사쓰마[薩摩] 이즈미군[出水郡]에 1만 석의 영지를 받고, 1599년 히젠[肥前]의 야부군[養父郡] 내 5,707석, 기이군[基肆郡]의 4,330석 등 총 10,037석으로 換地받았다. 이후 유정을 왕래케 한 공으로 히젠군 내 2,800석의 영지를 더 받은 것 등은 조선과의 무역 단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³²⁾ 특히 을묘왜변 이후 조선과의 교역 단절과 7년 동안의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대마도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동래 부사 李繼先의 비보에 “본년 2일 해시에 왜선 한 척이 원양대 앞 바다에 들어오다가 순찰하던 兵船에 잡혀왔는데, 왜인 連時老가 그의 아내 也如守를 대동하고 그의 아들 馬子時·注乙麻·要和老 3명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 즉시 연시로 등을 잡아다가 이모저모로 물어보니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대마도의 都汝沙只라는 곳에 사는 왜인이다. 본도가 지난해에 흉년이 든데다가 島主가 너무 가혹하게 조세를

31) 『선조실록』 35년 7월 기사조

32) 新對馬島誌編集會, 1963, 앞의 책, 289쪽

거두어들이므로 島民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없게 되자 모두가 조선에 귀부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도주가 강화하기 위한 사자를 차임하여 보냈는데, 시일이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도민들은 모두 강화에 관한 일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여 자못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강화에 관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투항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게 된 것이다'고 하였다.”는 내용이었다.³³⁾

이와 같이 대마도의 악화된 경제 상황은 대마도민들로 하여금 조선에 귀부토록 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에 투항하려 결심하게 된 계기가 강화의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마도의 경제 문제는 단지 도주를 포함한 지배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층민들에게도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마도의 실리 추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강화교섭을 위한 외교사절의 진상과 回謝 형식의 공적인 경제교류 외에 ‘약간의 팔 물건을 가지고 使行을 따라와 이익을 도모하려 한’ 사람들이 있다는 1602년 전계신의 보고³⁴⁾와 같이 사적인 거래까지 일부 허용되었으며, 거래에는 京商들까지 참여하였다.³⁵⁾ 경제교류 요청이 늘어나면서 대마도는 이에야스의 요구에 따라 약재를 구입하고자 하였다.³⁶⁾ 이 외에도 대마도는 조선 정부로부터 피로인의 적극적인 쇄환을 유도하고 대마도의 왜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책을 시행하

33) 『선조실록』 36년 6월 갑오조

34) 『선조실록』 35년 12월 임진조

35) 『선조실록』 36년 9월 병진조

36) 『선조실록』 36년 6월 기해조. “첨부한 목록의 藥材는 內府 家康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그 값에 대해서는 使者 橘智正이 현재 머물러 있으므로 그만한 물건을 따져 보내겠습니다. 만일 그 값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물건을 뒤따라 보내겠으니, 소홀히 여기지 말아주시시오.” 사신 橘智久가 요청한 약재는 牛黃 5냥, 麝香 1근, 白麝 2근, 白蠟 1근, 辰砂 2근, 雄黃 1근, 自然銅 2근, 阿膠 2근, 光明朱砂 30근, 無文大傳通匹段 紅色 또는 白色 50여단, 無金線大紅匹段 20단, 煮綠礬 1근 등이었다.

였다. 피로인을 송환한 대마도의 사절에게 쌀을 지급한 것³⁷⁾이나, 교섭 주체 중의 한 명이었던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죽음에 목면 20필, 正布 20필, 倉米 20곡을 보낸 것³⁸⁾ 등이 그 사례다.

대마도의 국교재개 노력과 교역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화친이 이루어진다면 다이라 요시토시[平義智, 宗義智]가 禍를 면할 뿐만 아니라 關市도 통할 수 있고 또 제 나라에서 공로에 대한 상도 받을 것이니, 다이라 시게노부[平調信, 柳川調信]가 화친을 이루려는 것은 어린아이가 젖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³⁹⁾라 하여 국교재개 교섭기에 대마도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대마도의 왜구화에 대한 우려가 경제문제에서 나온 것이며, 교섭재개에 대한 대마도의 노력은 조선과의 경제교류 회복과 일본 정부의 포상 등이 내재된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활한 왜가 바라는 것은 關市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관시를 허락하더라도 이미 허락한 뒤에는 또다시 와서 다투는 일이 있을 것”⁴⁰⁾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3_ 기유약조의 의미

1603년 6월 대마도는 조선과의 和好에 관한 일은 도주인 다이라 요시토시 이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으며, 이에야스의 手押에도 “平義智는 이것으로 증험을 삼아 사람들의 방해를 막도록 하라” 했는데 이는 다이라 시게노부의 서계에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 하면서, 信使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였다.⁴¹⁾ 처음으로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3년 동안 虛辭로 국교재개를 미루었으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대마도에 대해서는 중국을 핑계로 내세우되 開市를 허락하

37) 『선조실록』 35년 8월 임진조, 36년 1월 기미조 · 4월 정해조, 37년 6월 무자조

38) 『선조실록』 39년 4월 임술조

39) 『선조실록』 37년 2월 무신조

40) 『선조실록』 36년 9월 경신조

41) 『선조실록』 36년 6월 기해조

기로 결정하였다.⁴²⁾

대마도는 1604년 유정이 일본을 왕래한 공로로 조선과의 외교권을 전담하는 권한을 다시 한 번 확인받게 된다.⁴³⁾ 쓰시마도주는 이에야스로부터 3년에 한 번 참근하도록 허락받고 領地 2,800석을 추가로 더 하사받음으로써 대조선 외교전담자로서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1607년 파견된 회답겸쇄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제 講和의 일이 이루어졌으니, 源氏의 세상에 다시 무슨 원함이 있겠습니까? 이 뒤로 두 나라 사이에 서로 通할 일이 있으면 對馬島를 시켜 하소서.⁴⁴⁾

에도막부의 執政으로 쇼군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나라의 일이 모두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고 알려진 혼다 마사노부[本多正信]⁴⁵⁾의 발언을 통해서 일본의 대조선 정책 전담자로서 쓰시마도주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졌다. 쓰시마도주의 외교권 위상을 다시 확인한 조선 정부로서는 더 이상 쓰시마도주와의 통교무역을 끌기만 할 수 없었다. 기유약조 체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기유약조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는 약조체결의 주체 문제와 약조의 성격을 둘러싸고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약조체결의 주체가 대마도인가 아니면 외교권한을 위임받은 에도막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약조의 성격이 대마도와의 私的 통교관계 규정인지 국가 간의 조약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요약된다. 먼저 사적 통교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42) 『선조실록』 36년 7월 기묘조, 8월 신묘조

43) 유정 일행이 일본을 왕래하도록 한 공로로 쓰시마도주는 이에야스로부터 두 나라의 통교를 전담하도록 명령받고 일본의 변병으로 인식되었다(『通航一覽』 卷27, 朝鮮國部三).

44) 慶暹, 『海槎錄』 하, 6월 11일 임인. “今者和事既成 源氏之世 更有何嫌 此後如有兩國相通之事 令馬島爲之.”

45) 위의 책, 6월 초7일 무술. “佐渡守本多正信 年可六十餘 爲關白執政 最見信任 一國之事 專委此人云.”

학자는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와 로널드 토비(Ronald P. Toby)다. 다시로 가즈이는 기유약조가 “중세에서 계승되어온 쓰시마도주와 조선의 이른바 ‘私的’ 통교관계를 기조로 한 것”⁴⁶⁾으로 파악하였고, 로널드 토비는 기유약조가 외교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약조를 체결한 것은 (에도)막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약조의 의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約條로 선언되고 있는 것은 通商의 조목뿐”⁴⁷⁾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로 가즈이는 더 나아가

“(기유) ‘약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와 쓰시마도주 사이의 약속을 의미한다. 約定·協定·契約(agreement)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간의 盟約(treaty)인 條約과는 다르다.”⁴⁸⁾

고 하여, 約條는 국가 간의 條約과 다르다고 하였다.

반면, 한국 내 연구자들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국교재개 교섭이 ‘羈縻政策’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후기 朝日 간의 교역관계,⁴⁹⁾ 禮를 취하는 교역의 형태⁵⁰⁾로서 기유약조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기유약조를 체결 주체 문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약조 체결 당시 대마도의 위상을 평가하고 대마도에 대한 한일 두 나라의 상황을 토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은 약조를 체결하기 전 쓰시마도주가 일본 정부의 대조선 외교 전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을 인지했으며, 기유약조에 일본 국왕사도 쓰시마도주의 文引을 지참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기유약조는

46)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51쪽

47) ロナルド・トビ 著, 速水融 外 譯, 1990,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創文社, 43~45쪽

48) 田代和生, 2002,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春新書, 18쪽. 번역본 정성일 역, 2005,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에서는 約條와 條約을 구분하지 않았다.

49) 민덕기, 1989,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講和交渉과 對馬島(2)」, 『사학연구』 40집, 201쪽; 민덕기, 2007, 앞의 책, 251~257쪽

50) 손승철,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55쪽

대마도와의 통교무역을 너머 조선후기 일본과의 기본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⁵¹⁾

이러한 상이한 견해에 대해서 ‘약조(agreement)’와 ‘조약(treaty)’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해석을 내린 견해가 나와 주목할 만하다.

다시로[田代]는 agreement와 treaty를 ‘私的’과 ‘國家的’으로 대응시키고 있지만, 국제법 사전에서는 그 구별은 없다. agreement도 treaty도 「조약」이다. 일본어의 「조약」은 treaty, agreement, arrangement로 불리며, 어느 명칭을 사용하는가는 당사자의 任意이며, 호칭에 의해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변할 수는 없다.⁵²⁾

사사가와 노리가쓰[笹川紀勝]의 이러한 지적은 근대 국제법적 관점에서 기유약조를 분석한 것으로 “조선·對馬藩·幕府라는 3자 구조에 규정된 중개자를 법적으로 정당화한 기유약조의 내재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國家理性으로서 對馬의 통상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그 이해를 직접 실현하는 세견선에 관한 조문이 있고 동시에 중개자로 기능하는 館待(왜관 접대)와 文引의 조문이 있다. 따라서 조선·幕府의 통교관계에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정치적 기회가 중개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통상 규정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기유약조를 체결할 때의 국가 간의 관습법이 올바른 교린관계의 세계질서에 표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마도에 대한 도쿠가와막부의 승인 또는 묵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유약조의 내용을 막부가 알고 있었는가 알 수 없으나 對馬藩과 幕府 사이에 한 번도 승인에 의심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기유약조 체결의 주체는 표면적으로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왕의 명령을 받은 선위사 이지완과 쓰시마도주가 보낸 겐소[玄蘇]다. 조선 정부와 쓰시마도주

51) 홍성덕, 1997, 앞의 논문 및 한일역사공동위원회 편,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제2분과 제2회 연구발표회 토론 녹취록 참조.

52) 笹川紀勝, 2010, 「征韓論までの國際法體系の問題」, 『法律論叢』 제82권 제2·3 합병호, 187쪽

가 약조를 체결한 두 외교관의 명령권자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두 사람을 권한의 위임자로 볼 것인지 나아가 겐소의 파견이 쓰시마도주의 자의적인 행동인지 쇼군의 묵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교섭에 임하는 조선 정부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은 1607년 회답검쇄환사를 통해서 쓰시마도주의 외교권 위상을 확인한 바가 있다. 1609년 3월 겐소가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의 差使를 표명하였고, 아울러 서계를 가지고왔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국왕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⁵³⁾ 겐소가 지참한 서계는 ‘國王의 書契’로 지칭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본 국왕의 서계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겐소와 약조를 체결하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上京과 貢路 문제에 대해서는 서계에 쓰여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대마도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었다.⁵⁴⁾ 이에 대해 선위사 이지완과 경상감사 신경진은 역관 박대근으로 하여금 다이라 가게나오[平景直, 柳川景直]에게 개유토록 하였다.

오늘날 부산에서 너희를 기다려 약조를 강정하는 것은 모두 너희 대마도를 위해서다. 너희들은 왜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이와 같이 협박하는가. 조선이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너희들의 7,8년 공부는 반드시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⁵⁵⁾

4월 2일 조선 정부가 상경을 불허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약조 체결의 뜻을 표명하자, 다이라 가게나오는 “(일본) 국왕의 서계를 받았으니 중도에 버려두고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끝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의 말을 듣지 않자니 이 일이 거의 이루어졌다가 끝내 실패

53) 홍성덕, 1996, 「朝鮮後期 日本國王使 檢討」, 『한일관계사연구』 6집

54) 『광해군일기』 1년 3월 기유조. 이때 겐소 등이 요청한 貢路문제는 1차 회답검쇄환사 때에 이미 제기된 문제로, 에도막부의 의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었다(민덕기, 1994, 「朝鮮·琉球를 통한 에도 바쿠후의 對明 접근」, 『한일관계사연구』 2집).

55) 『광해군일기』 1년 4월 계축조

할 것이고, 듣자니 이 몸을 장차 어느 곳에 두겠는가. 진퇴양난이 되어 조처할 바를 모르겠다”⁵⁶⁾고 하면서도 3일 뒤에는 태도를 바꿔 상경하지 않고 다음 달 5월 2일경에 부산 외성 안 객사에서 서계를 바치는 것에 동의하였다. 「東來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이하 접외사목초책)」에 따르면 5월 이후 기유약조의 각 조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대마도의 입장에서 기유약조의 체결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유약조는 전체적으로 통교무역을 규정한 것이지만, 전근대 외교의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외교사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유약조가 通商조약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에서 조선에 보낼 수 있는 외교사행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조의 성격을 通商조약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기유약조는 조선 후기 대일외교의 규범적인 약조로서 국가 간의 외교사행과 접대 등에 관한 조약의 성격을 갖는다. 조선후기 일본에서 파견할 수 있는 외교사행을 日本國王使, 對馬島主特送使, 對馬島受職・受圖書人으로 구분하여 사행을 파견할 수 있는 주체를 일본 국왕, 쓰시마도주, 수직인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8조에서 일본 국왕이나 수직인들도 모두 쓰시마도주의 文引을 받아오도록 강제함으로써 대조선 외교사행의 도항권을 쓰시마도주에게 부여한 것이다. 즉 조선에서는 일본 국왕의 외교사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외교규정으로 기유약조를 인식하면서, 문인권을 통해 대마도를 매개로 한 대일본 외교정책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이로써 국교재개 교섭 이래 대조선 외교를 전담해온 대마도가 조선과의 공·사무역권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외교전담자인 쓰시마도주를 지휘하는 쇼군이 보내는 사행들조차 반대로 쓰시마도주의 문인을 지참케 한 것은 쇼군이 보내는 외교사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우회적 표현이며, 쇼군은 직접 외교사절을 보내지 말고 쓰시마도주를 통해 보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외교사행 시스템은 쓰시마도주에게 외교권과 무역권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56) 위와 같음.

셋째, 기유약조는 일본의 대조선 외교 규정만을 담고 있을 뿐, 조선의 대일본 외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국교재개 교섭기는 물론 대일외교가 안정화하는 17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도 조선의 대일본 외교사행에 대한 약조는 체결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후기 한일관계가 敵禮的 對等外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 우월관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임진왜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음을 말한다. 조선후기 전 기간 동안 외교사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요청이 있을 때 파견하는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넷째, 기유약조의 통교무역 규정이 조선전기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특송선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세견선과 별도로 구별되어 도항하는 횟수 규정이 없었는데⁵⁷⁾ 연간 3척으로 제한하고 그마저도 세견선 20척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受職人의 대리인 파견을 금지한 것이나 受圖書人을 늘리지 않는 등 대마도로서는 경제적 이윤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Ⅲ. 국교재개 이후 일본의 대조선 외교재편

1_ 대마도의 통교무역량 확대 노력

기유약조가 체결됨에 따라 대마도는 조선과의 통교무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본적으로 조일 간에 왕래한 외교사행을 통해서만 통교무역이 가능했으므로, 대마도가 무역량을 늘리는 합법적 방법은 使節을 늘리는 것이었다. 기유약조에는 日本國王使와 歲遣送使(특송사 포함), 受職人送使, 受圖書

57) 田代和生 저, 손승철·유재춘 역, 1988, 『近世韓日外交秘史』, 강원대학교 출판부, 31쪽

〈표 1〉 조선후기 受圖書倭使 일람표

구분 사행	도서 발급	발급 대 상	반환(이유)	운 용 실 태
仙巢送使	1609년	玄蘇	1635년(柳川事件)	1611년 玄芳 계승
以酤庵送使	1638년	以酤庵		柳川事件 이후 도주 발급 요청
柳川送使	1611년	柳川景直	1635년(상동)	1613년 柳川調興 계승 1640년 副特送使로 개칭
平彦三送使	1611년 ¹⁾	平彦三(義盛)	1657년(彦三 사망)	1615년 宗義盛 습직
平義眞送使	1642년 ²⁾	平彦滿(義眞)	1704년(彦滿 사망)	1654년 宗義眞 습직 1702년까지 사행도향(義眞 卒年)
萬松院送使	1622년 ³⁾	萬松院	존속	1625년 이후 도향
流芳院送使	1622년	流芳院	1636년(柳川事件)	1638년 島主 宗씨 계승 중지

* 출처: 홍성덕, 1998, 『17세기 조·일의교사행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 2〉 조선후기 受圖書倭使 일람표를 재구성

* 雨森芳洲의 『和交覺書』에는 1) 1615년, 2) 1612년, 3) 1641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兩足院朝鮮記錄』에 따르면 4) 萬松院送使의 圖書 造給年이 1614년이다.

〈표 2〉 조선후기 受職人 일람표

受職人	수직 내용	비고
柳川景直	1609년 수직	1611년 受圖書人 전환
橘智正	1609년 수직	
源信安	1613년 이전 수직	
藤信久	1610년 職帖 발급	
藤永正	1625년 관복 지급	
世伊所	1612년 관복 지급	
馬堂古羅	1596년 수직, 1612년 관복 지급, 1615년 첨지중추부사	동생 馬勘七이 계승
平智吉	1628년 종9품 修義副尉 수직, 1629년 司猛 수직	
信時老	1597년 果毅校尉 龍驤衛 司直 수직, 1612년 관복 지급	
平信時	1623년 修義副尉 虎賁衛 副司猛 수직	父 信時老의 관직을 계승

출처: 하우봉·홍성덕 역, 1998,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제1권 본문·각주 참조 정리

書人送使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절의 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국왕사와 수도서인뿐이었다. 결국 대마도가 선택한 방법은 첫째, 수도서인을 늘리는 것과 임진왜란 전의 수직인은 죄를 면하여 주되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수직인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었다.

위의 표와 같이 대마도는 기유약조 체결 이후 수도서인과 수직인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시기는 17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서인의 경우 국서개작 사건이 종결된 1635년 이후 일부가 반환되었으나 국교재개 교섭기에 공이 있었던 겐소[玄蘇, 仙巢]와 야나가와[柳川]의 도서는 이정암 송사, 부특송사의 명칭으로 다시 도항이 허락되었다. 반환 후 재허락되지 않은 사절은 平彦三 송사와 平彦萬 송사, 流芳院 송사다. 수직인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이나 동생에게 계승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수도서·수직인의 특징은 국교재개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거나 임진왜란 때에 조선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조선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는 전쟁과 전후 교섭과정에서 조선에 우호적이었거나 국교재개 결정 이후 외교적으로 필요한 대마도 내의 정치세력에 대한 유인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된 이정암이나 국서개작 사건 때 家臣이었던 야나가와의 세력을 제압했던 쓰시마도주에게 柳川圖書를 대신하여 부특송사를 허락한 것, 그리고 소 요시토시의 원찰에 해당하는 萬松院에 도서를 발급해준 것, 수직인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 수직인의 진상과 공무역을 제1특송사에 붙여 보내게 한 中絶五船 등도 마찬가지다.

둘째, 파견 횟수가 규정되지 않는 일본 국왕사의 파견을 어떤 형태로든 재개하는 것이다. 수도서·수직인과는 달리 일본 국왕사의 파견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정부가 일본 국왕사의 도항을 허락하면서도 쓰시마도주의 문인을 지참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쓰시마도주는 기유약조 체결에 앞서 ‘일본 국왕’의 국서를 지참한 사절이 왕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왕사의 파견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1606년 11월 처음으로 일본 국왕의 서계를 지참한 사신으로 다치바나 도

모마사가 온 이래 일본 국왕사의 왕래는 1609년 3월 겐소, 1608년 11월 회답겸 쇄환사의 報聘使, 1616년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온 다치바나 도모마사, 1622년 1월 보빙사 겐보[玄方] 등 총 5차례였다.⁵⁸⁾

임진왜란 이후 일본 국왕사의 파견은 국왕사가 지참하고 온 외교문서 즉 일본 국왕의 국서가 쓰시마도주가 만든 가짜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교재개 교섭을 쓰시마도주의 자의적 행동으로 파악하고 막부와 관계를 부정한 연구와⁵⁹⁾ 막부의 명령 또는 인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쓰시마도주의 독자적 행동은 아니라는 연구⁶⁰⁾로 양분된다. 국서의 僞作과 改作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둔 일본의 연구는 임진왜란 후 국교재개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 명나라의 국제적 환경과 국교재개 교섭의 명분을 확보해야만 했던 조선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다.

쓰시마도주가 일본 국왕사를 파견한 시점은 도쿠가와막부로부터 조선과의 외교에 대한 전담의지를 확인한 뒤⁶¹⁾이거나 회답겸쇄환사의 왕래 이후의 일이다. 또한 조선 정부도 대마도에서 보낸 사절이 일본 국왕의 서계를 지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접대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은 ‘關白의 호령이 한 곳’에서 나올 정도로 일본 정세의 안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사절 일행이 ‘국왕의 명령’을 강조하고 국서(서계)를 지참했으므로, 일본 국왕사가 반드시 幕府의 差人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일본 국왕사의 파견은 1622년 이후 중단되게 된다. 1626년 쓰시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家臣 야나가와 쓰기요키[柳川調興] 사이에 히젠 지방의 토지에 대한 이에미쓰의 허가 문제로부터 시작된 갈등이 1633년 국서개

58) 조선후기 일본 국왕사에 대해서는 홍성덕, 1996, 앞의 논문 참조.

59) 田代和生, 1984, 『書き替えられた國書』, 中公新書;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60) 유재춘, 1986, 「壬亂後 韓日國交再開와 國書改作에 관한 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승철, 1994, 앞의 책 및 민덕기, 2007, 앞의 책 참조.

61) 사명당의 왕래 이후 쓰시마도주는 德川家康로부터 조선과의 통교를 전담하도록 명령받았으며, 1615년 도주 平義成도 德川秀忠로부터 對馬藩主의 家督과 조선 통교의 일을 위임받았다(홍성덕, 1996, 앞의 논문 참조).

작 사건의 폭로로 이어진 것이다.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이라 불리는 이 폭로 이후 쓰기오키와 외교승 겐보는 流刑에 처해졌으며, 쓰시마도주 소 요시토시는 영지와 조선 통교권을 인정하는 한편 아울러 통신사의 파견을 실현시키도록 명령받았다.⁶²⁾ 이 사건이 수도서인과 수직인의 계승을 쓰시마도주로 재편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국서개작 폭로사건으로 인해 일본 국왕사의 파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일본 국왕의 명령’을 이유로 실질적 이득을 도모하고자 했던⁶³⁾ 대마도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유약조에 규정되지 않은 외교사행을 파견하고 조선에서 그 접대를 인정받는 묘책을 찾아야 했다.

일본국왕사 - 올 때마다 다만 그 上船과 副船만을 접대한다. 그 뒤 국왕이 사신을 보내는 사례는 없어지고, 일이 있으면 쓰시마도주가 관백의 뜻으로 差倭를 정하여 보낸다.⁶⁴⁾ 옛날에는 차왜의 칭호가 없었고, 단지 年例送使만이 있었다. 광해군 원년 기유(1609)부터 船隻을 감한 이후에 만약 특별한 求請이나 求買 등의 일이 있으면, 頭倭가 書契를 지참하고 도래하였다. 조정에서는, 歲遣船에 붙여 보내지 않는 것은 約條에 어긋난다 하여 물리쳤다. 被擄人이나 漂流人을 거느리고 온 자도 또한 접대를 허락하지 않고 약간의 식량과 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島主와 調興이 서로 다룰 때에 이르러 그 상황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조정에서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뜻을 굽혀 비로소 접대하는 예를 열었다.⁶⁵⁾

이와 같이 일본 국왕사의 단절 이후 국왕사는 쓰시마도주가 국왕의 명령을

62) 국서개작 폭로사건에 대해서는 田代和生, 1984, 앞의 책; 荒野泰典, 1988, 앞의 책; 민덕기, 2007, 앞의 책 참조.

63) 대표적인 사례가 1622년에 도항한 일본 국왕사다. 이들은 회담검쇄환사의 파견에 감사하는 보빙사로 도항했으나 萬松院과 流芳院의 圖書를 발급받고자 노력하였다(홍성덕, 1996, 앞의 논문 참조).

64) 하우봉·홍성덕 역, 1998, 『국역 증정교린지』 권1, 민족문화추진회, 대마도인 접대에 관하여 새로 정한 사례.

65) 하우봉·홍성덕 역, 위의 책, 권2 차왜

빌려 파견한 차왜로 바뀌었으며, 약조에 없는 차왜가 조선에서 외교사행으로 접대를 받기 시작한 것은 국서개작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즉 국서개작 사건에 대하여 조선은 쓰시마도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⁶⁶⁾ 임시로 파견한 사절이 정규의 외교사절로 변화한 배경에는 특송사가 연례송사에 포함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倭差는 즉 옛날의 特送이다. 특송선이 이미 세전선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별도로 차왜를 보내왔다.⁶⁷⁾

특송은 이전의 國王使船이다. 또한 不時의 使船을 물건을 조달하는 약정한 수 이외의 사선을 특송이라 한다.⁶⁸⁾

국왕사와 대마도로부터 국왕의 명을 받아 보고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배를 특송이라 한다.⁶⁹⁾

국서개작 사건 이후 쓰시마도주는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확인받아야만 했다. 1636년 처음으로 ‘통신사’ 명칭으로 파견된 조선 국왕의 외교사절을 성사시켜 대조선 통교무역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무역량의 증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한 결과가 바로 차왜의 파견이었던 것이다. 1635년 12월 건너온 다이아 지유[平智友]를 처음 외교사행으로 접대하면서 차왜는 일본의 대조선 외교 실무자로서 다양한 명칭의 외교사행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⁷⁰⁾

마지막으로 사행선에 ‘副船’과 ‘水木船’을 함께 보내어 사신이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다시 한 번 대마도를 왕래하여 실질적으로 도항선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시행되었다.⁷¹⁾ 이 외에 차왜의 파견을 알리는 頭倭 역시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先文頭倭는 대마도와 부산 왜관을 왕래하는 연락선과 같은 것으로 정규의 접대를 받는 외교사행은 아니었다.

66) 홍성덕, 1992,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집

67) 『春官志』 권3, 차왜

68) 『交隣事考』

69) 『送使約條私記』

70) 홍성덕, 1992, 앞의 논문

71) 田代和生, 1981, 앞의 책, 제3장 도항선 증가 공작과 그 종류 참조.

2_ 江戸幕府의 대조선 외교권 통제 강화

국교재개 이후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서개작 사건 이후 시행된 以酤庵輪番制다. 연구의 쟁점이 17세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서 별다른 논의⁷²⁾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대마도에 위임되었던 대조선 외교에 대한 에도막부의 통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정암윤번제는 圖書를 발급받아 조선에 이정암송사를 파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정암에 상주한 外交僧이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막부가 대마도에 위임한 대조선 통교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정암은 겐소가 1597년 대마도의 이즈하라[嚴原]에 세운 암자로 자신이 태어난 丁酉年을 따서 이정암이라 하였다. 겐소의 사후 그 제자 겐보가 뒤를 이어 1635년 국서개작 사건으로 유배에 처해질 때까지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관장하였다. 국서개작 폭로사건 이후 막부는 교토의 4山(天龍寺, 建仁寺, 相國寺, 東福寺)의 碩學僧을 순차(윤번)로 파견하여 외교문서를 감찰하도록 하였다. 겐소는 이정암에 ‘조선국왕 만만세’라는 전패를 봉안하였다고 한다.⁷³⁾ 1635년 東福寺 寶勝院의 玉峰光璘을 처음 파견한 이래 1866년 폐지될 때까지 87명이 126차례 윤번승으로 이정암에 재직하였다. 이정암윤번승의 파견 이래 대마도에 맡겨졌던 대조선 외교는 막부의 통제 하에 두어졌고, 윤번은 막부의 의 최선봉에 있었다.⁷⁴⁾

쓰시마도주가 三使를 몰래 찾아와 통신사를 후대하려 한다는 이에미쓰(家光)의 뜻을 전하는 한편, 光璘 등 두 사람이 통신사를 호행하고 에도를 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감찰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72) 이정암윤번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김종욱, 1973, 「以酤庵輪番(交代)에 대하여」(下), 『도서관』 28권 6호, 국립중앙도서관; 泉澄一, 1977, 「江戸時代 日朝外交の一側面—對馬以酤庵輪番制と關係史料について」, 『東西學術研究所紀要』 10, 關西大學

73) 『춘관지』 권3, 연례송사

74) 泉澄一, 1977, 앞의 논문, 별표 〈對馬・以酤庵輪番對照表〉

역관을 개입시켜 자신과 삼사간의 비밀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였다.⁷⁵⁾ 이제부터 조선과 대마도 간에 왕래하는 모든 외교문서를 에도에 보내게 되므로, 조선에서 대마도에 보내는 서계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⁷⁶⁾

국서개작 사건의 결과, 쓰시마도주는 막부로부터 위임받은 대조선 통교외 교권이 크게 축소되었다. 외교권의 축소는 외교문서의 통제로 나타났다. 1636년 통신사행의 에도 왕복 때에 쓰시마도주의 외교능력은 윤번승에게 감시되고 있었으며, 조선과 왕래하는 모든 외교문서를 에도막부가 확인하는 직접통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조선에서 글(서계)이 오면 봉투 그대로 長老(이정암윤번승)에게 보내고, 장로가 개봉하여, 일의 경과를 일본어로 베껴 關東(幕府)으로 전달하여 명령을 받은 뒤 한문으로 답서를 써서 대마도의 관리에게 전하여 조선으로 보내도록 한다.⁷⁷⁾

조선에서 오는 모든 서계가 위의 내용처럼 봉투 그대로 막부에 보고된 것만은 아니었다. 실제 외교교섭에서 왜관에 있던 東向寺僧은 서계의 내용에 관여하고 있었고, 서계의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정암윤번승의 검열을 거치고 있었다.⁷⁸⁾ 즉 조선의 서계를 받아오기 전에 이정암윤번승의 검토를 거치며, 일단 허락된 내용의 서계는 그대로 막부에 전달되는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에도막부는 이정암윤번승의 파견을 국서개작 사건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서개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기 1년 전인 1634년 에도막부는 이미 玉峰光璘, 常陰玄召, 洞叔壽仙 등 3명을 동시에 碩學으로 임명하였으며, 光璘을 시작으로 이들이 순차적으로 재임, 3임하면서 윤번승의

75) 김세렴, 『해사록』 병자년(1636) 11월 4일

76) 김세렴, 『해사록』 정축년(1637) 2월 19일

77) 『通航一覽』 권30, 對馬國以酏庵輪番

78) 이훈,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156~157쪽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막부가 국서개작 사건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향후 대응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⁷⁹⁾

이러한 윤번제의 시행은 이른바 '4개의 창구'로 일컬어지는 에도막부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선과의 관계는 쓰시마번에, 류큐는 사쓰마번, 蝦夷는 마쓰마에번에, 중국·네덜란드는 막부의 직할로 나가사키에 맡기는 일본의 대외정책 정비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후 대마도는 대조선 외교를 家役으로 명령받았으며, 10만 석 규모의 다이묘(大名)로 幕藩體制에 편입되었다.⁸⁰⁾

결국, 윤번제 시행은 국서개작 사건의 결과라기보다는 17세기 중엽 일본의 대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련의 제도개선의 하나였던 것이다. 1598년 왜란이 끝난 뒤에 시작된 국교재개 교섭과정에서 대마도를 앞세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에도막부가 1607년 회담겸쇄환사와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을 거치면서 조일국교재개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되고, 1614년 오사가 전투에서 도요토미 세력을 제압하면서 도쿠가와와 권력이 공고해진 뒤, 1615년 武家諸法度和 禁中并公家諸法度 등을 제정·시행하면서 무가 출신의 다이묘들과 조정 및 문관들의 통제 방안을 만들고, 3대 쇼군 이에미쓰 때에 이르러서는 1635년 參勤交代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쇼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시마바라 난[島原の亂]을 계기로 기독교를 금지하면서 대외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에도막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서 대마도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처리하는 데 에도막부의 보고와 검열을 피할 수 없었다. 국교재개 교섭 이후 외교와 통교무역을 쓰시마도주와 야나가와를 중심으로 장악해나가려 했지만, 국서개작 사건과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로 외교권은 에도막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쓰시마도주는 국서개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79) 泉澄一, 1977, 앞의 논문, 26쪽

80) 加藤榮一·北島萬次·深谷克己 편저, 1989,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校倉書房 참조.

서 자신을 지원해준 관리나 여러 다이묘들, 그리고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한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 등 국서개작 사건으로 15만 냥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쓰시마도주는 재정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⁸¹⁾

IV.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 변화와 조선의 대응

1_ 국교재개 후 조선의 대일본 통제

1)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 통제

기유약조 체결로 매년 정례적으로 조선에 도항할 수 있었던 일본의 외교사행은 1609~1620년대까지 세견선 20척, 수도서선 6척, 수직인선 9척 등 총 35척이다. 이들 年例送使船을 파견자별로 보면 對馬島主人 宗씨 관계가 22척, 기타 수직인·수도서인 등 개인이 파견하는 선박이 13척이었다. 연례송사선의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은 사행에 대한 접대경비의 마련이었다. 이는 연례송사선들의 도항횟수만 결정되었을 뿐 도항시기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617년(광해군 9)에는 3~4년 동안 오지 않던 왜인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회답겸쇄환사의 파견이 겹쳐 ‘公私가 모두 가난에 빠지는’ 상황⁸²⁾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柳川送使는 1614~1620년까지 7년 동안 사절을 보내지 않다가, 1626년에 이르러 7년간의 미수금 1,400동을 요청⁸³⁾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송선의

81) 田代和生, 1984, 앞의 책, 206쪽; 손승철·유재춘 역, 1988, 앞의 책, 183~184쪽

82)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9월 6일

83) 『변례집요』 권8, 공무역

경우 최대 3척으로 규정한 것은 정례적으로 3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야 할 일이 있을 때 세견선의 수에 포함해 경비를 덜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쓰시마도주가 항례화하여 보냄으로써 조선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다.⁸⁴⁾

이로써 보면 매년 한 차례 도항할 수 있도록 규정된 연례송사선은 설령 도항하지 않는다 해도 사행에 지급하는 공무역이 말소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사행의 결항이 발생할수록 지급해야 하는 공목의 수량은 누적되어 결국 조선 정부에 일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또한 도항시기가 연내에 분산되지 않고 일시에 올 경우 조선에서는 공무역품의 마련뿐만 아니라 접대(다례, 상선연, 하선연, 오일잡물 등) 경비를 동시에 마련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한편 圖書의 승계와 재발급을 허용하고⁸⁵⁾ 1635년 국서 개작 사건 발각 이후 쓰시마도주에 도서 발급을 집중하고 있으며, 도주의 아들에게 발급한 兒名送使(平彦三送使, 平義眞送使)를 島主職에 오른 이후에도 계속 허용하는 등 일련의 수도서 정책 역시 쓰시마도주에 대한 통교무역특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조선의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막대한 운영으로 조선의 경제적 부담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의 정책은 도항시기를 정해놓는 것과 접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사행을 통합하여 도항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兼帶制’를 통한 ‘年例八送使制’의 성립이다.⁸⁶⁾

겸대제는 1특송사가 2·3특송선을 겸대하고 세견제4선이 제5선~제17선까지를 겸대하게 한 조치⁸⁷⁾다. 국서개작 사건이 일어나자 에도막부는 1634년 세견선의 조선 도항을 금지하였다.⁸⁸⁾ 1635년 1월 세견선 도항 금지가 조선에 전달

84)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5월 29일

85) 『인조실록』 7년 9월 계미

86) 겸대제 시행과 연례팔송사제 정착은 홍성덕, 1998, 『17世紀 朝日外交使行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6~172쪽 참조.

87) 『증정교린지』 권1, 겸대

88)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えられた國書』, 中公新書, 137~138쪽

되었고,⁸⁹⁾ 1636년까지 이어졌다. 세견선의 도항이 두 해 이상 계속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일시에 이들이 올 경우 경비를 마련하는 문제를 고민하였다.⁹⁰⁾ 이를 위해서 겸대하여 오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겸대 교섭은 1637년 5월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한편 대마도는 겸대제의 시행이 외교 태만으로 보여 막부의 추궁을 받을까 염려해서 그 사실을 幕府에 알리지 않았다.⁹¹⁾ 겸대제도의 시행으로 외교업무는 세견선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 및 1특송선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15척의 세견선은 무역을 전담하게 되었다. 공무역 대금의 지불 방식 역시 公代官을 통해 1년간의 물량을 한꺼번에 바치도록 하고 그에 대한 代價를 훈도와 별차가 手標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⁹²⁾

아울러, 조선 정부는 수직인선과 수도서선도 재정비하였다. 매년 정례적으로 올 수 있는 사선은 세견선(특송선 포함) 5척과 以酤庵送使, 萬松院送使, 平彦滿送使, 副特送使만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외교를 담당할 正官이 승선한 사선은 7척이었다. 왜냐하면 세견제3선이 제2선송사선에, 제4선송사가 이정암송사선에 함께 타고 왔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정부는 각 사선의 도항시기를 정하였다. 도항시기는 세견제1선~세견제3선은 1월에, 이정암송사와 세견제4선은 2월, 1특송사는 3월, 만송원송사와 평언삼송사는 6월, 부특송사는 8월에 도항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겸대제와 연례팔송사 시행으로 연례송사의 외교 기능은 약화되었다. 조선전기에 외교상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보냈던 특송선이 세견선에 포함되고, 겸대제로 인해 서계를 14통이나 지참한 사행(세견제4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도항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

89) 『집외사목초책』 을해(1635) 1월. “島主與調興有隙 未結末前 凡送使姑停 島主調興 皆送書館中 使告朝鮮.”

90) 『증정교린지』 권1, 연례송사정지

91) 『交隣提醒』(雨森芳洲 3, 關西大學出版部, 1983), 55쪽. “兼帶送使之事ハ 御内證之御約束ニ而 公儀へ相知レ候事ニテハ無之候.”

92) 『交隣志』 공무역

한 새로운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차왜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다.

2) 조선의 초량왜관 통제

1607년 제1차 회담겸쇄환사 파견과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재개된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외교관계는 이후 첫째 조선에 설치된 일본인 거류지 즉 왜관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둘째 두 나라의 외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왕래한 외교사행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영위된다. 내용적으로는 양국의 외교업무 해결, 왜관의 공간 통제, 동래부와 왜관 일대의 사회 통제, 공·사무역의 경제 통제 등으로 구분된다.

국교재개 이후 조선의 대일통제는 먼저 왜관에 관한 공간 통제와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통제 및 경제 통제에 집중된다. 1609년 두모포 왜관에서 1678년 초량왜관으로 이전할 때까지 대마도는 지속적으로 왜관 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기에 주저하지 않았다.⁹³⁾ 겸대제의 시행 이후 외교사행에 관한 규정이 재정립된 후 1640년부터 대마도는 초량왜관 이전을 결정한 167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왜관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전 교섭 기간 동안인 1653년 계해약조의 체결⁹⁴⁾은 왜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두 나라 사람들의 접촉과 물류의 이동에 대한 통제였다. 밀무역 방지를 위해 각방에 임의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대마도인과의 부채 거래도 금지하였다. 1678년 초량왜관 이전 후 왜관의 사방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조선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일

93) 왜관의 이전 교섭은 장순순, 2001,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94) 계해약조의 체결과정과 내용은尹裕淑, 2011,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院 참조.

본인들의 효율적 공간 통제를 위해 사방에 담을 두르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이다. 왜관은 조선의 영토로 대일외교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체류가 허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는 것은 ‘越境’이 아닌 ‘闕出’로 규정하였다.⁹⁵⁾ 이 외에도 사회 통제로서는 조선 여인과의 ‘交姦’ 문제와 도둑, 살인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조선에 왕래하는 외교사행에 대한 통제다. 특히 표류민을 송환하기 위해 오는 차왜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었다.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들을 데려온 ‘표인영래차왜’의 파견이 빈번해지자 생긴 통제책이다. 차왜는 기유약조 체결 이후 무역량을 늘리기 위한 쓰시마도주의 노력으로 검대제의 시행 이후 점차 쇼군가와 쓰시마도주의 경조사에 관한 외교의례업무를 처리하는 사행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⁹⁶⁾ 끊임없이 외교적 명목을 만들어 차왜를 파견하려는 쓰시마도주에게 조선인 송환은 외교사행으로 인정받기 쉬운 명목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표인영래차왜의 파견이 증가했고, 이에 조선은 표류한 사람의 시신을 신고 오는 차왜의 파견을 금지하였고, 1739년에는 표류한 사람이 죽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표류민송환차왜의 도항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조선후기 대일통제는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통제규정은 17세기 후반에 모두 제정되며 18세기에는 기존의 규정이 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통제방법이 강구되고 있지는 않다. 1738년 31개 항의 변문절목⁹⁷⁾은 왜관을 중심으로 한 두 나라의 사회·경제적 통제가 세세하게 정해져 이후 왜관 운영의 매뉴얼처럼 기능하게 된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외교적 변화는 검대제도의 시행 이후 문위행-별차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사행의 재편이 정착되고, 1651년 공작미제의 시행, 1678년 초량왜관의 이전, 뢿三桂·鄭錦 등의 명 왕실 재건의 종식 등에 따른 동북아 정세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5) 홍성덕, 2010, 「17세기 후반 한일외교교섭과 울릉도」, 『독도·울릉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96) 홍성덕, 1992, 「17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집

97) 『增正交隣志』 卷4, 約條

2_ 국서개작 사건 이후 한일외교사행 체제형성

기유약조는 조선 국왕과 일본 국왕 사이의 외교사행을 변형적으로 정착시켰다.

회담검쇄환사는 1636년 이후 명칭을 통신사행으로 바꾸어 1811년 대마도에서 역지통신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 국왕의 사절은 기유약조에서 쓰시마도주 문인 지참 규정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파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국교재개 교섭기에 쓰시마도주가 막부의 명령 또는 묵인하에 일본 국왕의 국서를 지참하거나 일본 국왕의 명령으로 왔음을 강조하는 5차례 사절의 도향이 있었다.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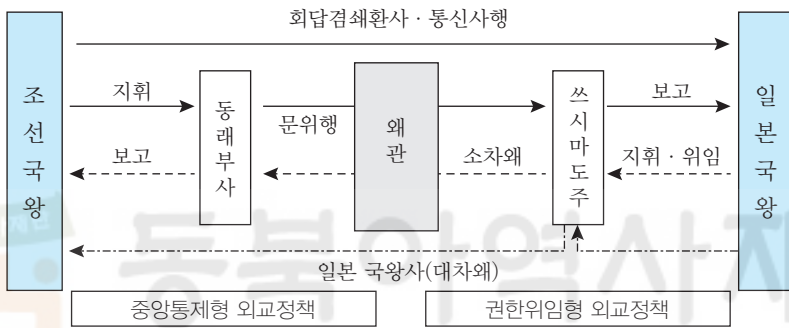
일본 국왕사의 도향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겸대제와 연례팔송사제의 시행으로 인해 효율적인 외교업무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연례송사가 외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기유약조에 대해서 조선전기 특송선과 일본 국왕사의 관계는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交隣事考』의 다음 기사는 주목된다.

“特送은 이전과 같은 일본 국왕의 使船이다. 또한 不時의 使船으로 물건을 조달하는 약정한 수 이외의 사선을 특송이라 한다.” 하여 일본 국왕이 보낸 사행을 특송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특송은 또한 “국왕사가 3년에 1회 파견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이 있으면 쓰시마도주에게 명하여 대마도로부터 그 명령을 전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送使約條私記』)

원래 특송선은 일본 국왕의 명으로 파견된 사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유약조에 따라 특송선이 세견선과 같은 성격으로 변하자 일본 국왕의 명을 받은 외교업무 처리를 담당할 使船이 필요하였다. 조선 후기 파견된 차왜 중 ‘관백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주장한 차왜 즉 대차왜[參判使]가 조선전기의 특송선, 일본 국왕의 명으로 파견된 사선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98) 일본 국왕사의 파견실태와 변화는 홍성덕, 1996, 앞의 논문 참조.

차왜의 파견이 외교사행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국서개작 사건이 끝난 1636년 이후였다. 이 시기는 이정암윤번제의 시행으로 외교권을 장악한 에도 막부의 통제와 연결되어 있다. 조선 정부에서 별차왜로 통칭한 차왜는 쓰시마도주와 일본 국왕과 관련된 외교업무에 따라 일본 국왕의 명령으로 쓰시마도주가 파견한 외교사행(대차왜)과 쓰시마도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사행(소차왜)으로 구별되었다.



〈도표 1〉 조선시대 한일외교사행 흐름도⁹⁹⁾

한편, 문위행-별차왜의 새로운 외교라인이 형성되었다.

문위행은 동래부사가 쓰시마도주에게 파견한 외교사행으로 정관에 왜학역관이 임명되어 문위역관사 또는 도해역관사, 역관사 등으로 불린다. 외교의 특성상 두 나라의 언어를 통역해야 하는 역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회답겸쇄환사행 시 일본 내 각지에 흩어져 조선인 피로인을 모집하여 데려오는 것도 역관의 역할이었으며, 통신사행의 파견에 앞서 외교적 실무교섭을 담당한 것도 역관이었다. 역관을 우두머리로 하여 파견한 문위행은 대체로 다섯 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행¹⁰⁰⁾이다. 첫째 쓰시마도주에게 파견한 사

99) 홍성덕, 2013, 「조선후기 대일외교정책과 외교사절」, 『朝鮮時代の 韓國과 日本－같은 점과 다른 점, 교류와 갈등의 역사』, 한일관계사학회·한일문화교류기금 편, 경인문화사

100) 홍성덕, 1990,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59집

행, 둘째 쓰시마도주의 還島 또는 島主家나 關白家の 경조사와 문위와 기타 외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한 사행, 셋째 당상관과 당하관에 왜학역관이 임명되어야 한다. 넷째 쓰시마도주에게 보내는 예조참의의 명의로 된 서계와 별폭을 지참해야 하며, 다섯째 반드시 쓰시마도주의 파견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위행은 1632년 한상·최의길의 파견으로 시작되어 1636년부터 항례화하여 1860년까지 총 54회 파견되었다. 문위행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보낸 정례사행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還島와 承襲 문위였다. 쓰시마도주가 에도에 參勤하고 돌아온 것을 위문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정부로서는 에도막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통신사행이 일본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사행이었다면 문위행은 쓰시마도주의 승습을 축하하고 아울러 일본 국왕(관백)의 조문과 관백 이외의 집안 경조사 및 쓰시마도주 집안의 경조사 위문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통신사행의 파견에 앞서 사행에 관한 節目을 논의하는 것도 주요 업무에 속하였다.¹⁰¹⁾

한편, 일본의 대조선 외교 실무라인으로 정착된 것은 별차왜다. 별차왜는 임시사절로 關白家와 쓰시마도주의 죽음, 承襲, 통신사행이나 문위행의 파견 요청 및 護行·護還, 외교현안의 교섭, 표류인의 송환 및 쇄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차왜의 등장은 겸대제 시행 이후 연례송사가 외교적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사적 무역선의 왕래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역량을 늘리려는 대마도의 노력의 결과다. 1635년 별차왜¹⁰²⁾의 성립 이후 각종 명목으로 조선에 온 외교사행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¹⁰³⁾

외교사행으로 접대를 받아 정례적으로 도항이 허락된 차왜는 대차왜 16종과 소차왜 10종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 차왜의 명칭을 갖지는 않았지만 조선

101) 문위행의 기능과 역할은 홍성덕, 2000, 앞의 논문 참조.

102) 차왜는 뽑아서 보낸 임시 사절의 의미이며, 이들 중 조선 정부에서 외교사행으로 접대를 허락받은 것을 통칭 별차왜라 한다(홍성덕, 1992, 앞의 논문 참조).

103) 홍성덕, 1998, 앞의 책, <표 8> 별차왜의 종류와 접대시기 및 <표 10> 조선후기 각 별차왜의 도래 횟수를 재정리한 것임. 이후 별차왜 도항 실태는 이 논문에 따름.

〈표 3〉 조선 후기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 별차왜 도항실태

구분	별 차 왜	접대시기	횟수	구분	별 차 왜	접대시기	횟수
大 差 倭	關白告訃差倭	1651	9	小 差 倭 裁 判 소 계 기 타	島主告訃差倭	1657	8
	退休關白告訃差倭	1752	4		島主告還差倭	1636	70
	關白承襲告慶差倭	1651	9		(舊)退休島主告訃差倭	1702/1760	4
	關白生子告慶差倭	1763	3		漂倭入送回謝差倭	1637	13
	關白生孫告慶差倭	1738	4		漂人領來差倭	1645	626
	關白立儲告慶差倭	1705	5		倭館移建差倭		8
	關白退休告知差倭	1745	3		弔慰差倭	1649	21
	圖書請改差倭	1658	13		通信使護行・護還	1682	9
	島主承襲告慶差倭	1658	13		問慰譯官護行・護還	1680	61
	島主退休告知差倭	1692	5		公作米年限	1696	35
	陳賀差倭	1650	11		公幹	1682	10
	通信使議定差倭	1791	4		소 계		869
	通信使請來差倭	1636	9		通信使行	1636	15
	通信使請退差倭	1788	1		問慰行	1640	18
	來歲當送信使差倭	1653	1		對馬島主	1657	7
	通信使護行・護還差倭	1655/1682	15		貿易・倭館	1642/46	21
大 差 倭	소 계		109		一般外交	1637-1766	37
	關白儲死告訃差倭	1683	3		소 계		98
	關白孫身死告訃差倭	1815	1		합 계		1076

* 『邊例集要』, 『同文彙考』에서 대·소차왜로서 접대를 허락받은 사례만 정리한 것이므로 외교사행으로 접대받은 사례는 이보다 더 많다. 예를 들어 대차왜 중에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한 경우는 생략하였다.

* 漂人領來差倭의 도항수는 池內敏, 1996, 『近世朝鮮人漂着年表』, 博文堂에서 정리하였다.

* 기타의 경우 역시 접대 방법에 따라 대·소차왜의 구분이 있으나 恒例化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괄 분류하였다.

정부에서 별차왜로 분류하여 정리한 차왜는 대략 5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차왜를 파견 이유와 목적으로 구분해 보면 關白家(통신사행 포함)에 관한 차왜 16종, 對馬島主 8종, 조선의 의례 2종, 기타 5종이다. 대차왜의 경우 關白家와

通信使行 업무를 수행하는 차왜가 대부분이며 쓰시마도주에 관한 것은 承襲과 退休, 圖書, 陳賀 업무에 국한되었다. 접대시기로 구분해보면 18세기 이후가 10종이며 이 중 2종류를 제외한 8종류가 모두 관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관백에 관한 차왜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별차왜는 총 1,076회 파견되었다. 그중 대차왜는 109회로 10.1%이며 소차왜는 869회 80.8%에 달한다. 대차왜는 예조참판, 동래부사·부산첨사 등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였으며 사행인원은 대략 126명이었으며, 소차왜는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왔으며 인원은 대체로 55명 미만이었다. 외교의례 이외의 외교업무를 담당한 기타 별차왜는 98회로 9.1%이며, 12종으로 나뉜 관백가 문위와 통신사 업무를 수행한 별차왜는 8.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쓰시마도주와 문위행 관련 업무는 18.5%에 달한다. 조선 왕실에 대한 외교의례는 32회로 3.0%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왜관업무 13회(1.2%), 公作米를 포함한 무역 51회(4.7%), 일반 외교 업무 47회(4.4%) 등이다. 漂人領來差倭는 총 626회 도항하여 전체 파견 횟수의 58.2%에 달한다. 표인영래차왜의 파견 비율이 높은 것은 국서개작 사건 이후 표류민 송환이 幕府에 의해 대마도의 ‘家役’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며, 대조선 무역이 쇠퇴해가는 1691~1740년 사이와 통신사행이 단절된 1810년대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표류민 송환을 통해 대마도는 무역량을 증대해나가고자한 것이다.¹⁰⁴⁾ 표류민을 송환하는 일본의 차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별차왜의 명목이 다양화하면서 두 나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외교사행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裁判差倭다. 재판차왜는 통신사행과 문위행의 호행·호환을 전담하고 두 나라의 외교현안을 담당한 사행으로 왜관이 통솔했던 館守倭와 함께 외교전문사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은 재판차왜를 다른 별차왜와 달리 후대하였다. 재판차왜는 제1특송선과 같은 격으로 접대를 받았으나, 공무역 및 求請을 허락받고, 公貿易價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留

104) 홍성덕, 1998, 위의 논문, 182~184쪽 참조.

館日數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재판차에는 왜관의 상주 관리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접대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V. 맺음말

조선후기 한일관계가 신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관계였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7년에 걸친 침략 전쟁이 끝난 뒤 우호관계를 다시 맺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신의’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지만,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1598년 정전 강화협상 개시 이후 1607년 회담검쇄환사의 파견,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대략 10여 년의 기간은 신뢰를 확인하였다는 점보다는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두 나라 사이에 쌓인 현안 피로인의 쇠환, 자국 정치의 안정화, 평화로운 국제관계의 형성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전기 이래 두 나라의 ‘양속’ 관계에 놓인 대마도가 전쟁을 향도하는 것이 일본 내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침략의 실패와 정전협상, 강화교섭은 조선전기 이래 취해왔던 대마도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98년 8월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대마도에 위임되어 있었다. 외교권의 위임이 대마도의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일외교의 회복을 위해 대마도는 조선 정부와 에도막부를 상대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국교재개 교섭기 대마도의 태도가 자의적으로만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피로인 쇠환 지역의 확대는 쓰시마도주의 독자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일련의 정책 변화가 도쿠가와 이

에야스의 정치권력 장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이에야스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신사 파견을 둘러싼 외교문서의 위조도 그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의적 행위를 조일 두 나라의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대마도의 외교문서 위조가 가능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 두 나라 정부가 국교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630년대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마도의 이정암에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승려를 파견하는 이정암운번제가 시행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막부가 대조선 외교문서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대마도는 대조선 외교의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명목의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외교사절은 그 목적에 따라서 막부 쇼군 집안의 경조사를 알리는 대차왜와 쓰시마도주가의 경조사를 보고하는 소차왜로 구분되었다.

대마도는 조선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의 번병(藩屏)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으며, 막부에 대해서는 대조선 외교의 전담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두 나라의 외교관계가 안정화한 17세기 후반 이후 대마도는 자신들의 외교적 역할과 경제적 이윤의 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통신사행과 문위행 ↔ 대차왜와 소차왜의 외교사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외교권 위임의 대가로 허가된 무역권 이외에 대마도는 외교적 업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있었다. 에도막부의 대조선 외교가 모두 대마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막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참고문헌

『放事撮要』, 『交隣志』, 『국역 증정교린지』, 『變例輯要』, 『備邊司謄錄』, 『朝鮮王朝實錄』, 『增正交隣志』
 『交隣事考』, 『交隣提醒』, 『大日本古文書』 淺野家文書, 『送使約條私記』, 『朝鮮通交大紀』, 『春官志』, 『通航一覽』, 『海槎錄』(慶暹), 『海槎錄』(金世濂)

민덕기, 2007,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손승철,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이훈,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장순순, 2001,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일관계사학회·한일문화교류기금 편, 2013, 『朝鮮時代の 韓國과 日本－같은 점과 다른 점, 교류와 갈등의 역사』, 경인문화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경인문화사
 홍성덕, 1998, 『17世紀 朝日外交使行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田代和生 著, 손승철·유재춘 역, 1988, 『近世韓日外交秘史』, 강원대학교 출판부
 田代和生 著, 정성일 역, 2005,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加藤榮一·北島萬次·深谷克己 편저, 1989,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校倉書房
 金文子, 1991, 『文綠－慶長に於ける日明和議交渉と朝鮮』,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 人間文化研究科課程 博士學位論文
 新對馬島誌編集會, 1963, 『新對馬島誌』
 尹裕淑, 2011,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院
 李啓煌, 1997, 『文綠－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田代和生, 1984, 『書き替えられた國書』, 中公新書
 田代和生, 2002,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春新書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ロナルド・トビ 著, 速水融 外 譯, 1990,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創文社

민덕기, 1989,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講和交渉과 對馬島(2)」, 『사학연구』 40집

- 민덕기, 1994, 「朝鮮·琉球를 통한 에도 바쿠후의 對明 접근」, 『한일관계사연구』 2집
- 유재춘, 1986, 「壬亂後 韓日國交再開와 國書改作에 관한 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종욱, 1973, 「以 酇庵輪番(交代)에 대하여」(下), 『도서관』 28권 6호, 국립중앙도서관
- 홍성덕, 1990,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59집
- 홍성덕, 1992,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집
- 홍성덕, 1995a, 「丁酉倭亂 以後 明·日停戰協商과 朝·明關係」, 『전북사학』 18집
- 홍성덕, 1995b,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집
- 홍성덕, 1996, 「朝鮮後期 日本國王使 檢討」, 『한일관계사연구』 6집
- 홍성덕, 1997, 「17世紀 對日政策의 確立過程과 그 性格」, 『전북사학』 19·20 합집
- 홍성덕, 2010, 「17세기 후반 한일외교교섭과 울릉도」, 『독도·울릉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笹川紀勝, 2010, 「征韓論までの國際法體系の問題」, 『法律論叢』
- 泉澄一, 1977, 「江戸時代 日朝外交の一側面—對馬以酇庵輪番制と關係史料について」, 『東西學術研究所紀要』 10, 關西大學

[ABSTRACT]

The Role of Tsushima Domain in Joseon–Japan Relat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Hong Seongduk

Japanese scholars understand that the Joseon government and Tsushima domain were the main site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paper offers a different idea by suggesting that Tsushima domain performed diplomatic operations under the command or the connivance of the Edo Bakufu.

One should remember that the peace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did not begin on a one-to-one basis during the process of restoring diplomatic ties after the Imjin Waeran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The re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as closely related to the peace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Ming China. Thu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main Japanese participant in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was Tsushima, not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of the unstab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s of both central governments.

The Giyu Agreement of 1609 was the diplomatic basis of Joseon and Japan relations. Japanese scholars' evaluation of the Giyu Agreement displays the fatal flaw of connecting Joseon and Tsushima with no consideration of the "pre-modern" situation because their evaluation comes from misinterpreting promises as an agreem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promise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n agreement. Meanwhile, Joseon strengthened diplomatic policies toward Japan based on the Giyu Agreement.

Tsushima, which was the media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ged kings'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diplomatic negotiations. Although the forgeries were revealed, neither Joseon nor Japan punished the governor of Tsushima. Instead,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into Tsushima the Iteian monk rotation system for managing diplomatic documents directly. From that point, Tsushima concentrated on friendly trade with Joseon, which was done by sending various *chawae*, or temporary goodwill envoys. The Joseon government controlled the activities of these envoys by restricting their activities to nearby Japanese offices and limiting their diplomatic delegations. Through spatial and personal control, the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stop people from smuggling and meeting without permission.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Japanese offices and the exchange of goods were established, and the new diplomatic line of *Munuihaeng-Byeolchawae* was introduced.

It is definitely false to evaluate the late Joseon period only based upon the thirty years around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It is necessary for historians in Japan to shed their exclusive, patriotic viewpoint. They should admit that Japan's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the Joseon government were conducted while the Edo Bakufu was still being established. Further, the features of *seongsingyorin* (true foreign relationships) should be studied based upon the Edo Bakufu's dominance of foreign diplomacy toward the Joseon government from 1635.

Keywords

Edo Bakufu (江戸幕府), Tsushima domain (對馬藩), *Munuihaeng* (問慰行), Giyu Agreement of 1609 (己酉約條), *Chawae* (差倭), Control over Jap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對馬藩 소멸 과정과 한일관계사

현명철 | 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I. 머리말

근세(조선 후기)의 한일 외교관계는 敵禮를 기본 원리로 하는 대등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였다. 이 외교관계는 기유약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對馬藩은 조선과 일본에 양속되어 완충역을 자임하였으며, 양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왜관은 대마도인을 접대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마도에서 보내는 세견선과 비선, 그리고 표류민 송환선 등이 부단히 들어오는 장소였다.

대마번은 메이지기에도 왜관을 통해 평균적으로 공목 665동과 공작미 13,333석을 대마도로 반입해 들어갔고,¹⁾ 그 외에 무역을 통한 이윤을 독점적

※ 투고일: 2013년 6월 10일, 심사일: 2013년 8월 5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1) 『동래부계록』 제6권과 제8권, 1869~1872년 4년간의 통계다. 공목 1동은 50필이다. 참고로 공작미 외에 오두료미, 어가미, 영획급미 등이 왜관에 지급되었으므로 조선이 준비한 미곡은 평균 2만 4,000석이었다.

으로 확보하고 있었다.²⁾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조선이 주조해준 圖書를 사용한 路引발급권, 그리고 세전선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제적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마변의 특수성은 일본의 개국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된다. 미국에 의한 일본의 개국은 1858년의 통상조약으로 발전하였고, 서양제국과의 외교 경험은 조선과의 외교를 相對化하였고, 나아가 조선과의 외교 무역을 중앙정부가 장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막부와 반막부 양이정권의 대립이 격심해진다. 이 사이에 대마변의 정치사도 격변한다. 막부를 따르는 것이 유리한가 혹은 반막부 세력을 따르는 것이 유리한가의 대립은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자립할 수 없었기에 외세의존도가 높은 대마변의 상황은 이를 심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마변의 이봉운동과 양이정권의 성립, 그리고 甲子의 변(대마변의 내홍) 등으로 상징된다. 그 후 메이지 정권의 성립에 따라 승자(특히 조슈)를 통해 대마변의 역사는 왜곡되고 정착된다.

메이지 정권의 성립에 따라 조선과의 외교·무역을 중앙정부가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마변의 특혜를 몰수하는 일이었기에 보상이 필요하였다. 대마변은 메이지 정부의 조선 외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원조를 얻고자 노력하면서도 조선과의 외교 실무는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다.³⁾

대마변의 소멸은 법제적으로는 일본 전체의 흐름 즉 폐번치현(1871)의 단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한 일관계사의 흐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1872년 9월의 세전선까지 유지된다. 1872년 9월 하나부사를 통해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외무성에서 장악하고,

2) 대마변은 조선 무역을 통한 번의 수입을 3만 석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3) 현명철, 1995, 「막말-메이지초 대마변 처리에 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제2집, 일본역사연구회, 35~65쪽

세견선이 폐지되며, 왜관에서 대마인들이 퇴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도 폐번치현으로 정치 주체로서의 대마번이 존재하지 않음과 따라서 기유약조에 따른 전통적인 한일관계는 종언을 고하였음을 납득하게 된다.

이 글은 일본의 개항부터 왜관에서 대마도인이 퇴거할 때까지의 대마번 정치사⁴⁾를 검토하면서 한일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왜곡이 발생하였음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진중히 접근하도록 하자.

II. 막부말기의 對馬藩

1_ 일본의 개항과 對馬藩의 移封運動

1858년 에도幕府는 미·영·러·프·네 5개국과 통상조약을 맺어 개항을 단행하였고, 1859년 4월에는 영국 군함 악티온號가 對馬藩에 정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對馬藩에는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선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藩主 宗義和는 1860년 4월부로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 미·영·러·프 4개국과 통상관계를 맺었으며 크리스티교 금지는 계속됨을 알렸다.⁵⁾

4) 이에 대해서는 현명철, 1995, 「幕末-明治初 對馬藩 政治史の研究」(北海道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에서 검토한 바가 있다. 한편, 이 내용은 2003년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국학자료원)에서 보강 출판하였다.

5) 1860년 일본이 개국을 단행한 사실을 조선에 알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鶴田啓, 1993, 「万延元年, 對馬藩による朝鮮への四國通商告知一件」(『十九世紀の世界と横浜』, 横浜開港資料館 横浜近世史研究會 編)이 있다.

서구 제국과의 통상조약 발효라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체제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대조선 외교체제에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막부에 요청하여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한일관계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⁶⁾

그러나 1861년 2월, 러시아 군함이 對馬藩에 정박하여 對馬島의 개항을 요구하였을 때, 對馬藩이 移封운동⁷⁾을 전개하면서부터 한일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 移封 請願은 對馬島 전체를 막부가 직할지로 수용하고, 對馬藩에게는 九州지역의 10만 석의 땅을 달라는 청원이었다.

이 10만 석이라는 계산은, 하코다테를 개항하기 위해 북해도 9천 석의 땅을 수용하는 대신에 마쓰마에[松前] 영주에게 奥羽 3만 석에 더하여 1만 8천냥을 더 주었던 전례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봉이 성공한다면 대마번의 계산으로는 飛地 3만 석, 은광 4만 석, 조선무역 3만 석, 새로운 영토 10만 석 계 20만 석의 영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이봉운동은 막부의 개항 정책에 호응하여 고향을 떠날 각오로 막부를 따르는 충정으로 포장되었으며, 만일 막부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對馬藩은 개항에 반대하여 攘夷派에 가담하여 攘夷의 전쟁에 돌입한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막부는 서양 열강과 싸울 수 있도록 군비 원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결국 막부는 移封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移封운동은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攘夷운동을 배경으로 강력히 주장되었음이 흥미롭다.

막부는 대마번을 둘러싼 양이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또한 高倉[兵庫]항 개항 대신에 對馬 개항을 제안하기 위해 全土移封을 內許하였다.⁸⁾ 그리하

6) 일본이 개국을 알려서인가, 조선에서는 1860년 8월 21일 關白立儲致慶 및 身死弔慰를 위해 당상역관 李哲愼, 당하역관 韓琦淳이 도해역관으로 임명되어 선장과 군관을 인솔하여 73명을 태우고 우암포를 출항하여 쓰시마로 향하였다. 그들은 다음 해(1861) 4월 10일 귀국할 때까지 쓰시마에서 표류민 등의 문정과 보호를 담당하면서 8개월간 체류하고 있다(『동래부계록』 2권). 이후 도해역관에 관한 기록은 『동래부계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도해역관이 남긴 복명보고서가 궁금하다.

7) 移封運動에 대해서는 현명철, 1993, 「1861年對馬藩の移封運動について」(『日本歴史』 536호, 吉川弘文館) 참조.

8) 高倉 개항 대신에 대마도를 개항하고자 한 경위에 대해서는 현명철, 1995, 「1861년 對馬를 둘러싼 情勢와 半植民地化 危機 論爭」(『일본역사연구』 창간호, 일본역

여 8월 藩主가 移封 請願書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막부 관리가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對馬藩을 조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부 관리들이 對馬를 조사하는 중에 일본의 정세는 크게 변화였다. 쇼군[將軍] 이에모치[家茂]와 천황의 누이 가즈노미야[和宮]의 결혼 추진에 따른 쇄국양이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봉을 허락하였던 막부노중 안도노부마사[安藤信正]가 양이파의 습격을 받고 뒤이어 실각하였던 것이었다. 이는 대마도 개항을 전제로 추진되었던 移封이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對馬藩을 조사하였던 막부 관리들은 2월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移封에 대한 內定이 있어서 移封을 전제로 경제적 손익 계산을 해본 결과, 조선과의 외교관계, 무역까지 막부가 장악한다면, 對馬島의 전토 移封은 막부에 損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의 조치가 아니므로 폐해가 더 많을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은 전토 移封을 단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몇 개의 촌락만을 수용하여 시모다[下田]의 예에 준하게 한다.⁹⁾

한일관계사의 측면에서 보면, 對馬藩의 移封운동을 통해, 1861년 당시부터 막부 내부에 조선과의 외교·무역을 직접 지배하고자 하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막부는 이봉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조선과의 외교관계 및 무역까지도 장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마번은 조선 무역을 장악한 상태로 이봉을 원하고 있었음도 주목해두고자 한다.

당시 막부 軍艦奉行이었던 가쓰 가이슈[勝海舟]는 1862년 윤8월, 정사총재직 마쓰다이라 요시나가[松平慶永]의 질문에 대해 대마도를 막부가 수용하여 항구를 열고 무역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대마도를 일본 내부로 편입시키고, 조선과의 외교·무역을 막부가 장악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사연구회)을 참고하기 바란다.

9) 勁草書房, 1979, 『勝海舟全集3』, 「對州魯人上陸の件」下, 359~364쪽

1862년도에는 외국봉행 이외의 관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_ 對馬藩 攘夷政權의 성립과 막부말기 정한론

대마도 조사를 마친 관리들이 에도로 돌아간 후, 대마번에서는 곧 移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들떠 있었다. 그러나 막부의 대답은 연기될 뿐이었다. 막부의 답이 거듭 연기되고 있는 사이 대마도에서는 무사들의 동요가 일어났다. 그들은 이봉에 대한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번 중추부를 불신하고, 에도 저택 수비를 명목으로 무단으로 에도[江戸]에 나가, 목숨을 걸고 탄소하겠다고 상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對馬藩主 宗義和는 막부에 은거를 청원한다. 이는 막부가 일단 허락하였던 移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함과 동시에, 번 내부의 동요를 내걸어 移封을 관철하고자 하였던 마지막 카드였다. 번주의 은거 결의는 에도의 대마 무사들에게 동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세자가 부친의 은거를 만류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조슈[長州]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는 대마번 번주의 은거와 세자의 가독상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막부의 개항 정책에 동조한 대마번의 이봉운동을 비판하고, 반막부 양이운동의 선봉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무단으로 에도에 출부한 무사들을 양이의 志士라고 평가하였다.¹⁰⁾

기도[木戸]에게 설득당한 對馬藩 무사들은 反幕府派의 지도격인 長州와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하였고, 조슈의 기도도 이를 위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9월 말 대마번 세자가 가로(家老) 무라오카 오미[村岡近江], 후루카와 지에몬[古川治右衛門], 번사 기도 다다치카[機度正親], 오우라 엔[大浦遠], 사이토 도쿠베[齊藤德兵衛], 다다 소

10) 이 과정에서 기도[木戸]는 이봉운동과 가독상속에 대해 왜곡을 가하여 선전하여 소위 '양이 지사'들에 대한 주선과 원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또한 대마무사 오시마[大島], 히구치[樋口], 다다[多田] 등과 부단히 만나고 있다.

조[多田莊藏],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히구치 겐노스케[樋口謙之亮] 등을 대동하여 에도의 조슈 번저(藩邸)를 방문하여, 조슈의 세자 및 가로 우라 유키에[浦鞠負], 번사 모리 도닌[毛利登人], 오바타 히코시치[小幡彦七], 스후 마사노스케[周布政之助], 기지마 마타베[來島又兵衛], 나카무라 구로[中村九郎],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木戸孝允)], 사쿠마 사헤[佐久間佐兵衛] 등 당시 조슈의 실력자들과 회담하여 동맹을 맺는다.

이날의 회담에 대해 『防長回天史』에는

이 모임에서 대마주 사람들이 우리 세자에게 고하기를, 지금 이후 대마주가 다행히 貴藩의 도움에 따라 봉토를 안정시키게 되면 藩 전체를 들어 攘夷에 따르겠습니다.¹¹⁾

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대등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조슈의 주선 혹은 원조를 조건으로 양이에 따를 약속을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막부의 감찰 파견 없이, 1862년 12월 25일, 세자 善之允은 宗義達의 이름으로 새로운 번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對馬藩은 반막부 양이세력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를 ‘對馬藩 攘夷정권’이라고 부른다.¹²⁾ 16세의 새로운 번주 宗義達은 長州의 주선과 협력을 배경으로 막부에서 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대마도에 대한 방어 문제는 막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예로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이때 대마번을 원조해야 한다는 논리의 전개는, 처음에는 러시아 함대 정박으로 말미암은 방어 비용의 증대와 移封운동 실패로 말미암은 궁핍과 藩 내부의 동요를 들었으나, 長州와의 동맹이 맺어진 다음부터는 막부는 쇄항 양이를 단행하여야 하며, 막부가 쇄항 양이를 단행하게 된다면 對馬藩은 최전선이

11) 『修訂防長回天史』 제3편, 상, 1991, 537~538쪽(マツノ書店, 복각판)

12) 여기에 대하여는 현명철, 1992, 「對馬藩攘夷政權의 成立過程について」(『北大史學』 32호) 그리고 木村直也, 1987, 「文久三年對馬藩援助要求運動について—日朝外交貿易體制の矛盾と朝鮮進出論」(『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田中健夫 編, 吉川弘文館)을 참고하기 바란다.

될 것이므로 병량·무기의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하였다. 그 다음 조정에 주선을 요청할 때에는 對馬藩이 조선에서 식량을 구걸해 먹는 것은 일본의 치욕이며, 鎖國을 단행하자마자 對馬藩은 조선과의 관계가 끊어져 기아에 빠지리라는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조선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점차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해지고 논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對馬藩의 원조 요구는 당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대외전략과 연결되어 諸藩에서 논의하는 바가 되어 對馬藩 자립 문제가 公論化되었고 1863년 1월에는 朝廷이 勅을 내리게 된다.

당시 막부는 攘夷派의 공세를 극복하지 못하여, 찢절때는 상황이었고, 1863년 3월에는 막부 장군 이에모치[家茂]가 천황을 수행하고 神社에 참배하여 攘夷를 기원하였으며,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5월 10일을 기하여 攘夷를 단행하겠노라고 조정에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월 3일, 長州의 세자 사다히로[定廣]가 막부 장군에게 휴가 신고를 위해 알현하였을 때, 그는 對馬藩 영주 宗義達을 대동하여 장군과 대면하게 하였다. 이는,

위처럼 장군을 불시에 찾아뵈어서 자기 영지의 문제를 아뢰는 일은, 우리는 물론, 다른 영주들에게도 없었던 일로, 참으로 시절이 시절이라고는 해도 예가 없는 일이다.¹³⁾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막번체제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들은 조정의 양이단행의 칙을 근거로 어린 막부 장군을 압박하여 對馬藩에 10만 석 지급을 강요하였다. 攘夷를 약속한 이상, 막부는 攘夷를 전제로 원조 요구를 꾸준히 전개해온 對馬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막부 老中 이타쿠라[板倉]는 對馬藩 원조 요구를 받아들여 對馬藩의 명목과 10만 석의 年租에 해당하는 3만 석(금 6만 냥)을 매년 지급하기로 內定

13) 「在國毎日記」 1863년 4월 24일조, “右様將軍家へ不時御目見, 自國之儀等被仰上御例, 此方様は素, 他方様にも有之間敷, 實御時節柄とは乍申, 無比類御事.”

하고 ‘朝鮮國體情探索之內命’을 對馬藩에 내리게 되었다.

막부의 결정을 받고 對馬藩은 같은 해 5월 원조 요구 원서를 제출한다. 이 원조 요구 원서에는 서양 열강이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의 식량을 바탕으로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이는 일본 전체의 문제라는 것, 그러므로 서양 열강에 앞서서 조선에 대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더 들어간다. 이것이 막부 말기의 ‘정한론’이다. 여기에는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는 대마도를 일본 내부로 완전히 편입시키고, 조선과의 외교·무역을 막부가 장악하여, 아시아와의 연대시 대륙과의 연결기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쓰시마가 반막부 양이파의 지원을 받아 원조요구운동을 전개하였을 때, 막부 대부분 관료의 입장과는 달리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였던 점은 주목되며, 막부 말기의 정한론이 가쓰 가이슈의 작품이라는 이해도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막부 양이세력의 도움을 받아 막부에서 원조를 받아낸 상황은 양이세력과 막부세력의 힘의 균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마번 내부의 파란과 내용을 초래하게 된다.

3_ 막부의 세력 회복과 대마번의 內訌

막부는 8·18정변을 통해 조정을 장악하고, 9월 5일에는 친병을 해산하고 1864년 1월에는 조정으로 하여금 양이 완화의 칙령을 받아내면서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7월 양이세력의 중심을 자임하던 長州는 양이세력의 몰락에 위기를 느끼고 ‘禁門の變’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長州 토벌의 칙령이 내리고 상황은 급변하였다(제1차 長州 정벌).

대마번에 대한 원조를 막부에 강요하였던 長州 세력은 고개를 숙였고, 원조 요구의 핵심이었던 쇄국 양이 논리는 진정되었다. 따라서 대마번 원조는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다만 막부가 조선과의 외교를 직접 담당하고자 하는

14) 현명철, 1994, 「막부말기의 대마도와 소위 ‘정한론’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집 참고.

의도가 있었음이 원조 요구의 유일한 근거였다.

10월 26일, 對馬藩 무사 오시마[大島]는 원조의 계속을 요구하는 장문의 建白書를 제출하였다. 이 건백서에 대해서 종래의 연구는 ‘征韓論 건백서’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오시마의 의견서는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었다. 이미 막부 내부에서는 ‘朝鮮御處置’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외교담당 자들로부터 나와 있었다.

朝鮮 處置 展望書

작년 對馬守에 糧米 3만 석을 준 것은, 오로지 攘夷 鎖港의 명을 받고 있던 시절, 조선에 원조를 위해 출장하여 外夷를 격파하고 (조선을)복종시키기 위한 手當으로 3만 석을 매년 지급하게 한 것이다.

- 一. 조선 처치 문제는 外夷가 조선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책략으로, 이는 攘夷 鎖港의 조치에서 파생되었으므로, 지금의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달라져야 한다.
- 一. 對馬守는 長州의 원조를 얻어서 위와 같은 막대한 糧米를 얻어갔으니, 公儀(막부)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 씀씀이다. [...]
- 一. 長州의 양이와 對馬藩의 조선 처치는 표리를 이루는 반역모의이므로, 지금에 와서는 결코 채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주와 연좌제로 처벌해야 마땅하다.¹⁶⁾

이 예정서는 기쿠치[菊池 伊豫守]가 초안한 외국 奉行들의 공통의 인식이었다고 『續通信全覽』에는 기록되어 있다. 결국 막부 勘定所에서는 평의를 행하여 對馬藩에 대한 3만 석 원조의 중지와 對馬藩 家來 오시마의 귀국을 결정하여 막부에 회답하였다. 이리하여 對馬藩 원조는 겨우 2년 만에 끝나고 대마번은 막부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제1차 長州 정벌 시에, 대마번의 많은 무사들이 長州와의 동맹약속을 지키

15) 仲尾宏, 1986, 「同盟論から征韓論へ—『對州建白書』を中心として」, 『京都芸術短期大學紀要』 9; 木村直也, 1988, 「元治元年大島友之允の朝鮮進出建白書について」上, 『史學』 57, 三田史學會

16) 「朝鮮通信事務一件」, 933~934쪽

고자 長州를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막부와 의 정면 대결을 의미하며, 자립의 기반이 없는 대마번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번주 宗義達은 이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존왕양이의 물결에 휩쓸린 많은 무사들이 脫藩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長州와 연대하여 막부에 대항하여 싸웠다.

1864년 11월, 長州가 항복하자 막부는 대마번에 명령을 내려 막부에 대항하였던 무사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번주 宗義達은 외삼촌 가쓰이 고히치로[勝井五八郎]를 내세워 번 내부의 親長州 무사들을 숙청하고 막부에 대해 공순을 표시하였다. 이를 ‘甲子の 변’이라고 한다. 이때 무사들의 반발이 심하였기에 탄압도 가혹하였으며 내전의 상태라 부를 정도였다. 막부와 양이세력의 대리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막부의 승리는 불완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長州와 양이파 무사들은 조정에서 축출된 공경들과 함께 九州 연합을 도모하면서 막부와 대결해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1865년 2월, 九州에 있는 對馬藩령 다시로[田代]의 무사들은 무력으로 藩論을 뒤집고자 하였다. 히라다 오에[平田大江]는 ‘盡義隊’를 만들어 무력으로 번의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금 勝井 등이 막부의 뜻을 받들어 근왕파 무사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를 내버려두면 다른 번에서도 이와 같은 탄압이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병사들을 이끌고 對馬藩으로 가서 藩論을 회복하고자 한다”¹⁷⁾ 라고 하면서, 九州 여러 번들의 원조를 구하였다. 당시 반막부와 공경 산조[三條] 등은 당시 후쿠오카[福岡]의 대재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平田를 원조하기 위해 사신을 對馬藩에 파견하였고,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도 하카다[博多]에서 平田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對馬藩의 내분은 또 일본 전체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3월 20일, 산조의 사자와 지쿠젠[築前]·사쓰마[薩摩]·조슈[長州]·기요스에[清末]·오무라[大村]·히라도[平

17) 「平田大江傳記」(『稿本』 마이크로필름, 慶應 원년(1865) 2월

戸] 등 諸藩의 사자들이 對馬藩으로 건너가 담판에 들어갔다.¹⁸⁾ 이때 對馬藩에서 담판에 나섰던 인물은 1862년 長州와 동맹을 맺을 때 핵심인물이었던 히구치 겐노스케[樋口謙之亮]였다. 결국 대마번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5월 1일 밤, 勝井 등을 기습 체포하고, 그를 따르는 무사들을 처벌하기에 이르렀다.¹⁹⁾

이리하여 5월 6일, 平田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귀국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藩의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막부의 감시·견제가 있었고, 藩主 宗義達도 그를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특히 家老 니이 마고이치로[仁位孫一郎]는 당시의 상황에서 막부의 의심을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平田와 대립하였다. 平田는 다시금 구주 諸藩에 사절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6월 하순에는 사자들이 對馬藩에 도착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번주 宗義達은 諸藩의 압력에 굴복하여 平田와 多田들의 무례를 용서하기로 하고 家老 仁位孫一郎에게 칙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²⁰⁾

그러나 대마번은 원조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막부로부터 미움을 받아 원조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막부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계속하여 원조를 해줄 것을 탄원한다. 1865년 9월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원조를 계속해달라고 하는 口上書を 보면, 과격파의 공격을 막기 위해 원조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그 실정을 알 수 있다.²¹⁾

이 과정에서 對馬藩 전체가 막부파와 반막부파로 깨끗이 양분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藩의 핵심부에서는 그들의 대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對馬藩을 위해,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 편을 번갈아 지지하였던 모습이 보인다. 즉 그들은 보는 관

18) 「平田大江傳記」, 앞의 사료; 「每日記」, 앞의 사료, 동3월조

19) 「每日記」 5월 2일조

20) 「嚴原藩廳記錄」(『稿本』, 앞의 사료)

21) 「御周旋方日記」(『大島家文書』)

점에 따라서 반막부파로도 좌막부파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²²⁾ 따라서 쓰시마의 역사를 이들 두 파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며, 메이지 유신과 중심의 역사 인식(역사 왜곡)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오시마의 탄원에 대해 동 11월 막부는 쌀 5천 석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²³⁾ 대마번은 이를 받아들여 平田를 비롯한 양이파 무사들을 숙청하여 막부에 충성을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대마번의 양이정권은 붕괴되었고, 제2차 幕・長전쟁 때에는 조슈 지원을 엄금하였다. 따라서 이 전쟁이 조슈의 승리로 끝났을 때에는 대마번은 양이의 諸藩에서 따돌림을 받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²⁴⁾

4. 慶喜 정권하의 對馬藩

장군 이에모치[家茂]가 幕・長전쟁이 한창인 慶應 2년(1866) 7월 20일 死去하였다. 요시노부[慶喜]는 8월 20일 가독을 상속하고, 12월 5일 京都에서 장군에 취임했다. 원조를 얻고자 하는 對馬藩의 활동과 조선과 직접 외교관계를 수

22) 예를 들자면, 1861년 이봉운동을 전개하였을 때에, 이에 반대하는 건백서를 제출하여 攘夷派의 이론가로 평가받는 도보 나가야키[唐坊長秋]는 다음 해 무사들 41인이 出府하였을 때,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수차례에 걸쳐서 건백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반양이파의 이론가라고도 볼 수 있다(그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았다). 또한 가로 니이 마고이치로[仁位孫一郎]도 양이파로 알려져 있으나 '甲子の 변' 때에는 가쓰이와 함께 양이파 탄압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九州 諸藩의 지지를 받고 들어온 히라다[平田]와 대립하여 집거를 명령받았으므로 좌막파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에도로 무단 출부하여 조슈와 동맹을 맺는 데 공이 많았던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는 攘夷의 志士로 평가되고 있지만, 1865년 9월 위의 건백서를 올리는 단계에서는 막부 측에 기울어 있어서 원조를 계속해준다면 양이파의 뿌리를 단절하겠노라고 임허치는 기술을 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23) 「御周旋方日記」, 앞의 사료

24)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마번의 기록과 메이지 정권 수립자들의 기록에서는 '甲子の 변'으로 많은 지사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의 성립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안타깝게 기술하고 있다.

립하고자 했던 막부의 의도가 맞물려, 慶喜 취임 직후인 1866년 12월, 老中 板倉는 다음과 같은 達을 對馬藩에 주었다.

조선국 취급에 대하여 일찍이 규칙이 있었겠으나 지금부터는 변혁을 할 터이므로 그 뜻을 잘 받아들이 주기 바란다. 지금의 時勢를 잘 살피어 모든 격식은 옛날의 격식에 따르지 않고 다른 외국과의 교제에 준하여 할 터이니 더욱 신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 나아가서는 以酏庵 運번제를 폐지하며 별단의 役人을 파견할 터이니 명심하라.²⁵⁾

以酏庵 運번제의 폐지와, 별단의 役人(=外國奉行)의 파견이라는 것은 조선과의 외교를 막부가 직접 장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對馬藩에서는 이러한 막부의 명령을 어떻게 이용하여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로부터 원조 요구의 논리는 조선과의 외교 개혁에 옮겨지게 된다.

한편,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 개혁을 선언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당시에 시급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장기 계획이었을 뿐이고, 따라서 對馬藩 처리 문제도 선언만 있고 실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순연되었다. 막부로서는 최소한의 비용과 희생으로 조선과의 외교를 접수하고자 하였고 對馬藩은 막부의 선언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하였기에 큰 간극이 발생하게 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즈음 일본에 병인양요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었다. 1867년 2월 7일, 막부장군 요시노부는 大阪에서 프랑스 공사 롯슈와 회담하고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朝佛양국 간을 조정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막부는 2월 10일, 外國奉行 히라야마[平山敬忠]에게 대마 파견을 명했다. 이는 대마에 출장의 형태로 對馬藩과 협의한 후 상황에 따라서 조선에 渡航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²⁶⁾ 平山の 대마 파견은 막부가 조선과의 외교를 접수하기 위한 手順이며 여태까

25) 「公儀被仰上」(「御家記編輯材料」)

26) 「於京師閣老稻葉美濃守殿より被相渡候書」(『朝鮮外交事務一件』1), 15~16쪽

지 對馬藩이 담당해온 조선관계 사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對馬藩은 조선의 완고함을 핑계로 막부의 외교권 장악에 협조하지 않고 막부가 조선과의 외교에 관심을 보인 것을 기회로 조선에 압력을 가하여 무역의 개정을 요구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즉 對馬藩은 조선과의 외교·무역을 막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사절 파견이 결정된 그해(1867) 3월 29일, 대마번은 강신대차사로 仁位孫一郎를 왜관에 파견할 것을 결정한다. 4월 10일 이를 알리기 위한 先問使가 왜관에 도착하여 11일 임관과 대면하여 니이 마고이치로가 파견됨을 알렸고, 12일 훈도는 바로 경상감사가 있는 대구로 갔다가 21일 귀환한다. 24일부터는 강신대차사가 머무를 參判家를 수리하고, 강신대차사를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진다.

仁位孫一郎는 5월 9일, 정관선(國德丸), 2호선(順榮丸), 건선(平安丸), 비선 등 총 4척으로 출발하여 2호선은 표류하여 무지포에 정박하였고, 나머지는 왜관에 상륙하였다. 왜관의 일본인들은 모두 옷을 갈아입고 마중하였으며, 이때 훈도별차도 배를 타고 선장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다. 15일에는 임관과의 대면이 있었고, 막부사절 파견에 대해 상경하여 주선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²⁷⁾

『동래부계록5』²⁸⁾ 5월 11일조에는 표류한 2호선(강신대차왜 수목선)을 기장 무지포에 정박시키고 문정하였던 사실이 담담히 실려 있음을 보면, 경상감사도 이미 강신사의 파견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월에는 동래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13일에는 새로이 훈도 안동준, 별차 현덕민이 부임하였고, 18일에는 동래부사 정현덕이 부임하여 본격적인 접촉에 들어가게 된다.²⁹⁾ 뒤이어 접위관으로 홍문관 교리 홍원식, 당상 차비관

27) 「館守每日記」 1867년 5월

28) 『東萊府啓錄』 5권은 慶尙監司 李參鉉의 장계 기록으로 1867년 1월 21일~9월 22일까지의 장계를 모은 것이다.

29) 「館守每日記」 1867년 6월

오치양이 임명된다. 『日省錄』 고종 4년(1867) 7월 23일조³⁰⁾에

문임(홍문관·예문관의 提學)으로 하여금 차왜에게 답서를 撰出하게 하고, 접위관과 역관을 즉시 내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계하였다. 동래부사 정현덕이 장계하기를 ‘강신차왜에게 누차 돌아가라고 꾸짖었으나 끝내 돌아가지 않으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고 하였습니다. 이미 유시하고 또 꾸짖기까지 하였으나 그들이 종래 돌아갈 것을 모르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 다만 사체를 손상할 뿐입니다. 또 특별히 허접한다고 해도 무기의 교역이나 公事を 면담하는 일은 동래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계에 답하는 문제는 문임으로 하여금 撰出하게 하십시오. 일전에 접위관과 차비역관을 새로이 임명하셨으니 곧바로 내려보내시어 먼저 접견하게 하시고, 예단은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게 하십시오. 위에서 윤허하셨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강신대차사 仁位孫一郎은 사절 파견을 교섭함과 동시에 그 임무를 마치고도 귀국하지 않고 왜관에 남아 무역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막부의 사절 파견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무기를 교역하는 것과, 역관을 통하지 않고서 바로 동래부사와 상대하겠다는 것이었고, 외교권이 막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은 아니었음을 주목된다.

9월 2일, 차비관과 양역이 仁位와 초대면을 하고, 9월 4일 다례연이, 9월 16일에는 봉진연이 거행되었다.³¹⁾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대차사 회답 서계가 立儲大差使 회답 서계와 함께 관수에 전달이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0월 14일 막부가 大政奉還을 上申하고, 12월 9일에는 王政復古의 大號令이 내려 장군 요시노부에 대한 辭官, 納地를 명령하고, 막부를 폐지하였다. 막부는 이에 불복하여 平山에게 소환명령을 내려 明治 정부와 대항하게 된다. 이를 戊辰戰爭이라 한다. 결국 平山 일행은 나가사키에도 못 가고 對馬藩에도 가지 못한 채로 파견명령은 소멸하게 되었다.

30) 『日省錄』, 고종 4년(1867) 7월 23일

31) 「館守每日記」 1867년 9월

왜관에서는 강신대차사 仁位孫一郎가 館守를 통솔하며 업무를 보다가 다음 해 1868년 2월 12일 귀국지시를 받고, 30일 왜관을 떠났다. 아울러 왜관에 왕정복고의 사실이 전달되는 것은 1868년 3월 17일의 일이다.³²⁾

일본의 연구자들은 調停의 기회를 놓친 主因을 조선 측의 거절과 ‘완고한 악습’에 돌리고 있다.³³⁾ 그러나 이는 비논리적인 설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건너왔다면 조선은 접대하였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강신대차사가 파견되자 즉시 접위관을 파견하여 접대하였고, 교린의 정신에서 조금도 벗어나임이 없었음을 확인해두자. 그리고 특사가 파견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요구 역시 교린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요구가 막부에 전달되기 전에 막부가 멸망하였음을 확인해두자.

강신대차사의 파견에 뒤이어 立儲大差使(島雄益城, 1867년 7월 17일 도착, 10월 23일 출발)와 大計使(村岡相模, 1867년 12월 21일 도착)가 왜관에 파견되었다가 메이지 정부의 성립으로 귀환하는데, 이 전말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과 대수대차사(通口鐵四郎, 1868년 12월 9일 도착)의 접대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다. 막부의 권위를 배경으로 조선과 교섭하려던 대마번이 메이지 정부의 수립과 막부 멸망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조선에 설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기존 연구는 매우 비우호적이며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한 멸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막부시기의 사절과 메이지기의 사절의 성격과 접대를 이해하여 조선의 대일정책과 왜관처리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다.

32) 「館守毎日記」 1868년 3월

33) 田保橋潔, 1940, 「朝鮮國의 特使拒否」, 『近代日鮮關係의 研究(上)』, 114~128쪽; 毛利敏彦, 1974, 「明治初期外交の朝鮮觀」, 『國際政治』 51호

Ⅲ. 메이지 초기의 對馬藩

1_ 폐번치현 이전의 對馬藩과 한일관계

1867년 12월 9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으로 明治 신정부는 성립되었다. 한 달 후인 1868년 1월 7일, 신정부는 막부장군 慶喜에 대한 追討令을 내림으로써 西南雄藩이 중심이 되는 신정부 연합군과 막부 연합군 사이에 전투(戊辰전쟁)가 발발하게 된다. 이때 對馬藩은 발빠르게 신정부를 지지하여 막부 타도의 병사를 京都 근처로 보내고 있음은 주목된다.

신정부는 외교권을 장악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고, 3월 11일에는 對馬藩에도, 모든 외국과의 교제는 조정에서 담당한다는 뜻을 명령하였다. 즉,

이번에 왕정으로 일신되어, 모든 외국과의 교제는 조정이 담당할 것이다. 조선은 옛날부터 왕래하던 나라이므로 더욱 위신을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대로(宗家에) 양국 통교를 家役으로 명하며, 조선국과의 교제는 외국 事務輔의 마음가짐으로 행하라고 명하니, 국위를 세울 수 있도록 盡力하라. 단, 왕정 일신의 시기이므로 해외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구폐를 척결하고 奉公하라.³⁴⁾

이는 국가 기구 면에서 볼 때 1861년 이래 막부가 추진하였던 조선과의 직접외교를 장악하려는 의도의 연장이었고, 가까이는 1866년 막부의 직접외교 선언의 연장이었다. 또한 對馬藩의 입장을 존중하여 家役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이는 對馬藩의 치밀한 공작이 성공한 것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즉, 對馬藩의 입장에서는 ‘조정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터이니 對馬藩은 계속해서 조선 사무를 家役으로 담당하고 국위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34) 한국일본문제연구회, 1971, 『朝鮮外交事務書』 1, 성진문화사, 69~70쪽. 이하 『외교사무서』로 약칭함.

구폐를 척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번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였을까. 대마번은 여태까지의 외교가 일본의 치욕이라고 선전해왔다. 따라서 위의 명령을 받아들여 외교개혁을 하였다는 가시적 성과를 얻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그러나 외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세견선 파견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양국 통교를 가역으로 담당한다는 것은 세견선의 이익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천황 즉위의 예가 거행된 열흘 후, 대마번은 대수대차사[樋口鐵四郎], 간사관으로 川本九左衛門를 임명하고, 11월 21일에는 그들을 출범시킴과 동시에 이 사실을 무사들에게 直達하였다.

이번에 朝廷一新의 전말을 大修使를 통해 조선에 알리려 한다. 이는 일찌기 朝命이 있어, 지금의 서계부터는 그 나라(조선)가 鑄造해준 圖書를 고치고,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新印을 사용하여, 그들이 번신으로 우리를 대해온 誤謬를 바로잡아, 舊來의 國辱을 씻고 오로지 國체와 國위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양국 간의 종래의 翫弊(를 미루어보면) 이로 인하여 (그들이) 철공철시를 단행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무릅쓰지 않고 편한 길만 추구한다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가 되므로, 私情을 버리고 公議에 따라 단연히 오늘 의 처치에 이르렀다. 장래 설령 국맥에 관계하는 곤란이 생긴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대답(조정으로부터의 보답, 對價)이 있을 터이며, 더우기 王土王民의 입장에서 (對馬藩을) 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다.³⁵⁾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대마번은 이 대수대차사를 기점으로 조선이 주조해준 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지 정부의 도장을 찍어서 사절을 파견하여 한일 간의 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그게 가능하였을까? 조선이 주조해준 圖書[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路引[입국증명서]은 인정받을 수 없고 해적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세견무역도 불가능

35) 『宗重正履歷』 권3;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의 研究』, 152~153쪽

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사무를 가역으로 담당하도록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마 번은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에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메이지 정부에 대해서는 회답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조선 측에 전가하였던 것이며, 또한 조선 측에는 메이지 정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번병으로 잘 주선하고 있음을 생색내었을 터였다.

1868년 12월 19일, 히구 데쓰츠시로, 川本, 薦田 일행은 부산항에 도착한다. 그러나 조용하다. 세견선과 비선, 표류민 송환선 등은 꾸준히 오가고 있으며, 路引과 書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타나지 않고 관례에 따른 외교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음은 주목된다.³⁶⁾ 「館守每日記」를 보면 12월 24일, 히구치[樋口]는 왜관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위 번주의 직달을 알리고 있고, 다음 해 1월 4일 임관과의 대면을 무사히 마치고 있다.³⁷⁾

다보하시는 대차사가 혼도를 1869년 3월 9일~3월 14일까지 왜관에 拘置 하면서까지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한다.³⁸⁾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며 가능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동래부계록6』을 보면 3월 11일 혼도 안동준과 별차 이주현은 비선 3척이 관수왜, 대관왜, 대차왜의 편지와 부산진의 路文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동래부사에 수본을 보내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수대차사 입관 이후에도 세견선은 조선이 준 圖書를 날인한 서계와 路引을 가지고 입관하고 있으며, 관례에 따른 외교 무역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³⁹⁾ 주는 자와 받는 자, 혹은 갑과 을의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대차사

36) 다보하시는 이 대차사의 파견으로 계속하여 한일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또한 대차사의 파견에 대해서는 石川寛, 2003, 「明治期の大修参判使と對馬藩」, 『歴史學研究』 775號가 주목된다.

37) 「館守每日記」 1868년 12월 및 1869년 1월조

38)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164쪽

39) 『동래부계록』을 보면, 대마주가 새로운 도서를 사용한 경우는 1869년 4월 4일조, 표민순부서계, 별폭, 路引에 平朝臣義達의 印을 사용하였다가 대위격이라고 비판 받고 퇴각당하였으며 개서정납을 명받은 것이 유일하다.

의 외교 교섭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고 보인다. 왜관에서는 6월 15일 관수다례일에 조선의 눈치를 보면서 서계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을 뿐이다.⁴⁰⁾

한편, 메이지 정부는 1869년 6월 17일 판적봉환을 통해 藩知事를 임명하였다. 대마번도 嚴原藩이 되었고, 대마번주는 嚴原藩 지사가 되었다. 이 사실이 왜관에는 9월 2일 알려진다. 9월 30일 왜관의 樋口는

御國(대마번)의 호칭이 嚴原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양국의 서계 왕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 東京에 문의해두었으므로, 지사가 내려올 때까지는 개칭에 대해 조선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⁴¹⁾

고 왜관에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 역시 불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입장에서의 조심스러운 접근임을 알 수 있다.

10월 嚴原(對馬)藩은 외무성의 조선 외교의 강제 접수에 대해 濟藤佳兵衛의 명의로 항의하였다.⁴²⁾ 이 항의에 따라서 외무성은 한걸음 물러서서 동년(1869) 10월, 嚴原藩에 대해 조선과의 외교를 위임할 수 있다는 대답을 내렸다.⁴³⁾ 이를 전후로 하여, 메이지 정부는 嚴原藩에 35,850石을 加増하여 對馬藩 처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嚴原藩에 대한 加増 소식은 왜관에는 11월 12일 전달된다. 즉,

東京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도노사마가 …… 3만 5천 9십 석과 野州 4천 2백 2석을 모두 관할지로 받아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다. 도노사마[殿様]는 이번에 이름을 重正으로 바꾸었다.⁴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서일까, 嚴原藩은 12월 2일 당년(기사)조 세견선을

40) 「館守毎日記」 1869년 6월 15일조

41) 「館守毎日記」 1869년 9월 晦日조

42) 『외교사무서』, 273~287쪽

43) 『외교사무서』, 295~300쪽

44) 「館守毎日記」 1869년 11월 12일조

보내면서 ‘좌근위소장 평조신 의달’의 직함으로 路引과 서계를 작성한다. 따라서 노인과 서계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동래부계록』에 처음으로 관수왜가 메이지개년을 알렸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1869년 12월 3일조가 바로 그것이다.

관수왜가 말하기를 “폐방에는 이번이 많았으며, 작년 11월에는 明治로 개년하였고, 폐주 태수도 陞資하여 서계와 路引에 좌근위소장 평조신을 칭하였습니다.”라고 하므로, 힐책하기를 서계의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례에 어긋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改書呈納하라고 관수왜 및 정관왜(1-3송사)에게 책유하였습니다. 도서를 살펴보니 옛날과 다름이 없어서 동 서계, 별폭 등본을 상송합니다. …… 또 이번에 대마도주 평의달이 보낸 서계 중에 좌근위소장이라는 것은 혹 可援之例이겠습니까만, 평자 밑에 조신 2자는 일찍이 없었던 대위격이므로 임역들에게 명하여 엄히 책유하도록 하여 속히 개수 정납하도록 하였습니다. 邊情에 관계되므로 따로 등본을 의정부 삼군부에 상송합니다.⁴⁵⁾

이때에도 도서를 대신하여 新印을 날인하지는 않았다. 新印을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남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동래부계록』 12월 29일자에 1-3송사는 서계를 개수해온 다음에 공작미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음을 보면, 역으로 그 이전의 세전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고, 훈도나 동래부사는 이 상황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하여 1870년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1870년 3월 20일까지 입항한 배들이 모두 路引이 위격이라고 퇴각당하고 있다. 이 사이에 2월 22일 외무성 관원 佐田, 森山, 齊藤가 왜관에 도착하였고,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이 전개된다. 결국 외무성 관원들이 귀국하고, 1870년 4월 9일에 입항한 비선이 강진표민순부

45) 대수대차사가 도착한 것은 전년도 12월 19일, 거의 1년이 지나서야 『동래부계록』에 관수가 메이지개년을 알렸다고 보고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매우 궁금하다. 훈도가 이를 감추고 있다가 보고한 것인지, 혹은 대마번이 加贈을 받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실토한 것인지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서계, 공작미연한청퇴재판서계, 세견선 1-3, 4-17선의 서계를 전부 수정하여 가지고 옴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다면 서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1869년 12월~1870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하다. 그것도 도서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며 ‘좌근위소장 평조신’의 직명 사용에 대한 내용이었다. 혼도는 예조에 ‘좌근위소장’이라는 직함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였고, 8월 7일 예소에서 이를 허락하는 下敎가 내린다. 이후 조선의 서한에서도 대마도주를 ‘좌근위소장’으로 불러주게 된다.

1870년 4월에 대마번이 비선을 통하여 서계를 수정하여 오는 것은 외무성의 감시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조선에 파견되었던 외무성 관리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대마번은 다시금 관례대로 되돌아가서 공작미와 공목을 수령해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원래대로 환원되었으므로 왜관의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5월에는 독일 무장상선 헤르타호가 왜관에 나타난다. 『동래부계록』 5월 3일자 를 보면, 돛이 세 개인 이양선이 나타나 절영도 앞바다에 정박하자 두모포만호 나치순과 부산진 제2전선대장 박시림이 戰船을 이끌고 출동하였고, 중군 정한봉과 별포수 별장 문헌주도 정예병을 이끌고 나아가고 동래부사도 직접 출동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타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래부사는 공격을 자제한다. 동래부사는 일본과의 인호를 위해 공격을 자제한 것이라 보고하고 동승 일본인 중 대마도인 나카노[中野]의 처벌을 대마도주에게 요구하는 서계를 내려주도록 요청하였다. 결국 8월 7일 예조에서는 나카노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계를 작성하여 내려보냈고 이 서계는 좌근위소장이라는 대마도주의 직함 사용을 허락하는 지시와 함께 동래부에 도착하였다. 아직 한일 간의 우호가 돈독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필자는 역으로 생각한다.⁴⁶⁾

46) 이 사건에 대해 다보하시는 한일 간의 갈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를 이어서 이시가와 히로시[石川寛]도 조선이 불신감을 증폭시켜서 세견선 송사의 응접이 늦어지는 결과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明治期 大修參判使 對馬藩」(『역사학연구』 775, 2003). 그러나 4월 9일 도착한 비선에 國分建見이 강진표민순 부, 공작미연한청퇴, 세견선 1-3선, 4-17선 서계와 별폭 및 노인을 改撰해 왔다는 사

한편, 메이지 정부는 무력시위를 통한 조약 개정을 추진한다. 조선에 머물렀던 외무성 관리들은 1870년 4월, 복명 보고하면서, 세건 공무역을 박탈하는 만큼 합하여 35,270俵(12,344石)를 얻을 수 있는 영지를 더 加給해주도록 건의하고,⁴⁷⁾ 또한 皇使(大將)를 파견하여 조선을 위협할 좋은 기회라고 상신⁴⁸⁾하고 조선침략(정한)을 주장하였다. 대마번에 대한 불만이 조선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이되는 모습이 이들의 보고서를 통해 감지된다.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과의 전쟁을 주장하는 정한여론이 비등하게 된다. 이를 1870년의 정한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반적 입장을 반영한 外務權大丞 야나기하라[柳原前光]의 「朝鮮論稿」⁴⁹⁾는 전쟁론으로 흐르고 있다. 한편, 왜관에서는 館守 番縫殿介가 1870년 윤10월 12일 질병으로 귀국하므로, 「館守每日記」의 기술은 종료된다.

2. 廢藩置縣 이후의 한일관계와 왜관

1871년 7월 14일, 천황은 폐번치현을 명령하였다. 폐번치현의 칙명에 따라 對馬藩도 폐지되어 伊萬里縣에 병합되었다. 한편, 종의달은 7월 29일 외무성원으로 편입되어 외무대승에 임명된다. 이때 그의 나이 26세이고, 藩主가 된 지 10년 만의 일이다.

종의달이 외무대승으로 임명된 그날(7월 29일)은, 일본이 청나라와 修好조규를 조인한 날이기도 하였다. 8월에 종의달은 외무대승의 자격으로 서한을 조선에 보내었다. 이 서한은 8월 24일 관수왜를 통해 훈도와 별차가 수령하고 예조로 상송하였다.

한편, 10월 8일 외무경 岩倉가 특명전권대사로 구미사절단이 파견되고,⁵⁰⁾

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47) 『외교사무서』, 535~538쪽

48) 『日本外交文書1』, 247쪽

49) 『日本外交文書1』(한국편), 249~250쪽

50) 岩倉사절단에 대해서는, 田中彰, 1977, 『岩倉使節團』(講談社 現代新書)과 田中彰, 1982, 『米歐回覽實記』(岩波文庫 靑141, 전5책)를 참고 바란다.

11월 4일 副島種臣이 외무경에 취임하면서, 寺島宗則 외무대보를 중심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도 정치적이 아니라 외교 관료적·조직적인 틀을 가지게 된다. 조선 문제는 外務少記 요시오카[吉岡]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담당하며, 舊對馬藩의 잔재세력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12월 28일, 외무성 준주임 오시마의 해임과 종의달의 도한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⁵¹⁾

1872년 1월 14일, 외무성 관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 및 우라세[浦瀬最助]가 화륜선 滿珠丸을 타고 왜관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왜관에 입항하기 위해 신미조1특송사 1·2호선과 영래차왜선, 표민 본선, 표민 차기선, 비선 등과 함께 입항하였다.⁵²⁾ 이들은 이전에 왜관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던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를 필두로 7인 위원회(요시오카, 모리야마, 히로쓰, 사가라, 우라세, 히로세, 후카미)를 조직하여, 이들만이 조선과 회담에 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외무성이 조선과의 외교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대마도 상인들과 조선 임역이 연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조선의 임역들은 대마도를 번병으로 유지하자 하였고, 대마도 상인들은 자기들의 기득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대수대차사 히구치를 1월 22일 귀국시켰다.

그동안 일본의 변화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조선은 ‘청일수호조규’의 원본을 확인하고, 폐번치현으로 대마번이 폐지되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서계를 받기로 결정하여 3월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왕정 복고를 알리는 서계를 조선이 끝까지 거부하였다는 기존의 연구는 오류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일이므로 회답 여부는 국론 수렴을 통해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회답하였다.⁵³⁾

51) 『朝鮮外交事務書3』, 757쪽; 『日本外交文書1』, 355쪽

52) 당시의 동래지역의 해안방어와 입국절차는 매우 엄중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 사료는 이를 누락시키고 있어서 왜관을 자기들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인듯 왜곡하고 있다. 일본 측 사료의 비판에 대해서는 별고 「1872년 부산지역의 해안 방어와 화륜선의 입항」에서 논하고자 한다.

53) 이때의 응대에 대해서는 『應接類書』(부산시민도서관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에 자세히 다. 대화의 중심은 관수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가 차사 사가라[相良

일본 측은 서계를 올렸으므로 서한에 대한 회답을 독촉하는 한편, 동래부사와의 면접을 요구하였고, 조선 측은 중요한 일이므로 훈도 안준경(동준)이 동래부로 돌아온 다음에 회답이 가능하고 회답에는 시일이 필요함을 설득하였다. 훈도 안동준은 당시 상을 당하여 휴가 중이었으나, 제복을 명받고 5월 초순 서울을 출발하여 23일 동래부에 도착하였으며, 25일 차사 등과 회견하여 일본 측의 뜻은 잘 알겠고, 口陳書와 辨解書 등도 다 조정에 올려 논의 중이다. 이 일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므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훈도의 신중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그들은 난출을 하였다.⁵⁴⁾ 처음 조선 측은 동래부사가 친접할 요량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훈도 별차가 대마도 출신의 상인들, 특히 1대관 가이즈 모타로[海津茂太郎]와의 회답을 통해 꼭 동래부사가 친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6월 6일 동래부사의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실패하고 귀환하였다.

한편, 일본 太政官은 5월 7일자 외무성의 上申을 받아들여, 5월 28일, 부산 초량공관사무를 외무성의 소관으로 하고, 재근 인원 중 외무성 직원이 아닌 古對馬藩士들의 퇴거 귀국을 결정하였다. 또한 표류민 문제도 長崎縣에 移

正樹]를 내세우고 통사 히로세와 우라세를 동석시킨 형태로 진행된다. 요시오카, 모리야마, 히로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쓰시마 출신 외무성 관리들을 전면에 내세워 회답을 진행시키고 있다. 당시 최고위직은 요시오카[吉岡弘毅]였으므로, 요시오카의 책임하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월 18일~5월 12일까지의 교섭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 54) 이 난출 사건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외무성의 지령을 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난출에 임하여 왜관 수문에서 저지당한 것을 훈도가 수문을 열도록 명령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이나, 또 부산진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부산참사가 식량을 지급해주고 차비관 한인진이 왜인들을 인솔하여 동래성 남문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매우 협조적이다. 또한 나중에 이 사건으로 왜관의 1대관을 비롯한 대마도 무사들이 하나부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것도 난출의 성격을 둘러싸고 밝혀져야 하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이 난출이 한일외교관계에서 지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대마도 무사들의 분열을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管하였다.⁵⁵⁾

1872년 8월 10일, 외무경 副島는 현안 해결을 위하여 높은 관직의 관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태정관 正院에 상신하였다.⁵⁶⁾ 그리고 15일에는 그 임무에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를 임명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지적하였다.⁵⁷⁾ 8월 18일에는 천황의 勅旨 형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외무경에게 전달되었다.

척지 외무경 정四위 副島種臣

- 一. 초량공관의 관사와 대관소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둘 것
- 一. 쓸데없는 士官과 잡인 등은 모두 귀국시킬 것
- 一. 상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 할 것
- 一. 감함인은 옛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
- 一. 세견선은 폐지할 것
- 一. 세견선 물품 지체분(1872년 당해년분입)은 종가의 부채가 되고 있으므로 지급해줄 것
- 一. 對馬藩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표류민들을 전부 송환할 것
- 一. 위 사항을 조선에 출장할 외무대승 화방의질에게 전할 것⁵⁸⁾

가장 첫째 임무가 초량공관의 관사와 대관소를 상실하지 않는 일이었음은 주목된다. 대마도인의 퇴거는 바로 왜관 폐쇄와도 직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부사는 왜관 폐쇄가 되지 않도록 온건한 외교전략을 수행하게 되었고, 圖書 역시 조선이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선에 입국하게 된 것 역시 초량공관의 관사와 대관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난출 이후 대마도에 돌아와 있던 히로세[廣瀬直行], 히로쓰[廣津弘信], 모리야마[森山茂] 등과 함께 1872년 9월 15일 기

55) 『日本外交文書1』, 378~382쪽; 『朝鮮外交事務書4』, 247~267쪽

56) 『日本外交文書1』, 399~400쪽

57) 『日本外交文書1』, 400~402쪽

58) 『日本外交文書1』, 403쪽

미조2특송사2호선과 표류민을 거느리고 국경을 건너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는 기존 1대관 가이즈 모타로[海津茂太郎]와 우에노[上野敬助], 나카야마[中山喜兵衛] 등을 외무성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조선의 의도에 따랐다고 문책 귀국시키고, 왜관 정리에 나섰다. 그는 관수 후카미[深見六郎-正景]를 외무성 9등출사로 임명하여 館守로 보임하고, 11등 출사 히로세[廣瀬直行]를 제1代 官으로, 外務少錄 오쿠 요시노리[奥義制]를 학사 겸 監察로, 14등 출사 스미 나가[住永友輔]를 제2대관 겸 大通詞로 하고 나머지 舊對馬藩 무사는 귀국시켰다.⁵⁹⁾ 그리고 외교 교섭을 부하들에게 맡기고 상황을 주시하다가 25일 군함을 이끌고 쓰시마로 이동하였다가 동년 11월 귀경하여 활동 내용을 복명하였다.

이 왜관에서의 대마도인 퇴거 상황을 일본에서는 ‘왜관점수’라고 표현을 한다. 이때부터 표류민을 송환하면서 일본 외무성은 영래차왜와 서계를 생략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동래부사도 차왜도 없고 서계도 없으므로 표류민 송환에 대해서는 연회를 할 필요도 없고 예단과 잡물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다. 한일관계에서 처음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표류민 송환절차임은 흥미롭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의 수립이 부로인 송환에서 시작되었듯이, 서계문제도 표민순부서계에서 나타났으며, 기유약조의 붕괴도 표민영래차왜와 서계 없이 표류민을 송환하는 모습에서 처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표류민 송환이 인도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이 이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1872년 9월 이후, 세견선은 왜관에 입항하지 않는다. 대마도에 대한 처리가 끝났음을 의미하며, 한일관계사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마번은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왜관에는 비선만이 꾸준히 들락날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9) 『日本外交文書1』, 413~415쪽(『朝鮮御用復命略』)

IV. 맺음말

이상 대마번 소멸과정과 한일관계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정치는 역사에 대한 왜곡 선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메이지 정부를 성립시킨 반막부 양이세력은 대마번의 이봉운동을 막부의 개항정책에 동조한 일부 ‘수구 보수파’의 정책으로 매도하였고, 이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부에 항의를 하러 출부한 무사들을 ‘양이의 지사’로 평가하면서 포섭하여 대마번 양이정권을 성립시켰다. 이 포섭 과정에서 논문에서는 드러내지 못하였으나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 후의 기도 다카요시]와 스후 마사노스케[周布政之助]의 은폐와 연극 등은 소설 이상으로 흥미롭다.

대마번 역시 메이지 정부의 방침에 저항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를 家役으로 담당하고자 노력하면서 외교 개혁을 선전하였기 때문에, 외교 개혁을 위해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지를 사료를 통해 남겼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많은 부분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대마번은 자신들이 말하는 개혁이 무모하고 불가능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의 입장에서서는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요구였던 것이다. 조선의 사료와 비교하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메이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외 확장이 목표였다. 대마번의 존재가 메이지 정부와 조선 사이의 충돌을 연기시켰는지 혹은 초래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마번의 존재는 메이지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었음은 틀림없다.

세견선이 폐지된 1872년 9월 이후, 강화도조약에 따라 ‘日人居留租界條約’이 맺어지는 1877년 1월에 이르기까지 왜관은 과도기의 모습을 보인다. 동래부와 경상좌수영의 관리들은 해안 경비와 입항을 요청하는 왜인들에 대해 여전히 路引을 요구하였고, 소지하지 않은 배들을 퇴각시키고 있다. 이 사이에 일본에서 정한론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와중에도 왜관에서는 류표민 송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대의 교

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망만을 다루고 미시적이고 실증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講信使-立儲使-大討使-大修使가 연이어 왜관에 도착하는데, 이들의 접대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래부와 경상좌수영의 해안 방어는 어떠하였으며, 화륜선이 입항하였을 때의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표류민 송환이 변화되고 있음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미시적 연구를 바탕으로 대마도인들이 퇴거하기 이전 대마도인의 교섭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대마도인들이 퇴거하고 난 다음의 대화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등등에 대한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동래부계록』(규장각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應接類書』(부산시민도서관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應接書』(부산시민도서관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日省錄』

「館守每日記」(일본국회도서관 소장, 디지털 원문자료)

「御周旋方日記」(『大島家文書』)

「嚴原藩廳記錄」(『稿本』, 마이크로필름)

「在國每日記」

「朝鮮通信事務一件」

「平田大江傳記」(『稿本』, 마이크로필름)

김홍수, 2010,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대동문화사, 1981, 『日本外交文書1』(韓國篇)

한국일본문제연구회, 1971, 『朝鮮外交事務書』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勁草書房, 1979, 『勝海舟全集3』(「對州魯人上陸の件」下)

吉川弘文館, 1972, 『長崎縣史』

對馬教育會, 1928, 『對馬島誌』

新對馬島誌編纂委員會, 1964, 『新對馬島誌』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石川寬,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歴史學研究』 775

田中健夫, 1974, 「對馬」, 『ブリタニカ國際大百科事典』ティビーエス・ブリタニカ

竹内清文・上野和男, 1988, 「對馬」, 『世界大百科事典18』, 平凡社

[ABSTRACT]

The Process of Passing Tsushima Domain and Korea–Japan Relations

Hyun Myungcheol

Joseon and the Tokugawa Bakufu established equal an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These relations were regulated by the Giyu Agreement of 1609 (己酉). Joseon wanted to keep Tsushima domain under control as a buffer, and Joseon opened a port for a Japan House (K. *Waegwan* 倭館) in Pusan and gave rice and cotton to Tsushima. The Japan House was a reception place and trade zone for Tsushima, and the boats of Tsushima sailed into the Japan House's port for rice. This monopoly status was enabled because Joseon gave a seal (圖書) to Tsushima. Tsushima could compose a license (路引) which allowed port entry when this seal was affixed.

In the late Edo period, Tsushima petitioned for subinfeudation, and men who sought the exclusion of foreigners seized power in Tsushima and demanded economic aid. During this process, Tsushima remarked that the Tsushima–Joseon relations were a humiliation of Japan.

Accordingly, the Meiji government wanted to reform relations with Joseon. This meant that Tsushima would be beyond the control of Joseon, and that Tsushima could not receive rice from Joseon nor use the trade zone of the Japan House. Thus, Tsushima wanted to be paid greatly for this. But Joseon wanted to maintain the existing relationship. Tsushima on the one hand insisted upon diplomatic reforms to the Meiji

government, and on the other hand upon becoming a buffer of Joseon receiving rice and using the trade area of the Japan House. The Meiji government wanted the Japan House as a conces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passing Tsushima domain and the Joseon–Japan relations. The passing of Tsushima domain wa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domains (廢藩置縣) in 1871, but Tsushima men were ordered to leave the Japan House in 1872. Thu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olitical history of Tsushima and Joseon–Japan relations until 1872. I use the Korean document “Report of Tongnae–bu” (東萊府 啓錄) to reexamine existing research and to offer different explanations of the facts. And this article asks whether the Japanese material about the Japan House reflects a political agenda and not the truth.

Keywords

Subinfeudation, Exclusion of foreigners group gains power, Demand for economic aid, Internal disturbance, Officials sending messengers, Japan House, License allowing port entry (路引), Personal seal (圖書)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하우봉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브루스 배튼(Bruce Batten)의 정의에 따르면 전근대의 국경에는 국경선으로 이루어진 boundary가 있고, 공간으로 이루어진 frontier란 개념이 있다. 전자는 구심적이며 내와 외를 격리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후자는 원심적이며 내와 외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¹⁾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이에 대해 전자는 선형 개념이고, 후자는 연결공간의 개념이라고 보았다.²⁾ 김보한은 양자를 결합시켜 국가 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의 주변공간을 ‘경계영역’이라고 규정하였다.³⁾ 특히 경계적 공간이란 개념은 중요하다.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가 확립되면서 국경선으로 확정된다. 그럼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경계

※ 투고일: 2013년 6월 10일, 심사일: 2013년 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1) Bruce Batten, 2000, 『日本の境界－前近代の國家・民族・文化』, 青木書店

2) 村井章介, 2010, 「境界と地域」,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3) 김보한, 2011, 「중·근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전의 영토 개념에는 경계의 안과 밖이라는 兩義性 내지 兩屬性이 있으며,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근세의 대마도다.

고대 일본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에 ‘郡司’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대마도를 고대부터 일본이 정치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마도의 경우 일본의 다른 지역만큼 선명하지 않다. 한국 측 사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사서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 영역에 있으며, 일본의 중앙정부로부터 반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시대의 일본은 국가적 통합력이 약했는데, 특히 서쪽 변경의 섬인 대마도는 반독립적인 지위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戰國時代를 거치며 강한 군사적 결집과 생산력의 확대를 실현했던 에도막부[江戸幕府] 시기에는 국토와 국민을 장악하는 힘이 무로마치막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경계지역과 경계인의 활동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다. 대마도도 막부의 체제에 흡수되어 幕藩體制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대마도의 위상이 시기에 따라 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양국의 대마도 인식을 고찰하겠지만, 그 배경으로서 고대와 중세의 대마도 인식과 개항기까지의 대마도 인식의 시간적 변화양상과 추이를 정리해볼 것이다. 또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에서 핵심적 주제인 屬州化 조치와 兩屬關係論에 관해서도 양국의 연구자들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다.

II. 고 · 중세의 대마도 인식

1_ 고대의 대마도 인식

기록상으로 대마도가 나오는 최초의 史書는 3세기 초반 중국의 『三國志』 魏志 東夷傳 倭人條이다. 여기에는 “狗邪韓國에서 一海를 건너 對馬國에 이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대마도는 이름이 ‘對馬國’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가야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사서에서는 대마도를 어떻게 기술하였을까?

우선 그 명칭에 대해 『三國史記』에는 ‘대마도’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日本書紀』에는 ‘對馬國’, ‘對馬島’, ‘對馬洲’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한자의 음을 빌린 ‘對馬’란 이름이 중국의 『三國志』 이래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 같다. 『古事記』에는 ‘津島’로 나와 있고, 『일본서기』 「神代」에는 ‘韓鄉之島’란 표현도 나온다. 이것은 이름의 뜻과 관련된 것으로서, ‘쓰시마[津島]’는 ‘한반도로 가는 배가 머무는 항구와 같은 섬’이고, ‘가라시마[韓鄉之島]’는 ‘한반도로부터 사람과 문화가 건너올 때 거쳐온 섬’, 혹은 ‘한국섬’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후자는 한반도와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지만 요컨대 대마도가 한반도와 일본의 사이에 있으면서 교량적 역할을 한 섬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쌀농사 재배유적지가 남아 있는 등 한반도와 규슈[九州]의 교량적 역할을 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시기 대마도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만들어진 금속기, 玉器, 토기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어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대마도는 일본열도의 문화와 공통적인 요소도 있으면서도 한반도와의 활발한 인적 왕래와 이동을 배경으로 한반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1) 한국의 대마도 인식

고대 한반도와 대마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사료는 매우 적다.

『三國史記』신라본기 박혁거세 조에, “瓠公이란 사람은 그 族姓이 미상인데 본래 왜인이다. 처음에 표주박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온 까닭으로 호공이라고 하였다.”⁴⁾라는 기사가 나온다. 또 같은 책 신라본기 실성왕 조에는 “왕은 왜인들이 대마도에 쌓을 설치하고 병기와 군량을 저축하여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병을 뽑아 격파하자고 하였다.”⁵⁾라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신라와 대마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이 기사에 대해 조선후기에 편찬된 『增補東國文獻備考』에서는 “호공이 대마도인으로서 신라에 벼슬하였으니, 당시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어느 시기에 저들의 땅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논평하였다. 또 후자에 대해서는 “만약 본래부터 대마도가 왜인의 땅에 속하였다면 그곳에 쌓을 설치한 것을 신라의 역사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사료분석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다소 막연하고 유보적이지만 대마도에 대한 영토적 연고권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 대마도 인식

일본 고대의 사서인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대마도의 호족을 ‘對馬縣直’으로 임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대마도는 고대부터 왜와 일본의 지배가 미치는 지역으로 정치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는 인식을 나타내었다.⁶⁾

야마토 조정[大和朝廷]에서는 663년 백촌강전투 이후 한반도와의 경계를

4)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 38년

5)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實聖尼師今 7년

6) 關周一, 2012, 『對馬と倭寇』, 高志書院

의식하는 개념이 강화되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665년 나당연합군의 침략에 대비해 筑紫에 大野城을 쌓았고, 667년에는 대마도에 백제식 산성인 金田城을 축조한 것이 그러한 사례다.

율령제하에서 대마도는 一岐島·陸奥·出羽·佐渡 등과 함께 ‘변방의 요처[邊要]’로 자리매김당하였다. 이에 따라 대마도는 ‘國’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7세기 중엽에 國司를 파견하였고, 서부지역의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大宰府의 관할하에 두었다. 한반도와 중국에 접한 국방상의 요충지이자 교류의 최선단기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⁷⁾ 이전부터의 대마도의 在地 세력인 國造는 율령제하에서 郡司로 바뀌었다. 율령시대 후기에 國司제도가 변질됨에 따라 토착세력과 연결된 在廳官인이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의 재지세력은 卜部氏, 그 뒤에는 阿比留氏로 이어졌다.⁸⁾

한국 측의 기록에 비해 일본 사서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함을 알 수 있다.

2_ 중세의 대마도 인식

1) 고려시대의 교류와 대마도 인식

8세기 말 통일신라와 일본의 국교가 단절된 이래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양국의 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사이의 사절왕래는 없었지만 상인들의 교역과 표류민 송환과 같은 민간교류는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교류는 고려중기 문종대(1047~1082)에 들어서 활발해졌는데, 특히 대마도의 표류민 송환과 토산물 진현이 가장 많

7) 川添昭二, 1981, 『中世九州の政治と文化』, 文獻出版

8) 關周一, 2011, 「アジアから見た日本の境界」, 『古代・中世の境界意識と文化交流』, 勉誠出版

았다.

문종대 이래 대마도와 일본 서국지역의 호족들을 통한 교역이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進奉船貿易으로 정례화되었다. 1169~1266년까지 100여 년 동안 실시된 진봉선 무역은 進奉과 回賜로 이루어지는 조공무역으로서 ‘進奉禮制’로 표현되듯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私獻貿易이 아니라 외교의례의 형식을 갖춘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교역체제였다. 또 진봉의 주체는 대마도이고 大宰府가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막부는 묵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이 진봉선을 접대하기 위해 金州(김해)에 객관을 설치하였으며, 외교문서의 수수관계는 고려의 금주방어사-대마도주, 경상도안찰사-大宰府의 루트를 취하였다.

그런데 진봉선 무역은 고려후기로 오면서 약정된 무역선 외에 허가받지 않은 사무역선이 무질서하게 내왕하고 또 일부는 해적행위도 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다가 元의 침략 이후 고려가 원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이어 여원연합군의 일본 침공이 시작되면서 진봉선 무역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⁹⁾ 이후 고려와의 교역통로를 상실한 대마도인은 왜구로 변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러 왜구 금압을 위해 고려 정부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함에 따라 정부 간 통로가 열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막부의 왜구통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는 구주탐제(九州探題)와 서국지역의 호족 및 대마도와 직접 교섭하게 되었다.

『고려사』 공민왕 17년(1368)의 기사를 보면 “對馬島萬戶가 사자를 보내와 특산물을 진헌하였다. …… 윤7월 講究使 李夏生을 대마도에 보냈다.”¹⁰⁾라고 나와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대마도만호 다케노 소케이[崇宗經]가 사자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宗經에게 쌀 천 석을 하사하였다.”¹¹⁾라는 기사가 있다.

이로 보아 대마도주가 고려 정부로부터 萬戶라는 관직을 받았음을 알 수

9) 진봉선 무역체제가 종언을 고하는 1266년은 몽골로부터 일본의 入朝를 요구하는 詔書가 고려에 보내진 시점이다.

10) 『고려사』 세가 권41, 공민왕 17년(1368) 7월 기묘

11) 『고려사』 세가 권41, 공민왕 17년 11월 병오

있다. 이 시기에는 대마도주가 阿比留氏에서 宗氏로 바뀌었는데, 위 사료에 나오는 ‘대마도만호 崇宗經’은 대마도주 宗經茂를 가리킨다.¹²⁾ 고려 조정은 대마도주에게 대마도만호란 직책은 물론 왜구 금압을 위해 대가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주었을 것이다.¹³⁾ 만일 그렇다면 대마도주의 ‘受職倭人化’가 고려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대마도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는 선종 2년(1085) 이래 대마도주를 ‘對馬島勾當官’으로 불렀다. 이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시사를 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제주도의 星主를 ‘耽羅勾當使’로, 一岐島主를 ‘一岐島勾當官’이라고 명명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구당관은 고려시대 변방지역 내지 수상교통의 요충지를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들에게 붙인 관직명이다. 이것을 보면 탐라, 대마도, 일기도의 지배자에게 고려가 구당사 혹은 구당관이란 명칭을 쓴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위 세 섬을 고려의 屬領으로 인식하였거나 아니면 고려 정부가 대마도와 제주도를 고려 고유의 지배질서 속에서 같은 차원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인식은 중기 이래 진봉선 무역체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 체제에서의 고려와 대마도는 조공관계였다. 이어 고려 말 공민왕대에는 대마도주가 만호라는 고려의 무관직을 받았다. 양국 간에 국교가 없었는데도 대마도가 진봉선 무역이라는 형태로 고려와 통교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도주가 고려로부터 관직을 받았다는 것은 대마도의 반독립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12) 『宗氏家譜』 등에 나와 있는 守護의 계승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은 알려진 바다. 宗經茂는 『宗氏家系譜』에는 5대로 나와 있지만 宗氏로서는 최초로 대마도의 守護代가 된 인물이고, 그 시기는 14세기 중반이다(中村榮孝, 1949, 「ツシマの歴史的位位置」, 『日本歴史』 19).

13) 萬戶는 원간섭기 고려에 생긴 관직명이다. 한편 『고려사』 세가 공민왕 5년 10월조와 반역전 「崔濡」, 『고려사절요』 공민왕 12년 6월조 등에 나오는 ‘倭人萬戶府’의 성격도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다.

14) 고려적 고유질서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の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참조.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고려는 대마도를 속령 내지 속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고려중기 이후의 고려와 대마도 관계를 보면 조선초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진봉선은 조선초기 대마도주에게 허락한 歲遣船과 같은 성격이며 진봉선의 접대를 위해 금주에 설치한 객관도 조선초기의 倭館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로써 보면 조선초기 대마도 관계의 원형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인식 면에서도 후술하는바 조선초기의 對馬故土意識과 屬州意識이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 원형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일본의 대마도 인식

대마도 실권자의 변천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에는 國造家였던 卜部氏が 신화시대부터 율령시대까지 지배족을 형성하였고, 平安時代에 들어와서는 아비루씨[阿比留氏]가 신흥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019년 여진족의 침입(刀伊의 亂) 때 아비루씨의 조상이 來島해 공을 세우고 정착하였는데, 이후 在廳官人(椽官)으로서 세력을 확장해 12세기에는 도내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13세기에 접어들어 대마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비루씨가 점차 大宰府의 통제에 불복하였다. 이에 1245년 12월 28일 대재부가 고레무네[惟宗]의 아들 시게나오[重尙]에게 아비루를 정벌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江戸時代에 편찬된 『宗氏家譜』 등에 따르면 1246년 1월 1일 宗氏は 아비루씨를 토벌하고 杣島를 장악하였다 한다.¹⁵⁾ 그 직후 고레무네는 대재부의 실력자인 少

15) 이들 기록에 따르면 宗氏의 선조는 安徳天皇의 후예라는 설과 平知盛의 후예라는 설이 있다. 그런데 長節子씨는 양자 다 후대의 날조라고 보고 있다. 또 그는 1246년 宗氏의 아비루씨 정복설은 후대에 조작된 허구라고 하였다(長節子, 2002,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그는 “宗氏は 平安時代 이래 大宰府 官人으로서 九州에 퍼져 있었던 惟宗氏의 계통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14세기 초반에 이르러 惟宗씨가 대마도에 진출해 점진적으로 아비루씨를 제치고 재청관인의 선두에 섰다고 보았다. 그 가운데서 “宗氏は 大宰府 재청관인 惟宗氏의 한 지류인

二氏(武藤氏)로부터 對馬地頭代로 임명되었다.¹⁶⁾

이 시기부터 대마도의 실권자로 阿比留氏¹⁷⁾ 대신 宗氏가 인정받게 되었다. 宗氏は 대마 在廳官人인 惟宗氏가 무사화하였다고 전해진다.¹⁸⁾ 그들은 對馬守護 쇼니씨[少二氏]의 地頭代로 승격함으로써 아비루씨를 대신해 도내의 실권자가 되었다. 고려무네의 아들인 地頭代 소 스케구니[宗資國]가 宗氏로 자칭한 최초의 인물로서 1274년 여원연합군의 침공 때 저항하다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였다.

南北朝時代에 宗氏は 쇼니씨를 추종하면서 九州의 각지를 전전하다 筑前州 등에 영지를 얻었다. 무로마치막부는 쇼니씨를 대신해 宗氏를 對馬守護로 임명하였다.

13세기 전반에 왜구가 발생한 이후 1350년부터 대규모로 바뀌고 매우 빈번해지는데 일본 역사에서는 이를 ‘전기왜구’라고 한다. 전기왜구는 약탈자(해적)의 측면과 교역자[海商]의 요소를 겸비하고 있었는데, 대마도는 전기왜구의 주요세력이었다. 고려와 조선의 사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이른바 ‘三島倭’는 對馬島, 一岐島, 松浦(혹은 博多) 지방의 왜구를 가리킨다. 1366년(공민왕 15) 고려 조정이 왜구 금압을 위해 사신을 파견한 이래 막부와 교섭하였는데 이것이

對馬의 在廳官人 惟宗氏가 武士化한 것이다.”라고 하였다(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 16) 본래 對馬守護는 少二氏가 겸직했던 것인데 이때부터 惟宗을 對馬地頭代로 삼아 分治하였다. 그 후 惟宗은 일곱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동생에게 대마도의 8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惟宗의 장자인 重尙은 對馬地頭代로 임명받아 대마도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성도 惟宗에서 宗氏로 바꾸었다. 이로써 宗氏가 아비루씨에 이어 도내의 전역을 장악하였고, 지배씨족이 되었다.
- 17) 아비루씨는 본래 백제계 渡來人인 蘇我氏의 후예라고 한다. 그들은 고려와 무역함으로써 부를 축적하였는데, 鎭西府 무인들의 질시를 받아 반역죄라는 모함을 쓰고 몰락하였다. 아비루씨는 817년부터 在廳官人인 椽官이 된 후 1246년까지 42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13세기 후반 宗氏에게 타도된 후로는 神事를 담당하였다.
- 18) 宗氏は 본래 大宰府 官人으로 九州지역에 번성했던 惟宗氏 계통이다. 惟宗은 大宰大監으로 九州의 3州2島를 관장하였다 한다. 『宗氏家譜』에 따르면 종씨의 시조인 判官 知宗이 惟宗을 자기 가문의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宗氏家譜』에는 종씨의 시조가 知宗으로 되어 있지만 대마도에서는 重尙을 제1대 도주로 간주한다.

武家外交의 시작이다. 고려는 막부뿐 아니라 大内氏, 今川氏, 九州探題 등 지역권력과도 교섭하였다. 대마도에서는 1368년(공민왕 17) 소 사다시게[宗經茂, 고려사에는 崇宗慶으로 나옴]가 고려에 사절을 파견하였고, 대마도만호 등의 관직을 하사받았으며 교역을 허락받았다.

이 시기 일본의 대마도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일본의 사서에는 대부분 중세에도 대마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이어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측의 사서 가운데 대마도와 한반도의 관련성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대마도의 역사를 기록한 『對州編年略』¹⁹⁾의 범례에, “山家要略記에 말하기를 ‘대마도는 고려국의 牧이다. (옛날에는) 신라 사람들이 살았는데, 開化天皇 대에 이 섬(대마도)에서 (일본 본주로) 습래해왔다. 仲哀天皇이 豊浦宮에서 대마도를 거쳐 신라를 정벌함으로써 마침내 이 섬을 얻었다.’고 하였다.”²⁰⁾라고 한 기사가 나온다. 고대부터 대마도에 신라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편찬된 『塵袋』²¹⁾ 권2에는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였다. 대마도가 옛날에는 신라와 같은 곳으로서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서 동질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 대마도인 藤定房이 1723년 편찬한 史書로서 3권으로 되어 있다. 저자인 藤定房의 가계는 嚴原八幡宮의 祠官을 세습적으로 담당하였으며 대마도에 國學을 개척한 학자 집안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神代로부터 집필 당시까지의 대마도사가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는데 대마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서다.

20) 『山家要略記』는 12세기 말 일본의 천태종 승려인 顯眞이 편찬한 것이다.

21) 鎌倉시대 중기(13세기 말)에 만들어진 11권의 辭書로서 저자는 미상이다.

Ⅲ. 조선전기의 대마도 인식

1_ 조선초기의 대마도 관계

조선초기 대일정책의 기본은 남쪽 변경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바로 왜 구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왜구를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 정부는 외교적 교섭, 군사적 대응과 회유책을 병행하였다. 그럼에도 왜구의 침략이 근절되지 않자 1419년(세종 1)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5세기 중엽에 확립된 대일통교체제는 막부와는 대등한 형식의 교린과 대마도 등 여타세력에 대해서는 羈縻交隣이라는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대마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역상의 특권을 주면서 일본의 각종 통교자들을 통제하도록 하는 대신 조선 중심의 국제질서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 시기 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대해 시행한 受職倭人制, 受圖書人制, 歲遣船 정약, 歲賜米豆의 하사 등은 전형적인 外夷羈縻策이었다.

한편 이 시기 대마도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조선 조정의 적극적인 왜구대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왜구는 통교자로 전환되었다. 대마도의 왜구수령이었던 소다 사에몬타로[早田左衛門太郎]도 조선 왕조에 귀속해 수도서인이 되고 교역자로 바뀌었다. 무로마치시대 초기 대마도 내에 기반을 확립한 인물은 쓰네시게[經茂]의 손자인 소 사다시게[宗貞茂]와 아들 소 사다모리[宗貞盛]다. 사다시게[貞茂; 재위 1402~1418]는 라이벌인 仁位宗氏 세력을 타도하고 정식으로 對馬守護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宗氏의 본거지는 여전히 筑前州 宗像郡에 있었다. 그들은 九州에 20만 석의 영지를 소유하였으며, 3년에 한 번씩 대마도에 가 정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다가 15세기 초반 7대 도주 사다시게 때부터 대마도에 정착하였으며 8대 도주 사다모리[貞盛; 재위 1418~1452] 대에 이르러 肥前州의 家臣들도 대마도로 완전히 이주하였다. 사다시게는 조선 조정의 왜구 금압에 적극적으로 협조

함으로써 82회에 걸쳐 조선과 통교할 수 있었다. 그는 조선왕조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과 도민을 통제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아들 사다모리는 1436년(세종 18) 조선과 文引制度를 정약하고, 1441년에 고초도조어금약을 체결하였으며, 1443년에는 癸亥約條를 체결함으로써 대조선 통교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宗氏는 도항증명서인 문인의 발행권을 비롯한 조선과의 통교권을 장악함으로써 도내의 지배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다모리대에 對馬國이라는 宗氏領國體制를 확립하였다.²²⁾ 1467년에는 도내의 守護所도 佐賀에서 府中(嚴原)으로 옮겼다. 府中이 정치적 중심이라면 佐賀는 경제적 중심이었다.

2_ 대마도 정벌과 속주화 문제

1) 대마도 정벌

조선초기의 적극적인 왜구대책으로 왜구가 격감하였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왜구의 본거지로 대마도를 가장 주시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말 朴葦의 토벌 이래 태조대에도 대마도 정벌을 기획한 적이 있었다.²³⁾ 잔존한 왜구들에 대한 최후의 군사적 대응이 1419년(세종 1)의 대마도 정벌이었다. 조선에서는 ‘己亥東征’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應永의 外寇’라고 부르는 이 전투는 조선초기 조일관계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1419년 6월 19일 조선 조정은 三軍都體察使 李從茂 이하 병력 17,000여 명을 병선 227척에 싣고 거제도를 출발해 대마도를 향하였다. 이들은 20일 대마도의 淺茅灣을 공격하여 적선 130여 척을 나포하는 등 대승을 거두고 豆知

22) 1440년경 문서에 ‘對馬島’에서 ‘對馬國’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宗氏가 율령제의 遺制인 ‘對馬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領國을 ‘國’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23) 『태조실록』 5년 12월 3일 및 『春官志』 권3 「往征」

浦에 정박하였다. 이어 이종무는 대마도주 사다모리에게 諭書를 보냈으나 회답이 없자 26일 병력을 좌우 양군으로 나누어 각지를 토벌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壹岐島와 上松의 원병과 함께 매복한 대마도군에게 朴實이 이끈 좌군이 패배하여 백수십 인이 전사하였다. 이후 이종무가 장기전 태세에 들어가려고 하자 대마도주가 서계를 올려 군사의 철수와 修好를 간청하였다. 이에 이종무는 태풍에 대한 우려도 감안해 제재를 중단하고 7월 3일 거제도로 귀환하였다.

己亥東征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쌍방 간에 3,8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격렬한 전투였다. 조선은 왜구의 섬멸이라는 당초목표를 완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왜구의 본거지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대마도 정벌의 의의로는 왜구의 근절과 함께 통교체제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사건 이후로 “기해동정 이후 왜구가 복속하였다”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²⁴⁾ 이와 동시에 대마도가 조선의 요구에 순응해옴으로써 세종대의 각종 통교제한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졌고, 조선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는 왜구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였으며, 조선과 일본 사이에 ‘兩屬關係’로서 일종의 중립화정책을 취하였다. 그 결과 대마도는 조일교역의 중계보급기지로서 무역 이익을 취하면서 양국의 교의 안전판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 대마도 속주화 문제

대마도 속주화 조치의 전말에 관해 사료를 검토해보자.

사료 ①

“대마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

24) 『세종실록』 12년 4월 12일

같이 흠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놀기 시작하였다.”²⁵⁾

사료 ②

“대마는 섬으로서 경상도의 鷄林에 예속되었던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文籍에 실려 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 만약 빨리 깨닫고 다 휩쓸어와 항복하면 도주에게는 좋은 벼슬과 두터운 몫을 나누어줄 것이요, 나머지 代官들은 平道全의 예와 같이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리들도 옷과 양식을 넉넉히 주어서 비옥한 땅에 살게 할 것이다. …… 이 계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무리를 다 휩쓸어서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하다. 만일 본국에 돌아가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항복하지도 않으면서 도적질할 마음으로 품고 섬에 머물러 있으면 마땅히 병선을 갖추어 다시 섬을 에워싸 정벌할 것이다.”²⁶⁾

사료 ③

“밖에서 귀국을 호위하며 ……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의 州郡의 예에 따라 주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켜 시키는대로 따르겠습니다.”²⁷⁾

사료 ④

“대마도는 경상도에 예속되었으니 모든 보고나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의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여, 그를 통해 보고토록 하고 직접 본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요, 겸하여 요청한 인장과 하사하는 물품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낸다.”²⁸⁾

사료 ①은 출정 전인 6월 9일 태종이 반포한 敎書다. 이에 대해 세키 슈이치[關周一]는 조선왕조가 대마가 이전에 조선령이었다고 하는 인식을 최초로 보여준 것으로 대마 정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창출된 것이 아닐까 라고 해석

25) 『세종실록』 원년 6월 6일

26) 『세종실록』 원년 7월 17일

27) 『세종실록』 2년 윤정월 10일

28) 『세종실록』 2년 윤정월 23일

하였다.²⁹⁾ 대마도가 조선령이라는 이 주장이 현존하는 문서상으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402년(태조 2)에 제작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도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태조대 밖위의 대마도 정벌 이후에 이미 이런 인식이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³⁰⁾

사료 ②는 대마도 정벌 후 7월 17일 병조판서 趙末生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보낸 諭書다. 再征의 논의가 수그러지면서 조선 조정은 이 유서를 보내 항복(捲土來降)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 본주로 돌아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였다.³¹⁾ 이에 대해 도주는 9월 25일 항복을 청함과 동시에 印信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대마도를 완전히 비우라는 조선 정부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료 ③은 조선 조정의 유서에 대한 대마도주 사다모리의 답서로서 조선의 藩屏을 자임하면서 屬州化를 요청하였다. 즉 대마도주는 이듬해인 1420년 윤정월 10일 사자 時應界都(辛戒道)를 조선에 보내 대마도민을 거제도에 이주시키고, 조선 국내 州·郡의 예에 따라 對馬州라는 이름을 정하고, 조선에서 '印信'을 하사해달라는 등의 청원을 하였다.

사료 ④는 예조판서가 대마도주에게 보낸 서계로 대마도 속주화 조치와 도주에 印信을 하사하는 내용이다. 1420년 윤정월 23일 조정에서는 대마도주의

29) 關周一, 2011, 앞의 논문

30) 태조 이성계는 조선왕조 개창 후 1396년 원정군을 대마도에 보낸다. 이 원정군이 대마도에 상륙해 전투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미상이지만 원정군 파견 직후 왜구의 우두머리들이 조선에 항복하고 입조해서 조선의 관작을 하사받고 새 이름을 받았다. 대마도주가 조선의 신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태조실록』 5년 12월 21일 및 7년 2월 17일). 태조의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주나 호족들이 조선의 수직인이 되자 조선에서는 대마도를 臣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인식이 자리잡았던 것 같다. 이런 인식이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마도를 조선의 부속도서처럼 그려 넣은 근거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에 관해서는 정다함, 2008, 「조선조기 야인과 대마도에 대한 번리·번병의식의 형성과 경차관의 파견」, 『동방학지』 141 참조.

31) 中村榮孝, 1965, 「朝鮮世宗己亥の對馬征伐」, 『日鮮關係史の研究』 上卷, 吉川弘文館

요청에 따라 대마도를 경상도에 속하는 屬州로 하고 ‘宗氏都都熊瓦(丸)’³²⁾라는 印信(圖書)을 사다모리에게 주었다. 또 이후에 대마도주는 직접 예조에 서계를 보내지 말고 경상도관찰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명하였다. 또 도주 이외의 사절의 경우 반드시 도주의 인신이 찍힌 것만 사절로 접대하겠다고 하였다.

대마도 정벌 이후 반년에 걸친 교섭결과 이듬해 정월 ① 대마도는 조선의 屬州로서 경상도의 관할하에 두며 경상관찰사를 통해 서계를 올릴 것, ② 요청한 印信을 하사하되, ③ 앞으로 대마도로부터 오는 사절은 반드시 도주의 서계를 지참할 것 등으로 결말지어졌다.³³⁾ 이로써 대마도는 경상도의 속주로 편입되고 도주는 조선의 受圖書인이 되었다.

그런데 대마도의 경상도 속주화 문제는 조일 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조선 정부와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간에 일시적인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 대마도 정벌의 소식이 전해지자 막부에서는 조선과 明이 연합하여 일본을 침공한다는 流言이 나도는 등 긴장하였고, 조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하였다. 대마도와의 사이에 전후처리 교섭이 진행되던 1419년 11월 4대 將軍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가 보낸 使僧 梁倪와 九州探提의 사절이 조정에 도착하였다. 표면적으로는 大藏經을 求請하는 것이었지만 대마도 정벌의 진상과 조선의 정세를 탐지하려는 목적에서 파견된 사절이었다. 이에 세종은 막부가 요청한 대장경을 回賜함과 동시에 宋希璟을 回禮使로 보내었다.

희례사 송희경이 대마도를 방문했을 때 소다 사에몬타로[早田左衛門太郎]가 “대마도는 少二殿의 조상이 대대로 이어온 땅이며, 만일 속주로 한다면 백전백사하더라도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속주화 결정에 항의하였다. 이에 송희경이 그것은 그대들의 요청에 응한 것일 뿐 조선이 영토적 야심이 있어서 예측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정에 그 뜻을 알리겠다고 대답하였다.³⁴⁾ 송희경은 또 막부장군에게도 대마도 정벌이 왜구 금압을 위한 것이었을 뿐 일

32) 都都熊瓦는 宗貞盛의 兒名이다.

33) 『세종실록』 2년 윤정월 23

34) 『老松堂日本行錄』 2월 28일 「卽事」

본 本州를 침략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혔다.

조선과 막부의 절충을 지켜보며 자연작전을 썼던 대마도주는 이에 고무되어 1421년 사자 仇里安을 통해 서계를 보내 속주화 조치를 부정하는 내용을 전하였다. 예조와의 문답에서 仇里安은 “대마가 경상도에 속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時應界都(辛戒道)가 어찌 혼자 알았던 말인가. 이것은 망언이다. …… 대마도는 일본의 변경으로서 대마도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다.”³⁵⁾라고 하여 대마도의 경상도 속주화를 비판하였다.³⁶⁾ 사에키 고지는 이에 대해 “대마도의 경상도 귀속이 時應界都가 지어낸 말로 판명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였다.³⁷⁾ 그는 이 서계 내용만 중시해 대마도주가 인신을 받았을 뿐 속주화는 결정되지 않았고, ‘捲土來降’도 관철되지 않아서 대마도의 內國化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대마도의 속주화 문제는 도주의 사신이 몇 차례에 걸쳐 와 요청한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무엇보다 도의 사할이 걸린 문제를 도주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조선국왕의 명령에 따라 대마도주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였고, 조선 조정에서는 그것을 수용해 허락함으로써 속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세종실록』의 기사를 보면 대마도 속주화는 명백하게 실현되었다.

또 세키 슈이치는 속주화 조치를 전후해서 무로마치막부는 간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속주화의 의미를 축소해석하였다. 이것 또한 사실과 다소 다르다. 대마도 정벌 시에는 무로마치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사절을 파견해 조선 조정의 의지를 정탐하였다.

조선 조정은 무로마치막부의 견제와 대마도주 및 호족들의 저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마도를 영토적으로 복속시키는 대신 도주가 신하가 되어 변경을 지킨다는 명분과 정치적 종속관계에 만족하였다. 대마도의 속주화는 이제까지 일본의 경계영역에 속하던 대마도가 조선의 경계영역

35) 『세종실록』 3년 4월 6일

36) 조선 조정에서는 서계의 내용을 문제삼아 사절을 예법대로 접대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37) 佐伯弘次, 2010,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177~178쪽

으로 바뀌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에 대한 속주화나 내국화 조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는 않았다. 원래 조선의 대마도 정벌의 목적은 왜구의 진압이었고 대마도에 대한 영토적 지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조선 정부로서는 이것으로써 대마도가 조선의 藩屏으로 속령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3) 대마도 양속관계론

조선초기 정부에서는 대마도에 대해 이념적 ‘王領’³⁸⁾의 일부로 간주하였지만 영토적 소유권이나 실효적 지배를 도모하지는 않았다. 1419년 대마도 정벌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였지만, 세종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마도주를 남쪽 변경의 평화를 지키는 ‘藩屏’으로 삼았다.

대마도주 宗氏는 일본으로서는 對馬守護로서 대마국이라는 토지의 영유가 인정되었다. 조선에게는 수도서인으로서 조선의 外臣이며, 대마도와 경상도 남방에 이르는 해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조선에서는 정부의 대행자로서 통교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문인발행권을 도주에게 부여하였다. 대마도주는 형식상의 수직인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 국가기구의 말단에 위치해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의 대마도 정책은 기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대마도주에게 도서를 주고, 동시에 조선의 직책을 주어 변방의 평화적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대

38) 케네스 로빈슨은 조선시대의 영토의식에 관해 ‘王領朝鮮’과 ‘管轄朝鮮’으로 구분해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왕령조선은 이념적으로 조선국왕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이상이 투영된 관념이고, 관할조선은 조선국왕의 실질적 지배가 미친다고 주장하는 범위다. 전자는 ‘정치적 복속’의 개념으로 대마도와 함경도 북동부에 있는 여진족 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한다. 기미정책으로 다스려온 지역으로 ‘영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에 관해서는 Kenneth Robinson, 1999, 『朝鮮王朝－受職女眞人の關係と朝鮮』, 『歴史評論』 592 참조.

39)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족에 대해 그들의 자치를 인정하면서 관직을 주는 등 통제하는 정책을 기미정책이라고 한다. 수직제도, 수도서제도, 경차관 파견 등은 대마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기미정책의 일환이다.

마도주는 受圖書人이면서 受職倭人⁴⁰⁾인 셈이다. 세조대에 대마도주 소 시계 모토[宗成職]에게 ‘崇政大夫 判中樞院事 對馬州兵馬節度使’라는 관직을 수여하였다.⁴¹⁾ 대마도에 파견한 사절의 명칭을 敬差官으로 명명했다는 것은 대마도를 조선의 관할이 미치는 장소로 인식하였으며, ‘異國’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대마도주는 무로마치막부와 조선왕조의 양쪽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른바 兩屬關係다.⁴²⁾

양속관계론에 대해 일본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대마도의 처지에 대해 구로다 사토시[黒田智]는 “대마도는 일본과 조선에 양속해 있으면서, 때에 따라 접근하고 이반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양속관계를 인정하였다.⁴³⁾ 대마도주로서는 무로마치막부와 조선 조정 양쪽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며, 양국 정부의 권위가 도내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세키 슈이치는 양속관계라 하더라도 등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對馬守護로서 무로마치막부와 관계가 기본이고, 그 전제 위에 조선의 수도 서인으로서 정치적 복속을 하면서 왜구의 진압, 경상도 남해안과 대한해협 안전 확보, 일본 측 통교사절의 통제 등의 임무를 위임받아 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⁴⁾

그러나 실제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해석이 사실과 동떨어지는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 몽골의 대마도 침입 때 일본의 조정과 가마쿠라[鎌倉]막부는

40) 수직왜인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임명장인 告身을 받고 관직에 해당하는 冠服을 받는다. 그들은 이것을 착용하고 매년 한번 서울로 가서 국왕에게 肅拜禮를 행하고 토산물을 진현하고 回賜物을 받아오는 조공의례를 하여야 했다.

41) 『세조실록』 7년 8월 28일

42) 조선 전기의 경우 대마도주가 서계에서 막부장군을 ‘扶桑殿下’라고 하고, 귀국의 ‘東藩’이라고 표현하여 일본과 조선에 양속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성종실록』 23년 3월 11일).

43) 黒田智, 2009, 『なぜ對馬は円く描かれたのか 國境と聖域の日本史』, 朝日新聞社

44) 關周一, 2011, 앞의 논문, 123쪽

대응하지 않았으며, 博多 방어에 집중하였다. 이것은 대마도를 경계영역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일본의 '內'는 西國, 東國, 九州만 포함되었으며, 대마도를 비롯한 一岐島, 松浦 등지의 섬은 '外'(異國)의 중간지대로서 경계영역으로 인식하였다.⁴⁵⁾ 고려시대 대마도, 일기도 등의 경계영역에 거주하던 영주들이 고려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진봉선 무역의 경우에도 당시 일본이 고려와 정식 국교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대마도는 독자적으로 고려와 정기적인 무역을 행하였다. 이 점에서도 대마도의 반독립성이 드러난다. 무로마치막부 시대에도 대마도는 반독립적인 입장에 있었다. 이 시기 대마도는 막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 조선과의 무역에서도 막부와는 별도의 채널로 하였으며, 조선에서 막부로 파견한 사절을 護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마도는 조선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대일외교의 창구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대마도를 본주와 구별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임진왜란 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부하가 그린 〈八道總圖〉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점도 일본인의 대마도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다. 흔히 양속관계라고 하지만 조선전기의 경우 대마도는 무로마치막부보다는 조선 정부와 더 밀접한 교류를 하였다.

3_ 조선전기의 대마도 인식과 특성

1) 한국의 대마도 인식

대마도 정벌과 속주화 조치 이후로 대마도를 조선의 속주로 간주하는 대마속주의식은 조선전기에 면면히 계승되었다. 대마도 정벌 이듬해 일본에 회례사로 다녀온 송희경은 대마도를 附庸國 내지 屬國으로 인식하였다. 대마도에 도착한 후 그는 '조선과 일본은 한 집안'이라고 하였고, 대마도만호 사에몬타로를

45) 김보한, 2011, 앞의 논문, 83~84쪽

만나서는 ‘같은 왕의 신하’라고 하였다.⁴⁶⁾ 이는 당시 경상도 속주화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대마속국관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마도 정벌 후 조정에서 일반화되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되었던 金誠一은 대마도주에게 보낸 글에서 “貴島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며, 족하는 동으로 貴國을 섬기고 북으로는 우리 조정에 순종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대의 공경함이 지극하였다.”⁴⁷⁾ 라고 하였다. 즉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양국을 다 섬겨온 사실을 말하면서 양속관계임을 분명히 밝혔다.

1486년(성종 17) 왕명으로 편찬된 조선전기의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에는 “대마도는 일본의 대마주다. 옛날에 우리 계림에 예속되었는데 언제부터 왜인이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⁴⁸⁾ 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대마도가 일본국의 대마주라고 밝혔지만 이어 옛날 우리의 고토였다고 하고 동래부의 부속도서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현실적인 ‘관할조선’과 이념적인 ‘왕령조선’을 절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은 조선시대 대마인식의 기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후 지리지와 외교자료집에 그대로 계승되었다.⁴⁹⁾ 또 명종대 濟用監에서 제작한 〈朝鮮方域之圖〉에는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하고 있어 이 시기의 영토의식 내지 대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471년 신숙주가 편찬한 『海東諸國記』에서는 日本國紀 안의 한 항목으로 ‘대마도’를 기술하였다. 또 대마도지도에서도 ‘日本國對馬島之圖’라고 표기하여 대마도가 일본국 소속임을 명기하였다. 영토적 소속이 ‘일본’임을 명시함으로써 대마속주의식에서 번병의식으로 바뀌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

46) 『노송당일본행록』 2월 21일 「到泊對馬島東面船餘申」

47) 위의 책 권4, 「擬答對馬島主書」

48)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산천조

49) 『신증동국여지승람』(1503)에는 대마도를 경상도 동래현 산천조에 기술하였다. 내용에서는 대마도가 현재 일본국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같이 수록한 〈東覽圖〉, 〈八道總圖〉에서는 대마도를 조선의 부속도서처럼 그려 ‘왕령조선’을 표현하였다.

적이고 현실적인 대마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대마도 인식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① 대마도가 옛날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對馬故土意識, ②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동쪽 울타리라고 하는 對馬藩屏意識, ③ 대마도가 일본 본주와는 다르다고 하는 대마구분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마고토의식은 태종과 세종의 교서 이래로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문적에 분명하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약간 불확실하다. 대마도 정벌 후 대마도가 일시 경상도의 속주로 편입되기도 하였고, 대마도 정벌을 감행한 태종이나 중종대 삼포왜란을 진압한 黃衡과 같이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땅이었으므로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 후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동제국기』나 『동국여지승람』의 기사도 대마도가 현실적으로 일본땅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서술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마고토의식은 세종대 중기 이후로는 관념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마번병의식이다. 대마고토의식이 다소 관념적인 데 비해 대마번병의식은 현실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조선시대 대부분의 한국인이 가졌던 대마도관이었다. 대마도 정벌 후 대마도에 대한 영토적 지배 대신 정치적 속령화정책으로 바꾸게 됨으로써 대마도는 일본의 소속으로 되돌아갔지만 정치적으로 조선에 종속되었다. 대마도주는 수도서인이 되어 조공무역을 하였으며 歲賜米 豆를 하사받았고, 도내의 호족들은 수직왜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정부는 대마도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는 대신 조선의 울타리로서 왜구를 진압하고 통교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남변의 평화를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외이통제책으로서 조선에서는 대마도를 조선의 東藩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⁵⁰⁾ 이에 따라 대마도의 교역선에 대해 모두 조공적 의례를 갖추도

50) 대마도 정벌 후 조선과 대마도의 주종관계가 공식화되자 대마도를 조선의 신하 혹은 제후국을 의미하는 藩屏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433년(세종 15) 야인 정벌 후 중외에 포고한 교서에서 “島夷와 山戎을 모두 통솔하였다.”(『세종실록』 15년 5월 15일)라고 한 것은 대마도와 여진이 조선의 변병이라는 인식을 공식적으

록 하였다. 또 대마도에 파견한 사신의 명칭도 敬差官·體察使·招撫官 등 국내의 지방관의 직명을 사용하였던 점도 대마도를 속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⁵¹⁾ 이와 같이 대마도가 영토적으로는 일본에 속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국가질서 속에 의제적으로 편입되어 신하의 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를 양속관계라고 한다.

셋째, 대마구분의식이다. 이것은 양속관계론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조선시대인들은 대마도를 일본 본주와 구별되는 반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다. 예컨대 대마도 정벌 시 조선 정부는 해적단의 본거지를 토벌하는 것으로서 일본 막부로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그것이 본주에 대한 침략이 아님을 九州探題에게 미리 통보하였다. 1444년(세종 26) 一岐島招撫官 姜勸善의 보고에서도 대마도에 대해 ‘일본국 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여 일본 본주와 다른 지역으로 파악하였다. 『해동제국기』에도 대마도를 일본의 8도 66주와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2) 일본의 대마도 인식

조선의 대마변병의식에 대해 대마도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들이 스스로 조선의 藩籬 혹은 藩屏으로 자칭하는 기사와 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마도주가 보낸 서계에서 스스로 조선의 변리나 변병으로 자칭하면서 외방의 신하[外臣]로서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례는 흔하다. 1464년(세조 10) 소 시계모토[宗成職]가 보낸 서계에서 “저는 朝鮮이라는 大國에 대해 藩籬입니다.”⁵²⁾ 1474년(성종 5) 소 사다쿠니[宗貞國]가 보낸 서계에서 “대마주는 귀국의 신하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1487년

로 내외에 밝힌 것이다. 1457년(세조 3)에는 세조가 “야인과 왜인은 모두 우리의 藩籬이며 모두 臣民이다.”(『세조실록』 3년 7월 29일)라고 하였다. 또 성종은 대마도주 宗貞國에 대해 ‘우리나라의 南藩’(『성종실록』 5년 2월 29일)이라고 하였다.

51) 한문중, 1992, 「조선전기의 對馬島敬差官」, 『전북사학』 15

52) 『세조실록』 10년 6월 14일

(성종 18) 보낸 서계에서도 “영원토록 귀국의 번병의 신하로 칭하며 충절을 다 할 것입니다.”⁵³⁾라고 하여 東藩이라고 자임하였다.

경차관의 파견도 대마도가 조선의 번병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된 것이다. 경차관의 파견은 대마번병의식을 실제 대외정책에서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조선 중심의 명분론적 대외인식이 깔려 있다. 대마도에서도 조선-대마도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경차관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수용하였다.⁵⁴⁾

한편 일본 측의 사료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歲遣을 약속한 것은 실로 업신여기며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일시적인 구급책에 불과합니다. …… 그리하여 잘못된 선례가 생기게 되어 조선에 대해 藩臣의 예를 취하여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로부터 굴욕을 받았으니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⁵⁵⁾

明治維新 이후 외교개혁 과정에서 대마도 측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奉答書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대마도는 대조선 관계가 번신의 예로서 굴욕이었다고 하였다. 이어 1868년 메이지 정부로부터 국서 전달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금의 서계부터는 조선이 주조해준 도서 대신에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여 그들(조선)이 번신으로 우리를 대해온 오류를 바로잡아, 옛부터의 國辱을 씻고 오로지 國體와 國威를 세우고자 한다.”⁵⁶⁾라고 하면서 각오를 밝혔다. 이로써 대마도는 조선시대 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취한 세견선과 수도서제가 조공의례에 바탕을 둔 것이며, 또 대마도가 조선의 번속국이었음을 자인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성종실록』 18년 2월 7일

54) 정다함, 2008, 앞의 논문, 257~8쪽

55) 『朝鮮外交事務書』 권1, 1971, 성진문화사

56) 『宗重正履歷集』 권3, 明治 원년 10월 8일

Ⅳ. 조선후기의 대마도 인식

1. 통교관계의 변화

무로마치막부 시기 반독립적인 지위를 누리며 조선과의 독자적인 통교를 하였던 대마도는 戰國時代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예속화의 길로 들어선다. 이어 도쿠가와[德川]막부시대에도 초기에는 조선 외교를 전담하면서 독자적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17세기 초반 幕藩體制에 편입되어 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는 막부로부터 從四位下侍從 對馬守로 임명받았다. 물론 이 시기에도 대마도가 조선 외교를 특수임무[家役]로 맡아 전담한 것은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이다. 대마도주는 여전히 조선의 수도서인으로 세견선, 세사미두의 지원과 왜관무역에 통한 이익으로 재정을 유지하였다.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조일 양국 사이에서 양속관계라는 큰 테두리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조선후기의 조일통교체제는 전기와 같은 다원적 형태가 청산되고 막부-대마도로 일원화되었다. 전기와 같이 여타 호족세력들의 통교가 없어짐으로써 대마도의 조선 외교 독점성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지만 막부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독자성은 줄어들었다. 즉 1635년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과정에 대마도가 자행한 國書改作事件이 폭로됨에 以酤庵輪番制가 실시되었다. 막부에서 파견된 이정암 윤번승은 조선 외교에 관한 외교문서를 감찰하였으며 통신사 호행 시에도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대마도의 조선 외교가 기본적으로 막부의 감독하에 진행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609년 체결된 己酉約條가 이전보다 더 엄격히 통제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마도는 그 부족분을 막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지하였다. 특히 왜관무역이 쇠퇴하는 18세기 중반부터는 막부의 재정지원이 일상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전기에 비해 대마도의 일본 예속화가 진전되었고, 그만큼 양속관계는 약화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로 인해 대마도가 형태적으로 조선과 일

본 사이에서 양속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실제에서는 막부 쪽으로 기울는 것이었다.

2_ 조선후기의 대마도 인식과 특성

1) 통신사행원과 실학자의 대마도 인식

조선후기 대마도 인식의 전개양상을 통신사행원과 실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에 사행하면서 대마도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귀국 후 대부분 정부의 대일정책 결정에 참가하였던 일종의 대일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 ①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藩臣의 의리가 있다.”⁵⁷⁾

사료 ②

“대개 이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소속이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때에 일본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 이미 조선의 옛 땅에 살면서 대대로 조선의 도서를 받으며, 또한 公米와 公木으로 생활하니 곧 조선의 外服地다.”⁵⁸⁾

사료 ①은 1719년 기해통신사행의 제술관 申維翰이 대마도주와 의례논쟁을 하면서 말한 내용인데 대마속주의식과 藩國觀이 강조되어져 있다. 사료 ②

57) 『海游錄』 상권, 기해년 6월 30일

58) 『海槎日記』 계미년 10월 28일 신해

는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정사 趙曦이 피력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대마고 토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마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 조선의 故土에 살고, 둘째 도주가 조선의 圖書를 받으며, 셋째 조선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하므로 조선의 외복지라고 하여 변병의식을 나타내었다.

통신사행원들의 대마도 인식은 조선전기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오히려 더 엄격해지는 느낌이다. 그들은 사행 중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마도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藩屏論을 더 강조하였다. 그러나 위의 사료를 통해서 보면 조선후기 대마변병의식의 핵심은 경제적 지원임을 알 수 있다. 또 그것은 양속관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대마도가 영토적으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華夷觀에서 벗어나 日本夷狄觀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실학자들의 대마도관은 어떠하였을까?

여기서는 대마속국론을 둘러싼 李瀾과 安鼎福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사료 ①

“대마도는 부용전으로 넣었습니다. 대개 대마도는 신라와 고려 이래로 국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속국으로 대해왔으며 여지승람에는 ‘옛날 계림에 예속되었다’고 하였고, 태종이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교서에도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었다’고 하였으니 가히 증거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벌한 일은 마땅히 속국을 꾸짖는 방책이었습니다.”⁵⁹⁾

사료 ②

“내가 상고해보니 대마도는 고금이 다 ‘본래 신라에 소속되었다’고들 말하나 三國史에 그런 말이 반드시 보이지는 않는다.”⁶⁰⁾

사료 ①은 안정복이 『東史外傳』을 지으면서 대마도에 대해 「日本傳」과는

59) 『순암선생문집』 권10, 「東史問答」

60) 『성호사설』 권19, 經史門 「征對馬島」

별도로 「附庸傳」으로 편찬하였음을 이익에게 알린 것이다. 여기서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대마속국론을 주장하였다. 사료 ②는 이익이 안정복이 주장한 대마속국론의 증거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어 보낸 답장에서 그는 “대마속국론에 대해 다시 상세히 검토해보라”고 함으로써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⁶¹⁾ 이에 대해 안정복은 다시 대마도가 우리 영토인 것은 문적에도 나오는 바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삼국사기』와 중국의 『三國志』, 『北史』에 나오는 대마도 관련 기사를 검토하면서 대마도와 조선 관계의 밀접성과 유구성을 고증하였다.⁶²⁾ 안정복은 『東史綱目』을 저술하면서 스승인 이익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들의 후배인 정약용은 『備禦考』 권4 「馬島事案」에서 대마도가 지금은 일본 땅이지만 본래는 우리 영토였다는 점, 대마도의 언어·복식 등 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 일본의 본주인과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대 사서에 나오는 관계 기사를 인용 분석하였다.

대마속국론을 둘러싼 이익과 안정복 간의 이 논쟁은 실로 흥미로운 바 있다. 대일강경론자와 유화론자, 명분론자와 대세수용론자 간의 대립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정약용은 직접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안정복의 설을 수용하였던 것 같다.

2) 지도와 지리서에 나타난 대마도 인식

조선후기의 지리서에는 조선전기의 대마도 인식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한편으로 일본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현실을 인정하는 추세로 나

61) 『성호선생문집』 권26, 「答安百順 別紙 丁丑」. 이익은 대일유화론자로서 대마도정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으며 경제적 지원을 통한 대일화평정책을 옹호하였으며, 대마속국론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이익과 안정복의 일본 인식에 대해서는 하우봉, 1989,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제2장(일지사) 참조.

62) 『순암선생문집』 권10, 「東史問答 戊寅」

누어진다.

전자의 사례로서 17세기 尹斗緒의 〈東國輿地地圖〉와 〈八道總圖〉에는 대마도를 조선의 영역에 그려넣어 조선전기의 유형을 계승하고 있다. 또 1765년(영조 36)에 제작된 『輿地圖書』와 1822년(순조 22) 편찬된 『경상도읍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지리서에는 대마도를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그것을 보완한 것이다. 또 많은 지도에서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海左全圖〉에는 대마도를 조선의 영역에 가깝게 그려 양속관계에 입각해 묘사하며 대마도를 일본과 분리해보려는 경향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지도도 적지 않다. 1740년 鄭尙驥의 〈東國地圖〉에는 대마도에 ‘日本界’라고 표기하여 일본의 영역에 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실에 기초한 대마도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로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된다.

- ①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輿地圖〉에서 대마도를 ‘日本界’라고 표기하였다.
- ② 1790년에 제작한 〈八道地圖〉에서는 대마도에 ‘日本地’라고 표기하였다.
- ③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輿地圖〉에서는 대마도가 경상도에 그려져 있지만 ‘일본계’라고 표시하였다.⁶³⁾ 한편 조선후기에는 통신사행원을 통해 일본지도가 전해지면서 매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지도가 복사되거나 모사되었다. 이에 따라 대마도에 대한 인식도 보다 정확해진다.⁶⁴⁾

조선후기에서 근대로 갈수록 지도에서 대마도를 ‘일본계’라고 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갔으며, 대마도를 일본과의 경계로 보았다. 개화기에는 지도의 정확성이 높아졌고, 대마도가 일본 소속이며, 일본영토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표시된다. 예컨대 1899년에 제작된 〈大韓全圖〉와 1908년의 〈大韓帝國地圖〉가 그러한 예다.⁶⁵⁾

63) 엄찬호,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한·중·일의 경계인식의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9

64) 오상학, 2009, 「조선후기 지도에 표현된 대마도인식의 변천」, 『국토지리학회지』 43-2

65) 오상학, 2009, 위의 논문, 217~218쪽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지도가 중세에는 매우 빈약했으나 17세기부터 발전하였다. 그들의 대마도에 대한 영유의식은 독도나 북방지역과 달리 고대 이래로 고정적이었다. 예컨대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三國接壤之圖〉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소유’라고 명기하였지만 대마도는 일본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여 일본땅임을 밝히고 있다.

3) 조선후기 대마도 인식의 특성

첫째, 조일관계와 대마도의 지위가 내용적으로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대마고토의식과 동변의식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 통신사행원들과 안정복, 지리지 등이 그러한 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과는 반대로 더 관념화되면서 심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둘째, 대마구분의식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본주와 대마도를 구분하는 의식은 조선전기부터 있어왔지만 그것을 ‘深處倭’와 ‘對馬倭’의 용어로 구분한 것은 임진왜란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姜沆의 『看羊錄』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대마구분의식이 전기보다 명확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후 안정복이 『동사외전』에서 대마도를 「부용전」으로 별도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의식의 표현이다. 1763년(영조 39) 계미통신사행의 서기 元重擧는 “대마도는 내국인과는 전혀 다르다. 내국인들이 항상 대마도를 오랑캐라고 부르며 사람 죽에 같이 끼워주지 않는다.”⁶⁶⁾라고 하였다. 또 그는 대마도가 양국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며 이득을 취하는 행태에 대해 ‘조선과 일본 양국의 적’이라고까지 하였다. 이는 대마도와 본주를 기본적으로 구별해서 본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양속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마변병의식과 대마구분 의식의 심화는 대마도의 달라진 위상과 태도에 대해 기존의 관념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양속관계의 약화에 따른 대마변병의식의 쇠퇴현상이다. 일본에 대한

66) 『和國志』天卷, 「風俗」

재인식을 주창하였던 이익이 대마속국론에 대해 부정한 것도 변화하는 국제관계의 현실과 대마도의 위상을 수용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조엄이 대마도를 조선의 ‘외복지’라고 한 것도 이전보다는 영유의식이 약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론에서 조선시대 한국인의 대마도 인식을 대마고토의식, 대마변병의식, 대마구분의식으로 나누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체계화되지만 고대로부터의 역사적인 유래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대마도 인식은 고려시대 중기 진봉선무역체제 하에서의 조공적 관계와 고려 말 대마도주의 ‘수직왜인화’ 등을 통해 생긴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 대마도 정벌 후 일시적이거나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주로 들어왔다는 사실, 또 대일통교체제상 대마도가 조선의 국제질서 속에서 藩臣으로 의제되면서 편입되었던 사실 등을 통해 이러한 대마도 인식은 체계화되었다. 조선 정부는 대마도에게 대일외교의 창구를 맡기는 대신 수도서제와 수직왜인제를 실시하였고, 세견선과 세사미두를 지원해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외이기미책의 형태다. 이에 따라 조선은 대마도가 비록 영토적으로 일본에 소속되기는 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번속국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대마도 인식은 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왕정복고와 외교일원화 조치에 따라 대마도가 사실상 해체당함으로써 일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마변병의식은 현실적 의미를 잃어갔다.

근대에 들어와 특히 일본의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는 일변하였다. 1854년 미일수호조약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도쿠가와 막부는 종래 대마도에서 대행하고 있던 조선 외교와 무역을 직접 관장하려

고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 속에 이 조치는 결행되지 못하고 메이지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1868년 明治維新 후 성립된 신정부는 당연히 외교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869년 版籍奉還이 이루어져 ‘對馬藩’은 ‘嚴原藩’으로 개칭되었다. 동시에 대마도주의 조선 외교권은 신정부에 강제로 흡수당하였고, 이해 9월 외무성 관리가 대마도에 파견되었다. 이어 1871년 廢藩置縣에 따라 대마도는 나가사키현[長崎縣] 부속의 일개 지방행정단위로 편성되었다. 또 메이지정부의 외교일원화 조치에 따라 대마도의 특수임무[家役]인 조선 외교에 관한 제 업무도 1872년 모두 외무성으로 옮겨졌다. 이어 부산왜관이 흡수되었으며 수도서제와 세견선이 폐지되었다.⁶⁷⁾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조선시대 조일 간의 전통적인 교린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조선 정부는 대마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여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대마번병의식은 현실감을 잃게 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대마도와 일본 본주를 구분할 수가 없었고, 대마도와의 별다른 관계 설정도 없었다. 당연히 대마번병의식을 나타내는 기록도 급격히 사라져갔다. 1908년 (순종 2)에 편찬된 『증보동국문헌비고』를 보면, 대마도에 대해 “지금 비록 일본 땅이 되었으나 본래 우리나라 지방에 속했던 까닭에 우리나라의 故事가 많으므로 아울러 기록한다.”라고 하였다.⁶⁸⁾ 여기에는 대마도 영유에 대한 문제에서 차분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대마고토의식, 조선과의 문화동질성, 일본 내 대마도의 이질성, 경상도 속주화 문제 등이 고루 표현되어 있으며, 대마도를 여전히 동래부의 부속도로 취급하고 있어 대마번병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대마번병의식은 현실적인 의미를 거의 상실하였으며 잔영과 같이 의식의 바닥에 침전되어갔을 뿐이다.

67) 이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荒野泰典, 1987,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體制‘一元化’問題」(『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와 玄明哲, 1995, 「幕末・明治初 對馬藩 처리에 대한 고찰」(『일본역사연구』 2) 참조.

68) 『증보동국문헌비고』 권32, 輿地考 關防 海防條 南海 東萊府

참고문헌

『高麗史』·『高麗史節要』·『交隣志』·『老松堂日本行錄』·『東國輿地勝覽』·『東
槎錄』·『三國史記』·『三國志』·『星湖僊說』·『星湖先生文集』·『順庵先生文
集』·『輿地圖書』·『朝鮮王朝實錄』·『增補東國文獻備考』·『通文館志』·『退溪
全書』·『海東諸國記』·『海游錄』·『海槎錄』·『海槎日記』·『和國志』
『古事記』·『對州編年略』·『日本書紀』·『宗氏家譜』
『山家要略記』·『宗重正履歷集』·『塵袋』

나중우, 1996, 『한국 중세 대일교섭사 연구』, 원광대학교출판부

李領, 1995, 『東シナ海における麗・日關係史の研究』,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하우봉, 1989,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한일관계사연구회, 1996,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關周一, 2012, 『對馬と倭寇』, 高志書院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長節子, 2002,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佐伯弘次, 2010,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川添昭二, 1981, 『中世九州の政治と文化』, 文獻出版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黑田智, 2009, 『なぜ對馬は円く描かれたのか 國境と聖域の日本史』, 朝日新聞社

Batten, Bruce, 2000, 『日本の境界－前近代の國家・民族・文化』, 青木書店

김보한, 2011, 「중·근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엄찬호,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한·중·일의 경계인식의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9

오상학, 2009,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대마도인식의 변천」, 『국토지리학회지』 43-2

정다함, 2008, 「조선초기 야인과 대마도에 대한 번리·번병의식의 형성과 경차관의 파
견」, 『동방학지』 141

한문중, 1992, 「조선전기의 對馬島敬差官」, 『전북사학』 15

현명철, 1995, 「幕末・明治初 對馬藩 처리에 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2

關周一, 2011, 「アジアから見た日本の境界」, 『古代・中世の境界意識と文化交流』,

勉誠出版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中村榮孝, 1949, 「ツシマの歴史的位罫」, 『日本歴史』 19

中村榮孝, 1965, 「朝鮮世宗己亥の對馬征伐」, 『日鮮關係史の研究』 上卷, 吉川弘文館

村井章介, 2010, 「境界と地域」,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荒野泰典, 1987,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體制‘一元化’問題」,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Robinson, Kenneth, 1999, 「朝鮮王朝－受職女眞人の關係と‘朝鮮」, 『歴史評論』 5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anging Views on Tsushima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Pre-modern Period

Ha Woobong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s of boundary and border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e pre-modern period. The pre-modern views on Tsushima between Joseon and Japan should differ from a modern concept of territory in a nation-state because the nation-state is a “modern” phenomenon. The concept of “territory” in the pre-modern period was not clearly established, thus the boundary of territory demanded an intermediary that connected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of the territory. Tsushima was exemplary in terms of the intermediary role.

Tsushima was located in a borderland between Joseon and Japan, and held a quasi-independent status from the Japanese central authority. However, Tsushima's status went through changes. Whereas Tsushima held a quasi-independent status in the Muromachi period, its status of independence diminished in the Tokugawa period. In other words, Tsushima also became part of the system of the *bakufu* (shogunate) and domains (*J. bakuhanseido*) in the Tokugawa period. In other words, the status of Tsushima in Japan changed, and, accordingly, the view of the Joseon court toward Tsushima also changed.

In this paper, as I examine perceptions of Tsushima between Joseon and Japan, I systematically categorize the development of perception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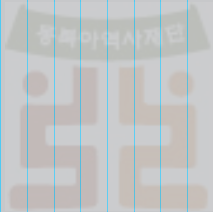
Tsushima from time to time in the historical context. Also, by examining the theories of scholars in the field of Korean-Japanese relations in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 investigate the main causes of the shifting views on Tsushima, that is, a policy of vassalage and a policy of making an intermediary role between Joseon and Japan. For a better understanding, I deconstruct the perceptions of Koreans toward Tsushima in the Joseon period into three patterns: the perception of Tsushima as a homeland; the perception of defending Tsushima domain; and the perception of distinguishing Tsushima as a separate entity from Japan. Also I attempt to prove that although three different perceptions of Tsushima were systemized in the Joseon period, those perceptions derived from ancient history and the island's relations with Korea.

In particular, Joseon's perception of Tsushima was systemized based upon two important facts: that Tsushima became a vassal of Gyeongsang Province after the subjugation of Tsushima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at Tsushima became Joseon's vassal for friendly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context of the Chinese world order. As a result, the Joseon court considered Tsushima as Japan's territory, but as a vassal of Joseon.

Keywords

Views on Tsushima (대마도인식), Subjugation of Tsushima (대마도정벌), Policy of vassalage (속주화조치), Intermediary role between two parties (양속관계), Perception of Tsushima as a homeland (대마고토의식), Perception of defending Tsushima domain (대마변병의식), Perception of distinguishing Tsushima as an entity separate from Japan (대마구분의식)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로 건너간 조선 유민 고찰

박현규 | 순천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I. 머리말

한민족의 중국 이주사를 돌이켜보면 예로부터 국경이 접해 있는 지리적 요소와 인적 왕래가 잦았던 교류 관계를 반영하듯이 엄청난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커다란 분수령이 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高唐전쟁과 삼국 통일 과정에서 수많은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당나라로 나포되어 갔고, 정묘·병자호란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청나라로 나포되었다. 20세기 초반에 수많은 한민족이 일제의 강압 통치를 피해 동북 지역으로 이주해갔는데, 오늘날 동북 지역의 延邊朝鮮族自治州가 이러한 사실을 대변해준다.

여기에서는 작은 분수령 역할을 한 시기, 즉 임진왜란 시기를 들어본다. 한 반도를 전쟁터로 삼아 7년 동안 치렀던 임진왜란은 조선 민초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우 살아남은 난민들이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연명해야만 했다. 明軍이 한반도에 주둔할 동안 많은 난

민들을 진중에 수용하였고, 그 후 중국 대륙으로 철수할 때마다 이들 일부를 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시기에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이다.

임진왜란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대명관계만 국한해 보더라도 명나라의 참전 배경,¹⁾ 군사 활동,²⁾ 문화 교류,³⁾ 재조지은,⁴⁾ 조선의 인식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문이 나왔다. 필자의 과문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에 관한 선행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임진왜란 때 명군에 투탁한 조선 난민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만,⁶⁾ 아직까지 중국 대륙 속의 조선 유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논술을 찾지 못했다. 조선족 이주역사를 다룬 중국 책자에서도 임진왜란 시기에 발생한 조선 유민에 관해 구체적인 기록은 공백으로 남기고 있다.⁷⁾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고문헌에 임진왜란 시기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에 관한 자료가 꽤나 보이고, 특히 사행록(일명 연행록)에는

- 1) 崔孝軾, 1999, 「명의 壬辰倭亂 參與 動機와 그 實際」, 『白山學報』 53집, 백산학회, 245~281쪽; 劉寶全, 2003, 「壬辰倭亂時 明 派兵의 實相에 대한 一考: 그 動機와 時機를 中心으로」, 『한국사학보』 14집, 고려사학회, 151~184쪽
- 2) 李貞一, 1985, 「壬亂時 明兵에 대한 軍糧 供給」, 『(울산대)연구논문집』 16집 2호, 울산대학교, 615~627쪽; 김경태, 2009, 「임진왜란 후, 명(明)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동방학지』 147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53~397쪽; 崔斗煥, 2011,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慶尙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308쪽
- 3) 趙宰坤, 2002, 「壬辰倭亂 시기 朝鮮과 明의 文化교류」, 『아시아문화연구』 6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5~41쪽; 朴現圭, 2011, 「임진란 시기 명군(明軍)의 한국 문헌 수집과 편찬」, 『국문학연구』 23집, 국문학회, 63~91쪽
- 4) 韓明基, 1999, 「임진왜란 시기 '재조지은'의 형성과 그 의미」, 『東洋學』 2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19~136쪽; 金삼웅, 2007, 「선조와 지배층 '재조지은(再造之恩)'의 친명사대」, 『인물과 사상』 108호, 인물과 사상사, 206~215쪽; 王非, 2005, 「明代援朝禦倭戰爭與朝鮮의 "再造之恩"意識」,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 5) 崔韶子, 1998, 「壬辰亂時 朝鮮支配層의 對明意識」, 『美術史學研究』 136·137호, 한국미술사학회, 32~36쪽; 劉寶全, 2006, 「壬辰亂 後 朝鮮 對明 認識의 變化」, 『아시아문화연구』 6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41~161쪽
- 6) 韓明基,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45~152쪽
- 7) 朱成華, 2007, 『중국 조선인 이주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孫春日, 2009, 『中國朝鮮族移民史』, 北京: 中華書局

사행자가 중국 대륙에서 직접 조선 유민들을 만나 들었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대륙 속의 조선 유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술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논술 순서는 국내외 고문헌에 산재되어 있는 중국 대륙 속의 조선 유민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본 다음 유민들의 거주지, 활동사항, 사고의식 등 제반 사항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진왜란 시기는 전쟁 기간(1592~1598)과 명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시기(1599~1600)를 모두 포함시킨다.

II. 명나라로 건너간 조선 유민 배경

임진왜란은 조선·명 연합군과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치렀던 국제 전쟁이었다. 1592년(선조 25)에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곧이어 명나라가 대군을 보내는 군사지원에 나서면서 동아시아 삼국이 격돌하는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7년 전쟁을 겪은 후에 동아시아 삼국은 모두 많은 인명과 물질 손실을 입었고, 그중에서도 한반도를 격전의 장소로 제공한 조선은 전반적인 국가 기반을 거의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명 조정은 조선의 원병 요청에 따라 군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명 祖承訓이 병사 3천여 명을 이끌고 온 것을 기점으로 대규모 명군들이 속속들이 한반도로 들어왔고, 전쟁이 치열할 때 병력 수가 명목상이지만 10만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1598년(선조 31)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군이 혹시 있을 재침을 대비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켰다가 1600년(선조 33)에 모두 철수했다. 임진왜란 시기에 한반도에 많은 명군이 장기간 주둔함에 따라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조선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전쟁의 범위가 거의 전 국토로 확산되자, 수많은 조선 민초들은 가족과 가

산을 잃고 고향을 떠나 도처로 유랑하였다. 난민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했다.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였지만, 전란과 기근이 격심한지라 피차간에 도와줄 처지가 못 되어 굶어 죽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⁸⁾ 조선 조정에서도 이들을 구휼하고자 賑濟倉을 설치하고 심지어는 명군의 군량을 빌리는 방안까지도 마련했지만, 난민수가 워낙 많고 구휼 양식이 적어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⁹⁾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나서야 하는 난민들은 최악의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명군 진영에 몰려들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명군에 투탁한 난민들이 대량 출현하게 되었다. 물론 일부 투탁자이지만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군 진영에 들어가 방자 노릇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명군 진영은 군량 조달이 비교적 원활했다. 명 조정은 전쟁 수행과 조선 백성 구휼을 위해 대규모 산동 양식을 한반도로 보냈고,¹⁰⁾ 조선 조정도 명군이 사용할 군량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주었다. 이에 따라 명군 수장들은 조선 난민들을 구휼 차원, 활동 편의, 사병 충당, 군사력 증강 등 여러 차원에서 대량으로 받아들였다. 각 진영마다 투탁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劉綎 진영에 근 1만 명이나 되었다. 1593년(선조 26)~1594년(선조 27)에 계속

8) 金宇顥, 『東岡先生文集』 권10 「奉使復命啓」, “「伏以臣於沿途地方, 廉察民事, 黃海道則雖禾穀間有結實, 而陳荒者尙居三之二, 民多艱食, 官未捧糴, 入京畿地則蒿蓬滿野, 道間時見老弱男女, 持筐筥拾草食, 或採稂莠之實, 皆面無人色, 或逢僵屍橫道, 問之則云餓死矣. 及至京城, 逢道殣尤多. 有白頭老叟, 迎臣馬首問曰: 大駕幾時來耶? 我輩待駕未至, 餓死且盡矣. 又見母子相棄, 此離散去, 號哭振野, 城中屋宇, 什存一二, 而竝皆殘毀, 唐兵充斥, 而我民絕少, 皆飢困垂死. 問之, 云: 倭賊初去, 民多扶携還集, 充滿城中, 既而望駕未至, 資生無路, 或相襁負携持而散之四方, 或闔門相枕藉而死, 餘存者皆賴唐人, 乞食爲命, 雖設賑濟場, 而任事者或不盡力, 救活極少云. 在城之日, 多遇士族婦人, 以敝衣遮掩頭面, 提携少兒女, 踵門而乞食者, 氣微欲盡, 語聲僅續, 臣對食哽噎, 不能下咽, 其他滿目悲慘, 不可具陳.”(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424, 555~557쪽) 이 계문은 1593년(선조 26) 8월에 작성되었음.

9) 『선조실록』 26년(1593) 7월 29일조 참조(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본, 이하 동일).

10) 趙慶男, 『亂中雜錄』 권3 무술년(1598) 3월 12일조, “帝遣給事中徐觀瀾于本國, 詳截島山功罪[攷事]. 又調送山東道小米[粟米]百萬餘石于本國, 以爲軍餉, 兼貸飢民.”(民族文化推進會 韓國古典叢書本, 책3, 134~135쪽)

흥년이 들자 경상도·전라도 사람 1만여 명이 유정 진영에 들어가 품팔이를 하며 목숨을 부지하였다.¹¹⁾ 명군 진영에 투탁한 조선인들이 많아지자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가 명군을 사칭하거나 방자 노릇을 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심지어 재물 약탈, 부녀자 겁탈 등 범죄를 일으키곤 했다.

한반도에 주둔한 명군의 인원은 전쟁 상황에 따라 증감이 잦았다. 전쟁이 격화되면 병력을 대규모로 증강시켰고, 반대로 소강상태에 들어서면 일부 병력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1588년(선조 31) 전쟁이 끝난 후에도 혹시 모를 일 본군의 재침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잔류시켰다가, 1600년(선조 33)에 이르러 잔류 병력을 모두 철수했다. 명군이 수시로 본국으로 귀환할 때마다 명군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간 조선 투탁자가 상당수에 달했다. 1594년(선조 27) 10월에 劉綎의 군영에서 나온 조선 투탁자가 5백 6십여 명이다.¹²⁾ 또 1600년(선조 33) 7월에 吳宗道가 본국으로 철수하는 선박에 조선 투탁자 1백여 명이 타고 있었다.¹³⁾ 이 외에 명군이 주도적으로 조선인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다. 1593년(선조 26) 8월에 명군이 철수할 때 서울에 사는 여인들을 남자로 변장시켜 데리고 갔다.¹⁴⁾

투탁자를 바라보는 조선 조정의 심정은 매우 착잡했다. 자국민에 대한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 점은 두 번째 치더라도 날로 격화되고 있는 전쟁에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군인을 보충할 수 없을까봐 크게 우려하였다. 투탁자 가운데에는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이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조선 조정은 투탁자를 송환시켜 특전을 베푸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다. 명군 진영에서 스스로 나온 공사천에게는 양인으로 면전, 양인에게는 금군, 방자에게는 둔전을 주도록 했다.¹⁵⁾ 또한 이들을 불러 모아 도감으로 배속시켜 포

11)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記聞」, “至癸巳甲午, 連歲大飢. 時劉總兵綎久住兩南, 兩南流民, 皆就傭於軍中, 名曰幫子, 得延餘命, 殆將萬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34쪽)

12) 『선조실록』 27년(1594) 10월 8일조 참조.

13) 『선조실록』 33년(1600) 7월 18일조 참조.

14) 『선조실록』 26년(1593) 8월 6일조 참조.

15) 『선조실록』 27년(1594) 8월 25일·28일조 참조.

수·살수 등의 기술을 가르쳐 군인으로 삼고, 훗날 원 주인이 나타나 자기의 노복을 찾아가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⁶⁾ 또 부녀자들에게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해주었다.¹⁷⁾

이와 동시에 조선 조정은 투탁자가 명군을 따라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전방지 차원에서 투탁자에게 여러 특전을 내 걸며 명군을 따라 국경을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 명군 수뇌부에다 조선 조정의 입장을 밝히며 투탁자 동행을 금해달라는 자문을 보냈다.¹⁸⁾ 또 임진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등 도강 지역에 전담 관원을 배치하여 투탁자를 색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⁹⁾ 만약 색출한 인원수가 3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별히 치죄하고, 반대로 가장 많이 색출한 자에게는 논상을 행하도록 하였다.²⁰⁾

그렇지만 조선 조정이 펼친 노력은 투탁자의 개인 사정과 명군의 미온적인 협조로 인하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투탁자 절대다수는 국내에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었다. 난리통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 도처로 유리하다가 굶주림을 피해 명군 진영에 투탁했다. 만약 명군 진영에서 이탈하면 딱히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명군이 철수할 때 그들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자들이 많았다. 명군 수뇌부도 투탁자를 데리고 가면 장차 가정이나 사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조선 조정의 요청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명군과 무관하게 자구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인도 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초창기에 전쟁의 범위가 거의 한반도 전역까지 급속도로 확산해오자 조야(朝野) 모두 거의 공황상태에 빠졌고, 민초들은 선조의 몽진을 따라 서북지역으로 대거 몰려들었다. 그러나 서북지역의 형편도 좋지 않았다. 연이어 흉년이 들고 난민들이 대거 몰려오자 생활

16) 『선조실록』 27년(1594) 10월 8일조 참조.

17) 『선조실록』 27년(1594) 8월 16일조 참조.

18) 『선조실록』 26년(1593) 8월 6일조 참조.

19) 『선조실록』 27년(1594) 8월 16일조 참조.

20) 『선조실록』 32년(1599) 2월 8일조 참조.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구걸하기도 힘든 일부 민초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압록강을 넘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투탁자 상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Ⅲ. 명나라로 건너간 조선 유민 사례

국내외 고문헌을 조사해보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의 자료들을 꽤 찾을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여러 문헌에 산재된 바람에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조선 유민의 실존 형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일일이 열거해본다. 나열방식은 조선 유민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와 거주했던 지역별로 나누고, 각 사안별로 유민 이름이나 지명, 특정 명칭을 붙이도록 한다.

1_ 遼陽, 鎮江과 주변 지역

1) 孔德里 사람

1598년(선조 31)에 진주정사 李恒福은 북경을 다녀오면서 『朝天錄』을 남겼다. 이 책자에는 중원에 건너간 조선 유민에 관한 여러 내용을 담아놓았다. 이해 12월에 이항복이 요동 懷遠館에 며칠 머물며 요동 군부와 만나 사행 업무를 처리했다. 한 젊은이가 자주 회원관을 찾아 하인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 토로했다. 자신은 孔德里 출신이며, 요양에 들어와서 修家の 가정이었다. 요양성 안에 와서 사는 조선 유민의 숫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²¹⁾ 공덕리는 전북 김제 공덕면에 소재한 마을이다.

2) 教師 武人

이덕형은 요양에서 또 한 명의 조선 유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는 명족 출신으로 말을 타고 활을 잘 쏘았다. 요동 군부에서 教師로 발탁하여 요양에서 60~70리쯤 떨어진 곳에 敎場을 설치하고 요동 사람 중 영리한 자들을 뽑아 급료를 후하게 주어 가르치도록 했다. 교습생 가운데 성취한 자들이 매우 많았다.²²⁾

여기의 교사는 명문 무인 집안의 출신으로 보인다. 당시 누르하치[努爾哈赤]가 건주어진 부족을 통일하고 요동 변방의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요동 군부는 한편으로 이들을 회유하는 방도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물리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조선 교사가 가르치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은 요동 전쟁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투 방법 중의 하나다.

3) 玉春

1605년(선조 38)에 천추정사 李馨郁은 북경을 다녀오면서 『燕行日記』를 남겼다. 이해 6월 북경으로 향하는 길에 요양 懷遠館에 머물며 사행 업무를 처리했다. 하루는 이등운의 가정이 찾아와 자신의 내력에 대해 말했다. 자신은 조선 사람이고, 부친은 군관 李元樹이며, 한양에서 감사 尹卓然 집 앞에 살았다. 14살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평양으로 피난했고, 일본군이 평양에서 철수할 때 명장 이등운을 만나 수양되었다. 이형옥이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니, 옥춘은 난리 통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된 지 13년이며 처자식이

21)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記聞」, “壬辰以後, 我民遭亂避地, 流入中國者頗多, 一余到遼陽, 有一少漢數來余寓, 與下人相熟, 自言是孔德里居人, 入遼爲修家家丁. 因言遼陽城裏鮮人來居者, 不能悉數.”(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34~135쪽)

22)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記聞」, “有一武人, 忘其名, 自言名族, 善騎射, 天朝之人, 號爲教師, 別開敎場, 於距此六七十里地, 面選遼人之伶俐者, 逐日敎習, 厚給廩料, 因是成就者甚多.”(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35쪽)

있는지라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했다. 요양에는 난리 때 들어온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었다.²³⁾ 이형옥이 통주에서 올린 장계에서도 옥춘에 관한 내력을 담아 놓았는데, 이등운의 가정인 玉春의 집이 明禮坊이라고 했다.²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명 이등운은 李如松을 수행하고 한반도에 들어왔고, 평양성을 수복하는 전투에 참여했다. 이듬해 이여송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따라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옥춘은 한양을 떠나 평양으로 들어왔지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이때 이등운을 만나 수양되었으며, 나중에 중원으로 따라 들어가 그의 가정이 되었다. 이형옥은 요양성에 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다고 했다.

4) 韓銀玉

1608년(선조 41)에 정사 申濩을 필두로 한 동지사절이 북경을 다녀왔다. 서장관 崔暉은 사행 업무와 건문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술한 『朝天日記』를 남겼다. 이 사행록은 그의 문집인 『認齋先生續集』에 수록되어 있다. 1609년(광해군 1) 1월에 북경을 떠나 귀국 길에 올랐다. 2월 29일에 요양 懷遠館을 떠나 冷井에서 점심을 먹고 三流河에 도달했다. 이날 조선인 韓銀玉이 찾아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11살 때 임진왜란을 만나 명군을 따라 요동으로 들어와 남의 집에서 품앗이를 하며 살아갔다. 최현은 한은옥을 데리고 함께 귀국했다.²⁵⁾

23)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6월 5일조, “李登雲家丁一人拜, 曰: 吾의朝鮮人, 壬辰亂離, 爲賊所脅, 來到平壤, 賊敗時, 又爲唐將李登雲率來, 時年十四, 登雲愛之而抱宿養之, 爲家丁, 作妻生子, 來於斯, 今已十三年, 問其何居? 則居京中監司尹卓然家前, 父乃李元樹, 而爲軍官云. 爾無欲還故土之心乎? 答曰: 父母亂離皆死亡, 到此安居, 歲月亦久, 茲不得出還矣. 本國人因亂來居遼陽城內者甚多云.”(『燕行錄全集本』, 책5, 664쪽)

24)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9월 5일조 통주 장계, “臣曾在遼東時, 我國人玉春居明禮坊, 因亂來平壤, 隨唐將李登雲入來云.”(『燕行錄全集本』, 책5, 708쪽) 여기의 옥춘이 중국에서 개명한 성명인지 아니면 단지 이름만 적었던 것인지 불분명하다.

25) 崔暉, 『朝天日記』 기유년(1609) 2월 29일조, “發遼東中火于冷井, 抵三流河, 宿王

5) 千山 승려

1614년(광해군 6)에 정사 許筠을 필두로 한 千秋 겸 謝恩使가 북경을 다녀왔다. 서장관 金中淸은 사행 내내 보고 들었던 사행을 꼼꼼하게 기술한 『朝天錄』을 남겼다. 이 사행록은 그의 문집인 『苟全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해 6월 17일에 요동 沙河浦에서 鞍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동편에 소재한 천산을 바라보았다. 여러 개 산굴과 기이한 절벽이 있고, 봉우리가 구름 속에 잠겨 있으며, 그 속에는 祖越寺라는 절이 있었다. 그 절에 머물고 있는 승려 가운데에는 조선인이 많은데, 임진왜란 때 병란을 피하여 온 자라고 했다.²⁶⁾

천산은 요녕 안산에서 동남쪽 17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봉우리가 기이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조선 사행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산이다. 조월사의 원명은 靈巖寺이고, 당나라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온다. 금나라 때 황실의 원찰이 되었고, 명 가정 연간에 산사태로 거의 훼손되었다. 용경과 만력 연간에 각각 크게 중건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천산에 머물고 있던 조선 승려가 임진왜란을 피해 들어왔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구적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왔는지 아니면 명군을 따라 들어왔는지는 기록 부재로 불분명하다.

6) 吳宗道 家丁

1608년(만력 36)에 熊廷弼이 浙江道御使 巡按遼東에 제수되자 후금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요동 각지를 돌아다니며 방어 책략과 변방 사정을 살펴보았다. 이듬해 1월 17일에 올린 상소에는 鎮江遊擊 吳宗道の 부패상을 탄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오종도가 거둔 조선인[麗人] 가정이 조선 복장을 한 다음

姓人家，有我國人韓銀玉者，年十一歲，逢壬辰之亂，隨唐兵入遼東，傭食人家，是日隨臣等偕來。”(韓國歷代文集叢書本，책932, 466~467쪽)

- 26) 金中淸, 『朝天錄』 甲寅年(1614) 6월 17일조, “東望有山名千山, 山中有寺名祖越, 列岵奇峭, 雲岑縹緲, 居僧多我國人, 乃壬辰避兵禍來者云.”(韓國文集叢刊本, 속책14, 252쪽)

요동 선박을 타고 鐵山, 別東, 大張 등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며 초피와 인삼들을 매입하는 일에 나섰다. 장사자금은 山東防海副總兵 吳有孚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주인은 오종도다.²⁷⁾

오종도는 절강 紹興府 山陰縣(현 紹興) 사람이다. 모두 세 차례 한반도에 들어왔다. 1593년(선조 26)에 처음 들어왔다가 이내 돌아갔다. 1597년(선조 30)에 수군을 이끌고 왔다가 1598년(선조 31)에 돌아갔다. 1599년(선조 32)에 다시 수군을 이끌고 왔다가 1600년(선조 33)에 돌아갔다.²⁸⁾ 1600년(선조 33)에 오종도가 수군을 이끌고 귀국할 때 투탁인 1백여 명이 타고 있었다. 오종도가 거제에 있을 때 관기 蘭生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낳았다.²⁹⁾ 웅정필 소장에는 오종도 가정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종도를 따라 중원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으로 추정된다. 그 후 오종도는 웅정필의 탄핵을 받아 山東防海副總兵 吳有孚와 함께 파면당했다.

2_ 廣寧과 주변 지역

1) 金季男, 李昌立

1602년(선조 35)에 조선 조정은 정사 金信元을 필두로 한 세자책봉 주청사절을 북경으로 보냈다. 이때 서장관 李民晟은 사행 기록을 날짜별로 적어놓은 『朝天錄』을 남겼다. 이 사행록은 『敬亭先生別集』에 수록되어 있다. 12월 28일 아침, 廣寧에서 閭陽驛을 향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선 유민 2명이 찾

27) 熊廷弼, 『熊廷弼集』 권1 「重海防疏」, “同吳宗道所收麗人爲家丁者, 變麗服, 乘遼船, 潛往鐵山, 別東, 大張各島, 換買貂參等物. 問誰資本, 則出自吳有孚, 而吳宗道則其窩頓地主也.”(學苑出版社本, 24쪽)

28)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178 · 246~247쪽)

29) 『宣祖實錄』 40년(1607) 4월 28일조

아왔다. 金季男은 豐德 사람이고, 李昌立은 永川 사람이다. 이들은 일본군이 약탈할 때 劉總兵 진영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撫院中軍에 속해 있다고 했다.³⁰⁾

여기의 劉總兵은 劉綎을 지칭한다. 유정은 임진왜란 기간에 두 차례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에 들어왔다. 한번은 1593년(선조 26)에 사천·귀주 군사를 이끌고 왔고, 명군의 주력부대가 철수할 때에도 계속 경상도에 남았다가 1594년(선조 27)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 한번은 1598년(선조 31)에 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萬世德 휘하 명 원병 대열의 西路를 맡았고, 전쟁이 끝난 후인 1599년(선조 32)에 본국으로 돌아갔다.³¹⁾ 김계남과 이창립은 중원에 들어온 뒤에 군인이 되어 무원중군에 편입되었다. 당시 광녕에는 요동 군무를 총괄하는 무원을 두었다.

2) 張晩生, 黃石連, 金彦容

1610년(광해군 2)에 정사 俞大禎을 필두로 한 주청사절이 북경을 향해 떠났다. 부사 鄭士信은 사행 기록인 『梅窓先生朝天錄』을 남겼다. 이해 9월 21일 사행 거점 도시인 광녕에 머물고 있을 때 조선 유민 3명이 찾아왔다. 張晩生은 安岳 출신이고, 나이는 28세다. 黃石連은 星州 출신이고, 나이는 30세다. 金彦容은 瑞興 출신이고, 나이는 36세다. 癸甲 연간에 장만생은 麻提督, 황석련과 김언용은 劉總兵을 따라 중원으로 들어와 광녕에서 군인이 되었고, 모두 처자식을 두었다. 장만생은 올봄에 전공을 세워 은 50냥과 군마 1필을 받았고, 병사 50명을 거느리는 旗長이 되었다. 광녕에 군인이 된 조선인이 1백여 명이나 되었다.³²⁾ 또 주청사절이 북경에서 사행 업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광녕을 다시 지

30) 李民寢, 『朝天錄』 임인년(1602) 12월 28일조, “二十八日, 到間陽驛. 朝, 我國人 豐德人金季男, 永川人李昌立來謁, 說稱被掠于倭, 因投劉總兵陣, 今屬撫院中軍.”(燕行錄全集本, 책15, 28쪽)

31)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來姓名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175·225쪽)

32) 鄭士信, 『梅窓先生朝天錄』 1610년 9월 21일조, “有本國人安岳張晩生及星州黃石連, 瑞興金彦容等數三人, 連日來見余等, 自言癸甲年間, 張則爲麻提督所率來,

나갔다. 12월 29일에 정사신은 김언용을 다시 만났으나, 장만생과 황석련은 군졸들을 이끌고 매복 작전에 나서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³³⁾

麻提督은 麻貴를, 유충병은 유정을 각각 지칭한다. 장만생 등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왔다고 한 계갑 연간은 어딘가 착오가 있는 듯하다. 계갑 연간은 1593년(선조 26)~1594년(선조 27) 또는 1603년(선조 36)~1604년(선조 37)에 해당된다. 전자 시기는 麻貴가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았고, 후자 시기는 마귀와 유정이 중국 대륙으로 귀국한 이후였다. 마귀는 회족 출신이다. 1597년(선조 30)에 禦倭總兵官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提督으로 승진하여 稷山, 島山 전투에 참여했고 이듬해에 명 원군의 東路를 맡았다. 1599년(선조 32)에 귀국했다.³⁴⁾ 앞서 언급했듯이 유정이 첫 번째 귀국한 시기는 1504년(선조 27)이다. 어쨌든 장만생 등은 명군을 따라 중원으로 들어왔고, 훗날 군관이 되어 각종 전투에 나섰다.

3) 鄭彦方, 朴季章

1617년(광해 9)에 조선 조정은 정사 李尙吉을 필두로 한 동지사절을 북경으로 보냈다. 이때 서장관인 金鑑은 사행 여정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한 『朝天日記』를 남겼다. 이 사행록은 그의 문집인 『笠澤集』에 수록되어 있다. 10월 18일에 광녕에서 張總兵 수하인 鄭彦方과 朴季章을 만났다. 이들은 아이 때 萬經를 따라 중원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장충병의 아래에서 충애를 받고 있다.

今爲麻公手下親兵, 在此鎮內; 黃與金則爲劉總兵所搶來, 今爲此鎮精兵. 張年廿八, 黃年三十, 金年三十六, 皆有妻子於此土. 渠輩言朝鮮人之來此爲單兵者, 殆百餘人云, 良可嘆也. 鎮中月給俸料銀一兩半, 八九月秋高, 則加給寒衣, 次銀子八錢, 使買老羊裘, 官給戰馬, 又得功論賞, 不在此限. 張則已於春前立戰功受銀五十兩, 加戰馬一匹, 令軍五十名爲旗長云.”(燕行錄全集本, 책9, 279쪽)

33) 鄭士信, 『梅窓先生朝天錄』 1610년 12월 29일조, “去時所見張晚生等以領卒設伏出去云, 唯金彦容者來見而去.”(燕行錄全集本, 책9, 393쪽)

34)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223~224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지만 처자식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³⁵⁾

萬經理는 萬世德을 지칭한다. 정유란 때 명 조정은 經理 楊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그 후임으로 天津巡撫 만세덕을 한반도로 보냈다. 1597년(선조 30) 11월에 만세덕이 한양에 들어온 이래 조선을 열성적으로 도와주고 전쟁 직무를 잘 처리해주어 조선에서 그의 공로를 찬양하여 생사당을 지어주었다. 1600년(선조 33) 9월에 본국으로 돌아갔다.³⁶⁾ 장충병은 廣寧總兵 張承胤을 지칭한다. 1618년(만력 46)에 명 楊鎬가 이끄는 요동 정벌군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가 이듬해 후금 누르하치의 대군과 맞붙은 사르후(薩爾滸) 전투에서 패전하고 전사했다.

4) 普慈寺 승려

1604년(선조 37)에 주청정사 李廷龜는 세자책봉 문제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甲辰朝天錄』을 남겼다. 광녕에 머물고 있을 때 이목이 뚜렷한 젊은 승려를 만나 시 한 수를 지어주었다. 이 승려는 安岳에 거주하며 글을 배웠고 난리를 만나 사찰에 출가했다. 장로들이 돌아가는 바람에 홀로 압록강 주변에서 빌어 먹고 있을 때 명군이 자신을 끌고 도강했다. 중원에 들어온 지 7년이 되었다. 예전에 東寧 藥山寺에 있다가 이제 普慈寺로 옮겨 선을 닦고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정귀는 승려에게 조선과 명나라가 같은 천하에 있으니 이곳을 타향이라고 말하지 말라며 위로해주었다.³⁷⁾

35) 金鑑, 『朝天日記』 1617년(광해 9) 10월 18일, “有鄭彥方·朴季章者, 皆張總兵管下也. 自言兒時, 自本國從萬經理來, 今爲總兵所愛, 又有妻子, 雖懷土欲東, 爲妻兒不得去云.”(檀國大藏本 『笠澤集』, 권2 21쪽b)

36) 『선조실록』 31년(1598) 11월 25일, 33년(1600) 9월 10일, 37년(1604) 10월 17일조 등 참조.

37) 李廷龜, 『月沙先生集』 권4 「甲辰朝天錄」 중 “寓廣寧, 有僧來謁, 自言安岳居僧, 因亂隨天兵過江, 今住普慈寺, 欲歸未歸云, 連日來款, 臨行, 持一牋求詩, 漫書

보자사 승려가 국경을 넘은 시점은 1598년(선조 33)경이다. 약산사가 소재한 동녕위(현 철령)는 조선족 이성량 집안의 세거지다. 아마도 동녕위 소속의 군사가보자사 승려를 끌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보자사는 광녕에 소재한 커다란 사찰 두 곳 중의 하나이며, 성 동남쪽 모퉁이에 자리하였다.³⁸⁾

5) 李天付

김중청의 『조천록』에는 조선 유민의 활동 사항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1614년(광해군 6) 6월 28일에 김중청은 杏山驛에서 備禦 麻承宗이 보낸 가정 李天付를 만났다. 麻貴의 아들 마승중이 조선 사절이 가져온 쌀과 종이를 요구하자 김중청은 통에다 쌀 두 말과 종이 두 속을 담아 보냈다. 마승중은 즉시 통에다 반찬을 담아 사례하였다. 이때 심부름을 한 마승중의 가정 이천부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토로했다. 본래 성씨는 淸州 鄭氏다. 부친은 別侍衛였고, 형은 末叱年이며, 한양 동대문 안에 살았다. 10살 때 萬經理(만세덕)를 따라와 이어송의 가정이 되어 성명을 이천부로 바꾸었다. 이제 마승중을 섬긴 지 2년이 되었다.³⁹⁾

이천부가 이어송의 가정으로 있었다고 말했는데,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

慰之.”; “余投廣寧館市廛，眼中俗物何紛然，有僧來謁年最少，眉目炯炯清而娟，冠裳拜跪盡中朝，言語獨不憑譯傳，怪而問之前致辭，云我生長于朝鮮，世居安岳學文字，遭亂出家行隨緣，經卷飄零長老亡，隻影乞米鴨水邊，天兵拉我過江來，淪落異地今七年，舊住東寧藥山寺，今寓普慈聊安禪，思歸欲歸歸未得，夢魂迢迢隔山川，言之未了淚盈眶，辭意款懇誠堪憐，我言僧蹤本無定，疆土彼此何擇焉，況我皇朝仁一視，蕩蕩王道真無偏，率土之濱盡王土，人皆願受廬爲民，僧乎莫歎客他鄉，八千世界同一天。”(韓國歷代文集叢書本，책235, 203~204쪽)

38) 張文治, 「雙塔廣寧崇興寺修造粧塑碑記」, “嘗考遼舊志, 廣寧有大寺二, 其一爲普慈寺在城東南隅, 一則在城東北隅, 卽雙塔崇興寺是也.”(中國方志叢書本, 東北8號, 656쪽)

39) 金中淸, 『朝天錄』 갑인년(1614) 6월 28일조, “留杏山. 備禦麻承宗前摠兵貴之子, 送家丁索米紙, 以二斗二束應之, 卽具饌榼來謝. 其家丁我國淸州鄭姓漢也. 其父爲別侍衛, 其兄末叱年居京城東大門內, 渠十歲隨萬經理來, 爲李如松舍人, 冒李姓名天付, 今事麻二年云.”(韓國文集叢刊本, 속책14, 255쪽)

다. 한반도에 파견된 만세덕이 본국으로 귀국한 연도는 1600년(선조 33)이다. 이때는 이여송이 죽고 난 이후였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여송은 제독으로 임명되어 군사 4만을 이끌고 들어와 평양성을 탈환하는 공을 세웠다. 이듬해 전쟁이 소강상태로 빠지자 유정 등 일부 군대만 남기고 본국으로 귀국했다. 1598년(만력 26)에 韃靼의 土蠻을 물리치기 위해 나갔다가 전사했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천부는 광녕에 살고 있던 조선인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당시 광녕에는 鐵嶺 李氏 집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여송 사후에도 광녕에는 부친 寧遠伯 李成梁이 살아 있고, 동생 李如梅가 이여송의 요동총병 직위를 승계받았다. 따라서 이천부가 처음 가정이 된 것은 철령 이씨 집안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때 이천부는 주인의 성씨를 따라 정씨에서 이씨로 바꾸었다. 1612년(만력 42)에 철령에서 행산에 머물고 있는 마승종의 가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산은 현 요녕 錦州市 남쪽 杏山街道를 지칭한다. 몇 년 뒤에 이곳에서 명나라와 후금의 대군이 부딪쳐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마귀의 아들 마승종은 遼東副總兵을 지냈다. 마씨 집안에 뛰어난 장수가 많아 당시 사람들은 철령 이씨와 더불어 東李西麻라고 불렀다.⁴⁰⁾ 두 집안사람들은 오랫동안 요동 군무를 처리하면서 상호 교류가 잦았다.

6) 崔用晦

이천부는 김중청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신 외에 유민 출신 군인과 崔用晦에 관한 정보를 얘기해주었다. 조선인 가운데 활과 포,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워 군인이 된 자가 많으며 그중 광녕에 거주하는 자가 가장 많았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把總이나 千總이 된 자도 적지 않았다. 경주 향리 崔氏는 현재 42세인데, 3천 명을 이끄는 甘州參將이 되었다. 최씨 참장이 늘 말하기를 고

40) 『明史』 권238 「麻貴傳」, “承宗, 遼東副總兵. 天啓初, 戰死沙嶺. 麻氏多將才, 人以鐵嶺李氏, 曰東李西麻.”(中華書局本, 6202쪽)

국에 난리가 발생하면 마땅히 구원에 나서겠다고 했다.⁴¹⁾

그 후 김중청이 북경에 들어가 옥하관에 머물고 있을 때 이천부가 말한 죄씨 참장의 신분을 확인했다. 우연히 『縉紳便覽』을 펼쳐보니, 그 책자 속에는 감주참장 崔用晦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다. 自號는 東丘이고, 직관은 東寧衛다. 김중청은 최용회가 동구라는 호를 가졌던 점에 대해 고국의 정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⁴²⁾ 東寧衛는 1386년(명 홍무 19)에 요동에 설치된 변방 위소이고, 치소는 현 遼陽의 구시가지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 들어온 최용회가 처음 동녕위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주(현 甘肅 張掖)는 명대 변방을 지키는 주요 九鎮 중의 하나이며, 北胡(몽골)로부터 잦은 외침과 변란이 있어 많은 군사들이 주둔했다.

또 이천부는 조선 유민과 왜노에 관한 정보를 얘기해주었다. 즉, 각 진과 각 집마다 조선 유민이 없는 곳이 없었는데, 광녕만 하더라도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광녕성 원편(서쪽)에는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고, 오른편(동쪽)에는 倭奴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 왜노의 숫자는 조선인보다 적었다. 간혹 조선인과 왜노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조선인들이 이겼다. 다친 왜노들이 관청에다 고발을 해도, 명 어사는 늘 조선인들이 너희들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국땅에서 살지 않았다는 호소를 받아들여 그저 양편을 무마하는 선에서 처리하곤 했다.⁴³⁾ 여기의 왜노는 임진왜란 때 잡힌 일본

41) 金中淸, 『朝天錄』 甲寅年(1614) 6월 28일조, “余問我國人如汝者幾何? 曰: 不知其數, 各鎮各家無不有之, 而有功得官者半之. 慶州鄉吏崔姓人子, 今四十二歲, 新除甘州參將, 率三千. 每言本國有事, 我當出去救援云. 且曰: 我國人學弓砲習馬, 居廣寧爲兵者最多, 或把總·千總爲將官者不少, 諸總兵大爺常曰: 外國唯朝鮮多可用之才, 非撻奴等所及, 每試才, 朝鮮人常第一.”(韓國文集叢刊本, 속책 14, 262쪽)

42) 金中淸, 『朝天錄』 甲寅年(1614) 7월 24일조, “留玉河, 一見『縉紳便覽』, 有甘州參將崔用晦者, 自號東丘, 籍東寧衛. 此果麻承宗家丁李天付所謂我國慶州鄉吏子也. 以東丘爲號, 其不忘故國之情可想.”(韓國文集叢刊本, 속책 14, 255쪽)

43) 金中淸, 『朝天錄』 甲寅年(1614) 6월 28일조, “余問我國人如汝者幾何? 曰: 不知其數, 各鎮各家無不有之, 一問: 倭奴來居者有之? 有之, 但不如我國人之多. 廣寧城內以我國人居左, 倭奴居右, 成東西村. 或時私鬪, 各自分黨, 朝鮮人常勝. 倭奴因搗打致傷, 訴于御史, 御史招訊, 朝鮮人同然一辭曰: 非此奴輩, 我等何爲

군 포로를 지칭한다. 1608년(만력 38)에 광녕 正兵營에 속해 있는 왜군병이 102명이다.⁴⁴⁾

7) 田春

1605년(선조 38) 6월 15일에 천추사절 이형욱 일행이 高平을 지나갔다.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조선 유민 田春을 만났다. 전춘은 경상도 宜寧 사람이다. 정유란 때 董都督을 따라 중원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고평 董遊擊 밑에 살고 있다. 이형욱이 전춘의 얼굴과 말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여겼다.⁴⁵⁾ 훗날 이형욱이 올린 통주 장계에서도 요양 옥춘과 고평 전춘은 고향에 부모가 없고, 중원에 처자식이 있어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했다.⁴⁶⁾

동제독은 董一元을 지칭한다. 1597년(선조 30)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명 원군의 中路를 막아 泗川전투에 참여했다. 1599년(선조 32)에 귀국했다.⁴⁷⁾ 동유격은 董正誼를 지칭한다. 1604년(선조 37)에 요동유격으로 순안어사의 명을 받아 한반도로 건너와 남부 지역에 소재한 군사 시설을 돌아보았다.⁴⁸⁾ 고평은 당시 광녕성에서 동쪽으로 60리 떨어진 鎭武堡城에 자리한 광녕위 소속의 역

流托於異土. 御史無如何, 各賜銀兩和解之云.”(韓國文集叢刊本, 속책14, 262쪽)

44) 熊廷弼, 『熊廷弼集』 권1 「重海防疏」, “正兵營分撥見在家丁二千四百九十一名, 一 降倭一百二名, 共四千七百七十二名, 俱屬標下中軍統攝.”(學苑出版社本, 21쪽)

45)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6월 15일조, “宜寧人田春, 丁酉之亂, 隨董都督來到中原, 今則寓於高平董遊擊管下云, 觀其辭色, 頓無首丘之心.”(燕行錄全集本, 책 5, 672쪽)

46)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9월 5일조 통주 장계, “臣曾在遼東時, 我國人玉春居明禮場, 因亂來平壤, 隨唐將李登雲入來云. 到高平, 則慶尙道宜寧縣人田春, 丁酉之亂, 隨董都督入來於居董遊擊管下云. 問至二人, 曰: 爾無不還故鄉之心乎? 豈無戀土之心乎? 但故鄉無父母, 此處有妻子, 不得已居於斯云, 而少無欲歸之意.”(燕行錄全集本, 책5, 707~708쪽)

47)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來姓名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222쪽)

48) 『선조실록』 37년(1604) 윤9월 1일 등 참조.

참이다. 현 盤山縣 高升鎮 시내에 역참 유적이 남아 있다.

8) 東關堡 여인

1599년(선조 32) 1월에 진주정사 이덕형 일행은 東關堡의 劉家에서 숙박했다. 동관보의 길에서 한족 복장을 입고 조선관을 쓴 한 여인이 일행을 보고 울며 자신의 신분을 토로했다. 자신은 社稷洞에 살았고, 천민도 귀인도 아니며 여기에 부쳐 살아온 지가 벌써 6년이 되었다고 했다.⁴⁹⁾ 사직동은 당시 한양에 속해 있다. 여인은 양인 출신으로 보이며, 1593년(선조 26)경에 중원으로 들어갔다. 이해 8월에 명군들이 철수할 때 서울에 사는 여인들을 남자로 변장시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⁵⁰⁾ 동관보 여인도 여기에 속한 경우로 보인다. 동관보는 綏中鎭에 자리한 명대 보루다.

3_ 山海關과 通州 지역

1) 義州 여인

1599년(선조 32)에 정사 韓壽民을 필두로 한 동지사절이 북경을 다녀왔다. 이때 서장관 趙翊은 연행일지인 『皇華日記』를 남겼다. 이해 12월 귀국하는 길에 산해관에서 며칠 머물면서 관문 통과에 따르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루는 의주 여인이 찾아와 사절과 함께 귀국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조익은 이 사실을 통사를 통해 山海關主事에게 통보하고 동행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 다음 날 정식 절차를 밟을 때 주사가 전날과 달리 불가하다고 했다. 의주 여인

49)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記聞」, “又東關堡路傍, 有女人服漢服, 戴朝鮮冠, 見吾等一行, 泣且言, 舊居社稷洞, 非賤非貴人, 寓此已六年.”(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35쪽)

50) 『선조실록』 26년(1593) 8월 6일조 참조.

을 이역(異域)에 남겨두는 것은 매우 불쌍한 일이고, 주사가 변심해서 허락하지 않아 대동할 수가 없어 아주 분하다고 했다.⁵¹⁾

조익의 기록에서 의주 여인이 어떻게 중원으로 들어왔는지 명기하지 않았으나, 당시 산해관 주변에 많은 조선 유민들이 살고 있던 정황으로 보아 의주 여인도 그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익보다 한 해 전에 동지정사로 북경에 다녀온 鄭曄는 산해관 안팎에 황해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했다.⁵²⁾ 앞서 동관보 여인의 경우도 임진왜란 때 중원으로 들어왔다.

2) 산해관 바깥 조선인

1599년(선조 32) 4월에 진주정사 이덕형은 귀로에서 산해관 바깥의 객사에서 숙박했다. 밤중에 한 조선 유민이 남몰래 찾아와서 탈출 계획을 전달했다. 자신은 조선 사람으로 고향이 그리워 항상 돌아가고 싶으나 주인덕에서 감시하는 바람에 도망칠 수가 없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조선인 30여 명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함께 도망칠 수 있다. 다만 한 사람만 장사를 하여 재물을 많이 모아 큰 집을 사고 미인을 두고 있어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접었다.⁵³⁾ 이덕형이 이들을 데리고 왔는지는 기록 부재로 불분명하다. 아마도 집단 탈출을 돕는 것은 당시 조선·명나라 관계상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 밖에 이덕형은 사행 도중에 만난 조선 유민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51) 趙翊, 『皇華日記』 1599년 12월 10일조, “有義州女人入來, 時要與同還, 故昨令通事告于主事, 許之. 今日借通事并爲入辭, 則主事還有退託之意, 不肯許送. 寄身異域, 情事可矜, 始計終反, 竟止歸計, 令人可憤.”(연행록전집본, 책9, 175쪽)

52) 『선조실록』 32년(1599) 2월 26일(병자)조

53)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記聞」, “又山海關外旅舍, 有一漢乘夜潛叩門, 亦言係是我國人, 思戀鄉土, 常欲脫歸, 主家伺之甚勤, 無隙可乘. 同里有鮮人之流寓者, 不下三十餘人, 若一人先唱, 皆當脫歸, 但其中一人來此, 卽行商販, 資產甚殷, 買大屋擁美娥, 已享富家之樂, 絕意東歸, 唯此難動矣. 自此往往逢鮮人, 不記其數, 此外所不能知者何限.”(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35~136쪽)

3) 禹福

1605년(선조 38)에 천추사절 이형욱 일행은 북경에서 사행 업무를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다. 9월 23일에 산해관 바깥에서 또 한 명 조선 유민 禹福을 만났다. 우복은 寶城郡 사람이다. 1600년(선조 33)에 명 수군이 湖南으로 돌아갈 때 격군으로 배를 탔으나 도중에 하선하는 것을 불허하는 바람에 중원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절강에 이르러 자신을 놓아주자 도처를 떠돌다가 산해관 바깥까지 올라왔다. 부모는 모두 돌아갔고, 형제는 살아 있다. 원컨대 사절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⁵⁴⁾

우복을 데리고 간 명 수군은 吳宗道 소속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 수군의 구성원을 보면 크게 陳璘이 이끄는 廣兵과 鄧子龍, 季金이 이끄는 浙兵으로 나누어진다. 등자룡은 1598년(선조 31) 노량해전 때 이순신과 함께 전사했고, 진린과 계금은 모두 1599년(선조 32)에 본국으로 귀환했다. 오종도는 모두 세 차례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1600년(선조 33)에 한반도에 남은 마지막 수군들을 이끌고 귀국했다. 우복이 명 수군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해가 1600년(선조 33)이다. 당시 한반도에 남아 있는 명 수군의 진영은 오종도 소속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종도가 귀국할 때 조선 투탁자 1백여 명이 타고 있었다.

4) 姜連

1605년(선조 38) 7월에 천추사절 이형욱 일행은 북경을 목전에 둔 通州에 도달했다.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조선 유민 姜連을 만났다. 강련은 稷山 사람으로 20여 살이다. 부모는 병들어 죽고, 어린 누이는 남에게 수양되었다. 자신은 杜

54)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9월 23일조, “有一人來拜, 曰: 我本朝鮮人, 居寶城郡, 而各司官子也. 庚子年水兵唐將往湖南時, 以格軍上船, 不許下船, 仍爲牽來, 至浙江放之, 不得固依流丐處處, 願陪行次, 生還故土, 父母皆亡, 同生則有之云, 名禹福云.”(燕行錄全集本, 책5, 714쪽)

勅使 巡捕官인 蔡子雲에게 수양되어 증원으로 들어온 지 6, 7년이 되었다. 나중에 채자운이 변방 방어로 북쪽 만리장성으로 떠났으나, 자신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올 삼월에 통주에 들어와 이발업을 하며 살아왔다. 고국 사신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⁵⁵⁾

이형옥이 귀국 길에 통주에서 보낸 장계에서도 강련에 관한 사정이 적혀 있다. 이형옥은 강련이 앞서 만났던 옥춘·전춘과 달리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며 북경의 사신숙소인 玉河館으로 데리고 갔다. 이 사실을 예부에 알려 동행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 이때 예부는 혹시 도중에 도망칠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형옥은 예부의 말을 전해 듣고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⁵⁶⁾ 나중에 예부의 우려는 사실로 나타났다. 사행 일행이 鞍山에 도달했을 때 강련은 上通使 尹慶龍의 짐을 훔쳐 도망쳤다. 이형옥은 강련의 사건에 대해 몹시 통분해 했다.⁵⁷⁾

두척사는 杜潛을 지칭한다. 1599년(선조 32)에 協理海防兵備로 한반도에

55)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7월 26일조, “有一人來拜, 曰: 我本稷山雲僉居人, 亂後, 年僅十餘歲時, 父母病斃, 只有小妹一人, 妹則見養於人, 吾流丐到處之, 年月不記, 杜勅使行次編收蔡哥見吾率來, 今至六七, 蔡哥以赴防事往在萬里城北隅, 吾不隨去, 不勝懷土之心, 今年三月乘來於通州, 以梳髮爲業資生云, 見吾一行, 願欲回歸去, 甚切甚切, 不知其年, 觀其容貌, 則二十餘來.”(연행록전집본, 책5, 689~690쪽)

56)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9월 5일조, “臣留通州時, 有一人來拜, 曰: 吾의朝鮮人也, 問其姓名居住, 則姓姜名連, 居稷山雲僉地, 而亂後十餘歲時, 父母得病皆斃, 只有一小妹, 妹則見養於人, 吾流丐到處之, 年月不記, 唐將杜勅使管下人巡捕官蔡子雲見吾率來, 而至六七年, 蔡哥以赴防事往在萬里城北隅, 吾不隨往, 不勝懷土之心, 今三月乘來于通州, 今見我國使臣, 願欲回歸云. 一 今見姜連則見臣一行, 顏喜且極首丘之情, 亦爲懇切, 臣嘉其懷土之意, 率來到玉河館, 呈文禮部, 便即許還一同帶去, 而但仰前者收此人業, 或有中路還逃之弊云, 未知渠心有何計也.”(연행록전집본, 책5, 707~708쪽)

57) 李馨郁, 『燕行日記』 1605년 10월 24일조, “前日狀啓內稷山人姜連, 自北京無弊帶回爲白如乎, 到鞍山地, 上通使尹慶龍行囊乙, 偷竊逃去, 極爲痛憤爲白良尔之.”(연행록전집본, 책5, 724쪽)

나왔다가 이듬해 귀국했다.⁵⁸⁾ 강련이 임진왜란 때 중국에 들어온 조선 유민임은 분명하지만, 도중에 도망친 행동으로 보아 그가 공술한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당시 조선사절이 쇄환한 유민 가운데 도중에 도망치는 자가 있었고, 명 예부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인지하고 있었다.

4_ 南京, 揚州, 登州 지역

1) 柳大春

임진왜란이 막 끝난 시점에 제주도 남녀들이 어로작업에 나섰다가 표류를 당하여 중국 대륙에 도착한 일이 발생했다. 제주 표류인들은 중국 사람들이 구조하여 南京(應天府)으로 이송되었다. 1599년(선조 32)에 명나라는 호송관 石希潛을 보내어 제주 표류인들을 한양까지 호송시켜주었다. 당시 중국 남방에 표착한 조선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던 관행을 보면, 조선 표류인들을 북경까지 호송한 다음 북경에 들어온 조선 사절에게 인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명 호송관을 보내어 한양까지 직접 호송해주었다. 이에 대해 조선 조정은 호송관 석희잠의 노고를 위로하며 후한 접대와 예물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⁹⁾

조선 접제도감은 제주 표류인에게 표류 사정을 묻는 과정에서 이들이 휴대해온 柳大春의 언문 서찰을 접하였다. 유대춘의 언문 서찰에는 당시 남경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 유민의 사정이 기술되어 있었다. 유대춘은 南原 사람이며, 임진년 때 명 장수의 꼬임에 빠져 남경으로 들어왔다. 지금 제주 표류인들과 함께 귀국하고자 하나 주인덕에서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동행할 수가 없다. 남

58)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219쪽)

59) 『선조실록』 32년(1599) 6월 16일조

경에 머물고 있는 조선인은 대략 근 3백 명이 된다. 접대도감 낭청의 보고를 통해 들은 승정원은 언문 서찰의 내용이 다소 황잡하지만 자국민과 관련된 사항인지라 비변사로 이관시켜 처리해줄기를 아뢰니 선조가 윤허하였다.⁶⁰⁾

임진왜란을 마친 후에 남경에 머물렀던 명 장수는 누구인가? 남경은 명 초기의 수도였고, 북경 천도 이후에도 양경제에 따라 여전히 수도로 남았다. 임진왜란 참전 장수 중 남경에 머물렀던 자들의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藍芳威, 陳遊擊 등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다.

2) 許純

1913년에 安住居가 『許夫人蘭雪軒集』을 菊版 활자본으로 간행했는데, 책자 부록에는 許景蘭이 허난설헌의 시를 차운한 『景蘭集』이 포함되어 있다. 안왕거가 허경란의 전기를 담은 「少雪軒傳畧」에 따르면, 許純은 조선 역관 출신이며 선조 때 金陵으로 들어왔다가 명 여인과 결혼하여 딸 경란을 낳았다. 허경란은 부모가 일찍 작고하는 바람에 외가 史氏 집에서 양육되었고, 자라서는 동토의 자손으로 고국산천을 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 1606년(만력 34)에 朱之蕃이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蘭雪軒集』을 가져와 간행하여 중국에 널리 알려졌다.⁶¹⁾

金陵은 남경의 옛 이름이다. 안왕거의 문장에서 허순이 남경으로 들어온 시기가 선조 때라고 했는데, 이를 축소하자면 임진왜란일 가능성이 높다. 평상

60) 『선조실록』 32년(1599) 6월 16일조, “政院啓曰：接待都監郎廳，以濟州走回人齎來諺書一道，呈于本院，乃南原居柳大春稱名人，在南京所送也。其中說話，大概壬辰年間，天將誘率，來到南京。今欲偕濟州人出去，而主家不許。且朝鮮人來在近處者，近三百餘人云。此諺書，雖涉荒雜，似當有處置之事，送于備邊司何如？傳曰：依啓。”

61) 安住居, 「少雪軒傳畧」, “夫人姓許氏, 朝鮮譯人純之女也。宣廟時, 許純流入中國之金陵, 取明女, 生一女, 名曰景蘭。一因父母俱亡, 就育于其外祖史氏家, 及長不肯適人, 常恨以東土遺種, 不得見故國山川。一 大明萬曆丙午朱之蕃使朝鮮, 得許夫人『蘭雪集』以歸, 華人鈐鏤盛行。”(朝鮮朝女流詩文全集本, 책1, 359~360쪽)

시 사행에 나선 조선 역관의 활동지역 범위는 사행 노선과 북경 도성까지이고, 임의로 북경을 벗어나 남방 지역을 여행할 수 없었다. 임진왜란은 특수한 시기 인지라 일부 역관이 명군을 따라 대륙 남방으로 들어왔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통사李大槓은 임진왜란 시기에 명군을 따라 대륙 남방인 항주로 들어와 정착했다.

비록 안왕거가 기술한 시점이 허순의 사적에서 4백년이 지난데다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정밀 검토 작업이 필요하지만, 남경 지역에 임진왜란 조선 유민이 근 3백 명이 살고 있었던데다 허난설헌과 연고가 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용할 근거를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하겠다. 남경 거주자 藍芳威, 주지번은 허난설헌 시문을 중국 대륙에 전파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남방위는 정유란 때 참전한 명 浙兵游擊將軍이며, 귀국한 후에 總裁가 되어 남경에 들어와 살았다. 그의 수증에는 조선 李盤이 쓴 허난설헌의 ‘白玉樓上梁文’이 있었고,⁶²⁾ 또 전쟁 수행 때 한국 한시를 모은 책자인 『朝鮮詩選』에는 허난설헌 작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다. 주지번은 1606년(선조 39)에 명 황태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때 許筠에게서 받은 『난설헌집』을 가져가 중국에 간행·유포하였다. 오늘날 남경 朱狀元巷에는 주지번의 저택이 남아 있다.

3) 高漢老

1624년(인조 2)에 주청사 李德馨 일행은 郭山 宣沙浦에서 선박을 타고 登州(蓬萊)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산둥 내륙과 하북 남부를 가로질러 명 수도 북경으로 들어갔다. 서장관 洪翼漢은 사행 기간 견문한 내용을 담은 『航海朝天錄』을 남겼다. 1625년(인조 3)에 주청사절이 사행 업무를 마치고 북경을 떠나 선

62) 『巨史』 외편 권3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 巨史(반지향) 추록, “黃上珍在金陵藍總戎萬里宅, 曾出高麗蘭一卷, 精寫‘白玉樓上梁文’. 詫客, 稱景樊少時作.” 금릉은 남경의 별칭이다.

박이 있는 등주에 도달하여 해로 귀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3월 16일에 조선 사람 高漢老가 서장관 홍익한을 찾아와 출신 내력을 토로했다. 자신은延安府 사람이고, 임진왜란 때 陳遊擊을 따라 중원에 들어와 남경에서 10여 년 간 살았다. 진유격이 죽은 후에 등주로 옮겨 軍籍에 예속되었다. 그의 형은 연안부 南新堂에 살았는데,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⁶³⁾ 이튿날 고한로는 홍익한에게 배와 달걀을 주었다.⁶⁴⁾

고한로가 말한 陳遊擊은 누구인가? 국역본 『항해조천록』에는 진유격을 陳璘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진왜란 때 진린의 지위는 御倭總兵官 겸 提督이며, 유격보다 한 단계 높았다. 진린의 고향은 광동 韶州 翁源縣이고, 귀국 후 활동한 지역은 중국 대륙 서남부로 남경과 무관하다.⁶⁵⁾ 한반도에 들어온 명장 가운데 陳姓을 가진 遊擊으로 陳雲鴻, 陳愚衷, 陳蠶, 陳寅 등이 있다.⁶⁶⁾ 陳愚衷은 남원 전투에서 구원 요청에 나서지 않아 탄핵을 받고 곤장 1백대와 充軍刑에 처해졌다. 따라서 진유격은 진우충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 즉 진운홍, 진잠, 진인 중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4) 文應

1621년(광해군 13)에 조선과 명나라는 지난 2백 년간 이용했던 요동 육로가 후

63)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 권2, 을축년(1625) 3월 16일조, “我國人高漢老者來謁. 自言本是延安府人, 壬辰東征時, 隨陳游擊入中原, 居南京十餘年. 游擊棄世後, 遂流寓于這裏, 因隸軍簿云. 其兄高漢金, 居住于延安府南新堂, 未知死生云.”(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906, 445쪽)

64)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 권2, 을축년(1625) 3월 17일조, “午後, 高漢老來饋生梨, 鷄子.”(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906, 447쪽)

65) 중원으로 귀국한 이후의 진린의 활동을 적어보면, 1600년(만력 28)에 湖廣總兵官에 임명되어 묘족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播州(貴州 遵義) 전쟁에 투입되었다. 한때 탄핵으로 파면된 적이 있으나, 곧 복귀하여 공을 세웠다. 1606년(만력 34)에 광동에 돌아와 總兵官에 올랐다. 1607년(만력 35)에 左都督을 더했다. 이에 광둥에서 줄했다.

66)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 (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198 · 240 · 243~245쪽)

금의 점령으로 막히자, 부득불 해로를 통해 오갈 수밖에 없었다. 진항사 柳澗과 진위사 朴彝敍 일행이 한 해 전에 북경에 나갔으나 돌아오는 육로가 막혀 부득불 등주에서 선박을 타고 해로 귀환에 나섰다. 그러나 老鐵山 해역에서 폭풍으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유간, 박이서를 비롯한 대다수가 익사당하고 李必榮 등 일부만 겨우 구조되었다. 그 후 생존자들은 평안도 미곶진(彌串鎭)에 무사히 도달했다.⁶⁷⁾

이필영이 올린 장계에는 임진왜란 때 중국 대륙에 갔다가 고국으로 되돌아온 유민 文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응은 본래 知禮縣 사람으로 수군 梁遊擊을 따라 楊州府(揚州)로 들어갔고, 훗날 다시 조선 사절을 태운 선박의 수부로 충원되어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에 머물기를 원했다. 비변사는 문응이 원하는 바에 따라 원적으로 되돌려 보내 주기를 아뢰니, 광해군이 윤허하였다.⁶⁸⁾

여기의 梁遊擊은 梁天胤을 지칭한다. 淮安府 大河衛 사람이다. 1598년(선조 31) 7월에 南直水兵游擊으로 수병 2천 명을 이끌고 한반도에 들어와 진린 휘하에서 여러 해상전투에 참전했다. 1599년(선조 32) 4월에 본국으로 귀국했다.⁶⁹⁾ 양주부는 양천윤의 고향 회안부와 함께 모두 南直隸(현 강소, 안휘)에 속했다.

67) 『광해군일기』 13년(1621) 4월 13일조, 5월 29일조 참조.

68) 『광해군일기』 13년(1621) 6월 16일, “備邊司啓曰：伏見進香使李必榮狀啓，文應稱名者，原是知禮縣人，曾隨水兵梁遊擊，入居楊州府，今充水手出來，願仍留在云，此人既是我國之人，不忘首丘之情，求還本土，欲爲仍留，似當依願。而設或日後尋問，不患無辭可答。題給口糧，脚力發還，原籍事，李必榮，朴燁處，急急下諭宜當。傳曰：依啓。”

69)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240쪽); 『선조실록』 32년(1599) 3월 10일조 참조.

5_ 杭州 지역

1)李大挺

1611년(광해군 3)에 제주도민이 폭풍 때문에 중국 대륙에 표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해 8월 25일에李大 일가 7명이 탄 배가 어로 작업에 나섰다가 8월 28일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했고, 9월 21일에台州 앞바다인靜寇海門에 표착했다.哨官들이 제주 표류인을 구출하여浙江軍門이 소재한杭州로 이송시켰다.

절강군문王在晉은 제주 표류인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었다. 이들 사이의 언어가 달라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표류인이 한문 식자층이 아니어서 필담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표류인의 남자가 초립을 쓰고 부인이 쪽머리를 한 모양새가 중국 문헌에 적힌 조선 사람의 풍속과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즉시 항주에 살고 있는帽子匠李大挺을 불러들였다. 이대정은 예전에福建許遊擊을 따라 항주로 들어온 조선인 통사였다. 이대정이 제주 표류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니 응대함이 마치 음향이 울리는 것처럼 서로 통하였다.⁷⁰⁾ 왕재진이 제주 표류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통역의 어려움을 겪자, 강남에도 조선 통사가 필요하다며 이대정을 군역에 소속시켰다.⁷¹⁾

곧이어 왕재진은 명 조정에 제주 표류인이 절강에 표착하게 된 사정을 보

70) 王在晉, 『越鐫』 권21 「雜記·朝鮮漁人」, “濱海之夷, 以海爲田, 以漁爲耕, 今所獲者, 網罟于海, 而飄泊于風者也. 男子四, 婦二, 孺子一. 男子俱同姓, 李大·李漢隊爲同生兄弟, 而李三其親叔也. 李四與孺子李小一, 爲同生兄弟, 婦計氏年三十有二, 爲李大之妻. 金氏年二十有九, 爲李漢隊之妻. 各長其夫一歲, 俱未生育. 五男子一族, 爲朝鮮國全羅道南原府濟州康津縣人. 男子草笠大帽, 婦紒髮加于額. 志所稱人載折風巾, 婦鬢髻垂肩者, 宛相肖焉. 人貌樸野椎魯, 而言語侏離, 卽譯者不能曉暢. 有帽匠李大挺者, 朝鮮人, 向隨福建許遊擊爲通事, 僑寓於杭. 呼而庭譯之, 應對如響.”(四庫禁燬書叢刊本, 集部冊104, 490~491쪽)

71) 王在晉, 『越鐫』 권21 「雜記·朝鮮漁人」, “朝鮮人李大挺, 久居漢土, 壯年願回報效, 合發營充兵食糧, 以備朝鮮通事.”(四庫禁燬書叢刊本, 集部冊104, 492쪽)

고했다.⁷²⁾ 이듬해 2월에 명 조정은 제주 표류인을 북경으로 이송시켜 조선 사절에게 인도하거나 요동 차관을 보내어 본국으로 귀국시키도록 명했다.⁷³⁾ 이 대정을 데리고 온 복견 許遊擊은 許國威를 지칭한다. 자는 元眞이고, 복견 晉江 사람이다. 1598년(선조 31) 3월에 福營游擊將軍으로 보병 1,160명을 이끌고 와서 이듬해 4월에 본국으로 귀국했다. 문사에 뛰어나고 의리심이 있었다. 명 장수 楊鎬와 친했는데, 楊鎬가 탄핵을 받아 장관들을 이끌고 변호에 나섰다.⁷⁴⁾ 또한 조선 병사들에게 무기를 다루는 기법을 전수해주었다.⁷⁵⁾

2) 崔陟

『崔陟傳』은 1621년(광해군 13)에 趙緯韓이 남원에 있을 때 최척의 기구한 운명을 듣고 기술했던 전기다. 최척과 玉英은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夢釋을 낳았다. 정유란 때 남원이 함락되자, 옥영은 일본군에게 잡혀 일본열도로 끌려갔다. 아내를 잃은 최척은 낙심하여 명장 余有文을 따라 절강으로 들어갔다. 여유문이 작고한 뒤에 최척은 항주 朱佐와 함께 상선을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갔다가 일본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온 옥영과 재회했다. 옥영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와 항주에서 살며 아들 夢仙을 낳았다. 몽선이 장성하여 임진왜란 때 출전한 명 陳偉慶의 딸 紅桃와 혼인했다. 이듬해 최척은 명군을 따라 출정했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었고, 여기에서 조선에서 출병했다가 포로가 된 아들 몽석을 만났다. 이들 부자는 함께 탈출하여 장인 진위경을 만났다. 옥영 역시 몽선, 홍도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 단란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저자 조위한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최척전』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나, 창

72) 王在晉, 『越鐫』 권21 「雜記·朝鮮漁人」 및 『海防纂要』 권10 「朝鮮漁人」(續修四庫全書本, 책740, 101쪽)

73) 『神宗實錄』 만력 40년(1612) 2월 16일(신사)조 참조.

74) 申欽,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來姓名記」(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30, 241쪽)

75) 『國朝寶鑑』 권73 「正祖朝」 14년 4월조 참조.

작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시의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탁법을 사용하고 문장 흥미를 더하기 위한 과장법을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장 속에 최척을 데리고 간 명장 여유문은 임진왜란에 참여한 명장 명단이나 실록에 보이지 않아 명군 내에서 지위가 높지 않거나 가탁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조위한이 겪었던 전쟁 체험과 사행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최소한 중원에 살고 있던 조선 유민의 실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명군을 따라 중원에 들어갈 계획을 가졌다. 전쟁이 터지자 산중으로 피난 갔다가 춥고 굶주려 어린 딸을 잃었고, 정유란 때 모친을 잃어버려 난리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다. 격심한 고통 끝에 먼 곳으로 떠날 생각을 했고, 또한 절강 수군을 만난 것을 계기로 장차 그를 따라 東吳로 들어가려고 했다. 다만 형의 간곡한 만류로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1610년(광해군 2)에 사은사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다.⁷⁶⁾ 앞에서 보았듯이 조위한도 여타 조선 사절처럼 사행 도중에 중원에 살고 있는 본국 유민을 목도했거나 사정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_ 四川 지역

1) 權鶴

1598년(선조 31)에 정사 李恒福을 필두로 한 진주사절이 북경으로 나갔다가 이듬해 본국으로 귀국했다. 1599년(선조 32) 4월에 귀로 중 요양 회원관에 머

76) 趙緯韓, 『玄谷集』 권13 「祭亡子倚文」, “余於己丑之歲, 始生女子, 而遭壬辰之亂, 奔竄山中, 凍餒而死, 瘞於路側. 丁酉, 又喪其母, 獨身飄泊于龍山. 既無父母, 又無妻子, 不樂於人世, 將有出塵遠遊之志. 適遇天朝水兵之來泊于江上, 得與浙人相善, 約與之偕入東吳, 浪迹於蘇·杭之間, 而爲仲氏泣挽, 不得遂願. 一 庚戌, 汝母又有身矣. 而八月余以禮部郎中, 將赴天朝.”(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1790, 81~83쪽)

물고 있을 때 權鶴이 찾아왔다. 자신은 尙州 사람이며, 西厓(柳成龍) 첩 오라비의 자식이다. 恭儉池 옆에서 자랐고, 난리를 만나 유랑하다가 劉家軍이 되었다. 劉爺를 따라 달자, 해적, 왜자 등 많은 전투에 참여했다. 지난해에 유야를 따라 서울에 들어와 서애를 뵈고 군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가, 일이 누설되어 유야가 나의 행장 속에 두었던 은 2백 냥을 수색하여 공탁에 맡겨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얼마 전 선례를 통해 고국 사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⁷⁷⁾ 여기의 劉家軍은 유정 군대를 지칭한다. 권학이 유정군에 편입되어 처음 중원으로 건너간 시점은 1594년(선조 27)이고, 한반도에 파견된 시점은 1598년(선조 31)이다.

2) 趙貴祥, 趙麼子

1619년(광해군 11)에 사은 겸 천추사 李弘胄가 북경을 다녀오면서 『使行日記』를 남겼다. 6월 요양에 도착한 사행 일행은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군사정세로 인하여 懷遠館에서 한동안 머물며 출발 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달 29일에 泗川將官 2명이 이홍주를 찾아왔다. 趙貴祥은 咸安 출신이고, 趙麼子는 일본 사람이다. 이들은 일찍이 漢陰(李德馨) 표하에 있다가 훗날 劉兵을 따라 중원으로 들어와 사천에서 살았다. 조귀상은 사천에서 왕에 오른 자의 집안과 혼인했다. 유병 수하의 사천군 2만 4천 명이 지난 3월에 요동에 왔다가 전투에 패하는 바람에 지금 요양성에 주둔하며 방어에 나섰다.⁷⁸⁾ 7월 1일에 泗川把總

77)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日乘」 기해년(1599) 4월 19일조, “偶步墻後, 有劉提督標下人來自城內, 就與下人做話, 願謁於吾, 許令來見. 其人來卽敘禮, 仍言係是尙州人, 姓權小名鶴, 乃是厓相妾媵子, 生長於恭儉池傍, 遭亂流離, 爲劉家軍. 先年, 隨劉爺入洛, 潛謁於厓相, 將欲仍還本國. 事洩爲劉所覺, 劉盡搜其行李, 得銀二百兩, 置在公橐, 使不得逃, 故今亦先來到此, 聞使臣不日到館, 數來候問, 今幸得見.”(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79쪽)

78) 李弘胄, 『梨川相公使行日記』 기해년(1619) 6월 29일조, “夕有泗川將官兩人來見, 一則我國咸安人趙貴祥, 一則乃日本人趙麼子, 曾在漢陰票下, 俱隨劉兵轉入中原者也. 居在泗川. 咸安人則與泗川封王者結爲婚媾云. 泗川軍二萬四千乃劉手下兵也. 三月初到遼, 而劉兵已敗亂, 故固駐遼城把截云.”(연행록전집본, 책10,

조귀상, 趙麻子, 남원 출신 조선인과 함께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후하게 대접해주었다.⁷⁹⁾

여기의 劉兵은 유정을 지칭한다. 1618년(광해군 10, 만력 46)에 유정은 사천군을 이끌고 요동에 와서 양호 휘하에 들어가 대후금 공격작전에 참여했다. 이듬해 3월에 사르후[薩爾滸] 전투에서 대패당하고, 유정을 비롯한 많은 사천군이 전사했다. 이때 살아남은 사천군의 일부가 요양으로 퇴각하여 방어 작전에 나섰다. 조귀상이 올랐던 把總은 명 군제상 千總 아래에서 병사 약 440명을 거느린 장수다. 일본 출신 趙麼子が 漢陰 李德馨의 표하관으로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귀화인으로 추측된다.

IV. 명나라로 건너간 조선 유민 분석

임진왜란 때 많은 조선 유민들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중국 대륙에 건너간 과정을 살펴보면 자구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건너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임진왜란은 한마디로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선조가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일본군의 침공을 피해 한양을 떠나 의주까지 몽진했고, 한때 압록강을 건너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결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했다. 조선 민초들도 난리를 피해 임금이 있는 서북 지역으로 몰려 들어갔다. 관료와 난민들로 넘쳐난 서북 지역은 먹고사는 환경이 극히 열악했다. 연이어 흉년이 들어 곡물 생산이 좋지 않았고, 곡물 운송 체계도 전란으로 거의 마비되었다. 조정 대신들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기가 힘들었는데, 하물며 난민들이 받는

39쪽)

79) 李弘胄, 『梨川相公使行日記』 기해년(1619) 7월 1일조, “泗川把總咸安人趙貴祥與趙麻子及南原人之入唐者, 持酒饌來饋, 頗致款厚.”(연행록전집본, 책10, 41~42쪽) 앞에서는 趙麼子라고 적고, 뒤에서는 趙麻子라고 적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최악의 아사를 면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압록강을 넘어 요동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조정은 자국의 난민들을 구휼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물력과 인력이 크게 달리는 상황인지라 이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었다. 난민들이 자연히 형편이 좋은 명군 진영으로 몰려들었다. 명군 장수들도 구휼 차원, 활동 편의, 사병 충당, 군사력 증강 등으로 많은 조선인들을 받아들여 진중에 두었다. 명군이 귀국할 때 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일들이 잦았다. 투탁자 또한 한반도에 남아 있어도 별다른 생활 수단이 없던 터라 명군을 따라가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갔을 것이다.

조선 유민 가운데 간혹 강압 또는 꼬임에 빠져 피동적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다. 남경에 거주한 유대춘은 명군의 꼬임에 빠져 중국 대륙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또 보자산 승려는 압록강 주변에 있을 때 명군에게 끌려갔다고 했다. 명 선박의 격군으로 활동한 보성 출신 우복은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명군이 하선을 불허하는 바람에 중국 대륙으로 끌려가 절강 해역에 도달해야 겨우 내릴 수가 있었다. 한반도 해역에 들어온 명 선박에는 필히 조선인이 타고 있었다. 다도해인 남해안에서 선박을 운행하려면 바닷길을 잘 아는 조선 뱃사람이 동선해야만 했고, 일본 수군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자 선박을 움직일 조선 격군이 필요했다. 명 수군이 귀국할 때 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명 장수들이 조선 투탁자들을 데리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일부 명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행 자체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요동 지역에 인구 숫자가 적었고, 수군 선박을 움직이는데 수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탁자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명장 유정은 자기 휘하에 暹羅兵, 緬國兵, 小天竺兵 등 외국 병사를 두고 있었는데, 장차 조선병과 일본병을 편성하기 위해 투탁자들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갔다. 유정이 재차 한반도 지원에 나설 때 자기 휘하에 조선군 3백여 명이 있었다. 훗날 요동 공략에 나설 때 함안 출신 趙貴祥, 일본 출

신 趙磨子가 군관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조선 조정은 자국인의 증원 유출에 대해 매우 우려하였다. 명군 수뇌부에 동행 금지를 요청했고, 또한 전담 관원을 두어 투탁자 수색을 강화하여 일부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명군 장수와 투탁자의 입장이 달라 커다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종도의 경우를 들어본다. 1599년(선조 32)에 조선 조정이 오종도 진영에 투탁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국인의 쇄환을 요청하니, 오종도가 태수와 함께 조사하여 이들을 환송시켰다고 했다.⁸⁰⁾ 그러나 오종도는 투탁자를 되돌려 보낼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듬해 오종도 진영에는 증원으로 들어가고자 한 투탁자 1백여 명이 타고 있었다.⁸¹⁾ 훗날 熊廷弼이 오종도를 탄핵할 때 그의 진영에 조선인 가정을 두고 물자 교역에 나서게 했다는 죄목이 들어가 있다.⁸²⁾ 이것으로 보아 오종도는 조선 조정의 요청에 따라 일부 투탁자를 쇄환시켰으나 가정으로 삼기 위해 일부를 증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와 반대로 일부 명장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투탁자를 대하기도 했다. 1593년(선조 26) 9월에 이어송을 따라온 參將 方時輝가 국경 의주에서 10살 된 아이를 데리고 조선 관원 鄭琢을 찾아갔다. 지난 평양 전투에서 갈 곳이 없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 군중에 두고 양육했으나, 이제 자신이 귀국하게 되어 더 이상 아이를 맡을 수가 없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보호해줄 자를 찾아달라고 했다.⁸³⁾ 방시휘는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마도 자신이 수양한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한반도에 남겨두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명군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다. 명장 이등운은 14살 옥춘, 만세덕은 10살 이천부를

80) 『선조실록』 32년(1599) 10월 17일조

81) 『선조실록』 33년(1600) 7월 18일조

82) 熊廷弼, 『熊廷弼集』 권1 「重海防疏」, “同吳宗道所收麗人爲家丁者, 變麗服, 乘遼船, 潛往鐵山, 別東, 大張各島, 換買貂參等物.”(學苑出版社本, 24쪽)

83) 鄭琢, 『藥圃集』 권6 「龍灣聞見錄」, “密雲營領兵都司都指揮方時輝, 九月二十日辛未, 來寓龍灣館. 一以所領年纔十歲小兒出見, 曰: 此兒平壤之戰得之, 無所於歸, 哀其填壑, 許留行營, 給以衣食, 以至於此. 今臨越江, 請付陪臣, 用紅牋一帖, 記其顛末以示. 厥明使其家丁, 領兒以來, 并寄白牋書一紙, 送致謝于臣. 臣又呈小帖稱謝. 即付其兒于本府, 使之付願育者留養. 其翌朝, 遊擊越江云.”(韓國文集叢刊本, 책39, 529~530쪽)

비롯하여 아이 정언방, 박계장을 데리고 각각 중국으로 들어갔다.

임진왜란 시기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여기에 관해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지만, 최소한 1만 명은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항복은 1593년(선조 26)~1594년(선조 28)에 명장 유정이 양남에 주둔할 때 투탁한 조선인이 1만여 명이고, 유정이 귀국할 적에 그대로 따라 도강을 했으며 이로부터 요양과 광녕 일대에 사는 자국 남녀와 牛馬의 숫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⁸⁴⁾ 조선 사신 정엄은 요동 거리에서 걸식하는 조선 유민이 많고, 또 산해관 안팎에 황해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했다. 행산 이천부도 각 진과 각 집마다 조선 유민이 없는 곳이 없으며, 특히 광녕에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광녕 장만생 등은 광녕 유민 가운데 군인이 된 숫자만 1백여 명이라고 했다. 또한 남경 유대춘은 남경 지역에 사는 조선 유민이 근 3백 명이 있다고 했고 사천 권학은 유정 사천군에 편입되어 한반도로 들어온 조선병이 3백 명 넘는다고 했다.⁸⁵⁾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 유민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遼陽, 千山, 鎮江, 廣寧, 高平, 杏山, 山海關, 通州, 南京, 揚州, 登州, 杭州, 四川 등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조선 유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존 자료의 결핍으로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 광녕성의 서편에는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고, 동편에는 그 숫자는 적지만 倭奴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

상기 지역을 지도에 찍어보면 산해관 이북 요동 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 그 배경을 적어보면 요동 지역이 한반도와 가까운 거리, 조·명 교통 노선이었던 지리적 요소 외에 조선인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역사 근거, 북방 민족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명 군사의 요충지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가미되었다. 요동

84)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記聞」, “壬辰以後, 我民遭亂避地, 流入中國者頗多. 至癸巳甲午, 連歲大飢. 時劉總兵縱久住兩南, 兩南流民, 皆就傭於軍中, 名曰幫子, 得延餘命, 殆將萬餘. 及劉軍撤回, 仍隨渡江, 自是遼廣一帶, 我國男婦牛馬, 殆將半焉. 識者深爲慨然.”(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34~135쪽)

85)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日乘」 기해년(1599) 4월 19일조, “然鮮人隨劉爺渡江者, 不下三百人, 經年留本國, 百計逃逸, 失亡甚多云.”(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80쪽)

지역에는 영원백 이성량 부자의 경우처럼 명초부터 계속 이주해온 많은 조선 출신 집안이 있었다. 조선 출신 집안은 고국의 유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초창기 명 육군의 구성원을 보면 한반도와 거리가 가까운 요동 주둔 군사들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가운데 조선 출신 제독 이어송과 그 부하가 이끄는 군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명군이 철수한 이후에 많은 육군들이 요동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주둔하고 있었다. 요동 군부는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불같이 일어난 후금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명 육군을 따라간 조선 유민이 자연히 요동 지역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강소·절강 지역에 거주한 조선 유민은 중국 중남부 명군, 특히 수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대정은 복건 병사를 이끈 福營游擊將軍 許國威를 따라 들어갔다. 문응은 장강 수군을 이끈 南直水兵遊擊 梁天胤을 따라 들어갔다. 우복은 湖南으로 들어가는 명군 선박의 격군이 되었고, 훗날 중국에서 처음으로 내린 지역이 절강이다. 훗날 강소 지역에 거주한 일부 유민은 산둥반도 북단에 소재한 항구인 등주로 옮겨 수부나 군인 활동을 했다. 양주 문등은 등주에서 사행선박을 운행하는 수부가 되었고, 남경 고한로는 등주에서 군인으로 활동하였다.

한반도와 먼 거리에 소재한 사천의 경우에는 劉綎의 활동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정과 그의 부친 龔顯(훗날 성씨를 劉씨로 바꿈)이 사천을 근거로 장군으로 성장했다. 임진왜란 때 유정이 사천·귀주 병사를 이끌고 왔고, 귀국할 때 적지 않은 조선 투탁인들을 데리고 중원으로 들어갔다. 유정이 데리고 간 조선 유민 가운데 일부는 요동에 남고, 일부는 사천으로 들어갔다. 조귀상, 조마자는 유정과 함께 사천으로 들어가 활동하며 훗날 장수가 되었다.

중국 대륙에 들어온 조선 유민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통상적으로 타국에 건너간 외국 유민들이 초창기에 가장 많이 나타내는 형태가 결식과 가정 노릇이다. 조선 유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일부 유민은 유랑 결식이라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요동에 도달한 정엽은 많은 조선 유민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음식 파위를 빌어먹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유민

은 중국인 집안의 품앗이, 특히 명군 장수의 가정으로 살아갔다. 삼류하 한은 옥은 중국인 집안에서 품앗이하며 살아갔고, 요양 옥춘은 요동도사 李登雲, 행산 이천부는 비어 麻承宗의 가정으로 각각 살아갔다. 이들 가정 가운데에는 대다수가 명 장수의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드물지만 오종도 가정처럼 한반도와 물자 교역에 나서기도 했다.

조선 유민들은 연고가 없는 중국 대륙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진 고통과 푸대접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변신과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유민은 기존의 직업을 던지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였다. 명장 허국위의 통사를 한 이대정은 항주로 들어온 후에 모자를 만드는 장인으로 변신했다. 항주가 한반도와 먼 거리에 위치해 조선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 이대정은 부득불 자신의 본업인 통역 업무를 접어두고 다른 일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산해관 바깥의 한 유민은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또 일부 유민은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보다 몇 배의 노력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직업을 택했다. 그중에서도 신분상승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빠른 첩정은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다. 군인 활동은 비록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최소한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전쟁에서 온 몸을 던져 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우면 이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되고, 특히 군관으로 승진하여 부하들을 이끌어간다면 그동안 받았던 온갖 멸시와 차별대우를 한꺼번에 씻어낼 수가 있다.

멀리는 고구려 유민 高仙芝, 가까이는 영원백 이성량 부자가 매우 좋은 사례다. 고선지는 망국 고구려 유민의 아들로 태어나 신분적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군인이 되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당 제국의 최고 장군 대열에 올랐다. 조선족 출신 이성량 부자는 오랫동안 전쟁에서 살며 커다란 공을 세워 遼東總兵에 올라 요녕 군부에 막강한 실력자로 등장했다. 조선 유민 가운데 군인이 된 자로는 김계남, 이창립, 장만생, 황석련, 김언용, 최용희, 고한로, 권학, 조귀상 등이 있다.

명 장수들은 조선 유민을 군인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출신이나 임진왜란 원병에 나섰던 장수가 꽤나 있었다. 명초부터 요동으로 이주해온 조선인들이 많았고, 그중에 군인이 된 자들이 상당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명 홍무 연간에 이주해온 조선족 출신 이성량 부자다. 이성량은 아들 이여송이 조선 출병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조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혔다.⁸⁶⁾ 요동에 주둔한 명 장수들도 이성량 부자의 부하로 있거나 임진왜란에 참전한 병사들이 많아 조선인 군사를 두는 것에 별다른 거리감이 없었다.

둘째, 변방 지역에는 많은 군사가 필요했다. 요동 지역은 예로부터 북방 민족과 잦은 전쟁을 치렀고, 특히 후금이 강성해진 이후에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었다. 후금이 七大恨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요동으로 진격해오고, 특히 사르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자, 명나라는 후금을 몰아내고 요동을 지키고자 병력 증강을 통한 군사력 강화가 절실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요동에 정착한 많은 조선 유민들이 군인으로 편입되었다.

해상 변방인 등주 지역에도 많은 군사가 배치되었다. 명 군부는 후금이 발해만을 건너 해상으로 침공해오는 것을 방지하고, 요동 연해안에 주둔한 자국의 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등주를 해상 전초 기초로 삼았다. 요동 육로가 막힌 이후 등주는 조선·명 양국의 해상 교통을 이어주는 항구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선박을 움직이고 한반도로 오가는 뱃길을 잘 아는 조선인 수부가 필요했다. 다만 등주 군부에 배속된 조선인의 숫자는 요동 군부에 비해 많지 않았다.

셋째, 조선 유민 가운데 군인으로 삼기에 적합한 이들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 명군에 투탁한 조선인 가운데 전쟁에 참전하여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거나 포수, 살수, 군사 무기를 잘 다루는 이들도 꽤나 있었다. 임진왜란 기간에 조선 조정은 명군 투탁인들을 송환시켜 조선군으로 편입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펼쳤고, 특히 무기를 다루는 자들에게 많은 우대 조치를 취하였다. 요양에 사는 조선 명족 출신 교사는 요동 사람들에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법을 가르

86) 『선조수정실록』 26년(1593) 9월 1일조

쳤다.

명 장수들은 조선병의 우수성을 널리 인지하고 있었다. 매번 군사 시험에서 조선인들이 항상 일등을 했고, 명 총병들도 외국병 가운데 조선인이 쓸 만한 인재가 많고, 북방 민족들이 미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⁸⁷⁾ 명장 유정이 참여한 지난 順天 전투에서 적의 수급을 가장 많이 얻은 자가 명군으로 귀화한 조선병이었고, 조선병이 사천병보다 형세를 잘 판단하여 대처할 줄 알았다. 유정은 자기 휘하에 소속된 조선병을 중시하였다.⁸⁸⁾

중국 대륙에 건너온 조선 유민들은 모진 전란 속에서 온갖 고생을 겪어왔는지라 위험을 감수하거나 신분 변신을 해야겠다는 각오가 남달랐다. 그래서 인지 군인이 된 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광녕에만 군인이 된 자가 1백여 명이나 되었다.⁸⁹⁾ 조선인 군인 가운데 훗날 군관으로 승진한 자가 적지 않았다. 현존 기록에 따르면, 조선 유민 가운데 崔用晦가 가장 출세한 인물로 보인다. 최용회는 병사 3천 명을 이끄는 감주참장에 올랐다. 참장은 변방에 설치된 고위직 장수로서 유격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 임진왜란 때 참전한 명 유격이 이끄는 병사의 숫자가 적게는 1천여 명, 많게는 수천 명이다. 趙貴祥은 사천 왕족의 딸과 혼인을 했으며 병사 수백 명을 이끄는 泗川把總에 올랐다. 장만생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 50명을 거느리는 旗長이 되었다. 요양 명족 출신 무관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교사가 되었다.

중국 대륙에 사는 조선 유민은 고국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유민 대다수가 고국에 대해 진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 장만생, 황석령, 김언

87) 金中淸, 『朝天錄』 甲寅年(1614) 6월 28일조, “(이천부)且曰: 我國人學弓砲習馬, 居廣寧爲兵者最多, 或把總·千總爲將官者不少. 諸總兵大爺, 常曰外國唯朝鮮多可用之才, 非撻奴等所及, 每試才, 朝鮮人常第一.”(韓國文集叢刊本, 속책14, 255쪽)

88) 李恒福, 『白沙先生集』 권23 「朝天日乘」 기해년(1599) 4월 19일조, “順天之役, 泗川官軍, 見海鬼先登者, 及見倭子, 莫不失色. 計功之時, 得首級最多, 皆是朝鮮人化爲漢軍者. 泗川兵勇敢, 雖不下於鮮人, 臨戰癡直, 不若鮮人之知形勢, 故首級必下於鮮人. 自是劉爺尤重鮮人.”(韓國歷代文集叢書本, 책234, 180쪽)

89) 鄭士信, 『梅窓先生朝天錄』 1610년 9월 21일조, “渠輩言朝鮮人之來此爲單兵者, 殆百餘人云, 良可嘆也.”(燕行錄全集本, 책9, 279쪽)

용, 정언방, 박계장 등이 조선 사절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속마음을 토로했다. 감주참장에 오른 최용회는 자호를 東丘라고 짓고, 향후 고국에 난리가 발생하면 앞장서서 나서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시하며 고국에 대한 정을 잊지 않았다. 군인 출신 조귀상, 고한로 등은 주동적으로 조선 사절을 찾아와 음식을 대접했다. 참선을 닦고 있는 보자산 승려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의사 표현에서는 개인 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국 과정의 차이이다. 중국 대륙에 피동적으로 들어온 조선 유민은 자의적으로 들어온 조선 유민보다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정이 절박했다. 명군의 강압에 따라 중국 대륙으로 끌려간 우복은 절강에서 하선한 이후 고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일념으로 육로를 통해 산해관 바깥까지 올라왔다. 또 명군의 꼬임에 빠져 남경에 들어온 유대춘은 본국 표류인에게 언문 서찰을 부탁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강하게 내비쳤다.

둘째, 직업의 유무와 만족도다. 걸식을 하거나 힘든 품앗이를 하는 자라면 이국에서 고생할 바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인 집안의 품앗이를 한 한은옥, 산해관 바깥에서 이덕형을 만난 조선 유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군인 등 직업을 가진 자는 본국으로 돌아가갈 의지가 많이 약한 편이었다. 이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이들의 속마음에는 본국에 돌아가도 이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심리가 깔려 있었다. 가정 이전부, 군인 장만생, 황석련, 김언용 등은 이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산해관 바깥에서 장사를 한 조선인은 재물을 모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어 돌아갈 마음을 접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혈족 생존의 유무다.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부모가 살아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정이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가 모두 없으면 고향 방문을 주저하게 된다. 조선 유민 가운데 전란 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수다. 이들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도 아무도 반겨줄 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는 했

다. 요양 옥춘, 고평 전춘이 고향에 부모가 없는 점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 중의 하나다. 다만 부모가 없더라도 형제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돌아가고 싶은 의지 정도가 다소 달랐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의지를 표방한 우복에게는 부모가 없지만 형제는 남아 있었다.

넷째, 처자식의 유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주 처자식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을 한다. 비록 이국에 있더라도 가정이 꾸러진 경우라면, 가정이 있는 국가를 버리고 고국으로 되돌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광녕 정언방, 박계장은 중국에 들어와 혼인하여 처자식을 두었다. 이들은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지만, 처자식으로 인하여 고국으로 되돌아갈 마음을 접었다. 옥춘과 전춘을 만나본 이형옥도 이들이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했다.

중국 대륙에서 조선 유민을 만난 조선 사절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조선 유민을 만나면 그쪽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여기에서 들은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만약 유민이 귀국할 의사를 표시하면 되도록 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다. 당시 조선 사절이 유민들을 동행시키려면 해당 부처에 동의를 구해야만 했다. 사행 노선 중 책문, 요양, 광녕, 산해관, 북경 등 거점 지역에는 조선 사행 업무를 처리하는 명 관원들이 있었다. 사신 조익은 산해관에서 귀국 의사를 표방한 의주 여인을 만나고, 즉시 역관을 시켜 산해관주사로부터 의주 여인을 동행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떠나는 날 산해관주사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동행시키지 못했다는 울분을 토로했다. 사신 이형옥은 통주에서 만난 유민 강련이 고향으로 돌아갈 의사가 분명하다며 북경 옥하관까지 데리고 가서 예부에게 동행 동의를 구하였다.

명 예부는 조선 사절이 유민들을 대동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신 이형옥이 강련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자, 예부는 동의를 해주면서 혹시 도중에 도망칠 수도 있다는 염려의 말도 함께 전해주었다. 결국 강련은 안산에서 상통사 尹慶龍의 집을 훔쳐 도망쳤다. 예부는 지난 사례를 통해 동행시킨 일부 조선 유민이 도망친다는 폐단을 파악하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 유민을 가정으로 데리고 있는 주인택은 가정들이 본

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남경 유대춘이 제주 표류인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나, 주인덕에서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산해관 바깥에서 이덕형을 만난 조선 유민은 주인덕에서 귀환 동의를 해주지 않자 마을의 다른 조선 유민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다.

V. 맺음말

동아시아 삼국이 한반도에서 격돌한 임진왜란은 조선 민초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장기간 전란으로 혈육이 도륙당하고 고향을 떠나 도처로 유랑 결식하며 비참하게 살아갔다. 유민들 가운데 생존의 길을 찾아 스스로 국경을 넘어가거나, 한반도 주둔 명군에 투탁하여 살아가다가 훗날 동행 형식으로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경우가 많았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이 탄생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시기에 중국 대륙으로 건너간 조선 유민의 숫자는 비록 고당전쟁, 병자호란, 일제강점 시기보다는 적지만, 한민족의 중국 이주사에서 또 하나의 작은 분수령이 되었다. 이 시기의 조선 유민 형태는 침략군에 따른 피로인의 형태와 달리 당시 전쟁의 우방국 사이에 이루어졌던 점에서 사뭇 흥미롭다.

한반도에 들어온 명군 진영은 구휼 차원, 활동 편의, 사병 충당, 군사력 증강 등 여러 차원에서 많은 조선인들을 받아들였다. 조선인들이 명군 진영에 투탁한 이유는 대다수가 최악의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일부는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는 의도로 명군의 방자가 되기도 했다. 명군이 철수할 때 대열에 들어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다. 대다수 사람이 한반도에서 별다른 생활 수단이 없던 터라 자발적으로 명군을 따라 국경을 넘어갔고, 일부 사람들이지만 강압 내지 꼬임에 빠져 명군에게 피동적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다. 조선

조정은 자국민 관리와 병력 보강 차원에서 유민들을 명군 진영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했고, 나중에 명군을 따라 중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명군 수뇌부에 요청하고 도강 지역에 전담 관원을 두고 수색했지만, 투탁자의 개인 사정과 명군의 미온적인 협조로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 건너간 조선 유민의 숫자는 최소한 1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 진영에 투탁한 유민이 1만여 명이고, 이들이 그대로 국경을 넘어갔다고 했다. 나중에 유정 휘하의 조선군으로 편성된 숫자가 3백 명이나 되었다. 요양과 광녕 지역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선 유민들이 살고 있었고,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남경 지역에도 근 3백 명이 살고 있었다. 조선 유민들이 살았던 지역은 遼陽, 千山, 鎮江, 廣寧, 高平, 杏山, 山海關, 通州, 南京, 揚州, 登州, 杭州, 四川 등이다. 이들 지역 중에서 요양과 광녕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고, 광녕성 안에는 조선 유민 외에 전쟁 포로로 추정되는 倭兵들도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조선 유민들이 살고 있는 양상을 보면 주로 유랑 걸식하거나 명 집안의 가정 노릇, 변방 지역의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간혹 자신의 장기를 살려 장사, 모자장, 이발업 등 개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신분상승을 위한 첩경으로 군인 직업을 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변방 지역에 많은 군인을 보충해야 하는 명 군부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들어갔다. 명 변방 장수들은 조선인들이 용맹성과 전투력이 뛰어나다며 군관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위가 높은 유민으로 병사 3천 명을 이끄는 甘州參將 崔用晦, 병사 수백 명을 이끄는 泗川把總 趙貴祥이 있다. 유민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 표현에서는 중국 대륙으로 들어온 입국 과정의 자발과 피동의 차이, 고국의 혈족 유무, 중국에서의 직업 유무와 만족도, 혼인과 처자식 유무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景仁文化社 編, 『韓國歷代文集叢書』, 景仁文化社 (年度不等)

동아시아學術院 大東文化研究院 編, 2008, 『燕行錄選集補遺』, 동아시아學術院 大東文化研究院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年度不等)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編, 1962, 『燕行錄選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林基中 編, 1991, 『燕行錄全集』, 東國大學校出版部

林基中 · 夫馬進 編, 2001,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 東國大學校韓國文學研究所, 서울

韓明基 著,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王在晉 撰, 2000, 『越鐫』(『四庫禁燬書叢刊』, 集部冊104), 北京: 北京出版社

熊廷弼 撰, 李紅權 點校, 2011, 『熊廷弼集』, 北京: 學苑出版社

[ABSTRACT]Displaced Koreans in Chin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Park Hyunkyu

This paper analyzes displaced Koreans who flowed into Chin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壬辰倭亂) from 1592 to 1598. These immigrants form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Koreans' immigration to China.

Korean refugees appeared in large number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due to war and famine. Some among them crossed the border for safety or entrusted themselves to the camp of Ming China's troops in Joseon and later entered China when the Chinese army withdrew from Joseon. The Ming army received many Koreans into their camps and took them when returning to China for such reasons as relief, convenience of action, supply of soldiers, and reinforcement of military forces. And some Koreans entered China due to the pressure and enticement of Ming troops. The Joseon government endeavored to gain permission for Koreans to leave Ming camps and to prevent them from crossing the border. But its efforts were fruitless because of the personal conditions of Koreans in Ming camps and the lukewarm cooperation of the Ming army.

It seems that more than 10,000 wandering Koreans entered Chin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They resided in Liaoyang (遼陽), Qianshan (千山), Zhenjiang (鎮江), Guangning (廣寧), Gaoping (高平),

Xingshan (杏山), Shanhaiguan (山海關), Tongzhou (通州), Nanjing (南京), Yangzhou (揚州), Dengzhou (登州), Hangzhou (杭州), and Sichuan (四川). Many of them lived in Liaoyang and Guangning. Slaves from Japan who were taken as prisoners of war lived in Guangning. They earned a living by begging, or by serving in a Chinese home or as a soldier at the border. Sometimes an individual used his specialty to serve in an individual business. Among these instances, being a soldier was used as a short cut to success. While all wandering Koreans experienced homesickness, they showed many differences due to their individual conditions.

Keywords

Japanese invasion of Joseon (壬辰倭亂), Ming China army (明軍),
Emigration of Koreans into China (朝鮮流民의 중국 이주)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김두헌 ■ 군산중앙고등학교 교사

I. 머리말

조선후기 通信使行¹⁾ 및 問慰行 참여 역관(이하에서는 이들을 ‘참여 역관’이라

※ 투고일: 2013년 2월 21일, 심사일: 2013년 5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 1) 조선후기 통신사 및 한일 관계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다음 연구들이 주목된다. 윤유숙, 2005,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李元植, 1991, 『朝鮮通信使』, 민음사; 이철성, 2005,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장순순, 2005, 「朝鮮時代 通信使 研究의 現況과 課題－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조광, 2005,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쟁점사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趙誠乙, 2005, 「韓國과 日本의 華夷觀의 變化와 相互認識－朝鮮後期와 德川幕府期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韓泰文, 2005, 「通信使 往來를 통한 文化交流」,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현명철, 2005, 「통신사 단절과 서계 문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홍성덕, 1992,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홍성덕, 1995,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涉」, 『韓日關

고 줄여서 표현하겠다)들은 당대 엘리트 역관들이었으며, 조일 외교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자못 컸기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존재 양상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통신사행 수행 역관들의 편제, 실제 참가 인원과 명단, 역과 입격 사실, 被擄人의 쇄환 교섭을 위한 노력, 일본어 습득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²⁾ 이어서 통신사행 수행 역관이었던 康遇聖, 洪舜明, 洪喜男 등 개인 인물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³⁾ 또한 문위행의 개념, 기원, 임용 실태, 수행 임무 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⁴⁾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 이들 참여 역관들의 역할과 활동 양상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⁵⁾

그러나 참여 역관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가계와 혼인 양상을

係史研究』제3집, 한일관계사연구회; 홍성덕, 1999,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韓日關係史研究』 제11집, 한일관계사학회

2) 李元植, 1999, 앞의 책, 279~314쪽

3) 이상규, 2003, 「역관 洪舜明의 경력과 저작 『倭語類解』」,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집문당; 이상규, 2006, 「17세기 전반 倭學역관 康遇聖의 활동」, 『韓日關係史研究』 24; 이상규, 2007, 「17세기 초중반 倭學역관 洪喜男의 활동」, 『韓日關係史研究』 26

4) 홍성덕, 1990, 「朝鮮後期「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59; 홍성덕, 2000, 「朝鮮後期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研究」, 『國史館論叢』 93집; 홍성덕, 2005,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5) 조선후기에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들은 대부분 倭學을 전공으로 하는 역관들이었다. 이들 倭學 역관에 대한 기존의 주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양수, 1983, 「朝鮮後期 譯官에 대한 一研究」, 『東方學志』 3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양수, 1999, 「朝鮮開港前後 中人의 政治外交－譯官 卞元圭 등의 동북아 및 美國과의 활동을 중심으로」, 『實學思想研究』 12輯－朴尙煥博士停年紀念號, 毋岳實學會; 김양수, 1999, 「조선후기 역관집안의 연구－玄德潤·玄采 등 川寧玄氏 家系을 중심으로」, 『人文科學論集』 19,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김양수, 2003, 「조선후기의 敎誨譯官－〈敎誨廳先生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 朝鮮時代史學會; 김양수, 2007, 「조선후기 譯官의 중개무역과 倭館維持費」, 『歷史와 實學』 32輯(下)－大湖 李隆助교수 停年紀念號, 歷史實學會; 김양수, 2008, 「조선후기 倭語譯官－〈譯科榜目〉의 분석을 중심으로」, 『歷史와 實學』 37, 역사실학회; 이상규, 2004, 「조선후기 川寧玄氏家의 譯官活動」,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이상규, 2010, 「17세기 倭學譯官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이상규, 2012, 「17세기 전반의 朝日關係 전개와 倭學 譯官 제도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62

탐구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참여 역관 144명의 가계와 혼인에 대해서 다음 내용들을 탐구하겠다. 1장에서는 연구 대상을 검토하겠다. 먼저 참여 역관들의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겠고, 이어서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중복 참여한 경우들을 재확인하겠다(기존의 연구가 약간 수정 보완된다). 또한 통신사행 역관과 문위행 역관의 위상에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으며, 본고에서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을 통합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 2장에서는 참여 역관 144명의 잡과와 주학 입격 양상에 대해서 탐구하겠다. 이들 중에 역과 입격자는 얼마나 되며, 왜학 역관으로 참여한 역관들의 역과 입격 시 전공은 모두 왜학이었는가, 아니면 한학, 청학, 몽학도 있었는가, 특히 한학 역관으로 참여한 역관들의 역과 입격 시 전공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조사하겠다. 이를 통하여 역과 입격 시 전공이 역과 입격 이후 역관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가를 점검하겠다. 또한 조사 결과, 연구 대상 역관들이 전공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해나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보겠다.

3장에서는 참여 역관들의 가계를 탐구하겠다. 먼저 이들 참여 역관들을 주요 기술직 중인(이하에서는 ‘기술직 중인’을 ‘중인’이라고 약칭하겠다) 가계에서 어느 정도 배출하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필자는 선행의 연구에서, 조선 시대 잡과와 주학 입격을 주요 중인 가계에서 17세기 후반부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⁶⁾ 이들 참여 역관들도 역시 주요 중인 가계에서 집중적으로 배출하였는가, 이들을 배출한 각 가계에서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어느 정도 배출하였는가 등을 파악하여, 이들 참여 역관의 가문 내에서의 세전성의 정도와 이들이 속한 각 가계의 중인 사회에서의 위상을 점검하여 보겠다. 또한 다수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의 참여 역관들이 서로 어느 정도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는가를 알아보겠다. 이는 이들 상호 간의 혈연적 긴밀도를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속한 각 가계에서의 이들 참

6) 김두현, 2001,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0쪽; 김두현, 2013,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189~196쪽

여 역관의 배출 양상과, 역과 입격자 배출 양상, 왜학 전공의 역과 입격자 배출 양상 등이 서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해보겠다.

4장에서는 참여 역관들의 혼인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저, 이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혼인관계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가 곧, 이들의 妻父와 外祖 중에 이들 참여 역관들이 있었는가를 알아보겠다. 만일 그러한 혼인관계가 적지 않게 있었다면, 바로 그 혼인관계가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역관으로 참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 참여 역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천녕 현씨 중인 가계를 사례로 하여, 이 가계 출신 참여 역관들의 妻父, 外祖, 그리고 妻外祖가 속한 각 가계에서 참여 역관을 배출하였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겠다. 만일 그러한 가계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면, 중인 사회의 최우수 왜학 역관 가계 사이에서 혼인을 매개로 한 인맥 관계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폭넓은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참여 역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척 관계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선후기 사회의 하나의 특징을 제시하여보겠다. 곧, 조선후기 사회에서 참여 역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 사회 진출 및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문과 능력, 그리고 혼인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여보겠다. 본고가 앞으로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활동 양상, 조일 외교의 전개 과정, 나아가 조선후기 중인 신분과 신분제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연구 대상 검토 및 설정 이유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선조 40년(1607)부터 순조 11년(1811)까지 12차례에 걸쳐 에도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이때마다 역관들이 통신사를 수행하

였다. 『通文館志』의 통신사 수행 역관들의 편제는, 당상 역관 2명(후에 3명으로 증가됨), 上通事 3명(漢學 1명 포함, 후에 정원에서 제외), 次上通事 2명, 押物通事 3명(漢學 1명 포함, 후에 1명 추가) 등으로 되어 있다.⁷⁾ 그러나 항상 이러한 편제대로 역관이 파견된 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역관의 직책에 따라 인원이 약간씩 증감되기도 하였다. 대마도에 파견된 문위행은 역관이 우두머리로 임명된 사행이라는 점에서 통신사행과 달리 실무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문위행은 정기적 외교 사행이 아니라 특정한 외교 의례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파견된 외교 사행이었다는 점에서는 통신사행과 공통점이 있었다. 문위행의 파견은 대마도의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대략 4~5년에 한번 정도 도향한 문위행은 20~30년에 한번 정도 도향한 통신사행에 비해, 조선 정부와 에도 정부 사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외교 교섭이었다.⁸⁾

현전하는 역과방목들에서 확인된 왜학 전공 역과 입격자는 총 347명이다. 왜학 역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제포, 부산, 통영, 제주, 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 충청 수영 등지에 1명씩 파견되었고, 동래부 왜관에는 훈도와 별차를 두어 대일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왜학 역관의 임무는 단순히 통역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일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한 1차 보고자로서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행 파견을 위한 협의의 실무진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왜학 역관들은 대일 외교의 최일선에서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⁹⁾ 왜학 역관 중에서도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참여한 역관들은 가장 막중한 외교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행 도중 수시로 발생

7) 通信使行 …… 堂上官二員 并以該學官差送 而康熙壬戌(숙종 8, 1682) 倭人請加一員 仍以三員爲例 ○倭人謂之上上官 上通事三員內漢學一員 ○在前并以該學教誨充差察任 康熙壬戌(숙종 8, 1682) 老峯閔相國 以爲漢學既以上通事見差 而不行其任 不可仍以漢學一員 該學二員定式 …… 次上通事二員 該學教誨 …… 押物官三員 內漢學押物廳官一員 該學二員 則教誨及聰敏中出身者 擇選 而康熙壬戌(숙종 8, 1682) 倭人請加一員 仍以該學三員 漢學一員 爲例 …… (『通文館志』, 권6 交隣, 通信使行).

8) 홍성덕, 2000, 앞의 논문, 143, 159쪽

9) 홍성덕, 2005, 앞의 논문, 238~240쪽

하는 돌발적인 상황들을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원래 기도했던 외교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국가 위신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여 역관 수는 적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대일 외교 사행이 비정기적으로 파견되었고, 각 사행마다 허용 인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참여 역관들은 담당 임무가 막중하였기에, 敎誨나 聰敏을 역임한 자들 중에서 선발하였다. 특히 이들 중 당상 역관은 敎誨와 七事의 직을 거쳐야만 했다. 敎誨는 사역원 내에서 가장 뛰어난 역관을 말하며, 七事は 사역원 내의 敎誨, 正, 敎授, 前脚, 訓導, 上通事, 年少聰敏 등 일곱 관직을 말한다. 곧, 통신 사행과 문위행 당상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원 내의 모든 관직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하였다. 이처럼 규정이 까다로웠기에 이상의 선발 요건에 합당한 역관이 부족하자, 점차 규정을 완화시키기도 하였다.¹⁰⁾

참여 역관의 인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118명이 제시되었으나, 본고에서는 5명을 첨가하여 123명을 제시하겠다. 이들 5명은 金弘立(押物通事), 尹誠立(加定通事), 尹悌顯(上通事), 鄭時諶(次上通事), 韓相國(加定通事) 등인데, 『通信使謄錄』에 이들이 인조 21년(1643) 통신사행에 역관으로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¹⁾ 이들을 포함하여 각각의 통신사행 참여 역관들의 성명과 이들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표 1>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典據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 1>은 앞으로 통신사행 수행 역관 뿐만 아니라 그 임원들에 대한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문위행에 참여한 역관은 기존의 연구대로 118명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통신사행에, 그리고 문위행에 각각 두 차례 이상 참여한 역관들도 있으므로, 이들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인원은 각각 102명과 84명이 된다.¹²⁾ 그런데 앞의 102명과 84명 중에는 통신사행에도 그리고 문위행에도 모두 참여한 역관들이 있다. 이들은 42명이다.¹³⁾ 따라서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10) 홍성덕, 2005, 앞의 논문, 239쪽

11) 『通信使謄錄』 1, 42~44쪽

12) 李元植, 1999, 앞의 책, 280쪽; 홍성덕, 2000, 앞의 논문, 145쪽

13) 기존의 연구에서는 39명이라고 하였는데, 玄德潤과 玄義洵 두 명이 누락되었다

〈표 1〉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 역관 일람(123명)과 근거 자료¹⁴⁾

연도	성명(직책)	인원 (漢學)	典據
선조40 (1607)	金孝舜(堂上譯官), 朴大根(堂上譯官), 韓德男(上通事), 梁大福(押物通事), 崔義吉(押物通事), 朴應夢(漢學押物通事)	6(1)	『海槎錄』(慶暹) (『海行』Ⅱ, 339쪽)
광해9 (1617)	朴大根(堂上譯官), 鄭彦邦(漢學堂上譯官), 崔義吉(上通事), 康遇聖(上通事), 韓德男(上通事), 鄭純邦(押物通事), 李賢男(押物通事)	7(1)	『扶桑錄』(李景稷) (『海行』Ⅲ, 13쪽)
인조7 (1624)	朴大根(堂上譯官), 李彦瑞(堂上譯官), 洪喜男(堂上譯官), 朴彦璜(上通事), 康遇聖(上通事), 李亨男(上通事), 張善敏(押物通事), 鄭忠獻(押物通事), 宋禮修(漢學押物通事)	9(1)	『海槎錄』(姜弘重) (『海行』Ⅲ, 162쪽)
인조14 (1636)	洪喜男(堂上譯官), 姜渭賓(堂上譯官), 康遇聖(上通事), 李長生(上通事), 尹大銑(上通事), 韓相國(押物通事), 尹廷羽(押物通事), 皮得忱(漢學押物通事)	8(1)	『海槎錄』(金世濂) (『海行』Ⅳ, 184쪽)
인조21 (1643)	洪喜男(堂上譯官), 李長生(堂上譯官), 金謹行(上通事), 李亨男(堂上譯官), 金時聖(上通事), 鄭忠獻(押物通事), 金弘立(押物通事), 尹誠立(加定通事), 尹悌顯(上通事), 鄭時謹(次上通事), 韓相國(加定通事)	11	『通信使謄錄』1, 42~44쪽
효종6 (1655)	洪喜男(堂上譯官), 金謹行(堂上譯官), 鄭時謹(上通事), 金時聖(上通事), 卞爾標(次上通事), 洪汝雨(次上通事), 朴亨元(押物通事), 金汝澤(押物通事), 李尙漢(押物通事), 吳仁亮(漢學押物通事), 李承賢(漢學押物通事)	11(2)	『扶桑錄』(南龍翼) (『海行』Ⅴ, 325~328쪽) 『通信使謄錄』1, 305~310쪽

(홍성덕, 2000, 앞의 논문, 146쪽).

- 14) 〈표 1〉에서 『海行』은 『국역해행총재』를 가리킨다(『국역해행총재』, 고전번역총서, 1985 중판, 민족문화고전간행회). 『通信使謄錄』은 다음의 것이다(『通信使謄錄』, 6책, 1991 영인,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金顯門의 『東槎錄』은 다음 것이다(김현문 지음, 백옥경 옮김, 2007, 『東槎錄』, 혜안). 『戊辰(1748)二月十一日通信使一行座目』, 『朝鮮通信使一行座目』, 『文化八年信使一行座目其外雜記』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된 대마도 증가문서다.

연도	성명(직책)	인원 (漢學)	典據
숙종8 (1682)	朴再興(堂上譯官), 卞承業(堂上譯官), 洪禹載(堂上譯官), 鄭文秀(上通事), 安愼徽(上通事), 劉以寬(上通事), 金瑄(次上通事), 朴重烈(次上通事), 李碩麟(次上通事), 金圖南(押物通事), 吳允文(押物通事), 金指南(漢學押物通事)	12(1)	『海槎日錄』(金持南) (『海行』 VI, 248~252쪽) 『通信使謄錄』 1, 682~685쪽
숙종37 (1711)	崔尙嶠(堂上譯官), 李碩麟(堂上譯官), 李松年(堂上譯官), 金始南(堂上譯官), 洪舜明(上通事), 玄德潤(上通事), 鄭昌周(漢學上通事), 金是樸(次上通事), 崔漢鎮(次上通事), 金時璞(押物通事), 金顯門(押物通事), 朴泰信(押物通事), 趙得賢(漢學押物通事)	13(2)	『東槎錄』(金顯門) (247~253쪽) 『通信使謄錄』 2, 348~350쪽
숙종45 (1719)	朴再昌(堂上譯官), 韓後瑗(堂上譯官), 金圖南(堂上譯官), 韓重億(上通事), 李樟(上通事), 鄭昌周(漢學上通事), 韓纘興(次上通事), 金世鎰(次上通事), 朴春瑞(押物通事), 金震琳(押物通事), 吳萬昌(押物通事), 權興式(漢學押物通事)	12(2)	『通信使謄錄』 3, 410~413쪽
영조24 (1748)	朴尙淳(堂上譯官), 玄德淵(堂上譯官), 洪聖龜(堂上譯官), 李昌基(上通事), 鄭道行(上通事), 金弘喆(漢學上通事), 黃大中(次上通事), 玄泰衡(次上通事), 崔鶴齡(押物通事), 崔壽仁(押物通事), 黃堽成(押物通事), 崔嵩齊(漢學押物通事)	12(2)	『戊辰(1748)二月十一日 通信使一行座目』 『通信使謄錄』 4, 367~371쪽
영조40 (1764)	崔鶴齡(堂上譯官), 李命尹(堂上譯官), 玄泰翼(堂上譯官), 崔鳳齡(上通事), 崔弘景(上通事), 吳大齡(漢學上通事), 崔壽仁(次上通事), 李命和(次上通事), 玄泰心(押物通事), 玄啓根(押物通事), 劉道弘(押物通事), 李彥璵(漢學押物通事)	12(2)	『朝鮮通信使一行座目』 『海槎日記錄』(趙曦) (『海行』 VII, 568~572쪽) 『通信使謄錄』 5, 243~245쪽
순조11 (1811)	玄義洵(堂上譯官), 玄斌(堂上譯官), 崔昔(堂上譯官), 卞文圭(上通事), 崔仁民(上通事), 李儀龍(漢學上通事), 金祖慶(次上通事), 秦東益(次上通事), 趙行倫(押物通事), 洪得俊(押物通事)	10(1)	『文化八年信使一行座目 其外雜記』 『通信使謄錄』 5, 495~497쪽

〈표 2〉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성명과 직책(가나다순)¹⁵⁾

순번	성명	직책	순번	성명	직책
1	康遇聖	1617上通事, 1624上通事, 1636上通事	21	金弘立	1643押物通事
2	姜渭賓	1636堂下官, 1636堂上譯官	22	金弘喆	1748漢學上通事
3	權興式	1719漢學押物通事	23	金孝舜	1607堂上譯官
4	金繼運	1855堂上官	24	朴大根	1607堂上譯官, 1617堂上譯官, 1624堂上譯官
5	金琯	1682次上通事	25	朴道洵	1768堂下官, 1782堂上官
6	金謹行	1640堂下官, 1643上通事, 1651堂上官, 1655堂上譯官, 1660堂上官, 1663堂上官, 1664堂上官, 1666堂上官, 1672堂上官, 1678堂上官	26	朴命澈	1829堂下官
7	金圖南	1682押物通事, 1693堂下官, 1718堂上官, 1719堂上譯官	27	朴尙淳	1748堂上譯官, 1754堂上官
8	金東倫	1822堂下官	28	朴世亮	1703堂下官
9	金世鎰	1719次上通事	29	朴彦瑛	1624上通事
10	金始南	1711堂上譯官	30	朴元郎	1654堂下官, 1659堂下官
11	金是樑	1711次上通事, 1713堂下官	31	朴有年	1678堂上官, 1689堂上官, 1693堂上官
12	金時璞	1711押物通事	32	朴應夢	1607漢學押物通事
13	金時聖	1643上通事, 1655上通事	33	朴再昌	1713堂上官, 1719堂上譯官
14	金汝澤	1655押物通事	34	朴再興	1682堂上譯官, 1684堂上官
15	金鼎杓	1738堂下官	35	朴俊漢	1796堂上官
16	金祖慶	1811次上通事	36	朴重烈	1682次上通事
17	金指南	1682漢學押物通事	37	朴春瑞	1719押物通事, 1734堂下官, 1738堂上官
18	金振夏	1675堂下官	38	朴泰信	1711押物通事
19	金震爌	1719押物通事	39	朴亨元	1655押物通事
20	金顯門	1711押物通事, 1734堂上官	40	卞文圭	1809堂下官, 1811上通事
			41	卞世謙	1780堂下官
			42	卞承業	1681堂上官, 1682堂上譯官

15) 〈표 2〉에서 堂上譯官, 上通事, 次上通事, 押物通事, 漢學上通事, 漢學押物通事 등은 통신사행 참여 역관들의 직책이고, 堂上官과 堂下官은 間慰行 참여 역관들의 직책이다.

순번	성명	직책	순번	성명	직책
43	卞爾標	1664堂下官, 1681堂上官, 1655次上通事	70	李彦瑞	1624堂上譯官
44	卞廷郁	1696堂上官, 1710堂上官	71	李彦瑱	1764漢學押物通事
45	卞鍾聞	1858堂上官	72	李儀龍	1811漢學上通事
46	宋禮修	1624漢學押物通事	73	李宜敍	1838堂上官
47	宋裕養	1696堂下官	74	李宜炫	1841堂下官
48	愼榮來	1752堂上官	75	李樟	1719上通事, 1721堂下官, 1754堂下官
49	安愼徽	1678堂下官, 1682上通事, 1693堂上官	76	李長生	1636上通事, 1643堂上譯官
50	梁大福	1607押物通事	77	李俊漢	1681堂下官
51	吳大齡	1764漢學上通事	78	李震翼	1663堂下官
52	吳萬昌	1719押物通事	79	李昌基	1748上通事, 1768堂上官
53	吳允文	1682押物通事, 1704堂下官	80	李哲懋	1860堂上官
54	吳仁亮	1655漢學押物通事	81	李學述	1843堂上官
55	劉道弘	1764押物通事	82	李漢紀	1855堂下官
56	劉以寬	1682上通事	83	李賢男	1617押物通事
57	尹大銑	1636上通事	84	李亨男	1624上通事, 1643堂上譯官, 1646堂上官, 1654堂上官, 1656堂上官
58	尹誠立	1651堂下官, 1643加定通事	85	林瑞茂	1796堂下官
59	尹廷羽	1636押物通事	86	張麟維	1768堂上官
60	尹悌顯	1643上通事	87	張善敏	1624押物通事
61	李命尹	1764堂上譯官, 1766堂上官	88	鄭道行	1748上通事, 1752堂下官
62	李命和	1762堂下官, 1764次上通事, 1787堂上官	89	鄭晚益	1710堂下官
63	李本修	1858堂下官	90	鄭文秀	1682上通事, 1672堂下官, 1689堂下官
64	李尙漢	1655押物通事	91	鄭純邦	1617押物通事
65	李碩麟	1682次上通事, 1706堂上官, 1711堂上譯官, 1726堂上官	92	鄭時諶	1655上通事, 1643次上通事
66	李松年	1711堂上譯官, 1716堂上官	93	鄭彦邦	1617漢學堂上譯官
67	李櫛	1818堂下官	94	丁一星	1787堂下官
68	李承賢	1655漢學押物通事	95	鄭昌周	1711漢學上通事, 1719漢學上 通事
69	李信男	1656堂下官			

순번	성명	직책	순번	성명	직책
96	鄭忠獻	1624押物通事, 1643押物通事	121	韓時說	1675堂上官
97	鄭翰益	1716堂下官	122	韓廷脩	1782堂下官
98	趙得賢	1711漢學押物通事	123	韓重億	1708堂下官, 1719上通事
99	趙行倫	1811押物通事	124	韓續興	1719次上通事
100	秦東益	1811次上通事, 1818堂上官, 1841堂上官	125	韓天錫	1684堂下官, 1703堂上官
101	崔鳳齡	1764上通事, 1780堂上官	126	韓後瑗	1681堂下官, 1704堂上官, 1718堂上官, 1719堂上譯官
102	崔尙嶠	1708堂上官, 1711堂上譯官, 1721堂上官	127	玄啓根	1764押物通事, 1780堂上官
103	崔昔	1809堂上官, 1811堂上譯官, 1829堂上官	128	玄德淵	1748堂上譯官, 1762堂上官
104	崔錫祐	1843堂下官	129	玄德潤	1711上通事, 1718堂下官
105	崔壽仁	1748押物通事, 1764次上通事	130	玄義洵	1809堂上官, 1811堂上譯官
106	崔述曾	1838堂下官	131	玄義溫	1818堂上官
107	崔嵩齊	1748漢學押物通事	132	玄泰心	1764押物通事
108	崔穩	1706堂下官	133	玄泰翼	1747堂上官, 1764堂上譯官, 1766堂上官
109	崔裕立	1666堂下官	134	玄泰衡	1748次上通事, 1766堂下官
110	崔義吉	1607押物通事, 1617上通事, 1632堂下官	135	玄魯魯	1843堂上官
111	崔仁民	1811上通事	136	玄炆	1811堂上譯官, 1822堂上官
112	崔昌謙	1796堂上官	137	洪得俊	1811押物通事
113	崔鶴齡	1748押物通事, 1764堂上譯官	138	洪聖龜	1747堂下官, 1748堂上譯官
114	崔漢鎭	1711次上通事, 1726堂下官	139	洪舜明	1711上通事
115	崔弘景	1764上通事	140	洪汝雨	1655次上通事
116	皮得忱	1636漢學押物通事	141	洪禹載	1682堂上譯官
117	韓琦淳	1860堂下官	142	洪喜男	1624堂上譯官, 1636堂上譯官, 1636堂上官, 1640堂上官, 1643堂上譯官, 1652堂上官, 1655堂上譯官, 1659堂上官
118	韓德男	1607上通事, 1617上通事			
119	韓祥	1632堂上官			
120	韓相國	1643加定通事, 1636押物通事, 1646堂下官, 1652堂下官, 1660堂下官	143	黃大中	1748次上通事
			144	黃埜成	1748押物通事

〈표 3〉 조선 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개인별 참여 횟수(다수 참여자순)

횟수	인원	누계	성명(직책)
10	1(1)	1(1)	金謹行(1640堂下官, 1643上通事, 1651堂上官, 1655堂上譯官, 1660堂上官, 1663堂上官, 1664堂上官, 1666堂上官, 1672堂上官, 1678堂上官)
8	1(1)	2(2)	洪喜男(1624堂上譯官, 1636堂上譯官, 1636堂上官, 1640堂上官, 1643堂上譯官, 1652堂上官, 1655堂上譯官, 1659堂上官)
5	2(2)	4(4)	李亨男(1624上通事, 1643堂上譯官, 1646堂上官, 1654堂上官, 1656堂上官), 韓相國(1643加定通事, 1636押物通事, 1646堂下官, 1652堂下官, 1660堂下官),
4	3(3)	7(7)	金圖南(1682押物通事, 1693堂下官, 1718堂上官, 1719堂上譯官), 李碩麟(1682次上通事, 1706堂上官, 1711堂上譯官, 1726堂上官), 韓後媛(1681堂下官, 1704堂上官, 1718堂上官, 1719堂上譯官)
3	14(11)	21(18)	康遇聖(1617上通事, 1624上通事, 1636上通事), 朴大根(1607堂上譯官, 1617堂上譯官, 1624堂上譯官), 朴有年(1678堂上官, 1689堂上官, 1693堂上官), 朴春瑞(1719押物通事, 1734堂下官, 1738堂上官), 卞爾標(1664堂下官, 1681堂上官, 1655次上通事), 安愼徽(1678堂下官, 1682上通事, 1693堂上官), 李命和(1762堂下官, 1764次上通事, 1787堂上官), 李樟(1719上通事, 1721堂下官, 1754堂下官), 鄭文秀(1682上通事, 1672堂下官, 1689堂下官), 秦東益(1811次上通事, 1818堂上官, 1841堂上官), 崔尙嶠(1708堂上官, 1711堂上譯官, 1721堂上官), 崔昔(1809堂上官, 1811堂上譯官, 1829堂上官), 崔義吉(1607押物通事, 1617上通事, 1632堂下官), 玄泰翼(1747堂上官, 1764堂上譯官, 1766堂上官)
2	36(25)	57(43)	姜渭賓(1636堂下官, 1636堂上譯官), 金是樑(1711次上通事, 1713堂下官), 金時聖(1643上通事, 1655上通事), 金顯門(1711押物通事, 1734堂上官), 朴道洵(1768堂下官, 1782堂上官), 朴尙淳(1748堂上譯官, 1754堂上官), 朴元郎(1654堂下官, 1659堂下官), 朴再昌(1713堂上官, 1719堂上譯官), 朴再興(1682堂上譯官, 1684堂上官), 卞文圭(1809堂下官, 1811上通事), 卞承業(1681堂上官, 1682堂上譯官), 卞廷郁(1696堂上官, 1710堂上官), 吳允文(1682押物通事, 1704堂下官), 尹誠立(1643加定通事, 1651堂下官), 李命尹(1764堂上譯官, 1766堂上官), 李松年(1711堂上譯官, 1716堂上官), 李長生(1636上通事, 1643堂上譯官), 李昌基(1748上通事, 1768堂上官), 鄭道行(1748上通事, 1752堂下官), 鄭時諶(1643次上通事, 1655上通事), 鄭昌周(1711漢學上通事, 1719漢學上通事), 鄭忠獻(1624押物通事, 1643押物通事), 崔鳳齡(1764上通事, 1780堂上官), 崔壽仁(1748押物通事, 1764次上通

횟수	인원	누계	성명(직책)
			事), 崔鶴齡(1748押物通事, 1764堂上譯官), 崔漢鎭(1711次上通事, 1726堂下官), 韓德男(1607上通事, 1617上通事), 韓重億(1708堂下官, 1719上通事), 韓天錫(1684堂下官, 1703堂上官), 玄啓根(1764押物通事, 1780堂上官), 玄德淵(1748堂上譯官, 1762堂上官), 玄德潤(1711上通事, 1718堂下官), 玄義洵(1809堂上官, 1811堂上譯官), 玄泰衡(1748次上通事, 1766堂下官), 玄斌(1811堂上譯官, 1822堂上官), 洪聖龜(1747堂下官, 1748堂上譯官)
1	87	144	權興式(1719漢學押物通事), 金繼運(1855堂上官), 金瑄(1682次上通事), 金東倫(1822堂下官), 金世鎰(1719次上通事), 金始南(1711堂上譯官), 金時璞(1711押物通事), 金汝澤(1655押物通事), 金鼎杓(1738堂下官), 金祖慶(1811次上通事), 金指南(1682漢學押物通事), 金振夏(1675堂下官), 金震赫(1719押物通事), 金弘立(1643押物通事), 金弘喆(1748漢學上通事), 金孝舜(1607堂上譯官), 朴命澈(1829堂下官), 朴世亮(1703堂下官), 朴彥璜(1624上通事), 朴應夢(1607漢學押物通事), 朴俊漢(1796堂上官), 朴重烈(1682次上通事), 朴泰信(1711押物通事), 朴亨元(1655押物通事), 卞世謙(1780堂下官), 卞鍾聞(1858堂上官), 宋禮修(1624漢學押物通事), 宋裕養(1696堂下官), 慎榮來(1752堂上官), 梁大福(1607押物通事), 吳大齡(1764漢學上通事), 吳萬昌(1719押物通事), 吳仁亮(1655漢學押物通事), 劉道弘(1764押物通事), 劉以寬(1682上通事), 尹大銑(1636上通事), 尹廷羽(1636押物通事), 尹悌顯(1643上通事), 李本修(1858堂下官), 李尙漢(1655押物通事), 李櫛(1818堂下官), 李承賢(1655漢學押物通事), 李信男(1656堂下官), 李彥瑞(1624堂上譯官), 李彥瑱(1764漢學押物通事), 李儀龍(1811漢學上通事), 李宜敍(1838堂上官), 李宜炫(1841堂下官), 李俊漢(1681堂下官), 李震翼(1663堂下官), 李哲懋(1860堂上官), 李學述(1843堂上官), 李漢紀(1855堂下官), 李賢男(1617押物通事), 林瑞茂(1796堂下官), 張麟維(1768堂上官), 張善敏(1624押物通事), 鄭晚益(1710堂下官), 鄭純邦(1617押物通事), 鄭彥邦(1617漢學堂上譯官), 丁一星(1787堂下官), 鄭翰益(1716堂下官), 趙得賢(1711漢學押物通事), 趙行倫(1811押物通事), 崔錫祐(1843堂下官), 崔述曾(1838堂下官), 崔嵩齊(1748漢學押物通事), 崔億(1706堂下官), 崔裕立(1666堂下官), 崔仁民(1811上通事), 崔昌謙(1796堂上官), 崔弘景(1764上通事), 皮得忱(1636漢學押物通事), 韓琦淳(1860堂下官), 韓祥(1632堂上官), 韓時說(1675堂上官), 韓廷脩(1782堂下官), 韓續興(1719次上通事), 玄義溫(1818堂上官), 玄泰心(1764押物通事), 玄學魯(1843堂上官), 洪得俊(1811押物通事), 洪舜明(1711上通事), 洪汝雨(1655次上通事), 洪禹載(1682堂上譯官), 黃大中(1748次上通事), 黃堽成(1748押物通事)

참여 역관의 실제 인원은 144명이다. 이들 144명의 성명과 이들의 참여 시 직책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앞의 <표 2>다.

<표 2>와 같이,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여러 번 참여한 역관들도 있다. 그러나 단 한 차례 참여한 역관도 적지 않게 있다. 그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 뒤에 첨부한 <표 3>이다. <표 3>과 같이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역관으로 金謹行, 洪喜男, 李亨男, 韓相國 등 4명이 각각 10차례, 8차례, 5차례 참여하였고, 李碩麟, 韓後瑗, 金圖南 등 3명은 각각 4차례 참여하였다. 그리고 14명이 3차례, 36명이 2차례, 87명이 1차례 참여하였다. 소수 역관들이 여러 번 참여하였고, 절반 이상의 역관들이 단지 1차례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여러 번 참여한 역관들이 전체 역관에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본 결과가 <표 4>다. <표 4>와 같이 5회 이상 파견된 역관이 4명인데, 이들 4명이 전체 역관(144명)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2.8%인데 비하여, 파견된 횟수는 28회로 전체 역관이 파견된 241회의 11.6%에 이른다. 곧, 다섯 배 가까이에 해당한다. 4회 이상 파견된 역관의 인원과 참여 횟수의 비율은 각각 4.9% 대 16.6%, 3회 이상은 14.6% 대 34.2%, 2회 이상은 39.6% 대 63.9%이다. 2회 이상 파견된 역관의 참여 횟수가 전체 횟수의 63.9%라는 점에서 볼 때 유능한 역관이 통신사행과 문위행 역관으로 비교적 자주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한 번만 파견된 역관이 87명(전체 인원의 60.4%)이나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소수 역관들만으로 대일 외교의 역관 업무가 수행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일 외교 사행을 수행

<표 4> 소수 역관이 다수 파견된 현황

	10회	8회	5회	4회	3회	2회	1회
인원(누계)	1	1(2)	2(4)	3(7)	14(21)	36(57)	87(144)
비율	0.7%	1.4%	2.8%	4.9%	14.6%	39.6%	100%
횟수누계	10회	18회	28회	40회	82회	154회	241회
비율	4.2%	7.5%	11.6%	16.6%	34.2%	63.9%	100%

하는 역관의 임무를 보다 많은 역관들에게 맡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과 능력이 출중한 역관에게 맡기려는 조선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여러 번 파견된 역관들은 통신사행 역관과 문위행 역관에 모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모두 43명인데, <표 3>에 굵게 표시하였다. 4회 이상 파견된 7명은 두 외교 사행에 역관으로 참여하였고, 3회 이상 파견된 20명은 3명을 제외한 17명이, 2회 이상 파견된 57명은 13명을 제외한 43명이 각각 두 외교 사행에 역관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2회 이상 파견된 역관 중에 75.4% 곧, 4명이면 3명이 두 외교 사행에 역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능력 있는 역관들은 대부분 두 외교 사행에 역관으로 참여하였다는 것, 통신사행뿐만 아니라 문위행도 중요한 대일 외교 사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위의 통신사행 역관이나 문위행 역관은 각각의 위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3>과 같이, 통신사행 당상 역관으로 파견된 이후 문위행 당상관으로 파견된 인원이나, 역으로 문위행 당상관으로 파견된 이후 통신사행 당상 역관으로 파견된 인원이 각각 9명으로 같았다.¹⁶⁾ 특히 이들 중 金謹行과 洪喜男은 통신사행 당상 역관과 문위행 당상관에 번갈아가며 파견되었다. 통신사행과 문위행은 그 위상에서 正使, 副使, 製述官 등 三使의 파견 여부와, 외교 대상이 막부인가 대마도주인가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역관들에게 두 외교 사행의 중요성이나 역관의 위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문위행은 역관들이 우두머리였고 실무적 성격이 강한 외교 사행이었기에 능력을 훨씬 더 자유롭게 발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통신사행 당상 역관이나 문위행 당상관에 위계의 차이가 없었고, 역관들이 이들

16) <표 2>에서 통신사행 당상 역관으로 참여한 이후에 문위행 당상관으로 참여한 역관 9명은 洪喜男, 李亨男, 玄泰翼, 朴尙淳, 玄德淵, 朴再興, 玄斌, 李命尹, 李松年이다. 반면에 문위행 당상관으로 참여한 이후 통신사행 당상 역관으로 참여한 9명은 金謹行, 李碩麟, 韓後瑗, 金圖南, 崔尙嶠, 崔昔, 玄義洵, 朴再昌, 卜承業이다.

관직에 번갈아 임명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통신사행 참여 역관들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사회적 지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 이들 역관들을 연구 대상에 함께 포함시킨 것이다.

III. 잡과 입격

참여 역관 144명의 역과 입격 양상은 어떠하였을까. 이들 중에 역과 외에 다른 잡과나 주학에 입격한 자들도 있었을까. 『通文館志』에는 該學으로 곧, 왜학 전공자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다. 실제도 과연 그러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을, 『譯科榜目』, 『醫科榜目』, 『律科榜目』, 『雲科榜目』 등의 잡과 단과 방목¹⁷⁾과 『籌學入格案』¹⁸⁾에서, 그리고 일회의 잡과 입격자들이 수록되어 있는 잡과 단회방목에서 찾아보았다.¹⁹⁾ 또한 조선시대 고위 사자관들이 수록

17) 본고에서 자료로 사용한 잡과 단과방목은 다음과 같다. 『象院科榜』, 2책, 하버드 대학교 앤칭도서관; 『譯科榜目』,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민청문화사 영인, 1991; 『雲科科目案』,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雲科榜目』, 1책, 국립중앙도서관; 『律科榜目』, 1책,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律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醫科榜目』, 2책,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醫科先生案』,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

18) 『籌學入格案』, 2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19) 본고에서 자료로 사용한 잡과 단회방목은 다음과 같이 전부 16회분의 방목이다. 『沖齋先祖府君及第榜目』(중종 2년(1507) 식년시)』, 1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마이크로필름; 『癸酉文武榜目』(중종 8년(1513) 식년시)』, 1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마이크로필름; 『文武雜科榜目』(중종 20년(1525)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文庫; 『庚子式年文科榜目』(중종 35년(1540)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癸卯式年榜目』(중종 38년(1543) 식년시)』, 1책, 계명대학교도서관; 『嘉靖己酉式年試雜科榜目』(명종 4년(1549) 식년시)』, 1책, Edward, E. Wagner; 『甲子式年文科榜目』(명종 19년(1564) 식년시)』, 1책, 충남대학교도서관; 『隆慶庚午文武榜目』(선조 3년(1570)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文庫; 『丙辰增廣司馬榜目』(선조 9년(1576) 식년시)』, 1책, 고려대학

된 『寫字廳先生案』²⁰⁾과, 19세기 윤학 생도방과 역학 생도방 완전 피천자들이 수록되어 있는 『本廳完薦案』²¹⁾과 『完薦記』²²⁾에서 찾아보았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144명 중에 121명이 역과 입격자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의과, 율과, 운과 입격자는 없었으며, 『寫字廳先生案』에 寫字官으로 수록되어 있는 자도 없었고, 주학 입격자만 두 명 있었다. 이 두 명은 康遇聖과 李彦瑞인데, 康遇聖은 광해 1년(1609) 증광시 역과와 선조 39년(1606) 주학에 입격하였고, 李彦瑞는 선조 27년(1594) 주학과 선조 36년(1603) 식년시 역과에 입격하였다.²³⁾ 역과 입격자로 확인된 121명 중에 『譯科榜目』이나 『象院科榜』에 역과 입격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회방목에서 그 사실을 찾아낸 자가 두 명 있다. 이들은 선조 33년(1600) 식년시 역과 입격자 金孝舜과 선조 9년(1576) 식년시 역과 입격자 梁大福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역과에 입격한 동명이인도 있다. 이들은 경종 1년(1721) 증광시 역과 입격자 崔壽仁(본관 茂州)과, 영조 11년(1735) 식년시 역과 입격자 崔壽仁(본관 淸州)이다.²⁴⁾ 본관이 茂州인 崔壽仁은 전공이 한학이었고 관직이 直長에 이르렀으며, 본관이 淸

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萬曆二十八年庚子式年退行於辛丑夏榜目(선조 33년(1600) 식년시)』, 1책,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 『崇禎癸酉增廣試雜科榜目(인조 11년(1633) 증광시)』, 1책, Edward. E. Wagner; 『文武科榜目(인조 11년(1633) 식년시)』, 1책,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 『康熙乙卯式年試雜科榜目(숙종 1년(1675) 식년시)』, 1책, Edward. E. Wagner; 『甲子文武科榜目(숙종 10년(1684)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도서관

20) 『畫寫兩家譜錄』, 1책, 국립중앙도서관. 『寫字廳先生案』은 『畫寫兩家譜錄』의 후반부에 실려 있다.

21) 『本廳完薦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本廳完薦案』은 다음 자료집 내에 영인되어 출판되었다(황원구·이종영 엮음, 1991, 『朝鮮後期曆算家譜·索引』, 한국문화사, 1017~1076쪽).

22) 『完薦記』, 4권 4책, 국립중앙도서관

23)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조선시대 잡과와 주학 입격자 7,739명 중 잡과 내의 두 과목에 입격한 자는 의과와 율과에 입격한 자 한 명이고, 잡과의 어느 한 과목에 입격하고 주학에 입격한 자가 216명임을 밝혔다(김두현, 2013, 앞의 책, 124~125쪽).

24) 조선시대 잡과와 주학 입격자 중에서 잡과방목과 『籌學入格案』에 본관이 茂州나 朱溪로 수록되어 있는 입격자들의 가계도를 작성하여 보면, 이들이 같은 가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동일 가계 구성원들이었다.

〈표 5〉 조선 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역과 입적 현황

순번	성명	역과명(전공)	비고	순번	성명	역과명(전공)	비고
1	康遇聖	1609광 1增譯(倭學)	籌學入格	29	朴彦璜	1603선36式譯(倭學)	·
2	姜渭賓	1619광11增譯(倭學)	·	30	朴元郎	1645인23式譯(倭學)	·
3	權興式	1687숙13式譯(漢學)	漢學押物	31	朴有年	1662현 3增譯(倭學)	·
4	金繼運	1831순31式譯(倭學)	·	32	朴應夢	·	漢學押物
5	金琯	1678숙 4增譯(倭學)	·	33	朴再昌	1675숙 1式譯(倭學)	·
6	金謹行	1627인 5式譯(倭學)	·	34	朴再興	1663현 4式譯(倭學)	·
7	金圖南	1678숙 4增譯(倭學)	·	35	朴俊漢	1762영38式譯(倭學)	·
8	金東倫	1807순 7式譯(倭學)	·	36	朴重烈	1681숙 7 式譯(倭學)	·
9	金世鎰	1693숙19式譯(倭學)	·	37	朴春瑞	1714숙40增譯(倭學)	·
10	金始南	1690숙16增譯(倭學)	·	38	朴泰信	1699숙25式譯(倭學)	·
11	金是樸	1687숙13式譯(倭學)	·	39	朴亨元	·	·
12	金時璞	1705숙31式譯(倭學)	·	40	卞文圭	1801순 1增譯(倭學)	·
13	金時聖	1642인20式譯(倭學)	·	41	卞世謙	1768영44式譯(倭學)	·
14	金汝澤	·	·	42	卞承業	1645인23式譯(倭學)	·
15	金鼎杓	·	·	43	卞爾標	1650효 1增譯(倭學)	·
16	金祖慶	1801순 1增譯(倭學)	·	44	卞廷郁	1678숙 4增譯(倭學)	·
17	金指南	1672현13式譯(漢學)	漢學押物	45	卞鍾聞	1827순27增譯(倭學)	卞鍾應
18	金振夏	1663현 4式譯(倭學)	·	46	宋禮修	·	漢學押物
19	金震赫	1713숙39增譯(倭學)	·	47	宋裕養	1675숙 1式譯(倭學)	·
20	金顯門	1702숙28式譯(倭學)	·	48	愼榮來	1717숙43式譯(倭學)	·
21	金弘立	1639인17式譯(倭學)	·	49	安愼徽	1662현 3增譯(倭學)	·
22	金弘喆	1740영16增譯(漢學)	漢學上通	50	梁大福	1576선 9式譯(미기)	單回榜目
23	金孝舜	1600선33式譯(미기)	單回榜目	51	吳大齡	1717숙43式譯(漢學)	漢學上通
24	朴大根	1591선24式譯(倭學)	·	52	吳萬昌	1689숙15增譯(倭學)	·
25	朴道洵	1741영17式譯(倭學)	·	53	吳允文	1672현13式譯(倭學)	·
26	朴命澈	1813순13增譯(倭學)	·	54	吳仁亮	·	漢學押物
27	朴尙淳	1721경 1增譯(倭學)	·	55	劉道弘	1750영26式譯(倭學)	·
28	朴世亮	1672현13式譯(倭學)	·	56	劉以寬	1651효 2式譯(漢學)	上通事

순번	성명	역과명(전공)	비고	순번	성명	역과명(전공)	비고
57	尹大銑	·	·	86	張麟維	·	·
58	尹誠立	·	·	87	張善敏	·	·
59	尹悌顯	1630인 8 式譯(倭學)	·	88	鄭道行	1714숙40增譯(倭學)	·
60	尹廷羽	·	·	89	鄭晚益	1693숙19式譯(倭學)	·
61	李命尹	1738영14式譯(倭學)	·	90	鄭文秀	1662현 3增譯(倭學)	·
62	李命和	1754영30增譯(倭學)	·	91	鄭純邦	(譯科院嘉善, 系子英民)	·
63	李本修	1849현15式譯(倭學)	·	92	鄭時諶	1633인11增譯(倭學)	·
64	李尙漢	1651효 2式譯(倭學)	·	93	鄭彥邦	(院嘉善同樞, 子英民)	漢學堂上
65	李碩麟	1678숙 4式譯(倭學)	·	94	丁一星	1756영32式譯(倭學)	·
66	李松年	1683숙 9增譯(倭學)	·	95	鄭昌周	1675숙 1式譯(漢學)	漢學上通
67	李櫛	1805순 5增譯(倭學)	·	96	鄭忠獻	(譯科教誨院正)	·
68	李承賢	1642인20式譯(漢學)	漢學押物	97	鄭翰益	1690숙16增譯(倭學)	·
69	李信男	1633인11增譯(倭學)	·	98	趙得賢	1684숙10式譯(漢學)	漢學押物
70	李彦瑞	1603선36式譯(倭學)	·	99	趙行倫	·	·
71	李彦瑱	1759영35式譯(漢學)	漢學押物	100	秦東益	1809순 9增譯(倭學)	·
72	李儀龍	1771영47式譯(漢學)	漢學上通	101	崔鳳齡	1754영30增譯(倭學)	·
73	李宜紘	1819순19式譯(倭學)	·	102	崔尙嶠	1687숙13式譯(倭學)	·
74	李宜炫	1834순34式譯(倭學)	·	103	崔昔	1804순 4式譯(倭學)	·
75	李樟	1713숙39增譯(倭學)	·	104	崔錫祐	(雲直, 子 恒淵)	·
76	李長生	1624인 2增譯(倭學)	·	105	崔壽仁	1735영11式譯(倭學)	·
77	李俊漢	1666현 7式譯(倭學)	·	106	崔述曾	1813순13式譯(倭學)	·
78	李震翼	1657효 8式譯(倭學)	·	107	崔嵩齊	1710숙36增譯(漢學)	漢學押物
79	李昌基	1722경 2增譯(倭學)	·	108	崔櫓	1675숙 1增譯(倭學)	·
80	李哲懋	1840현 6式譯(倭學)	·	109	崔裕立	1642인20式譯(倭學)	·
81	李學述	1813순13增譯(倭學)	·	110	崔義吉	·	·
82	李漢紀	1848현14增譯(倭學)	·	111	崔仁民	·	·
83	李賢男	·	·	112	崔昌謙	1773영49增譯(倭學)	·
84	李亨男	·	·	113	崔鶴齡	1732영 8式譯(倭學)	·
85	林瑞茂	1765영41式譯(倭學)	·	114	崔漢鎮	1708숙34式譯(倭學)	·

순번	성명	역과명(전공)	비고	순번	성명	역과명(전공)	비고
115	崔弘景	1740영16增譯(倭學)	·	130	玄義洵	1801순 1式譯(倭學)	·
116	皮得忱	1612광 4式譯(漢學)	漢學押物	131	玄義溫	1798정22式譯(倭學)	·
117	韓琦淳	1858철 9式譯(倭學)	·	132	玄泰心	1735영11增譯(倭學)	·
118	韓德男	·	·	133	玄泰翼	1722경 2增譯(倭學)	·
119	韓祥	·	·	134	玄泰衡	1741영17式譯(倭學)	·
120	韓相國	1624인 2式譯(倭學)	·	135	玄學魯	1825순25式譯(倭學)	·
121	韓時說	1654호 5式譯(倭學)	·	136	玄斌	1786정10式譯(倭學)	·
122	韓廷脩	1763영39增譯(倭學)	·	137	洪得俊	1805순 5增譯(倭學)	·
123	韓重億	1682숙 8增譯(倭學)	·	138	洪聖龜	1721경 1增譯(倭學)	·
124	韓續興	1708숙34式譯(倭學)	·	139	洪舜明	1705숙31式譯(倭學)	·
125	韓天錫	1675숙 1增譯(倭學)	·	140	洪汝雨	1650호 1增譯(倭學)	·
126	韓後瑗	1678숙 4增譯(倭學)	·	141	洪禹載	1666현 7式譯(倭學)	·
127	玄啓根	1747영23式譯(倭學)	·	142	洪喜男	1613광 5增譯(倭學)	·
128	玄德淵	1714숙40式譯(倭學)	·	143	黃大中	1735영11增譯(倭學)	·
129	玄德潤	1705숙31增譯(倭學)	·	144	黃垺成	·	·

州인 崔壽仁은 왜학이 전공이었고 관직이 敎誨僉正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영조 40년(1764) 次上通事로 통신사행에 참여한 崔壽仁은, 전공과 관직으로 보아 본관이 淸州인 崔壽仁이라고 판단한다.

『完薦記』를 통해서 역과 입격 사실을 추정한 역관도 있다. 그는 철종 9년(1858) 문위행 당상관으로 파견된 卞鍾聞이다. 卞鍾聞은 『譯科榜目』과 『象院科榜』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完薦記』에 철종 12년(1861) 역학 생도방 피전자 卞麒同의 祖父로 '院嘉善鍾聞'이, 父로 '院生徒大淵'이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姓源錄』의 밀양 변씨 가계 기록에 卞大淵의 父로 순조 27년(1827) 증광시 역과 입격자 卞鍾應이 수록되어 있으므로,²⁵⁾ 卞鍾應과 卞鍾聞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譯科榜目』이나 『象院科榜』에 역과 입격자로 연구

25) 李昌鉉等纂, 1985, 『姓源錄』, 旰晟社 影印, 686쪽

대상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들의 역과 입격 기록을 통해서 역과 입격 사실을 추정할 참여 역관도 있다. 이들은 鄭純邦과 鄭忠獻이다. 鄭純邦은 그의 系子 鄭英民(본관 河東)이 인조 11년(1633) 증광시 역과에 입격하였는데, 『象院科榜』에 鄭英民의 父로 ‘譯科院嘉善純邦’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다. 鄭忠獻은 그의 아들 鄭希僑(본관 峯山)가 인조 11년(1633) 증광시 역과에 입격하였는데, 『象院科榜』에 鄭希僑의 父로 ‘譯科[教誨]院正忠獻’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다. 아마도 鄭純邦과 鄭忠獻은 역과에 입격하였지만, 『譯科榜目』과 『象院科榜』에 그 사실이 누락된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들의 역과 입격 시기는 아들들이 인조 11년(1633)에 역과에 입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 무렵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전하는 잡과방목에 수록되어 있는 잡과 입격자가 조선시대 잡과 입격자 모두가 아니다. 일부만 현전하지 않고 있는데, 입격 시기가 이룰수록 그 수는 증가한다. 앞서 역과 입격자로 확인되지 않은 23명 중에 17명이 17세기 초엽이나 중엽에, 나머지 6명이 18세기와 19세기에 통신사행 역관이나 문위행 역관으로 참여하였다. 그만큼 시기가 이룰수록 역과 입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또한 역과 입격 당시 이름과 사행 참여 당시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곧, 도중에 改名하였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 역관 144명 중에서 역과 입격자로 확인된 121명의 역과 입격 당시 전공을 알아본 결과가 앞의 <표 5>다. <표 5>와 같이, 이들 중 『譯科榜目』에 왜학으로 109명이, 한학으로 12명이 수록되어 있었다. 한학 12명 중에 11명은 통신사행에 漢學押物通事, 漢學上通事, 漢學堂上譯官 등 한학 역관으로 참여하였다. 왜학 역관은 단지 1명을 제외하고 전공이 모두 왜학이었고, 한학 역관은 전공이 모두 한학이었다. 예외 1명은 숙종 8년(1682) 통신사행에 上通事로 참여한 劉以寬이다. 왜 이런 예외가 있었는가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전체 119명 중에 단지 한 명이었던다는 점에서 볼 때, 기록상의 착오였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상과 같이 잡과 입격 당시 전공이 왜학이었던 자들은 잡과 입격 이후 역

관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공을 바꾸지 않았다. 잡과 입격자 중에 드물지만 전공을 바꾼 자가 있기도 하였지만, 왜학은 예외가 없을 정도였다. 그 이유로 왜학이 언어학이었으므로 익히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또한 그만큼 정부에서 왜학 역관들을 우대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왜학 외의 한학, 청학, 몽학 등 다른 과목들을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마도 중인 중에는 아동기에 2개 이상의 과목을 학습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일단 잡과나 주학에 입격하고 나서는 자신의 전공을 계속 유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IV. 가계

조선시대 사람들은 항상 가문 안에서 존재하였고, 가문을 떠나서는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었다. 이들은 가문 내에서 같이 시제를 모시거나, 족보를 편찬하거나, 사우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각 개인의 출세에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가문의 사회적 지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면 사회적 출세에 제한이 있었다.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에게도 가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양상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계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 참여 역관을 성관별로 분류한 결과만으로 이들의 세전 양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성관과 가문은 달랐다. 성관이 같더라도 가문이 다른 자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중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14명의 천녕 현씨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모두 16세기에 생존한 玄壽謙(1513~1585)의 후손들로, 단일 가계를 이루었다. 玄壽謙은 천녕 현씨 중인 가계가 양

반 가계에서 갈라져나온 이후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214명의 천녕 현씨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이 속한 가계를 단일 가계로 규정할 수 있었다. 반면에 533명의 전주 이씨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의 가계도를 작성하여 보면, 이들은 다시 20여 가계로 나누어진다. 이 가계들은 서로 가계적 배정을 달리하였다. 여기서 가계적 배정이란 양반 가계에서 갈라진 인물과 시기, 그리고 그 인물의 거주지, 묘소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전주 이씨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을 모두 동일 가계 출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참여 역관 144명의 역관들의 가계를 찾기 위해 사용한 주된 자료는 중인 종합보인 『姓源錄』²⁶⁾이다. 이어서 『姓源錄』의 후속편인 『姓源錄續編』과²⁷⁾ 『醫譯籌八世譜』,²⁸⁾ 『籌學八世譜』,²⁹⁾ 『譯科八世譜』,³⁰⁾ 『醫科八世譜』,³¹⁾ 『譯等第譜』,³²⁾ 『醫等第譜』³³⁾ 등 중인 가계 팔세보류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고종 4년(1867)에 간행된 『川寧玄氏世譜』,³⁴⁾ 1990년에 간행된 『牛峯金氏世譜』,³⁵⁾ 순조 4년(1804)에 필사된 『安山李氏世譜』,³⁶⁾ 철종 9년(1858)에 간행된 『全州李氏族譜』,³⁷⁾ 고종 6년(1869)에 간행된 『漢陽劉氏世譜』³⁸⁾ 등도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에서 144명 중에 121명의 가계를, <표 6>과 같이 찾아냈다. 가계를 찾아낸 121명 중에 역과 입격 사실이 확인된 역관은 114명이고, 확인되지 않는 역관은 7명(朴應夢, 尹誠立, 鄭純邦, 鄭彦邦, 鄭忠獻, 崔錫祐, 韓德男)이다. 가계를 찾지 못한 역관 24명 중에 역과 입격 사실이 확인된 역관

26) 앞의 『姓源錄』, 1985

27) 『姓源錄續編』, 5책, 필사본, 개인 소장

28) 『醫譯籌八世譜』,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9) 『籌學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30) 『譯科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31) 『醫科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32) 『譯等第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33) 『醫等第譜』, 1책, 국립중앙도서관

34) 『川寧玄氏世譜』, 4권 4책, 1867, 개인 소장

35) 『牛峯金氏世譜』, 1책, 1990, 전북대학교도서관

36) 『安山李氏世譜』, 1책, 1804(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37) 『全州李氏族譜』, 8권 8책, 1858,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38) 『漢陽劉氏世譜』, 6권, 1869, 개인 소장

은 7명(權興式, 朴彥璜, 朴亨元, 朴重烈, 梁大福, 劉以寬, 尹悌顯)이고, 역과 입격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역관은 16명(金汝澤, 金鼎杓, 宋禮修, 吳仁亮, 尹大銑, 尹廷羽, 李賢男, 李亨男, 張鱗維, 張善敏, 丁一星, 趙行倫, 崔義吉, 崔仁民, 韓祥, 黃堽成)이다.

〈표 6〉 조선 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가계별 배출 인원(총120명)³⁹⁾

가계	인원 (누계)	누계 비율	성명	잡과·주학 입격 인원
川寧玄단	10	6.9	玄啓根, 玄德淵, 玄德潤, 玄義洵, 玄義溫, 玄泰心, 玄泰翼, 玄泰衡, 玄學魯, 玄弼	214
密陽卞단	6(16)	11.1	卞文圭, 卞世謙, 卞承業, 卞爾標, 卞廷郁, 卞鍾聞	175
務安朴단	6(22)	15.3	朴大根, 朴道洵, 朴元郎, 朴再昌, 朴再興, 朴春瑞	39
牛峯金단	5(27)	18.8	金圖南, 金始南, 金指南, 金顯門, 金弘喆	115
南陽洪02	5(32)	22.2	洪得俊, 洪舜明, 洪汝雨, 洪禹載, 洪喜男	60
全州李02	4(36)	25.0	李櫺, 李儀龍, 李宜敍, 李宜炫	152
稷山崔01	4(40)	27.8	崔錫祐, 崔弘景, 崔述曾, 崔昌謙	75
淸州韓01	4(44)	30.6	韓相國, 韓時說, 韓天錫, 韓後瑗	67
密陽朴01	3(47)	32.6	朴尙淳, 朴俊漢, 朴泰信	34
金山李단	3(50)	34.7	李命尹, 李命和, 李樟	77
全州李01	3(53)	36.8	李彥瑞, 李長生, 李震翼	175
溫陽鄭01	3(56)	38.9	鄭文秀, 鄭時諶, 鄭昌周	61
河東鄭01	3(59)	41.0	鄭道行, 鄭晚益, 鄭翰益	34
慶州崔01	3(62)	43.1	崔攄, 崔裕立, 崔漢鎮	280
茂州崔02	3(65)	45.1	崔鳳齡, 崔尙嶠, 崔鶴齡	17
新平韓02	3(68)	47.2	韓琦淳, 韓德男, 韓重億	39
春川金01	2(70)	48.6	金時璞, 金弘立	9
海州吳01	2(72)	50.0	吳大齡, 吳萬昌	28
廣州李02	2(74)	51.4	李松年, 李昌基	84

39) 〈표 6〉에서 누계 비율은 총 144명에 대한 비율이고, 단위는 %이다.

가계	인원 (누계)	누계 비율	성명	집과·주학 입격 인원
安山李01	2(76)	52.8	李學述, 李漢紀	59
連谷李단	2(78)	54.2	李信男, 李俊漢	6
河東鄭04	2(80)	55.6	鄭純邦, 鄭彦邦	4
淸州崔01	2(82)	56.9	崔壽仁, 崔嵩齊	54
淸州韓02	2(84)	58.3	韓廷脩, 韓纘興	42
晋州康01	1(85)	59.0	康遇聖	5
晋州姜04	1(86)	59.7	姜渭賓	1
開城金02	1(87)	60.4	金瑄	21
開城金04	1(88)	61.1	金東倫	8
慶州金03	1(89)	61.8	金是樑	31
金海金13	1(90)	62.5	金謹行	2
保寧金01	1(91)	63.2	金孝舜	21
三陟金04	1(92)	63.9	金震赫	2
善山金01	1(93)	64.6	金繼運	16
宣城金단	1(94)	65.3	金世鎰	8
安東金01	1(95)	66.0	金振夏	14
安山金01	1(96)	66.7	金時聖	2
漢陽金02	1(97)	67.4	金祖慶	4
藍浦朴01	1(98)	68.1	朴有年	4
寧海朴01	1(99)	68.8	朴命澈	49
密陽朴10	1(100)	69.4	朴世亮	5
密陽朴17	1(101)	70.1	朴應夢	2
竹山宋01	1(102)	70.8	宋裕養	3
居昌愼단	1(103)	71.5	愼榮來	11
順興安03	1(104)	72.2	安愼徽	13
海州吳03	1(105)	72.9	吳允文	17
淸州劉01	1(106)	73.6	劉道弘	27
坡平尹01	1(107)	74.3	尹誠立	23
江陽李단	1(108)	75.0	李彦瑱	9

가계	인원 (누계)	누계 비율	성명	잡과·주학 입격 인원
江陰李01	1(109)	75.7	李承賢	93
南陽李단	1(110)	76.4	李本修	42
全州李03	1(111)	77.1	李哲懋	61
旌善李05	1(112)	77.8	李尙漢	2
海州李01	1(113)	78.5	李碩麟	84
慶州林단	1(114)	79.2	林瑞茂	34
峯山鄭단	1(115)	79.9	鄭忠獻	11
錦山趙단	1(116)	80.6	趙得賢	13
豊基秦단	1(117)	81.3	秦東益	34
慶州崔02	1(118)	81.9	崔昔	61
洪川皮02	1(119)	82.6	皮得忱	4
南陽洪01	1(120)	83.3	洪聖龜	150
昌原黃01	1(121)	84.0	黃大中	9

〈표 6〉과 같이, 가계를 찾은 121명의 역관들이 소속된 각 가계는 모두 61가계다. 이 61가계에서는 〈표 7〉과 같이, 모두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따라서 이들 가계는 모두 중인 가계라고 판단한다. 61가계 중에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계는 10명 배출한 천녕 현씨 가계이고, 그다음이 6명 배출한 밀양 변씨 가계와 무안 박씨 가계, 5명 배출한 우봉 김씨 가계와 남양 홍씨 가계 순서다.⁴⁰⁾ 이들 5가계는 〈표 8〉과

40) 5가계 중 남양 홍씨 가계를 제외한 4가계는 해당 姓貫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이 모두 단일 가계를 이룬다. 남양 홍씨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은 모두 몇 가계로 나누어진다. 5명의 통사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洪德麟 가계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모두 60명이다. 이 가계는 남양 홍씨 중인 가계 중에서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였으며, 이들 입격자들은 모두 洪德麟의 후손들이다. 남양 홍씨 중인 가계 중에 150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한 洪岫金의 가계에서는 통사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은 단지 1명만 배출하였다.

〈표 7〉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이 속한 각 가계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 배출 현황

姓/ 本貫	참여 역관 인원	家系 祖	가계	잡과와 주학 입격자															
				소계	과목별					세기별									
					譯 科	雲 科	律 科	醫 科	籌 學	미상	15c	16c			17c		18c		19c
												전	중	후	전	후	전	후	전 후
川寧玄단	10	壽謙	단일	214	105	13	5	46	45	·	·	·	·	·	11	33	36	30	49 55
密陽卞단	6	玉東	단일	175	106	10	22	27	10	1	·	·	·	·	7	22	32	35	36 42
務安朴단	6	大根	단일	39	24	1	·	13	1	·	·	·	·	1	1	3	5	11	12 6
牛峯金단	5	壽延	단일	115	94	3	1	2	15	·	1	·	·	·	5	15	25	22	15 32
南陽洪02	5	德麟	02	60	54	·	·	5	1	·	·	·	·	·	1	7	4	13	21 14
全州李02	4	仲枝	02	152	52	20	3	30	47	·	·	·	·	·	9	11	36	42	34 20
稷山崔01	4	壽長	단일	75	21	35	7	12	·	·	·	·	·	·	·	·	7	8	33 27
淸州韓01	4	世良	01	67	23	6	16	14	8	·	·	·	·	·	1	5	11	13	11 26
密陽朴01	3	吾昂	01	34	16	8	·	10	·	·	·	·	·	·	·	3	6	7	7 11
金山李단	3	世卿	단일	77	63	·	·	3	11	·	·	1	2	3	5	9	10	12	15 20
全州李01	3	世榮	01	175	30	6	1	22	116	·	·	·	·	1	10	11	17	40	49 47
溫陽鄭01	3	益連	01	61	26	3	12	20	·	·	·	·	·	·	6	11	10	11	14 9
河東鄭01	3	允成	01	34	16	2	3	13	·	·	·	·	·	·	·	6	13	9	2 4
慶州崔01	3	貴山	01	280	38	6	11	27	198	·	·	·	1	4	21	44	51	67	60 32
茂州崔02	3	彦誠	02	17	8	·	·	2	7	·	·	·	·	1	5	5	3	3	· ·
新平韓02	3	忠男	02	39	11	·	2	16	10	·	·	·	·	·	2	6	9	5	10 7
春川金01	2	玄瑞	01	9	4	5	·	·	·	·	·	·	·	·	1	2	4	2	· ·
海州吳01	2	景業	01	28	19	2	·	7	·	·	·	·	·	·	3	8	7	6	1 3
廣州李02	2	仁達	01	84	4	1	4	18	57	·	·	·	1	1	3	3	14	18	27 17
安山李01	2	彭壽	01	59	21	15	·	21	2	·	·	·	·	·	·	5	8	11	16 19
連谷李단	2	孝福	단일	6	6	·	·	·	·	·	·	·	·	·	2	3	·	1	· ·
河東鄭04	2	大年	04	4	4	·	·	·	·	·	·	·	·	·	2	1	1	·	· ·
淸州崔01	2	繼孫	01	54	35	2	1	14	2	·	·	·	·	·	5	10	10	8	5 16
淸州韓02	2	聖建	02	42	26	11	3	1	1	·	·	·	·	·	·	3	4	9	14 12
晋州康01	1	承輔	01	5	1	·	·	·	4	·	·	·	·	2	3	·	·	·	· ·
晋州姜04	1	好仁	04	1	1	·	·	·	·	·	·	·	·	·	1	·	·	·	· ·
開城金02	1	宗傑	02	21	19	·	·	2	·	·	·	·	·	·	·	2	4	6	2 7
開城金04	1	弘祚	04	8	8	·	·	·	·	·	·	·	·	·	·	·	·	·	6 2
慶州金03	1	忠一	03	31	26	2	2	1	·	·	·	·	·	·	·	10	10	6	2 3

姓/ 本貫	참여 역관 인원	家系 祖	가계	잡과와 주학 입격자																
				소계	과목별					세기별										
					譯 科	雲 科	律 科	醫 科	籌 學	미상	15c	16c			17c		18c		19c	
												전	중	후	전	후	전	후	전	후
金海金13	1	有光	13	2	2	·	·	·	·	·	·	·	·	·	1	1	·	·	·	·
保寧金01	1	福堅	01	21	10	1	6	3	1	·	·	·	·	·	1	1	1	·	11	7
三陟金04	1	瑞	04	2	2	·	·	·	·	·	·	·	·	·	1	·	1	·	·	·
善山金01	1	尙琛	01	16	12	2	1	1	·	·	·	·	·	·	·	3	·	2	3	8
宣城金단	1	義男	단일	8	7	·	·	1	·	·	·	·	·	·	·	3	2	3	·	·
安東金01	1	孝男	01	14	6	·	4	4	·	·	·	·	·	·	·	4	4	5	1	·
安山金01	1	德輝	01	2	2	·	·	·	·	·	·	·	·	·	2	·	·	·	·	·
漢陽金02	1	世纘	02	4	4	·	·	·	·	·	·	·	·	·	·	·	2	1	1	·
藍浦朴01	1	俊男	01	4	2	2	·	·	·	·	·	·	·	·	·	2	1	1	·	·
寧海朴01	1	老得	01	49	39	5	1	2	2	·	·	·	·	·	2	5	4	4	11	23
密陽朴10	1	廷信	10	5	5	·	·	·	·	·	·	·	·	·	·	3	2	·	·	·
密陽朴17	1	應蔓	17	2	·	·	·	2	·	·	·	·	·	·	2	·	·	·	·	·
竹山宋01	1	承祐	01	3	3	·	·	·	·	·	·	·	·	·	·	2	1	·	·	·
居昌慎단	1	思遜	단일	11	11	·	·	·	·	·	·	·	·	·	·	6	2	2	1	·
順興安03	1	淳	03	13	9	1	·	3	·	·	·	·	·	·	·	2	3	2	5	1
海州吳03	1	癸生	03	17	7	·	2	6	2	1	·	·	·	·	2	6	2	2	2	2
淸州劉01	1	永弼	01	27	24	1	1	1	·	·	·	·	·	·	·	·	9	12	5	1
坡平尹01	1	未成	01	23	14	2	6	1	·	·	·	·	·	·	·	2	2	11	4	4
江陽李단	1	雲長	단일	9	9	·	·	·	·	·	·	·	·	·	·	·	4	2	2	1
江陰李01	1	仁恭	01	93	36	8	2	21	26	·	·	·	·	·	1	14	19	20	14	25
南陽李단	1	仁恕	단일	42	21	15	5	1	·	·	·	·	·	·	·	·	3	10	17	12
全州李03	1	貴賢	03	61	48	9	·	3	1	·	·	·	·	·	·	·	6	9	26	20
旌善李05	1	義方	05	2	1	·	1	·	·	·	·	·	·	·	·	2	·	·	·	·
海州李01	1	繼魯	01	84	47	8	8	11	10	·	·	·	·	·	4	11	12	10	22	25
慶州林단	1	福壽	단일	34	3	·	4	2	25	·	·	·	·	·	4	7	8	12	2	1
峯山鄭단	1	仁福	단일	11	7	·	·	4	·	·	·	·	·	·	3	1	·	4	2	1
錦山趙단	1	延	단일	13	7	1	·	4	1	·	·	·	·	·	·	3	1	·	2	7
豐基秦단	1	亨元	단일	34	17	·	·	16	1	·	·	·	·	·	2	1	2	4	15	10
慶州崔02	1	起敬	02	61	37	3	1	18	2	·	·	·	·	·	1	6	8	10	19	17
洪川皮02	1	鎭	02	4	4	·	·	·	·	·	·	·	·	·	3	1	·	·	·	·
南陽洪01	1	勳金	01	150	32	5	2	11	100	·	·	·	·	·	4	9	23	36	36	42
昌原黃01	1	峻	01	9	8	·	1	·	·	·	·	·	·	·	2	3	3	1	·	·

같이, 전체 61가계에 대해 가계 수는 8.2%를,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 수(32명)는 전체 역관의 22.2%를 차지한다. 대략 3배가량이다. 4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13.1% 대 30.6%, 3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26.2% 대 47.2%, 2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39.3% 대 58.3%이다. 소수의 유력한 가계에서 참여 역관들을 다수 배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 배출 가계 수와 인원의 비율

배출인원	10명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
가계(누계)	1(1)	2(3)	2(5)	3(8)	8(16)	8(24)	37(61)
누계 비율	(1.6%)	(4.9%)	(8.2%)	(13.1%)	(26.2%)	(39.3%)	(100%)
인원 누계	10	22	32	44	68	84	121
비율	6.9%	15.3%	22.2%	30.6%	47.2%	58.3%	84.0%

그러나 소수의 유력한 가계 출신 위주로 참여 역관들이 배출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1명 또는 2명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가 45가계나 되며, 이들 가계에서 배출한 참여 역관 수와 가계를 찾아내지 못한 참여 역관 수가 전체 역관의 52.8%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 역관 선별 과정에서 가문도 중시하였지만, 능력도 가문 못지않게 중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판단한다.

참여 역관들을 배출한 61가계의 역관 배출 양상, 잡과와 주학 입격자 배출 양상, 그리고 역과 입격자 배출 양상이 각각 서로서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이 속한 각 가계에서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을 어느 정도 배출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앞의 〈표 7〉이다.⁴¹⁾ 〈표 7〉과 같이,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을 2명 이상 배출한 24가

41) 〈표 7〉의 가계란의 본관 다음에 기록된 ‘단’, ‘01’, ‘02’ 등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단’은 해당 姓貫의 가계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가 모두 단일 가계를 이룬다는 뜻이고, ‘01’, ‘02’ 등은 해당 姓貫의 가계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가 여러 가계로 나누어지는 경우 입격자를 많이 배출한 순서대로 순번을 표기하였다.

계에서는,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3가계를 제외하고 모두 10명 이상 배출하였다. 참여 역관을 많이 배출한 가계일수록 비교적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그러나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1명의 역관을 배출한 37가계 중에 50명 이상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가 5가계(南陽 洪氏 01가계, 江陰 李氏 01가계, 海州 李氏 01가계, 全州 李氏 03가계, 慶州 崔氏 01가계)가 되기 때문이다. 역과 입격자 배출 양상도 이와 유사하였다. 곧, 참여 역관을 많이 배출한 가계일수록 비교적 역과 입격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참여 역관을 2명 이상 배출한 24가계에서는 단지 5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19가계에서 모두 10명 이상의 역과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1명을 배출한 37가계 중에 역과 입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가계가 15가계나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각 가계에서 이들 외교 사행에 참여한 역관들을 배출한 양상과, 잡과와 주학 입격자 및 역과 입격자를 배출한 양상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 다수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들에서 대체적으로 잡과와 주학 입격자나 역과 입격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그러나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이 역시 참여 역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출신 가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가문 못지않게 능력도 중시한 결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역과 입격자를 배출한 각 가계의 왜학 입격자 배출 양상은 어떠하였을까. 곧, 왜학 입격자만을 집중적으로 배출한 가계들이 존재하였을까. 기존의 연구에서는 왜학을 전공한 역과 입격자들의 성관별 배출 양상을 탐구한 연구만 있었고, 이들의 각 가계별 배출 양상을 탐구한 연구는 없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현전하는 조선시대 역과 입격자들의 과목별 입격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7,739명이다. 이들 중 역과 입격자는 2,972명인데, 과목별로는 한학 1,859명, 청학(여진학) 313명, 몽학 280명, 왜학 347명이고, 전공을 알 수 없는 자가 173명이다. 한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5~6배가량 많고, 청학·몽학·왜학은 모두 3백 명 전후이다. 과목별 역과 입격 정원은 한학이 18명이고, 청학·몽학·왜학은 9명이다. 현전하는 잡과와

〈표 9〉 역과 입격자를 다수(30명 이상) 배출한 각 가계의 역과 내 전공별 배출 현황(가나다순)

성/ 본관	家系 祖	가계	잡과 주학 입격자						역과 입격자				
			소계	역과	운과	율과	의과	주학	漢學	淸學	蒙學	倭學	미상
高 濟州	益吉	01	45	35	2	2	6	·	20	3	6	6	·
金 慶州	命宗	01	66	35	24	1	5	1	23	4	4	4	·
金 固城	繼賢	01	96	48	1	8	14	25	39	2	5	2	·
金 牛峯	壽延	단일	115	94	3	1	2	15	74	5	8	6	1
朴 寧海	老得	01	49	39	5	1	2	2	18	6	3	12	·
方 溫陽	壽仁	01	93	49	3	2	36	3	37	7	3	2	·
白 林川	仁豪	단일	35	30	·	·	4	1	10	12	6	2	·
卞 密陽	玉東	단일	175	106	10	22	27	10	77	5	7	17	·
邊 原州	希岭	01	63	31	5	3	21	3	30	·	·	1	·
申 高靈	수진	01	46	31	2	3	10	·	23	3	4	1	·
吳 樂安	廷顯	단일	42	37	3	·	2	·	25	8	3	1	·
劉 漢陽	命長	단일	92	46	16	20	10	·	40	4	1	1	·
李 江陰	仁恭	01	93	36	8	2	21	26	29	1	4	2	·
李 金山	世卿	단일	77	63	·	·	3	11	56	2	2	3	·
李 全州	世榮	01	175	30	6	1	22	116	23	·	3	4	·
李 全州	仲枝	02	152	52	20	3	30	47	44	1	1	6	·
李 全州	貴賢	03	61	48	9	·	3	1	35	5	1	7	·
李 海州	繼魯	01	84	47	8	8	11	10	21	7	14	4	1
趙 平壤	彦憬	01	48	32	2	3	11	·	24	2	5	1	·
趙 韓山	景雲	단일	36	30	5	·	1	·	17	7	2	4	·
崔 慶州	貴山	01	280	38	6	11	27	198	19	6	5	8	·
崔 慶州	起敬	02	61	37	3	1	18	2	18	11	4	4	·
崔 淸州	繼孫	01	54	35	2	1	14	2	23	4	5	3	·
玄 川寧	壽謙	단일	214	105	13	5	46	45	64	9	6	26	·
洪 南陽	岫金	01	151	33	5	2	11	100	25	4	2	2	·
洪 南陽	德麟	02	60	54	·	·	5	1	39	4	4	7	·

주학 입격자 중에서 한학 입격자의 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어서 역과 입격자들의 전공별 가계별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들 각 가계에서 전공별로 입격자들을 고르게 배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 가계에 따라서 한학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가계가 있고, 왜학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가계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전공의 입격자만 집중적으로 배출한 경우는 없다. <표 9>는 역과 입격자를 30명 이상 배출한 26가계의 역과의 전공별 입격자 배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원주 변씨 邊希齡의 가계는 역과 입격자를 모두 31명 배출하였는데, 이들 중 한학 전공 입격자는 30명이었고, 왜학 전공 입격자는 1명이다. 전주 이씨 李世榮의 가계에서는 역과 입격자를 30명 배출하였는데, 이들 중 청학 입격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이들 두 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24 가계에서는 역과의 4개 전공 과목의 입격자를 모두 배출하였다. 예컨대 27명이나 되는 왜학 입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천녕 현씨 玄壽謙의 가계에서는 한학, 청학, 몽학 입격자를 각각 64명, 9명, 6명 배출하였고, 17명의 왜학 입격자를 배출한 밀양 변씨 卞玉東의 가계에서는 한학, 청학, 몽학 입격자를 각각 77명, 5명, 7명 배출하였다.

왜학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를 중심으로 이들 가계에서 역과 내 다른 학문을 전공하여 잡과에 입격한 자들이 어느 정도 배출되었는가를 보다 폭넓게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 <표 10>이다. 곧, <표 10>에서는 왜학 입격자를 배출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이들 가계에서 왜학 외의 한학, 몽학, 청학 등을 전공한 역과 입격자가 어느 정도 배출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을 배출한 가계와, 역과 입격 당시 왜학 전공자들을 배출한 가계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도 알아보았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왜학 전공 잡과 입격자 347명 중에서 가계가 파악된 자는 335명(전체의 96.5%)이다. 이들 가계 중 왜학 전공 잡과 입격자를 3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36가계였는데, 이 36가계에서 한학, 청학, 몽학 전공 등의 입격자만을 배출하지 않은 가계는 각각 1가계, 4가계, 9가계였다. 그러나 과목별 배출 인원은 고르지 않았다. 또한 1명 이상의 왜학 전공

〈표 10〉 조선시대 왜학 전공 역과 입격자의 가계별 배출 현황

성/ 본관	家系 祖	가계	잡과와 주학 입격자						역과 입격자					참여 역관
			소계	역과	운과	율과	의과	주학	漢學	淸學	蒙學	倭學	미상	
玄 川寧	壽謙	단일	214	105	13	5	46	45	64	9	6	26(7,5)	·	10
卞 密陽	玉東	단일	175	106	10	22	27	10	77	5	7	17(12,4)	·	6
朴 寧海	老得	01	49	39	5	1	2	2	18	6	3	12(15,9)	·	1
韓 淸州	世良	01	67	23	6	16	14	8	9	2	1	11(19,0)	·	4
崔 慶州	貴山	01	280	38	6	11	27	198	19	6	5	8(21,3)	·	3
朴 務安	連壽	단일	39	24	1	·	13	1	16	0	1	7(23,3)	·	6
朴 密陽	吾昂	01	34	16	8	·	10	·	7	1	1	7(25,4)	·	3
李 全州	貴賢	03	61	48	9	·	3	1	35	5	1	7(27,4)	·	1
李 泰安	信欽	01	161	21	3	2	32	103	11	2	1	7(29,4)	·	·
洪 南陽	德麟	02	60	54	·	·	5	1	39	4	4	7(31,4)	·	5
高 濟州	益吉	01	45	35	2	2	6	·	20	3	6	6(33,1)	·	·
金 牛峯	壽延	단일	115	94	3	1	2	15	74	5	8	6(34,9)	1	5
李 全州	仲枝	02	152	52	20	3	30	47	44	1	1	6(36,6)	·	4
韓 新平	忠男	02	39	11	·	2	16	10	5	·	·	6(38,3)	·	3
崔 稷山	壽長	단일	75	21	35	7	12	·	11	3	2	5(39,8)	·	4
黃 昌原	峻	01	9	8	·	1	·	·	1	1	·	5(41,2)	1	1
金 開城	弘祚	04	8	8	·	·	·	·	3	·	1	4(42,4)	·	1
金 慶州	命宗	01	66	35	24	1	5	1	23	4	4	4(43,5)	·	·
安 順興	信聘	01	32	17	7	1	7	·	12	1	·	4(44,7)	·	·
劉 淸州	永弼	01	27	24	1	1	1	·	6	5	9	4(45,8)	·	1
李 全州	世榮	01	175	30	6	1	22	116	23	·	3	4(47,0)	·	3
李 海州	繼魯	01	84	47	8	8	11	10	21	7	14	4(48,1)	1	1
鄭 溫陽	益連	01	61	26	3	12	20	·	13	5	4	4(49,3)	·	3
趙 韓山	景雲	단일	36	30	5	·	1	·	17	7	2	4(50,4)	·	·
秦 豐基	亨元	단일	34	17	·	·	16	1	12	1	·	4(51,6)	·	1
崔 慶州	起敬	02	61	37	3	1	18	2	18	11	4	4(52,7)	·	1
崔 茂州	彦誠	02	17	8	·	·	2	7	2	2	·	4(53,9)	·	3

성/ 본관	家系 祖	가계	잡과와 주학 입격자						역과 입격자					참여 역관
			소개	역과	운과	음과	의과	주학	漢學	淸學	蒙學	倭學	미상	
韓 淸州	聖建	02	42	26	11	3	1	1	21	1	·	4(55.0)	·	2
金 慶州	忠一	03	31	26	2	2	1	·	18	3	2	3(55.9)	·	1
金 善山	尙琛	01	16	12	2	1	1	·	7	2	·	3(56.8)	·	1
李 金山	世卿	단일	77	63	·	·	3	11	56	2	2	3(57.6)	·	3
李 安山	彭壽	01	59	21	15	·	21	2	11	3	4	3(58.5)	·	2
李 井邑	世貞	단일	164	24	5	5	8	122	18	2	1	3(59.4)	·	·
張 仁同	應明	04	3	3	·	·	·	·	·	·	·	3(60.2)	·	·
鄭 河東	允成	01	34	16	2	3	13	·	11	2	·	3(61.1)	·	3
崔 淸州	繼孫	01	54	35	2	1	14	2	23	4	5	3(62.0)	·	2
金 開城	宗傑	02	21	18	·	·	3	·	11	4	1	2(62.5)	·	1
金 固城	繼賢	01	96	48	1	8	14	25	39	2	5	2(63.1)	·	·
金 金海	英達	04	6	6	·	·	·	·	4	·	·	2(63.7)	·	·
金 宣城	義男	단일	8	7	·	·	1	·	3	·	2	2(64.3)	·	1
金 安義	昌敏	단일	23	7	7	·	9	·	3	2	·	2(64.8)	·	·
金 靑陽	元	단일	69	26	17	·	17	9	21	3	·	2(65.4)	·	·
金 春川	玄瑞	01	9	4	5	·	·	·	2	·	·	2(66.0)	·	2
朴 開城	根植	01	22	18	3	·	1	·	9	3	3	2(66.6)	1	·
方 溫陽	壽仁	01	93	49	3	2	36	3	37	7	3	2(67.1)	·	·
白 林川	仁豪	단일	35	30	·	·	4	1	10	12	6	2(67.7)	·	·
愼 巨昌	思遜	단일	11	11	·	·	·	·	8	·	1	2(68.3)	·	1
安 順興	淳	03	13	9	1	·	3	·	7	·	·	2(68.9)	·	1
安 竹山	命堅	단일	17	8	1	4	4	·	6	·	·	2(69.5)	·	·
梁 羅州	雲珍	단일	3	3	·	·	·	·	1	·	·	2(70.0)	·	·
吳 海州	癸生	03	17	7	·	2	6	2	2	3	·	2(70.6)	·	1
吳 海州	鼎和	02	27	26	·	·	1	·	20	4	·	2(71.2)	·	2
柳 文化	洙	03	2	2	·	·	·	·	·	·	·	2(71.8)	·	·
李 江陰	仁恭	01	93	36	8	2	21	26	29	1	4	2(72.3)	·	1
李 廣州	尙仁	02	3	3	·	·	·	·	1	·	·	2(72.9)	·	2

성/ 본관	家系 祖	가계	잡과와 주학 입격자						역과 입격자					참여 역관
			소계	역과	운과	율과	의과	주학	漢學	淸學	蒙學	倭學	미상	
李 南陽	仁恕	단일	42	21	15	5	1	·	18	1	·	2(73,5)	·	1
李 連谷	孝福	단일	6	6	·	·	·	·	4	·	·	2(74,1)	·	2
李 全州	守益	04	26	10	15	·	1	·	5	3	·	2(74,6)	·	·
李 全州	尙培	07	10	5	5	·	·	·	·	·	3	2(75,2)	·	·
李 全州	尙悅	09	6	5	·	1	·	·	·	1	2	2(75,8)	·	·
李 旌善		02	6	6	·	·	·	·	2	2	·	2(76,4)	·	·
張 仁同	世弼	02	22	18	·	·	4	·	16	·	·	2(76,9)	·	·
鄭 溫陽	震僑	03	2	2	·	·	·	·	·	·	·	2(77,5)	·	·
鄭 咸平	億	단일	19	3	·	1	15	·	1	·	·	2(78,1)	·	·
趙 坡平	業成	단일	19	18	·	1	·	·	6	4	6	2(78,7)	·	·
洪 南陽	應夏	03	27	11	2	1	5	8	5	3	1	2(79,3)	·	·
洪 南陽	岫金	01	151	33	5	2	11	100	25	4	2	2(79,8)	·	1
黃 昌原	九鼎	02	7	2	·	·	5	·	·	·	·	2(80,4)	·	·
姜 晉州	好仁	04	1	1	·	·	·	·	·	·	·	1(80,7)	·	1
姜 晉州	聖臣	02	8	2	·	·	6	·	·	·	1	1(81,0)	·	·
康 晉州	承輔	01	5	1	·	·	·	4	·	·	·	1(81,3)	·	1
金 慶州	澄	04	13	7	6	·	·	·	3	·	3	1(81,6)	·	·
金 慶州	崇福	06	7	7	·	·	·	·	1	1	4	1(81,8)	·	·
金 慶州	德龍	05	8	7	·	·	1	·	3	1	2	1(82,1)	·	·
金 光山	重器	03	6	3	·	·	3	·	2	·	·	1(82,4)	·	·
金 光山	茂生	02	18	17	1	·	·	·	12	2	2	1(82,7)	·	·
金 金海	有光	13	2	2	·	·	·	·	1	·	·	1(83,0)	·	1
金 金海	應世	01	50	18	·	6	24	2	15	1	1	1(83,3)	·	·
金 三陟	滿淨	03	5	2	2	1	·	·	1	·	·	1(83,6)	·	·
金 三陟	瑞	04	2	2	·	·	·	·	1	·	·	1(83,9)	·	1
金 三陟	福壽	01	41	17	·	12	11	1	15	·	1	1(84,1)	·	·
金 安東	孝男	01	14	6	·	4	4	·	3	1	1	1(84,4)	·	1
金 安山	德輝	01	2	2	·	·	·	·	·	1	·	1(84,7)	·	1

성/ 본관	家系 祖	가계	잡과와 주학 입격자						역과 입격자					참여 역관
			소개	역과	운과	음과	의과	주학	漢學	淸學	蒙學	優學	미상	
金 盈德	萬獐	01	1	1	·	·	·	·	·	·	·	1(85,0)	·	·
金 永川	德世	단일	12	3	7	2	·	·	2	·	·	1(85,3)	·	·
金 泰安	益俊	단일	12	11	1	·	·	·	6	4	·	1(85,6)	·	·
金 漢陽	世續	02	4	4	·	·	·	·	3	·	·	1(85,9)	·	1
奇 幸州	彦良	단일	3	2	·	·	1	·	1	·	·	1(86,2)	·	·
閔 驪興	天常	01	6	5	1	·	·	·	3	·	1	1(86,5)	·	·
朴 藍浦	俊男	01	4	2	2	·	·	·	1	·	·	1(86,7)	·	1
朴 密陽	根厚	03	17	14	·	·	2	1	8	3	2	1(87,0)	·	·
朴 密陽	東植	02	25	21	1	·	3	·	15	1	4	1(87,3)	·	·
朴 密陽	廷信	10	5	5	·	·	·	·	4	·	·	1(87,6)	·	1
邊 原州	希岭	01	63	31	5	3	21	3	30	·	·	1(87,9)	·	·
宋 竹山	承祐	01	3	3	·	·	·	·	1	·	1	1(88,2)	·	1
申 高靈	수진	01	46	31	2	3	10	·	23	3	4	1(88,5)	·	·
安 順興	連玉	02	27	2	17	·	8	·	·	·	1	1(88,8)	·	· 1
吳 樂安	廷顯	단일	42	37	3	·	2	·	25	8	3	1(89,0)	·	·
吳 海州	景業	01	28	19	2	·	7	·	12	1	5	1(89,3)	·	2
元 原州	謙	02	3	1	·	·	·	2	·	·	·	1(89,6)	·	·
劉 漢陽	命長	단일	92	46	16	20	10	·	40	4	1	1(89,9)	·	·
尹 坡平	根孫	03	8	2	·	·	6	·	1	·	·	1(90,2)	·	·
尹 坡平	末成	01	23	14	2	6	1	·	5	7	1	1(90,5)	·	1
李 慶州	仁達	01	84	4	1	4	18	57	2	·	1	1(90,8)	·	·
李 驪州	萬壽	02	1	1	·	·	·	·	·	·	·	1(91,1)	·	·
李 驪州	彭年	01	3	1	·	·	1	1	·	·	·	1(91,4)	·	·
李 全州	福壽	18	2	1	·	·	1	·	·	·	·	1(91,6)	·	·
李 旌善	義方	05	2	1	·	1	·	·	·	·	·	1(91,9)	·	1
李 旌善	渭	01	7	5	·	2	·	·	2	·	2	1(92,2)	·	·
林 慶州	福壽	단일	34	3	·	4	2	25	1	·	1	1(92,5)	·	1
張 結城	時吉	단일	2	2	·	·	·	·	1	·	·	1(92,8)	·	·

성/ 본관	家系 祖	가계	잡과와 주학 입격자						역과 입격자					참여 역관
			소계	역과	운과	율과	의과	주학	漢學	淸學	蒙學	倭學	미상	
張 白川	希成	01	15	8	1	·	6	·	3	2	1	1(93,1)	1	·
田 河陰	弘彦	01	32	2	11	12	7	·	1	·	·	1(93,4)	·	·
鄭 峯山	仁福	단일	11	7	·	·	4	·	5	·	1	1(93,7)	·	1
丁 禮山	世淡	01	10	7	·	·	2	1	6	·	·	1(93,9)	·	·
鄭 河東	士孝	03	8	4	·	1	3	·	1	1	1	1(94,2)	·	·
鄭 河東	仁孝	02	27	16	5	1	5	·	12	2	1	1(94,5)	·	·
趙 錦山	延	단일	13	7	1	·	4	1	4	2	·	1(94,8)	·	1
趙 平壤	彦憬	01	48	32	2	3	11	·	24	2	5	1(95,1)	·	·
趙 漢陽	孝信	01	23	8	14	·	1	·	4	3	·	1(95,4)	·	·
陳 梁山	古希	01	5	3	1	·	1	·	1	1	·	1(95,7)	·	·
崔 江陵	碩	01	17	3	8	1	4	1	1	·	1	1(96,0)	·	·
崔 慶州	慶長	03	22	9	5	·	8	·	6	2	·	1(96,3)	·	·
皮 洪川	彦浩	01	39	7	12	·	20	·	5	·	1	1(96,5)	·	·
金 南陽	미상	·	·	·	·	·	·	·	·	·	·	1(96,8)	·	·
金 盆城	미상	·	·	·	·	·	·	·	·	·	·	1(97,1)	·	·
金 咸昌	미상	·	·	·	·	·	·	·	·	·	·	1(97,4)	·	·
魯 鎭江	미상	·	·	·	·	·	·	·	·	·	·	1(97,7)	·	·
朴 寧海	미상	·	·	·	·	·	·	·	·	·	·	1(98,0)	1	·
朴 咸陽	미상	·	·	·	·	·	·	·	·	·	·	1(98,3)	·	·
尹 豐壤	미상	·	·	·	·	·	·	·	·	·	·	1(98,6)	·	·
李 會尾	미상	·	·	·	·	·	·	·	·	·	·	1(98,8)	·	·
丁 羅州	미상	·	·	·	·	·	·	·	·	·	·	1(99,1)	·	·
趙 嘉林	미상	·	·	·	·	·	·	·	·	·	·	1(99,4)	·	·
崔 慶州	미상	·	·	·	·	·	·	·	·	·	·	1(99,7)	1	·
黃 昌原	미상	·	·	·	·	·	·	·	·	·	·	1(100)	·	·
합계			4,596	2,155	434	228	790	989	1,394	236	194	347	7	116

역과 입격자를 배출한 124가계에서 한학, 청학, 몽학 전공의 입격자를 배출하지 않은 가계는 각각 17가계, 53가계, 56가계였으며, 이들 각 가계에서 각 전공별로 입격자를 배출한 양상 역시 고르지 않았다. 왜학 전공 입격자를 배출한 각 가계에서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양상 역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정비례하지 않았다. 곧, 3명 이상의 왜학 전공 입격자를 배출한 36가계 중에 참여 역관을 배출하지 않은 가계는 7가계로 그 수가 적지만, 다수의 왜학 전공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에서 역시 이들 참여 역관을 다수 배출한 가계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다.

조선후기에 잡과와 주학 입격은 중인 가계에서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역과를 포함한 잡과와 주학 중 어느 특정 과목의 입격자들만 독점적으로 배출한 가문은 극히 적었다. 또한 역과 내에서 어느 특정 전공의 입격자만 독점적으로 배출한 가문 역시 극히 적었다. 그러나 가계에 따라서 어느 특정의 과목 입격자 또는 어느 특정의 전공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가계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가계별 전공별 참여 역관 배출 양상 역시 이와 유사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조선후기에 잡과와 주학은 중인들이 독점하였지만, 중인 가계 내에서 잡과와 주학에 입격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이 서로 능력을 본위로 경쟁하였다는 것, 어느 특정의 과목이나 혹은 어느 한 과목 내에서도 어느 특정의 전공만을 세전한 가계는 거의 없었다는 것, 하지만 각 가문의 학문적 전통과 기타 부수적으로 따르는 현실적 이점 등으로 인하여 과목별·전공별 집중화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가문들이 존재하였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왜학 전공 역과 입격자로 현재 확인되는 347명 중에서 그 3분의 1 가량의 입격자들이 참여 역관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그리고 왜학 전공의 역과 입격자들이 입격이후 자신의 전공을 계속 유지하며 역관으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조선시대 왜학 전공 역과 입격자들이 상당히 정예화된 집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어느 한 가계에서 배출한 여러 명의 참여 역관들은 해당 가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혈연관계에 있었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5명 이상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5가계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로 10명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천녕 현

씨 가계다. 이 가계에서는 조선시대에 214명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가계도 1>에 제일 먼저 수록되어 있는 玄壽謙의 자손들이다. 천녕 현씨 가계 출신 참여 역관들은 크게 두 가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玄壽謙의 아들 玄龍의 후손들로서 玄啓根과 玄焘인데, 玄啓根은 玄焘의 伯父이므로 이들 두 명은 매우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玄壽謙의 또 다른 아들 玄虎의 후손들로서 玄德潤, 玄德淵, 玄泰心, 玄泰翼, 玄泰衡, 玄義溫, 玄義洵, 玄學魯 등 8명인데, 이들은 玄哲祥의 입장에서 그의 손자, 증손, 현손, 6세손, 8세손이므로, 이들 역시 매우 가까운⁴²⁾ 혈연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계도 1> 천녕 현씨 가계도

玄壽謙	龍	仁祥	頊	德宇	珏	尙夏	深	啓根	
								啓楨	焘
	虎	哲祥	宇一	德萬	泰心				
			漢一	德潤	泰翼				
				德昌	泰元	商祿	義溫		
						商說	義洵		
					泰衡	商尹	時錫	漢敏	學魯
				德淵					

두 번째 사례로 6명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밀양 변씨 가계다. 밀양 변씨 가계에서는 조선시대에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모두 175명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가계도 2>에 처음으로 나오는 卞希完의 후손들이다. 卞希完 가계 출신

42) 이들은 서로 서로 당내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친족의 범위는 재제중 안에 드는 8촌 이내까지였다. 이들 8촌 이내에 드는 사람들의 고조는 동일 인물이었다. 고조가 동일 인물인 사람들을 당내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상을 당하면 상복을 입어야 하는 服制의 의무가 있었다. 8촌을 벗어나면 親盡 또는 服盡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服制의 의무가 없는 관계라는 뜻이었다(宋俊浩, 1987,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20쪽).

참여 역관 6명도 가계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卞文圭와 卞鍾聞은 卞希完의 손자인 卞應寬의 8세손과 9세손이며, 卞承業, 卞爾標, 卞廷郁, 卞世謙 등은 卞希完의 또 다른 손자인 卞應星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다. 이들도 두 갈래의 가계로 나누어졌지만, 나누어진 이후에 2명과 4명이 모두 가까운 당 내간의 혈연관계에 있었다.

〈가계도 2〉 밀양 변씨 가계도

卞希完	繼永	應寬	忠一	爾璜	三允	重和	泰謙	光寶	文圭	鍾聞
		應星	承勳	爾標	廷郁					
			承業	爾和	廷樞	世謙				

세 번째 사례로 6명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무안 박씨 가계다. 무안 박씨 가계에서는 조선시대에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모두 39명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가계도 3〉에 처음으로 나오는 朴大根의 후손들이다.⁴³⁾ 朴大根의 가계에서 배출한 6명의 참여 역관들은 앞의 두 가계 출신의 역관들과 다르게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모두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 6명 모두 朴大根과 그의 직계 후손들, 곧 朴大根과 그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리고 5대손이

〈가계도 3〉 무안 박씨 가계도

朴連壽	大根	爾淳	元郎	再興		
				再昌		
			元明	再起	春瑞	道洵

43) 朴大根의 父는 『姓源錄』의 무안 박씨 가계 기록에는 朴連壽로 기록되어 있고(앞의 『姓源錄』, 1985, 470쪽), 『宣祖實錄』에는 朴連守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宣祖實錄』, 선조 39년 8월 23일 조). 현재로서는 이 가계의 족보가 발견되지 않아서 어느 사실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 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姓源錄』의 기록을 따랐다.

었다.

네 번째 사례로 5명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우봉 김씨 가계다. 우봉 김씨 가계에서는 조선시대에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모두 115명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가계도 4〉에 처음으로 나오는 金壽延의 후손들이다. 이들 우봉 김씨 가계 출신 5명의 참여 역관들도 모두 가까운 당내간의 혈연관계에 있었다. 곧, 金德春의 증손자가 3명, 고손자가 1명, 5대손이 1명이었다.

〈가계도 4〉 우봉 김씨 가계도

金壽延	德春	大忠	汝義	指南	慶門	弘喆
					顯門	
		大信	汝溫	圖南		
			汝敏	始南		

다섯 번째 사례로 5명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남양 홍씨 가계다. 남양 홍씨 가계에서는 조선시대에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모두 60명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가계도 5〉에 처음으로 나오는 洪德麟의 후손들이었다. 洪喜男은 이 가계 출신 역관 중에 가장 먼저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역관으로 참여하였는데, 金謹行 다음으로 대일 사행 역관에 다수 참여하였다. 남양 홍씨 가계 출신 5명의 참여 역관들도 역시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 모두 洪喜男과 그의 직계 후손들이었다. 곧, 洪喜男과 그의 아들 1명, 손자 1명, 증손자 1명, 7세손이 1명이었다.

〈가계도 5〉 남양 홍씨 가계도

洪德麟	喜男	汝雨	萬載	舜明			
				舜濟	大成	宅福	得俊
		汝舟	禹載				

이상과 같이, 5명 이상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의 역관들은 대부분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4명 이상의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의 역관들도 거의 대부분 당내간의 혈연관계에 있었다. 이상의 사실은 가계 내에서 대일 외교 업무를 세전한 유력한 가계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여준다. 참여 역관을 다수 배출한 가계보다는 소수 배출한 가계가 많았지만, 가계 내에서 세전한 경우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었다. 특히 이들이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는 곧, 이들의 혈연적 긴밀도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V. 혼인 양상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문을 중시하였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혈연관계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혈연관계 다음으로 중시한 것이 인척관계였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이루진다. 조선 후기 사회는 대표적인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제사를 자녀가 돌아가며 지냈고, 재산도 자녀가 평균 분배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제사를 長子가 전담하여 지냈으며 재산 상속도 장자 위주로 분배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어갔다. 족보에 자녀를 기록하는 데도 임란 이전까지는 출생 순서대로 기재하였으나, 임란 이후부터는 아들부터 기록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어갔다. 이처럼 장자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에서 妻家나 외가를 소홀히 여겼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妻家나 외가의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게 여겼다. 호적에는 항상 본인의 四祖(부, 조, 증조, 외조)뿐만 아니라 妻의 四祖도 기재하였으며, 과거 응시를 위해 제출하는 단자에도 妻父나 外祖를 기재하였다. 그

것은 妻家나 외가의 사회적 지위가 당사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문서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妻家나 외가와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후기에도 유아기나 아동기에 妻家나 외가에서 성장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 妻家나 외가를 중시한 풍조는 양반 사회뿐만 아니라 중인 사회에서도 있었다. 중인들도 잡과나 주학에 응시하기 위해 단자에, 그리고 기술학 생도방 피천 단자에도 妻父나 外祖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인 사회에서도 妻家나 외가의 사회적 지위가 이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⁴⁴⁾

참여 역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妻家나 외가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譯科榜目』과 『象院科榜』에 수록된 이들의 外祖나 妻父 중에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모두 9사례를 발견하였다. 외조가 3건, 妻父가 6건이었다. 이들은 통신사행이나 문위행에 역관으로 참여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앞의 9건(해당자 18명)은 전체 연구 대상이 144명이라는 점에 볼 때, 적은 수다. 따라서 참여 역관들끼리 직접적으로 혼인 관계를 형성한 사례는 지극히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이들 역관들의 자녀들 사이에서 혼인 관계가 형성된 사례도 간혹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수는 지극히 소수였다. 참여 역관들의 外祖나 妻父의 관직을 보면 왜학과 관련된 관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신분 내 혼인이 이루어진 중인 사회에서 같은 과목의 기술관끼리 혼인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곧, 역관은 역관끼리, 의관은 의관끼리, 화원은 화원끼리 혼인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지만, 서로 다른 기술관

44) 김두현, 2008, 「19세기 운학 완전 합격자와 그들의 가계」, 『전북사학』 33, 170쪽. 중인 사회에서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자신들의 가문과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가문 출신으로 혼인시키는 부혼이 유행하였다. 중인의 아이들은 80% 이상이 12~15세 사이에 초혼을 하였다(김두현, 2009, 「19세기 중인의 초혼 연령 및 배우자의 신분」, 『鄉土서울』 7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64쪽).

〈표 11〉 外祖나 妻父가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인 경우

성명(본관, 집과명)	外祖(본관, 집과명)	妻父(본관, 집과명)
金東倫(開成, 1807式譯)	·	朴俊漢(密陽, 1762式譯)
金弘喆(牛峯, 1740增譯)	洪舜明(南陽, 1705式譯)	·
卞爾標(密陽, 1650增譯)	·	韓相國(淸州, 1624式譯)
卞廷郁(密陽, 1678增譯)	韓相國(淸州, 1624式譯)	·
卞鍾應(密陽, 1827增譯)	·	秦東益(豐基, 1809增譯)
崔櫛(慶州, 1675增譯)	康遇聖(晉州, 1609增譯)	·
崔裕立(慶州, 1642式譯)	·	康遇聖(晉州, 1609增譯)
崔漢鎭(慶州, 1708式譯)	·	金始南(牛峯, 1690增譯)
黃大中(昌原, 1735增譯)	·	李樟(金山, 1713增譯)

들 사이에서 혼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각 중인 가계에서 가계 구성원들이 압도적으로 어느 특정의 기술직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중인 가계에서는 여러 기술직 종사자를 배출하고 있었다.⁴⁵⁾ 비록 중인끼리 혼인을 하였지만, 각 중인 가계의 혼인 관계망은 비교적 넓은 편이었다. 혼인관계로 인해 형성된 인척관계의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었다.⁴⁶⁾ 따라서 역관들의 혼인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그 대상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外祖와 妻父가 참여 역관이었는가의 여부만으로는 이들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가를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중인 사회에서는 엄히고설친 혼인관계가 형성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 그것은 참여 역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중인 사회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기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회의 지배층일수록 가문을 더 중시하였

45) 김두현, 2007, 「差備待令書員의 신분과 세전 및 혼인」, 『전북사학』 31, 전북사학회, 63~64쪽

46) 김두현, 2010, 「金範禹와 그의 가계」, 『敎會史研究』 34, 한국교회사연구소, 27쪽 및 34쪽

을 것이고, 그러기에 우수한 가문 출신끼리 혼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천녕 현씨 참여 역관 10명을 사례로 하여 이들의 妻父, 外祖, 妻外祖가 속한 각각의 가계에서 참여 역관을 얼마나 배출하였는가를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고종 4년(1867)에 간행된 『川寧玄氏世譜』에서 이들 10명의 참여 역관의 외조, 妻父, 처외조의 성명과 본관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12>다. <표 12>에서 外祖가 두 명인 경우는 당사자의父가 系子일 때 外祖와 生外祖가 있는 경우이며, 妻父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당사자가 前妻, 後妻, 三妻가 있는 경우다. <표 12>와 같이 이들 10명의 외조, 妻父, 처외조는

<표 12> 천녕 현씨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의 外祖, 妻父, 妻外祖

성명	사행 및 직책	外祖	妻父	妻外祖
玄啓根	1764押物通事, 1780堂上官	李樞(金山단)	黃大逸(昌原01)	韓斗山(新平02)
玄德淵	1748堂上譯官, 1762堂上官	方孝信(溫陽)	趙啓範(平壤)	黃命翼(平海)
玄德潤	1711上通事, 1718堂下官	方孝信(溫陽)	黃萬英(昌原01)	李天健(全州)
玄義洵	1809堂上官, 1811堂上譯官	張瀾(仁同)	方致齡(淸州)	張沅(仁同)
			李道珉(南陽단)	崔興祚(慶州)
玄義溫	1818堂上官	李仁考(全州)	韓聖哲(新平02)	趙重興(豐壤)
玄泰心	1764押物通事	朴師昌(密陽)	韓斗山(新平02)	卞三彬(密陽단)
		黃萬英(昌原01)	金最成(泰安)	韓允普(淸州01)
			李時英(驪興)	白弘周(林川)
玄泰翼	1747堂上官, 1764堂上譯官 1766堂上官	黃萬英(昌原01)	金慶興(慶州)	方必規(溫陽)
			金壽岳(全州)	韓起周(淸州01)
玄泰衡	1748次上通事, 1766堂下官	張順謙(延安)	朴尙訥(密陽01)	李東茂(廣州)
			劉泰克(淸州01)	河再澄(晉州)
			朴文漢(寧海01)	安處恒(順興)
玄學魯	1843堂上官	劉運復(漢陽)	白光鎮(善山)	趙弘遠(漢陽)
		李思復(泰安)		
玄燾	1811堂上譯官, 1822堂上官	李德涵(江陽)	李萬培(南陽단)	朴文漢(寧海)

모두 44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동일인이 두 번 이상 수록된 경우도 있다.⁴⁷⁾ 이렇듯 중복된 인원(5명)을 제외하면 실제 인원은 모두 39명이 된다.

이들 39명이 속한 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들이 속한 각 가계에서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얼마나 배출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13>이다. <표 13>과 같이, 앞의 39명 중에 26명이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속한 가계는 모두 『姓源錄』에 수록되어 있다.⁴⁸⁾ 그러나 나머지 13명의 신분도 『姓源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중인 끼리 신분 내 혼인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기에, 앞으로 관련 자료가 발견된다면 중인 가계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표 13>의 39명 중에 13명이 속한 각각의 가계에서는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 역관도 배출하였다. 천녕 현씨 출신 참여 역관들이 혼인한 상대자 곧, 이들의 외조, 처부, 처외조 39명 중에 13명(전체의 33.3%)이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 13명과 혼인 관계를 형성한 천녕 현씨 참여 역관은 玄德淵과 玄學魯를 제외한 8명이다. 곧, 천녕 현씨 참여 역관 10명 중에 8명의 妻家나 외가 혹은 처외가에서 참여 역관을 배출한 것이다. 이 사실은 이들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 구성원들 사이에서 혼인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이들 13명 중에는 동일 가계 출신들도 있다. 이들은 南陽李氏 李道珉과 李萬培, 新平韓氏 韓斗山과 韓聖哲, 淸州韓氏 韓起周와 韓允普, 그리고 昌原黃氏 黃大逸과 黃萬英 등이다. 또한 朴文漢도 그의 딸 한 명이 玄泰衡

47) 朴文漢은 玄弼의 妻外祖와 玄泰衡의 妻父로, 方孝信은 玄德淵과 玄德潤의 외조로, 韓斗山은 玄泰心의 妻父와 玄啓根의 妻外祖로 각각 두 번 수록되어 있으며, 黃萬英은 玄泰心의 외조, 玄泰翼의 외조, 玄德潤의 妻父로 모두 세 번 수록되어 있다.

48) <표 13>의 姓源錄란에서 숫자는 해당자가 『姓源錄』에 수록되어 있는 쪽 수이고, ‘첨○○○’은 당사자는 『姓源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자의 父나 祖父 혹은 曾祖父가 『姓源錄』의 해당 쪽에 수록되어 있다는 뜻이고, ‘동○○○’은 당사자가 『姓源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姓源錄』의 해당 쪽에 당사자와 行렬이 같은 이름이 여러 명 수록되어 있다는 뜻이다.

〈표 13〉 천녕 현씨 참여 역관들과 혼인관계를 형성한 자들의 각 가계에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 및 참여 역관 현황

성명(가계)	인원	천녕 현씨와 관계	참여 역관	姓源錄
金慶興(慶州01)	66명	玄泰翼의 妻父	·	265
金壽岳(全州)	·	玄泰翼의 妻父	·	·
金最成(泰安단)	12명	玄泰心の 妻父	·	353
朴文漢(寧海01)	49명	玄弼의 妻外祖	1명(방계 후손)	477
		玄泰衡의 妻父		
朴師昌(密陽16)	2명	玄泰心の 外祖	·	첨499
朴尙訥(密陽01)	34명	玄泰衡의 妻父	3명(숙부, 아들, 종형제)	447
方必規(溫陽01)	93명	玄泰翼의 妻外祖	·	738
方孝信(溫陽01)	93명	玄德潤의 外祖	·	동739
		玄德淵의 外祖		
方致齡(淸州단)	9명	玄義洵의 妻父	·	742
白光鎭(善山)	·	玄學魯의 妻父	·	·
白弘周(林川단)	35명	玄泰心の 妻外祖	·	915
卞三彬(密陽단)	175명	玄泰心の 妻外祖	6명(방계 선대(2)와 후손(4))	678
安處恒(順興)	·	玄泰衡의 妻外祖	·	·
劉運復(漢陽단)	92명	玄學魯의 外祖	·	789
劉克泰(淸州01)	27명	玄泰衡의 妻父	1명(친조카)	785
李德涵(江陽단)	9명	玄弼의 外祖	1명(재당질)	214
李道珉(南陽단)	42명	玄義洵의 妻父	1명(방계 후손)	첨241
李萬培(南陽단)	42명	玄弼의 妻父	1명(방계 후손)	240
李東茂(廣州)	·	玄泰衡의 妻外祖	·	·
李思復(泰安)	161명	玄學魯의 外祖	·	196
李時英(驪興)	1명	玄泰心の 妻父	·	209
李仁壽(全州)	·	玄義溫의 外祖	·	·
李天健(全州)	·	玄德潤의 妻外祖	·	·
李樞(金山단)	77명	玄啓根의 外祖	3명(동생 1명, 조카 2명)	146
張順謙(延安)	·	玄泰衡의 外祖	·	·

성명(가계)	인원	천녕 현씨와 관계	참여 역관	姓源錄
張瀟(仁同02)	22명	玄義洵의 外祖	·	597
張沆(仁同)	·	玄義洵의 妻外祖	·	·
趙啓範(平壤)	·	玄德淵의 妻父	·	·
趙重興(豐壤)	·	玄義溫의 妻外祖	·	·
趙弘遠(漢陽01)	23명	玄學魯의 妻外祖	·	555
崔興祚(慶州)	·	玄義洵의 妻外祖	·	·
河再澄(晋州)	·	玄泰衡의 妻外祖	·	·
韓斗山(新平02)	38명	玄啓根의 妻外祖	2명(재당숙 1, 방계 후손 1)	648
		玄泰心の 妻父		
韓聖哲(新平02)	38명	玄義溫의 妻父	2명(방계선대 1, 방계후손 1)	650
韓起周(淸州01)	67명	玄泰翼의 妻外祖	·	동627
韓允普(淸州01)	67명	玄泰心の 妻外祖	4명(증조, 종조, 숙부, 재당숙)	622
黃大逸(昌原01)	9명	玄啓根의 妻父	1명(4촌)	1021
黃萬英(昌原01)	9명	玄德淵의 妻父	1명(손자)	1021
		玄泰翼의 外祖		
		玄泰心の 外祖		
黃命翼(平海)	·	玄德淵의 妻外祖	·	·

과 혼인하였고, 외손녀 딸 한 명이 玄焄과 혼인하였으므로, 역시 천녕 현씨 가계와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한 사례에 해당된다.⁴⁹⁾ 39번의 혼인관계 중에 10번의 혼인이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 구성원끼리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

49) 중첩된 인척관계의 또 하나의 예로 李壽山(본관 全州)을 매개로 한 康遇聖과 洪禹載의 인척관계를 들 수 있다. 인조 26년(1648) 식년시 역과 입격자 李壽山(본관 全州)은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역관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의 妻父 康遇聖(본관 晋州)과 父 李長生, 사위 洪禹載(본관 南陽)는 모두 역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을 통하여 康遇聖과 李長生이 서로 사돈관계에 있었다는 것과, 洪禹載에게 康遇聖은 妻外祖이며, 李長生은 妻의 祖父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妻의 外祖나 祖父 정도의 사이는 이들이 매우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수이다. 단순히 外祖와 妻父가 참여 역관이었는가의 여부만을 탐구한다면, 이상의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상의 사실은 참여 역관들의 혼인관계가 이들이 속한 가계 구성원들이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참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역으로 이들이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역관으로 참여한 것이 이들 가계 출신들끼리 혼인하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판단한다.

조선후기 중인 사회에서는 신분 내 혼인이 행하여졌으며, 가계에 따라서는 통혼권을 이룬 가계끼리 중첩된 혼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참여 역관들을 배출한 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참여 역관들을 배출한 가계 출신끼리 혼인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다. 통신사행과 문위행 역관으로 참여하는 데 본인의 능력이 가장 우선시되었고, 그 외에 부계뿐만 아니라 외가, 妻家, 심지어 처외가의 사회적 지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Ⅵ.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가계와 혼인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본고가 처음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역관들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제 인원이 144명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들이 수록된 典據를 일일이 제시하였다. 둘째,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역과에 입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역과 입격 당시 전공이 역과 입격 이후 역관으로 관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왜학 전공 역과 입격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 역관으로 활약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왜학 전공 역과 입격자들을 정예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살필 수 있었으며, 그만큼 조선 정부에서 대일 외교와 대

일 외교 수행 과정에서의 왜학 역관의 역할을 중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이들이 속한 각 가계는 대부분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명문 중인 가계였다는 것, 주요 중인 가계에서 참여 역관들을 다수 배출한 경향도 있었다는 것, 이들이 서로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는 것, 동시에 상대적으로 참여 역관들을 배출한 가계의 폭이 좁지 않았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참여 역관 선발 시에 가문도 중시하였지만 능력도 중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중인 사회 내에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계 위주의 별렬화 현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능력이 출중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유교의 인본주의와, 기술학을 세전하는 가문을 조성하여 전문적 집단을 육성하려는 조선 왕조의 의도가 현실 사회에서 구현되어 나타난 형상이었다.

넷째, 조선후기에 잡과 중 어느 특정 과목의 입격자들만 독점적으로 배출한 가문들은 극히 소수였다. 또한 역과 내에서 각 특정의 전공 입격자만 독점적으로 배출한 가문들 역시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가계에 따라서 잡과 내에서 특정 과목의 입격자를, 그리고 역과 내에서 특정 전공의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가계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에 잡과와 주학은 중인들이 독점하였지만, 중인 가계 내에서 잡과와 주학에 입격하기 위하여 각 가계의 구성원들이 서로 능력을 본위로 경쟁하였다는 것, 어느 특정의 과목이나 어느 특정의 전공만을 세전한 가계는 거의 없었다는 것, 하지만 각 가문의 학문적인 전통과 기타 부수적으로 따르는 현실적 이점으로 인하여 과목별 전공별 집중화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가문들도 존재하였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참여 역관들의 혼인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혼인관계 사례는 적었지만, 이들을 배출한 각 가계의 구성원들끼리 혼인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 그중에는 얹히고설킨 중첩된 혼인관계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참여 역관을 선발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은 물론, 부계 위주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외가, 妻家, 처외가 등과의 인척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개인의 인관관계 형성과 사회적 출세에 혈연관계 이외에 또 하나의

축으로 인척관계가 작용한 것이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들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또는 혈연관계), 그리고 인척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요소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개인의 능력이었고, 그 다음이 가문의 사회적 지위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이 인척관계였다고 판단한다. 조선후기 사회가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인척관계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적 출세를 하는데, 가문의 사회적 지위 곧, 부계 위주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인해 형성된 인척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양반 사회뿐만 아니라 중인 사회에서도 적용되었다. 그 영향력은 혈연관계와 동등한 수준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었음을 본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 『嘉靖己酉式年試雜科榜目(명종 4년(1549) 식년시)』, 1책, Edward, E. Wagner
- 『甲子文武科榜目(숙종 10년(1684)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도서관
- 『甲子式年文武科榜目(명종 19년(1564) 식년시)』, 1책, 충남대학교도서관
- 『康熙乙卯式年試雜科榜目(숙종 1년(1675) 식년시)』, 1책, Edward, E. Wagner
- 『庚子式年文科榜目(중종 35년(1540)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 『癸卯式年榜目(중종 38년(1543) 식년시)』, 1책, 계명대학교도서관
- 『癸酉文武榜目(중종 8년(1513) 식년시)』, 1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마이크로 필름
- 『萬曆二十八年庚子式年退行於辛丑夏榜目(선조 33년(1600) 식년시)』, 1책,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 『文武科榜目(인조 11년(1633) 식년시)』, 1책,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 『文武雜科榜目(중종 20년(1525)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晩松文庫
- 『丙辰增廣司馬榜目(선조 9년(1576)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 『本廳完薦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象院科榜』, 2책,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 『姓源錄續編』, 5책, 필사본, 개인 소장
- 『崇禎癸酉增廣試雜科榜目(인조 11년(1633) 증광시)』, 1책, Edward, E. Wagner
- 『安山李氏世譜』, 1책, 1804(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 『譯科榜目』, 1책, 199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민창문화사 영인
- 『譯科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 『譯等第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 『完薦記』, 4권 4책, 국립중앙도서관
- 『牛峯金氏世譜』, 1책, 1990, 전북대학교도서관
- 『雲科科目案』,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雲科榜目』, 1책, 국립중앙도서관
- 『律科榜目』, 1책,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 『律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 『隆慶庚午文武榜目(선조 3년(1570) 식년시)』, 1책,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晩松文庫

- 『醫科榜目』, 2책,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 『醫科先生案』,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
- 『醫科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 『醫等第譜』, 1책, 국립중앙도서관
- 『醫譯籌八世譜』,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全州李氏族譜』, 8권 8책, 1858,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 『籌學入格案』, 2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 『籌學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增訂交隣志』, 1책, 1998,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川寧玄氏世譜』, 4권 4책, 1867, 개인 소장
- 『冲齋先祖府君及第榜目(중종 2년(1507) 식년시)』, 1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마
이크로필름
- 『通文館志』
- 『漢陽劉氏世譜』, 6권, 1869, 개인 소장
- 『書寫兩家譜錄』, 1책, 국립중앙도서관
- 李昌鉉等纂, 1985, 『姓源錄』, 昨晨社 影印

2. 저서 및 논문

- 김두현, 2013,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 宋俊浩, 1987,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 李元植, 1991, 『朝鮮通信使』, 민음사
- 김두현, 2001, 「技術職 中人 身分 研究」,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두현, 2007, 「差備待令畫員의 신분과 세전 및 혼인」, 『전북사학』 31, 전북사학회
- 김두현, 2008, 「19세기 운학 완전 합격자와 그들의 가계」, 『전북사학』 33
- 김두현, 2009, 「19세기 중인의 초혼 연령 및 배우자의 신분」, 『鄉土서울』 73, 서울特別
市史編纂委員會
- 김양수, 1983, 「朝鮮後期 譯官에 대한 一研究」, 『東方學志』 제39집,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 김양수, 1999, 「朝鮮開港前後 中人의 政治外交－譯官 卞元圭 등의 동북아 및 美國과
의 활동을 중심으로」, 『實學思想研究 12輯』－朴尙煥博士停年紀念號, 母岳實學會

- 김양수, 1999, 「조선후기 역관집안의 연구－玄德潤·玄采 등 川寧玄氏 家系를 중심으로」, 『人文科學論集』 19집,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 김양수, 2003, 「조선후기의 敎誨譯官－〈敎誨廳先生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 朝鮮時代史學會
- 김양수, 2007, 「조선후기 譯官의 중개무역과 倭館維持費」, 『歷史와 實學』 32輯(下)－大湖 李隆助교수 停年紀念號, 歷史實學會
- 김양수, 2008, 12, 「조선후기 倭語譯官－《譯科榜目》의 분석을 중심으로」, 『歷史와 實學』 37집, 역사실학회
- 윤유숙, 2005,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 이상규, 2003, 「역관 洪舜明의 경력과 저작 『倭語類解』」,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집문당
- 이상규, 2004, 「조선후기 川寧玄氏家の 譯官活動」,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 이상규, 2006, 「17세기 전반 왜학역관 康遇聖의 활동」, 『韓日關係史研究』 24
- 이상규, 2007, 「17세기 초중반 왜학역관 洪喜男의 활동」, 『韓日關係史研究』 26
- 이상규, 2012, 「17세기 전반의 朝日關係 전개와 倭學 譯官 제도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62
- 이철성, 2005,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 장순순, 2005, 「朝鮮時代 通信使 研究의 現況과 課題－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 조광, 2005,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쟁점사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 趙誠乙, 2005, 「韓國과 日本의 華夷觀의 變化와 相互認識－朝鮮後期와 德川幕府期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 韓泰文, 2005, 「通信使 往來를 통한 文化交流」,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 현명철, 2005, 「통신사 단절과 서계 문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 홍성덕, 1990, 「朝鮮後期「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59
- 홍성덕, 1992,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 홍성덕, 1995,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涉」, 『韓日關係史研究』 제3집, 한일관계사연구회
- 홍성덕, 1999,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韓日關係史研究』 제11집, 한일관계사학회
- 홍성덕, 2000, 「朝鮮後期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研究」, 『國史館論叢』 93집
- 홍성덕, 2005,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Lineages and Marriages of Translators who
Accompanied the *Tongsinsa* (通信使) and Conducted
Munuihaeng (問慰行) Miss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Kim Doohe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ineages and marriages of the translators (K, *Eoyeokgwan* 譯官) who accompanied the *Tongsinsa* (通信使) envoy and conducted the *Munuihaeng* missions (問慰行)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is the first study on these issues. The results are, first, the members of the translators were confirmed, and documents written by them and materials compiled from complementary sources mentioning them in the *Sangwon gwabang* (象院科榜) are presented. Second, through research on how they maintained their specialty after passing the *japgwa* examination (雜科) and the fact many Japanese-language (*Oehak* 倭學) translators became *Eoyeokgwan* translators who accompanied the *Tongsinsa* and conducted *Munuihaeng* missions, the Joseon government made Japanese-language translators elites among interpreters. Third, through analysis of the social positions of their lineages and feat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Eoyeokgwan* translators confirmed the phenomenon of meritorious families. It was known that not only one's family but also one's ability were regarded as qualifications to be translators. Fourth, this article shows the formation of meritorious families made not only through blood relations but also through marriage relations in *jungin* (中人) society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words

Jungin (中人), *Eoyeokgwan* (譯官), *Tongsinsa* (通信使), *Munuihaeng* (問慰行), *Japgwa* (雜科), Lineage, Marri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쟁과 변경

- 러일전쟁과 함경도의 현실 -

조재곤 ■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이 논문은 러일전쟁 시기 軍政이 실시된 대한제국 함경도 상황과 지역주민의 현실적 처지를 분석한 글이다. 함경도는 두만강과 동해안을 경계로 러시아와 접하고 있어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군사적으로 맞부딪친 최전선이였다. 그런데 주인 없는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전쟁 시기 戰場 지역민들은 동원·수탈·배제 등의 형식으로 러시아와 일본 누가 이기든 간에 전승국가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¹⁾ 지정학상 함경도 지역은 두만강을 사이에 둔 러시아 연해주 및 중국 間島와 접경지대로 초전부터 종전까지 크고 작은 전투가 진행되던 지역이었다. 러시아·일본 양국 군대의 전진주와 전선가설, 도로수축에 대규모 차원의

※ 투고일: 2013년 5월 22일, 심사일: 2013년 8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1) 주로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피해한 생활상은 차경애, 2010, 「러일전쟁 당시 전쟁전문목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중국근현대사연구』 48 참고.

인력 강제동원, 비용전가, 불법적 살해와 구금 등으로 도처에 유이민이 발생하였다. 빼앗고 빼앗기는 戰區의 변화 과정에서 어제의 점령군이 사라지면 새로운 점령군이 마치 바뀐 소유주처럼 지역민을 옥죄는 상황이 함경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야만의 시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땅에서 일어난 남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러시아 수도 인근까지 끌려간 전쟁포로들의 귀환 과정도 지 난했다. 전쟁과정에서 무자비한 식량 등 경제적 수탈, 수세·매매 등 소유권 제한, 상거래 두절과 물가폭등의 요인에 따라 인구·호구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민생경제는 파탄에 직면했다. 민간시설물의 군용지 수용과 군수시설 설치, 측량, 연락두절과 행정의 공백, 지방관 교체와 관련한 인사개입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나 대한제국 정부는 시종 소극책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 성립 이래 국경 치안을 담당하던 북청과 종성의 2개 진위 대대도 일본의 입김으로 결국 폐설되었다. 함경도 지역은 전국 유일의 일본 군정지역이 되어 계엄상태를 유지하여 개인의 사사로운 행동 하나하나 제약받고 있었다. 게다가 1904~1905년 여름 두만강 연안의 집중호우와 냉해, 전염병 창궐 등 자연재해도 심각한 차원이었다. 그 결과 흥흥한 지역민심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러일전쟁 기간 한국 그 어느 지방보다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그간의 일부 연구에서 러일전쟁 기간 함경도 지역 전투상황과 결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였으나 지역민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글은 없다.²⁾ 이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러일전쟁의 경험이 변경지역인 함경도 주민들에게 어떤 여파를 남겼던가를 그들의 전쟁경험과 현실인식 등을 통해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살피고 시대사적 함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2)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경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심현용, 2011,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 3장 3절과 5장 2절; 조재근, 2013,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軍史』 86호가 참고.

II. 인적 · 물적 피해상황

러일전쟁 당시 함경도 지역은 국경의 전쟁터가 되어 막대한 인적 ·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전쟁 직전부터 물가는 폭등하였고, 전쟁 개시 이후 연로변의 주민들은 허다한 ‘접대’와 함께 군량미와 마량을 약탈당했고, 곡식이 말발굽에 짓밟히고 군수물자 수송, 전선가설과 도로수축과 교량부설 등에 役夫로 동원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원산에 상륙한 일본 군대는 한국 정부에 조회하여, 연로 각 군에 훈령하여 宿衛 및 군수품을 청구하는 대로 응하게 했다.³⁾ 덕원군에 들어온 일본 병사들은 東學黨을 색출하여 우두머리 2명을 砲殺하였고, 함흥 주둔 일본군은 동학당 16명을 체포하여 8명은 방면하고, 3명은 태형과 역에, 2명은 종신역, 尹亨天 · 承載元 · 崔成道 등 주모자 3명을 포살하였다.⁴⁾ 함경도 일본군 점령지역에서는 도로수축의 강제가 있었다. 1904년 10월 일본군 지휘관은 함흥과 원산 간의 도로와 교량을 군대가 통과하기 용이도록 수선하되 11월 말까지 마치라 하였다.⁵⁾

일본의 전시동원 체제는 「한일의정서」 제4조에 의거한 것이었으나 군수품 운반 등을 위한 함경도 지역 역부와 牛馬 · 馬糧의 강제징발은 러시아군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⁶⁾ 1904년 4월 성진에 들어온 러시아군은 租界를 불태웠으며,⁷⁾ 고원군 동현에 돌입하여 군수 洪鳳觀을 구타한 후 관내 60여 호를 방화하고, 함흥에서도 민가의 곡식을 탈취했다.⁸⁾ 5월에는 병사 100여 명이 장진군에 들어와 군기고와 巡校廳을 불태우고, 관사 · 학교 · 향청은 兵馬 주둔지로

3) 《皇城新聞》, 1904. 2. 14

4) 《皇城新聞》, 1904. 4. 5; 4. 12

5) 《大韓每日申報》, 1904. 11. 2

6) 《大韓每日申報》, 1904. 10. 4; 11. 7; 11. 18

7) 「1904년 4월 27일 성진감리 심후택이 의정부찬정 외무대신에게 공문」(제1신)(성진 시사편찬위원회, 1993, 『城津市史』, 元一印刷社, 62쪽)

8) 《皇城新聞》, 1904. 6. 9; 6. 21

사용했다.⁹⁾ 부령에서는 각종 물품을 토색하고 부녀집간이 잦다는 군수의 보고도 올라왔다.¹⁰⁾ 당시 불탄 가옥은 함흥 135호, 고원 59호, 문천 8호로 집계되었고, 불타 죽은 자는 고원 1명, 장진 4명이었다 한다.¹¹⁾ 다음은 강제징발로, 1904년 초 두만강을 건너온 러시아군은 경성·경흥의 生牛를 매일 100마리 정도 만주와 혼춘으로 수송하였고,¹²⁾ 길주에서도 매달 50~60두의 생우를 구입했다.¹³⁾ 경성·명천·길주·성진의 군수들은 관찰사의 지시로 남진하는 러시아 군사를 위해 매 가호마다 계란 5개, 닭 1마리, 稗 3되를 준비해둘 것을 관내에 명했다.¹⁴⁾ 장진군 연로 200리 사이에서는 가옥집기와 鷄犬牛馬를 몰수했다.¹⁵⁾

그해 6~7월 사이 함흥군, 고원군, 장진군, 문천군에서는 러시아군의 방화로 불타버린 관공서와 가옥은 물론 관내 각 社와 里別, 개인별 피해 물품과 피해액 등의 자세한 상황은 해당 군수의 관찰사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대상인 각종 곡물과 의류(포복), 육류(가축과 어물), 화폐(은화, 엽전, 백동화) 외에 식품과 기호품, 생활용품 등 다양했다.

예컨대 식품과 기호품으로는, 간장, 소금, 식초, 인삼, 사탕, 꽃감, 술, 꿀, 南草, 卷煙, 돼지쓸개, 熊膽, 사향, 청심환, 약재 등이었다. 생활용품은 平床, 銀香匣, 은장도, 주발, 銀指環, 짚신, 가죽신, 나막신, 우산, 양산, 안경, 성냥, 수저, 요강[溺江], 석유, 청동화로, 종이, 솔, 燈, 양초, 도끼, 낫, 호미, 병풍, 붓, 먹[墨], 唾器, 담뱃대 등이었다. 기타 별통, 말안장, 시장 貨物, 수달피, 鳥銃, 『大韓地誌』까지 보고되었다.¹⁶⁾ 일부 군의 보고서 제목에서도 적시되어 있

9) 《皇城新聞》, 1904. 7. 9

10) 《皇城新聞》, 1904. 8. 5

11) 《皇城新聞》, 1904. 8. 6

12) 《皇城新聞》, 1904. 4. 21

13) 《大韓每日新聞》, 1904. 6. 21

14) 外務省 陸海軍省文書, MT(明治·大正文書) 1-194, 「北韓方面ニ於ケル露兵ノ行動情報」, 電受 제1102호, 元山 大木ヨリノ轉電, 林 공사→小村 외무대신

15) 《大韓每日新聞》, 1904. 8. 30

16) 『光武八年六月咸興郡各社俄兵各樣穀物所奪民人姓名及數爻并錄成冊』; 『光武八年六月高原郡俄兵經過時公廨民家被燒汁物及被掠物種成冊』; 『光武八年六月長津郡兩次俄兵經過時民間掠奪及被失各物種及成冊』; 『光武八年七月文川郡俄

듯이 이는 징발이라기보다는 점령군의 전방위 약탈 그 자체였다.

그해 가을 함흥의 러시아군은 양식을 징발하고 도로를 수축케 하였고, 회령에서도 매일 역부 400~500명씩으로 북으로는 회령-무산-갑산, 남으로는 부령-경성 간 도로를 주야로 닦도록 강제했다.¹⁷⁾ 러시아병 1,200여 명과 군마 1,500여 필이 북청에 유숙하면서 군 연무대 적치 군량을, 홍원에 들어온 러시아군 3천여 명은 보리 300석을 강제 징발하였다. 단천에서도 양미와 마랑, 食草 등을 자의로 빼앗으며 연로 변에 추수한 곡식과 靑草를 말을 놓아 먹게 했고, 성진의 전선가설과 도로수축에 역부 300~400명을 강제 동원하는 한편 삼대천 다리 600여 칸을 만들기 위해 삼림을 채벌하는 등 민폐가 극심했다. 성진항에서는 1만 3천, 부령에서는 1만 5~6천 포대의 보리와 마랑을 징발하여 중국인과 한국인 선박으로 각기 블라디보스토크 방면까지 수송하였다.¹⁸⁾ 단천군수에 따르면 ‘十室九空’의 형편으로 군량미와 마랑초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징발당했고, 성진에서는 耗米 수백 석을 억지 구입하고 전신주 가설과 산악 군용도로 개척에 동원된 주민을 채찍질하고, 교량건조를 위한 송판 채벌과 운반 과정에서 인민의 부상이 이어지자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¹⁹⁾

러시아군 또한 일본군처럼 전보사와 우편국을 점령하였다. 1904년 4월 길주에 들어온 러시아군 32명은 일본 영사관과 우체국에 불을 질렀고, 성진의 청국과 일본 영사분관의 전신기계를 약탈하였다. 5월에는 러시아군의 단천 주둔으로 군 전보사 관리가 도망하여 북청 이북 교신이 두절되었고, 러시아 기병이 북청 전신국과 우편국을 점거 파괴하였다. 기병 22명이 원산 전보사도 파괴하였고, 기병 20여 명은 경성-블라디보스토크 간 전선을 가설한다는 명목으로 경성 전보사에 들이닥쳐 鐵絲 등을 약탈하였다. 8월에는 코사크 기병 13기가 함흥전보국을 점거했다.²⁰⁾

兵放火被燒人姓名及家庄汁物成冊』(『俄兵却掠成冊』, 奎, 17993, v, 1-6)

17) 《大韓每日新聞》, 1904, 8, 31; 9, 22

18) 《大韓每日新聞》, 1904, 10, 4; 10, 7; 11, 7; 12, 21

19) 《大韓每日新聞》, 1904, 11, 18

20) 《皇城新聞》, 1904, 4, 23; 4, 29; 5, 28; 6, 1; 6, 4; 6, 30; 8, 8

동북 국경지방에서는 자국군대의 유·불리에 따라 전신선을 절단하거나 가설하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러시아군이 전선을 설치하고 길을 닦는 등 공사 과정에서 지역민과 군인들의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다. 러시아군은 성진에서 북청으로 후퇴하면서 북청-함흥 간 전선을 절단했고,²¹⁾ 경흥군에서 60리에 걸친 전신선 가설에 지역민을 동원했다.²²⁾ 러시아 交界官은 블라디보스토크-경흥 간 전선가설 과정에서 電桿木 운반과 목재가공 및 조달 등에 편의제공을 독촉했다.²³⁾ 鏡城에서는 200여 명의 주민을 도로 수축과 전신선 가설에 동원한 결과, 경성-블라디보스토크 간 전신선 가설을 마쳤다.²⁴⁾ 그러나 이후 상황이 바뀌어 1905년 1월 무렵 북청에서 이원으로 퇴각하면서는 전신주를 뽑아버리고 전신선을 걷어갔다.²⁵⁾ 그 과정에서 우편이 끊겨 보고체계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²⁶⁾

함경도 지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극심했다. 1904년 음력 8월 7일부터 몇 차례 서리가 내린 이후 추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인민이 환산하는 형편이었다.²⁷⁾ 이듬해에는 8월 15일 이후 장맛비로 대소하천이 범람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가옥의 침수 파손과 인명손상이 따랐고 작물수확도 난망한 상황이 되었다.²⁸⁾ 특히 두만강 북방 국경 6鎭 일대를 보면, 경성군의 경우 징발과 잦은 노역은 물론 강우로 인한 농작물 유실로 평년의 4할만 수확하였다. 부령군은 많은 주민이 산간으로 피난했고 큰 비로 농작물 대부분이 유실되어 3할, 회령군은 3할, 종성군과 은성군은 5할만 수확하였다. 특히 회령의 경우 주민 800여 호가 국경을 넘어 피난한 상태로 도합 1,708냥에 대한 세는 戰後에도

21) 《皇城新聞》, 1904. 4. 23

22) 《皇城新聞》, 1904. 6. 30

23) 《皇城新聞》, 1904. 7. 11; 7. 18

24) 《大韓每日申報》, 1904. 7. 29; 《皇城新聞》, 1904. 8. 9

25) 《大韓每日新聞》, 1905. 1. 31; 2. 15

26) 《大韓每日新聞》, 1905. 10. 24; 「성진감리 심후택이 의정부찬정 외부대신에게 공문(제4신)」, 앞의 책, 64쪽. 후자는 9월 30일 발송한 것인데, 무려 한 달 반 걸린 11월 15일에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27) 《大韓每日新聞》, 1904. 10. 21

28) 《大韓每日新聞》, 1905. 9. 20

징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²⁹⁾ 경원군은 약 800호가 間島로 피난해 전쟁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경흥군의 간도 피난민 약 4천 명 중 1천여 명도 귀환 가능성이 없고 농작물도 5할의 수확만 거두었다 한다.³⁰⁾

러시아군의 탐학을 이기지 못한 단천 이북 지역 피난민이 급증하였다. 그 요로인 함흥부에서 유민들의 유리 이유·거처 등을 탐문한 결과 이들은 주로 성진과 단천 사람들로 매일 100여 명 이상이 강원도 등지로 남하하고 있었다.³¹⁾ 유이민 현상은 남하하거나 만주나 연해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주청공사 閔泳喆은 北京·天津·塘沽 등지에 왕래가 빈번하고, 동북3성 지방 또한 우리나라 유이민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³²⁾ 1905년 봄 무렵에 가면 명천을 경계로 양국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함경북도도 러시아군이 미곡과 육류 가격의 절반 혹은 3분의 1만 지불하거나 약탈하여 촌락이 텅텅 비었고, 늙고 병든 자만 남아 농사짓는 자가 없어 전야가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³³⁾ 이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은 농절기 노동력 강제동원과 기근으로 그 과정에서 민심이 극도로 격앙되어 있었다.

강제연행과 장기 수감의 경우는 1904년 3월 金河龍, 4월 하기우라마루[荻浦丸] 탑승선원들, 1905년 2월 길주 군수 李翼鎬, 4월 중성 군수 朱哲濬의 네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군에 체포되어 일본군 포로와 함께 러시아 핀란드만 인근까지 이송되었다.

첫 번째 사례 金河龍의 구두진술서[口供書]를 토대로 런던주재 일본 총영사가 작성하고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³⁴⁾ 김하룡 25세, 함경북도

29) 『咸鏡南北道各郡訴狀』 7冊, 光武 10년 10월 27일, 經理院卿 → 查檢員, 奎, 19162

30) 「咸鏡北道 六鎭地方 饑饉 實地調査 復命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하 公使館記錄)』, 1905. 12. 21

31) 《大韓每日新聞》, 1904. 12. 29

32) 「照會」 제18호, 1904. 6. 1, 奎, 17823

33) 《皇城新聞》, 1905. 5. 13

34) 外務省 外交史料館, 『韓國人俘虜送還ニ關スル件』(재 런던 총영사 坂田重次郎 → 외무대신 林董, 1906. 12. 13) 送 제95호

함흥군 짚리 거주 金炳善의 3남이다. 특징은 신장은 크고 코는 낮고 구레나룻을 기르는 용모로 일견 일본인과 흡사하다. 일본어를 할줄 알고 러시아어도 다소 이해한다. 그는 약 9년 전(1897~1898년경) 고향을 떠나 일본의 捕鯨船·客船 등의 승무원으로 일본연안 여러 항구 간을 왕래하던 중 전쟁이 발발되자 군용선 와이즈미마루[和泉丸] 승무원 일본인 이시아마[石山] 모(某)의 주선으로 이 배에 승선했다. 그는 1904년 2월 성진항에 도착한 후 두만강 가에 나아가 군사정찰을 보조하던 중 3월 29일 밤 慶興에서 이시아마와 같이 포로가 되어 우수리스크 인근 ‘미하일로프카’ 감옥에 갇혔다. 그 후 6월 15일 그는 동해에서 포로가 된 와이즈미마루 선원과 더불어 9월 30일 미하일로프카로부터 시베리아 각지를 경유해 ‘노보고로드’의 ‘메드베지[медведь]’로 호송 수감되었다.³⁵⁾

두 번째 사례는 하기우라마루[萩浦丸] 선원들이다. 1904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돌연 원산 앞바다에 나타나 前津港에 있던 일본 운송업자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 소유 상선 하기우라마루 선원을 강제 상륙시킨 후 수뢰를 발사하여 격침시킨 일이 있었다. 탑승자들은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메드베지 지역에 수감되었다. 하기우라마루 승선 인원 중 선장 시노자키 겐시로[篠崎兼四郎] 등 러시아로 송환된 23명 중 한국인은 사무원 韓得淸, 水夫 金致連·金鳳祐, 炊夫 야마구치 나가요시[山口長吉, 개명자], 板傍 高永植, 船僕 韓龍雲·玉岩甫·安志○·元서방³⁶⁾과 명단에서 누락된 함흥상인 金子完³⁷⁾을 합하면 10명으로 전체 포로 중 5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세 번째 사례는 길주 군수 李翼鎬다. 1903년 6월 군수에 임명된 이익호는

35) 이후 진행된 和泉丸 포로 명단에 김하룡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6월 탑승자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인 3월 밀정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었다.

36)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浦鹽艦隊元山來襲金州丸, 五洋丸, 萩浦丸遭難一件』(極秘) 『日露戰役ニ關スル個人損害要償事件調査報告』(1908. 2. 1)

37) 후일 金子完의 訴狀에 따르면 그는 4월 25일 북어 554同(시가 3천元)을 萩浦丸에 탑재하고 부산항으로 가다가 포로가 된 후 수년간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다가 강화 조약 체결 한참 후인 1906년에서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한다. 그는 “外兵의 싸움에 韓民의 피해가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호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 『各司謄錄』近代篇, 報告書 제8호, 1906. 6. 3. 함남관찰사 신기선 → 의정 부참정 박제순

1905년 2월 러시아군에게 체포되었다. 길주는 러일 양국군이 오고가는 지점으로 점령군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황을 중앙에 수시로 보고하던 길주군수를 러시아군이 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⁸⁾ 그러나 함북 관찰사는 그해 6월까지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주사 金粧炳을 봉세사검관으로 정해 내려보냈다.³⁹⁾ 10월 吉州 鄉長 이병섭도 內部 훈령으로 확인해본 결과 러시아군 30여 명이 갑자기 아문에 돌입하여 그를 경성군으로 끌고가 하루 숙박한 후 급하게 두만강을 건넜고, 그를 따르던 품팔이 金漢權이 22일에 돌아왔지만 어디로 향한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다시 러시아군에게 탐문한즉 ‘洋地力口息浦’를 거쳐 현재는 ‘力口息浦’에 있다고 한다.⁴⁰⁾

그는 연해주 크라스키노와 우수리스크에 일시 억류된 후 彼得堡[페테르부르크] 인근 熊洞(정확한 지명은 노보고로드 시 메드베지[медведь]로 ‘곰’이라는 뜻)에 호송되었다. 1908년 6월 4일 이익호는 내부대신에게 러시아군에게 잡혀가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사연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1904년 12월 일본 북진군대가 성진항에 들어오자 白米와 牛猪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군 상황을 정찰하여 군사령관 이케다[池田大介]에게 통보하고, 점임 宣諭使 훈령으로 각 군수에게 도로교량 수축과 전신주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가 체포된 데에는 宣諭使로서의 역할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일의정서」 이후 선유사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경성주둔 러시아 기병 300명이 1905년 2월에 길주군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어 총칼로 난자하여 왼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어 혼절하였다 한다. 이어 鏡城府로 옮겨 3일 동안 위병소에 감금되었다가 다시 煙秋(노보키예프스크[Новокиевск], 현 크라스키노)의 러시아 군영과 蘇王嶺(니콜

38) 1904년 5월 이익호는 외부대신에게 4월 5일 명천군에 들어온 러시아군 300명이 11일에 길주군에 들어와 연로의 전선이 모두 폐철되었다는 우편 보고를 하였고(『咸鏡南北道來去案』, 1904. 5. 25), 같은 해 6월에는 함경남북도 선유사에 임명되었다(『起案』, 1904. 6. 22). 그는 1905년 1월 함경남북도 봉세감리로 驛屯土 賭租와 殖利錢 수납 등의 역할도 병행하였다(『訓令照會存案』, 1905. 1. 10).

39) 『訓令照會存案』, 1905. 6. 17

40) 《皇城新聞》, 1905. 11. 3

스크-우수리스크(Никольск-Уссурийск))로 이송된 후 일본 요리점 빈집에 5개월 간혀 있었다. 이때 그는 우수리스크 경시총감에게 ‘일본과 한국은 不共戴天之讐’로 “한국 임진년 倭亂에 군수의 先祖가 왜인에게 죽어서 世世로 원수로 아는데 무슨 마음으로 후대하였겠습니까? 만일 후대할 마음이 있으면 나라의 역적이요, 선조에 불효가 되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⁴¹⁾ 그러다가 그해 6월 철로로 주야 90여 일 걸려 메드베지로 호송되어 이곳에서 4개월 동안 일본군 포로와 동거했다.

네 번째 사례는 중성 군수 朱哲濬이다. 1905년 4월 9일 중성에 돌입한 러시아군은 그를 체포하여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보냈다는 짤막한 신문 기사가 있다.⁴²⁾ 주철준은 연해주 우수리스크 감옥에 갇혔고 석방을 위한 두 차례 청원서를 러시아 당국에 올린 바 있다. 또한 그의 하인 오상근과 최창손이 그를 따라오다가 간도 왕청현 인근인 하마탕[蛤蟆塘]에서 러시아군에게 체포된 후 같이 수감되었고 주철준은 이들의 석방을 청원했다.⁴³⁾ 자료가 충분치 않아 오상근 등이 풀려났는지, 이후의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철준 또한 시차를 달리하여 시베리아 열차로 메드베지 이송 후 다른 한국인 포로들과 같이 수감된 것은 자료상 분명하다.

군수 재임 당시 이익호는 “다스리는 방법이 寬猛을 고루 갖추고 積弊의 형국에 痼癘이 가히 떨어졌음”, 주철준은 “청렴하여 백성이 칭송하고 의지하여 함께 善政을 칭송하고 匪擾를 방어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聲名이 널리 퍼지며 이 같은 能才로 가히 巨局 시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04년 10월 10일 의정

41) 「1905년 4월 16일 연해주 수비대장(начальник обороны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이 연해주 군사총독에게 보내는 함경북도 길주군수 이익호의 청원서 첨부 보고서」 #첨부: 「함경북도 길주군수 이익호가 니콜스코-우수리스크(Никольско-Уссурийский)시 경시총감에게 보내는 청원서」, РГИАДВ(러시아국립공동역사문서보관소), ф.1,оп.2,д.764,л.15

42) 《皇城新聞》, 1905. 5. 8

43) 「대한국 함경북도 중성군수 겸임 회령군수 주철준이 대아라사 소항령 감사에게」, РГИАДВ, ф.1,оп.2,д.764,л.70

부 회의를 통해 황제가 치적을 칭송한 바 있었다.⁴⁴⁾ 그러나 체포된 한참 후인 1905년 10월에서야 두 사람은 공식 면관되었다.⁴⁵⁾ 해임사유는 “처음부터 部(내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유 없이 관직을 비우는 것은 事體를 헤아려보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⁶⁾

러일전쟁 종전 이후 하기우라마루 한국 승선인 10명과 김하룡, 두 명의 군수들은 각기 다른 험난한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먼저 이익호는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인 1905년 11월 일본군과 함께 석방되어 철로로 독일 항구에 도착한 후 베를린을 거쳐 英日 양국 회사의 輪船으로 10여 국을 경유해 다음 해인 1906년 2월 4일 고베를 거쳐 서울에 비로소 도착하였다.⁴⁷⁾ 돌아온 후 그는 억울함을 內部에 호소했고,⁴⁸⁾ 그 결과 면징계되었다. 그러나 이익호는 1906년 2월 15일에는 통감부 정무총장 쓰루하라 마사요시[鶴原正吉]의 조회로 러시아군에게 인장을 빼앗긴 일을 추궁받게 된다. 이에 내부에서는 관인 등 공용물을 잃어버린 것은 마땅히 論警해야 하나 그때의 사정을 참작하여 면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조회를 한 바 있다.⁴⁹⁾ 또한 과거 1904년 8월부터 함경남북도 奉稅監理를 겸임하던 중 상납전 5,359냥 3전을 犯用한 혐의로 납부를 독촉받게 되자 한 푼도 횡령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經理院에 호소하였다.⁵⁰⁾ 이익호는 1906년 9월 경성 군수에 임명된 후 1908년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⁵¹⁾

44) 『官報』, 1904. 10. 10

45) 《皇城新聞》, 1905. 10. 11

46) 《皇城新聞》, 1905. 10. 13

47) 『統監府文書』, 「內部大臣에게 提出한 李翼鎬의 露國捕虜記」(隆熙 2年 6月 4日), 原 吉州郡守 現 鏡城郡守 李翼鎬 → 內部大臣 任善準; “前 吉州郡守 李翼鎬氏가 日俄戰爭 중 俄國軍隊에 被捉하여 再昨年 日本 俘虜와 兵庫縣으로 前往하였다가 그 후 本國으로 到來하였는데……” 《皇城新聞》, 1908. 6. 25

48) 《大韓每日新聞》, 1906. 4. 17

49) 《皇城新聞》, 1906. 2. 16; 2. 21

50) 『咸境南北道各郡訴狀』 7冊(光武 10년 10월 23일, 經理院卿 → 厘正所), 奎, 19162

51) 『大韓帝國官員履歷書』, 1책 21권 참조.

한편 이익호는 러시아군에게 체포될 당시 몰수당한 군수의 인장과 재산의 반환을 주장하였고, 러시아 측도 이를 수긍하였다. 그 결과 물품가액으로 우편 환 수수료 40코페이카를 공제한 19루블 20코페이카에 상당하는 일본화폐 121원 63전으로 바꾸어 마쓰다[松田]은행을 경유해서 노브키예프스키 국경 사무관 밀 류노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영사 노무라[野村基信]를 통해 1909년 2월에 전달되었다.⁵²⁾ 이는 換과 證書로 일본 외무성 회계과장에게 예치되었다가 통감부 총무관방장에게 송부되었다.⁵³⁾

주철준도 이익호와 함께 일본 포로 탑재선에 동승하여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 영국을 거쳐 도중에 수송선 '벤쿠버'호로 갈아타고 1906년 1월 말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2월 9일 고베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聴取書を 작성한 후 11일 오후 8시 시모노세키발 기선 이치자키마루[壹崎丸]로 부산항을 향했다.⁵⁴⁾ 결국 체포된 후 무려 10개월 만에 탁지부에서 고베-부산 간 여비 41원 30전을 지불한 후 귀국할 수 있었다.⁵⁵⁾ 일본 측이 선지불한 이익호와 김하룡의 여비는 1906년 3월 15일 의정부 회의를 거쳐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탁지부에서 지불했다.⁵⁶⁾

일본군 포로들은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인 1905년 11월부터 귀국을 시작했지만 하기우라마루 한국인 선원들은 한참 후인 1906년 6월 이후에서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초기에 귀국하지 못한 이유는 교전 상대자인 일본군이 아닌 민간인, 그것도 한국인이란 이유가 큰 것이었고 귀국비용 마련

52) 『統監府文書』, 「露日戰爭 중 러시아 군대에 체포된 前 한국 吉州郡守 李翼鎬의 소유물건 환부에 관한 件」, 在浦鹽 영사 野村基信 → 외무대신 小村壽太郎, 1909. 2. 18

53) 『統監府文書』, 「전 한국 길주군수 이익호의 소유물건 환부 방법에 관한 건」, 외무차관 → 통감부 총무관방장, 1909. 2. 26

54)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抑留セラレタル韓國人歸還一件』, 山口縣 지사 → 內務次官(1906. 1. 31); 내무차관 → 외무차관(1906. 2. 19) 내무성 兵 乙 제28호

55) 『東萊港案』, 奎. 17867. 1906년 4월 2일 의정부 참정대신 朴齊純 → 동래감리 李懋榮

56) 『起案』, 1906. 3. 15, 奎. 17746

도 수월치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러시아주재 일본 공사관에 여비 주선을 탄원하여 3천 원을 지불받게 되었고, 통감부와 협의 후 송환되었다.⁵⁷⁾

그런데 김하룡의 경우는 1905년 11월경 전신 水腫症에 걸려 귀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모스크바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잠시 요양 후 현지 미국 영사에게 송환 수속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했고, 러시아 관헌에게 다시 호소하여 겨우 포로증명서를 얻었다. 이후 그는 종이꽃을 만들거나 馬毛로 시계 덮개를 만들고 혹은 造船工이 되어 겨우 糊口를 마련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그는 ‘펜시아’·‘사마리’·‘다리우르스카야’·‘메드베지’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1906년 9월 하순 페테르부르크 경찰서에 가서 일본과 중국 영사관, 구한국 공사관원 등을 통해 비자 신청을 부탁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10월 하순 러시아 경찰당국의 허가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하는 러시아 기선 ‘라르가’호에 탑승하여 영국 ‘뉴캐슬’로 보내졌다. 11월 3일 하선한 김하룡은 이 지역의 ‘프리스톨, 테르레츠’ 5호로 ‘캐서린 맥버슨’에 체재한 해군기수 야마시다[山下茂太郎]를 만나 그의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같은 달 10일 여비를 주선받아 기선으로 12일 런던 도착 후 일본 총영사관에 귀국과 보호의 방법을 청원했다.

그는 日本郵船會社 지점과 교섭하여 런던-요코하마 간 하등 승객으로 船賃 16파운드를 선지불하고 11월 15일 출발했다. 입체금 합계 9,075파운드는 일본외무성을 경유해서 한국 정부에서 돌려받기로 한 후 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었다.⁵⁸⁾ 김하룡은 다시 1907년 2월 6일 일본우선회사 기선 야마구치마루[山口丸]로 上海에서 고베[神戸]를 경유해서 가나가와[神奈川]에 입항한 후 旅店 니시무라헤야[西村屋]에 숙박할 때 사복순사 1명이 부속되었다.⁵⁹⁾ 그는 2월 17일 오후 4시 일본우선회사 기선 우에가와마루[上川丸] 편으

57)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抑留セラレタル韓國人歸還一件』, 본野 공사 → 외무대신(1906. 10. 20) 제165호. 그러나 이 기록에 따르면 ‘한인 포로 11명’으로 되어 있다.

58) 앞의 각주 34)와 같음.

59) 外務省 外交史料館, 『俘虜韓國人送還ノ件』(神奈川縣 지사 → 외무대신, 1907. 2. 7), 秘제187호

로 귀국 길에 올랐다.⁶⁰⁾ 일본 엔화로 환산한 제 비용 청구액 합계 39원 50전은 그해 6월 통감부 총무국장 쓰루하라[鶴原定吉]를 통해 탁지부에서 일본 정부에 지불했다.⁶¹⁾

전쟁에 동원된 후 체포된 이들 중 김하룡은 가장 먼저 체포되어 가장 늦게 귀환하였고, 하기우라마루 한인 선원은 귀국여비 마련도 지난하였다. 국경의 행정 관직자인 이익호와 주철준만 그나마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다. 러시아 참모본부의 취조에 근거한 모토노[本野] 공사의 보고는 러시아에 끌려간 포로는 총 2,104명으로 이 중 중국인은 8명, 한국인은 24명, 영국인 6명으로 歐露(우랄산맥 서쪽을 말함)에 있는 1,875명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229명은 이르쿠츠크 방면에 수감된 상태였다. 포로 중 사망자는 23명으로 그중 한국인 1명, 중국인 1명도 포함되었고 잔류자는 일본군 병자 40명과 중국인 7명과 한국인 23명, 일본인 1명이었다.⁶²⁾ 수용소에서 사망한 이름 모를 한국인 1명을 제하면 나머지 9명은 어떤 경로로 체포된 후 어디에 수감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귀환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여하튼 이름이 확인된 13명 모두는 본의 아니게 험난한 세계일주를 한 셈이다.

60) 防衛省 防衛研究所, 『陸軍省 密大日記』, 『韓國人金河龍諸費用支出ニ關スル件』(1907. 1. 10); 外務省 外交史料館, 『俘虜韓國人送還ノ件』(神奈川縣 지사 → 외무대신, 1907. 2. 18), 秘제187호-1

61) 『各部通牒』, 제260호, 奎. 17824. 1907. 3. 9. 탁지부대신 민영기 → 의정부참정대신 박제순 및 『各部通牒』, 제260호, 奎. 17824. 1907. 6. 4. 탁지부대신 고영희 → 의정부참정대신 이완용. 그런데 김하룡 안전과 관련하여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외무대신 하야시 타다스에 조회하여 어용선 和泉丸은 1904년 2월 4일 육군에 빌려주어 동년 4월 중순경 제1군 수송 때문에 인천 및 진남포 방면에, 이후 6월 격침 때까지 성진 방면에서 사용한 일이 있었지만 이미 2월경 일본군은 성진 부근을 점령하였고 김하룡은 일본 군용선을 타고 軍務에 복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기에 그가 지불한 제 비용은 육군성에서 지출하기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抑留セラレタル韓國人歸還一件』, 육군대신 寺內正毅 → 외무대신 林董, 1907. 1. 22. 제115호). 그러나 일본군이 처음 성진에 진출한 것은 1904년이 아닌 1905년 2월부터로 무려 1년의 시차가 있어 육군대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2)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ニヨル兩國俘虜員數及階級等調査一件』, 페테르부르크 本野 공사 → 西園寺 外무대신, 1906. 4. 19

III. 대내외 교역과 지역경제

러일전쟁은 한국 전 지역의 수출입 무역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은 1902~1904년간 한국 8개 주요 항구의 수출입 현황이다.

<표 1> 대외무역 수출입품 가격 항구별 대조표(1902~1904)⁶³⁾

(단위: 원)

지역 / 연도		1902년	1903년	1904년
인천	입	7,978,485	10,109,220	16,164,951
	출	2,642,415	3,497,826	2,458,060
진남포	입	612,092	915,814	2,316,900
	출	927,343	1,087,796	1,054,970
군산	입	102,071	411,045	594,102
	출	311,066	841,981	416,484
목포	입	210,850	311,653	310,165
	출	730,577	1,029,609	683,490
부산	입	2,711,204	4,210,633	6,410,318
	출	2,607,876	1,964,783	1,619,361
마산	입	32,979	29,212	48,897
	출	71,895	87,422	35,568
원산	입	1,876,267	2,180,764	1,058,245
	출	1,001,204	768,521	645,569
성진	입	7,492	50,842	11,802
	출	24,694	199,842	—
합계	입	13,542,429	18,219,183	26,805,380
	출	8,317,070	9,477,603	6,933,504

63) 『通商彙纂』, 「韓國三十七年對外貿易概況」(38年 9月 11日附 在京城帝國領事館報告)

이에 따르면 1904년의 한국 전체 수입무역은 과거 최다액을 보였던 1903년에 비해 약 5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주원인은 군용 경부·경인철도 재료의 수송과 군대 수요 증대 등에 있었다. 수출총계는 1903년에 비해 약 2할 5푼, 1902년에 비해 약 1할 6푼, 1901년에 비해 약 1할 8푼 감퇴로 미국 수출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결국 수입증가와 수출감소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 항구 중 인천과 부산에 이어 순위 3위인 함경도 원산은 수입·수출 모두 감소하였고 8위인 성진은 전쟁기간 수입이 4분의 1 이하로 대폭 감소하고 수출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1880년 개항 이후 함경도 최대 무역항인 元山은 전쟁기간 일본군 점령지였다. 1895~1904년 10개년간 원산항 수출입내역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원산항 수출입 무역 일람표(1895~1904)⁶⁴⁾

(단위: 원)

연도/수출입액	수입액	수출액	총액	비고
1895년	2,090,344	1,622,630	3,712,974	입초 467,714
1896년	1,420,144	1,773,453	4,629,774	출초 335,309
1897년	2,103,770	2,526,004	4,982,144	출초 422,234
1898년	2,333,918	2,645,226	4,999,725	출초 311,308
1899년	2,317,977	2,671,748	5,916,308	출초 342,776
1900년	2,510,366	3,405,942	7,196,794	출초 893,574
1901년	3,121,930	4,074,864	7,236,063	출초 952,934
1902년	3,185,786	4,050,277	8,023,933	출초 864,491
1903년	3,636,929	4,462,053	8,098,988	출초 825,124
1904년	3,501,687	2,554,241	6,055,928	입초 947,446

<표 2>는 경성영사관의 통계와는 편차가 크지만 해당 지역 영사관이 작성한 것이기에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1904년 원산항 수출입 무역 총액은

64) 『通商彙纂』, 「元山三十七年貿易年報」(38年 9月 15日附 在元山帝國領事館報告)

605만 5,928원으로 1895년을 제하면 9년간 수출입액은 매년 순조로웠으나 전쟁 발발과 함께 강한 入超현상을 보였고 수출입 무역총액 또한 1901~1903년 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1903년도 무역총계와 비교할 때 전쟁 이후 실로 200여만 원 이상이나 감퇴하였다.

1904년 2월 전쟁이 시작되자 원산-일본 간 郵船 및 商船會社の 정기선은 휴항하였고 수출입 모두 장애를 받았다. 또한 러시아군이 성진 부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4월 중순 원산 거주 일본인들도 일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해륙교통이 모두 두절되어 미곡과 면포류 판매에 일대 타격을 받았고 해약도 잇따랐다. 4월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원산항에 내습하여 고요마루[五洋丸]·진슈마루[金州丸] 및 하기우라마루[萩浦丸]를 격침하였고, 또 6월 30일 러시아함대가 다시 원산항 내에 정박한 고운마루[幸運丸]·세이사마루[淸沙丸]를 차례로 격침하였다. 8월 9일 거류지 부근의 육전으로 시장의 거래도 거의 중지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행동 여하를 주시하는 상황이었다.⁶⁵⁾ 따라서 수송비는 평시의 몇 배로 뛰었고, 금리도 5리가 인상되는 등 금융계가 긴축되면서 대부금 회수도 쉽지 않았다. 일본 상인과 청국 상인들은 현금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韓商 파산자가 나왔다.⁶⁶⁾ 그러나 8월 14일 울산만 해전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패배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두절되었던 상거래와 부산 및 오사카와의 항해도 점차 회복되었다. 원산과 그 부근에서 러시아 지폐의 교환과 통용 금지 군령은 9월 20일부로 해제되었다.⁶⁷⁾

다음 해인 1905년 3월 중순부터 성진 이남 항로가 해금되어 교통이 전개됨과 함께 원산 왕래 상인도 현저히 증가했다. 이 기간 수출입 총액은 9만 9,251원으로 전년 같은 계절과 비교하면 13만 8,421원이 감소하였지만, 4~6월 간 원산항의 수출입 무역 총액은 179만 4,170원(수입액 130만 9,498원, 수출액 48만 4,672원)으로 수출입 총액은 전년도 같은 계절과 비교하면 무려 77만 1,074원

65) 『通商彙纂』, 「元山ニ於ケル時局ノ影響(其八)」(37年 9月 13日附 在元山帝國領事館報告)

66) 高尾新右衛門, 1916, 『元山發展史』, 啓文社, 355쪽

67) 위의 책, 353쪽

격증했고, 그해 1~3월과 비교해도 14만 1,870원 증가하였다. 1년 전은 초기 전쟁단계로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두 차례에 걸친 원산항 내습과 거류지 부근의 육상전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기 때문이었다.⁶⁸⁾ 7월 이후는 그간 러일 양군의 군자금 살포와 군수품 매입을 목적으로 한 물품 반입이 격증했다.⁶⁹⁾ 그러나 10월 이후부터 일반상품의 수입과 더불어 흥작으로 곡물수입도 감퇴되었다. 특히 12월에 가면 그해 초 일시 폭등했던 러시아 루블화 폭락으로 무역은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⁷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1905년의 무역은 원산항 개항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 원산항 3개년간 무역 대조표(1903~1905)⁷¹⁾

(단위: 원)

구분	외국무역			국내무역							총계
	수출	수입	소계	이출			이입			소계	
				외국화물	내국화물	계	외국화물	내국화물	계		
1903년	768,531	2,185,781	2,954,312	1,015,748	1,161,257	2,177,205	195,720	1,216,773	1,412,493	3,589,698	6,544,010
1904년	645,569	1,064,324	1,709,893	158,033	831,801	989,834	927,590	846,509	1,774,099	2,783,933	4,473,826
1905년	617,855	3,954,785	4,572,640	1,361,361	920,891	2,282,232	1,083,104	1,303,714	2,386,818	4,669,050	9,241,690

위의 〈표 3〉에 따르면 대체로 1904년은 전년에 비해 무역액이 약 3할 감소하였고, 1905년 大豆 흥작에 따라 수출은 전년보다 다소 감퇴했지만 인구격증과 러일 양국군이 함남북에 살포한 군사비와 명태어획 호황으로 구매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었다.⁷²⁾

68) 『通商彙纂』, 「元山三十八年第二季貿易」(38年 12月 15日附 在元山帝國領事館報告)

69) 『通商彙纂』, 「元山三十八年第三季貿易」(39年 1月 29日附 在元山帝國領事館報告)

70) 大藏省 理財局, 『(秘)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第一銀行ノ部」(1908년 8월); 『通商彙纂』, 「元山三十八年貿易年報」(韓國統監府 調査) * 1906년 조사 내용

71) 『通商彙纂』, 「元山ニ於ケル最近三年間貿易狀況」(韓國統監府 調査) * 1906년 조사 내용

72) 高尾新右衛門, 1922, 『元山港』, 東書店, 104쪽

함경도 제2의 국제무역항인 成津은 전쟁 이전인 1902년 원산을 기점으로 북부 함경도 연안을 왕래하는 소증기선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고베-블라디보스토크 항로의 日本郵船會社 기선이, 1903년부터는 오이에 [大家七平]의 일본해항로 기선도 운행을 개시하였다.⁷³⁾ 개전 직후 성진의 물가 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성진 지역 물가 상황표(1904년 1~3월)⁷⁴⁾

기간/품명	和金币	일본목면	방적사	백미	粟	打綿	燐寸	大豆	荒銅	牛皮	砂金
1월 말	3원10전	1원30전	4원70전	15원40전	7원50전	18원30전	24원	6원80전	19원20전	24원	4원65전
2월 말	3원20전	1원40전	4원80전	16원	8원40전	18원30전	25원	6원60전	20원	28원	4원90전
3월 말	3원50전	1원50전	5원20전	17원30전	9원	18원50전	27원	7원30전	18원	28원50전	4원50전
단위	1疋	1疋	1丸	1石	1俵(6斗)	20丸	1箱	1石	100斤	100斤	1匁

수출입품 모두 1904년 2월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다. 특히 수입 품으로는 일본 金巾과 방적사, 수출품인 白米·大豆·牛皮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원래 성진과 그 이북 지역은 러시아 지폐 루블이 지장 없이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상인들이 수수를 거절하였고, 지역민들도 꺼려하여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 결과 2월 한화 1원에 590문이던 것이 3월에는 500문으로 하락했다.⁷⁵⁾ 거기에 더해 4월 러시아군의 성진과 길주 점령, 일본 거류민 50여 명의 원산 철수 이후부터 1905년 5월 동해해전으로 발틱함대가 패배할 때까지 1년 이상 성진은 러시아 점령지 또는 러일 양국 교전지 역할을 하였다.

73) 『通商彙纂』, 「城津三十六年貿易年報」(38年 12月 15日附 在城津帝國領事館分館報告)

74) 『通商彙纂』, 「城津ニ於ケル時局ノ通商航海ニ及ホセル影響」(37年 2月 29日附 在城津帝國領事館分館報告); 『通商彙纂』, 「城津ニ於ケル時局ノ貿易ニ及ホセル影響(其二)」(37年 4月 4日附 在城津帝國領事館分館報告)

75) 『通商彙纂』, 「城津ニ於ケル時局ノ貿易ニ及ホセル影響(其二)」(37年 4月 4日附 在城津帝國領事館分館報告)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 지역은 무역거래 기록조차도 남길 수 없었다. 이후 성진항의 1905년 4월부터 6월간 무역상황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는데, 그 액수는 4만 6,304원 22전이 되었다. 이 기간은 1904년 10월 일본군의 함경도 軍政시행 이후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고 六鎭 지방 상인의 통행도 두절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언제 내습할지 알 수 없어 원산 지역과의 항해도 원활치 않았다. 게다가 원산-성진 간 항해 선박은 모두 군용선박으로 징발되었기 때문에 상품운반이 두절되어 군용 외에는 거래가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시장은 위축되었고 상거래도 휴지기를 맞게 되었다. 이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징발 도살 결과 生牛 수도 현저히 감소하여 평시의 2배 이상 등귀했다.⁷⁶⁾

1905년 6월 이후 일본 군대의 경성 이북 전진과 함께 일본 상인들은 상거래 구역을 확장하였지만 군정시행으로 내지행상을 허가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항해업자가 소증기선을 증선하여 연안항로는 점차 수송력이 회복 중에 있었다. 8월 慶尙號가 경성에서 러시아함의 포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지만, 9월 러일 간에 강화가 성립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자 지역 인심도 비로소 안도하게 되었다 한다.⁷⁷⁾

러일전쟁 이후 상거래 부진과 지역경제권의 악화는 원산과 성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함경도 역내권 전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쟁 기간에도 기타 군소 항구와 포구에서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거래관계 현황은 <표 5>와 같다.

특히, 영흥의 경우 1903년 거래기록이 없었음에도 1904년 내·외국품 수출입과 내국품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즉, 전쟁의 영향으로 1904년 모든 항구 포구의 총계는 1903년에 비해 내국품 수출은 약 5.9배, 외국품 수입은 약 7.3배 감소했고, 내국품 수입은 약 2.7배의 비율로 미증유의 감소폭

76) 『通商彙纂』, 「城津三十八年第二季貿易」(38年 7月 6日附 在城津帝國領事館報告)

77) 『通商彙纂』, 「城津三十八年第三季貿易」(38年 12月 18日附 在城津帝國領事館報告)

〈표 5〉 함경도 각 항구·포구별 수출입 거래 상황(1903~1904)⁷⁸⁾

항구·포구/ 수출입별	내국품 수출		외국품 수입		내국품 수입	
	1903년	1904년	1903년	1904년	1903년	1904년
永興	—	2,113	—	4,768	—	164
新浦	32,856	6,693	46,105	3,497	24,408	29,008
端川	78,498	21,605	122,947	19,118	26,721	12,387
明川	74,057	7,767	89,329	4,350	20,477	5,367
鏡城	151,171	17,259	190,404	41,367	160,482	26,133
靑津	47,807	2,516	67,619	4,523	8,920	3,698
新昌	88,133	18,556	152,066	15,705	115,387	43,845
前津	5,625	7,372	5,681	932	946	9,101
遮湖	72,159	7,931	109,224	8,165	29,820	5,593
西湖	4,250	722	7,101	9,666	417	2,754
慶興	22,903	5,202	44,346	2,104	34,703	17,695
총계	577,459	97,736	834,822	114,195	422,281	155,745

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러일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전장이 되었던 함경도 지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특수 현상에 따라 다른 지역 대부분의 항구들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초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성진과 원산은 물론 군소 항구와 포구까지도 수입과 수출 모두 큰 감퇴를 나타내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 외에 함경도의 주요 수출품인 명태(북어) 어업도 일본 어민의 연안어업으로 침해받고 있었다.⁷⁹⁾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의 어업침탈은

78) 『通商彙纂』, 「元山三十七年貿易年報」(38年 9月 15日附 在元山帝國領事館報告)

79) 일본 어민들은 러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계속 한국 연해로 出漁하고 있었다(《皇城新聞》, 1904. 2. 24).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함대 출몰로 연안 어업이 위협하게 된 北海道의 일본 어부들도 함경도 일원에 출어하였다(《皇城新聞》, 1904. 7. 6). 그 결과 원산 상민 김원일·이국광 등이 정부에 청원하여, 함남 연해 등지의 북어어업을 일본인들이 주장하여 해변 漁戶의 凋殘으로 어민들은 그들의 고용이 되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였다(《大韓每日申報》, 1905. 11. 18). 러시아 수뢰정의 습격으로

通漁의 방식에서 직접이주 형태로 바뀌어가는 추세와 크게 연동되었기 때문이다.⁸⁰⁾

IV. 저항과 협력의 사례

이런 현실에서 러일전쟁 기간 최초의 반일 의병봉기가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1904년 3월 20일 함경도 함흥에서 의병이 구식무기를 들고 기의한 것을 시작으로,⁸¹⁾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출현하였다. 그날 밤 11시 반 의병 약 200명이 봉기하여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일본군 파견대와 교전하였다. 이때 의병 사망자는 5명, 부상 약 20명, 포로 36명이었다. 의병이 사용하던 무기는 화승총·권총·刀槍 등으로 일본군이 노획한 서류는 盟約連判狀 등 다수이고 의병 軍旗 1개도 압수하였다. 일본군은 병사 1명이 부상하였을 뿐이다.

당시 러시아군이 함경도 북부에 주둔하고 ‘淸匪’와 ‘홍후즈[紅鬍賊]’ 등 변경의 마적도 수시로 출몰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상황(삼수·무산·길주·경흥 등지의 사례⁸²⁾)에서 스스로의 방비를 위해 4~9월 사이 무산과 후창의 경우 私砲를 설치하고 砲軍을 모집한 사실도 확인된다.⁸³⁾ 길주 군수는 20명의 別巡校

함흥·북청·고원 등지의 상인들도 8만원 이상의 손해를 호소한 일도 있었다(《皇城新聞》, 1904. 8. 8~9).

80) 朴光淳, 1994, 「日帝의 韓國漁場 침탈과 漁民의 對應」, 『經濟史學』 18, 74~78쪽

81) 「咸興派遣隊로부터 元山守備隊편의 報告電報의 件」, 明治 37년 3월 21일, 122쪽; 「咸興事件에 관한 陸軍 측의 情報報告의 件」, 明治 37년 3월 22일, 『日韓外交資料集成』, 125~126쪽

82) 《皇城新聞》, 1904. 4. 9; 5. 12; 5. 27; 8. 6

83) 《皇城新聞》, 1904. 4. 4; 5. 12, 《大韓每日新聞》, 1904. 9. 20

파견을 요청했다.⁸⁴⁾ 러시아군에 의해 군기창과 순검청이 불탄 장진에서는 군수가 駐隊 혹은 私砲를 설치하는 예에 따라 사포를 설립하자고 정부에 청의한 일도 있었다.⁸⁵⁾ 이 외에 사포를 모집하여 지방 치안에 주력하는 사례도 많이 보인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한국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몇 차례 교전이 있었다. 평안도의 안주·정주·가산·박천 등지 러시아 병의 부녀집간과 약탈 소식을 들은 평남진위대 위관과 병정 수십 명은 3월 러시아군을 박천까지 추격하였고, 강계에서도 진위대가 러시아군을 사격하여 축출한 사실이 확인된다.⁸⁶⁾ 5월 러시아군은 돌연 함흥에 나타나 한국 군대와 충돌하였다. 이들은 북방에서 남하한 기병으로 5월 10일 평안도 安州에서 일본군에게 패주하고 덕천·영원을 거쳐 19일 오후 7시 함흥으로 들어왔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함흥 주둔 진위대는 약 1시간 접전하여 러시아군을 성 밖으로 격퇴시켜 그들은 장진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한국군 1명 전사, 러시아군 1명이 부상하였는데 러시아군의 방화로 민가 수백 호가 소실되었고 함흥 이북의 전선과 전신주의 과반은 지역민이 파괴하여 전보도 불통되었다.⁸⁷⁾ 전자는 평안도 진위대와 일본군의 합동작전으로 한국군이 일본군에 부속된 것이었고, 후자는 러시아 패잔병사와 진위대 사이의 우발적인 충격전이었다.

러시아군의 도하와 불법점령 과정에서 한국군과의 소규모 전투는 그해 가을에도 있었다. 그러나 방어차 함경북도에 출동하였던 평양진위대는 오히려 그들에게 퇴축되어 철원까지 후퇴한 바 있다.⁸⁸⁾ 원래 대한제국 정부의 입장은 러시아군의 불법행패에 대해 파병 격퇴하는 것이었는데, 이후 입장을 바꾸어 단천 이북 러시아군 주둔 지역 군수에게 담판하여 금단토록 하는 소극적 대응

84) 《皇城新聞》, 1904. 5. 27

85) 《大韓每日新聞》, 1905. 1. 2

86) 《皇城新聞》, 1904. 3. 7~8

87) 「韓露 兩國 交戰狀況 成立時期에 關한 件」(外交官補 岡部 稿), 『日韓外交資料集成』, 318~319쪽

88) 《大韓每日新聞》, 1904. 9. 17

으로 바뀌었다.⁸⁹⁾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러시아군 100여 명이 종성수비대에 난입해 총과 탄환을 빼앗고, 경무서의 軍刀 69자루를 수거하고 군기고 군물을 수색하여 파괴하였다. 러시아군 60여 명은 다시 12월 경무분서에 돌입하여 군도 25자루를 빼앗아갔고, 그 결과 북도변계 경무관 최남룡과 김병악이 면관되었다.⁹⁰⁾

1905년 6월 상순에는 북간도 관리사 李範允이 무산·회령·종성·경원 지방의 각 진위대로부터 모젤 단발총 약 3백 정을 징집하고, 射砲隊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부대 편성은 50명으로 구성된 6개 소대로 사격술을 갖춘 자로 조직되었고 모두 열은 황색의 한복을 착용했다.⁹¹⁾ 이들은 이범운 및 러시아 장교의 증명표를 휴대하였다. 당시 이범운 휘하의 주요 맹장들로는 김인수⁹²⁾·김도현·이충렬 등으로 러일전쟁 시기 반일의병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함경도 지역민과 러시아군은 한인 의용군(민병대) 부대를 편성했다. 이는 함경도 출신 포수들의 제안을 러시아군이 접수한 것인데, 러시아 육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조건으로 의용 민병대를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군 측의 기록에 따르면 베르딩 단발총으로 무장한 2천 명이 넘는 포수들은 아무런 보상도 요청하지 않았다 한다.⁹³⁾ 그 결과 러시아 분견대에 배속된 의용군부대는 기마부대로 편성되어 정찰과 보고 등을 수행했고, 그 보고의 정확성으로 인해 러시아군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들 한인 의용군은 7월 말~9월 1일까지 회령의 오류동과 창두령 전투에 실지 투입되어 러시아 분견대와 공동으로 반일 연합전선을 전개하였다.⁹⁴⁾

89) 《大韓毎日新聞》, 1904, 12, 16

90) 《大韓毎日新聞》, 1904, 12, 31

91) 북한의 연구에서는 이 부대를 '노랑포수의병대'로 표현하고 있다. 오길보, 1988, 『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24~125쪽 참조.

92) 전 진위대 참령 김인수는 전쟁 발발 후 대규모의 한러 연합부대를 편성하였다(《大韓毎日新聞》, 1904, 8, 11, 8, 31, 9, 5).

93) 러시아 군역사문서보관소(РГВИА), ф.846,оп.16,д.28225,л.4

94) 이에 대해서는 지리-통계부문, РГВИА, ф.846,оп.16,д.27184,л.л.1-2706; 參

이와는 정반대로 일어학교 졸업생 중 10여 명은 일본군 복진 시 통역으로 참여했고,⁹⁵⁾ 외국어를 하는 한국인 대부분도 전선으로 끌려갔다.⁹⁶⁾ 함경도 주민 중 일부와 進歩會員 · 一進會員들은 일본군을 위한 전쟁 수송대에 참여하여 보급품을 운반하고, 러시아 부대의 기밀 정탐을 위한 첩보활동에도 앞장섰다. 1904년 12월 함경도 진보회원들은 이 지역에 진출한 일본 군대의 병참임무를 자진 부담코자 당해 사령관에게 요청했고, 그들에게 지급되는 노임도 군사비로 헌납키로 결의한 사실이 있었다.⁹⁷⁾ 한편 1905년 4월 29일(음) 부령 근처 광산에서 한진기 · 김내용 · 박일화 · 심운찬 · 임응관이 서명한 ‘동학회’(일진회) 한글 전단이 러시아군에게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조속한 종전과 주민들이 고생하지 않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강한 쪽을 도와주고 약한 쪽을 괴멸하고자’ 三水와 甲山에 이르는 지점에서 합류하여 일본인들에 동조하자는 것이다.⁹⁸⁾ 함경북도에서는 1905년 6월 10일~10월 20일 사이 일진회원 연인원 11만 4,500명이 일본을 위한 군수물자 수송에 적극 협력하였다.⁹⁹⁾ 원산 거주 史泰均이라는 자는 복진 일본군 恤兵金으로 25원을 기부한 바 있다.¹⁰⁰⁾

일본군을 위한 함경도 지역 기밀정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¹⁾ 성진부 상인 李順昌은 전쟁 전부터 영사관 분관 주임 가와카미[川上]와 동행하여 러시아의 정세를 정탐하고, 전쟁 기간에는 길주와 경성 방면 러시아군 상황을 세 차례나 정찰 보고하던 중 러시아군에게 발각되어 포박된 후 틈을 보아 도주한 자였다.

謀本部 編, 1914, 『明治 三十七, 八年 日露戰史』(제10권), 偕行社, 449 · 457 · 469쪽 참조.

95) 《皇城新聞》, 1904, 2, 26

96) Rudolf Zabel, 이상희 역, 2009,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여행, 1904』, 살림, 245쪽

97) 「一進會員 首領 宋秉峻의 信書 寫本送付 件」, 『公使館記錄』, 1905, 1, 10

98) 전문, РГБИА, ф.В.А.оп.??, д.10385, л.29, 1905. 4, 29(음력)

99) 李寅燮, 1911,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二 附錄 上, 文明社, 526~572쪽

100) 防衛省 防衛研究所, 『明治 38年 2止 40年 恤兵金關係書類 3止(14)』(明治 38년 8월 23일, 해군대신 → 외무대신)

101) 이보다 앞서 개전 직전 참모본부 제1부는 독자적으로 소속 참모를 정보장교로 전장 예정지인 서울과 鏡城, 義州에 보냈는데, 경성에는 보병대위 櫻井久我治를 배치하였다.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參謀本部』, 中央公論社, 110쪽

성진 상인 金正元은 개전 이후 길주·명천·경성의 러시아군 상황을 보고하였다. 성진 상인 高雲峰은 경성 방면의 러시아군 상황을 가와카미에게 보고하던 중 러시아 한인 정탐의 밀고로 체포 수감된 적이 있었다. 성진 상인 康希元은 경성과 회령의 정황을 정찰하여 경성전신국을 통해 함흥영사관에 타전했다. 원산 주민 昔三鳳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건너가 그곳 정황과 러시아군의 남하 정보를 일본 영사관에 제공하고, 원산에서의 러시아 탐정의 정찰, 탐정 고용원의 고용방법 등을 보고하였다. 원산 주민 韓龍樂은 1904년 8월부터 다음 해 5월 까지 3회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를 정찰하고 러시아군의 남하 정탐을 위해 단 천까지 내왕했다. 원산 주민 白無曜은 1904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2회에 걸쳐 러시아군 남하 정황을 보고하였고, 원산 주민 全丙葉은 1904년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정찰 왕복을 행했다. 이 같은 ‘공로’로 1908년 1월 부통감이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각기 旭日八等章과 瑞寶八等章을 상신한 바 있었다.¹⁰²⁾ 이들의 勳功은 모두 ‘密偵’이 명분이었다.

일본 육해군성 문서를 통해 파악되는 함경도 일본군 점령지 이외 지역에서 원산 영사 오키 야스노스케[大木安之助]가 공사 혹은 대리공사를 경유해서 외무대신에게 보낸 정찰보고를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¹⁰³⁾

일본 측의 정찰 행위는 ‘本邦人’, ‘파견 한인’, ‘일반한인’, ‘믿을 만한 한인’, ‘가장 믿을 만한 한인’, ‘파견한 간첩’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지역민의 경우 ‘한인 정찰’ 내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은 ‘~로부터 온 한인’ 등으로 언급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일본인 간첩 파견을 통한 정보획득도 이루어졌다.

러시아군 측도 한국인 및 외국인·자국인 첩자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연해주 내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 국경 사이에 있는 포시에트만 방비를 위해 러시아 귀화 한인 1천여 명을 용병으로 모집하여 지원케 한 일이 한국 언

102) 「日露戰爭 中 有功 韓人 李順昌 外 7名 敘勳 上奏案 進達 및 移牒書 送付의 件」, 『公使館記錄』, 1908. 1. 29; 김윤희, 2009, 「러일전쟁기 일본군 협력 한인 연구－일본 정부의 훈포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5

103) 外務省 陸海軍省文書, MT(明治·大正文書) 1-194, 「北韓方面ニ於ケル露兵ノ 行動情報」

〈표 6〉 러일전쟁 당시 원산주재 일본 영사 정찰보고 내용

보고일	정보획득일	주 보고대상 지역	보고자
1904. 5. 21	5. 20	단천, 경성, 명천, 길주, 성진	‘본방인(本邦人) 정찰’
6. 3	5. 25	북청	‘파견한 한인’
6. 4	5. 25	성진	‘가장 믿을 만한 한인의 정찰’
7. 4	7. 3	경흥	‘한인 정찰’
8. 5	8. 3	함흥	‘믿을 만한 한인의 정찰’
8. 14	7. 25	성진	‘한인 정찰’
8. 18	8. 15	삼수, 갑산, 함흥	‘한인 정찰’
8. 24	8. 24	양덕, 영원	‘한인 정찰’
8. 26	8. 18	성진	‘한인 정찰’
8. 27	8. 14	경흥, 북청, 단천	‘한인 정찰’
9. 6	9. 4	함흥	‘한인 정찰’
9. 12	9. 8	북청, 삼수, 갑산	‘한인 정찰’
10. 4	9. 20	경흥	‘한인 정찰’
10. 10	9. 25	북청, 이원	‘한인 정찰’
10. 20	10. 16	단천	‘한인 정찰’
10. 26	10. 10~11	경성, 단천	‘파견한 간첩’
11. 8	10. 18	성진	‘한인 정찰’
11. 21	11. 4	경흥	‘한인 정찰’
11. 26	11. 13	경흥	‘한인 정찰’
1905. 1. 2	1904. 10. 10	블라디보스토크, 단천	‘한인 정찰’

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¹⁰⁴⁾ 북청 출신 전 궁내부 서기 박윤옥은 문천군 이현에서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엄중 조사를 받고 러시아군의 부탁으로 원산주차 일본군 수와 병정 종류 등을 조사코자 한 일을 토설하였다.¹⁰⁵⁾ 함흥주둔 일본

104) 《皇城新聞》, 1904. 3. 30

105) 《大韓每日新聞》, 1904. 9. 13

군도 문천의 이근수·이여환·박여근을 체포하였는데, 북청에서 러시아군 ‘통변(통역)’과 동모하여 일본 군대 수를 러시아군에게 통보해준 까닭이었다.¹⁰⁶⁾

한국인 첩자활용을 위해 러시아군 당국은 1만~1만 5천 루블의 비용을 마련하였고, 그 조직화 임무는 육군 준대위로 서울주재 러시아 공사관 소속이자 러시아어학교 교사로 장기간 근무했던 비류코프(Бирюков)에게 부여되었다. 함경도 현지 주민들로 이루어진 비밀정찰대 조직은 그의 러시아어학교 출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러시아군의 목적은 낯선 지역에서의 군사행동, 한국어에 대한 지식의 부족, 지도의 부재 그리고 단절된 지형 등 조건에서 이들로 비밀정찰대를 조직하여 활용하려는 데 있었다. 한인 첩자들은 현지 일본군의 활동·의도 그리고 현장 분위기 등을 감시하고 이를 러시아 본군대에 통보해주었다.¹⁰⁷⁾ 예컨대 1904년 11월 함남 북청 부근에서는 러시아어 통역관 출신인 金道一이 주도한 一新會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러시아군이 이들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행동을 탐정하고 밀정혐의자를 검거하고 억류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일본군 측은 진보회나 일진회 등과는 하등 관계 없는 단체로 이해하고 있었다.¹⁰⁸⁾

또한 프랑스인 플라르를 첩보요원으로 삼아 1905년 6월부터 매월 1,000루블, 총 3개월 분 3,000루블을 주어 7월 스트렐비츠키 대령의 훈령을 받아 청진으로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¹⁰⁹⁾ 9월에는 만주군 제1군단장의 명령에 따른 제13시베리아 보병연대 동방연구소 청강생 중위 듀코프(Дюков)의 기안으로 러시아 군인으로 구성된 비밀정찰대 구성안도 제출되었다.

이 문서는 한국에서의 러시아 첩보조직의 운영형태·소요자금·첩보내용

106) 《大韓每日新聞》, 1904. 11. 9

107) 지리-통계부문, РГВИА, ф.846,оп.16,д. 27184, л.л.1-270б

108) 外務省 陸海軍省文書, MT(明治·大正文書) 1-194, 「北韓方面ニ於ケル露兵ノ行動情報」, 1904년 11월 13일 號外 電報, 在京城 落合 참모장 → 대본영 참모차장. 예식원 참사관 김도일은 일본의 군사경찰 시행으로 러시아 간첩 혐의자(露探)와 일본 배척운동 인사들을 잡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1904년 8월 중적을 감추었다. 《大韓每日新聞》, 1904. 8. 11

109) РГВИА, ф.846,оп4,д.113,л.100; РГВИА,ф.846,оп4,д.113,л.125, 1905. 7. 14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로, 교육을 마친 하급 하사관 요원을 서울에 4명, 제물포에 1명, 부산에 2명, 마산포에 1명, 평양에 1명, 원산에 1명씩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을 군 복무에서 면제시키는 대신 단순한 회화, 간단한 편지 쓸 정도의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모든 요원은 한국 내 자신의 임지에 도착하는 날부터 일기를 작성케 하였다. 4년 동안 회화를 성공적으로 배우면 상여금 100루블을 지급하고, 간단한 쓰기를 익히면 상여금 150루블을 지불할 예정이었다. 모든 요원은 반드시 한국인들의 개인주택에서 생활해야만 하며 요원들의 관리에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연구소를 졸업한 장교를 임명토록 하였다.¹¹⁰⁾ 그러나 급작스런 종전으로 러시아 측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V. 軍政 시행과 鎭衛隊 폐설

만주 요양전투의 승리와 징병제 개정령 이후인 1904년 10월 8일 한국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는 함경도 내 일본군 점령구역을 두 곳으로 나누어 덕원 이남은 원산수비대장 아마노[天野] 중좌로, 그 이북은 함흥수비대장 우가키[宇垣] 소좌가 집행하는 軍政(Military Administration) 시행을 고시했다.¹¹¹⁾ 함경도 군정시행을 위한 9월 13일 고무라 외상 보고에서 하야시 공사는 러시아군을 소탕한 연후라도 이 지역은 ‘한 단계 진전된 방침’을 채용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점령지’로 간주하거나 적어도 관찰사나 군수 임면에 개입할 권리를 보유해두고, 기타 행정의 중요사항은 일본 관헌 또는

110) РГВИА, ф.846,оп4,д.113,л.л.312-315об. 만주군 제1군단장에게 보내는 비밀보고, 1905. 9. 21

111) 金正明 편, 1967, 『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146쪽

군사당국자와 협의케 하는 방침을 채용하는 것이다.¹¹²⁾

주차군사령관은 군정 시행의 명분을 함경도민의 반일감정과 비협조에 두었다. 예컨대 일본군이 전진하면 지방관은 은근히 주민을 도망하여 숨게 하고, 혹 정치적 당원을 각지에 집합시켜 궤변으로 지역민을 유혹하였다는 것이다. 군정은 해당지역 내 광산채굴, 삼림벌채사업 인가, 퇴거명령권, 관리의 취임 및 직무집행 거절권, 징발숙사 인부 雇入 등에 관한 군사명령 발령권, 민간인 군을 처분권, 한국 군대 이용권, 헌병과 보조원을 통한 군사경찰사무 집행권, 집회 혹은 신문 잡지 광고 등의 해산 정지 및 금지권, 관유 민유 물품 조사 사용 이동 및 수출 금지권, 총포 탄약 등 검사 압수권, 퇴거 명령권, 전보 검열과 발송금지 몰수권, 군사교통기관의 책임을 지방인민에게 부담하는 권한, 지방비로 도로교량 수리¹¹³⁾ 등 군사작전뿐 아니라 민간의 생활일반까지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였다.

함경도 일본군 전진지역의 군정 시행에 따라 일본 공사는 이를 외부에 조회하여 피난한 백성은 돌아와 '安業'하라고 고시케 하였다.¹¹⁴⁾ 그러나 이를 전달 받은 내부에서는 함남 관찰부에 일본 지휘관의 조회에 '점령'이란 두 글자는 군용상 임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영구히 점령'한다는 말이 아니므로, 단지 군용 관련 내용은 부득이 시행하되 토지소유권과 인민의 정치권은 예전처럼 행하도록 했다.¹¹⁵⁾ 그러자 함흥주차 일본군 사령관은 함흥·정평·문천·고원·영흥 등 군은 무슨 목적이든지 막론하고 군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회를 열거나 당을 모아 다수 인민이 취회하여 통문 등을 반포하거나 이전부터 조직된 단체라도 군령에 따라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¹¹⁶⁾ 또한 중성지방대가 정평·영흥 부근에서 군비금을 징수하자 군정 구역 내의 일이라 문제 삼아 파견

112) 「淸韓國境 森林經營 및 鴨綠江口 各 開港場 制度의 制定, 咸鏡道 行政에 관한 稟申 件」, 『公使館記錄』, 1904. 9. 13

113) 「咸鏡道에 軍政實施의 件」, 『日韓外交資料集成』, 1904. 10. 18

114) 《大韓每日新聞》, 1904. 10. 12

115) 《大韓每日新聞》, 1904. 10. 18

116) 《大韓每日新聞》, 1904. 10. 24

병정 3인을 구류하였다.¹¹⁷⁾ 함흥의 사령관은 관내에 직접 일본군령을 포고하여 각 군 인민에게 고시하는 한편, 내용에 “撫恤함에 자애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보는 것과 같이 함은 너희도 또한 아는 바이라”며 고압적 언설로 경계했다.¹¹⁸⁾

주차군사령관은 10월 9일 內訓을 원산과 함흥 양 수비대에게 관내에서 집행토록 하였고,¹¹⁹⁾ 관찰사로 하여금 관내에 공시케 했다. 함경도 군정 시행 결과 그 7조에 따라 관내 재산권이 제한되었다. 군정 시행 통보 직후 함경도 주재 일본 병참소에서 함남 관찰사 이헌경에게 전보해 함흥·정평·영흥·고원·문천 등의 광산채굴과 삼림작벌을 병참소에 통고하여 허가받도록 하였다.¹²⁰⁾ 나아가 원 러시아인의 포경기지를 東洋捕鯨株式會社 대표 오카 줌로 [岡十郎]에게 허락하라고 조회하기도 하였다.¹²¹⁾

이미 군정 이전부터 戶口調査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군 점령지 원산에서는 1904년 7월 영사가 원산항과 함경남도 각 군의 인구·호수·물산·결수 등을 보고할 것을 재촉하였다.¹²²⁾ 또한 문천과 고원 군수에게는 각 리의 호구수·育畜·식량과 家財錢, 민가 토지소유 상황 등을 成冊하여 달라고 독촉하고,¹²³⁾ 문천군에 관내 송전리의 가옥수와 전답 및 관유지 면적을 조사 후 회시하라고 조회했다.¹²⁴⁾ 일본 영사는 덕원 군수에게도 이 내용을 여러 번 강박했고,¹²⁵⁾ 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도 함흥 병참부에 훈령하여 군용상 지점구역 내에서 매매 전당하거나 기타 소유권 이동 등의 행위를 정지케 하였다.¹²⁶⁾

군정 이후 수세권에 대한 간섭도 추진되었다. 1905년 1월 일본군사령부에

117) 《大韓每日新聞》, 1904. 11. 29

118) 《大韓每日新聞》, 1904. 11. 22; 11. 24

119) 『朝鮮駐劄軍歷史』, 227쪽

120) 《大韓每日新聞》, 1904. 10. 19

121) 《大韓每日申報》, 1905. 3. 6; 《皇城新聞》, 1905. 4. 13

122) 《大韓每日新聞》, 1904. 7. 18; 7. 20

123) 《大韓每日新聞》, 1904. 11. 15

124) 《大韓每日新聞》, 1905. 2. 23

125) 《大韓每日新聞》, 1905. 2. 29

126) 《大韓每日新聞》, 1905. 2. 3

서 길주 군수를 함남북 수세감리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함경도 각 둔토의 賭錢을 수세한다고 통고했다.¹²⁷⁾ 같은 달 원산주차 후비보병 제47연대장 하야다 미쓰사토[早田滿郷]는 관북 각 지방에 세금·호포전·전결 징수를 위한 파원을 보낼 때는 자신의 인허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태만히 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¹²⁸⁾ 이에 외부에서는 군사상 행동과 結稅 正供은 조금도 상관없는 것임에도 보고하고 인허를 받은 후에야 수세하라는 것은 국권간섭이라고 항의했다.¹²⁹⁾ 또 이른바 ‘훈시’ 제1항에 지방관이 일본 군대에 불리한, 즉 퇴거함을 명하고 벌에 처하고 적당한 자를 선거하여 지방행정을 시키는 것은 교섭평등의 도리가 아니므로 권한남용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¹³⁰⁾

그럼에도 일본의 간섭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원산 주둔 일본 군정 집행관 명령서에 따라 일반인민에게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즉, ① 송진강 하구로부터 영흥에 이르는 획정선 이남, ② 영흥·고원·사직·봉가·목정·로인현 획정선 이동, ③ 인현·안변·압록·동의 획정선 이북 구역 내에 소속된 토지 매매·전당 기타 소유권의 이동 행위를 금한다. 그러나 군용철도 용지와 조계 10리 내는 예외로 이를 범하는 자는 군율에 따라 처분한다는 것이다.¹³¹⁾ 일본은 한국 측의 정당한 수세행위도 거부했다. 예컨대 원산 감리가 군용지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세를 납부하라고 원산 병참소로 공문하자 「한일의정서」에 따라 應稅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¹³²⁾ 또한 일본군은 덕원군 관할 봉수대는 군사 수용지라며 측량을 실시했다.¹³³⁾ 종전 이후 일본은 1906년 1월 경성군 羅南을 주차군 병영지로 선정하여 그해 5월에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경리부파출소 설치 후 공사에 착수했다.¹³⁴⁾

127) 《大韓每日新聞》, 1905. 1. 9

128) 《大韓每日新聞》, 1905. 1. 18

129) 《大韓每日新聞》, 1905. 1. 25

130) 《大韓每日新聞》, 1905. 1. 31

131) 《大韓每日新聞》, 1905. 2. 18

132) 《大韓每日新聞》, 1905. 2. 21

133) 《大韓每日新聞》, 1905. 2. 28

134) 永井勝三, 1924, 『咸北案内』, 會寧印刷所, 165쪽

그런데 일본의 군정 시행과 같은 기간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행해진 다음과 같은 수세관련 사례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가 외무대신 고무라에 보낸 1905년 1월 4일자 공문에 따르면 1904년 10월 당시 러시아군 점령 함북지역 내의 수세권은 모두 러시아 관헌의 손에 있다는 내용의 풍설을 설명하고 있다. 공사는 그 증거로 길주 군수 이익호가 자신의 가족에게 보낸 서신 중에 러시아 관헌이 발행한 通告書 별지 사본 2통을 입수하였다는 것이다.¹³⁵⁾

韓曆 甲辰 9월 21일(양력 1904년 10월 29일)부로 大俄 馬隊 參將 ‘포 일레프’ 명의로 길주군수 이익호 편에 보낸다.

貴郡 각종 公稅 수납의 건은 반드시 귀군 주재 大俄將官에게 稟한 후 수납함에 있어 혹은 계속 大俄國 관할 아래 수납할 것임을 알리고자 모든 面과 村에 고시하여 인민이 알도록 하고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책임이 돌아가는바 삼가 수행할 것.

러시아력 10월 20일(한력 9월 25일; 양력 11월 2일) 러시아 기병대 참장 포일레프 명의로 길주군수 측에 보내는 훈령.

鏡城에서 잡혀온 2명은 ‘아무르’ 총독의 훈령이 있어 梟囚되었다. 총독 훈령 내에 귀국 北道 각종 公稅 수납의 절차는 반드시 우리나라 將官에 稟하여 수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다시 고시하니 공전 수납은 하나하나 경성 주재 러시아 隊官에게 알려 보고하여 生梗함이 없도록 할 것.

또 다른 사례로 12월 단천군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參將이 공문을 보내 각종 公稅 수세를 러시아 병참에서 전관한다 하였다. 이에 참정 신기선이 내무대신 이용태를 견책하고 이 사건을 논의하자고 상주하였고,¹³⁶⁾ 참찬 許蔭도 함흥

135) 外務省 陸海軍省文書, MT(明治·大正文書), 「北韓方面ニ於ケル露兵ノ行動情報」, 1905년 1월 4일 號外 電報, 大本營, 在京城 落合 참모장 → 참모차장, 167~169쪽

136) 《大韓每日新聞》, 1904. 12. 14

관찰부에 러시아 병정의 행동을 조사 보고 후 조치하자고 훈령한 일이 있었다.¹³⁷⁾ 군부에서도 북청 이북 러시아군이 結稅 등을 거두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¹³⁸⁾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일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군사 분야를 뛰어넘어 민간의 수세까지도 점령지역 군사령관이 시행하는 일종의 軍政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군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방관이 교체되고 일부는 부임이 저지되었다. 군정시행 이전인 1904년 3월 함북 관찰사 李允在가 러시아인을 도운 것은 한 일군사동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 공사가 照詰하였고,¹³⁹⁾ 개천 군수 金孝舜은 불법 탐학하다는 민원에 따라 체포 압송되었다.¹⁴⁰⁾ 4월 일본 공사가 북청 진위대 대대장 참령 張達獻은 러시아어를 하며 러시아 군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처분할 것을 외부에 조회하자,¹⁴¹⁾ 외부에서는 육군법원을 경유해서 ‘爲俄探’은 사실무근이라고 답신하였다.¹⁴²⁾ 또한 김인수와 형제하였다는 혐의로 원산 진위대 참령 박유태를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고, 일본 영사의 조회에 따라 원산항 경무사 홍순국을 박태호로 교체하였다.¹⁴³⁾ 군정시행 직후인 10월 하순 신임 갑산 군수 金承杓은 원 북청 진위대 부관이자 露探 혐의로, 新浦·鍾城 주둔대 중대장 정위 金道鉉은 러시아군에 투입하여 참령 金仁洙 및 정위 朴有豊과 기맥을 통하고 러시아군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혐의로 10월 30일 원산에서 부임을 저지당했다. 11월 4일 군사기밀 누설을 우려하여 북청 진위대 부임길에 있던 정위 金宏洙 이하 2명의 장교를 원산에서 억류해 결국 진위대 해산 후 이들을 풀어주었다.¹⁴⁴⁾

137) 《大韓每日新聞》, 1904. 12. 15

138) 《大韓每日新聞》, 1904. 12. 24

139) 《皇城新聞》, 1904. 3. 14

140) 《皇城新聞》, 1904. 3. 25; 3. 28

141) 《皇城新聞》, 1904. 4. 11; 4. 21

142) 『舊韓國外交文書』 제7권, 日案 7, #8077 「北靑大隊長等 親露行爲의 無根通報」, 1904. 5. 27

143) 《大韓每日新聞》, 1904. 8. 17; 8. 27

144) 『朝鮮駐劄軍歷史』, 175쪽

12월 원산 부영사의 보고에 따르면 덕원 군수 李鍾完은 북청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1~2회씩 갔다 오고, 신임 안변 군수 許源은 러시아군 점령지에 속하는 길주 사람으로 일가가 고향에 있으며, 신임 고원 군수 劉秉律도 길주 사람으로 그 차남이 러시아어 통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천 군수 丁祐燮은 일본군에게 불친절하여 도로 교량공사에 태만하였을 뿐 아니라 러시아군 탐정의 협의가 있어 수차례 구금 심문한 적이 있었다 한다. 그는 영흥 군수 洪淳旭을 제외하고는 믿을 수 없기에 함경도 군수 대부분을 경질시킬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위에 언급한 군수들만 퇴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적당한 인물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사정에 밝은 자신 및 軍 해당관에게 자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¹⁴⁵⁾ 같은 기간 원산항 일본군사령부에서는 신임 고원 군수가 주차군사령관의 인허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부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회하였다.¹⁴⁶⁾

일본 공사는 외부대신에게 군정시행 지역인 함경도의 각 지방관은 물론 군용철도 선로 및 병참감부 또는 일본군·관헌 등과 교섭관계에 있는 다른 도의 지방관도 임면에 신중을 기할 것과 반드시 일본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적당한 인물을 뽑아 채용하라고 조회하였다.¹⁴⁷⁾ 공사는 1905년 1월 내부로 公函하여 원산 경무관 박기호는 신임할 만하고 함흥의 이케다[池田] 소장이 그를 고원 군수 직무를 집행케 함을 청하여 군사령관이 재가한 것이니 승인하라고 요청하였다.¹⁴⁸⁾ 반면 2월 함남 관찰사 이현경은 일본군에 대해 불리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혐의로 신속한 퇴거를 명하고 한국 정부에 통고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시 파직시키고 함흥 군수 이교영을 후임으로 임명했다.¹⁴⁹⁾ 또한 그해 8월 進北軍 접응수원 李永植을 길주 군수 서임 후 함흥 군수로 부임토록 강청하고,

145) 『公使館記錄』, 「郡守 更迭의 件」, 1904. 12. 17. 在元山 副領事 大木安之助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46) 《大韓每日新聞》, 1904. 12. 17

147) 『公使館記錄』, 「日 軍事關係 地方官 任免의 慎重과 日語 解得者 採用要望」, 1904. 12. 13, 林 公使 → 外務大臣.

148) 《大韓每日新聞》, 1905. 1. 26; 2. 24

149) 《大韓每日新聞》, 1905. 2. 17; 2. 21

다시 그를 성진 감리에 임명케 하였다.¹⁵⁰⁾ 일본 대리공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는 한국 정부에 조회하여 경성 군수 심헌택이 회령 군수 인장 회수시 빈광주리를 보내 虛報하여 관기를 문란하고 군정시행을 방해하였다며 면관을 요청하였다. 결국 그는 '附俄黨'으로 지목되어 일본군 헌병을 경유하여 서울로 압송되고 후임은 지역 참모장이 인장을 전달하였다.¹⁵¹⁾

이 같은 일련의 현상에 대해 이미 1905년 4월 3일 외부대신 李夏榮이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조회하여 함경도 일본 군정관 등의 간섭에 항의하고 관찰사에 대한 강박과 감리의 퇴출 같은 주권침해 행동이 없도록 요구하였다.¹⁵²⁾ 그러나 군정상황에서 이는 묵살되었고 일본군의 지방관 임명은 계속 진행되었다.¹⁵³⁾ 경성 병참사령부 사령관 육군 보병중좌 오카 마사쿠마[岡正熊]가 개성부 거주 중2품 韓敎祚가 시세에 적당한 인물이므로 금번 함경북도 개정 시에 부윤이나 군수로 임명하라고 內部를 압박하였다.¹⁵⁴⁾ 회령 군수 김재원의 경우 일본사령부의 허가를 기다리다가 8달 만에 겨우 부임하였으나 현지 주재 일본 참모장이 경성사령부 문서가 없다고 퇴출한 일도 있었다.¹⁵⁵⁾

반면 러시아 점령 지역인 성진 이북에서는 러시아 장교가 새로 부임하는 수령은 모두 日本黨으로 러시아군의 軍情을 정탐하는 자니까 부임할 수 없고, 인민의 보호도 스스로 담당한다고 통보하였다.¹⁵⁶⁾ 그 결과 단천 군수 김유직은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관계로 부임치 못하였다.¹⁵⁷⁾ 1905년 1월 10일에 러시아군 장관이 교체된 관찰사의 사저로 들어가 러시아와 일본이 휴전하기 전에는 관

150) 《大韓每日新聞》, 1905. 8. 31; 10. 4

151) 《大韓每日新聞》, 1905. 10. 25; 11. 9; 11. 17

152) 『舊韓國外交文書』第7卷 日案 #8557, 광무 9년 4월 3일

153) 지방관리 퇴출은 함경도뿐 아니라 한국 전 지역에서 종전 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즉, 1905년 9월 주차군사령관은 신임 각 군수에게 일본군의 군사행동에 위해를 가하지 말 것은 물론 일본 관헌의 지도에 의해 군사상 편리를 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서케 한 후 승인장을 주어 임지에 부임시켰다.

154) 《大韓每日新聞》, 1905. 9. 17

155) 《大韓每日新聞》, 1905. 11. 7

156) 《大韓每日新聞》, 1904. 11. 16

157) 《大韓每日新聞》, 1904. 12. 13

찰사를 해촉할 수 없고 군수로서 서리를 하는 것도 불가하다며 입장을 회수하여 결국 해임된 관찰사가 시무하였다.¹⁵⁸⁾ 이렇듯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각기 점령한 지역의 지방관 교체문제로 발생된 갈등과정에서 새로 임명된 군수들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난처할 수밖에 없었다.¹⁵⁹⁾ 그 결과 관찰사는 물론 군수의 자진 면관 요청과 미부임 사태가 속출하였다. 이원은 1904년 7월부터 1906년 1월까지 무려 18개월간 군수가 부임하지 않아 郡政 공백상태가 지속되었다.¹⁶⁰⁾

군정 제11조에 의거 北靑과 鍾城의 진위대 폐설이 추진되었다. 이는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군부대신 이윤용과 참모부총장 서리인 참모부 부부장 윤웅렬, 교육부 총감 이지용의 발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와 연결되었다고 단정한 중성 및 북청의 대대장을 경질시키면 향후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군사령관 하세가와는 군부대신에게 북청대대는 러시아군에게 무기과 탄약을 모두 탈취당했고 중성대대 또한 탄약을 분실하였으며, 나아가 러시아군의 동정을 적시에 일본군에 통보해주지 않고 항상 그들의 명령을 받는 다며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이윤용은 11월 22일 일본 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1. 북청·중성 주둔 양 대대를 해산하고 대장 이하 직원을 가장 무겁게 처단한다.
2. 한국 군대의 배치행동에 관해서는 군사령관의 동의를 얻은 후 실행한다.
3. 러시아로 귀화한 한인으로서 현재 군직에 있는 자를 면관한다.¹⁶¹⁾

군부대신 등은 함경도 2鎭 대대장들의 군기문란과 보고체계 소홀을 빌미

158) 《大韓每日新聞》, 1905. 1. 14

159) “(군수난처) 함경도 군수들은 부임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는 것이 일본 사령부의 인가가 없는 즉 부임할 수가 없고 설혹 사령부 인가를 얻어 부임을 하더라도 또 아병(俄兵)이 꺾박하니 새로 부임하는 군수들은 진퇴유곡이라더라.” 《大韓每日新聞》, 1904. 12. 24

160) 《大韓每日新聞》, 1906. 1. 11

161) 『朝鮮駐劄軍歷史』, 332쪽

로 이들의 파면을 황제에게 청하였다.¹⁶²⁾ 이들은 다시 12월 3일 “해당 鎭隊를 둔 것은 전적으로 변경을 방비하고 민심을 휘어잡으려는 것이나, 최근의 일들을 보면 방비에 이미 허술한 것이 많고 진무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한갓 많은 군량과 비용만 허비하였을 뿐입니다. 해당 두 진대를 두는 것은 무익하니 지금 우선 없애버리고 별도로 방책을 연구한 후에 다시 설치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을 것 같습니다.”¹⁶³⁾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러일전쟁 개전 이래 북청·중성 양 진위대대 주력이 러시아군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관북지방으로 남하할 때 러시아 점령구역 내에서 그들의 명령을 따르고 장교 중에는 심지어 러시아군의 ‘간첩’ 등으로 협조한 것을 빌미삼아 후일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게 「한일의정서」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 삼고 그 해체를 주장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군사령관 하세가와는 일본 공사와 협의 후 11월 5일부터 한국 정부와 교섭하였고 그 결과 12월 1일 북청·중성 대대장의 면관과 위관 소환,¹⁶⁴⁾ 12월 7일 함경도 2개 대대 鎭衛隊의 해산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⁶⁵⁾

1905년 1월 하순 성진 및 북청 부근의 러시아 보병은 점차 북방으로 퇴각하고 일본군 함흥 진출부대는 2월 27일 성진까지 전진하면서, 군정시행 지역도 확장되었다.¹⁶⁶⁾ 함경도 군정은 1905년 9월 5일 러일전쟁 종전 후에도 “아직 질서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되다가,¹⁶⁷⁾ 그해 10월 18일 군사령관의

162) 『高宗實錄』, 光武 8년 11월 28일

163) 「奏本, 北關 兩 鎭衛隊를 廢止하는 件」, 『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Ⅲ, 光武 8년 12월 3일

164) 함경도 주둔 일본군 헌병사령부와 참모부는 12월 1일 중성 및 북청진위대 정위 김광수, 참위 최영주·박헌병·이준권·정규국·유범수·신석규·박희은·임참위(이름 미상) 및 병계 2인을 경성으로 송환한 후 다음 날 석방하였다(『大韓每日新聞』, 1904. 12. 3).

165) 『朝鮮駐劄軍歷史』, 327~332쪽. 함경도 진위대 해산과 관련하여 하야시 공사는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한성정부의 명에 따라’ 행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당시 헌병대의 보고에 따르면 북청진위대 해산과정에서 북청병졸의 급료는 지급하였지만, 예하 삼수·갑산의 각 1개 중대는 후일 지급할 예정이었다. 『公使館記錄』, 「北靑鎭衛隊 解散의 件」, 1905. 2. 15(林 公使 → 小村 外務大臣)

166) 『朝鮮駐劄軍歷史』, 234쪽

167) 「平和回復 後 日本 軍律의 效力持續 및 政治犯 檢舉 等에 關한 件」, 『公使館記

훈령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도 한국 전 지역에 시행된 軍令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군령은 1904년 10월 10일 포고된 후 1905년 5월 11일 개정 후 한국에 통고된 것이다.¹⁶⁸⁾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3항·제4항 주차군 사령관 또는 독립부대장의 지방관 임명과 퇴임권 발동 권리, 제5항 광산채굴과 삼림채벌 등 경제적 사업의 승인권, 제6항 군정지역 내에 있는 한국군에 대한 명령을 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¹⁶⁹⁾

이는 주차군 사령관이 러시아와의 전쟁 목적 외에 관리 인사권·사업 승인권·군령권 등 거의 전 부문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그만큼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군령은 대체로 군정과 유사한 내용이나 차이는 군정보다는 덜 구체적인 것일 뿐이다. 이 같은 시대 분위기에 대해 《대한매일신보》 논설(「論軍律」)에서 “지금은 이미 전쟁이 끝난 이후이거늘 한국 내 반포한 군율은 의연 계속하니 어찌 일본의 한국에 대한 好意인가? …… 군율의 명으로 인하여 日人 행패가 하루도 없는 날이 없고 이로부터 韓人이 많이 慘殺되었으니 이것은 일본이 크게 壽命을 잃은 것이다”¹⁷⁰⁾며 비판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 지방치안에 관한 제반 권한은 통감부 설치 이후 그곳으로 이전되었다.

錄』, 1905. 9. 29

168) 『舊韓國外交文書』 제7권, 日案 #8356, 광무 8년 10월 10일; 日案 #8662, 광무 9년 5월 11일

169) 『朝鮮駐劄軍歷史』, 151~152쪽

170) 《大韓每日新聞》, 1905. 11. 15

VI. 맺음말

러일전쟁의 전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함경도 지역은 손실이 극심하였고 게다가 1905년 여름과 가을 당시의 집중 호우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민심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였다. 일본군이 끼친 주민들의 피해도 큰 것이었지만 당시 지역사정에 정통한 신문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러시아군이 끼친 것이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연해주와 만주, 심지어 중국 관내로의 피난행렬이 이어졌던 것은 이 지역만의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특히 함경도는 주민이 적고 상대적으로 생산성도 빈약한 지역임에도 러일전쟁 이후 최초의 반일 의병봉기가 함경도 함흥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그간 연구는 대체로 러시아의 한국 북부의 전투는 일본과는 달리 침략의 농도가 덜 심각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일본군의 동정을 살피는 등 실상 방어전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저명한 한러관계 역사학자 보리스 박으로 대표되는 그간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통념과는 달리 함경도 지역주민들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¹⁷¹⁾ 그 결과 일본군뿐 아니라 러시아군에 대한 한국군의 교전, 지역민의 저항 사례들도 문서상 적지 않게 나타난다. 전후 러시아 측의 평가에서도 초기부터 지역민들의 호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전쟁이 진행될수록 일본군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변되는 추세였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¹⁷²⁾

반대로 통역 및 군수품 수송, 첩보활동에 일본군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171)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민경현 역,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675~686쪽. 그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쟁 중 한반도 북부지대의 한국인 장교·병사와 관원들이 러시아군과 연합하여 반일연합전선을 전개했던 사실만 기술하였고 그 정반대로 일본군에 협조하였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172) 러일전쟁전사편찬위원회, 1910, 『러일전쟁 1904~1905(제1부: 한반도 동북지역에서의 전투상황』, 상-페테르부르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12,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43쪽 참조)

많이 나타난다. 러시아 측도 한국인과 외국인, 러시아인을 활용한 첩보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갔다. 이 같은 러일 양국군에 의한 국가차원의 경쟁적 동원과는 달리 지역사회 조직에 의한 민간차원의 대대적인 2차동원도 이루어졌다. 물리적 전쟁과 총소리 없는 평화의 전쟁 즉, '상전(商戰)'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과 역내 간 상거래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었다.

러시아 발틱함대(Балтийский флот)가 일본 聯合艦隊에 패한 동해해전 이후 육상전은 일본군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변하고 따라서 일본군 점령구역도 확장되었다. 함경도 군정 실시는 일본군의 점령지역 통치가 원활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군정이 유독 함경도만 실시된 이유는 러시아와의 연결고리, 반일의병, 한국 국경 밖 대륙으로의 확전 차단 등 군사뿐 아니라 민생 등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에 비협조적인 북청과 종성진위대의 강제해산이 이루어졌다. 군정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정전이 공식화된 이후에도 한 달 반여까지 지속되었고, 러시아군의 완전철수도 두 달 이상이 지난 11월 30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던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식 군정'도 행해졌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거대한 권력이 교체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접경지대인 함경도는 1863년 연해주로의 생계형 이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역내권 교류와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루블화 유통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전개되는 전쟁에 러일 양측으로부터 인적·물적·정신적으로 심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다. 정보력과 현실적 입장, 개인과 집단에 따라 양국의 침략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수준에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러시아와 일본 모두 군사적 제국주의 침략국이라는 것이 조야의 공통된 견해였다.¹⁷³⁾ 따라서 '남의 전쟁'에 동원되는 객체로서의 인식들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¹⁷⁴⁾ 결국, 이들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양국 간의 전쟁 즉, 러일전쟁은 동일하게 비판받아야 할 후발제국주의 국가들의 생명 및 재산의 야만적인 파괴와 약탈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3) 후일 회고에서 당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朝鮮人民은 日本側도 아니요 러시아側도 아니다. 다만 더 强하다고 생각하는 便에 便宜를 보아준 것뿐이다”라 언급한 바 있다. 林權助, 1938, 「舊韓國政府와 日露戰爭」, 『三千里』 5월호, 119쪽

174) 1904년 8월 일본 국내에서 요란하게 진행된 요양전투 승전 경축회는 한국인만 ‘경축하는 뜻을 보지 못’했다는 일본계 漢城新聞의 기사(《大韓每日新聞》, 1904. 9. 12)처럼 싸늘한 시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김윤희, 2009, 「러일전쟁기 일본군 협력 한인 연구—일본 정부의 훈포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5

金正明 편, 1967, 『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朴光淳, 1994, 「日帝의 韓國漁場 침탈과 漁民의 對應」, 『經濟史學』 18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민경현 역,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성진시사편찬위원회, 1993, 『城津市史』, 元一印刷社

심현용, 2011,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오길보, 1988, 『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李寅燮, 1911,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二 附錄 上, 文明社

조재곤, 2013,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軍史』 86호

차경애, 2010, 「러일전쟁 당시 전쟁견문록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중국근현대사연구』 48

高尾新右衛門, 1916, 『元山發展史』, 啓文社

高尾新右衛門, 1922, 『元山港』, 東書店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參謀本部』, 中央公論社

永井勝三, 1924, 『咸北案内』, 會寧印刷所

林權助, 1938, 「舊韓國政府와 日露戰爭」, 『三千里』 5월호

參謀本部 編, 1914, 『明治 三十七, 八年 日露戰史』(제10권), 偕行社

러일전쟁전사편찬위원회, 1910, 『러일전쟁 1904~1905[제1부: 한반도 동북지역에서의 전투상황]』, 상-페테르부르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12,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Rudolf Zabel, 이상희 역, 2009,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흠여행, 1904』, 살림

[ABSTRACT]

War and Frontier: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Reality that Faced Hamgyeong Province

Cho Jaegon

This article examines the experiences and awareness of war by local residents of Hamgyeong Province, which was across the border from Russia, and from socio-economic and historical perspectives.

As Russia and Japan were engaged in a prolonged war, Hamgyeong Province received serious damage and losses. During the summer and autumn of 1905, there were public outcries due to the impact of great floods and the attack of livestock by epidemic diseases. Local people suffered even greater damage from the Russian troops than the Japanese. Thus many local residents in the province fled to Primorsky, Manchuria, and even government offices in China.

Previous research has reported that compared with Japan, Russia intruded less into northern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unlike most research data reported, all of the local residents in Hamgyeong Province did not always blindly trust Russian troops. There are not a few documents on cases and examples in which Korean troops engaged in battle against Russian troops, and Koreans resisted against Russia.

Koreans in the province had good feelings toward Russia, but the nation did not accept this. With war continuing, the Russian troops changed their antagonistic stance toward Japan, and showed a friendly attitude. There also was massive military mobilization not only by

Russia and Japan, but also by non-government institutions. As the fierce commercial war waged,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mmercial trade declined greatly. These added to the suffering that local citizens experienced.

After the naval battle in the East Sea in which Russia's Baltic Fleet was defeated by the Japanese fleet, Japanese troops gained an edge in land warfare. As a result, the Japanese troop expanded their areas of infiltr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the military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only in Hamgyeong Province was because it was needed to connect the linkage with Russia; to block anti-Japanese Korean independence activities; to prohibit such activities from extending beyond the Korean border; and to keep tight control of the spheres such as public life. In the process, local troops in the Daehan Empire (K. *Jinwidae*) in Bukcheong and Jongseong were dismantled. In some regions, a "Russia-style military administration" was founded, too.

It is true that Russia received a relatively friendly response from local residents in Hamgyeong Province. Yet, the majority of those people suffered serious damage and losses in labor, in both physical and mental terms, by the Russo-Japanese War being waged, regardless of their will to fight.

Most Korean local residents in the province thus had a strong awareness that they were people mobilized in the "war between third nations." Finally, they perceived that the Russo-Japanese War merely cost lives in the less-developed imperial nations and brutally deprived them of property.

Keywords

Russo-Japanese War, the Russian border, Hamgyeong Province,
Military mobilization, Military administration, Defense-keeping milita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미노다 무네키[蓑田胸喜]의 '원리일본'과 1930년대의 일본

노병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초빙연구원

I. 머리말

2013년 현재 일본열도는 국제적·자연적·경제적·사회적인 면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하게 성장한 '부활한 戰前'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으로 이른바 '戰後'를 지목하고 있다. 여기서 '부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전전'이 그대로 재림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변용을 거친 후에 현전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따른 것이다. '전후'의 입장에서 '부활한 전전'과 '전전'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민의 원천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전자가 충격과 상심을 안겨주고 있고, 후자가 고통과 슬픔의 씨앗이었다는 점에서, 바꿔 말하면

※ 투고일: 2013년 2월 21일, 심사일: 2013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30일

* 2011년 4월 28일 미노다 무네키의 묘비와 살았던 지역을 안내해주시고, 미노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신문자료를 제공해주신 히카와쵸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 主幹 이마다 하루요[今田治代] 씨, 많은 귀중한 자료를 조사하여 복사해주신 일본학술진흥회의 아오 아스카[阿尾あすか]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전’의 최대 피해자가 ‘전후’였고, 이 ‘전후’에 대한 최대의 도전자가 ‘부활한 전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동일시될 수 있는 대상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전전’에 붙여지는 ‘광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아닐까 한다. ‘부활한 전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후’가 직면해야 했던 ‘전전’이 육체적·물리적·폭력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전쟁의 포연과 군화발의 먼지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1945년 말에 쓰여진 『선풍20년 해금쇼와이면사(旋風二十年 解禁昭和裏面史)』¹⁾라는 저작은, 발언의 자유를 꿈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매우 강경한 어조로, 전전의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성토했고 있다. ‘매장되어버린 學匪’·‘문화범죄자’로 묘사되고, ‘불한당 같은 놈’이라고 표현된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미노다 무네키(蓑田胸喜, 1894.1.26~1946.1.30)다.²⁾

미노다는 ‘전후사상’을 상징하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에 의해서도 매우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다. 마루야마는 천황기관설 사건과 관련하여 미노다를 ‘민간파쇼’로 규정하거나,³⁾ ‘자유주의자에 대한 공격으로 유명했던 原理日本社の 지도자 미노다 무네키’라고 표현하거나,⁴⁾ 매카시즘의 주역인 매카시를 ‘미국의 미노다 무네키’로 비유한다거나,⁵⁾ 미노다의 활동에 대해서 ‘거친’ ‘사상투쟁’⁶⁾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사건에 관련된 ‘學生協會’라는 우익의 학생그룹이 미노다 등 원리일본사가 군부와 귀족원의 후원으로 만든 학생조직이라는 점⁷⁾도 지적하고 있다.

1) 모리 쇼조(森正藏, 1900~1953)가 마스쇼보(鱒書房)에 상·하로 1945년 12월에서 1946년 2월에 걸쳐 간행하였다. 필자는 1947년 2월 15일 합본호를 참고하였다.

2) 森正藏, 1947, 『旋風二十年 解禁昭和裏面史』, 鱒書房, 117~118쪽

3) 丸山眞男, 1948, 「日本ファシズムの思想と運動」, 『丸山眞男集』 3, 300쪽

4) 丸山眞男, 1951,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の一般的考察」, 『丸山眞男集』 5, 100쪽

5) 丸山眞男, 1953, 「ファシズムの現代的状況」, 『丸山眞男集』 5, 311쪽

6) 丸山眞男, 1957, 「日本の思想」, 『丸山眞男集』 7, 196쪽

7) 丸山眞男, 1963, 「ある日津田博士と私」, 『丸山眞男集』 9, 127쪽

마루야마는 스승인 남바라 시게루[南原繁]와 관련해서, 미노다가 남바라에 대하여 “제국대학의 교수로서 학술적 공헌에 태만한 것이 남바라의 徹底自由主義思想의 본질”⁸⁾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거나, 1939년 9월 당시 남바라의 조수였던 마루야마가 “자네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오게”라는 남바라의 지시에 따라 帝大肅正期成同盟이 주최한 ‘東京帝大法・經打倒國民大會’에 은밀히 참가하여 연단에 올라선 미노다의 연설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다.⁹⁾

전전 일본의 우익으로는 玄洋社나 黑龍會와 같은 조직,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도야마 미쓰루[頭山滿]·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기타 잇키[北一輝]·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등의 인물,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太郎]를 정점으로 하는 교토학과,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를 중심으로 한 政教社 혹은 『일본 및 일본인[日本及日本人]』 그룹이 거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우익의 특징을 이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몇 개의 키워드로 정의한다면, ‘아시아주의적’·‘무사도적’·‘유교적’·‘학문적’·‘철학적’·‘혁명적’·‘메이지적’·‘다이쇼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비교적 ‘국가적’·‘근대적’이라는 지적도 가능할 듯하다.

한편 미노다와 미노다가 주축이 되어서 이끌었던 원리일본사 그룹이 이들 우익과 다른 점은, 전전 쇼와 초기에 ‘광적인’·‘파나틱’¹⁰⁾·‘미친’¹¹⁾이라는 형용사를 거의 독점했던 점이라 생각된다. ‘전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육체적인’·‘전전’은 바로 미노다라는 인물, 원리일본사라는 조직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이들은 1930년대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 특히 학문의 자유와 지식인의 사상에 관련된 사건에 거의 예외없이 등장하고 있다.

미노다 등에 부수하는 이러한 ‘광적인’이라는 표현과, 미노다가 중심이 되

8) 丸山眞男, 1975, 「南原先生を師として」, 『丸山眞男集』 11, 173쪽

9) 丸山眞男, 1975, 위의 논문, 183쪽

10) 단적으로 丸山眞男, 1963, 앞의 논문, 126~127쪽에는 미노다에 관련된 그룹에 대한 마루야마의 ‘파나틱(fanatic)’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또한 129쪽에는 ‘열광 우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丸山眞男, 1979, 「日本思想史における「古層」の問題」, 『丸山眞男集』 11, 168쪽

어 조직한 원리일본사와 그 기관지 『原理日本』은, 주로 탈냉전 이후 이슬람 과격파의 성격규정과 관련하여 유통되었던 ‘원리주의’를 상기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원리주의에 대한 교과서적인 연구인 우스키 아키라[臼杵陽]의 『原理主義』¹²⁾는, ‘시대착오적인 광신적인 집단 혹은 개인’을 원리주의자라고 부르며 경멸하는 패턴이 일본에 정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마치다 소호[町田宗鳳]의 “초월적인 일신교를 갖지 않는 일본이지만 반세기 전에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울트라 원리주의 국가였다.”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우스키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전 일본의 원리주의로서 미노다와 원리일본사를 연상시키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시카고대학 종교학의 권위자인 마틴 마티(Martin Emil Marty)가 중심이 된 ‘시카고대학 원리주의 연구 프로젝트’는, 원리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으로는, ① 근대화로 인해 종교가 위기에 처해진 것에 대한 반응, ② 선택적인 敎義의 구축, ③ 선악 2원론적인 세계관, ④ 聖典의 무결점성, ⑤ 종말론적 세계인식과 救世思想을 들고 있다.¹³⁾ 원리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미노다와 원리일본사의 위기의식, 교의의 성격, 자신들과 적을 명확히 구별하는 패턴, 그리고 ‘광적인’ 행동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그 상처로 인해 ‘전후’가 지속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본판 원리주의의 원형인 미노다 무네키 등의 ‘부단 테러’를, 특히 그 테러를 촉발시킨 사상적 기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그 테러의 매체와 구체적인 논리, 그리고 테러의 대상을 사상적 기제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미노다에 관한 논평이 시작된 것은 1954년 호소카와 류젠(細川隆元)의 「일본의 맥카시 시말기」¹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체험’으로 인해 ‘전후’의 기억 속에 미노다가 선명하게 각인되고는 있었

12) 1999년에 岩波書店에서 발행. 아래의 인용은 1~20쪽을 참조.

13) 小川忠, 2003, 『原理主義とは何か』, 講談社, 24쪽

14) 細川隆元, 1954, 「日本マッカーシー 始末記[蓑田胸喜]」, 『文芸春秋』

지만,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말 이후 다케우치 요[竹内洋] 및 그 문하생들과 사토 마사루[佐藤優] 등의 '전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다케우치 등의 연구는 전후의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 혹은 '진보적 문화인'을 비판하는 연장선상에서 전전의 미노다를 조명하고 있어서, 미노다의 사상이 형성되기 위한 역사와 전제에 대한 설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본고는 '미노다'를 '전체'가 아닌 '대명사'라는 점에도 약간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요컨대 가해자가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후'는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후'를 가해자로 보는 '부활한 전후'라는 콘텍스트가 미노다에 대한 연구에도 전제되어 있는 것 같다.

II. 부정과 배제의 원형

1_ 간나가라노미치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원리주의의 탄생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미노다 무네키의 신도적 일본주의에서 찾았다면, 미노다 무네키의 신도적 원리주의는 '간나가라노미치(かながらのみち)'¹⁵⁾에 대한 경도라고 말할 수 있다.

미노다는 1917년 7월 23세에 제5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에 동경제국대

15) 惟神の道, 神隨の道, 髓神の道라고 쓰고, 간나가라노미치(かながらのみち)·가무나가라노미치(かむながらのみち)로 읽는다. 미노다는 자신의 거의 모든 논고에서 '간나가라노미치'와 '시키시마노미치'를 각각, 때로는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학 문과대학 종교학과에 입학한다. 졸업은 1920년 3월이다. 이 당시에 미노다는 일본 종교학의 개척자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 메이지 천황과 쇼토쿠 태자를 동일시하는 초국가주의적 쇼토쿠 태자 예찬론자인 이노우에 우콘[井上右近]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란[親鸞]을 예찬한 초국가주의자 기무라 시게유키[木村卯之]를 이노우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국가주의적·천황중심적 법학자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愼吉]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興國同志會에도 관여하는 것도 이때다. 뒤에서 언급할 歌人 출신의 국가주의자 미쓰이 고우시[三井甲之]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것도 이 당시로서, 구체적으로는 1919년 가을이다.

한편 당시 동경제국대학에는 법학자인 동시에 신도 사상이었던 가케이 가쓰히코[筭克彦]가 재직하고 있었는데, 가케이는 『간나가라노미치[神ながらの道]』나 『古神道研究』와 같은 신도 관련 저술을 후일 발표하였는데, 이 가케이로부터 미노다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¹⁶⁾

1926년 1월 내무성 神社局에서 발행된 가케이의 『神ながらの道』는, 천지 개벽에서 오진[應神] 천황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다수의 神典을 소재로 천손강림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신도론의 개설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특히 円形을 기조로 한 그림이 다수 삽입되어 있고,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 아래에서 여러 신들이 歸一하거나, 神人合一한다는 독자적인 학설을 제시하였다. 가케이의 이 책은 국가에서 널리 보급하였고, 가케이는 신도 연구의 권위자로서 알려지게 된다. 가케이는 古神道·純神道, 즉 신도 중의 신도를 표상하는 ‘간나가라노미치’라는 용어의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였다.¹⁷⁾ 미노다가 가케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위의 저작이 발행되기 전의 대학시절이라고 추측되지만, 가케이의 신도론이 1926년에 갑자기 등장할 수는 없었다는 점, 미노다의 사상 그 자체가 신도 원리주의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미노다와

16) 《熊本日日新聞》2006년 6월 2일의 “近代の異風物 第57話”에 인용된 호소카와 류겐의 분석.

17) 藺田稔·橋本政宣 編, 2004, 『神道史大辭典』, 吉川弘文館, 261쪽

원리일본사의 문장에 '간나가라노미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노다와 가케이의 관계는 상상 이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한편 신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대표자인 쓰다 소키치는 신도를, ①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일본의 민족적 풍습으로서의 종교(주술 포함)적 신앙, ② 신의 권위, 힘, 행위, 소행, 신으로서의 지위, 신이라는 사실, 신 자신 등을 지칭하는 경우, ③ ①과 ②의 정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신대의 설화에 부수하는 어떤 사상, 신학, 교설의 정의의 차이에 따라 파생된 신도로서 료부신도[兩部神道], 唯一神道, 垂加神道 등의 신도, ④ 신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도로서 伊勢神道나 산노신도[山王神道]와 같이 신사 나름의 교설이나 신학이 그 신사를 차별화하는 경우, ⑤ 일본의 신의 가르침 또는 결정에 따라 일본에 특수한 정치 혹은 도덕의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신도로서, 유교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유학에 대항하기 위한 신도로서,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도라든가 선왕의 도에 대립되는 의미를 '신도'에 담는 경우로서, 신의 도라든가, 스메가미[皇神]의 도를 논하는 국학자에게서 발견되는 신도, ⑥ 宗派神道 이 여섯 종류로 구분한다.¹⁸⁾

쓰다는 ⑤의 신도에 대한 설명으로, 신을 제사지내는 도, 신에 관한 도라는 의미로서, 종교성을 갖는 ③, ④와는 달리, “사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현실의 민족적 풍습으로서의 신의 숭배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아도 좋고, 고전의 기술로부터도 멀어져 있다.”고 한다.¹⁹⁾ 그러나 미노다와 원리일본사의 '간나가라노미치'를 상기하는 경우 ⑤의 정의에서 발견되는 정치성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쓰다는 '간나가라노미치'라는 용어의 원류로,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가 '惟神なる道' 혹은 '隨神なる道'라고 쓰고, 惟神와 隨神을 '간나가라(神ながら)'라고 읽는 데서 찾고 있거나, 아쓰타네에 앞서서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

18) 津田左右吉, 1949, 『日本の神道』, 岩波書店(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全集』9, 岩波書店)

19) 津田左右吉, 1964, 위의 책, 5쪽

宣長]가 ‘神の道のままなる道’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리나가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이 용어는 고문헌에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 용어가 회자된 것도 근대 이후²⁰⁾라고 확실히 선언하고 있다.

カミナガラ라는 말과 신도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혹은 이 말이 곧 신도의 중심개념을 상징하는 것처럼 억측되어, 거기에서 ‘神ながらなる道’라는 말이 부상하였다. …… 한번 이 말이 언급되기 시작하자, 신도라는 명칭이 그러했던 것처럼 옛날부터, 혹은 그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세간에서 착각되었고, 동시에 그 용어도 사용되었다. …… ‘惟’는 중국에서 항상 사용된 發語이며, ‘神’은 다음에 오는 …… 주어일 뿐이다.²¹⁾

‘간나가라노미치’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신도에 관한 국학자들의 사상을 쓰다의 설명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의 신도관이다.²²⁾ 가모노는 ‘神皇の道’·‘古の神皇の道’·‘皇神の道’·‘神代の道’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도와 일본의 도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도를 ‘古の道’라고 말하는 것은 도가 행해지고 있던 시대 또는 세상을 도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유교에서 주장하는 성인인 인간이 만든 도가 아닌,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표명된 自然의 도라는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모노가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유교사상을 의식적으로 반대하여, 仁義禮智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모노의 도는 유교의 도를 배척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데,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은, 중국에서는 왕실에 역성혁명이 빈번하고,

20) 津田左右吉, 1964, 위의 책, 14쪽

21) 津田左右吉, 1964, 위의 책, 15~16쪽

22) 이하 국학자의 신도 이해에 관한 설명은 주가 없더라도, 津田左右吉, 1964, 위의 책, 「제7장 국학자의 사상에 있어서(第7章 國學者の思想に於いて)」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유교도 역성혁명을 긍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학자들은 역성혁명에 대립되는 일본 왕실의 특수성을 유교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제시하려 하였던 것이다. 원래 중국에는 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중국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필요에서 유교의 도를 포함하여 사람이 만든 도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도 도는 자연히 행해지고 있었고, 때문에 일부러 도를 논하지 않아도 좋았다고 한다. 즉 일본의 도는 자연의 도라는 사상이 싹트게 된 것이다. 가모노는 純然한 정치의 도, 도덕의 도로써 자연의 도를 주장하기 위해 도가의 사상을 취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도와 차이가 있지만, 신도를 유교화하여 이를 정치의 도, 도덕의 도라고 설파하는 경향이 있었던 도쿠가와 시대의 神道者の 사상을 경유했으며 편리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신도에 연결시켰던 것이다.²³⁾

자연의 도라는 관념에는, 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측면과, ②사람들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그것에 따르고 있는 길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도 가모노와 마찬가지로 ‘皇神의 道’·‘神代の 道’·‘古의 道’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皇國의 道’·‘神のみ國의 道’·‘皇國の神の 道’·‘神の 道’를 사용하고 있다. 노리나가가 ‘神の 道’를 마코토(まこと)의 도라고 하고, 이에 배치되는 유교의 도를 배척한 점은 마부치와 동일하다. 다만 그 도를 자연의 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가모노와 다르다. 노리나가의 도는 천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도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도도 아니며, ‘무스비노카미의 고료[御靈]에 의해 가무오야[神祖]인 이자나기 오카미[大神], 이자나미 오카미가 시작하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大御神]가 받들고 보존하여, 전한 도’를 말한다. 여기서의 신은 황실의 조상이며, 도란 그 조상이 정치의 도로 정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유교사상에서 말하는 선왕의 도와 유사하지만, 유교와의 차이점은 유교사상은 같은 조상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의 도는 전체로서는 종교적이지만, 도 그 자체는 정치·도덕의 도다. 정치 그 자체에 종교적 의의가 수반되어 있는 것이다. 즉 신대 그대로 지키며 私

23) 津田左右吉, 1964, 위의 책, 254쪽

意를 배제한 것이 신의 도인 천황의 정치의 도라고 하고, 일반인의 도는 이러한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히라타 아쓰타네도 ‘神代の道’·‘神の道’·‘古道’·‘大道’를 사용하여, 정치의 도, 도덕의 도를 논하고 있다. 사상적으로도 위의 두 사상가와 유사하다. 다만 ‘간나가라나루미치[神ながらなる道]’(드물게 ‘간나가라노미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쓰타네가 그 용어를 선전하기는 하였다. ‘간나가라나루미치’는 ‘가무오야의 명에 따라 사의를 개입시키지 않고 행해지는 천황의 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용어에는, 도는 신대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와, 신대로부터의 전승에 따르는 것이 도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있다. 하지만 둘 다 정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러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上代를 ‘純固한 간나가라노미치’가 손상되지 않은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학자들의 공통점은 性이 善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인데, 다만 가모노와 노리나가는 의식하지 않거나,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아쓰타네는 의식적으로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쓰다에게 신의 도 혹은 간나가라노미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학자들은 특히 ‘중국적인’ 유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결국은 도교 혹은 유교의 선왕의 도라는 중국적인 관념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셋째, 일본적인 정치와 도덕을 중시했다는 점, 넷째, 정치와 도덕을 중시한 국학의 신도 이해는 종교가 중심적인 그 이전의 신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다섯째, 국학적인 신도 이해와 관련해서 파생된 ‘간나가노미치’의 형식과 표현이 실은 ‘근대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쓰다의 신도 혹은 신도분석은, 쓰다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후술하는 것처럼, 미노다 무네키 등에게서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간접적, 그러나 의식적인 비판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가장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인 것 같다.

미노다는 자신의 논고 곳곳에 ‘간나가라노미치’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 내용의 일단은 미노다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원리일본

사의 강령에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 강령에서는 “진실·소박한 마음을 갖고 현실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 인생을 보는 자는, 외부에 표명된 賢善精進의 상은 愚惡動搖의 내적인 비통의 표명이다. 실생활의 종합적인 統御威力으로서 명확히 우리들을 내적으로 지탱하고, 유구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 인생원리로서의 신념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일본 사상사의 그 끝을 모르는 원천에서 흡수할 수 있다. 생사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칠줄 모르는 유연·강인·열렬·恢宏의 대인생주의, 이상주의라 한다면, 이것이 현실적 이상주의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 강령에서는, “이 현실적 이상주의는 멀리 고사기, 만요슈에 그 소질이 나타나 있는 근본적 일본정신의 사상적 특질이며, 일본 문화사의 각 시대를 관철하여, 표면과 심층에서 일본 민족생활을 지지한다. 동서의 외래문화와의 접촉의 여러 단계에서 내적 승리의 개선곡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²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간나가라노미치를 연상시키는 이상의 강령은 순수 일본적인 삶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2_ 시키시마노미치

간나가라노미치가 미노다 무네키의 에토스를 형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과제는 그 에토스를 뒷받침할 파토스를 구성하는 일일 것이다. 미노다의 파토스는 1928년 8월에 설립된 시키시마노미치카이[シキシマノミチ會]와 관련되어 있다. 시키시마노미치노카이는 와카[和歌] 특히 메이지 천황의 와카²⁵⁾를 배송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시키시마[敷島]는 記紀 신화에 나오는 10대 천황인 스진 천황[崇神天皇]과 29대 긴메이 천황[欽明天皇]이 수도로 설정한 야마토국[大和國] 시키군[磯城

24) 「綱領」, 『原理日本』, 1925. 11(竹內洋 編, 2004, 『蓑田胸喜全集』 7, 柏書房, 685쪽)

25) 打越孝明, 1998. 12, 「明治天皇崩御と御製」(上), 『明治聖徳記念學會紀要』 25, 19쪽에 따르면, 메이지 천황이 생애에 남긴 와카의 총수는 93,032수에 이르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메이지신궁[明治神宮]에서 간행한 『新輯明治天皇御集』(1964)의 8,936수라고 한다.

郡]의 지명을 의미한다. 와카와 관련하여 야마토[大和]의 별칭 혹은 日本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즉 시키시마노미치[敷島の道]는 간나가라노미치와 유사하게 일본 고래의 도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였고, 와카의 도 혹은 歌道を 의미하기도 한다.²⁶⁾

모토오리 노리나가 61세의 자화상에 수록된 와카 ‘敷島の大和心を人間はば朝日に匂ふ山櫻花’는 마쿠라고토바[枕詞]로서 ‘시키시마노[敷島の]’를 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과 의미 자체가, 시키시마와 와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시키시마는 강한 내서널리즘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미노다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시키시마노미치카이의 취의서에는 부정해야 할 사건 및 사상과 그 대안이 설명·모색되고 있다.²⁷⁾ 이에 따르면, 공산당 사건 등 조상에게 懺悔戒愼해야 할 사건들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여, 국가적인 대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僞新凶逆 사상의 원천은 전국 각지의 제국대학 법문학부의 학술적 내용에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일본을 逆亂頹廢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혼돈을 수습하고 이들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전국민사적 開展生命의 ‘야마토고코로(やまとごころ)’의 표현인 시키시마노미치라고 한다. 유구하고, 끊임이 없으며, 그 끝을 모르는 오모이[思]가 바로 야마토고코로이며, 그 표현이 와카인 시키시마노미치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메이지 천황의 와카집인 『메이지텐노교슈[明治天皇御集]』였다. 메이지 천황의 와카를 중시한 이유는, 메이지 천황의 와카는 많은 수가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의 지침과 마음을 다스리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음을

26) <http://ja.wikipedia.org/>(敷島 2011년 11월 3일 검색). 시키시마는 마쿠라고토바(枕詞, 특정한 어떤 말 앞에 붙어 수식어로서 어조를 고르는 와카 수사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야마토와 함께 사용되어, ‘敷島のやまとうた’ 혹은 ‘敷島のやまとうたの道’로 표현되기도 한다. (<http://ja.wikipedia.org/>(和歌 2011년 11월 3일 검색))

27) 「しきしまのみち會 趣意書」, 1928, 10(『蓑田胸喜全集』 7, 688~689쪽)

도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메이지 천황과의 귀일·일체화를 통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메이지 천황의 와카를 '천황'과 '국가' 이데올로기에 활용하였던 것이다.²⁸⁾

메이지 천황의 와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미노다는 공격의 대상이 된 상대방에 대한 敵意를 선명히 하고, 자신의 결의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경우에, 후일 특히 그 과격성으로 논란이 된 논고에 메이지 천황의 와카를 수록함으로써, 자신의 심정적인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경제국대학의 각 교수를 비판한 책으로 유명한 『국가와 대학(國家と大學)』(개정판, 1941)에서는 프롤로그와 목차 사이에 메이지 천황의 와카 2수를 실고 있으며, 본문 중에도 메이지 천황의 와카를 곳곳에 다수 배치하고 있다. 1935년의 『미노배박사의 대권유린(美濃部博士の大權蹂躪)』이라는 저작에서도, 표지의 바로 뒤쪽에 다섯 수를 배치하고 있음은 물론, 본문 중에도 다수의 와카를 실고 있다. 鬼畜米英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던 1941년에 쓰여진 『國防哲學』에도 1905년 러일전쟁 당시에 작시된 메이지 천황의 와카 ‘をりにふれて おのづから仇のころ靡くまで 誠の道をふめや國民(시절에 접하여 저절로 적의 마음이 복종할 때까지 마코토의 도리를 다하라 국민이여)’를 실고 있으며, 프롤로그에 다섯 수, 역시 다수의 와카를 본문 중에 배치하고 있다.

이토록 미노다가 와카에 집착한 이유에는, 메이지 천황의 와카가 갖는 상징성과 정치성도 있겠지만, 가인인 미쓰이 고우시의 영향, 자신과 적을 자의적으로 구별하는데서 오는 불안감의 해소, 또한 자신이 규정한 적과의 싸움 및 자신의 문장에 대한 문학적·형이상학적인 지원군을 와카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때의 와카는 미노다에 수반되는 ‘광기’의 파토스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 松澤俊二, 2008, 11, 「明治天皇「御製」のポリティクス」, 『日本近代文學』 79集, 68~69쪽

Ⅲ. 신이 된 시인

앞서 원리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원리주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실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조직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²⁹⁾ 먼저 원리주의 조직은 선민사상(選民)을 특징으로 한다. 원리주의 조직은 선민사상이 강해서, 자신들을 ‘신이 선택한 자’·‘신과 함께 걷는 자’라고 규정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조직 중에서도 ‘선택된 자’로 불리는 간부집단과, 간부 이외의 구성원 일반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구성원과 외부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고서, 교단의 외부는 많은 죄를 진 자들이라고 간주한다.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 이면서 독재적인 지도자의 존재이다. 대개 원리주의 운동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자발성이 강해서 자각도 강하지만, 원리주의 조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갖는 경우가 많고, 지도자의 지시는 조직 내에서 절대시된다. 구성원의 자발성이 강한 점과 강렬한 카리스마 지도자의 존재는, 때때로 조직 내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조직분열이라는 결과로 연결된다. 네 번째로 원리주의는 집단행동을 중시하고, 구성원의 일상생활에서의 엄격한 규율과 행동규범을 표명한다.

이러한 원리주의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신이’ 혹은 ‘신과 함께’라는 의식을 통해 ‘죄가 많은’ 외부를 내부와 명확히 구별한 후, 외부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확인·강화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들의 행동을 ‘신이’ 이루어주거나, ‘신과 함께’ 한다고 하여 합리화하는 것이다. 결국 원리주의의 행동은 모두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신을 통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자세히 논할 여유는 없지만 미노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미쓰이 고우시와 원리일본사 그룹은 ‘현실 隨順’적 입장을 취한다.³⁰⁾ 신란의 淨

29) 小川忠, 2003, 앞의 책, 31~32쪽

30) 미쓰이 고우시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片山杜秀, 1993, 『寫生・隨順・拜誦』, 竹內洋・佐藤卓己 編, 2006, 『日本主義的教養の時代』, 柏書房, 107쪽

土眞宗과 惡人正機說의 발상법과 유사하게, 인간은 인생의 실제적인 체험, 그 선악과 고락의 변화에 그저 솔직하게 직면함으로써 구제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종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경시하여 크게 벗어난 일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변민하고 고민할 때에 길은 열린다. 거기에서는 어떤 '형식'과 '철학' 체계의 추구나, 교리를 둘러싼 논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의 현실에 그저 따라가는 태도가 미쓰이와 미노다 무네키를 포함한 원리일본사 그룹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표상으로서의 '시인'이다.

이 시인은 세계의 참된 모습인 '객관적 아름다움'을 '寫生'할 뿐이며, 그 어떤 한정적인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天然'의 세계와 마주 대하며, 하나의 완성된 경지로 나아가길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객관'이 있는 그대로 느껴진다면,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불필요하다. 주관에 의해 지배된 영리한 '이상'을 넘는 힘을 통해 시인을 아니 모든 인간을 매료시킬 뿐이다. 人事 세계의 동태성은 '자연'의 정태성 속에서 해소된다. 즉 '천연'의 '사생'은 '인사'와 '천연'을 포함한 '자연'이라는 차원에서 해소되어,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이다. '사생'의 대상은 무한히 확대되지만, 시인은 항상 그 대상권의 외부에 서 있다.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세계는 정태적인 '사생'의 대상일 뿐이며, '시인의 신과 같은 특권적 지위'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³¹⁾

여기서 '자연'과 '천연'은 앞에서 논한 국학자의 '자연의 도'와 '성선설'을 연상시킨다. 국학자의 내부에도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나가라노미치란 선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작위적인 자연의 도가 실현되는 것이거나, 작위적이라고 할지라도 스메카미의 작위를 통해 형성된 너무나 자연적인 삶이 영위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에는 선악과 희비를 넘어서 그 어떤 삶도 영위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관도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사상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국학자들이 그 지점까지 나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주제

31) 片山杜秀, 1993, 위의 논문, 115쪽

는, 그리고 그 ‘자연’을 더럽힌 개입된 사상과 이념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주체는 국학자들에게 한정되어 버린다.

한편 미노다 무네키의 ‘자연의 상태’는 광기와 폭력의 기제인 ‘원리’로 변신한다. 미노다는 ‘천연’의 ‘사생’을 격하게 강조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는 외부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인생예술의 원리는 우리들의 실제 인생의 내적 직접경험에 따른 심중 확신이며, 황금, 지위, 명예, 권세 등의 외재물질이 아님은 물론, 인생 이외, 경험 이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명상관념 또는 자연 과학적인 추상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리’이며, 인생이며, 생명이며, 예술이며, 종교다. 예술의 구극은 종교이며, 현대의 종교는 예술이다. 예술에 귀추·종합되는 문화다.³²⁾

이처럼 미노다에게 인생은 곧 체험이며, 이 체험은 외재적인 물질이 아닌 인생과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 체험은 설명될 수 없는 ‘원리’로서,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예술이고 종교이며 문화다. 이는 또한 외재적인 형이상학과 추상에서도 배제된, 아니 이들로부터 지켜져야 성립되고 유지되는 성격을 띤 것이다. 이러한 자연이 곧 미노다가 주장하는 형이상학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인 관념도 아닌 미노다의 ‘원리’인 것이다.

우에무라 가즈히데[上村和秀]는 이렇게 말한다.³³⁾ 체험을 통한 확신이 곧 원리이며,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미노다와 그 일파는 이러한 ‘인생예술의 원리’를 原理日本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원리일본의 체험을 통한 확신이 곧 일본인의 원리이며, 일본인의 인생, 생명, 예술,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그 누구라도 말

32) 「アインシュタイン・ゲーテ・親鸞」, 『日本及日本人』, 1922. 3(『蓑田胸喜全集』 1, 118쪽)

33) 植村和秀, 2010, 『昭和の思想』, 講談社, 118쪽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미노다의 원리는 인생예술의 원리이고, 인생예술의 원리는 원리일본이며, 원리일본의 원리를 체현하고 있는 것은 원리일본사이고, 원리일본사의 원리는 미노다 자신을 통해서 대표된다. 따라서 미노다 자신이 곧 원리이고, 이 원리를 체현하고 있는 미노다 자신이 시인이고 신이다.

신이 된 미노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일본을 지키는 것이므로 타자의 존재에 반발하며, 타자의 언어가 자신의 내면을 구속하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더욱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려 하고, 타자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비판을 통해서만 미노다의 신앙은 고백된다. 그러한 신앙은 현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악한 타자는 현실 속에서 섬멸되어야 한다.³⁴⁾

이리하여 미노다는 현실 속에서 상대방을 철저히 부정하고 규탄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찾는다. 현실 속에서 타자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이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삶과 현실을 체현하고 사생할 수 있는 시인의 사명이기도 하다. 즉 자연을 제약하는 타자에 대한 원리를 체현한 신이 된 미노다의 사명인 것이다.

IV. '원리일본사'와 '일본'

미노다 무네키의 이름과 항상 동시에 거론되는 것이 '영구생명'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原理日本社.³⁵⁾ 원리일본사는 1925년 11월 7일 미노다가

34) 植村和秀, 2010, 위의 책, 120쪽

35) 태평양전쟁 직전인 1938년 9월 원리일본사와 별도로 만들어진 원리일본사의 자매 조직인 '제대숙정기성동맹(帝大肅正期成同盟)'도 중요하다. 이 단체에는 주로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을 배격하는 인물들이 다수 참가하여 동경제국대학의

미쓰이 고우시 등과 함께 결성한 단체로, 당시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문학부 예과 교수였던 미노다가 1925~1932년까지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노다가 퇴직한 이후에는 역시 게이오대학 교수였던 가와이 데이치[川合貞一]가 제2대 회장으로 자리하게 된다. 원리일본사는 역시 게이오대학에서 창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기관지로 『원리일본』을 발행하였다. 『원리일본』은 1925년 11월호부터 시작하여 1944년 1월호까지 발행되는데, 정치적·시사적인 내용의 논설과 와카 및 하이쿠 등을 동시에 실는 정치·문예잡지라고 할 수 있다. 미노다와 미쓰이는 창간호부터 폐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리일본』의 창간호는 표제 위쪽에 ‘사회·역사·정신·문화 과학적 연구·비판’이라는 창간목적을 달아 원리일본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표제 아래와 목차 중간에 각각 ‘지식은 세계에 情意는 조국에’, ‘凝固 혁명사상 대 不斷 사상학술개혁 잡지·기관’이라고 하여, 혁명사상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일본사의 입장은 동 창간호에 실린 원리일본사의 선언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인류의 역사사회생활의 정신문화과학적인 연구자인 인식주관이 귀의하고 또한 몰입하여 섭취해야 하는 점은, 우리 일본국민에 있어서, 展開展과 總開聯의 일본국민생활, 즉 ‘원리일본’이다. …… 우리 일본국민에게 ‘일본’은 ‘세계’이며, ‘인생’ 그 자체이며, 우리의 내심이 향하는 ‘우주’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들의 인생가치비판의 종합적 기준인 ‘원리일본’이며, 종교적 예배의 현실적 대상인 ‘영구생명’이다. 이는 조국

대학자치운동과 자유주의적인 학풍을 비판하는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루야마 마사오는 1938년 9월 19일 이 단체가 히비야공회당[日比谷公會堂]에서 주최한 강연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제대숙성기성동맹도 우경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상대화되어 1940년 10월 교학쇄신대강연회를 끝으로 활동을 정지하게 된다. 한편 미노다는 1910년대 미노베와의 ‘천황기관설논쟁’·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 비판으로 유명한 우에스기 신키치가 지도한 국수주의적인 학생단체인 흥국동지회에도 가입하여 요시노를 중심으로 조직된 진보적인 학생조직인 신진카이[新人會, 1918. 12~1929. 11]에 대항하였다.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실행의지이며, '일본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는一向專念의 신앙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술적 연구라는 지적 작업이 조국방어의 임무를 향하도록 하자! 조국방어의 임무는 국민생활력의 총동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실탐구와 가치판단의 학술적 연구의 지적 작업이 조국방어의 전위중견 또는 殿軍이 되게 하자.³⁶⁾

선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이란 단순히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원리일본'이며, '영구생명'이며, '가치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일본을 방어한다는 심정으로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일본사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한 점이 많아 보인다. 미노다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다케우치 요[竹内洋] 그룹에서는, 미노다를 중심으로 원리일본사의 성립을 논하고 있는 반면, 다른쪽은 미쓰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케우치 요 그룹이 미노다를 중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마루야마 마사오 등 '전후'의 '체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전후'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체험'과 '전후'의 직접적인 상징물인 '미노다 무네키'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원리일본사의 역대회장이 게이오대학 교수라는 점과 활동도 게이오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미노다의 게이오대학 비판이 눈에 띄지 않는 점, 그리고 『원리일본』 창간기념 강연회도 게이오대학에서 행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미노다의 존재감을 반증한다. 세 번째는 원리일본사의 설립 직후인 1927년 4월 '게이오기주쿠 정신과학연구회[慶應義塾精神科學研究會]'가 설립되어 미노다가 회장에 취임하는데, 이 단체의 설립과 활동내용 또한 원리일본사에서 미노다의 위상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신과학연구회는 게이오대학의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후 '日本精神文化研究所'로 개칭된다. 일본정신문화연구소는 『中央公論』과 『改造』를 해체로 이끈 이른바 요코하마사건[横浜事件],

36) 「宣言」, 『原理日本』 創刊號, 1925, 11(『蓑田胸喜全集』 7, 685쪽)

1942]³⁷⁾에 깊이 관여하였다.

한편 미쓰이 고우시를 중시하는 입장은 『원리일본』의 원류와 관계가 있다. 즉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가 주도하여 1899년 3월에 결성된 단가결사 네기시단가회[根岸短歌會]는 그 기관지로 이토 사치오[伊藤左千夫]의 『아시비[馬酔木]』와 이를 계승한 『아카네(アカネ)』가 있는데, 이 단가잡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치화된 결과가 『원리일본』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카네』에서 『원리일본』에 이르기까지 ‘본존적 입장’에 있었으며, 항상 ‘사상적인 지도자’였던 미쓰이 고우시였다는 것이다.³⁸⁾ 『원리일본』 창간호의 『編輯消息』에는 미쓰이가 관계한 또다른 잡지로서, 1908년부터 간행되고 있던 『인생과 표현[人生と表現]』의 계승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³⁹⁾

다케우치 요 그룹의 지나친 미노다 무네키 중시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미쓰이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시오데 다마키[鹽出環]다.⁴⁰⁾ 시오데에 따르면 미쓰이의 사상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따른 메이지 국가 체제의 위기감,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경험한 소작쟁의 등 민중의 등장에 대한 불안감에서, ‘일본주의적 애국주의자’에서 ‘천황·국체 원리주의자’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네기시단가회 내부의 분열과정에서 미쓰이가 메이지 천황의 와카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단순한 문학운동에서 일본 ‘원리주의’를 제창하는 쪽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오데의 관점에서는 미노다가 원리일본사의 주된 인물이 아니며, 비록 미노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노다는 어디까지나 미쓰이의 ‘홍보담당자’

37) 『改造』 1942년 8, 9월호에 게재된 호소카와 가로쿠[細川嘉六]의 논문 「世界史の動向と日本」이 공산주의적이고, 소련을 찬미하고 있으며, 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改造』가 발매금지된 사건. 호소카와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고, 편집자·신문기자 약 60명이 가나가와현 경찰에 체포된 사건.

38) 片山杜秀, 2006, 앞의 책, 96쪽

39) 「編輯消息」, 『原理日本』 創刊號, 1925, 11(『蓑田胸喜全集』 7, 8쪽)

40) 鹽出環, 2008, 3, 「原理日本社論の限界と錯誤—蓑田胸喜と原理日本社をめぐる諸問題」, 『日本文化論年報』 11

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노다와 미쓰이 이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나뉘어진 입장의 차이는, 원리일본사 연구자 내부의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며, 충분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노다와 미쓰이 양자의 사상적인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후'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노다 무네키의 이름이 더욱 '체험적'이라는 측면에서, 원리일본사를 미노다와 동치시키는 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시오데 다마키는 『일본 및 일본인[日本及び日本人]』 1918년호에 게재된 미쓰이의 「祖國禮拜」라는 시에서 원리일본사의 명칭이 유래했다고 하는데,⁴¹⁾ 미노다도 마르크시즘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인용하고 있는⁴²⁾ 이 시를 통해 원리일본사의 '일본'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야마토의 언어에
야마토의 생명을
함께 노래하며
여기에 모여 있는
친구여
동포여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분노하며
갔으면 한다, 친구여, 함께
세계에서 현재의 일본은
이름도 없는 백성[民]인 우리들 위에서
다가온다고 느낄 때
모든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다
정확한 과학에 의해서
힘은 곧 이 無限의 律動
피할 수 없는, 또한 대체될 수 없는

41) 鹽出環, 2008. 3, 위의 논문, 139쪽

42) 미쓰이 고우시의 장편시 「祖國禮拜」의 일부. 인용은 蓑田胸喜, 1929, 『獨露の思想文化と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蓑田胸喜全集』 2, 178쪽)

우리들의 운명, 일본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끓어오르는 확신의
 위력을 가부쓰치(加部つち)의 대검에 옮겨
 완전히 제거한 후 멈추고
 황실을 보여주어
 생명을 불려 일깨우고
 나아가자 친구여
 자연을 평정하는 사람의 힘은
 생명의 무궁함을 잇고서 시시덕거린다
 향락의 人, 낙천의 民, 계락을 짜고서, 음모를 꾸민다
 이들의 위에
 차가운 구름으로 내려
 질풍처럼 덮치고
 나를 잇고서
 나아가면 여기에
 滅로부터 끓어오르는 대환희는
 영구의 생명을
 현실화한다
 예술이여

이 시가 표명하고 있는 바처럼, ‘일본’을 신봉하는 원리일본사는 1943년 6월 전시의 용지배급 부족으로 『원리일본』의 서점판매가 중지되기까지, 1944년 1월호를 끝으로 『원리일본』의 발행이 중단되기까지, 생명의 무궁함을 잇고서 시시덕거리는, 자연을 평정한 사람들을 향해 영구의 생명의 명목으로, 일본을 신앙하면서 가부쓰치의 대검이 되어 지속적으로 공격을 자행한다.

이러한 공격이 과격해지는 결정적인 시점이, 미시적으로는 1928년 9월 『원리일본』이 신문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정부에 인정을 받아 제도화되는 시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⁴³⁾ 거시적으로는 1929년의 대공황으로 일본의 위기가 고조되자, 대륙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고양되고, 일본 국내에서는 군부

43) 鹽出環, 2008. 3, 앞의 논문, 137쪽

의 정치 주도권 장악이 첨예화되고 있던 1930년대라는 점은 명확하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리일본'과 '일본'에 대한 사상적인 적으로 선언된 지식인들과 사상이다. 특히 동경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의 교수들과 그들의 사상이 주된 표적이 되었다.

V. 불령사상에 대한 성전과 광기

1. '올바른 학문'

미노다 무네키가 1933년 8월 26일에 쓴 『學術維新原理日本』의 序에는 미노다와 원리일본사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제국대학의 교수들과 그 사상에 대한 비판의 논거들이 무려 812쪽에 걸쳐, 곳곳에 메이지 천황의 와카와 함께 장황하게 열거되고 있다. 미노다의 비판의 원점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 대한 강한 자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미노다는 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생의 의지의 사이사이, 결정적으로, 이 '일본'에, 그 '나라'를 통일하였다. 이것이 일본인의 운명이다. 우리들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의 성질이다 …… 일본 국체는 일본정신문화과학의 현실적 기초이며, '교육의 연원'이다. 따라서 일본 국체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곳에 일본정신문화과학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은 일본 과학, 특히 일본정신문화과학의 임무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문무일치의 원칙은 생명의 불가항 요구이다 …… 세계역사상의 공전의 위기, 조국 일본에 있어서 개인의 생사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이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억조일심 거국일치의 협력단결을 파괴하려는, 論理誤謬 人情背反의 데모크라시·마르크스주의의 불충불효사상 - 違勅不

逞思想의 퇴치의 성전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오로지 불충의 민일 뿐이다.(강조는 미노다)⁴⁴⁾

위에서 미노다는 일본 국체의 현실적 기초인 ‘일본’ 그 자체가 교육의 기반인데, 그 기반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그 위기의 원인인 데모크라시와 마르크스즘과 같은 불령사상을 ‘문무일치의 원칙’, ‘국방’의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노다가 불령사상의 원흉을 다름 아닌 제국대학의 데모크라시사와 마르크스주의로 보고 이들을 공격한 것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물리적인 혁명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물리적인 혁명의 이론적 근거지를 대학으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학술유신’이라는 ‘정신혁명’을 중시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 다케우치 요는 이러한 입장을 ‘세계의 皇化는 먼저 일본의 황화로부터, 일본의 황화는 대학의 황화로부터’ 수행하려는 미노다의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노다가 자유주의적인 학자를 ‘용공’ 혹은 ‘국체파괴’라고 규정하고 공격한 결과, 패전 후 미노다는 ‘문화범죄자’ 혹은 ‘일본의 매카시’로 불리게 되었다.⁴⁵⁾

미노다는 <올바른 학문[學]>⁴⁶⁾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학문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44) 蓑田胸喜, 1934, 「序」, 『學術原理日本』(합본재판)(『蓑田胸喜全集』 3, 9~20쪽)

45) 《熊本日日新聞》(2004. 12. 18). 미노다 무네키의 이름 胸喜는 무네키(むねき)라 읽지만, 음독하면 교키(きょうき)가 된다. 교키와 동음이의어로 狂氣가 있는데, 본명인 胸喜보다는 狂氣로 야유되었다고 한다. 기타 잇키나 오카와 슈메이 등이 특히 군부와 연관된 우익활동을 펼쳤다고 한다면, 미노다는 군부와의 깊은 관계를 갖고는 있지만, 특히 자유주의와 서구사상에 영향을 받은 지식인에 대한 공격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미노다의 공격을 받았거나 미노다의 공격을 목격했던 전후의 서구적·근대적 지식인들에게 미노다는 지속적으로 의식되는, 그러나 일종의 금기의 대상이었다. 최근 사토 마사루[佐藤優] 등이 미노다에 대한 학술적인 재평가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토는 ‘蓑田胸喜研究會’에 속해 있으며, 구마모토 출신의 후쿠마 요시아키[福岡良明]도 동 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46) 蓑田胸喜, 1929, 『世界文化單位としての日本』(『蓑田胸喜全集』 2, 191쪽)

‘미쿠니[日本]를 보호하는 것이 곧 올바른 학문이라고 믿고 알고 있어
야 백성도 모인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고 주장하는, 미신을 타파하자는 친구의 말은 참
으로 예리하다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학문도 변성하는 나라에 생겨난다

망국의 백성들 중에서 뛰어난 학자가 나올 수 있다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의 철학도 조국 아테네를 위한 것이며

플라톤의 이데아의 약점은 쇠퇴하는 아테네를 반영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배경은 알렉산더제국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부흥의 소리 지금 서쪽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같이
생각해보자

독일 민족 프로이센가의 배경을 떠나서 칸트 철학이 있겠는가

나폴레옹의 침입 이후 조국애가 싹튼 피히테의 철학을 상기하라

조국을 저주한 마르크스도 최후의 원리는 양망하는 조국의 헤겔에

칸트, 피히테, 헤겔의 계승자임을 자랑하는 엥겔스의 말이 얼마나 진실
된 것이라고, 즉 독일의 사회주의라고 그들은 말하겠는가

마르크스주의는 유대인 마르크스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세계혁명 선전가 레닌도 대러시아인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외쳤다는 점
을 상기하라

마르크스주의도 레닌주의도 또한 각각의 시대와 민족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종건 나쁘건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인 민족생활은

人道도 종교도 예술도 모두 문화의 지지자인 민족에 의하며

교통의 발달로 외부에 나갈지라도 인류의 문화를 지배하는 민족의 생명
동서의 문화를 지배하는 오야시마[大八洲]의 神國 일본을 엮드려 받
들라

이 시에서 미노다는, ‘올바른 학문’은 ‘일본’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세
계의 어떤 위대한 철학과 학문도 ‘시대와 민족의 산물’이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오야시마의 신국 일본’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의할 점은 ‘마르크스주의도 레닌주의도’라는 부분이다. 미노다가 전전 제국대학의 학문·사상의 자유를 공격할 때, 그 문제성의 근원을 마르크시즘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_ 제국대학 비판의 논리

미노다 무네키 등 원리일본사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은 동경제국대학이다. 미노다는 1940년 12월 10일에 쓴 「공개장」에서 일본의 만악의 근원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와 경제학부에 돌리고 있다.

현 일본의 만악의 禍源은, 총력전 국방국가체제의 ‘사상참모본부’를 지향해야 마땅할 종합대학이며, 고급관리 양성소인 제국대학, 특히 동경제대 법경학부의 비과학적인, 때문에 반국체적인, 때문에 反國策적인 悖逆의 구체제 학풍이다.(강조는 미노다)⁴⁷⁾

제국대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미쓰이 고우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미쓰이는 논법, 용어, 대상을 미노다와 거의 같이하면서 동경제국대학을 비판하고 있다. 미쓰이는 1938년 2월 8일에 쓴 글에서 동경제국대학 교수들에 대하여, 혹은 자신들의 행동의 의의를, “독이일 3국은 ‘데모크라시를 위해서 세계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내뱉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거짓말을 경시했던 점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였다. 거짓말은 다수결의 데모크라시이며, 데모크라시 위에서 번식한 마르크스 공산주의이며, 이기적 음모의 국제주의라는 미명이다. 그 원동력을 무솔리니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지적하고, 히틀러는 유대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이들에 상응하는 것은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경제학부에 등지를 틀고 있는 데모크라(원문대로, 필자) 民政主義, 容共赤化 교수들이었다.”(이하 강조는 미쓰이)⁴⁸⁾, “‘臣民否定의 민정주의’는 관리의 양성소인 제국대학, 특히 그 본가인 동경제대 법학부로서, 이를 일소하지 않으

47) 蓑田胸喜, 1940, 「東京帝國大學法學部に對する公開狀」, 1941, 『國家と大學』(개정판)(『蓑田胸喜全集』 5, 10)

48) 三井甲之, 1938, 「時代の急流を分析して『行ひ易き』東京帝大法學部改革を回避することによって生ずべき重大危險を列舉して警告す」, 1941, 『國家と大學』(개정판)(『蓑田胸喜全集』 5, 350쪽)

면 대외적으로는 방공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용공이 될 것이다.”⁴⁹⁾, “‘영원한 평화’는 ‘부단한 전투’를 통해서 가능하며, 인생의 환희는 내심의 감격에서 찾아져야 한다. 새로워지고 황폐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실상이며, 고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본능이다. …… 히틀러의 독일에서의 유대인 역할을 일본에서 수행한 것은 동경제대를 중심으로 각 지역 제국대학에 퍼져 있는 법경 제학부의 적화·용공·민주주의·국제주의를 맹신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비전·반군·패배주의·공상적인 평화주의 인테리였다.”⁵⁰⁾, “동경제대의 법법경제학부의 망은·반국체·용공·민정주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각 지방 제대를 지점으로, 전국의 신문과 관아를 출장소로 하여 지식층에 국제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編理主義가 유행하고 있는데, 유물론적 인생·국가관은 치명적 오류로 충만한 반진리·비현실적 학술사상이기 때문에, 이 비일본사상·반국체 의지에 대하여 일본 신민으로서의 항일의지·언론활동”⁵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학부에서는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弘嚴太郎, 민법·법사회학],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헌법], 요코타 기사부로[横田喜三郎, 국제법], 다나가 고타로[田中耕太郎, 상법·법철학],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澤俊義, 헌법, 미노베의 제자], 야베 데이지[矢部貞治, 정치학], 남바라 시게루 등을, 경제학부에서는 오우치 효에[大内兵衛, 재정학·마르크스 경제학], 가와이 에이지로[河合榮治郎, 사회정책],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식민정책] 등을 공격하였다.

동경제대 법경학부의 ‘무국가사상’·‘가짜 신사상[偽新思想]’의 ‘발상지’로 규정되었으나 이미 원로 혹은 고인이 된 호즈미 노부시게[穂積陳重], 오노즈카 기헤이지[小野塚喜平次],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와 같은 인물들도 이들의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었다.⁵²⁾

49) 三井甲之, 1938, 위의 글, 359쪽

50) 三井甲之, 1938, 위의 글, 363쪽

51) 三井甲之, 1938, 위의 글, 372쪽

52) 이하 荻田胸喜, 1934, 『學術維新原理日本』(『荻田胸喜全集』第三卷, 603~634

한편 일본열도의 서쪽에 위치한 제국대학의 다른 한 축인 교토제국대학에 대한 미노다 등의 비판은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다카가와 유키토키[瀧川幸辰]의 소속 학부이며 동경의 미노베 다쓰키치 및 요시노 사쿠조와 같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사키 소이치[佐々木惣一]가 재직하고 있는 법학부에 대한 비판, 두 번째로는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太郎]로 상징되는 교토학파[京都學派]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교토학파의 좌파에 속하며 쇼와 연구회[昭和研究會]에도 관여했던 미키 기요시[三木清]와 쇼와연구회 자체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먼저 미노다 무네키의 교토대학 법학부에 대한 인식은 그의 이른바 〈자유시〉⁵³⁾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대학의 독립’ ‘연구의 자유’를

강당과 학원을 城으로 삼고, 법규를 방패로 삼아 강조하는 것
교토대학 법학부 교수와 학생 제군!

제군은 방패의 방패, 성의 성, 근거지[根城], 혼마루로서 제군의 ‘대학
의 독립’ ‘연구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보증하는 것
‘대일본제국의 자주독립’을

제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모호하게 欣求信樂하고, 感恩奉謝하고, 防
護死守하여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를 제군들의 마음속에 묻고, 제군들의 가슴에 얹고서 생각해보라!

아, 망국의 백성에게 어떤 ‘독립’, 어떤 ‘자유’가 있겠는가?

.....

법학부의 운동에 합류하여 교관의 강의를 보이코트한 경제학부 학생성
명서의 문언

그 문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들 경제학부의 학생은 같은 핏줄
의 법학부의 潰滅을 무시하고 평온히 있을 수 없다”라고

아, 제군들의 그 ‘전통을 자랑하는’ 교토대학 법학부는

쪽)에 따른다.

53) 蓑田胸喜, 1934, 위의 책, 531~534쪽

‘무정부주의’ 사상선전의 모리토사건 공판에서 특별변호인을 담당했던
 사사키 소이치씨를 오랫동안 학장으로 모시고
 따라서 공산당사건의 전과 누범의 피고 ‘법학박사 勅任 교관’ ‘마르크스
 학의 제1인자’
 실은 마르크스에 대한 무이해 · 『자본론』 오역자이며, ‘인간도 아닌’ 가
 와카미 하지메[河上肇]씨가 오랫동안 권위를 행사하며
 치안유지법 위반의 학생을 비롯한 피고 28인을 발단으로 다 거론할 수
 없이 많은 적화사건을 발생시켜
 지금도 무정부 공산주의 잡탕사상이 ‘적화책임교수’ 다카가와 유키토키
 를 배출하였다

.....

천황과 조국 일본에 대한 모반반역의 전통
 교토대학 법학부 경제학부 교수 학생 제군!
 제군들이 자랑하는 ‘영광스런 전통’이란 이런 것인가?
 결국 제군들이 추구하는 ‘자유’란
 사실상 무정부 공산주의 선전의 ‘자유’
 ‘神國日本’을 붉은 이슬에 팔아서, 제군들 자신을 포함한 전 일본 국민을
 그 ‘노예’로 삼으려는 운동, 또한 그 운동을 지원하는 ‘자유’가 아닌가?
 아, 생각해보아라, 제군의 ‘자유란’
 ‘해머를 가지고 철학한다’는 狂愚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해머를 흔드는 손의 ‘자유’를 맹목적으로 주장하여 실행하고
 나와 나의 머리를 분쇄한다
 자기반역 자살자멸의 ‘자유’임을!

미노다의 이 시에는 교토대학 법학부 및 경제학부와 관련이 있는 사사키
 소이치, 가와카미 하지메, 다카가와 유키토키 등 미노다의 거의 모든 ‘적’들의
 이름이 망라되고 있고,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피력되어 있으며, 미노
 다가 신앙하는 ‘일본’에 적대적인 적화사상에 대한 미노다의 적개심이 표현되
 고 있다.

교토제국대학에 대한 미노다의 비판은 법학부와 경제학부에 한정된 것만
 은 아니다. 미노다의 시선은 철학적 · 불교적인 의미의 일본주의 사상을 체계
 화한 니시다 기타로와 교토학파에게로 향하고 있다. 니시다의 일본주의는 ‘絶

對矛盾的 自己同一性'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관과 객관, 주체와 대상, 시간과 공간, 개인·사회·국가·세계가 통일된 관념을 설정하고, 이를 천황과 '국가'에 연결시키는, 철학적·종교적·형이상학적 내셔널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미노다의 일본주의는 주지하는 것처럼, 영구생명으로서의 '일본'을 신앙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측면에서 니시다의 '일본'은 철학적·종교적·사상적·심리적인 성격을 갖는 데 비하여, 미노다의 일본은 신앙성·절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우에무라 가즈히데는 미노다와 교토학파의 차이점을, ① 정치에서, 니시다는 천천히, 니시다의 문학생들은 성급하게, 미노다는 맹렬하게 묻는다는 점, ② 종교에서, 니시다와 미노다 모두 형식과 敎條를 적대시하며, 자기와 절대적인 것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미노다는 절대적인 것은 오로지 일본에만 있다고 단정하여, 오히려 눈에 띄게 형식적·교조적이라는 점, ③ 미노다는 절대적인 것과 일본을 동일시하여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교토학파는 그 사이에 개인 혹은 민족과 국가를 개입시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⁵⁴⁾

미노다를 기준으로 니시다를 논한다면, 니시다 철학의 문제점은, 마르크시즘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몽상적 관념론'에 가깝고, 강력한 힘을 갖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의미'를 그저 '설명'하는 독일류의 '구식형이상학'이라는 점이다. 니시다의 문장은美文이지만 詩가 부재한 탓에, 로고스·파토스·아가페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며 즐기는 개념의 '놀이론'일 뿐이다. 니시다 철학에서는 일본어의 '생명'인 '고토다마[言靈]', '일본변증법'인 '고토노하의미치(ことのはのみち, 和歌の道)', '일본변증법신학'인 '간나가라노미치'의 '시키시마노미치'에 대한 자각을 기대할 수 없다.⁵⁵⁾

이렇게 미노다가 니시다와의 거리를 선명히 한 것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혐오감의 깊이와 범위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일본'이라는 신앙, 이 '일본'은 외래

54) 植村和秀, 2007, 『「日本」への問いをめぐる闘争 京都學派と原理日本社』, 柏書房의 제5장을 참조.

55) 蓑田胸喜, 1934, 앞의 책, 509~530쪽

적인 관념과 이념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일본' 그 자체를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혹은 '일본'에 가장 가까운 자신들이라는 신념 때문인 것 같다.

3_ 학문 · 사상의 자유 탄압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리일본사는 '영구혁명' · '학술혁명'을 주장하며 『원리일본』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 전 국민과 조국의 영구생명을 위하여
- 지식은 세계에, 정의는 조국에
- 응고혁명 대 부단 학술혁명
- 일본에 정치혁명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치혁명을 없애기 위한 학술혁명

이러한 '학술혁명'을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미노다는 제국대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고, 1930년대 일본의 사상 · 학문의 자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였다. 우선 다키가와사건[瀧川事件]이다. 1933년 3월 공산당원 및 그 동조자로 여겨지는 재판관 · 재판소 직원이 검거되는 司法官赤化事件이 발생하자, 미노다 등 원리일본사 그룹이 조직적 행동을 개시하여 다키가와를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무성 警保局에 다키가와와 저서인 『刑法講義』 · 『刑法讀本』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미노다의 다키가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즉 미노다가 1929년 6월 교토제국대학 강연부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미노다의 강연에 대한 야유와 비난이 청중인 학생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는데, 이 당시의 강연부장이 바로 다키가와 교수였고, 이후 미노다는 다키가와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⁶⁾ 결국 다키가와와는 휴

56) 森正藏, 1947, 앞의 책, 119쪽

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키가와에 동조하여 많은 법학부 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리쓰메이칸 대학[立命館大學]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음으로 天皇機關說事件을 들 수 있다. 천황기관설 논쟁은 1912~1913년 미노베 다쓰키치와 우에스기 신키치의 논쟁을 끝으로 이미 종지부를 찍은 상태였다. 통설도 우에스기의 ‘천황주권설’이 아닌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935년 정쟁의 와중에 귀족원(미노베는 당시 귀족원의 칙선의원)에서 이 문제가 재점화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 미노다 등 원리 일본사 그룹이 주동이 되어 미노베를 공직에서 추방시켰다. 정부·정당·군부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민간우익의 대연합을 성사시킨다. 이들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國體明徵運動, 國民精神總動員運動, 大政翼贊運動을 통해 전전일본의 파시즘체제를 완성하게 된다.⁵⁷⁾

1939년에는 쓰다 소키치가 미노다 등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는다. 쓰다의 신대사 연구는, 미노다와 미쓰이 등에게서 ‘상대사 말살론’·‘신대사 말살론’·‘군민을 이간하는 국체 멸각론’·‘사상적 대역행위’·‘일본정신 동양문화 말살론’의 흉악한 사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⁵⁸⁾ 정부는 이를 계기로 1940년 2월 10일 쓰다의 4권의 저술, 『고사기 및 일본서기의 연구[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研究]』·『신대사의 연구[神代史の研究]』·『日本上代史研究』·『상대일본의 사회 및 사상[上代日本の社會及思想]』에 대한 발매금지 처분을 내린다. 또한 쓰다는 동년 1월 문부성의 요구로 와세다 대학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쓰다의 책을 출판한 이와나미 서점의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도 출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 미노다 등은 이 문제에 대해 이와나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이 외에 1937년 12월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가 교수직을 사임한 사건, 히라가숙학[平賀肅學]으로 1939년 1월 가와이 에이지로[河合榮治郎]가

57) 후술하는 쇼와연구회는 東亞協同體論 및 新體制運動을 주도하였다. 이후의 東亞新秩序 및 大政翼贊會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기대된다.

58) 蓑田胸喜, 1939, 12, 『津田左右吉』(『蓑田胸喜全集』 4)

사임한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의 배후에서 미노다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4_ 혁신우익과 쇼와연구회

미노다 무네키의 '원리일본'이 배척하는 대상에는 같은 우파를 형성하며, 파시즘 체제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던 초국가주의 우익과 쇼와연구회도 있었다.

미노다는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가 『일본 및 일본인의 길[日本及日本人の道]』에서,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 기타 모든 국가를 부정하는 사상이 지금 검은 구름처럼 우리를 포위하여 삼키려 한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은主義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주의에 선 것이다. 단지 그 주의의 실현의 범위에 관한 싸움이다. …… 만약 사회주의자가 올바른 사회를 실현하려 한다면 자본주의자와 함께, 그 경제관념(물건을 인격보다 상위에 두는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점과, 오카와의 혁명활동 자체에 대하여 ‘애국적 정열’이라 극찬한다. 하지만 오카와가 “현대에 국가부정의 사상이 대두하여 신사회의 조직이 역설되는 것은, 그 주장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조직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이들 일체의 논의에서 오히려 발생한 국가창조의 희망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며, 오히려 오카와의 ‘동요’를 확인하고 있다.⁵⁹⁾

여기서 ‘동요’라고 표현한 이유는, 미노다에게 ‘일본’이란 변혁과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와 ‘보호’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미노다의 ‘일본’은 인류생활과 우주의 중심이며, 인류의 생활도 우주도 ‘일본’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일본’은 동양문화의 정신적 가치의 현실적인 보유자이며, 자립국가이고, 그 내부에서 파멸과 몰락이 외쳐지고 있는 서양문화조차도 섭취한, 이미 확립된 세계문화의 단위다. 따라서 미노다의 ‘일본’은 ‘일본인들의 사상과 생활의 종합적 기준, 現靈, 現神’이다. 이를 상징하는 일본 독자의

59) 蓑田胸喜, 1934, 『學術維新原理日本』(『蓑田胸喜』 3, 637~658쪽)

종교·역사철학의 원리가 간나가라노미치인 시키시마노미치인데, 오카와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인 인도의 석가모니에 굴복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와 불교를 중시하는 오카와의 사상과 미노다의 ‘일본’은 서로 대립되게 되고 미노다는 오카와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미노다는 농본주의자인 곤도 세이쿄[權藤成卿]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⁶⁰⁾ 미노다는 곤도가 『自治民範』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지상에 거주하고, 땅을 취하여 먹고살며, 性命을 유지하기 때문에, 태고로부터 땅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관념은 특히 농업국가에 강하다. 유목민에게는 이러한 관념은 부족했다. 땅을 중시하는 관념이 바로 愛郷의 관념이다. 애향의 관념은 바로 애국의 관념이다. 옛날부터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은 농업의 인민이며, 유목의 인민이 아니다.”, “민중 의식주의 진보는 실로 社稷의 진보다. 의식주의 만족과 안전은 바로 민중도덕의 진흥과 연결되며, 민중도덕의 진흥은 그 나라의 정비로 연결되고, 光輝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직을 무시하는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 중 특히 ‘사직을 무시하는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국가사회관을 비판한다. 미노다에 따르면 그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중국 고대의 설화철학식 자연무위주의가 있고, 근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유럽의 18세기에 나타나는 계몽적 합리주의의 유물사상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곤도가 충효도덕을 무시하는데, 충효도덕을 무시하면 방자한 아나키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곤도의 ‘君民共治論’이 政黨과 유사한 사상이기 때문에 흉악한 大權干犯思想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국가주의자 기타 잇키에 대한 미노다의 비판의 핵심은 ‘개조’라는 변화에의 촉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⁶¹⁾ 미노다는 “생명정신에서 ‘개조’는 그 자체 生機의 파괴이며, 가치의 절멸이다. 잡지 『改造』가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국가사회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공헌을 했단 말인가? 파괴! 단지 파괴! 뿐이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개조’사상은 ‘파괴’사

60) 蓑田胸喜, 1934, 위의 책, 659~680쪽

61) 蓑田胸喜, 1934, 위의 책, 681~688쪽

상이며, 사회 '개조'가 사회 '파괴'라는 점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개조'가 필요한 사회는 '개조'가 필요 없는, 이미 개조할 가치가 없는 사회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기타 잇키씨의 『日本改造法案大綱』은 '개조'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 소극적 가치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누설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노다의 입장에서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사회는 이미 개조를 하더라도 그 수명을 다한 것이며, 참된 생명은 개조가 아닌 유지·보호·신앙에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노다는 '변혁'과 '개혁' 혹은 '혁신'과 '개혁'에 관계된 어떤 사상에도 비판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초국가주의 우익들에 대한 미노다의 비판은, 간나가라노미치·시킴마노미치로서의 '日本'을 변혁·혁신·혁명하는 것이 아닌, '신앙'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제국대학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30년대 말 일본의 진로를 새로이 모색하고자 했던 또 다른 전쟁협력단체 쇼와연구회⁶²⁾에 대한 미노다의 비판에서도 이상과 같은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미노다는 미키 기요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쇼와연구회의 「신일본의 사상원리[新日本の思想原理]」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질서 건설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 세계관의 확립이야말로 우리 일본인의 책무이다. 그것은 바로 협동주의의 원리에 서야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일본의 정신사의 전통을 원리적으로 무시·부인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⁶³⁾ 변화·혁명·새로움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원리일본사와 미노다에게 이러한 비판은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쇼와연구회가 '協同主義'를 표방하며, “일본 문화의 중요한 특색은 일군만민의 세계에 비할 데 없는 국체에 근거한 협동주의를 근거로 한다는 점이다. 이 협동주의는

62) 이에 대해서는 노병호, 2010, 12, 「미키 기요시와 전향」, 『日本思想』 第19號 및 노병호, 2010, 9, 「전전일본의 '초근대주의'의 도전」, 『동양정치사상사』 제9권 2호를 참조.

63) 이하 미노다의 쇼와연구회에서의 비판은, 蓑田胸喜, 1941, 『學術維新』(『蓑田胸喜全集』 4, 85~132쪽)에 따른다.

그 보편적인 의의에서 동아에 보급되고,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일본국체를 원리로서 받드는 것이 아니라, ‘협동주의’를 구극적인 원리로 삼고자 하는 사기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미노다는 쇼와연구회가 “유형의 문화에서 (일본은, 필자) 서양과 支那에 뒤쳐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브루노 타우트(Bruno Julius Florian Taut)의 『일본미의 재발견[日本美の再發見]』을 인용하며, 일본미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옹호하고 있다. “중일전쟁[支那事變]의 의의는 오직 ‘자본주의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주장은, 사상의 근저에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쇼와연구회와 쇼와연구회의 이데올로그 미키 기요시에 대한 불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신관계에 대해서도, “(쇼와연구회가, 필자) ‘天皇親政’의 국체의 본의와 ‘承詔必謹’의 忠節臣道を 60쪽의 책자 중에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신일본’의 사상원리는 협동주의이다. 협동주의는 국내의 신질서의 기준이며, 동아의 신질서의 지도정신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쇼와연구회의 협동주의는 일본국체의 근본의인 ‘군신의 대의’를 무너뜨리는 사상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미노다는 쇼와연구회가 마르크스·공산주의와 관련된 것에 대한 의심, 미키 기요시의 사상에 대한 불신, ‘일본’이 아닌 ‘협동주의’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한 반감, 천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쇼와연구회와도 거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VI. 맺음말

전후의 일본에서 미노다 무네키만큼 ‘전후’의 기억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인물은 없을 것 같다. 정치인 도요 히데키[東條英機]의 상징성을 불식할 수는 없

졌지만, 도조가 정치적·상징적이었다면, 미노다로부터 받은 가해는 실존적인 문제였다. 그 때문인지 '전후'는 '전전'을 또 다른 차원에서 상징하는 미노다 무네키로부터 받은 '광적인' '체험'을 숨기지 않는다. 쓰다 소키치 문제로 역시 미노다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이와나미 시게오가 미노다 사망 이후 유족에게 금일봉을 보내며 “역시 진짜였구나”⁶⁴⁾라고 감상을 토로한 이유는 단지 기억 속에만 묻을 수 없는 미노다에 관한 의식의 파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미노다에 대한 평가로는 미노다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 미노다와 원리일본사의 '신앙'에 주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미노다는 제국대학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도 미노다가 교토제국대학에서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모리 쇼조의 발언을 소개했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동경제국대학 법학부에 대한 미노다의 개인적이 불만과 콤플렉스가 동경제국대학을 공격하는 논리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다케우치 요 그룹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미노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1920년 모리토사건[森戸事件] 당시의 미노다의 행태와 관련해서다. 미노다는 당시 興國同志會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모리토 다쓰오[森戸辰男]를 강하고 비판하였는데, 그 결과 그 사건 이후에 세간의 모든 비판을 독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미노다는 점차 제국대학의 교수와 그들의 학풍 영향하에 있는 지식인과 학생문화를 더욱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⁵⁾

미노다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평가, 특히 그 과격성과 관련해서는 미노다의 '격정성'과 '유별남'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경제국대학에 재학 중이던 미노다가 모교인 구마모토의 야쓰시로 중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점심부터 밤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조금도 지

64) <http://ja.wikipedia.org/>(蓑田胸喜 2012년 2월 21일 검색). 하지만 이 발언의 원 출처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65) 竹内洋, 2005, 『丸山眞男の時代』, 中公新書, 75・82~83쪽

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오후 4시가 지나서 담당자가 “시간이 없으므로 이쯤해서 그만하지요.”라고 말하자, “지금까지가 서론이며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을 질리게 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⁶⁶⁾ 주위를 전혀 고려치 않으며 장시간 열변을 토해내고, 논쟁 중 흥분하면 책상을 두드리는 열혈한 미노다의 성격은 다이쇼데모크라시, 러시아혁명, 제1차세계대전 등 격동하는 세계정세와 부합하는 ‘격동기’의 ‘흥분’과 ‘열광’의 퍼스널리티라는 것이다.⁶⁷⁾

하지만 미노다 무네키와 원리일본사의 광기를 통해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1930년대’라는 시대적인 분위기다. 당시의 일본은 런던해군군축조약, 5·15사건, 국제연맹의 탈퇴 등 국내외적인 격동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상시에 요구되는 것은 내적 단결이었고, 그 방법은 ‘일본민족’과 ‘일본정신’을 통한 사상적 통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정당과 관료에 의한 데모크라시, 합리주의, 개인주의, 마르크시즘이었고, 이들은 실천적으로 박멸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노다를 ‘전후’가 당한 체험의 흑독함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미노다 무네키의 사상 그 자체의 내재적인 측면에서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체험’이 가장 선명할 터인 마루야마 마사오가 「역사의식의 ‘고층’[歷史意識の「古層」]」⁶⁸⁾에서, ‘차츰차츰 되어가는 이키오이’의 역사상에서 ‘영원한 지금’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예로써 미쓰이 고우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 마루야마는 미쓰이의 일본주의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순간순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장래의 영원성의 표상과 연결되어 있고, 참으로 일본적인 ‘영원의 지금’, 다른 말로는 ‘지금의 영원’을 전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마루야마의 평가는 단지 미쓰이 일개인에게 한정된 것

66) 井上智重, 2006. 6. 2, “近代の異風者「狂氣」恐れられた國家主義者”, 《熊本日々新聞》

67) 竹内洋, 2005, 앞의 책, 75쪽

68) 丸山眞男, 1972, 「歷史意識の「古層」」(『丸山眞男集』 10, 56쪽)

만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매우 우스꽝스럽고 억지스러워 보이는 '원리일본적인' 우익사상이, '전전'과 '부활한 전후'의 중요한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어도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일본인들의 '특수성'에 대한 자의식이 반복적으로 분출하는 원류라는 점, 일본의 다른 모든 우익사상의 원점을 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노다 무네키와 원리일본사의 '광기'는 동시대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1930년대'의 미노다의 '광기'는 메이지 이후 근대 일본의 우익사상의 종착점인 동시에 태평양전쟁의 출발점으로서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의 원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전히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될 긴장감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白杵陽, 1999, 『原理主義』, 岩波書店
- 森正藏, 1947.2, 『旋風二十年』, 鱒書房
- 小川忠, 2003, 『原理主義とは何か』, 講談社
- 植村和秀, 2007, 『「日本」への問いをめぐる闘争 京都學派と原理日本社』, 柏書房
- 植村和秀, 2010, 『昭和の思想』, 講談社
- 龍北教育委員會, 1973, 『龍北村史』
- 藺田稔・橋本政宣 編, 2004, 『神道史大辭典』, 吉川弘文館
- 竹内洋, 2001, 『大學という病 東大紛擾と教授群像』, 中央公論新社
- 竹内洋, 2003, 『教養主義の没落－變わりゆくエリート學生文化』, 中公新書
- 竹内洋, 2005, 『丸山眞男の時代』, 中公新書
- 竹内洋 외 編, 2004, 『蓑田胸喜全集』 1-7권, 柏書房
- 竹内洋・佐藤卓己 編, 2006, 『日本主義的教養の時代 大學批判の古層』, 柏書房
- 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全集』 9, 岩波書店
- 丸山眞男, 1995. 9-1997. 3, 『丸山眞男集』 전17권, 岩波書店
- 《熊本日日新聞》(1968. 5. 9; 2004. 12. 18; 2006. 6. 2)
- 昆野伸幸, 2006, 「三井甲之「蓑田胸喜君の靈にさゝぐるのり」と翻刻と解題」, 『日本思想史研究』 38
- 宮瀬睦夫, 1943, 「明治天皇御製」, 『國文學 解釋と鑑賞』 6月號, 至文堂
- 宮本盛太郎, 1997. 4, 「蓑田胸喜と瀧川事件」, 『政治經濟史學』 通號370
- 内田剛弘, 2002. 4, 「表現の自由は, いま言論封殺に狂奔した蓑田胸喜－治安維持法時代の民間思想檢察官」, 『マスコミ市民』 通號399
- 大島崇, 2005. 3, 「河合事件再考－蓑田胸喜の河合榮治郎「學術的自治無能力」論(教育實踐記錄「大學自治」の歴史研究)」, 『教育科學論集』(9)
- 富岡幸一郎・片山杜秀・安藤禮二, 2008. 2, 「西田幾多郎から蓑田胸喜まで「昭和思想」の最高峰を辿る」, (特集 平成二十年 偉大なる昭和の面影)『諸君!』 40(2)
- 細川隆元, 1954, 「「日本マッカーシー」始末記(蓑田胸喜)」, 『文芸春秋』 32(9)
- 松澤俊二, 2008. 11, 「明治天皇「御製」のポリティクス」, 『日本近代文學』 79集
- 植村和秀, 2006. 3, 「蓑田胸喜の西田幾多郎批判－論理的解析(1)」, 『産大法學』

39(3·4)(通號135)

植村和秀, 2006. 12, 「丸山眞男の日本ナショナリズム批判」, 『日本學研究』(9)

植村和秀, 2007. 7, 「荻田胸喜の西田幾多郎批判－論理的解析(2・完)」, 『産大法學』
41(1)(通號139)

鹽出環, 2003. 9, 「荻田胸喜と原理日本社」, 『國際文化學』(9)

鹽出環, 2008. 3, 「原理日本社論の限界と錯誤－荻田胸喜と原理日本社をめぐる諸問
題」, 『日本文化論年報』 11

立花隆, 2003. 1, 「私の東大論(42) 狂信右翼・荻田胸喜と瀧川事件」, 『文芸春秋』
81(1)

立花隆, 2003. 2, 「私の東大論(43) 寛克彦と「神ながらの道」－荻田胸喜が影響を受け
た二人の東大教授」, 『文芸春秋』 81(2)

佐藤優, 2005. 10, 「連戦連勝「狂氣の論客」荻田胸喜の生涯」, 『新潮45』 24(10)(通號
282)

佐藤優, 2007. 5, 「革命を回避するために(上) 再び荻田胸喜について」, 『月刊日本』
11(5)(通號121)

佐藤優・竹内洋, 2007. 7, 「いまなぜ荻田胸喜なのか－封印された昭和思想」, 『諸君!』
39(7)

竹内洋, 2004. 3, 「丸山眞男と荻田胸喜」, 『諸君!』 36(3)

[ABSTRACT]

Minoda Muneki's *Nihonshugi* and Japan in the 1930s

Row Byoungcho

Minoda Muneki is a representative person who appeared negatively in cases involving academic freedom and intellectuals in Japan in the 1930s. At first, Minoda had become notorious in the Takigawa case in 1933. And the “Emperor Organ Theory” (J. *Tennōkikansetsu*) in 1935 and Tsuda Sōkichi in 1939 made his name even more so. Minoda had checked the thought of liberal intellectuals and academic freedom from the shadows in these cases and sometimes in public.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Minoda's attacks were concentrated in the 1930s and focused on intellectuals and their scholarship. What resentments and thought structures were behind his attacks and acts?

First, it may be surmised that Minoda participated in the right-wing group Genri Nihonsha (Fundamental Japan Association) or believed in “The Art of Classical Japanese Poetry” (J. *Shikishimanomichi*), and “The Way of the Gods” (J. *Kannagaranomichi*). That is to say, his religion was “Japan.” And his passionate character should also be noted.

On the other hand, his private history should not be disregarded. That is, Minoda had bitterly criticized Morito Tatsuo in the Morito case, and he himself had become a target of criticism. Minoda's complex toward the imperial universities may also be raised. This paper does not concentrate on “private” elucidation of Minoda's resentment. But his private emotions toward the imperial universities, in that the

persistence of this thought came from private human relations, cannot be avoided.

Finally, the mood in the 1930s should be mentioned. The 1930s may be treated as an emergency that required the unification of thought by “Japan” as one nation or Japanese “thought” for Japanese. Therefore, democracy, rationalism, individualism, and Marxism had to be eradicated “practically,” and Minoda assumed the main role in this.

Keywords

Minoda Muneki, the 1930s, *Kokugaku*, Genri Nihonsha, *Kannagaranomichi*, *Shikisimanomichi*, Maruyama Masao, the Poets, the Imperial universities, Academic freedom, Freedom of thought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1호(2013. 9)

초판 1쇄 인쇄 2013년 9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9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